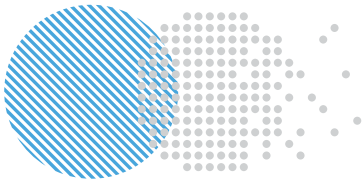
연구보고25-일반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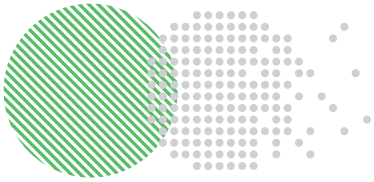
승인번호
제402001호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유민상 · 이경상 · 서고운 · 유성렬 · 유설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 25-01

승인번호
제 402001 호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저 자 **유민상, 이경상, 서고운, 유성렬, 유설희**

연 구 진 연구책임자_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이경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_서고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_유성렬(백석대학교 교수)
_유설희(아동권리보장원 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_문지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요약

■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준거틀로 하여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협약 이행현황을 진단하여 증거 기반 정책을 제시하는 것에 있음.

● 특히 2026년 말 이후 재개될 UNCRC 국가보고서 정기 심의가 새로운 '간소화된 보고절차(SRP)'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핵심 쟁점을 발굴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 연구내용

● 인권지표 분석
  - (11개 영역, 120여개 지표) UNCRC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이 변경을 앞두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이 연구보고서는 11개 영역으로 지표 영역을 확대하여 분석
  - (시계열 자료 복원) 이 연구의 2009~2011년 데이터를 복원하여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하에 KOSIS에 입력하는 등 시계열 추이 분석기반 마련

● UNCRC 이행 관련 정책 동향 분석
  - (심의 관련 동향) 간소화된 보고절차(SRP)의 특징과 사전쟁점목록(LOIPR)의 의미를 정리하여 제7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의 영향 정리
  - (일반논평 27호) '아동의 정의 접근권 및 효과적인 구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7호(초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사법·비사법적 구제 절차에 미칠 시사점 제시

● 심층 분석
  - (NGO 제기 쟁점) 17개 NGO, 23명의 활동가와 사전쟁점목록(LOIPR)에 기반이 되는 NGO가 제기하는 쟁점 30개 도출, 분석, 정리

- (다차원적 인권침해 유형화) 잠재계층모형(LCA)을 이용하여 가정, 학교, 지역, 디지털환경 등에서의 다차원적 인권침해 유형을 구분하여 특성 분석

● 정책 방안 도출

- (클러스터 중심 제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11개 권리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법제도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제안
- (생태체계 중심 제언)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를 중심으로 실천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제안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UN 공식문서 및 국제 NGO, 각국의 SRP 심의 기록, 일반논평 27호 초안 등 최신 국제 동향 문서를 분석하고 제시

● 설문조사

-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8,764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 시행

● 심층분석 (2차 데이터 분석)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데이터의 잠재계층분석(LCA) 적용

● 간담회 및 서면조사

- (서면조사) 17개 NGO, 23명의 활동가 대상으로 쟁점 관련 서면조사 실시
- (간담회) 서면조사 참여자 대상 간담회 2회 실시

● 전문가 자문 및 정부 부처와 연구정책협의

- (전문가 자문) 법률, 정책, 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에게 통계자료 구축, 설문문항 변경, 유엔 심의 절차, NGO 쟁점 등 각 분야에 대한 자문 의뢰
- (연구정책협의) 국회와 제3선택의정서 비준 관련 협의 참여, 교육부, 성평등가족부(前 여성가족부), 국가데이터처(前 통계청),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정책 협의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제2장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동향

- (UNCRC 정기 심의) 대한민국 정부는 2027년경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정기 심의를 진행할 예정임.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정기 심의 방식이 변경되어 대비가 필요함.
  - (심의 방식 변경) 간소화된 보고 절차(SRP)로 변경되었음. 심의 보고 절차의 시작이 '국가보고서 제출'이 아닌 위원회의 '사전쟁점목록(LOIPR)' 송부로 바뀜. 위원회는 시민사회 의견 청취 이후 사전쟁점목록을 작성하므로 시민사회 역할 증대
  - (클러스터 변경) 기존 9개 클러스터에서 11개 클러스터로 변경되었으며, '아동권리와 환경'과 같은 영역 신설됨. 새로운 이슈에 대해 대응해야 할 필요
- (일반논평 27호 초안) '아동의 정의에의 접근 및 효과적인 구제 권리' 일반논평 초안이 공개되었으며, 아동권리 침해 구제 절차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을 제공함. 사법적, 비사법적 구제 절차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 우리가 비준하지 않은 '개인청원절차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OPIC)' 중요성 강조됨.

● 제3장 UNCRC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권지표 프레임워크 및 조사방법 개요

- (UNCRC 클러스터 변경 반영) 기존의 클러스터 중 신설, 변경된 클러스터의 내용을 반영하여 11개 클러스터로 변경하고 지표 보고에 활용
- (변경 내용) 기존의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클러스터가 '장애아동', '건강', '생활수준' 클러스터로 분리되었음. '아동권리와 환경' 클러스터가 신설되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의 영향 측정이 중요해짐.

주요 연구결과

● **4장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11개 클러스터)**

- (일반 이행 조치) 아동·청소년 5명 중에 1명(20.2%)만이 'UN아동권리협약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내용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인지율 낮은 편. 인권 교육 경험율(40.9%)은 권리 존중 태도에 긍정적 영향
- (일반원칙) 차별 경험은 '외모(14.1%)', '학업성적(13.4%)' 기반으로 상존하고 있음. 청소년이 생각하는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시간부족(39.3%)', '사회적 편견(24.7%)' 등임.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학생회 자율성(예: 성적 제한 없음 26.5%), 학교 내 종교 자유(48.3%) 등 보장 수준이 낮은 편. 사회문제 집회 참여율(6.1%) 등 실질적인 정치 참여는 저조한 편임.
- (아동에 대한 폭력) 가정 내 체벌(25.3%) 및 정서폭력(32.5%) 경험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온라인에서의 욕설, 모욕 경험(26.1%)도 높은 편임.
-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보호대상아동 발생의 주원인은 빈곤·학대(83.3%)이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방식은 시설보호(56.9%) 비중이 가정형 보호(35.7%)보다 높게 나타남.
- (장애 아동) 특수교육 대상자(2.2%) 및 통합교육(74.1%)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 확대 등 질적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 장애 아동의 졸업 후 취업률(23.3%)은 매우 낮고, 31.5%는 비진학, 비취업 상태임.
- (건강) 고등학생 평균 수면 시간 6.1시간, 47.0%는 수면 부족을 호소하고 있음. 자살생각(27.0%), 자해시도(9.9%), 외로움(20.1%)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함
- (생활 수준) 아동 빈곤율(9.5%)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나, 아동·청소년 7명 중에 1명(16.5%) 꼴로 가정 경제 상황에 우려하고 있음.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사교육비 격차가 소득에 따라 심화되고 있음.
- (특별 보호조치) 소년범죄가 저연령화(14~15세 비중 증가)하고 있어 대응 필요

주요 연구결과

● **5장 다차원적 인권침해의 유형과 특징**

- (배경) 청소년이 경험하는 인권침해는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가정, 학교 등 여러 영역에서 상호 교차하며 누적되는 다차원적 특성을 보임. 다차원적 인권침해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실증 분석을 진행함.
- (방법) 202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데이터에 잠재계층분석(LCA)을 적용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 디지털 환경 등에서의 폭력 경험을 토대로 피해 청소년을 유형화하였음.
- (결과) '다차원적 고위험 집단(6.3%)', '성인 폭력 피해 집단(20.1%)', '또래 폭력 복합 집단(15.8%)', '저위험 집단(57.8%)'으로 유형화되었음. '다차원적 고위험 집단'은 자살생각, 자해생각, 차별경험, 학업중단 생각 등이 다른 집단보다 높음.
- (시사점) 다중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사후적 대응에서 예방적·조기 개입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

● **6장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 쟁점**

- (목적) 제7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LOIPR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학술적 목적에서 NGO들이 제기하는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쟁점 목록을 작성함.
- (방법) 총 17개 NGO에서 23명의 활동가가 서면자문 및 간담회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의견을 토대로 30개의 쟁점을 제시하였음. NGO들이 문서에 작성한 내용 토대로 최대한 원래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목록에 대한 피드백 받음.
- (결과) 빈곤, 폭력, 학대, 대입제도 등 전통적인 쟁점 이외에 성소수자(LGBTQ+)의 건강/차별/복지권, 디지털 환경 안전,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쟁점들도 제기되고 있었음.
- (시사점) 30개 쟁점에 걸쳐 협약 이행 기반 마련,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 보장, 법률과 이행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대응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음.

핵심 정책제언

● 본 연구는 이 연구 과정을 통해 협약 이행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 수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제언을 마련하였음. 정책제언은 2개 차원, 17개 영역, 1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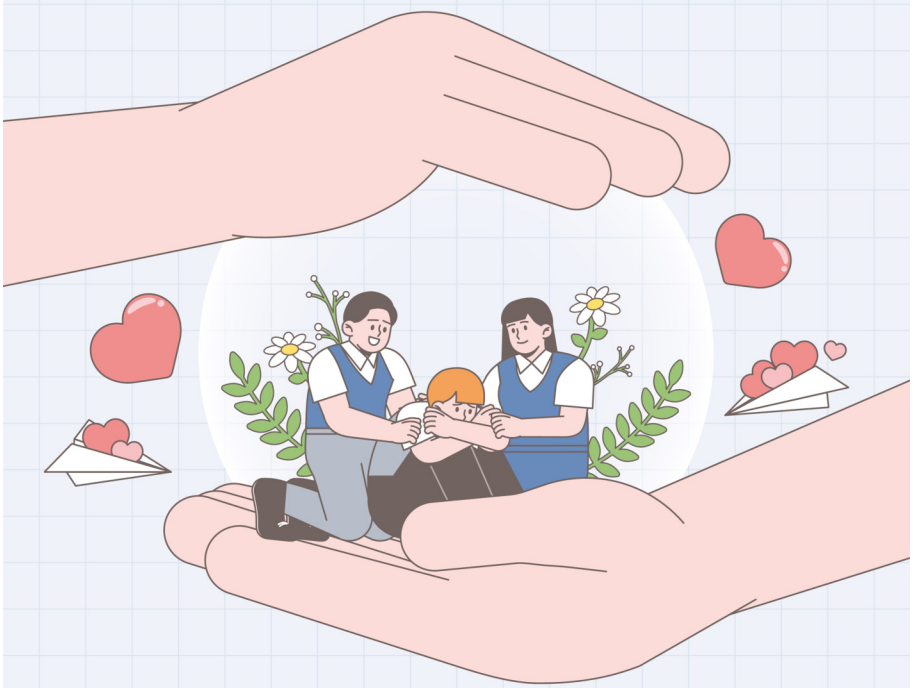
본 연구의 정책 제언 목록 (총 19개)

UNCRC 클러스터 중심 과제 국제 기준, 법제도 등 협약 이행	생태체계 중심 과제 현실에서의 실천적 적용
일반 이행 조치	**개인의 웰빙**
국가 아동예산 통합·투명화 시스템 구축 OPIC 비준 및 이행 로드맵 수립 법조인 대상 아동권리 전문 교육 체계화	사회정서학습(SEL) 의무 교육과정 도입
일반원칙	**가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실효성 강화	위기 임산부 및 영아기 통합돌봄 강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학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및 보호출산제 관리 강화	포용적 무장애 학교환경 조성
아동에 대한 폭력	**지역사회 환경**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 제도 도입	지역 간 놀이·여가 인프라 격차 해소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사회문화·디지털 환경**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탈시설화 로드맵 이행 및 주거권 강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 증진(D-CRIA 의무화)
장애 아동	**생태적 환경**
장애아동 개별화지원계획(IEP) 실효성 제고	교내 기후위기 대응 시민교육 강화
건강	
자살위기 아동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생활수준	
아동 다차원 빈곤지표 개발 및 국가 통계 반영	
아동 권리와 환경	
기후 거버넌스 내 아동·청소년 참여 제도화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학교와 지역사회 아동발달 관련 소음 민원 예외제도 도입	
특별보호조치	
회복적 사법체계 국가 차원 도입	

승인번호 제 402001 호

한 눈에 보는 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주요 결과

이 인포그래픽은 아동·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인권 지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친화적으로 지표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국가데이터처 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주요 결과입니다
이 자료는 자유롭게 교육용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총괄 보고서 내용이나, 기초분석보고서의 각 지표별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권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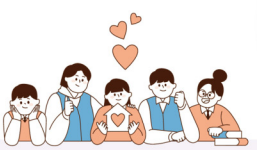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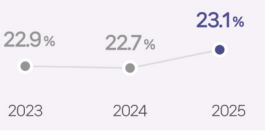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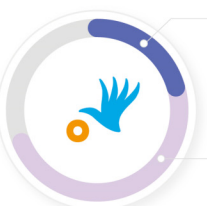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이름만 들어봤다
초등학교	15.4%	37.7%
중학교	24.2%	54.3%
고등학교	20.8 %	53.6%

국가인권위원회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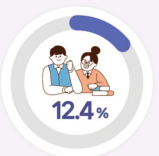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이름만 들어봤다
초등학교	16.0%	52.8%
중학교	26.7%	51.8%
고등학교	26.7%	55.3%

일반원칙

차별 경험

차별 받은 경험

성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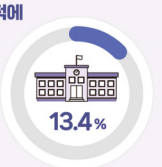


2025

2023 13.6%

2024 14.1%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2025

2023 13.8%

2024 13.6%

연령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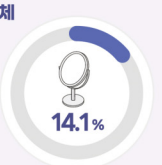


2025

2023 13.3%

2024 13.1%

외모,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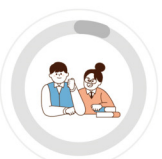


2025

2023 14.8%

2024 14.8%

차별 한 경험



성차별

2025

6.1%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2025

6.8%



연령차별

2025

5.0%



외모,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2025

8.8%

202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결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청소년이 참여권을 보장받고 있어요! | 74.3%





연도별 결과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39.3%**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24.7%**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21.3%**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10.9%**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2.1%**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1.7%**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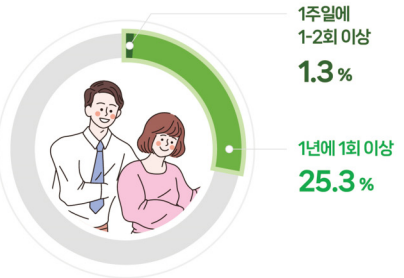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순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40.5%**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40.3%**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37.1%**
2순위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20.9%**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26.5%**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26.6%**

체벌 경험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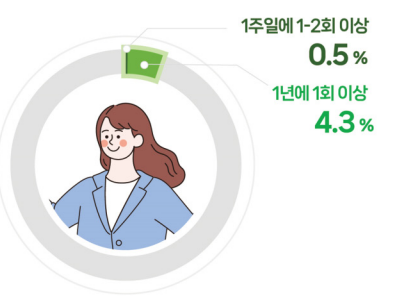
1년에 1회 이상 **25.3%**



	일 년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초등학교	39.8%	2.5%
중학교	24.6%	1.0%
고등학교	11.3%	0.5%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1년에 1회 이상 **4.3%**



	일 년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초등학교	3.8%	0.3%
중학교	6.2%	0.9%
고등학교	2.8%	0.3%

아동에 대한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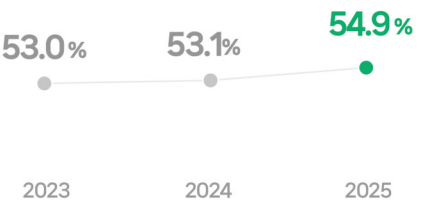
방임경험 연도별 추이

경험 있어요 (1년에 1회 이상)

밤 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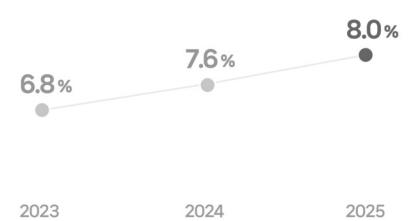
초등학생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거나 또는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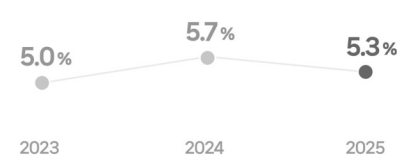
초·중·고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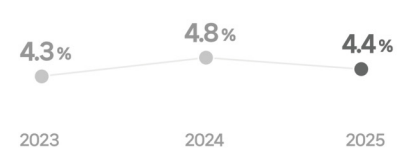
초·중·고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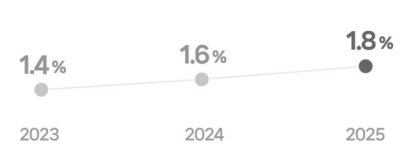
초·중·고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신경쓰지 않음



초·중·고



성적인 피해 경험

성적인 피해 경험이 있어요



2025년

3.1%



♂ 남자

2.7%

♀ 여자

3.6%



초등학교

3.7%



중학교

3.3%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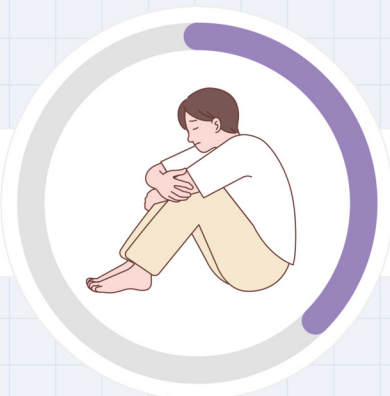
2.3%

아동에 대한 폭력

성적인 피해 시 도움을 받은 사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2025년 **33.9%**



남자 **31.3%**

여자 **35.9%**



초등학교 **17.9%**



중학교 **36.2%**



고등학교 **55.9%**

건강을 위한 운동실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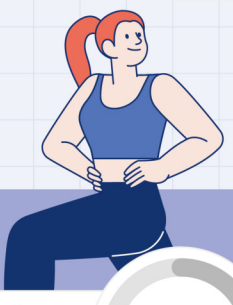
운동을 해요
(일주일에 1~2회 이상)
63.5%



2025년

♂ 남자 **74.1%**

♀ 여자 **52.4%**





♂ 남자 **69.7%**

60.2%
2023년

♀ 여자 **50.2%**

♂ 남자 **72.4%**

62.0%
2024년

♀ 여자 **50.9%**



19.1%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아요

성별		학교급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3.3%	25.2%	8.4%	18.9%	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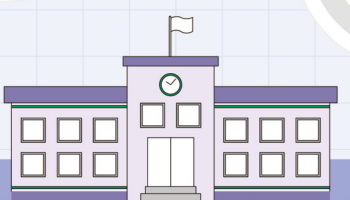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27.0%



♂ 남자
20.1%

♀ 여자
34.3%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



학업문제 **37.9%**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20.0%**

가족 간의 갈등 **18.5%**

8.4%

0.8%

기타 **14.3%**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전혀 그렇지 않다 | 드물게 그렇다 | 가끔 그렇다 | 항상 그렇다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59.7% | 23.4% | 14.7% | 2.1%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65.3% | 19.0% | 12.8% |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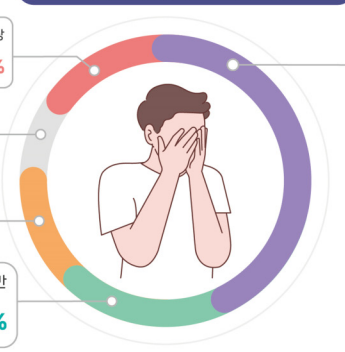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54.9% | 24.1% | 16.9% | 4.1%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86.4% | 8.1% | 4.1% | 1.3%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 기간



- 3년 이상 14.8%
- 2년 이상 3년 미만 10.8%
- 1년 이상 2년 미만 16.5%
- 6개월 이상 1년 미만 17.0%
- 6개월미만 40.9%

현재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현재
행복하지 않아요

15.1%

행복하지 않은 이유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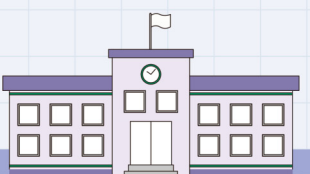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적 있어요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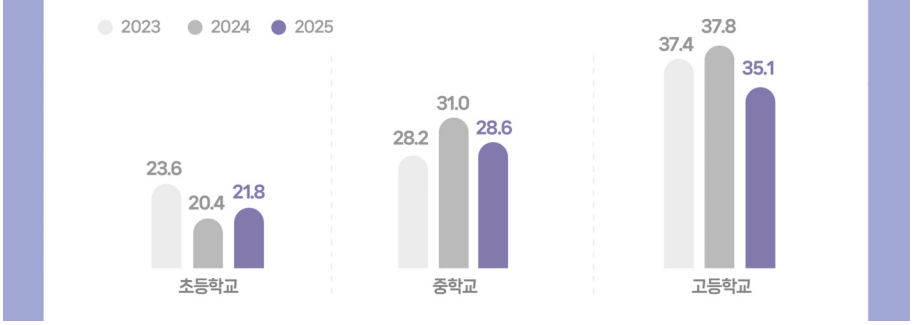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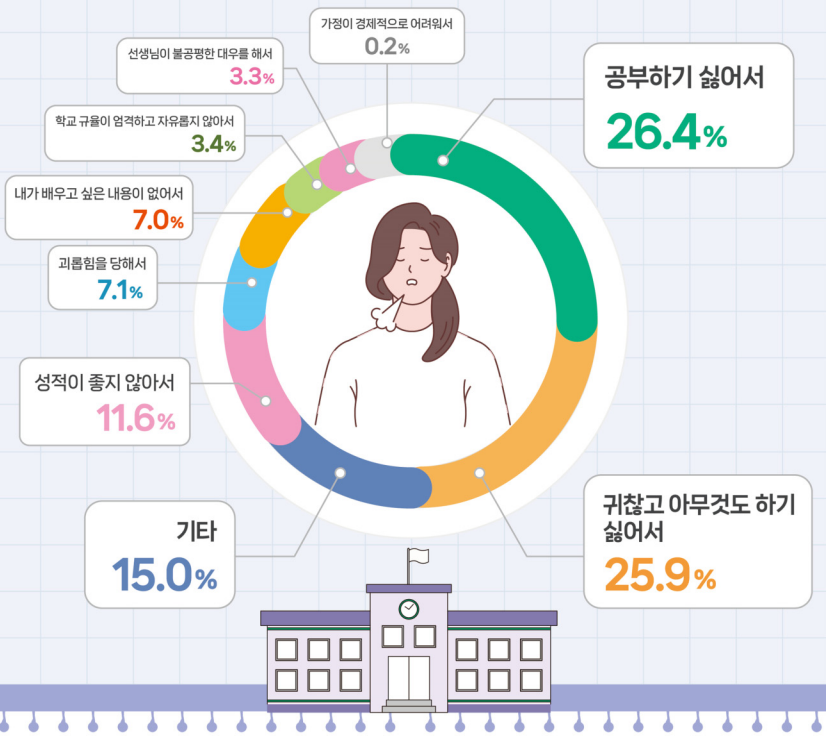
2024년 29.6%

2023년 29.5%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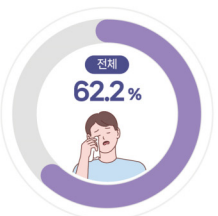


	공부하기 싫어서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초등학교	29.4%	20.5%
중학교	28.6%	30.6%
고등학교	22.8%	25.3%
일반계고	23.3%	24.6%
특성화계고	19.7%	29.4%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보장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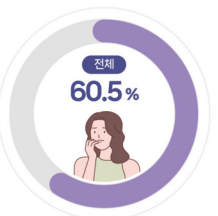
디지털 환경에서 피해에 대한 걱정

온라인상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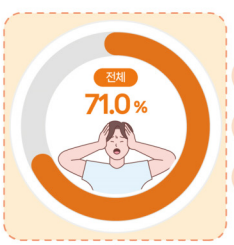
59.3%	초등학생
60.0%	중학생
67.3%	고등학생

온라인상에서 사진, 동영상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57.6%	초등학생
59.5%	중학생
64.4%	고등학생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곳을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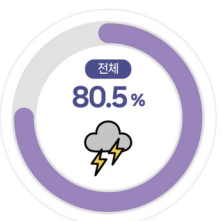
71.3%	초등학생
72.3%	중학생
69.2%	고등학생

나는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개인정보 유출, 불쾌한 메시지 또는 영상 노출, 성범죄, 사기 등) 도움을 받을 곳을 알고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0.4%	18.6%	40.3%	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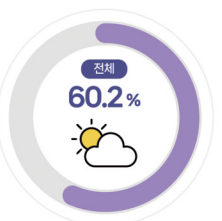
기후변화 환경에서의 아동의 환경권 보장 수준

기후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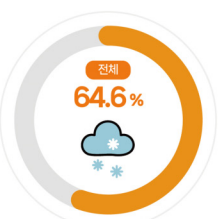
74.7%	초등학생
80.9%	중학생
86.1%	고등학생

기후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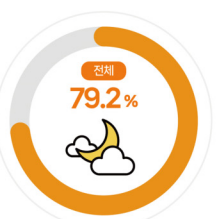
50.6%	초등학생
62.6%	중학생
67.9%	고등학생

학교에서의 기후변화 교육은 충분하다



78.4%	초등학생
62.6%	중학생
52.6%	고등학생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82.0%	초등학생
77.3%	중학생
78.3%	고등학생

차 례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보고25-일반01

1부 연구 배경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4
2. 2025년 연구의 내용 및 주요 특징 ····· 5
3. 연구방법 ····· 9
4. 이 보고서의 구성 ····· 13

Ⅱ.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 동향 ····· 15

1. 이 장의 구성과 흐름 ····· 18
2.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정기 심의 변화: 간소화된 보고 절차(SRP) ····· 19
3.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7호의 내용과 시사점: 아동의 정의에의 접근 및 효과적인 구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7호(안) ····· 28
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국내 아동·청소년 정책 동향 ····· 55

2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Ⅲ.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권지표 프레임워크 및 조사방법 개요 ····· 67
1. 개요 ····· 70
2. 본 보고서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 프레임워크 ····· 71
3.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권 측정 지표체계 구성 ····· 73
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조사 방법 개요 ····· 78
5. 요약 및 시사점 ····· 85

Ⅳ.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87
1. 개요 ····· 90
2. 일반 이행 조치 ····· 91
3. 일반 원칙 ····· 119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 139
5. 아동에 대한 폭력 ····· 162
6.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198
7.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 ····· 230
8. 건강 ····· 244
9. 생활 수준 ····· 308
10.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환경 ····· 317
11.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341
12. 특별 보호조치 ····· 393

3부 심층연구

Ⅴ. 다차원적 인권침해의 유형과 특징 ····· 453
1. 문제 제기 ····· 456
2. 이론적 배경 ····· 457
3. 분석 방법 ····· 461
4. 분석 결과 ····· 463
5. 시사점 ····· 468

Ⅵ.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 쟁점: NGO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471

1. 배경 ····· 474
2. 연구방법 ····· 475
3. 한눈에 보는 클러스터별 쟁점 정리 ····· 479
4. 주요 쟁점과 의견 ····· 482
5. 요약 및 시사점 ····· 498

4부 결론 및 제언

Ⅶ. 정책제언 및 결론 ····· 501

1. 개요 및 정책 도출과정 ····· 504
2. 주요 내용에 관한 시사점 및 정책방향 도출 ····· 506
3.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 도출 ····· 508
4. 결론: 이행을 위한 제언 및 과제 시행을 위한 총괄표 ·· 556

참고문헌 ····· 559

부록 ····· 579

부록 1. 202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 582

국문초록 ····· 625

Abstract ····· 626

표 목차

표 Ⅰ-3-1. 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개요 ····· 10
표 Ⅱ-2-1.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이력 ····· 26
표 Ⅱ-2-2.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별 주요 쟁점 및 권고사항 ····· 27
표 Ⅱ-3-1. 일반논평 제27호(안) 구성 체계 ····· 37
표 Ⅱ-4-1. 공적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입양체계 비교 ····· 56
표 Ⅲ-2-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작성 클러스터 변경 내용 ··· 72
표 Ⅲ-3-1. 2025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73
표 Ⅲ-4-1.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학생수) ····· 79
표 Ⅲ-4-2.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 항목 ····· 80
표 Ⅲ-4-3.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84
표 Ⅳ-2-1. 아동·청소년 법령 제·개정 현황 ····· 92
표 Ⅳ-2-2.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2019~2024년) ····· 96
표 Ⅳ-2-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2025년) ····· 98
표 Ⅳ-2-4.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2025년) ····· 101
표 Ⅳ-2-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2025년) ····· 102
표 Ⅳ-2-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2025년) ····· 103
표 Ⅳ-2-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2025년) ····· 105
표 Ⅳ-2-8. 인권 의식 및 태도_아동·청소년의 참여 관련 인식(2025년) ····· 106
표 Ⅳ-2-9. 인권의식 및 태도_차별 관련 인식(2025년) ····· 109
표 Ⅳ-2-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시 현황 ····· 112
표 Ⅳ-2-11. 인권교육 경험 여부(2025년) ····· 113
표 Ⅳ-2-12.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교급별, 2025년) ····· 115
표 Ⅳ-3-1.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종합, 2025년) ····· 120
표 Ⅳ-3-2. 차별받은 후 상담 또는 도움 받은 사람(2025년) ····· 124
표 Ⅳ-3-3.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현황(2021~2024년) ····· 125

표 Ⅳ-3-4.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의견 존중 정도, 2025년) ·· 126
표 Ⅳ-3-5.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2025년) ····· 128
표 Ⅳ-3-6.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2025년) ····· 129
표 Ⅳ-3-7. 징계처리절차에서의 의견표명 정도(2025년) ····· 130
표 Ⅳ-3-8. 2024년 제21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 131
표 Ⅳ-3-9.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2014~2024년) ····· 132
표 Ⅳ-3-10.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2011~2024년) ····· 132
표 Ⅳ-3-11.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2025년) ····· 133
표 Ⅳ-3-12.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2025년) ····· 134
표 Ⅳ-3-13. 아동·청소년 참여의 방해 요인(2025년) ····· 135
표 Ⅳ-4-1.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2025년) ····· 140
표 Ⅳ-4-2.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2025년) ····· 142
표 Ⅳ-4-3.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2025년) ····· 143
표 Ⅳ-4-4.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2025년) ····· 144
표 Ⅳ-4-5.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2025년) ·· 145
표 Ⅳ-4-6.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2025년) ····· 146
표 Ⅳ-4-7.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2025년) ····· 148
표 Ⅳ-4-8.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 시간(2017~2024년) ····· 150
표 Ⅳ-4-9. 인터넷 이용 목적(2017~2024년) ····· 151
표 Ⅳ-4-1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및 주이용 콘텐츠 (복수응답, 2019~2024년) ····· 152
표 Ⅳ-4-11.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2012~2023년) ··· 153
표 Ⅳ-4-12.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2016~2024년) ····· 153
표 Ⅳ-4-13. 최근 1년간 이용 경로별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 (2018~2024년) ····· 154
표 Ⅳ-4-14. 매체이용 교육 경험(복수응답, 2020~2024년) ····· 156
표 Ⅳ-4-15. 매체 이용 교육의 도움 정도(2020~2024년) ····· 156
표 Ⅳ-4-16. 디지털 사용 역량(2020~2024년) ····· 158
표 Ⅳ-5-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2025년) ····· 163
표 Ⅳ-5-2. 체벌 경험 여부_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 (체벌, 2025년) ····· 165
표 Ⅳ-5-3.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2025년) ····· 166
표 Ⅳ-5-4. 체벌 경험 여부_교사로부터 신체적 벌(체벌, 2025년) ·· 168
표 Ⅳ-5-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 여부(2025년) ····· 170

표 Ⅳ-5-6. 온라인 환경(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 여부(2025년) ·· 174
표 Ⅳ-5-7.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2019~2023년) ····· 178
표 Ⅳ-5-8.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2025년) ····· 179
표 Ⅳ-5-9.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2025년) ····· 180
표 Ⅳ-5-10.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2024년) ····· 181
표 Ⅳ-5-11. 아동학대 신고접수 사례판단 결과(2024년) ····· 181
표 Ⅳ-5-12. 아동학대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2024년) ····· 182
표 Ⅳ-5-13.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증가율(2020~2024년) ····· 182
표 Ⅳ-5-14.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2024년) ····· 183
표 Ⅳ-5-15.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2024년) ····· 183
표 Ⅳ-5-16.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2024년) ·· 184
표 Ⅳ-5-17. 방임_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2025년) ····· 184
표 Ⅳ-5-18. 방임_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2025년) ····· 186
표 Ⅳ-5-19. 방임_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2025년) ····· 187
표 Ⅳ-5-20. 방임_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2025년) ····· 189
표 Ⅳ-5-21. 방임_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2025년) ····· 190
표 Ⅳ-5-2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2009~2024년) ····· 191
표 Ⅳ-5-23.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2018~2024년) ····· 192
표 Ⅳ-5-24. 대상별 서비스 제공 실적(2024년) ····· 193
표 Ⅳ-5-25.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 피해아동 상황(2018~2024년) ·· 193
표 Ⅳ-6-1. 연도별 및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2018~2024년) ····· 200
표 Ⅳ-6-2.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현황(2018~2024년) ···· 201
표 Ⅳ-6-3.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증가 및 이용 아동 현황·추이(2019~2023년) ····· 202
표 Ⅳ-6-4.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현황(2025년 8월 기준) ····· 202
표 Ⅳ-6-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2017~2024년) ·· 204
표 Ⅳ-6-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만족도(2022~2024년) ··· 204
표 Ⅳ-6-7.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2015~2024년) ····· 205

표 Ⅳ-6-8. 입양 절차 개편 ····· 207
표 Ⅳ-6-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 207
표 Ⅳ-6-10.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2018~2024년) ····· 209
표 Ⅳ-6-11.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2018~2024년) ····· 210
표 Ⅳ-6-12. 가정위탁 보호유형별 위탁아동현황(2019~2023년) ···· 211
표 Ⅳ-6-13.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1) 현황(2019~2023년) ··· 211
표 Ⅳ-6-14. 공동생활가정 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2019~2023년) ·· 212
표 Ⅳ-6-15. 가출 여부(2025년) ····· 213
표 Ⅳ-6-16. 가출 경험 횟수(2025년) ····· 214
표 Ⅳ-6-17. 가출 기간(2025년) ····· 215
표 Ⅳ-6-18. 가출한 주된 이유(2025년) ····· 216
표 Ⅳ-6-19. 가출 후 지낸 장소(복수응답) ····· 218
표 Ⅳ-6-20. 청소년쉼터의 종류 및 기능 ····· 219
표 Ⅳ-6-21.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2015~2024년) ·· 220
표 Ⅳ-6-22. 가출 후 이용한 기관(2025년) ····· 221
표 Ⅳ-6-23. 2025년도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 ····· 222
표 Ⅳ-6-24.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 배점 ····· 223
표 Ⅳ-7-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2013~2025년) ···· 231
표 Ⅳ-7-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2019~2025년) ····· 231
표 Ⅳ-7-3. 장애아전문·통합시설 현황(2015~2024년) ····· 232
표 Ⅳ-7-4.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2021~2025년) ····· 233
표 Ⅳ-7-5.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2021~2025년) ····· 234
표 Ⅳ-7-6. 학대피해 장애아동 성별 및 연령(2023년) ····· 234
표 Ⅳ-7-7. 학대피해 장애아동 장애유형(2023년) ····· 235
표 Ⅳ-7-8. 장애아동 학대유형(2023년) ····· 236
표 Ⅳ-7-9. 장애인 인권 인식 및 태도_1)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2025년) ····· 237
표 Ⅳ-7-10. 장애인 인권 인식 및 태도_2) 장애를 가진 친구가 일반학교 학급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2025년) ·· 238
표 Ⅳ-7-11. 장애인 인권 인식 및 태도_3) 장애를 가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 함께 수업을 듣고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다(2025년) ····· 240
표 Ⅳ-7-12. 장애인 인권 인식 및 태도_4) 나는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편하게 여길 것이다(2025년) ·· 241
표 Ⅳ-8-1. 연도별 영아사망률(2018~2023년) ····· 245
표 Ⅳ-8-2.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2018~2023년) ·· 246

표 Ⅳ-8-3. 연령별(0~24세) 사고 사망률(2018~2023년) ····· 246
표 Ⅳ-8-4.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2019~2023년) ····· 247
표 Ⅳ-8-5.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2020~2024년) ····· 249
표 Ⅳ-8-6.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2025년) ····· 251
표 Ⅳ-8-7.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2025년) ····· 253
표 Ⅳ-8-8.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율(2018~2024년) ····· 254
표 Ⅳ-8-9. 보건교사 배치현황(2021~2024년) ····· 254
표 Ⅳ-8-10.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 운영(선정) 현황 ····· 255
표 Ⅳ-8-11.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2024년) ····· 256
표 Ⅳ-8-12. Wee센터 및 Wee클래스, Wee스쿨 설치 현황(2019~2023년) ····· 256
표 Ⅳ-8-13.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 257
표 Ⅳ-8-14. 의료급여 대상 아동·청소년 현황(2021~2023년) ····· 258
표 Ⅳ-8-15. 아동·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충족의료율(2019~2023년) ·· 259
표 Ⅳ-8-16.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충족의료율(2019~2023년) ·· 260
표 Ⅳ-8-17. 흡연율 추이(2020~2024년) ····· 261
표 Ⅳ-8-18. 음주율 추이(2020~2024년) ····· 261
표 Ⅳ-8-19. 습관적 및 의도적 평생 약물 사용 경험률(2022~2024년) ····· 262
표 Ⅳ-8-20. 연간 흡연 예방교육 경험률(2015~2024년) ····· 262
표 Ⅳ-8-21.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2015~2024년) ····· 263
표 Ⅳ-8-22.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2025년) ····· 264
표 Ⅳ-8-23.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2025년) ····· 266
표 Ⅳ-8-24. 수면 시간(2025년) ····· 267
표 Ⅳ-8-25. 수면 부족 여부(2025년) ····· 269
표 Ⅳ-8-26.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2025년) ····· 271
표 Ⅳ-8-27. 수면이 부족한 이유(복수응답: 1+2순위, 2025년) ····· 272
표 Ⅳ-8-28. 체질량지수(BMI) 기준 비만율(2021~2024년) ····· 274
표 Ⅳ-8-29.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2025년) ····· 275
표 Ⅳ-8-30. 자살 생각 여부(2025년) ····· 277
표 Ⅳ-8-31. 자살 생각 이유(2025년) ····· 278
표 Ⅳ-8-32. 자해 생각 및 시도 여부(2025년) ····· 280
표 Ⅳ-8-33. 우울감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2025년) ····· 283

표 Ⅳ-8-34. 우울감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2025년) ····· 284
표 Ⅳ-8-35. 우울감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2025년) ·· 285
표 Ⅳ-8-36. 외로움_1)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2025년) ····· 287
표 Ⅳ-8-37. 외로움_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2025년) ····· 288
표 Ⅳ-8-38. 외로움_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2025년) ····· 289
표 Ⅳ-8-39. 외로움_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2025년) ····· 290
표 Ⅳ-8-40.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 기간(2025년) ·· 292
표 Ⅳ-8-41. 고민거리 대화상대(2025년) ····· 293
표 Ⅳ-8-42. 어려운 상황에서 외면하지 않는 사람(2025년) ····· 294
표 Ⅳ-8-43. 필요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사회적 지지체계, 2025년) ····· 295
표 Ⅳ-8-44.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2025년) ··· 298
표 Ⅳ-8-45.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2025년) ····· 299
표 Ⅳ-8-46.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2025년) ····· 300
표 Ⅳ-8-47. 행복한 정도(2025년) ····· 301
표 Ⅳ-8-48. 행복하지 않은 이유(2025년) ····· 302
표 Ⅳ-8-49. 삶의 만족도(2025년) ····· 304
표 Ⅳ-8-50. 주관적 안녕감 평균(CW-SWBS, 2025년) ····· 305
표 Ⅳ-9-1. 아동빈곤율(2018~2022년) ····· 309
표 Ⅳ-9-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019~2024년) ····· 310
표 Ⅳ-9-3. 한부모가구 비율(2018~2023년) ····· 310
표 Ⅳ-9-4.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2019~2023년) ····· 311
표 Ⅳ-9-5. 취약계층 보호·양육시설 예산(2021~2025년) ····· 312
표 Ⅳ-9-6.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현황 및 이용 아동 수(2019~2023년) ····· 313
표 Ⅳ-9-7. 디딤씨앗통장 저축현황(2020~2024년) ····· 313
표 Ⅳ-9-8. 가정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 정도(2025년) ····· 314
표 Ⅳ-10-1. 거주지역 상황_1) 나는 우리 동네를 걸어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2025년) ····· 319
표 Ⅳ-10-2. 거주지역 상황_2) 우리 동네에는 즐겁게 놀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많이 있다(2025년) ····· 320

표 Ⅳ-10-3. 거주지역 상황_3) 만약에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동네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2025년) … 321
표 Ⅳ-10-4. 거주지역 상황_4) 우리 지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2025년) …… 322
표 Ⅳ-10-5.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_1) 인터넷 업체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2025년) …… 324
표 Ⅳ-10-6.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_2)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년) …… 325
표 Ⅳ-10-7.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_3) 우리나라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025년) …… 326
표 Ⅳ-10-8.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_4) 학교에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2025년) ·· 327
표 Ⅳ-10-9.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_1)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2025년) ·· 329
표 Ⅳ-10-10.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_2)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사진, 동영상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2025년) …… 330
표 Ⅳ-10-11.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_3) 나는 부모님, 선생님, 학교가 나의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걱정된다(2025년) …… 331
표 Ⅳ-10-12.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_4) 나는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개인정보 유출, 불쾌한 메시지 또는 영상 노출, 성범죄, 사기 등) 도움을 받을 곳을 알고 있다(2025년) …… 332
표 Ⅳ-10-13. 기후환경 변화와 권리_1) 나는 평소에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다(2025년) …… 334
표 Ⅳ-10-14. 기후환경 변화와 권리_2) 현재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2025년) …… 335
표 Ⅳ-10-15. 기후환경 변화와 권리_3) 현재 기후 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2025년) …… 336
표 Ⅳ-10-16. 기후환경 변화와 권리_4)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2025년) …… 337
표 Ⅳ-10-17. 기후환경 변화와 권리_5) 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2025년) …… 338
표 Ⅳ-11-1.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 343

표 Ⅳ-11-2. 교원 1인당 학생 수(2011~2024년) ····· 344
표 Ⅳ-11-3. 학급당 학생 수(2011~2024년) ····· 345
표 Ⅳ-11-4.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국제비교(2000~2022년) ····· 346
표 Ⅳ-11-5.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019~2024년) ····· 347
표 Ⅳ-11-6. 가구 소득수준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2023~2024년) ····· 348
표 Ⅳ-11-7.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2012~2024년) ····· 349
표 Ⅳ-11-8. 학업중단 생각 경험(2025년) ····· 350
표 Ⅳ-11-9. 학업중단 생각 이유(2025년) ····· 352
표 Ⅳ-11-10. 장애아전문·통합시설 현황(2015~2024년) ····· 353
표 Ⅳ-11-11.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2020~2024년) ··· 354
표 Ⅳ-11-12.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2025년) ··· 355
표 Ⅳ-11-13.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2025년) ····· 357
표 Ⅳ-11-14. 나는 수업 시간이 재밌다(2025년) ····· 359
표 Ⅳ-11-15.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2025년) ····· 360
표 Ⅳ-11-16. 학교 진로활동 참여 현황 및 만족도 ····· 362
표 Ⅳ-11-17. 15~29세 청년 직업교육(훈련) 경험(2018~2025년) ··· 363
표 Ⅳ-11-18.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2017~2024년) ·· 364
표 Ⅳ-11-19. 직업계고 졸업자 졸업 후 상황(2020~2024년) ····· 365
표 Ⅳ-11-20.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19~2024년) ····· 367
표 Ⅳ-11-21. 전국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368
표 Ⅳ-11-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2013~2024년) ····· 369
표 Ⅳ-11-23. 전국 공공체육시설 연도별 현황(2010~2023년) ····· 370
표 Ⅳ-11-24.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1) 공공도서관(2025년) ·· 371
표 Ⅳ-11-25.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2)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2025년) ····· 372
표 Ⅳ-11-26.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2025년) ····· 374
표 Ⅳ-11-27.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2025년) ····· 376
표 Ⅳ-11-28.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2025년) ····· 378
표 Ⅳ-11-29.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의 유형(복수응답, 2018~2024년) ····· 379
표 Ⅳ-11-30. 일일 여가활동 시간과 여가활동 시간 중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2018~2024년) ····· 380

표 Ⅳ-11-31. 평일 여가시간(2025년) ····· 382
표 Ⅳ-11-32. 여가활동 만족도(2025년) ····· 384
표 Ⅳ-11-33.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1순위, 2025년) ····· 385
표 Ⅳ-11-34.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1+2순위, 2025년) ····· 386
표 Ⅳ-11-35. 평일 학습 시간(2025년) ····· 387
표 Ⅳ-12-1.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2003~2024년) ····· 394
표 Ⅳ-12-2.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2025년) ····· 396
표 Ⅳ-12-3.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2017~2023년) ····· 396
표 Ⅳ-12-4.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2023년) ····· 397
표 Ⅳ-12-5.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2022~2024년) ····· 399
표 Ⅳ-12-6.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2011~2024년) ····· 400
표 Ⅳ-12-7.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2010~2024년) ····· 401
표 Ⅳ-12-8.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2008~2024년) ····· 402
표 Ⅳ-12-9.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난 1년간 사회적 차별 경험 ····· 403
표 Ⅳ-12-10. 지난 1년간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한 사람 ····· 404
표 Ⅳ-12-11.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차별 경험(2017~2024년) ····· 405
표 Ⅳ-12-12. 이주아동 구금현황(2015~2024년) ····· 406
표 Ⅳ-12-13.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 인지율(복수응답) ····· 407
표 Ⅳ-12-14. 다문화가족 자녀의 시설 이용률(복수응답) ····· 408
표 Ⅳ-12-15.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2011~2024년) ····· 410
표 Ⅳ-12-16. 연도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 현황(2012~2023년) ·· 412
표 Ⅳ-12-17.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2015~2023년) ····· 413
표 Ⅳ-12-18.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2016~2024년) ····· 414
표 Ⅳ-12-19. 소년수형자 징역형 형기별 인원 현황(2015~2023년) ··· 415
표 Ⅳ-12-20.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조력 횟수(2011~2024년) ··· 416
표 Ⅳ-12-21. 전국 소년분류심사원 연도별 수용 현황(2015~2023년) ····· 417
표 Ⅳ-12-22. 전국 소년원 연도별 수용 현황(2015~2023년) ····· 418
표 Ⅳ-12-23.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2014~2024년) ····· 420
표 Ⅳ-12-24. 소년보호 항고·재항고 사건 수(2019년~2024년) ····· 421
표 Ⅳ-12-25. 선도프로그램 이수 현황(2019~2023년) ····· 422
표 Ⅳ-12-26.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현황(2014~2023년) ····· 423
표 Ⅳ-12-27.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 처분유형별 현황(2013~2023년) ····· 424
표 Ⅳ-12-28.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과 형태(2016~2023년) ····· 425

표 Ⅳ-12-29.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2015~2023년) ···· 426
표 Ⅳ-12-30.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2015~2023년) ····· 427
표 Ⅳ-12-31.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2010~2023년) ····· 429
표 Ⅳ-12-32.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2021~2024년) ····· 431
표 Ⅳ-12-33. 청소년 실업률 추이(2000~2024년) ····· 432
표 Ⅳ-12-34.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2025년) ····· 433
표 Ⅳ-12-35.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2025년) ····· 435
표 Ⅳ-12-36.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 ····· 437
표 Ⅳ-12-37.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2012~2023년) ····· 439
표 Ⅳ-12-38. 주요 지검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2015~2023년) ····· 440
표 Ⅳ-12-39. 성폭력·성착취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 441
표 Ⅳ-12-40.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 442
표 Ⅳ-12-4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2017~2023년) ····· 443
표 Ⅳ-12-4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내용(2017~2023년) ···· 445
표 Ⅳ-12-43. 성매매 피해자 지원 현황(2015~2023년) ····· 446
표 Ⅳ-12-44.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2014~2023년) ····· 447
표 Ⅴ-3-1. 분석변수와 측정방식 ····· 462
표 Ⅴ-4-1. 잠재계층 수에 따른 모형 적합도 지표 ····· 464
표 Ⅴ-4-2. 잠재계층별 폭력 경험 확률 프로파일 ····· 464
표 Ⅴ-4-3. 잠재계층별 인구사회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 465
표 Ⅴ-4-4. 잠재계층별 학습권, 건강권 등과의 특성 비교 ····· 467
표 Ⅵ-2-1. NGO 간담회 개최 개요 ····· 478
표 Ⅵ-3-1. 클러스터별 주요 쟁점 ····· 480
표 Ⅶ-3-1.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정책제언 ····· 510
표 Ⅶ-3-2.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 ····· 514
표 Ⅶ-3-3. 국가 아동예산 통합·투명화 시스템 구축 과제의 추진사항 ····· 518
표 Ⅶ-3-4. 제3선택의정서(OPIC) 비준 및 이행 로드맵 수립 구축 과제의 추진사항 ····· 520
표 Ⅶ-3-5. 법조인 대상 아동권리 전문 교육 체계화 과제의 추진사항 ····· 522
표 Ⅶ-3-6. 차별받은 후 상담 또는 도움 받은 사람(2025년) ····· 523

표 Ⅶ-3-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실효성 강화 과제의 추진사항 ····· 524
표 Ⅶ-3-8.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 ····· 525
표 Ⅶ-3-9.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및 보호출산제 관리 강화 과제의 추진사항 ····· 526
표 Ⅶ-3-10. 아동학대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2024년) ····· 527
표 Ⅶ-3-1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 제도 도입 과제의 추진사항 ····· 528
표 Ⅶ-3-12.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2018~2024년) ····· 529
표 Ⅶ-3-13.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탈시설화 로드맵 이행 및 주거권 강화 과제의 추진사항 ····· 530
표 Ⅶ-3-14. 장애 아동 개별화지원계획(IEP) 실효성 제고 과제의 추진사항 ····· 532
표 Ⅶ-3-15. 자살위기 아동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과제의 추진사항 534
표 Ⅶ-3-16. 아동 다차원 빈곤지표 개발 및 국가 통계 반영 과제의 추진사항 ····· 535
표 Ⅶ-3-17. 기후 거버넌스 내 아동·청소년 참여 제도화 과제의 추진사항 ····· 537
표 Ⅶ-3-18. 학교와 지역사회 아동발달 관련 소음 민원 예외제도 도입 과제의 추진사항 ····· 539
표 Ⅶ-3-19.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2015~2023년) ····· 540
표 Ⅶ-3-20. 회복적 사법체계 국가 차원 도입 과제의 추진사항 ····· 541
표 Ⅶ-3-21. 사회정서학습(SEL) 의무 교육과정 도입 과제의 추진사항 ····· 545
표 Ⅶ-3-22. 위기 임산부 및 영아기 통합돌봄 강화 과제의 추진사항 ····· 547
표 Ⅶ-3-23. 포용적 무장애 학교환경 조성 과제의 추진사항 ····· 549
표 Ⅶ-3-24. 지역 간 놀이·여가 인프라 격차 해소 과제의 추진사항 ·· 551
표 Ⅶ-3-25.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 증진(D-CRIA 의무화) 과제의 추진사항 ····· 553
표 Ⅶ-3-26. 학교 내 기후위기 대응 시민교육 강화 과제의 추진사항 ····· 555
표 Ⅶ-3-27. 클러스터 및 생태체계 별 세부 정책과제 총괄표 ····· 557

그림 목차

그림 Ⅰ-2-1. 2025년 연구의 내용 및 주요 특징 ····· 5
그림 Ⅰ-3-1. 연구내용 및 방법에 관한 흐름도 종합 ····· 12
그림 Ⅰ-4-1. 이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산출물 ····· 13
그림 Ⅱ-1-1. 이 장의 주요 내용 ····· 18
그림 Ⅱ-2-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보고서 심의 절차 변경 내용 ····· 19
그림 Ⅱ-2-2. 기존 보고 절차(Traditional Reporting Procedure) ·· 22
그림 Ⅱ-2-3. 간소화된 보고 절차(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 도식도 ····· 22
그림 Ⅱ-2-4. 간소화된 보고 절차(SRP)의 심의 절차 ····· 24
그림 Ⅱ-2-5. 변경된 국가보고서 작성 클러스터 주요 내용 ····· 25
그림 Ⅲ-1-1. 이 장의 주요 내용 (프레임워크, 지표체계, 설문조사 방법 등) ····· 70
그림 Ⅲ-2-1. 이 보고서의 협약 이행 점검 프레임워크 ····· 71
그림 Ⅳ-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2013~2025년) ····· 99
그림 Ⅳ-2-2.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전체 영역(2013~2025년) ····· 100
그림 Ⅳ-2-3.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2013~2025년) ····· 101
그림 Ⅳ-2-4.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2013~2025년) ····· 102
그림 Ⅳ-2-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2013~2025년) ····· 103
그림 Ⅳ-2-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 104
그림 Ⅳ-2-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 (2014~2025년) ····· 105
그림 Ⅳ-2-8. 인권의식 및 태도_아동·청소년의 참여 관련 인식(2013~2025년) ····· 107
그림 Ⅳ-2-9. 인권의식 및 태도_차별 관련 인식(2013~2025년) ····· 110
그림 Ⅳ-2-10. 아동·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신의 권리 보장 정도(2025년) ····· 111
그림 Ⅳ-2-11. 인권교육 경험(2019~2025년) ····· 114
그림 Ⅳ-2-12.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2019~2025년) ····· 116
그림 Ⅳ-3-1. 차별 경험(2011~2025년) ····· 123

그림 Ⅳ-3-2.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의견 존중 정도, 2012~2025년) ····· 127
그림 Ⅳ-3-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2013~2025년) ··· 128
그림 Ⅳ-3-4.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2012~2025년) ·· 129
그림 Ⅳ-3-5.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2012~2025년) ····· 133
그림 Ⅳ-3-6.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2013~2025년) ····· 134
그림 Ⅳ-3-7. 아동·청소년 참여의 방해 요인(2013~2025년) ····· 136
그림 Ⅳ-4-1.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2012~2025년) ·· 141
그림 Ⅳ-4-2.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2019~2025년) ····· 142
그림 Ⅳ-4-3.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2013~2025년) ····· 143
그림 Ⅳ-4-4.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2012~2025년) ····· 144
그림 Ⅳ-4-5.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2014~2025년) ····· 145
그림 Ⅳ-4-6.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2011~2025년) ····· 147
그림 Ⅳ-4-7.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2012~2025년) ····· 149
그림 Ⅳ-5-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2011~2025년) ····· 164
그림 Ⅳ-5-2. 체벌 경험 여부_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2011~2025년) ····· 166
그림 Ⅳ-5-3.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2011~2025년) ····· 167
그림 Ⅳ-5-4. 체벌 경험 여부_교사로부터 신체적 벌(2011~2025년) ····· 169
그림 Ⅳ-5-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 여부(2011~2025년) ··· 173
그림 Ⅳ-5-6. 온라인 환경(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 여부(2013~2025년) ····· 177
그림 Ⅳ-5-7.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2011~2025년) ····· 179
그림 Ⅳ-5-8. 방임_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경험(2011~2025년) ····· 185
그림 Ⅳ-5-9. 방임_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2011~2025년) ····· 187
그림 Ⅳ-5-10. 방임_3)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2011~2025년) ····· 188
그림 Ⅳ-5-11. 방임_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2011~2025년) ····· 189
그림 Ⅳ-5-12. 방임_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2011~2025년) ····· 191

그림 Ⅳ-5-13.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 결과 (2018~2024년) ····· 194
그림 Ⅳ-6-1. 부모와의 관계만족도(13~19세) 연도별 추이 ····· 199
그림 Ⅳ-6-2. 다함께돌봄 이용자 만족도(2022~2023년) ····· 203
그림 Ⅳ-6-3. 연도별 국내·외 입양 아동 수(2015~2024년) ····· 206
그림 Ⅳ-6-4.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현황 추이(2015~2024년) ····· 208
그림 Ⅳ-6-5. 가출 여부: 학교급별(2011~2025년) ····· 213
그림 Ⅳ-6-6. 가출을 한 주된 이유(2011~2025년) ····· 217
그림 Ⅳ-6-7. 아동보호 업무 흐름도 ····· 225
그림 Ⅳ-7-1. 아동·청소년의 장애에 대한 인식(2025년) ····· 237
그림 Ⅳ-8-1.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범죄 유형별 건수, 성별 비율, 2024) ····· 249
그림 Ⅳ-8-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2013~2025년) ····· 252
그림 Ⅳ-8-3.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2013~2025년) ····· 252
그림 Ⅳ-8-4.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2011~2025년) ····· 264
그림 Ⅳ-8-5.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학교급별) ····· 265
그림 Ⅳ-8-6.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2011~2025년) ····· 266
그림 Ⅳ-8-7. 수면 시간(2011~2025년) ····· 268
그림 Ⅳ-8-8. 수면 부족 여부(2013~2025년) ····· 269
그림 Ⅳ-8-9. 성별, 학교급별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2025년) ··· 270
그림 Ⅳ-8-10. 비만도 현황(2021~2024년) ····· 273
그림 Ⅳ-8-11. 자살 생각 여부(2011~2025년) ····· 277
그림 Ⅳ-8-12. 인구 십만 명당 10~19세 자살률(2018~2024년) ··· 279
그림 Ⅳ-8-13. 우울감 척도의 항목별 응답 결과(2025년) ····· 281
그림 Ⅳ-8-14. 우울감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2013~2025년) ····· 283
그림 Ⅳ-8-15. 우울감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2013~2025년) ····· 284
그림 Ⅳ-8-16. 우울감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2013~2025년) ····· 285
그림 Ⅳ-8-17. 외로움 4개 문항 결과(2025년) ····· 286
그림 Ⅳ-8-18.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고립된 기간 응답(2025년) ····· 291

그림 Ⅳ-8-19. 자아존중감 항목별 조사결과(2025년) ····· 297
그림 Ⅳ-8-20.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2013~2025년) ····· 298
그림 Ⅳ-8-21.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3~2025년) ····· 299
그림 Ⅳ-8-22.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2013~2025년) ····· 300
그림 Ⅳ-8-23. 행복한 정도(2013~2025년) ····· 302
그림 Ⅳ-8-24. 학교급별 행복하지 않은 이유(2025년) ····· 303
그림 Ⅳ-10-1.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2025년) ·· 318
그림 Ⅳ-10-2. 디지털 환경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기업, 학교의 노력 인식(2025년) ····· 323
그림 Ⅳ-10-3.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침해 걱정 및 구제 방법 인지 여부(2025년) ····· 328
그림 Ⅳ-10-4.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관심 정도(2025년) ····· 333
그림 Ⅳ-11-1. 학업중단 생각 경험(2012~2025년) ····· 351
그림 Ⅳ-11-2.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2013~2025년) ····· 356
그림 Ⅳ-11-3.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2013~2025년) ····· 358
그림 Ⅳ-11-4. 나는 수업 시간이 재밌다(2020~2025년) ····· 359
그림 Ⅳ-11-5.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2013~2025년) ····· 361
그림 Ⅳ-11-6.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1) 공공도서관(2013~2025년) ····· 371
그림 Ⅳ-11-7.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2)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2013~2025년 ····· 373
그림 Ⅳ-11-8.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3) 체육시설(2013~2025년) ····· 375
그림 Ⅳ-11-9.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4) 문화 예술 공간(2013~2025년) ····· 377
그림 Ⅳ-11-10.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2013~2025년) ····· 378
그림 Ⅳ-11-11. 평일 여가시간(2012~2025년) ····· 383
그림 Ⅳ-11-12. 평일 학습 시간(2013~2025년) ····· 388
그림 Ⅳ-12-1.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1998~2024년) ···· 395
그림 Ⅳ-12-2.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 인지율과 이용률의 비교 (복수응답) ····· 409

그림 Ⅳ-12-3.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2011~2024년) ····· 411
그림 Ⅳ-12-4.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2015~2024년) ····· 430
그림 Ⅳ-12-5.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2013~2025년) ····· 434
그림 Ⅳ-12-6.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2011~2025년) ····· 436
그림 Ⅴ-4-1. 잠재집단 수 증가에 따른 모형 적합도 지표의 변화 (Elbow plot) ····· 463
그림 Ⅴ-4-2. 잠재집단별 학업중단, 자살, 자해, 외로움 경험률 비교 ··· 466
그림 Ⅵ-2-1. 본 연구의 NGO 의견 조사 및 쟁점 정리 주요 흐름 ··· 475
그림 Ⅵ-2-2. NGO 활동가 서면자문 서식 ····· 477
그림 Ⅵ-2-3. 클러스터별 주요 쟁점(11개 클러스터, 30개 쟁점) ···· 481
그림 Ⅷ-1-1. 이 장의 구성 ····· 504
그림 Ⅷ-1-2. 제언 도출 과정 흐름도 ····· 505
그림 Ⅷ-2-1.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한 챕터별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일부 결과) ····· 506
그림 Ⅷ-3-1. 정책제언의 두 가지 접근 방식 ····· 508
그림 Ⅷ-3-2. 클러스터 중심 제언 리스트 ····· 517
그림 Ⅷ-3-3. 인구 10만 명당 10~19세 자살률(2018~2024년) ···· 533
그림 Ⅷ-3-4.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관심 정도(2025년) ····· 536
그림 Ⅷ-3-5. 생태체계 중심 제언 리스트 ····· 542
그림 Ⅷ-3-6. 외로움 4개 문항 결과(2025년) ····· 543
그림 Ⅷ-3-7. 무장애 디자인을 적용한 학교 사례(서울서진학교) ····· 548
그림 Ⅷ-3-8.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 ····· 554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2025년 연구의 내용 및 주요 특징
3. 연구방법
4. 이 보고서의 구성

1 서 론[1)]

개요(Abstract)

본 보고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6년부터 매년 수행해 온 기초연구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와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 수준과 주요 변화를 종합 분석하였다. 다양한 자료를 결합하여 권리 영역별 수준을 평가하고, 시계열 추이를 제시하였다. 올해는 기존 지표 분석에 더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차 국가보고서의 간소화 심의절차(SRP)를 소개하고, 사전쟁점목록(LOIPR) 작성 방식을 적용하여 NGO들과 공동으로 작성하고 검토하였다. 또한 곧 발표될 일반논평 제27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국제적 흐름에 맞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유형화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심층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협약 이행 현황을 진단하고,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이 장은 유민상 선임연구위원, 이경상 선임연구위원, 서고운 연구위원이 공동 작성하였음.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준거 틀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기초연구로 학술 연구를 위해 기초데이터를 생산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으나,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인권 진전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정기적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유민상 외, 2024). 비준국은 협약이 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인권 진전 상황과 이행 노력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는 1996년 제1차, 2003년 제2차, 2011년 제3·4차, 2019년 제5·6차 등 협약 비준 이후 4차례에 걸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10월 대한민국 정부의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였고, 제7차 국가보고서 제출까지 중장기적인 협약이행 추진 및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이행을 점검해야 한다. 지난 심의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 12월 말까지 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심의가 밀려 있어 2026년 말까지는 신규 심의를 중단하는 중이다. 이후 제7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러 국가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 최종 견해를 보면, 오래된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새롭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도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21년 일반논평 제25호(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제26호(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환경과 아동권리)를 발표하는 등 새로운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주목하고 있으며, 국가보고서 심의를 통해 이러한 이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핀란드와 영국과 같은 국가의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불리한 특성을 가진 아동·청소년(취약성이 있는 여성 청소년, 망명 신청 아동 및 난민 아동, 저소득 가정 아동, 장애 아동 및 성소수자 아동–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 젠더, 간성애자 등)”에 대한 비차별 원칙의 적용 등을 강조하고 있어 절대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수준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제언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에 관한 제7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이후에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불리한 특성을 지닌 아동·청소년들 중에는 기본적인 통계조차 없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인권 문제와 새로운 인권 문제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표체계를 통한 시계열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 2025년 연구의 내용 및 주요 특징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6년부터 이어진 장기 연구로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와 국내 행정자료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지표를 통해 보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둘째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심층분석, 셋째는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이다. 이에 더하여 2025년 연구는 매년 진행되는 세 가지 축은 유지하고, 해당 내용에 몇 가지 차별점을 더했다. 기존의 세 가지 내용과 2025년에 추가된 세부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그림 Ⅰ-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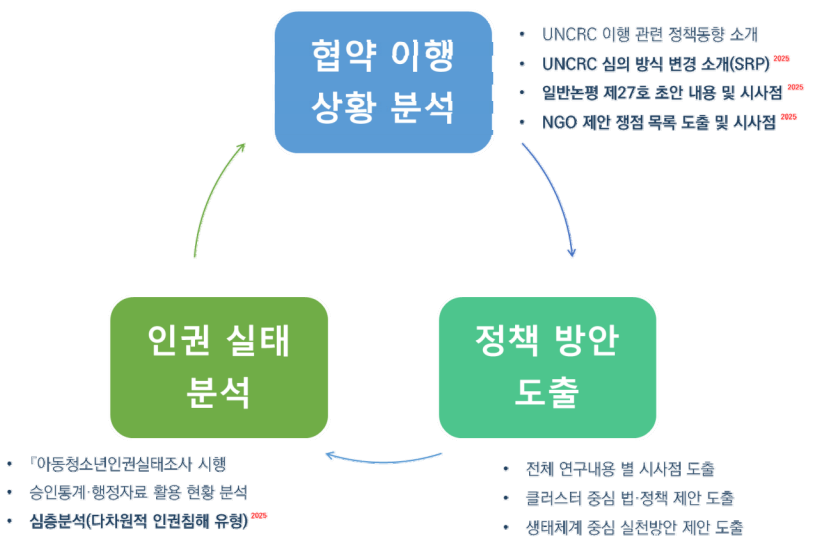


그림 Ⅰ-2-1. 2025년 연구의 내용 및 주요 특징

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분석 주요 내용

(1) 지표를 통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분석

이 연구에서 구성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기본틀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기준의 인권영역 구분을 따르고 있다(유민상 외, 2024). 이번 연구에서는 유엔의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변경에 발맞추어 기존의 9개 클러스터를 11개로 수정하고, 기존 지표체계를 일부 개편하였다. 클러스터는 기존 클러스터의 분화와 새로운 영역의 추가가 주요 내용인데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클러스터가 '장애아동', '건강', '생활수준'으로 분화되었고, '아동권리와 환경' 클러스터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제3장 프레임워크를 재편하고, 제4장 인권실태 파트를 세분화하였다.

인권실태에 활용되는 지표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총 지표는 120여 개이다. 자세한 지표체계와 조사방법, 지표 내용은 제3장 방법론 파트에 소개하였다.

(2)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시계열 제공(KOSIS)

본 보고서는 2006년부터 매년 출간이 되고 있고, 이 연구가 생산하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2009년부터 통계청 승인통계로 지정되어 국가데이터처(前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서비스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로의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각 지표별 수치 검색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매년 초 국가통계포털(KOSIS)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공표하고 있다.

올해 연구에서는 이용자 친화적으로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前 통계청) 및 통계정보원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2009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으나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의 자료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고 있어, 3년치 데이터를 입력하고 서비스 조정을 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는 별도의 과업이지만, 이 과업을 통해 2009년 당시의 인권지표를 더 쉽게 파악하고,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인권 변화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3) 다차원적 인권침해 유형 관련 심층분석

이 연구는 2023, 2024년에 걸쳐 청소년과 후기청소년 대상 면접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중첩된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침해'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질적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올해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에서 발견된 시사점들이 양적연구에서도 도출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양적분석방법을 통해 202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원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는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서의 인권침해의 유형은 무엇인가"였으며, 이를 위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4개 집단을 도출하였고, 각 유형에 따른 취약성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파편화된 지원체계가 통합적, 전문적 지원체계로 나아가야 하는 필요성과 조기 개입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분석 주요 내용

(1) UNCRC 이행 관련 국내 정책동향 소개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동향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공적 입양체계 개편',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성평등가족부(前 여성가족부)의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 분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2) UNCRC 국가보고서 심의 방식 변경(SRP) 내용 및 시사점

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 12월까지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국가보고서 심의 과부하로 2026년 말까지 신규 심의를 받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7년에 국가보고서 제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의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다. 하나는 큰 변화로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간소화된 보고 절차(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 SRP)로 변경된 후 처음 국가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자유권 규약 심의를 통해 간소

화된 보고 절차로 심의받은 바 있으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처음 적용받게 된다. 간소화된 절차(SRP)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정부에 사전쟁점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LOIPR)을 전달하여 특정 정보를 중심으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유엔아동권리워원회가 사전쟁점목록을 작성할 때 비정부기구(NGO)가 제기하는 쟁점이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이와 같은 변화는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변화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다른 변화는 국가보고서 작성 클러스터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아직 유엔 공식문서로 발간되지 않았으나 기존 9개 클러스터에서 11개 클러스터로 변경이 되었으며,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클러스터가 '장애', '건강', '생활수준'으로 분화되었고, '아동권리와 환경' 클러스터가 새롭게 추가되는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겼다. 특히 '건강' 클러스터에는 간성(intersex) 아동이 세부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어 성소수자 아동 혹은 LGBTQ+에 대한 비차별과 권리보장에 대한 주제가 중요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클러스터 변화는 본 연구의 인권 측정 프레임워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3) 일반논평 제27호 초안 내용 및 시사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을 발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적용과 이행에 관한 참고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올해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의에의 접근 및 효과적인 구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Draft general comment No. 27 on children's rights to access to justice and effective remedies)"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 일반논평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개인 청원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OPIC)와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정리하였다.

(4) NGO 제안 쟁점 목록 도출 및 시사점

국가보고서 심의 방식이 간소화된 보고 절차(SRP)로 변경됨에 따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작성하는 사전쟁점목록(LOIPR)이 매우 중요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30개의

쟁점을 선정하여 비준국 정부에 전달하는데, 이때 비정부기구(NGO)와 아동이 제출하는 보고서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영국 사례에서 비정부기구가 연대해서 작성한 보고서와 쟁점들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LOIPR에 상당 부분 반영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GO활동가들과 NGO가 제기한 쟁점을 30개 정리하여 목록을 만들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쟁점(빈곤, 폭력, 보호 등) 이외에 새로운 쟁점(성소수자, 디지털 환경, 기후변화 등)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향후 협약 이행 기반 마련,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 보장, 법률과 이행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대응 필요성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도출해 냈다. 이는 제7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부가 내실 있게 대응하고, 향후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세부적인 안이 마련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정책방안 도출 주요 내용

이와 같은 연구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 및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유민상 외, 2024). 하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의 정책제언이다. 이는 각 클러스터별 이슈를 체계화하여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법정책적 제안을 정리하였다. 다른 하나는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의 정책 제언으로 보다 실천적인 접근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당사자와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과 디지털 환경, 생태적 환경 등의 차원에서 현실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제언하였다.

3. 연구방법

연구 방법은 이와 같은 연구 문제와 연구내용을 토대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질적연구(문헌연구, 간담회)와 양적연구(설문 데이터 분석, 심층연구)로 구분된다. 질적연구는 UNCRC 문헌에 관한 연구, NGO 간담회가 포함되고, 양적연구는 인권실태조사 설문 분석과 2차 데이터 분석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본 연구는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고, 여러 부처와 연구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헌연구

이 연구에서 진행한 문헌 연구는 국내외 정책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유엔의 OHCHR DB, Child Rights Connect 웹사이트를 통해 우리나라와 각 국가의 심의절차 기록을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간소화된 심의 절차(SRP)를 파악하고, 영국 심의에서 이루어진 간소화된 심의절차 살펴보고 제6장 NGO 쟁점보고서 작성에 참고하였다. 또한, 아동의 사법 접근권 및 효과적인 구제 수단에 관한 일반논평 27호 초안 내용을 정리하였다.

2) 실증분석 (설문조사 분석 및 2차 자료 심층분석)

이 연구의 양적연구 방법은 설문조사 분석과 2차 자료 심층분석 등이다. 조사 방법과 분석방법은 제3장(설문조사 방법), 제5장(심층분석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내용을 소개한다.

표 Ⅰ-3-1. 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비고
조사모집단	전국의 초(4~6학년), 중(1~3학년), 고(1~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표집틀	2024년 교육통계연보	
표본수	목표 표본수 9,000명 → 8,764명 최종 조사완료(목표치의 97.4%)	
표집방법	층화다단계집락표집(권역별, 학교, 학년, 성별 등)	학교 조사
조사시기	2025년 5~7월	
조사방법	학교방문 집단면접조사 및 우편조사 병행(자기기입식 응답)	종이 설문
조사주기	1년	
비고	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202504-HR-고유-006)	

먼저 설문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제주도 포함)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들을 조사 모집단으로 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를 시행하였다. 2025년 조사는 일부 변경 문항에 대한 국가데이터처(前 통계청)의 변경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202504-HR-고유-006)을 거쳤다.

다음으로 심층분석은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은 변수중심적 접근이 아닌 사람중심적 접근으로 다차원적 인권침해의 유형을 분석하는데 적절하다. 이 연구에서는 2024년에 공개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다차원적 인권침해의 유형과 유형별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3) NGO 활동가 서면조사 및 간담회 개최

이 연구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쟁점 도출을 위하여 NGO 서면조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일종의 질적연구 방법이지만 서면조사와 간담회의 목적은 30개의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있었다. 총 17개 NGO의 23명의 활동가에게 3개 이내의 이슈를 서면 자문을 통해 제안받고, 간담회를 통해 쟁점들에 관한 상호 논의하여 30개 쟁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전문가 자문과 NGO 활동가 확인을 거쳐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4) 전문가 자문 및 유관부처 협의(정책연구실무협의회)

이 연구는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법률 전문가,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및 제도 전문가, 아동·청소년 인권 및 삶의 질 전문가, 통계 지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받았다.

연구의 정책화 노력을 위하여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여 함께 논의하고, 중앙부처, 위원회 등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도 개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에 참여하여 비준 방안 및 향후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부처는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와 가정, 학교, 가정밖 보호체계에서의 변화 관련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가데이터처(前 통계청)와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시계열 데이터 구축(2009~2025) 및 제시 방안 관련하여 협의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의 내용과 연구 방법을 함께 제시하여 연구의 흐름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 내용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기보다는 연구 과정에서 순환하며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의 방향을 점검하고 내실 있는 연구로 완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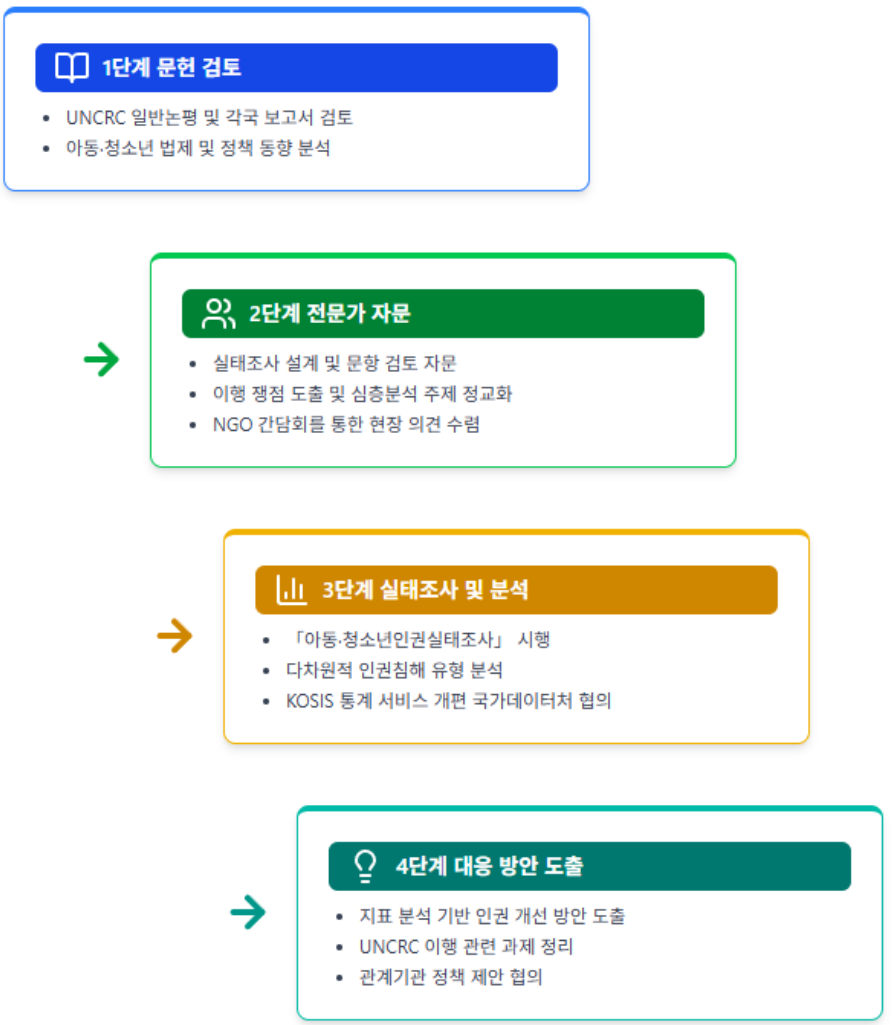


그림 Ⅰ-3-1. 연구내용 및 방법에 관한 흐름도 종합

4. 이 보고서의 구성

이 보고서는 방대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연구에서는 독자들이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사한 내용을 각 부로 묶고, 보고서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Ⅰ-4-1. 이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 산출물

지금까지 이 연구의 개요, 내용, 방법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둘러싼 국내외의 정책적 흐름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본다.

제2장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 동향

1. 이 장의 구성과 흐름
2.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정기 심의 변화
3.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7호의 내용과 시사점
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국내 아동·청소년 정책 동향

2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 동향[2)]

개요(Abstract)

이 장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의 국내외 동향을 분석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심의 과정이 간소화된 보고 절차(SRP)로 변경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제7차 국가보고서 심의 준비에도 변화가 생겼다. 이 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30개 쟁점을 선정하여 정부에 질의하는 사전쟁점목록(LOIPR)의 의미와 시사점, 클러스터 변화의 내용에 대해 정리한다. 또한, 아동의 정의 접근권과 회복절차에 대해 다루는 제27호 일반논평(CRC/C/GC/27) 초안(draft)이 마련되어 이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일반논평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OPIC)와 함께 아동·청소년들의 사법 절차에서의 참여, 권리구제, 회복을 위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2) 이 장의 1절은 유민상 선임연구위원, 2절은 유설희 부연구위원(아동권리보장원)과 유민상 선임연구위원, 3절은 장민영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4절은 유민상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1. 이 장의 구성과 흐름

이 장에서는 국내외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 동향을 정리하였고, 크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첫째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정기 심의 관련 동향, 둘째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7호 초안 분석, 셋째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국내 정책 동향이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둔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대비해야 할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 장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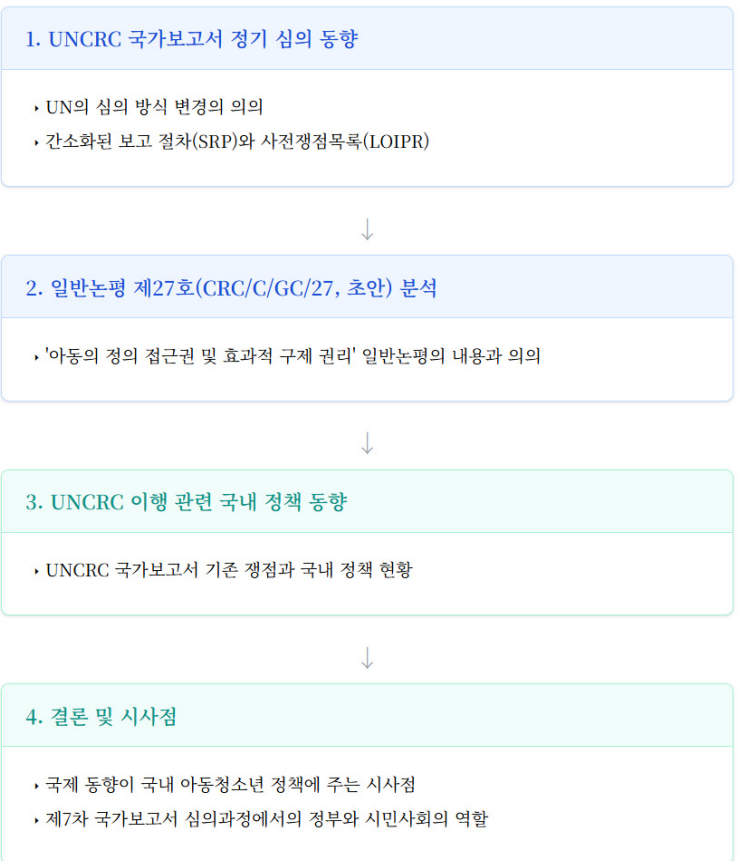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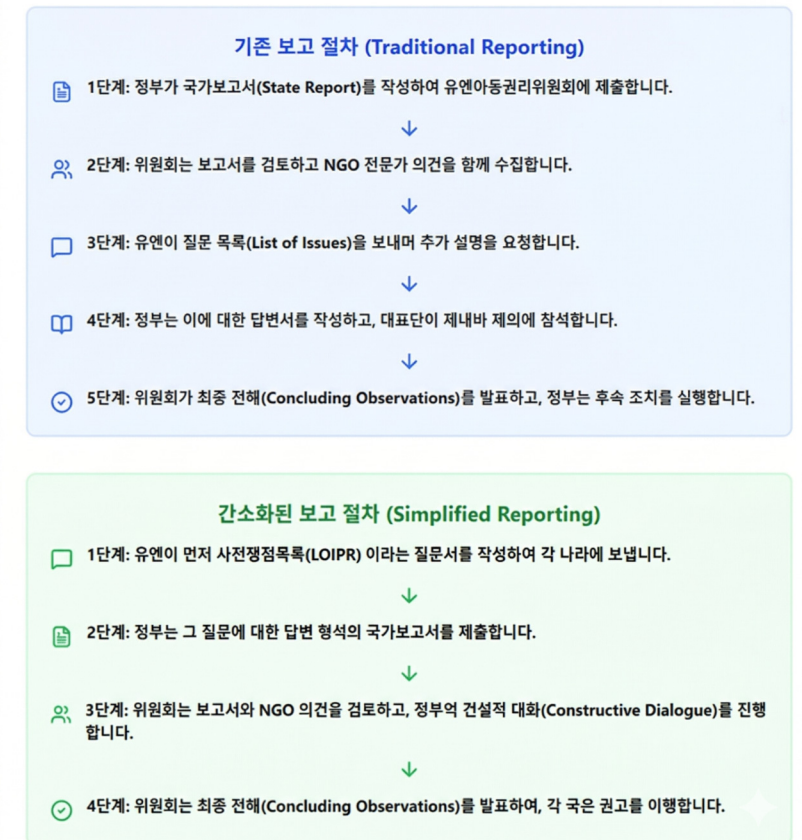


그림 II-1-1. 이 장의 주요 내용

2.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정기 심의 변화: 간소화된 보고 절차(SRP)

이 장의 내용에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기존 보고 절차와 간소화된 보고 절차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이다. 아래 그림은 기존 보고 절차와 간소화된 보고 절차를 비교해서 보여준다. 간소화된 보고절차에서는 국가보고서 제출이 출발점이 아니다. NGO, 시민사회,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사전쟁점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LOIPR)을 채택하고 비준국에 보내는 것부터 절차가 시작되도록 바뀌었다.



* 출처: Child Rights Connect(2024).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NEW – Dialogue Structure. creporting.childrightsconnect.org/wp-content/uploads/2024/06/CRC-new-dialogue-structure-
* 비고: Child Rights Connect의 도식을 재구조화 하였음

그림 II-2-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보고서 심의 절차 변경 내용

절차는 '간소화(simplified)'되었으나, 심의 자체가 가벼워진 것은 아니다. 정부의 국가보고서 제출 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30개의 쟁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심의가 가벼워질 수도, 더 무겁고 날카로워질 수도 있다. 30개가 핵심적인 쟁점과 날카로운 질문으로 구성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의 참여에 달려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30개의 쟁점을 선정할 때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쟁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의미 있는 쟁점(issue)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 절차를 얼마나 이해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심의 과정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는 각자의 영역에서 이러한 과정을 잘 이해하고 충실히 대비해야 한다.

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분석

(1)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이력 및 절차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하였다. 이후 유엔 총회에서 2000년에 채택된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OPAC)'와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PSC)'에 대해 우리나라는 2004년 9월 24일에 모두 비준하였다. 다만, 아동의 권리침해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을 때, 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이 직접 청원할 수 있는 개인청원권을 보장하는 '통보 절차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가 유엔총회에서 2011년 12월 19일에 채택되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비준을 유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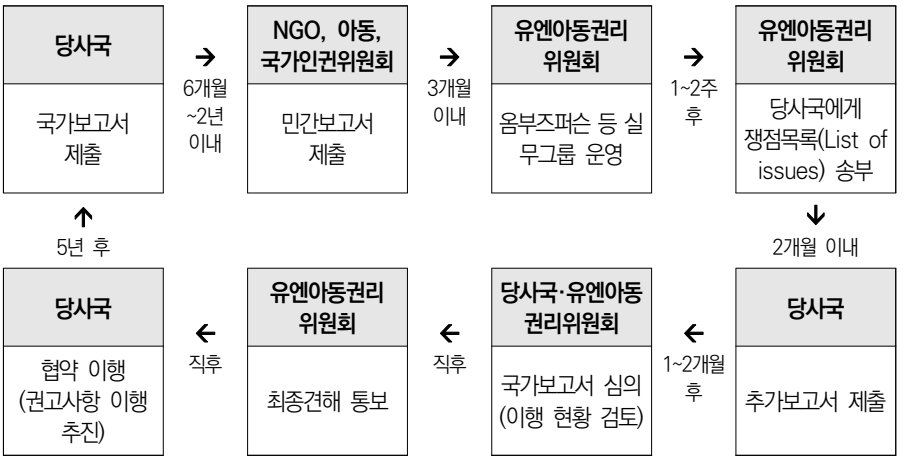
동 협약 제44조에 따라 협약에 비준한 당사국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행한 조치와 아동 권리 증진에 관한 진전상황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약을 발효한 후 2년 이내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5년마다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국가보고서 및 민간보고서와 아동보고서를 함께 검토한 후, 우려 사항과 권고를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의 형태로 당사국에 전달한다.

간소화된 보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2014년에 채택된 유엔총회의 인권 조약기구 체계의 효과적인 기능 강화를 위한 결의안(A/RES/68/268)을 통해 국가보고서 작성 및 협약 이행에 대해 더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촉진하고자 인권 조약기구와 당사국이 간소화된 보고 절차를 포함한 다양한 보고 절차의 간소화 방안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이에 당사국은 위원회에 별도 보고서 및 쟁점 목록에 대한 서면 답변을 모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위원회에서 최대 30개 내외 질문으로 구성된 사전쟁점목록(LOIPR)을 송부한 이후, 이에 대한 당사국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국가보고서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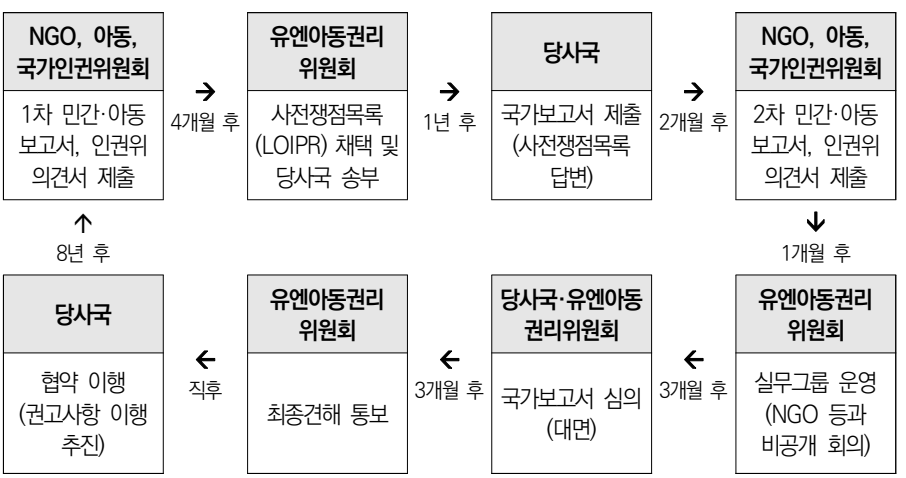
간소화된 보고 절차는 당사국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기점으로 하였던 기존 보고 절차와는 달리 민간 및 아동보고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위원회가 국가에 전달한 사전쟁점목록을 위주로 하여 당사국의 답변이 작성·제출된다는 점에서 아동당사자 및 민간단체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또한, 주요 쟁점목록 위주로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가 이루어지므로, 국가는 보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위원회와 당사국 간 심의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 위주로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고 절차를 각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보고 절차(Traditional Reporting Procedure)에서는 협약 당사국이 5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민간 및 아동당사자가 민간보고서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이때, 위원회는 아동당사자 및 NGO, 옴부즈퍼슨 등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한 후, 당사국에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목록을 송부하고, 당사국은 이에 대해 추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당사국의 입장을 전달한다.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b).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상황 분석연구. p.30의 표를 일부 재구성함.

그림 II-2-2. 기존 보고 절차(Traditional Reporting Procedure)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b).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상황 분석연구. p.31의 표를 일부 재구성함.

그림 II-2-3. 간소화된 보고 절차(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 도식도

이후 당사국은 국가보고서 심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심의회에 참석하고, 협약 이행현황 및 당사국의 노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심의가 종료된 후, 위원회에서는 당사국에 최종견해를 통보하고, 당사국은 위원회의 이를 다음 국가보고서 제출 전까지의 기간 동안 권고사항을 이행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간소화된 보고 절차(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에서는 NGO 및 아동당사자,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단체 등의 이해당사자들이 위원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전쟁점목록을 채택한 후 당사국에 전달한다. 이에 당사국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NGO 및 아동당사자 등의 이해관계자는 당사국의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추가보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위원회는 실무그룹을 운영하여 NGO 등과 논의를 통해 심의를 준비한다. 3개월 후, 위원회와 당사국은 심의회를 통해 협약 이행 및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위원회와 논의하고, 이후 위원회는 최종 견해를 통보하며 당사국은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

간소화된 보고 절차에서 사전쟁점목록 작성 및 채택과 관련한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사전쟁점목록을 작성하고 채택하는 데 있어, 3개월 전에 NGO나 아동당사자 조직, 국가인권위원회, 학계 및 연구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이해관계자는 서면 보고서 제출(아동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소통 방식 허용 및 분량 제한 없음)을 해야 하며, 당사국은 사전쟁점목록 채택일로부터 1년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 국가보고서가 접수된 이후,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나 대체 보고서, 건설적인 대화를 위한 질의, 당사국에 대한 질의 및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작업 그룹(pre-sessional working group)[3]이 개최되는 1개월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아동 당사자나 선정된 이해당사자 등을 초청하여 사전 심의 작업 그룹에 참여시켜 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에 위원회와 당사국간 건설적 대화는 제네바 현장에 직접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온라인 중계를 통해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3) 기존 보고 절차의 경우, 사전 심의 작업 그룹은 본 심의 6개월 전에 열리나 간소화된 보고 절차에서는 3개월 전에 개최됨.



* 출처: 유엔인권사무소 웹사이트(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rc/reporting-guidelines)에 탑재된 Information note for stakeholders의 그림을 번역하고, 도식화하였음

그림 II-2-4. 간소화된 보고 절차(SRP)의 심의 절차

①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클러스터 변경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 작성 클러스터와 세부 주제를 일부 수정하였다. 생활 수준(standard of living)과 아동 권리 및 환경(children's rights and the environment) 클러스터가 신설되고,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관련 내용이 클러스터 주제로 통합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11개 클러스터의 내용과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Child Rights Connect, 2024).

이에 정부는 제7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비하여 기후 변화를 포함한 환경과 관련한 협약 이행 상황에 관한 점검과 더불어, 향후 지속적인 이행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출처: Child Rights Connect의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NEW – Dialogue Structure" https://crcreporting.childrightsconnect.org/wp-content/uploads/2024/06/CRC-new-dialogue-structure-EN.pdf 자료를 번역하고 도식화하였음.

그림 II-2-5. 변경된 국가보고서 작성 클러스터 주요 내용

(2)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보고서 심의별 주요 쟁점 및 권고사항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총 4차례의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았다. 1996년(제1차), 2003년(제2차), 2011년(제3·4차 통합), 2019년(제5·6차 통합)에 걸쳐 총 4번의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았다(표 Ⅱ-1 참조). 제7차 심의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까지 제7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2023년 2월 2일에 개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2695차 회의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하는 정기보고서 및 아동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른 보고서에 대해 간소화된 보고 절차(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우리나라도 간소화된 보고 절차를 수용함에 따라 제7차 국가보고서의 제출 시기 및 심의 일정도 대폭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Ⅱ-2-1.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이력

	국가보고서 제출	민간보고서 제출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 통보	비고
제1차 국가보고서	1994년 11월 제1차 국가보고서(CRC) 제출	1995년 7월 제1차 민간보고서(CRC) 제출	1996년 1월 제1차 국가보고서(CRC) 심의	1996년 2월 최종견해(CRC) 통보	
제2차 국가보고서	2000년 5월 제2차 국가보고서(CRC) 제출	2002년 6월 제2차 민간보고서(CRC) 제출	2003년 1월 제2차 국가보고서(CRC) 심의	2003년 3월 최종견해(CRC) 통보	
선택의정서	2007년 4월 국가보고서(OPAC, OPSC) 제출	2007년 10월 민간보고서(OPAC, OPSC) 제출	2008년 6월 국가보고서(OPAC, OPSC) 심의	2008년 6월 최종견해(OPAC, OPSC) 통보	
제3·4차 국가보고서	2009년 5월 제3·4차 국가보고서(CRC, OPAC, OPSC) 제출	2010년 12월 제3·4차 민간·아동보고서(CRC, OPAC, OPSC) 제출	2011년 9월 제3·4차 국가보고서(CRC, OPAC, OPSC) 심의	2012년 2월 최종견해(CRC, OPAC, OPSC) 통보	· 부모면접교섭권(협약 제9조 3항) 유보 철회 · 아동보고서 최초 제출
제5·6차 국가보고서	2017년 12월 제5·6차 국가보고서(CRC, OPAC, OPSC) 제출	2018년 11월 제5·6차 민간·아동보고서(CRC, OPAC, OPSC) 제출	2019년 9월 제5·6차 국가보고서(CRC, OPAC, OPSC) 심의	2019년 10월 최종견해(CRC, OPAC, OPSC) 통보	· 입양허가제(협약 제21조 가항) 유보 철회

* 출처: 유엔 조약기구 데이터베이스(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Countries.aspx)에 제시된 아동권리협약 관련 국가 및 민간보고서 제출, 심의 일정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표로 재구성함.

이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국가보고서 및 민간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심의 결과에 따른 아동권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최종 견해를 정리하여 각 심의별 주요 쟁점과 권고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2-2.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별 주요 쟁점 및 권고사항

	주요 쟁점 및 권고사항
제1차 국가보고서	• 아동 학대 및 가정 폭력에 대한 예방 정책과 적절한 신고 메커니즘의 부족 우려 • 아동 유기와 아동이 가장인 가구(소년·소녀가장)의 높은 비율에 대한 우려 • 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 교육적 수단으로 인식되는 체벌의 지속에 대한 우려 •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확히 금지하는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제2차 국가보고서	• 체벌 금지, 아동 참여 증진, 차별 철폐 등 이전 권고사항의 이행 부족에 대한 유감 표명 • 가정폭력처벌특례법(1997년) 및 청소년보호법(2000년)의 제정에 대한 환영 •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환영 • 최소 고용 연령과 최악인 형태의 아동 노동에 관한 ILO 협약 제138호 및 제182호의 비준에 대한 환영
제3·4차 국가보고서	• 입양특례법 및 민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자살예방법 제정 등에 대한 환영 •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미혼모 자녀 등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 촉구 •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권고 • 모든 환경에서의 체벌을 명확히 금지하는 법적 조치 촉구
제5·6차 국가보고서	• 난민법(2012년) 및 아동학대처벌법(2014년) 제정, 아동수당 도입(2018년),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2019년) 등에 대한 환영 • 아동 관련 예산이 GDP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여 예산 확대 권고 • 경제적 취약 아동, 장애아동, 이주아동 등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 촉구 • 아동의 높은 자살률에 대한 우려 표명과 예방 조치 강화 권고 •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확히 금지하는 법적 조치 촉구 • 형사책임연령을 14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 •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아동의 의견 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아동의 놀이권 보장 등을 권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국가보고서 심의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의 인권 상황을 진단하고, 국내 아동과 관련된 법률 및 정책, 제도 등의 방향성을 마련하고 확립하는 데 있어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며, 실질적으로도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구체화하는 데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체벌에 대한 전면 금지와 아동의 참여권 보장 등은 위원회에서 반복하여 지적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이행 수준과 노력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수행하며, 적극적인 후속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3.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7호의 내용과 시사점: 아동의 정의에의 접근 및 효과적인 구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7호(안)[4],[5]

2025년 3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아동권리협약" 또는 "CRC")과 관련하여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이하 "일반논평" 또는 "GC") 제27호 초안을 발표하였다. 아동의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7호 초안(Draft General Comment No. 27 on Children's Right to Access to Justice and to an Effective Remedy)[6]은 '정의에의 접근(access to justice)'의 의미를 형사법을 위반한 아동 등의 사법접근권을 뜻하는 아동사법제도(children justice system)에 한정하지 않고 권리를 침해받은 아동 또는 목격자 등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공적 또는 사적 절차에 접근하여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확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논평 제27호(안)은 아동권리협약이 명시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지만 아동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구제권(right to effective remedy)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일반논평 제27호(안)의 채택 배경과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 앞서 일반논평 제27호 초안에서 의미하는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 권리의 의미를 파악하고 일반논평 제27호(안)이 제시하고 있는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기준 및 방안들을 충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향후 국내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법 및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여 본다.

4) 이 절은 장민영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작성하였음.

5) 다음의 컨셉노트 내용을 요약정리 하였음: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23).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ept Note: General Comment on Children's Rights to Access to Justice and Effective Remedies. https://defenceforchildren.org/wp-content/uploads/2024/04/2023-01-31-gc27-concept-note.pdf 에서 2025년 5월 23일 인출.

6)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Draft of General Comment No. 27 on Children's Right to Access to Justice and to an Effective Remedy, available at https://view.officeapps.live.com/op/view.aspx?src=https%3A%2F%2Fwww.ohchr.org%2Fsites%2Fdefault%2Ffiles%2Fdocuments%2Fhrbodies%2Fcrc%2Fcfi-gc27%2Fcrc-gc27-public-consultation.docx&wdOrigin=BROWSELINK.에서 2025년 9월 1일 인출.

1) 정의에의 접근의 의미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7호 초안은 그 제목에서부터 정의에의 접근권(right to access to justi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병렬적으로 '및 구제권'(right to a effective remedy)을 함께 적시하고 있다.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권은 국내외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다. 그뿐만 아니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반논평 제27호(안)에서의 그 의미도 다소 구분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의에의 접근권의 의미에 대하여 우선 고찰할 필요가 있다.

국내 논의에서 'right to access to justice'의 경우 통상 사법(司法) 접근권으로 번역 및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관념은 종래 'access to justice'가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국가의 공식적인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을 뜻하는 'access to judicial system' 즉, 사법제도(또는 서비스)에의 접근으로 통상 인식되었던 것에 기반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형사법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유로 기소 또는 구금되는 경우 인권 규범과 헌법 등에 의해 보장되는 형사사법제도(justice system)에의 권리 보장이 사법 접근권의 핵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의미의 사법 접근권은 1970년대 후반 국제적으로 사법 접근 운동(Access to Justice Movement)이 촉발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 사법 접근 운동은 권리 구제 및 재판을 모든 사람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및 제도를 개선하자는 움직임이었다(김상철, 2017).[7] 이의 일환으로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 'access to justice'를 종래의 사법기관에 의한 재판 외에도 비사법적 경로를 통한 권리 구제까지를 폭넓게 확장하여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다(Galanter, 2010).[8]

'access to justice'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전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의들에서는 여전히 'access to justice'를 종래 사법기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와 같은 협의로 이해 내지 접근되는 경우가 많다.[9] 이와 같은 개념 및 범위의 차이를 감안하여 'access to justice'를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 구제인 협의의 사법 접근과 비사법기관에

7) 김상철 (2017).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17), 1-713. 의 50쪽 참조.

8) Galanter, M. (2010). Access to justice in a world of expanding social capability. Fordham Urb. LJ, 37, 115.

9) 예를 들면, 오진숙 "가정법원에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 법조 71.1 pp.37-65 (2022) 41-42쪽 참조; 임성민 등, 고령자의 사법접근권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25. 7.) 63쪽 참조 등.

의한 권리 구제를 망라하는 광의의 사법 접근으로 구분하여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access to justice'가 여전히 '사법' 접근(권)으로 번역되면 사법기관 내지 국가의 사법 절차로 한정되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더 나아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7호 초안은 'access to justice'를 사법기관에 의한 재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비사법적 방식을 통한 권리 구제 모두를 포괄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7호(안)의 경우 포괄적 견지에서 'access to justice'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 및 이행 지침을 제공하는 UN 인권규범체계 최초의 일반논평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10] 'access to justice'를 정의에의 접근(권) 내지 정의 접근(권)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2) 일반논평 제27호(안)의 작성 배경

(1) 인권규범체계에서의 정의 접근권 및 구제권

좁은 의미에서의 정의에의 접근, 즉, 사법 접근권은 보편적 인권규범체계의 출발부터 명문으로 규율되어 왔다. 국제인권규범에서 사법 접근권은 구제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형식으로 보장되어 왔다. 우선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이하 "세계인권선언" 또는 "UDHR")[11] 제8조는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권한을 가진 국내 법원에 의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12]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11조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 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13]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10) 보편적 인권규범 관련하여 조약 기반 위원회가 발간하는 일반논평 내지 일반권고 중에서 'access to justice'를 주제로 다루는 것은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7호 초안 이외에도 여성차별철폐협약 일반권고 제33호가 있다. 다만, 해당 일반권고는 'access to justice'의 개념 및 범위를 사법적 및 준사법적 기관 또는 기구에의 접근으로 한정하고 있다. *Se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General recommendation No. 33 on women's access to justice, CEDAW/C/GC/33 para. 4, 3 August 2015, https://docstore.ohchr.org/SelfServices/FilesHandler.ashx?enc=jr3IfOlLHldtV3dlSoDoEFvtQO%2Fz75z2Am0RHRGlERlhVhhYEi5UY%2BumOFKi9q%2BOkyRokJx3S0D6rQYYab1OLA%3D%3. (last visit is on Sep. 1, 2025)

11) UN General Assembly,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17 A (III), 10 December 1948, https://www.refworld.org/legal/resolution/unga/1948/en/11563. (last visit is on Sep. 1, 2025)

12) Art. 8 of the UDHR.

13) Art. 10 of the UDHR.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규약" 또는 "ICCPR")[14] 역시 구제권 및 재판청구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2조는 국가의 권리 보장 의무를 명문화하면서 특히 제3항 (a)를 통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 집행 중인 사람에 의하여 자행되었을지라도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받도록 보장"[15]할 체약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또한 자유권규약 제9조는 자유권 및 신체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5항에서는 "불법적인 체포 또는 구금 피해자는 누구든지 집행 가능한 배상청구권"[16]을 보유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협약 제14조는 법 앞의 평등을 규율하면서 특히, 제6항을 통해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았고, 추후에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로 인해 오심이 있었음이 결정적으로 입증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사면을 받았을 경우, 유죄판결의 결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적시에 공개되지 않은 점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7]고 정하고 있다.

비록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규약" 또는 "ICESCR")[18]의 경우 구제권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석을 통해 구제권을 도출하고 있다. 해당 협약은 자유권규약에서와 같이 제2조에서 협약에 따른 자유 또는 권리를 보장할 체약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 일환으로 자유권규약이 자유 또는 권리침해 시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취할 의무도 함께 규율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권규약의 경우 구제권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은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가 의무의 성격에 관한 일반논평 제3호[19]를 통해 체약국은 협약상 자유

14) UN General Assembly,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999, p. 171, 16 December 1966, https://www.refworld.org/legal/agreements/unga/1966/en/17703. (last visit is on Sep. 1, 2025)
15) Art. 2(3)(a) of the ICCPR.
16) Art. 9(5) of the ICCPR.
17) Art. 14(6) of the ICCPR.
18) UN General Assembly,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993, p. 3, 16 December 1966, https://www.refworld.org/legal/agreements/unga/1966/en/33423. (last visit is on Sep. 1, 2025)
19)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General Comment No. 3: The Nature of States Parties' Obligations (Art. 2, Para. 1, of the Covenant), E/1991/23,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14 December 1990, https://www.refworld.org/legal/general/cescr/1990/en/129827. (last visit is on Sep. 1, 2025)

또는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서 사법적 구제 절차를 구축·운영할 것을 강조하면서[20] 사회권 실현과 구제권의 불가분의 관계를 분명히 하였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의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 또는 "CERD")[21] 역시 "체약국은 권한 있는 국가법원 및 기타 기관을 통하여 본 협약에 반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인종차별행위로부터 만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며, 또한 그러한 차별의 결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또는 변제를 구하는 권리를 만인에게 보증한다"[22]라고 정하면서 구제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 또는 "CEDAW")[23]는 제2조에서 해당 조약이 정하고 있는 자유 및 권리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율하면서 특히, "남녀 평등의 원칙이 헌법 또는 기타 적절한 입법에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구현하며 법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동 원칙의 실제적 실현을 확보할 것"[24]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고문 및 그 밖의 잔인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에 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하 "고문방지협약" 또는 "CAT")[25]은 제14조를 통해 구제권을 보장하는데 특히, 동조 제1항은 "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법체계 안에서 고문 행위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또한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 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고문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부양가족이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26]라고 명시하고 있다.

---

20) *See id.* at para. 5.
21) UN General Assembly,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660, p. 195, 21 December 1965, https://www.refworld.org/legal/agreements/unga/1965/en/13974. (last visit is on Sep. 1, 2025)
22) Art. 6 of the CERD.
23) UN General Assembly,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249, p. 13, 18 December 1979, https://www.refworld.org/legal/agreements/unga/1979/en/13757. (last visit is on Sep. 1, 2025)
24) Art. 2(1) of the CEDAW.
25) UN General Assembly,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465, p. 85, 10 December 1984, https://www.refworld.org/legal/agreements/unga/1984/en/13941. (last visit is on Sep. 1, 2025)
26) Art. 14(1) of the CAT.

이에 반해, 포괄적 의미에서의 정의에의 접근(access to justice)은 오래된 논의에도 불구하고 인권 조약에 명문화된 것은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장애인권리협약" 또는 "CRPD")[27]이 최초이다. 2006년 12월 13일 채택되어 2008년 5월 3일부터 발효된 장애인권리협약은 제13조를 통해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을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권리"[28]로 규정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을 장려"[29]할 체약국의 의무를 함께 두고 있다.

다만,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가 정하는 정의에의 개념 역시 현재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되고 있다. 2017년 UN 인권고등판무관이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30]에 따르면 "인권 규범들과 그 이행감시기구들이 주로 제시해 온 공정한 재판과 효과적인 구제라는 개념을 넘어, 이 권리를 확장하고 있다"[31]라는 전제하에 동조의 정의에의 접근은 "법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법 앞의 평등을 포함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권리 침해에 대한 공정하고 시의적절한 구제를 추구하고 획득할 권리"[32]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의에의 접근은 "공식적인 사법 제도와 기타 준사법적 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적용되는 규정들, 특히 차별금지와 참여와 관련된 규정은 종교적·관습적·토착적·지역적 사법 제도와 같은 전통적 사법 제도"[33]에도 확장되고 있다.

한편, 장애인권리협약 보다 약 10년 후인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지속가능목표" 또는 "SDG")은 'access to justice'를 명시하고 있다. 평화, 정의 및 제도 구축을 천명하는 SDG 16은 그 세부 목표로

27) UN General Assembly,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S/61/106, Annex I, 13 December 2006, https://www.refworld.org/legal/agreements/unga/2006/en/90142. (last visit is on Sep. 1, 2025)
28) Art. 13(1) of the CRPD.
29) Art. 13(2) of the CRPD.
30) UN GA, Right to Access Justice under Article 13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 Doc. A/HRC/37/25, (Dec. 27, 2017).
31) *See id.* at para. 5.
32) *See id.* at para. 3.
33) *See id.* at para. 8.

"국내 및 국제적인 수준에서 법의 지배를 증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34]을 제안하고 있다. UN은 SDG 이행을 위한 지표 설정 및 통계자료의 객관화 측면에서 정의에의 접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정의에의 접근은 종래의 의미보다 확장된 것으로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방어하고 집행하며,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법적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 받을 수 있는 능력, 필요하다면 공정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사법기관과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 보장되는 것"[35]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보편적 인권규범체계에서는 점차 정의에의 접근을 광범위한 것으로 접근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부터 형사사법제도을 포함한 사법 접근권은 물론 비공식적 절차에 의한 구제권 등을 포괄하는 관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인권조약은 '살아있는 문서(living instrument)'로서 해당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 내지 규정에 대한 "해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한다"[36]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견지와 같이 정의에의 접근 역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논의의 범주가 발전하여 왔다. 정의에의 접근은 전술한 바와 같이 종래 "법률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시작하였으나 점차 사법 제도 내 구조적 불평등, 비공식적 정의(informal justice)와 분쟁 발생 및 격화의 예방, 그리고 사법 제도와 관련된 비용을 줄이기 위한 효율성과 경쟁"[37]으로 개념 및 범위가 확장되었다 (Sage-Jacobson, 2015).

(2) 아동권리협약과 정의 접근권 및 구제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인권 조약에서는 해당 조약이 정하고 있는 자유 또는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자유 또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권리협약이 보편적 인권규

34) UN,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3, XIX (2023).

35) Praia Group, Handbook on Governance Statistics, 100 (2020). 해당 보고서는 SDG 이행 촉진 차원에서 거버넌스 관련 분야 지표 설정 및 회원국의 통계 작성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UN 통계이사회(UN Statistical Commission)의 감독 하에 Praia Group이 작성 및 발간한 것이며, 통계 작성 기준 관련하여 SDG 세부목표에 대한 개념 및 범위를 설명하는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

36)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General comment No. 8 (2006): The Right of the Child to Protection from Corporal Punishment and Other Cruel or Degrading Forms of Punishment (Arts. 19; 28, Para. 2; and 37, inter alia), CRC/C/GC/8, 2 March 2007, https://www.refworld.org/legal/general/crc/2007/en/41020. (last visit is on Sep. 1, 2025)

37) Sage-Jacobson, S. (2015). Access to justice for older people in Australia. Law Context: A Socio-Legal J., 33, 142.

범체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채택·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권이나 포괄적 의미에서의 정의 접근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아동권리협약의 경우 사법 접근권 차원에서의 사항들은 정하고 있는데 자유 박탈의 경우 아동의 재판청구권[38] 그리고 소년사법제도[39]이 그것이다. 특히, 아동사법제도 관련하여서는 아동권리위원회가 두 차례 일반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2007년 아동권리위원회는 소년사법(juvenile justice)에서의 아동권리를 주제로 일반논평 제10호[40]를 발표하였으며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를 대체하는 아동사법제도(child justice system)에서의 아동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24호[41]를 2019년 발표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의 한계적 규정으로 인하여 정의에의 접근이 아동사법에 한정적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42] 이러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UN 인권이사회는 아동권리 측면에서 정의에의 접근을 파악할 것을 UN 인권최고대표에서 2013년 요청하였고[43] 이에 따라 UN 인권최고대표는 분석보고서[44]를 작성하여 이듬해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2018년 아동권리협약 관련 일반토론의 날(Day of General Discussion)에서는 아동친화적 피해구제제도의 조성과 접근이 인권옹호자로서 아동의 보호 및 역량 강화(empowering)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기도 하였다.[45]

---

38) Art. 37 of the CRC.

39) Art. 40 of the CRC.

40)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General comment No. 10 (2007):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CRC/C/GC/10, 25 April 2007, https://www.refworld.org/legal/general/crc/2007/en/43085.에서 2025년 9월 1일 인출.

41)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24 on Children's Rights in the Child Justice System, CRC/C/GC/24 (Sep. 18, 2019), available at docstore.ohchr.org/SelfServices/FilesHandler.ashx?enc=kdEgMY0u80VfkM5ZFfc2q7yb7TOhyfRvSYJh1XGaSxotM%2FRFZQ22wk472%2Bmy4Zl%2FQe6IkMsa19qbfK6rP7uF0Q%3D%3D. 에서 2025년 9월 1일 인출.

42)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ept Note: General Comment on Children's Rights to Access to Justice and Effective Remedies para. 3,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hrbodies/crc/gcomments/gc27/gc27-concept-note.pdf. 에서 2025년 9월 1일 인출.

43)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22/32 Rights of the child: the right of the child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HRC/RES/22/32 para. 57 (Apr. 17, 2013), Access to Justice and to an Effective Remedy, available at https://documents.un.org/doc/undoc/gen/g13/132/89/pdf/g1313289.pdf. 에서 2025년 9월 1일 인출.

44) UN Human Rights Council, Human rights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cluding juvenile justice : resolution /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A/HRC/RES/24/12, 8 October 2013, https://www.refworld.org/legal/resolution/unhrc/2013/en/10039.에서 2025년 9월 1일 인출.

45)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port of the DAY OF GENERAL DISCUSSION (DGD) 2018: Protecting and Empowering Children as Human Rights Defenders 34, available at https://www.ohch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HRBodies/CRC/Discussions/2018/crc_dgd_2018_outcomereport_en.pdf.에서 2025년 9월 1일 인출.

아동의 정의접근권 및 구제권 논의는 한 동안 정체되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활기를 띄게 되었다. 2024년 1월 제95차 회기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권리에 관한 아동권리(children's right to access to justice and to and effective remedy)를 주제로 하는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초안을 작성할 것을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개요서(concept note)를 발표하였다.[46] 이후 5월 개요협의(consultations of concept) 문서를 발간하여 모든 체약국 및 시민사회 및 아동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8월 말까지 수렴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총 315건의 제출서(submissions)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7,200명 이상의 아동이 참여한 80여건의 협의를 포함하여 총 141회 이상의 협의서(consultations)를 받았다.[47] 이를 토대로 아동권리위원회는 2025년 3월 일반논평 제27호 초안을 작성하고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일반논평 제27호 초안에 대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48]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참고하여 위원회는 현재 일반논평 제27호 초안을 수정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아동권리위원회 총회에서 일반논평 제27호 최종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일반논평 제27호(안)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1) 일반논평 제27호(안) 구성 체계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7호 초안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7개의 대분류 그리고 17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46)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Draft of General Comment No. 27 on Children's Right to Access to Justice and to an Effective Remedy, available at https://www.ohchr.org/en/documents/general-comments-and-recommendations/draft-general-comment-no-27-childrens-right-access.에서 2025년 9월 1일 인출.

47) UN, OHCHR, Draft general comment No. 27 on children's right to access to justice and to an effective remedy, https://www.ohchr.org/en/documents/general-comments-and-recommendations/draft-general-comment-no-27-childrens-right-access.에서 2025년 9월 1일 인출.

48)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all for Submissions on the Draft of General Comment No. 27 on Children's Right to Access to Justice and to an Effective Remedy, available at https://www.ohchr.org/en/calls-for-input/2025/call-submissions-draft-general-comment-no-27-childrens-right-access-justice.에서 2025년 9월 1일 인출.

표 II-3-1. 일반논평 제27호(안) 구성 체계

대분류	소분류
Ⅰ. 서문	
Ⅱ. 목적	
Ⅲ. 용어 및 범위	
Ⅳ. 일반원칙 및 기본요소	
Ⅴ. 아동의 정의에의 접근권 및 효과적인 구제권에 관한 아동권리 기반적 접근	A. 가용성
	B. 접근성
	C. 아동의 권리와 필요에 대한 적응 1. 적시성 2.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3. 정보 접근을 포함하여 아동에게 민감한 의사소도 및 상호 작용 4. 다학제적이며 조율된 통합적 기원 5. 조정된 맞춤형 절차 6. 적응적인 환경
	D. 구제 달성의 효율성 1. 반환 2. 보상 3. 회복 및 재적응 4. 만족 5. 재발 방지 보장
Ⅵ. 아동의 정의에의 접근권 및 구제권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A. 인권조약 비준 및 유보 철회
	B. 입법
	C. 자원 할당
	D. 독립적 모니터링
	E. 시민사회와의 협력
	F. 지원 서비스
	G. 아동권리교육
	H. 정보 수집 및 연구
Ⅶ. 보급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일반논평 제27호 초안 번역본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은 크게 해당 협약이 정하고 있는 특정 권리 내지 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49]와 그보다는 특정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50]로 구분될 수 있다. 비록

49)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아동권리협약 제24조가 보장하고 있는 건강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논평 제15호 그리고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따른 놀이권 등을 초점으로 하는 일반논평 제17호를 꼽을 수 있겠다.

50) 몇몇 예를 살펴보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논평 제25호 그리고 아동의 환경권을 다루고 있는 일반논평 제26호를 꼽을 수 있겠다.

아동권리협약 관련 일반논평의 대상이 특정 권리인지 아니면 특정 주제인지 차이가 있을지라도 일반논평의 구성 체계는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에 있어서 구성 체계는 개별 권리 내지 규정에 대한 해석과 아동권리협약이 규율하는 여타 규정들과의 연계성 및 이에 기반한 이행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51]이 있는 반면, 특정 권리 내지 규정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 해당 권리에 특화된 세부적인 논점별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52]이 있다. 이와 같은 구성 체계 중에서 일반논평 제27호(안)는 후자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위의 표에서와 같이 초안의 7개의 대분류에는 서문, 목적, 용어와 범위, 일반원칙과 기본 요소, 구제권 등에의 아동권리 기반적 접근, 접근권 등의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보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의 대분류 중에서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구제권 등에 대한 아동권리 기반적 접근의 경우 인권규범체계에서 자주 활용하는 종래의 4A 체계를 변형하여 서술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1999년 Katarina Tomaševski 특별보고관은 교육권에 관한 보고서[53]를 경제사회위원회에 제출하면서 4A 체계(4A scheme)를 처음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4] 당시 특별보고관은 교육권 보장을 위한 당사국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 틀로 4A 체계를 제안하였다. 4A 체계는 이용가능성(Availability),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수용가능성(Acceptability) 그리고 적응성(Adaptability)으로 구성된다. 이용가능성은 해당 권리 내지 제도에 모두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인력 및 자원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접근 가능성은 누구나 차별 없이 그리고 물리적 및 금전적 장애 없이 해당 권리 또는 제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수용가능성은 더 나아가 해당 권리나 제도가 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수준이며 사회·문화적으로도 적절하고 이해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정도여야 한다는 뜻이고 적응성은 해당 권리 혹은 제도가 관련인의 수요와 특성

51) 예컨대,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따른 놀이권 등을 초점으로 하는 일반논평 제17호,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논평 제25호, 그리고 아동의 환경권을 초점으로 하는 일반논평 제26호가 이에 해당한다.

52) 예컨대, 아동권리협약 제40조에 따른 아동사법제도를 논의하는 일반논평 제24호 그리고 유아동기의 아동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논평 제7호가 이에 해당한다.

53) Katarina Tomaševski, The right to education: Report submitted by Katarina Tomaševski, Special Rapporteur: Addendum Mission to Colombia, E/CN.4/2004/45/Add.2,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17 February 2004, https://www.refworld.org/reference/mission/unchr/2004/en/21676.에서 2025년 9월 1일 인출.

54)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Katarina Tomaševski, Preliminar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8/33, E/CN.4/1999/49 (13 January 1999), https://docs.un.org/en/E/CN.4/1999/49.에서 2025년 9월 1일 인출.

등에 맞게 조정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55] 이후 4A 체계는 교육권뿐만 아니라 보건권,[56] 이주민 권리[57] 등 여러 인권 분야에서 활용되어 오고 있다.

시대적 발전 또는 관련 인권의 특성 등에 따라 A4 체계는 변용되어 활용되기도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27호 초안의 경우 아동의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 권리의 특성상 기존의 A4 체계에서 다소 변경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정의 접근권 및 구제권의 경우 당사자에의 수용가능성 보다 관련 제도가 당사자에게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여 종래의 4A 중에서 수용가능성(Acceptability) 대신 효과성(Effectiveness)을 새로운 틀로 도입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① 서문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7호(안) 서문에서는 해당 일반논평의 발간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느 인권조약에 따른 자유 또는 권리가 완벽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상에서와 같이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율하는 아동권리가 절대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침해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성인의 경우 인권이 침해된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 등이 천명하는 바에 따라 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반면 아동의 경우 그러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아동권리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권리의 존재 및 내용, 침해 시 활용할 수 있는 구제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동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성인에게 맞춰 운용되는 사법제도가 언어, 연령 및 금전적 이유 등으로 아동이 접근하기 적합하지 않은 등 여러 난관이 있기 때문이다.[58]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에게 있어서 인권의 경험과 인권 의식의 형성은 권리의 보호 여부와 같은 결과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과정, 즉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해소되는

55) *See id.* at paras. 51, 57, 62, 70.

56) *See e.g.*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General Comment No. 14: The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rt. 12 of the Covenant), E/C.12/2000/4,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11 August 2000, https://www.refworld.org/legal/general/cescr/2000/en/3699. (last visit is on Sep. 1, 2025)

57) *See e.g.* UNHCR, UNHCR WASH MANUAL, https://emergency.unhcr.org/sites/default/files/UNHCR%20WASH%20Manual.pdf. (last visit is on Sep. 1, 2025)

58) *See* CRC/C/GC/27(Draft) at para. 4.

가를 통해서도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다.[59] 한편, 아동권리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보장을 통한 규범력 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권리침해 시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긴요하다.[60] 이와 같은 관점에서 위원회는 비록 아동권리협약이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 권리를 명문으로 두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아동의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체약국의 협약상 의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61]

② 목적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7호 초안의 주된 목적은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에 관한 아동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62]하는데 있으며 특히,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구체적인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아동의 정의에의 접근권 및 구제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및 여타 조치에 대한 유권적 지침을 제공하며, 아동권리 보장에 있어서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는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당사국의 의무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것이다.[63] 더 나아가 일반논평 제27호(안)의 경우 정의에의 접근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특성이 있는 만큼 이의 부분에 해당하는 아동사법 제도에 관한 일반논평 제24호와 불가분의 관계임을 나타내고 있다.[64]

③ 용어 및 범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제권이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 등을 통해 명문으로 보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규범체계에서 정의에의 접근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에서의 정의 접근권 또는 구제권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일반논평은 여태껏 발간된 바 없었다.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권이 여러 인권 문서를 통해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 발전에 따라 상이한 견지에서 언급되어 왔기 때문에 그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그렇다

59) See CRC/C/GC/27(Draft) at para. 2.
60) See CRC/C/GC/27(Draft) at para. 5.
61) See CRC/C/GC/27(Draft) at para. 6.
62) See CRC/C/GC/27(Draft) at para. 7.
63) *See id.*
64) *See* CRC/C/GC/27(Draft) at para. 8.

보니 일반논평 제27호(안)는 본격적인 사항들을 다루기에 앞서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에 관한 개념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의에의 접근(access to justice)'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아동에게 적합한 방안을 통해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65]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구제(remedy)'는 두 가지의 개념 징표를 요건으로 하는데 "아동권리 침해 주장이 관할기관(competent body)에 의해 심리 및 결정되는 절차"[66] 그리고 "절차의 결과 및 배상과 침해의 중단을 포함한 구제 방안의 제공"[67]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는 그 자체로 실체적인 권리이자 절차적인 권리인 동시에 기능적 권리(enabling right), 즉 여타 권리들의 실현을 촉진 내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권리라는 특징을 갖는다.[68]

아동의 정의 접근권 및 구제권의 범위는 사법적 경로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 권리는 아동권리협약 제40조가 규율하고 있는 아동사법제도와 관련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사, 행정 및 헌법 법원 등 사법기관에 의한 이행도 포함된다.[69] 이와 같은 사법적 절차 이외에도 아동의 정의 접근권 및 구제권은 독립기관에 의한 절차, 조정 등 대체분쟁해결, 민간의 고충처리제도, 진실화해위원회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메커니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70]

④ 일반원칙 및 기본 요소

세계인권선언 제8조 및 자유권규약 제2조제3항(a) 등 보편적 인권규범들이 구제권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동권리협약은 정의에의 접근은 물론 구제권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 보니 과연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 권리가 과연 아동권리협약상 보장되는 권리의 하나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러한 논란을 미연에 종식시키고자 아동의 정의접근권 및 구제권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유권 해석을 하고 있다.

---

65) *See* CRC/C/GC/27(Draft) at para. 9.
66) *See id.*
67) *See id.*
68) *See* CRC/C/GC/27(Draft) at para. 10.
69) *See* CRC/C/GC/27(Draft) at para. 11.
70) *See* CRC/C/GC/27(Draft) at para. 12.

위원회의 견지에 따르면 비록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정의접근권 및 구제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권리는 아동권리협약에 내재되어 있다. 예컨대 아동권리협약 제4조는 해당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 권리는 '기능적 권리'로서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각종 권리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한다. 당사국의 아동권리 보장 의무에 관한 규정은 결국 아동의 정의접근권 및 구제권으로 귀결된다고 위원회는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권리협약 제4조 이외에도 신분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는 제8조제2항,[71]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의 경우 사법적 개입 등을 정하는 제19조[72] 그리고 고문 등의 경우 회복 등을 위한 조치 의무를 규율하는 제39조[73] 등 역시 아동의 정의접근권 및 구제권을 도출하는 법적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아동권리위원회는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에 관한 아동권리의 규범적 근거 중 하나로 보편적 인권규범을 꼽고 있다. 아동 역시 인간으로서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각종 자유와 권리의 주체임은 물론이라 할 것이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세계인권선언 제8조 등은 구제권을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역시 당연히 구제권을 향유한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위원회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국제인권조약에 포함된] 규정"[74]의 효력을 재확인하는 아동권리협약 제41조를 적시하고 있는 바, 자유권규약 제2조제3항(a), 인종차별철폐협약 제6조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제2조제1항 등에 따른 구제권이 아동에게도 인정됨을 확인하고 있다.[75]

다음으로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에 관한 아동권리에 있어서 아동권리협약상 일반원칙이 어떻게 적용 및 조화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통상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에서

71) 아동권리협약 제8조제2항은 다음과 같다: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72) 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다음과 같다: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 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73) 아동권리협약 제39조는 다음과 같다: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4) Art. 41 of the CRC.

75) *See* CRC/C/GC/27(Draft) at para. 14.

적시되는 일반원칙은 차별금지, 아동 최선의 이익, 생명·생존·발달권, 의견 청문권(right to be heard), 그리고 아동의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역량(evolving capacity)에 대한 존중이 포함된다. 아동의 정의 접근권 및 구제권 역시 이와 같은 일반원칙에 따라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며,[76]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를 위한 사법적 및 비사법적 방식을 고안 및 운용함에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77] 아동의 발전하는 역량을 감안하여야 하며[78] 해당 아동의 의견이 청취되고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79] 또한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의 절차와 결과에 있어서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80]

더 나아가 일반논평 제27호 초안의 경우 통상적인 일반원칙 이외에도 적법절차(due process) 및 법치주의(rule of law)의 존중이 '기본 요소(fundamental elements)'로 추가되었다. 법치주의 및 적법절차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서 정의에의 접근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아동의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 권리는 "평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고 그 결정이 예측 가능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유능하고(competent) 편견 없는(impartial) 구제 메커니즘"[81]이어야 한다.

⑤ 아동권리 기반적 접근

이용가능성(Availability)

효과적인 구제에 있어서 이용가능성 또는 가용성이란 구제 메커니즘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구제 메커니즘은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대상으로 다툴 수 있어야 하고[82] 개인이든 단체든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83] 또한 구제 제도는 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한 것은 물론 인신매매와 같이 특정의 경우에는 자국의 영토 밖에서 발생한 아동권리

76) *See* CRC/C/GC/27(Draft) at para. 15(a).
77) *See* CRC/C/GC/27(Draft) at para. 15(b).
78) *See* CRC/C/GC/27(Draft) at para. 15(e).
79) *See* CRC/C/GC/27(Draft) at para. 15(d).
80) *See* CRC/C/GC/27(Draft) at para. 15(c).
81) *See* CRC/C/GC/27(Draft) at para. 15(f).
82) *See* CRC/C/GC/27(Draft) at para. 18(a).
83) *See id.*

침해에 대한 사안들도 다룰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며[84] 위협의 두려움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 주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효 제도에 대한 완화 또는 제외 방안도 필요하다.[85]

효과적인 구제의 이용가능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권리침해로 인한 아동 발달에 대한 중·장기적 저해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임박한 또는 예견 가능한 손해까지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86] 많은 경우 구제는 아동이 직접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진행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침해와 같이 피해아동이 특정되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의 경우 관련 기관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87] 구제 메커니즘은 학교 및 돌봄기관 등 아동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인권기관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운영될 필요가 있으며[88] 이 외에도 기업에 의한 고충처리절차 및 아동권리에 기반한 관습적인 (customary) 정의 구현 제도들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89]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아동의 구제권에서의 접근가능성은 물리적 및 금전적 장벽 등 없이 누구든지 구제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데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의 경우에도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한가가 핵심적인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취약성 및 힘의 불균형에 처해 있으며 차별에 직면한 특정 아동 집단"[90]의 경우 구제제도에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구제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악순환의 고리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91] 따라서 당사국은 여자 아동, 장애아동, 성소수자 아동(LGBT), 이주배경 아동 등 취약 아동의 구제권 접근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92]

한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동의 당사자적격(legal standing)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 제기 및 진행에 있어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데 해당 아동과 부모 등의

84) *See id.*
85) *See id.*
86) *See* CRC/C/GC/27(Draft) at para. 18(b).
87) *See* CRC/C/GC/27(Draft) at para. 18(c).
88) *See* CRC/C/GC/27(Draft) at paras. 19-21.
89) *See* CRC/C/GC/27(Draft) at paras. 22-23.
90) *See* CRC/C/GC/27(Draft) at para. 27.
91) *See* CRC/C/GC/27(Draft) at paras. 26-27.
92) *See* CRC/C/GC/27(Draft) at para. 28.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 해당 아동은 효과적으로 구제받기 어렵게 된다.[93] 이러한 경우 아동의 구제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이 대리인으로서 적절한 성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경우에 따라 아동이 부모의 동의 없이 직접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94]

더 나아가 재정적, 물리적 및 언어적 장벽에 의한 접근성의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재정적 부담으로 인한 장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체약국은 무료 법률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등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95] 물리적 접근성을 제고함에 있어서 아동이 처한 환경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이동식 또는 지역 기반의 지원 서비스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96] 물리적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아동들이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되며 디지털 활용 시 보안으로 인한 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97]

아동 권리 및 수요에의 적응성(Adaptation)

적응성이란 구제 메커니즘이 아동의 특성 및 수요에 부합하도록 조정되고 있는가를 뜻한다. 통상 구제 제도는 성인의 기준에서 고안되고 운용되기 때문에 아동의 연령, 언어, 이해도 등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동의 구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구제 메커니즘이 아동의 특성과 환경을 감안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다.

(적시성) '합리적인 시간' 내에 구제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는 "아동이 연령과 상황 그리고 침해의 잠재적 영향, 지속적인 특성 및 반복 가능성을 감안하여"[98] 설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을 구제 결정에 소요되는 예상 기간을 고지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 이유와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99]

(프라이버시 및 비밀 유지) 아동의 사생활 보호는 물론, 아동의 신원 및 식별정보 비밀

93) *See* CRC/C/GC/27(Draft) at para. 29.
94) *See* CRC/C/GC/27(Draft) at paras. 29-30.
95) *See* CRC/C/GC/27(Draft) at para. 31.
96) *See* CRC/C/GC/27(Draft) at para. 32.
97) *See* CRC/C/GC/27(Draft) at para. 33.
98) *See* CRC/C/GC/27(Draft) at para. 35.
99) *See id.*

유지 그리고 사건의 과도한 노출을 방지하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00]

(아동의 권리와 특성을 고려한(child-sensitive)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구제 절차와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비디오 또는 미니어처 등을 활용하는 사례와 같이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101]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을 위해 통역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102]

(다학제적이며 조율된 통합 지원) 아동사법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사, 행정 및 기타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동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국은 이를 제도화할 수 있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103] 아동 전문 법조인의 경우 훈련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104] 이러한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법률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 부분의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서비스들이 협력하여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다.[105]

(조정된 맞춤 절차)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래의 심문과 질문 방식은 아동에게 제2차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당사국은 아동 구제 메커니즘에 대한 질적 기준을 설정하고 아동 권리에 기반한 표준 구제제도 운영 절차를 채택하는 것이 요청된다.[106] 피해 아동 또는 아동 증인으로 참여하는 형사절차 및 아동 면담 등에 있어서 아동의 연령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107] 특히, 구제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 청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08]

(조정된 환경) 아동의 정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 국가는 무엇보다 아동 친화적 환경을

100) *See* CRC/C/GC/27(Draft) at para. 36.
101) *See* CRC/C/GC/27(Draft) at para. 37.
102) *See* CRC/C/GC/27(Draft) at para. 38.
103) *See* CRC/C/GC/27(Draft) at para. 40.
104) *See id.*
105) *See* CRC/C/GC/27(Draft) at para. 41.
106) *See* CRC/C/GC/27(Draft) at para. 43.
107) *See* CRC/C/GC/27(Draft) at para. 44.
108) *See* CRC/C/GC/27(Draft) at para. 45.

조성해야 한다. 이는 연령, 성별,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설계를 통해 적대적 요소를 배제하고, 아동의 불안을 완화하여 진술과 의견 표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09] 또한 개별 평가를 통해 아동의 욕구, 권리침해의 영향, 보호 필요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110] 장애 아동에게는 모든 유형의 장애를 고려한 절차적·연령 적합 편의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111] 편의 제공은 물리적 접근성, 의사소통 방식 조정, 보조 기술 활용 등 다양한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112]

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 이동 제한과 권력 불균형으로 인해 구제 절차에 접근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는 비밀이 보장된 조건에서 법률 및 사회적 지원과 독립적 구제 메커니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113] 아울러 독립적 모니터링 기구의 정기적 방문과 아동의 구금 적법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확보되어야 한다.[114] 끝으로, 무력 분쟁 상황에 처한 아동은 안전한 환경과 함께 비밀보장 신고 메커니즘, 증인 보호 제도, 트라우마 인식 전문가의 지원을 보장받아야 한다.[115] 이러한 종합적 조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사법 접근권 및 효과적 구제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핵심적 기반이 될 것이다.[116]

구제책 달성에 있어서의 효과성(Effectiveness)

아동의 효과적인 구제권은 아동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 내지 해악이 구제책을 통해 시정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은 물론 관련 지역사회에 다양한 물질적이고 상징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아동권리 침해를 시정하는 방안"[117]을 뜻하는 '회복조치(reparation)'는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하여야 하며 권리침해 및 손해의 중대성에 비례하여야 한다.[118] 이 경우 아동의 특성상 피해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회복이 어려울 수 있고 가족에게까지 여파를 발생시킨다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119]

109) *See* CRC/C/GC/27(Draft) at para. 46.
110) *See id.*
111) *See* CRC/C/GC/27(Draft) at para. 47.
112) *See id.*
113) *See* CRC/C/GC/27(Draft) at para. 48.
114) *See id.*
115) *See* CRC/C/GC/27(Draft) at para. 49.
116) *See id.*
117) *See* CRC/C/GC/27(Draft) at para. 50.
118) *See id.*
119) *See* CRC/C/GC/27(Draft) at para. 51.

회복 조치는 후술하는 원상회복(restitution), 보상(compensation), 회복과 재통합(recovery and reintegration), 만족(satisfaction) 그리고 권리침해의 재발 방지 등 여러 방식으로 가능하지만 금전적인 배상만으로는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접근법이 요청된다.[120] 아동은 가능한 한 회복 조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121] 이 경우 회복 조치 과정은 아동의 권리와 특성이 고려된 환경이어야 하며 해당 아동의 의견 청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122]

(원상회복) 회복 조치에 있어서 피해 발생 이전의 상태로 해당 아동을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완전하게 이전과 같은 상태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123]

(보상) 보상은 적절하고 비례적이어야 하며 단순한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이외에도 심리적 피해는 물론 피해에 따른 장기적인 심리적, 사회적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까지 고려하여야 한다.[124] 원활한 보상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절차 없이 아동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125]

(회복 및 재적응) 시의적절한 회복 및 재적응에는 의료, 사회 복귀, 신체적 및 심리적 회복은 물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포함된다.[126] 회복과 재적응은 권리침해에 대한 유죄 결정에 구애되지 않고 아동의 수요를 감안하여 사전, 현행 및 사후적으로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127] 또한 이러한 조치들은 가능한 무료로 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하며 전주기적 관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128]

---

120) *See id.*
121) *See* CRC/C/GC/27(Draft) at para. 53.
122) *See id.*
123) *See* CRC/C/GC/27(Draft) at para. 55.
124) *See* CRC/C/GC/27(Draft) at para. 56.
125) *See* CRC/C/GC/27(Draft) at para. 57.
126) *See* CRC/C/GC/27(Draft) at para. 59.
127) *See id.*
128) *See id.*

(만족) '만족'이란 "피해자가 절차, 결정의 집행, 침해행위의 종료, 피해 또는 피해에 대한 인정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129]이다. 이와 같은 만족에 있어서 구제 메커니즘을 통해 도출된 결정이 집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 비사법적 경로를 통한 구제의 경우와 같이 집행에 대한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당사국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130] 또한 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및 임시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긴요하다.[131] 더 나아가 초국가적(transnational) 권리침해의 경우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약국은 이와 관련되는 조약을 비준하거나 타국가의 결정이 집행에 협력하는 것이 요청된다.[132]

(재발 방지 보장) 재발 방지의 일환으로 취해지는 제재는 공정하고 비례적이어야 하는 바, 당사국은 취약계층 아동 관련 사례에서 제재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33] 더 나아가 체약국은 아동권리 침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 교육, 행동강령 작성, 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포함하여 법 및 정책을 개선하여야 한다.[134]

⑥ 아동의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 권리 실현을 위한 환경 만들기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7호 초안은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에 관한 아동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적 인식 제고, 법제도 개선 그리고 보호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권리에 대한 보편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벌 등 아동권리 침해는 사회적으로 용인되기도 하며 아동이 권리침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적대시되는 분위기인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신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실상이다.[135]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 및 아동권리에 대한 존중 관련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당사국은 노력하여야 한다.[136] 더 나아가 체약국은 아동이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

129) *See* CRC/C/GC/27(Draft) at para. 60.
130) *See* CRC/C/GC/27(Draft) at para. 61.
131) *See* CRC/C/GC/27(Draft) at para. 61.
132) *See* CRC/C/GC/27(Draft) at para. 63.
133) *See* CRC/C/GC/27(Draft) at para. 66.
134) *See* CRC/C/GC/27(Draft) at paras. 67-68.
135) *See* CRC/C/GC/27(Draft) at para. 69.
136) *See* CRC/C/GC/27(Draft) at para. 70.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적 및 정책적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아동권리협약 제5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아동의 정의 접근권 및 구제권 실현에 있어 부모 등의 감독 및 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37] 그리고 이하와 같이 세부 분야별로 아동의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 권리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조약의 비준 및 유보 철회) 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아동권리협약 관련 세 가지 의정서 및 여타 인권 규범들의 가입을 촉구하는 동시에 아동의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 권리 실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아동권리협약 및 관련 인권 규범에서의 유보를 검토 및 철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38]

(입법) 우선 당사국의 국내법에서 아동권리협약 및 관련 선택의정서와 부합하는 규범 체계가 마련 및 시행되어야 하고 특히, 아동권리협약 및 관련 선택의정서와 국내법이 충돌하는 경우 전자가 적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139] 아동의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권 측면에서 체약국은 이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제화하여야 한다.[140] 한편, 초국가적 아동권리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외적용(extraterritoriality) 및 국제협력 등도 요청된다.[141]

(자원의 할당) 아동권리 보장 관련하여 구제 메커니즘을 구축·운영하는 국가 및 여타 행위자들은 충분한 자원을 할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자원은 재정적 지원 이외에도 법적인 조력 및 지원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것이다.[142]

(독립적 이행감시) 독립 인권기구 및 유관 기구들은 아동의 정의 접근권 및 구제권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감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준들을 마련·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43]

---

137) *See* CRC/C/GC/27(Draft) at para. 71.
138) *See* CRC/C/GC/27(Draft) at para. 72.
139) *See* CRC/C/GC/27(Draft) at para. 73.
140) *See* CRC/C/GC/27(Draft) at para. 74.
141) *See id.*
142) *See* CRC/C/GC/27(Draft) at paras. 75-76.

(지원 서비스)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에 관한 아동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당사국은 지원 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원 서비스는 구제 메커니즘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아동의 특성 및 수요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144] 또한 지원 서비스에의 아동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고[145] 지원 서비스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며[146] 전문성 및 윤리규정 등을 포함한 표준운영절차의 마련·조정도 필요하다.[147]

이외에도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7호(안)는 아동의 정의 접근권 및 구제권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의 방안에 시민사회와의 협력, 아동권리 교육, 전문가 교육 그리고 정보 수집 및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3) 일반논평 제27호(안)의 의미 및 시사점

(1) 일반논평 제27호(안)의 의미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7호 초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일반논평 제27호(안)는 정의 접근권 및 구제권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부터 자유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 각종 보편적 인권 규범들이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일반논평 내지 일반권고는 찾기 어렵다. UN 인권규범체계에서 구제권을 핵심적인 대상으로 하는 일반논평 또는 일반권고는 없고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제외하고는 정의에의 접근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일반논평이나 일반권고는 발표된 바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 실현에 있어 구제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를 전적으로 다루는 한편, 이에 관한 구체적인 당사국의 이행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번 일반논평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둘째, 일반논평 제27호 초안은 효과적인 구제를 아동의 권리임을 확인하고 있다. 세계

143) *See* CRC/C/GC/27(Draft) at para. 77.
144) *See* CRC/C/GC/27(Draft) at para. 80.
145) *See id.*
146) *See id.*
147) *See* CRC/C/GC/27(Draft) at para. 871.

인권선언, 자유권규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보편적 인권 규범은 구제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에 반해, 아동권리협약은 구제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비록 자유 박탈 시의 재판청구권 그리고 소년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사법 절차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주로 형사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다.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는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각종 자유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기능한다는 측면에서 핵심적인 권리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에 구제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 과연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권리 침해 시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우려가 있겠다. 이러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이번 일반논평을 통해 아동권리협약 제4조, 제8조제2항 및 제19조 등을 토대로 구제권을 도출하는 한편, 구제권 보장을 위한 당사국의 의무 및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하여 유권적 해석을 내리고 있다.

셋째, 일반논평 제27호 초안은 '정의에의 접근(access to justice)'의 개념 및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종래 'access to justice'는 권리 실현을 위해 사법기관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법접근(권)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방식의 피해 구제 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민간 부분에서의 고충처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사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로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게 되었다. 국내외 인권 논의에서도 'access to justice'의 개념 및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법 절차 이외에 비사법적 경로를 통한 피해의 구제까지 포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제27호(안)를 통해 정의에의 접근의 개념과 범위를 사법적 및 비사법적 방식을 통한 피해 구제를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2) 일반논평 제27호(안)의 법·정책적 대응 방안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7호 초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에 관한 아동권리를 법적 권리로 확인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이행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4조 등에 따라 당사국은 정의 접근권 및 구제권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종 법적, 정책적 및 여타 조치들을 취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일반논평 제27호(안)가 채택되면 이는 아동의 정의 접근권

및 구제권 이행에 있어 중요 지침이 되는 한편, 국가보고 절차 등을 통해 이행점검 기준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아동의 정의 접근권 및 구제권 실현을 제고하기 위한 법 및 정책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이하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또는 "CRC OPIC")[148]의 가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일반논평 제27호(안)는 정의에의 접근 개념 및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사법적 경로 및 비사법적 경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국내적 절차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또는 지역적(regional) 구제 메커니즘을 아우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아동권리위원회는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구제 메커니즘으로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개인통보제도를 주요 경로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를 아직 가입하지 않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이의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149] 이번 일반논평을 통해 구제권을 아동권리로 확인하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한 정의에의 접근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은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바사법적 구제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한편, 당사국은 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제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무는 더 이상 국가기관에 의한 권리침해를 예방 및 대응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 또는 기업 등에 의한 권리침해 역시 국가 의무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일반논평 제27호 초안은 이와 같은 국가 의무의 확장이 아동의 정의 접근권 및 구제권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인 조치 등을 마련·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50] 종래 아동의 정의 접근권은 재판 등과 같이 국가기관에서 피해 구제 위주로 논의되고 관련 제도가 설계·운용되었다. 아동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당사국은 기존의 제도를 보완 또는 강화하는 한편, 기업의 고충처리절차 등 비사법적 경로를 통한 구제 메커니즘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효과적으로 침해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국가는 독립 인권기구 등

148) UN Human Rights Council,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 resolution /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A/HRC/RES/17/18, 14 July 2011, https://www.refworld.org/legal/resolution/unhrc/2011/en/82293. (last visit is on Sep. 1, 2025)

149) *See* CRC/C/GC/27(Draft) at para. 72.

150) *See* CRC/C/GC/27(Draft) at para. 74.

유관기관들로 하여금 비사법적 경로에서의 구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원을 할당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방책을 구비하는 것도 요청된다.

셋째, 아동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제 메커니즘 제도를 개선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재판 등 구제 메커니즘은 성인을 기준으로 고안·운영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다. 아동의 경우 인지도, 권리 침해로 인한 피해의 특수성, 당사자적격 및 경제력 부재 등 조건과 환경 등에 있어서 일반 성인과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는 아동의 특성 및 수요를 감안하여 아동의 정의에 접근 및 구제와 관련하여 질적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표준운영절차를 작성·배포함으로써 다양한 구제 절차에서 형평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논평 제27호(안)는 정의에의 접근 및 구제에 관한 아동권리가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실체적 권리이자 절차적 권리로 판단하고 있는바,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고지, 기한 설정, 프라이버시 보호, 금전적 지원 그리고 아동의 의견 청문권(right to be heard) 보장 등 구제 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 아동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요청된다. 권리를 침해받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 등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경우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복잡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안들을 이해하기 수월하고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151] 뿐만 아니라 권리침해로 피해를 입은 아동은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 등이 필요하기도 하다. 권리침해로 인한 피해 발생에서부터 회복까지 전주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법적 조력 및 지원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모든 아동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특히, 취약집단 아동들이 구제 메커니즘에 차별 없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장애아동, 이주배경 아동, 거리아동(street children, 혹은 가정밖 아동), 성소수자 아동(LGBT) 등의 경우 권리 보호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 경제적 여건, 지원 미비 등으로 인해 정의에의 접근이 어려운 현실이다.[152] 차별금지는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일반원칙 중 하나로 모든 아동권리의 이행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아동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151) *See supra* note 100 at para. 40.
152) *See supra* note 87 at para. 27.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동도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중에서도 차별 없이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7호 초안 역시 아동의 정의 접근 및 구제 권리가 모든 아동이 향유하여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당사국으로 하여금 취약계층이 마주하는 제약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153] 향후 아동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구제 메커니즘으로의 제도 개선을 실시함에 있어 취약 아동들의 이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4.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국내 아동·청소년 정책 동향

아동과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있어 새로운 접근과 정책적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어 올해 부처별로 시행하는 주요 정책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공적 입양체계 개편',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의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 분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3년 연장)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았다.

1) 공적 입양체계 개편

정부는 그간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해 오던 입양절차 전반에 대해 2025년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된다는 것을 밝혔다(보건복지부, 2025. 7. 17.). 이는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더불어, '아동 최우선의 이익'의 원칙을 반영한 입양체계를 실현하려는 정책점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하고자 우리나라는 2013년 헤이그국제아동

153) *See supra* note 88 at para. 26.

입양협약을 가입하여 2023년 7월 18일에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2025년 7월 19일 시행)함으로써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5년 6월 17일 협약 비준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하여 2025년 10월 1일부터 협약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효되도록 하는 등 공적 입양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기틀을 갖추었다(보건복지부, 2025. 6. 17.). 이러한 공적 입양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입양 과정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와 감독이 강화되며, 입양기록물 관리 및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표 II-4-1. 공적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입양체계 비교

	기존 입양 체계	개편 후 입양 체계
주체	민간 입양기관	국가(보건복지부)·지자체·공공기관(아동권리보장원)
책임	민간 입양기관 자율	국가 전면 책임
관리·감독	제한적 감독	전 과정 관리·감독
원칙	기관별 상이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 7. 17.) 내용을 표로 정리함.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대상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자체에서 담당하는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보호를 책임지는 보호기간 동안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음으로 예비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담당하며, 보건복지부는 위탁기관(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을 통해 수행한 예비양부모의 자격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신설됨)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예비양부모의 적격성과 아동과의 결연 등을 심의·결정하게 된다. 예비양부모와 아동이 결연된 후에는 가정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입양 허가를 내리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양육결정 제도를 활용하여 입양이 허가되기 전 아동과의 애착을 초기에 형성하고 상호 간 적응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때 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된다. 입양이 성립되고 나면 1년간 보건복지부(위탁기관)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상담과 모니터링을 하여 입양가정의 적응을 지원하도록 한다(보건복지부, 2025. 7. 17.).

다음으로 국제입양의 경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를 준용하여 보건복

지부가 중앙당국으로서 국제입양을 담당하는데, 특히, 국제입양은 반드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전제로 하여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만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아동의 국제입양 결정, 국외 예비양부모 적격성 확인, 아동 결연 등을 실시하며 상대국과 협의 등을 신중히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국제입양 후 1년 간 아동의 적응 상황을 점검 및 보고를 받는 사후관리 제도를 운영하며, 국제입양에 대한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담당하여 국제적 기준에 따라 모든 국제입양이 안정되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5. 7. 17.).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여 입양 정책과 제도, 절차와 관련된 논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입양신청 및 예비양부모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정보공개청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강화하고자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기존 입양기관 등의 기록물을 이관하여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19일부터는 새로운 절차에 따른 입양 관련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5. 7. 17.).

이번 공적 입양체계 개편은 아동의 입양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로, 국제적 기준에 맞춰 아동의 권리 보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입양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된 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하며, 입양아동과 입양인, 그리고 그 가족들의 권리가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2)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는 2020년부터 직업계고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다 2025년 일반고 등 전체 고등학교로 확대 시행되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충족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교육부, 2021. 2. 16.: 9). 이 제도는 4차 산업혁명과 감염병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사회에 대응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및 디지털 세대의 학습 성향에 따라 학생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자 도입되었다(교육부, 2021. 2. 16.).

교육부에서 2017년에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여 본 제도의 도입을 알렸으며, 이후 2018년에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통한 학점제 추진 단계 제시'를 통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한 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학점제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교육부, 2021. 2. 16.). 2021년 2월에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해당 계획에서는 ▲ 학점제형 교육과정 개정, ▲ 학점 기준 학사제도 마련, ▲ 성장 중심 평가 체계 구축 등의 학점제형 교육제도 설계, ▲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이수 지원, ▲ 학습 경험의 혁신 지원, ▲ 학교 경계의 확장 등 학생 중심 학교 운영 지원, ▲ 교·강사 지원, ▲ 학점제형 학교공간 조성, ▲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등의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구축을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2021년 8월에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안)'을 통해 2020년부터 마이스터고에서, 2022년도부터는 특성화고에 이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일반계고와 특목고 등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고교학점제의 여러 제도적인 요소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25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점진적인 이행 방안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21. 8. 23.).

아울러 2021년 9월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및 공동교육과정과 학교밖 교육 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여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2023년 6월에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고교학점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우려 사항과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고교학점제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23. 6. 20.). 이어서 2023년 12월에는 2025년 이후 고등학교의 평가제도 적용에 대한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수능 및 고교 내신체제 개편 방안이 담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함으로써 제도의 정착 방향을 구체화하였다(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등학생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이수하고,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 과목을 신청하여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강하게 된다. 3년 간 최소 192학점 이상(교과 174점(선택 과목 당 4학점 내외로 이수, 1학점 당 16회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288시간))을 취득하면 졸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 이러한 고교학점제는 본래 학생 맞춤형 교육과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 시행되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가중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간에 공동 수업을 듣기 위해 학생 이동 문제 등으로 인한 혼란이 있으며, 졸업 요건 관리와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불안이 커짐과 동시에 사교육 시장 의존도도 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조선일보, 2025. 4. 21.). 또한, 수능과 연계되지 않은 과목의 수강을 기피하는 학생들이 있으며, 교사들의 과목 수 증가 및 행정 업무 부담, 교원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어려움과 더불어, 지역·학교 간 과목 개설 격차도 커져 교육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한겨레, 2025. 6. 2.).

이에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및 교육청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해당 대책에서는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 지원 및 수행평가 부담 완화 등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교원의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업무의 부담 경감 및 유연화 등으로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며, 교·강사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25. 9. 25.).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교육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학교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는 과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방안도 요구된다.

3)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정부는 2025년 5월, 다양한 디지털 매체 환경이 등장하고 새로운 형태의 유해환경에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발표하였다. 본 대책은 「청소년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되는 것으로, 이번 5차 대책에서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다양한 부작용뿐만 아니라 무인 매장이나 온라인을 통한 담배와 주류 구매, 마약 및 도박 문제 등 청소년을 둘러싼 새로운 위험 환경과 유해업소, 유해약물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관계부처합동, 2025. 5. 28.).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서는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새로운 유해환경에서의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대응 역량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① 디지털 매체의 건강한 이용 환경 조성, ② 청소년 생활 주변 불법·유해환경 차단, ③ 위기 청소년 지원 및 폭력 피해 대응 강화, ④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 ⑤ 청소년보호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5개 전략 과제에 따라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5. 5. 28.).

전략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 매체의 건강한 이용 환경 조성'에서는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 등의 미디어 플랫폼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연령과 매체 특성에 맞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청소년 생활 주변 불법·유해환경 차단'과 관련하여 무인 업소나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유해 물건에 대한 유통을 차단하고, 청소년 도박 피해를 예방하고자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금융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해 양형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청소년에게 처방되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제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불법·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한다. 셋째, '위기 청소년 지원 및 폭력 피해 대응 강화'에서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하여 사례관리를 지원하며, 딥페이크에 의한 성범죄물을 신속 삭제하고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며, 가해 청소년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넷째,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마련'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며, 사례 중심의 근로교육과 더불어 사업자 대상으로 청소년의 근로권익 법·제도를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정책 추진 기반 강화'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고, 주요 산업계와 협력하여 청소년 보호 제도의 이행을 유도하고, 지역 내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4) 대중문화예술 분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장시간 또는 야간 작업 등에 따른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충분히 쉬고 숙면을 취해야 할 권리가 침해되고, 학습권 및 신체·정신 건강권의 침해, 사생활 보호 및 자유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2022년 3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5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3조를 개정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을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구축할 것과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는 '아동보호책임자(가칭)' 지정 및 대중문화예술 작업 중 과도한 노출 또는 선정적인 행위에 대해 사전 설명과 동의를 받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충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습권을 보장할 것에 대해 권고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2. 3. 3.).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를 개정하여 2025년 8월 1일부터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5. 8. 1.).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활동할 경우, 종사자(임원이나 부서의 장 또는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이들은 청소년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치, 청소년의 용역 제공 시간 관리, 청소년과 체결하는 계약 검토(학습권, 수면권, 인격권 등 보호 기준 충족 여부 확인),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관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의3(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필요 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활동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존중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 분야에 있는 업계 전반에 제도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충실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실제로 해당 업계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의3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권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5)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연장

법무부는 국내에서 거주 기반을 마련하여 성장해 왔으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취업이나 정주가 어려웠던 외국인 청소년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하여 2025년 3월 31일에 종료가 예정되었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였다(법무부, 2025. 3. 20.).

이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2020년 3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 강제퇴거를 중단하고, 이들이 국내에 계속해서 체류하기를 원할 때 체류자격을 신청하고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국가인권위원회, 2020. 5. 6.)을 권고함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2020년 4월에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국내에서 출생하여 15년 이상 체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2021년 4월 1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4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법무부, 2020. 4. 19.).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7월, 해당 구제대책에 대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을 부여하는 대상기준과 운영기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7. 28.). 이에 법무부에서는 2022년 1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통해 2022년 2월 1월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외국에서 출생한 후 중도에 입국한 아동을 포함하고 국내 체류 기간 요건을 6년 이상(국내에서 출생 또는 6세 미만 국내 입국자) 또는 7년 이상(6세 이후 국내 입국자)으로 완화하는 등 체류자격 대상을 확대하였다(법무부, 2022. 1. 20.).

이후 2025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국가인권위원회, 2025. 3. 18.), 법무부는 교육부와 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제도를 일부 개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시에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기타(G-1)의 체류자격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가족 단위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고, 부모에게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교육 등에 참여 의무를 부과하여 부모가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고, 실제로 국내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도를 악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법무부, 2025. 3. 20.).

이 제도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에게 한시적이나마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교육권과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한시적인 운영에 따른 불안정한 법적인 지위와 성인으로 진입한 후에 체류의 연속성 미보장 등 여전히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이 제도에 대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에 대해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체류자격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권영실, 2025). 따라서 이 제도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체류를 허용하는 차원을 넘어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 특히,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이주배경 아동에 대한 체류 자격을 안정화하고 구금을 금지하며, 교육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국적이나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본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사회적인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4. 요약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심의 과정의 변화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심의 과정이 간소화된 보고 절차(SRP)로 변경되면서 사전쟁점목록(LOIPR) 작성 과정에서의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7호는 '아동의 실질적 권리 강화 요구'를 함으로써 국내의 사법적/비사법적 구제 절차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7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장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국내에의 영향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다.

첫째,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다. 간소화된 심의 절차의 특징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쟁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열적인 국가보고에서 벗어나 핵심적인 내용을 질문함으로써 시민사회에서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동·청소년의 삶에서 중요한 인권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환경에서의 권리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제7차 국가보고서에는 '아동 권리와 환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될 것이다.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에서의 권리가 쟁점으로 포함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정부의 노력을 국가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제7차 국가보고서 준비 과정에서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정책 현황 점검이 필요하다. 이와 유사하게 '건강' 클러스터에 포함된 간성(intersex)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LGBTQ+에 대한 정책 공백을 빠르게 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초안이 공개된 일반논평 27호가 앞으로 채택되면 제3선택의정서(OPIC) 비준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아동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조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개인청원절차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OPIC)과 연관되어 최종견해가 나올 수 있다. 국내 절차(사법, 행정, 인권위, 학교 내 고충처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하므로, 비준을 상정하고 아동 친화적 사법절차, 비사법적 구제 메커니즘의 강화, 취약 아동의 사법 접근성 강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

[부록] UNCRC 국가보고서 작성 시 변경된 클러스터의 주요 내용

1. 일반 이행 조치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관련 조항: 제1조, 제4조, 제42조 및 제44조 6항)

- 유보 및 선언
- 입법
- 포괄적 정책 및 전략
- 조정
- 자원 배분
- 데이터 수집
- [신규] 사법 접근권 및 구제책
- 독립적 모니터링
- 협약의 전파 및 인식 제고
- 시민사회와의 협력
- 국제 협력
- 아동 권리와 기업 부문

2. 일반 원칙 (General principles) (관련 조항: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12조)

- 비차별
- 아동 최상의 이익
- 생명권, 생존 및 발달권
- 아동 의견 존중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Civil and political rights) (관련 조항: 제7조-제8조 및 제13조-제17조)

- 이름 및 국적 / 출생 등록
- 정체성에 대한 권리 / 정체성 보존
- 표현의 자유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결사 및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사생활에 대한 권리
- 적절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

4. 아동에 대한 폭력 (Violence against children) (관련 조항: 제19조, 제24조 3항, 제28조 2항, 제34조, 제35조, 제37조 (a), 제39조 및 아동 성매매·성착취에 관한 선택의정서(OPSC))

- 학대, 방임, 성착취 및 성학대
- 체벌
- 유해 관행
- 고문 및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 [신규] 아동 성매매·성착취에 관한 선택의정서(OPSC) [해당 시]
- 피해 아동의 회복 및 사회 재통합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관련 조항: 제5조, 제9조-제11조, 제18조 1-2항, 제20조-제21조, 제25조 및 제27조 4항)

- 가정환경

-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
- 입양
- 불법 해외 이송 및 미송환
- 수감된 부모의 자녀

6. 장애 아동 (Children with disabilities) (관련 조항: 제23조)
- 장애 아동

7. 건강 (Health) (관련 조항: 제6조, 제24조, 제33조)
- 건강 및 보건 서비스
- 모유 수유
- 정신 건강
- 청소년 건강
- 약물 및 물질 남용
- HIV/AIDS
- [신규] 간성(Intersex) 아동

8. [신규] 생활 수준 (Standard of living) (관련 조항: 제18조 3항, 제26조 및 제27조 1-3항)
- 사회 보장 및 주거를 포함한 생활 수준

9. [신규] 아동 권리와 환경 (Children's rights and the environment) (관련 조항: 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6조-제31조)
- 아동 권리와 환경

10.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관련 조항: 제28조-제31조)
- 교육: 목표 및 범위
- 교육의 질
- [신규] 통합교육
- 직업 훈련 및 지도
- 인권 교육
- 휴식, 놀이, 여가, 오락 및 문화·예술 활동

11. 특별 보호 조치 (Special protection measures) (관련 조항: 제22조, 제30조, 제32조-제33조, 제35조-제36조, 제37조 (b)-(d), 제39조-제40조 및 무력분쟁 아동의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AC))
- 망명 신청 아동, 난민 아동 및 이주 아동
- 소수자 또는 원주민 집단에 속한 아동
- 아동 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 거리 아동
- 인신매매
- 아동 사법
- [신규] 무력 분쟁 하의 아동 (무력분쟁 아동의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AC) 포함) [해당 시]

제3장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권지표 프레임워크 및 조사방법 개요

1. 개요
2. 본 보고서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 프레임워크
3.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권 측정 지표체계 구성
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조사 방법 개요
5. 요약 및 시사점

3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권지표 프레임워크 및 조사방법 개요[154)]

개요(Abstract)

이 장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 측정 프레임워크에 대해 소개한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라는 추상적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11개의 권리 영역과 120여개의 지표가 활용되었다. 인권 클러스터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 방식 변경으로 11개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장애, 건강, 생활수준, 아동권리와 환경 등 영역이 확대되고 세분화되었다.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행정자료와 설문자료를 통해 제시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를 원자료로 2025년 현황과 시계열 변화를 제시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의 증거 기반 모니터링과 정책환류를 가능하게 한다. 향후 변화하는 권리 영역과 사회적 이슈를 포괄하는 등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154) 이 장은 유민상 선임연구위원, 이경상 선임연구위원, 서고운 연구위원이 공동 작성하였음.

1. 개요

이 장은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보고하기 위한 측정 틀, 지표, 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 장의 내용은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를 측정, 보고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체계는 하나의 포괄적인 지표 묶음으로 구성되며, 세부적인 지표는 크게 행정자료와 설문조사를 활용한다. 여기서는 순서대로 인권지표체계의 기본적인 틀(프레임워크)을 먼저 설정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조사자료 내용과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조사방법과 기초통계표 등의 내용은 별도로 발간된 기초분석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155]

이 장은 긴 지표 목록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독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이 장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1-1. 이 장의 주요 내용 (프레임워크, 지표체계, 설문조사 방법 등)

155) 유민상, 이경상, 서고운(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본 보고서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 프레임워크

이 보고서의 측정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권리 클러스터(영역)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다. 2024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클러스터를 기존 9개에서 11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클러스터를 11개로 변경하였다.



그림 Ⅲ-2-1. 이 보고서의 협약 이행 점검 프레임워크

변경된 클러스터는 장애 아동, 건강, 생활수준 등 기존 클러스터가 세분화되거나, 아동 권리와 환경이 추가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또한 새롭게 발표된 일반논평(general comment)뿐만 아니라 선택 의정서(optional protocol)까지 포괄하고 있어서 더 종합적으로 인권 상황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 역시 변경된 클러스터를 반영하여 지표체계를 11개 분류로 수정, 보완하였다.

표 Ⅲ-2-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작성 클러스터 변경 내용

대분류(기존)		대분류(변경)
1. 인권 일반 및 일반원칙 1) 일반 이행 조치(arts. 4, 42 and 44, para. 6, of the Convention) 2) 아동 연령(art. 1) 3) 일반 원칙(arts. 2, 3, 6 and 12)		1. 일반 이행 조치(제1조, 제4조, 제42조 및 제44조 6항)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arts. 7, 8, and 13-17)		2. 일반 원칙(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12조)
3. 폭력 및 학대(arts. 19, 24, para. 3, 28, para. 2, 34, 37 (a) and 39)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제7조-제8조 및 제13조-제17조)
4.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arts. 5, 9-11, 18, paras. 1 and 2, 20, 21, 25 and 27, para. 4)		4. **아동에 대한 폭력**(제19조, 제24조 3항, 제28조 2항, 제34조, 제35조, 제37조 (a), 제39조 및 아동 성매매·성착취에 관한 선택의정서(OPSC))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arts. 6, 18, para. 3, 23, 24, 26, 27, paras. 1-3, and 33)	➡	5.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제5조, 제9조-제11조, 제18조 1-2항, 제20조-제21조, 제25조 및 제27조 4항)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arts. 28-31)		6. **장애 아동**(제23조)
7. 특별 보호조치(arts. 22, 30, 32, 33, 35, 36, 37 (b)-(d), and 38-40)		7. **건강**(제6조, 제24조 및 제33조)
8. 기타(CRC/GC/25-26)		8. **생활수준**(제18조 3항, 제26조 및 제27조 1-3항)
		9. **아동 권리와 환경**(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6조-제31조)
		10.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제28조-제31조)
		11. 특별 보호조치(제22조, 제30조, 제32조-제33조, 제35조-제36조, 제37조 (b)-(d), 제39조-제40조 및 무력분쟁 아동의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AC))

3.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권 측정 지표체계 구성

다음 내용은 이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 이행 점검 프레임워크 및 지표체계이다. 다음 장(제4장)에서는 이 인권 지표 체계의 틀로 각 지표의 세부 결과를 보고한다. 지표체계는 11개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지표와 구체적인 지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Ⅲ-3-1. 2025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음영과 * 표시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항목, 이탤릭체는 2025년도 수정·추가 항목)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1. 일반 이행 조치	1-1. 인권일반 (제1조, 제4조, 42조, 44조 6항)	1-1-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1-1-1-1.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1-1-1-2.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1-1-2. 인권에 대한 인식	1-1-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1-1-2-2.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가정, 학교, 우리나라전체, 온라인공간)
			1-1-2-3. 인권의식 및 태도*
			1-1-2-4.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 인식 정도*
		1-1-3. 인권교육	1-1-3-1. 인권교육 실시 현황
			1-1-3-2. 인권교육 경험(경험유무, 장소, 도움정도)*
2. 일반원칙	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	1-2-1. 차별 경험률	1-2-1-1. 차별받은 경험*
			1-2-1-2. 차별해 본 경험*
			1-2-1-3. 차별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정도	1-2-2-1.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
		1-3-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1-3-1-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 가정사, 진학, 진로, 학습, 휴식, 여가 시간 존중)*
		1-3-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1-3-2-1.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1-3-2-2.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
		1-3-3.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	1-3-3-1.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1-3-3-2.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1-3-3-3.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방해 이유*
3. 시민적 및	3-1. 표현의 자유 (제13조)	3-1-1.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표현의 자유	3-1-1-1.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정치적 권리	3-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3-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3-2-1-1.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정도*
		3-2-2. 종교자유 보장정도	3-2-2-1.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가정, 학교)*
	3-3.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3-3-1. 결사·집회 경험률	3-3-1-1. 결사·집회 경험률(경험여부, 피해경험)*
	3-4.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3-4-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3-4-1-1. 용모·복장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경험률*
		3-4-2. 학생 정보 보호정도	3-4-2-1.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정도(가족관계 및 가정형편 등 민감 정보, 징계처분 내용, 개인 성적)*
	3-5. 정보접근권 (제17조)	3-5-1. 매체 접근율	3-5-1-1. 매체 이용률
			3-5-1-2. 유해매체 이용 경험
		3-5-2. 미디어 리터러시	3-5-2-1. 매체이용 교육 경험
			3-5-2-2. 미디어 역량
4. 아동에 대한 폭력	4-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	4-1-1. 청소년폭력 경험률	4-1-1-1. 가정(부모)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4-1-1-2. 교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4-1-1-3.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4-1-1-4. 온라인 환경(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4-1-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4-1-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4-1-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4-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제39조)	4-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4-2-1-1. 아동학대 사례건수
			4-2-1-2.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4-2-1-3. 가정 내 방임 정도*
		4-2-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4-2-2-1.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보호기관 수
			4-2-2-2.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5-1. 부모의 지도와 책임 (제5조, 제18조 1항, 2항)	5-1-1. 부모와의 관계	5-1-1-1.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5-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5-1-2-1. 보육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5-1-2-2.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5-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제20조)	5-2-1. 입양률	5-2-1-1.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
			5-2-1-2. 입양 사후관리
		5-2-2. 대안양육 비율	5-2-2-1. 보호대상아동 현황
			5-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5-2-3. *가정 밖* 청소년 서비스 이용률	5-2-3-1. 가정 밖 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5-2-3-2. 가정 밖 청소년 보호시설 수
			*5-2-3-3. 가출 후 머문 장소 및 기관 이용 경험**
	5-3.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제25조)	5-3-1.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5-3-1-1. 양육·보호 서비스 모니터링
6. 장애 아동·청소년	6-1. 장애(제23조)	6-1-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6-1-1-1.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6-1-1-2.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6-1-1-3. 학대피해 장애아동 수
		6-1-2. 통합교육	6-1-2-1. 장애아동 통합교육·보육비율
			6-1-2-2.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7. 건강	7-1.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7-1-1. 사망률	7-2-1-1.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7-2-1-2. 사고 사망률
		7-1-2. 안전에 대한 인식률	7-2-2-1. 범죄 피해율
			7-2-2-2.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
	7-2. 보건서비스 및 약물남용 (제24조, 제33조)	7-2-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7-3-1-1. 보건교사 배치율
			7-3-1-2. 어린이전문 의료기관(어린이 전문병원) 설치현황
			7-3-1-3. 정신보건 및 심리상담 기관 현황
		7-2-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7-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7-2-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7-3-3-1. 흡연율
			7-3-3-2. 음주율
			7-3-3-3. 기타 약물 사용율
			7-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7-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제24조)	7-4-1. 신체적 건강	7-4-1-1. 주관적 건강평가*
			7-4-1-2. 운동 실천율*
			7-4-1-3.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7-4-1-4.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7-4-2. 정신적 건강	7-4-2-1. 자살 및 자해 생각과 그 이유*
			7-4-2-2. 우울감*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7-4-2-3. 외로움과 고립감*
			7-4-2-4. 자아존중감*
			7-4-2-5. 고민거리 대화상대*
		7-4-3. 주관적 웰빙	7-4-3-1.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7-4-3-2. 삶의 만족도*
8. 생활 수준	8-1.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26조, 제18조 3항, 제27조 1-3항)	8-1-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8-1-1-1.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8-1-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	8-1-2-1. 취약계층아동현황(빈곤율 포함)
			8-1-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8-1-2-3. 가정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 정도
9. 아동 권리와 환경	9-1. 아동 권리와 환경(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6조-제31조)	*9-1-1.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9-1-1-1.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의 침해 및 역량
			9-1-1-2.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에 대한 우려*
		9-2-1. 기후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9-2-1-1. 기후환경 속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노력
			9-2-1-2. 환경에 대한 권리 인식 정도*
10.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0-1.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제30조)	10-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10-1-1-1.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10-1-1-2. 교원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10-1-1-3. 학생 1인당 사교육비
		10-1-2. 학교 부적응률	10-1-2-1. 학업중단율
			10-1-2-2. 학업중단 생각과 이유*
	10-2. 교육의 목표 (제29조)	10-2-1.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10-2-1-1. 학교생활 만족도*(친구간 존중, 교사의 존중, 수업의 재미, 학교 즐거움)
		10-2-2. 진로·직업교육	10-2-2-1. 진로교육 현황
			10-2-2-2. 직업교육 현황
	10-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제31조)	10-3-1. 여가·문화·활동 인프라 및 이용만족도	10-3-1-1. 청소년 여가·문화·활동시설 수*
			10-3-1-2.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만족도*
		10-3-2.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 정도	10-3-2-1.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도
			10-3-2-2.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10-3-2-3. 하루 평균 학습시간*
11. 특별 보호	11-1. 이주배경	11-1-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11-1-1-1. 아동·청소년 난민 수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조치	아동·청소년	인구 수	11-1-1-2. 탈북 난민 아동·청소년 수
			11-1-1-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수
		11-1-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11-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11-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차별경험
			11-1-2-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구금 현황
		11-1-3.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11-1-3-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이용률
	11-2. 소년 사법	11-2-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현황	11-2-1-1.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시설 수용인원수
			11-2-1-2. 소년범죄자의 교도소 수용 현황
		11-2-2. 인권친화적 사법환경	11-2-2-1.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선정 수
			11-2-2-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용률
			11-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11-2-2-4. 소년보호사건 항고 및 재항고 접수 건
		11-2-3. 회복적 프로그램 (다이버전) 운영	11-2-3-1.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 참여자 수
			11-2-3-2. 사회 내 처우 청소년 수
	11-3. 경제적 착취	11-3-1. 청소년노동조건 수준	11-3-1-1. 청소년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11-3-1-2.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
			11-3-1-3. 청소년 실업률 추이
		11-3-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노력	11-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11-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11-3-2-3.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률
	11-4. 성적 착취	11-4-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수준	11-4-1-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11-4-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현황
		11-4-2.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정도	11-4-2-1.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현황
			11-4-2-2.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 출처: 유민상 외(2024).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음.

4.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조사 방법 개요

1) 조사개요

(1) 표본설계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의 표본설계는 리서치 회사의 통계전문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먼저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조사모집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종시,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 아동·청소년들로 설정하였다. 표집틀은 2024년 4월 기준 한국교육통계 DB로 설정했는데, 표집틀의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수는 3,952,897명(100.0%)이었고, 이 중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수는 1,315,722명(33.3%), 중학교 1~3학년 학생수는 1,332,850명(33.7%),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수는 1,304,325명(33.0%)이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4e; 강현철, 2025, p.1).

목표 표본 수는 조사 비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순무작위추출 기준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서 약 ±1.0%P인 9,000명(초등학교 4~6학년은 2,996명, 중학교 1~3학년은 3,034명, 고등학교 1~3학년은 2,970명)으로 설정하였다(강현철, 2025, pp.5-6).

표집은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을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먼저 17개 시도(지역)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교급 및 학교유형)을 기준으로 층화하였다. 이때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성화고는 17개 시도가 아니라 5개 권역으로 층화하였고, 자율고, 특수목적고는 17개 시도별 층화를 실시하지 않고 1개 권역으로 통합하였다. 다음 층별 표본배분은 단순비례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층에 최소 1개 이상의 학교가 배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변형비례방식으로 배분하였다(강현철, 2025, pp.5-9). 다음 표본의 추출은 각 층별로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이고 학급별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 리스트에서 크기비례(PPS) 방식으로 학교를 추출하고, 추출된 학교에서 1개 학년을, 추출된 학년에서 1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한 후 학급 청소년들 모두를 조사대상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이때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 학급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추출된 학교에 대한 섭외가 힘들 경우 같은 층에서 다른 학교를 무작위로 추출, 대체하였다. 그리고 표본 추출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성별 층화도 함께 고려하였다(강현철, 2025, pp.9-10).

표 Ⅲ-4-1.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학생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서울	450	486	300	150	150	150
경기	825	729	525			150
인천	150	162	150			
강원	75	81	75			150
충북	75	81	75			
충남	150	162	75			
대전	75	81	75			
세종	75	81	75			
경북	150	162	75			150
경남	225	243	150			
부산	150	162	75			
대구	150	162	75			
울산	75	81	75			
전북	75	81	75			150
전남	75	81	75			
광주	75	81	75			
제주	75	81	75			
합계	2,925	2,997	2,100	150	150	750

* 출처: 강현철(2025).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표본설계보고서. 내부자료. p.8

※ 총계: 9,072명

(2) 통계청 변경 승인 및 기관 IRB 승인

우선 전문가 자문, 정책실무협의회, 프리테스트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수정된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설문 구성내용에 대해, 통계청 행정자료 우선활용판단 검토 및 변경 승인을 받았다. 4월 중순경에 통계청 행정자료 우선활용시스템에 설문지, 항목별 판단결과표 등을 업로드하여 자체판단으로 우선활용 행정자료가 없음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통계청 통계변경승인은 통계청 통계변경 승인시스템에 조사지침서, 표본설계보고서, 설문지 문항변경 내역서, 결과표 서식 등을 업로드하여 통계청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어 통계청 변경승인을 거친 설문지를 포함한 조사계획에 대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IRB 승인을 받았다. 4월 말~5월 초에 본원 IRB위원회에 생명윤리 준수서약서, 연구윤리교육이수증, 연구계획서, 설문지, 동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기관 IRB 승인(202504-HR-고유-006)을 받았다.

표 Ⅲ-4-2.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 항목

(밑줄과 기울기 표기는 수정·추가 사항)

조 사 내 용			문항 번호	
			초등용	중·고등용
1. 일반 이행조치	인권일반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33(1~3)	43(1~3)
		인권 존중정도(가정, 학교, 사회, 온라인공간)	34(1~4)	44(1~4)
		인권 의식 및 태도 (결정능력, 사회참여, 자치조직, 표현의 자유, 차별-경제적 이유, 성별, 민족/인종, 성정체성/성적지향)	35(1~7)	45(1~8)
		일상생활에서의 인권 보장 정도	-	53(1~10)
		인권교육 경험	36	46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인식, 태도, 행동)	36-1(1~3)	46-1(1~3)
2. 일반원칙	일반원칙	차별 피해 경험(성별, 학력, 연령, 외모, 경제적 이유, 동네·지역, 종교, 가족유형, 장애, 인종)	37(1~10)	47(1~10)
		차별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37-1	47-1
		차별 가해 경험(성별, 학력, 연령, 외모,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가족유형, 장애, 인종)	38(1~10)	48(1~10)
		의사결정시 보호자의 태도(가정사, 진학, 진로, 학습, 휴식, 여가시간 존중)	4(1~3)	4(1~6)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	6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	5(1)	7(1)
		징계시 의견 수렴	-	7(5)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6	8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7	9
		참여 방해 요인	8	10
3.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자율성, 자격조건, 활동여건, 의견반영)	-	5(1~4)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	-	11(2)
		종교의 자유 보장수준(학교)	-	12,12-1
		종교의 자유 보장수준(가정)	-	11(1)

조 사 내 용			문항 번호	
			초등용	중·고등용
	결사 및 집회의 자유	결사·집회 경험률	-	13(1~2)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	13-1
	사생활의 보호	학교에서의 사생활 보호(용모, 복장, 소지품)	-	14(1~3)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가족관계 및 가정형편 등 민감 정보 공개, 징계처분 내용 공개, 시험성적 공개)	5(2~3)	7(2~4)
4. 아동에 대한 폭력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가정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체벌, 모욕적인 말·욕설)	9(1~2)	15(1~2)
		학교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체벌, 모욕적인 말·욕설)	9(3~4)	15(3~4)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욕설, 구타, 따돌림, 금품갈취, 성추행, 강제 심부름)	10(1~6)	16(1~6)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 경험률	*11(1~5)*	*17(1~5)*
		성적 피해 경험률 및 도움 제공자	26,26-1	36,36-1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가정 내 방임 유형 및 정도(야간시간 방임, 비위생적 의복·침구사용, 질병 무관심, 결식시 방치, 결석 무관심)	12(1~5)	18(1~5)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가출 여부*	*14*	*20*
		가출 경험 횟수	*14-1*	*20-1*
		가출 기간	*14-2*	*20-2*
		가출 이유	*14-3*	*20-3*
		가출 후 지낸 장소	*14-4*	*20-4*
		가출 후 기관 이용 경험	*14-5(1-6)*	*20-5(1-6)*
7. 건강	생존 및 발달	거주지역의 안전수준(범죄, 교통사고)	15(1-2)	21(1-2)
		거주지역(동네)의 상황(안전, 놀 장소, 도와줄 사람, *지역 의사결정 과정 참여*)	16(1~3)	*22(1~4)*
		가정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 정도	13	19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17	23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	24
		운동 실천율	18	25
		수면시간	19	26
		수면부족 여부	20	27
		수면부족 이유	20-1	27-1
		자살에 대한 생각	-	28

조 사 내 용			문항 번호	
			초등용	중·고등용
		자살 생각 이유	-	28-1
		자해 생각 및 시도 경험	-	29
		우울감	21(1~3)	30(1~3)
		외로움	25(1~3)	34(1~3)
		고립감	25(4)	34(4)
		고립감을 느낀 기간	25-1	34-1
		자아존중감	21(4~6)	30(4~6)
		고민거리 대화상대	22	31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	23	32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24(1~6)	33(1~6)
	주관적 웰빙	행복도	1	1
		행복하지 않은 이유	1-1	1-1
		삶의 만족도	2,3	2,3
9. 아동 권리와 환경	아동 권리와 환경	디지털(온라인) 환경 인식	41(1~2)	51(1~4)
		디지털(온라인) 환경에서의 인권침해 생각	42(1~4)	52(1~4)
		기후변화 인식	40(1~5)	50(1~5)
10.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교육에의 권리	학업중단 생각 여부	27	37
		학업중단 생각 이유	27-1	37-1
		장애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39(1~4)	49(1~4)
	교육의 목표	학교생활 만족도(친구 간 존중, 교사의 존중, 수업의 재미, 학교 즐거움)	28(1~4)	38(1~4)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	29(1~4)	39(1~4)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만족도	29-1	39-1
		하루평균 여가활동 시간	30	40
		여가활동 만족도	32	42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32-1	42-1
		하루평균 학습시간	31	41
11. 특별 보호 조치	경제적 착취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아르바이트 경험, *부당처우 경험*)	-	35, *35-1(1~9)*
배경문항	출생년도, 가족구성, 부모님 학력,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 비고: 설문 상의 클러스터 구분은 2025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클러스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출처 : 유민상 외(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pp. 109-112 표를 수정보완하여 제시하였음.

(3) 조사준비 및 조사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조사원은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원 경력 1년 이상, NYPI 횡단조사 및 학교방문조사 유경험자, 표본학교 인근 거주자 우선 선발, 최종 조사원 교육 A등급 이수 완료 및 보안 각서 작성한 조사원 등의 단계를 거저 선발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5월 7일~13일에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5개 실사 사무소에서 조사원 지침서와 설문지를 바탕으로 조사에 대한 이해, 조사 진행 과정, 설문 문항별 지침, 조사 진행시 유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실시되었다(리서치 앤 리서치, 2025a, 2025b).

조사는 사전에 조사 협조 공문을 통해 섭외된 조사대상 학교를 훈련된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대상으로 학급 청소년들에게 종이 설문지에 자기기입식(self-reported)으로 기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완료 후 현장 에디팅을 실시하여 항목 무응답, 응답 오류 등을 최소화하였다. 여러 현실적 사정으로 학교 방문 조사가 어려울 때는 30% 이내에서 응답 청소년이 직접 설문지를 서류봉투에 넣어 제출하는 방식의 우편조사도 병행하였다. 조사는 2025년 5월 14일부터 시작했으며 7월 7일까지 완료하였다(리서치 앤 리서치, 2025c, 2025d).

조사 완료 후 설문지는 지역 실사팀의 1차 에디팅, 본사 에디터의 2차 에디팅을 거쳐 응답 오류 등을 점검하였고, 에디팅이 끝난 설문지는 리서치 기관의 속도 펀칭 프로그램을 통해 더블 펀칭하였으며, 펀칭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통해 타당도를 제고하였다(리서치 앤 리서치, 2025c, 2025d). 이후 최종 검증 완료된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 데이터를 완성하였다(강현철, 2025, p.11).

(4) 최종 조사 샘플 및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그 결과 최종 완료된 응답 사례 수는 8,764명(100.0%)이었다. 하위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학생 51.5%(4,510명), 여학생 48.5%(4,254명)였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3.3%(2,917명), 중학교 33.7%(2,955명), 고등학교 33.0%(2,892명)였으며, 고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일반고 중 일반고, 자율고 중 일반고, 특목고 중 과학고, 국제고, 외고) 82.5%(2,384명), 특성화계고 17.5%(507명)의 특성을 나타냈다. 지역 규모별로는 대도시 39.4%(3,455명). 중소도시 48.4%(4,242명), 읍면지역 12.2%(1,067명)였고, 가

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 90.3%(7,854명), 한부모가정 7.9%(684명), 조손가정 0.9%(76명), 기타 1.0%(88명)의 특성을 나타냈다. 주관적 학업 성적별로는 상 37.3%(3,254명), 중 41.0%(3,576명), 하 21.6%(1,884명)였고, 주관적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 60.7%(5,282명), 중 31.9%(2,774명), 하 7.5%(651명)의 특성을 나타냈다.

표 Ⅲ-4-3.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8,764	100.0
성별	남학생	4,510	51.5
	여학생	4,254	48.5
학교급	초등학교	2,917	33.3
	중학교	2,955	33.7
	고등학교	2,892	33.0
고교유형	일반계고	2,384	82.5
	특성화계고	507	17.5
지역규모	대도시	3,455	39.4
	중소도시	4,242	48.4
	읍면지역	1,067	12.2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7,854	90.3
	한부모가정	684	7.9
	조손가정	76	0.9
	기타	88	1.0
주관적 학업성적	상	3,254	37.3
	중	3,576	41.0
	하	1,884	21.6
주관적 경제적 수준	상	5,282	60.7
	중	2,774	31.9
	하	651	7.5

5. 요약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 측정 프레임워크에 대해 소개하였다. 11개의 권리 영역과 120여개의 지표로 지표체계를 구성하였고, 주관적 응답은 주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를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설문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8,764명이 참여하였다.

이 장에서의 시사점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삶도 함께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측정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디지털 환경과 기후 변화와 이에 대한 인식, 경험, 교육 정도 등은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이나 아직 공고한 조사나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직은 이들 영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국가승인통계를 통해 조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측정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측정이 필요하다. 우리 연구는 학교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장애 여부에 대한 측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한 측정은 국가승인통계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못한 부분이다. 소수 사례로 인권 침해에 대해 이야기되는 대상의 권리 수준이나 삶의 질은 측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측정되지 않으면 이들을 위한 정책이 발전하기도 어렵다(Stiglitz, Sen, and Fitoussi, 2009). 따라서 측정되지 않은 대상이 누구인지 살피고, 적극적으로 인권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환류 강화가 필요하다. 이 지표체계가 단순히 스냅샷을 찍는 것이 아닌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다음 유엔 심의, 더 나아가 해당 권리 영역의 실현과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이 지표 결과를 근거로 정책환류가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아직 이 부분에 있어 지표가 현실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아 보인다. 이를 개선해야 사후적인 아동·청소년 인권에의 대응이 아니라,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1. 개요
2. 일반 이행 조치
3. 일반 원칙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5. 아동에 대한 폭력
6.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7.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
8. 건강
9. 생활수준
10.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환경
11.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2. 특별 보호조치

4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156)]

개요(Abstract)

이 장에서는 여러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알아본다. 행정자료와 「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취합된 120여개의 지표를 새로운 CRC 국가보고서 클러스터 틀에 맞추어 종합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심리·정서적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격차가 삶의 질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과 기후변화 속에서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체계는 아직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아동·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체계를 재정비하고, 회복력과 포용성을 중심으로 한 아동·청소년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156) 이 장의 1절, 7절, 8절, 9절, 10절은 유민상 선임연구위원, 2절, 3절, 4절은 이경상 선임연구위원, 5절, 6절은 서고운 연구위원, 11절, 12절은 유성렬 교수(백석대학교)가 작성하였음.

1. 개요

이 장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의 인권 수준을 행정자료와 설문자료 등 통계 지표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인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단일한 지표로 측정하여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인권 수준을 보여준다. 이를 제시하는 방법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가이드라인의 권리 클러스터를 따르고 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각 국가 심의 과정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아동·청소년의 인권 수준을 모두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국제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수준에 대해 총괄적이면서도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을 보고하는 틀이 11개로 변경되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국가심의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인데, 기존의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영역이 '장애', '건강', '생활수준'으로 분화가 되어 별도의 클러스터로 나뉘어졌다. '아동권리와 환경'이라는 클러스터도 추가되었는데 2020년대에 발간된 일반논평 25호와 26호를 반영하여 디지털 환경과 기후변화 및 환경권에 대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클러스터를 세분화하고, 각 장의 의의와 시사점을 별도로 보고하였다. 이는 상징적이고 총괄적인 권리 개념이 점차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며, 전통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험으로부터의 아동권리 보장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은 12개 절로 이루어져 있고 양이 방대하다. 독자들이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절의 앞에는 클러스터의 개요와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추가하였다. 각 클러스터의 마지막에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지표 결과와 그 의미,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이 무엇인지 정리하였다. 다음 절부터는 각 인권 클러스터별 현황을 통계 지표로 알아본다.

2. 일반 이행 조치(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일반 이행 조치 클러스터 개요 및 주요 내용 요약

○ 일반 이행 조치 클러스터 개요

- 일반 이행 조치는 대한민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모든 조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법적·행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 절은 관련된 지표를 담고 있음.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조는 당사국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 절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의 전반적인 아동·청소년 권리 이행 의지와 시스템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할 것임.

○ 일반 이행 조치 클러스터의 주요 내용 요약

- 아동·청소년의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기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20.2%, 학생인권조례 9.8%, 국가인권위원회 23.1%로 낮게 나타났으며, 인지율이 감소 추세에 있음.
- 아동·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비율은 가정(96.7%), 학교(95.0%), 우리나라 전체(86.0%), 온라인 공간(84.1%)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타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도 높은 편이었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에는 96.2%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39.8%, 매우 그렇다 56.4%)고 응답하였고, '모든 인간은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에는 91.0%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36.4%, 매우 그렇다 54.6%)고 응답하였음.
- 아동·청소년의 2025년 인권 교육 경험 비율은 40.9%였으며, 인권 교육이 어떠한 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동의 정도는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에 도움된다는 90.8%,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에 도움된다는 91.2%가,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에 도움된다는 87.9%였음.

1) 인권일반

(1) 인권 인프라 구축 정도

①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제도[157]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주요 법률들의 주요 제·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법률별로는 「아동복지법」 1건, 「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 1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건, 「청소년보호법」 1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건, 「대안교육기관에관한법률」 1건, 「초·중등교육법」 2건,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3건이 개정되었고, 인권영역별로는 아동에 대한 폭력 관련 7건,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관련 3건, 건강 관련 2건이 개정되었다(표 Ⅳ-2-1). 아동학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이버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대안교육기관 학생 지원, 교내 디지털 교과서 활용 규정 강화,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 빈곤아동 보건의료 지원, 영업자 등의 청소년 연령 확인 부담 완화 등의 주제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 수행되었다.

표 Ⅳ-2-1. 아동·청소년 법령 제·개정 현황

법령명	제·개정일	주요 내용	영역
아동복지법	개정 2025.4.1. 시행 2025.10.2.	•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의 재발 등의 경우에는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호대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의료 및 상담지원과 자산관리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당 시설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④ 아동에 대한 폭력
아동의빈곤예방 및지원등에관한 법률	개정 2025.4.1. 시행 2025.10.2.	• 기존의 복지·교육·문화 외에 보건의료를 아동빈곤정책의 범위로 명확히 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의 아동빈곤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⑦ 건강

157) 아동·청소년 법률 제·개정 현황은 인출일인 2025년 10월 2일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대체사이트인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에서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의 1년 동안 제·개정된 아동·청소년 법률들을 검색하여 법률별 제·개정 일과 제·개정 이유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법령명	제·개정일	주요 내용	영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 2024.12.20. 시행 2025.6.21.	• 아동학대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그 미수범에 대하여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기존의 학교·학원의 장과 그 종사자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④ 아동에 대한 폭력
청소년보호법	개정 2025.4.22. 시행 2025.4.22.	•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 방식으로 변경하여 나이 표기 방식의 통일성을 기하고, 나이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영업자 등의 나이 확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숙박업자 등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숙박업자 등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숙박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⑦ 건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2024.10.16. 시행 2025.4.17.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야간·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확대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함.	④ 아동에 대한 폭력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2025.4.22. 시행 2025.4.22.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 치료감호 기간에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 중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여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신고의무 대상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뿐만 아니라 보수교육 과정에도 포함시키고,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	④ 아동에 대한 폭력

법령명	제·개정일	주요 내용	영역
		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법률	개정 2025.1.21. 시행 2025.7.22.	•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자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발생하는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⑩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초·중등교육법	개정 2025.8.14. 시행 2025.8.14.	•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의 교육책임 실현을 위해 교육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민적 합의 속에서 정립하자는 취지임. 그러나 법령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개념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교과서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 이를 근거로 디지털교과서에 예산을 투입하고 일선 학교에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문해력 하락 및 스마트 기기 중독 등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음. 이에 교과용 도서에 관한 정의 및 범위 등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교육 자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함.	⑩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초·중등교육법	개정 2025.9.16. 시행 2026.3.1.	• 현행법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 그런데 그동안 학생의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하여 해당 권한 범위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최근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동·청소년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판단한 바 있음. 이를 고려하여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⑩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법령명	제·개정일	주요 내용	영역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으로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육기본법」에 따른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 2025.1.21. 시행 2025.1.21.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바, 교육감이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시행계획의 내용이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가 수립하는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현장조사, 문서열람, 관계인 대상 출석·진술·조사협조 및 자료제출 요청 권한이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임.	④ 아동에 대한 폭력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 2025.1.31. 시행 2025.8.1.	•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영상 등의 삭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④ 아동에 대한 폭력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 2025.3.18. 시행 2025.9.19.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에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④ 아동에 대한 폭력

* 출처: 「아동복지법」.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에서 2025년 10월 2일 인출.
「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등에관한법률」.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에서 2025년 10월 2일 인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에서 2025년 10월 2일 인출.
「청소년보호법」.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에서 2025년 10월 2일 인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에서 2025년 10월 2일 인출.
「대안교육기관에관한법률」.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에서 2025년 10월 2일 인출.
「초·중등교육법」.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r에서 2025년 10월 2일 인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에서 2025년 10월 2일 인출.

* 주: 1)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검색한 제·개정 법령을 아동, 청소년, 교육 관련 법률 순으로 배열한 후 제·개정 일과 제·개정 이유를 제시하였음.
2) 영역은 이 연구의 인권지표체계의 대분류 영역인 ① 일반 이행 조치, ② 일반 원칙, ③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④ 아동에 대한 폭력, ⑤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⑥ 장애 아동, ⑦ 건강, ⑧ 생활수준, ⑨ 아동 권리와 환경, ⑩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⑪ 특별 보호조치 중 어디에 해당되는 지를 제시하였음.

②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2024년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비율은 3.3%로 2023년 4.0%에 비해 0.7% 감소하였다(표 Ⅳ-2-2). 여기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기재부의 각 년도별 '나라살림 예산' 자료 중에서 부처별 해당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예산을 합한 것을 활용하였다(김영지, 유설희,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2021: 99-100; 김영지, 최홍일, 유성렬, 이은주, 2022: 75-76; 유민상 외, 2024: 119).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비율의 추세는 2019년 3.5%, 2020년 3.6%, 2021년 3.2%, 2022년 3.7%, 2023년 4.0%, 2024년 3.3%로 최근 수년간 증감을 보이고는 있으나 3% 이상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표 Ⅳ-2-2).

표 Ⅳ-2-2.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2019~2024년)

(단위 : 천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가 전체 예산(A)		331,777,014,900	356,568,644,000	380,850,870,030	421,416,033,950	446,242,181,700	449,526,707,000
아동·청소년예산	유아·초중등교육	59,401,432,000	60,324,475,000	58,428,301,000	70,554,438,000	80,379,069,000	73,370,563,000
	소년사법	23,864,000	27,043,000	27,407,000	29,268,000	31,037,000	32,334,000
	아동복지	2,385,469,000	2,541,321,000	2,526,208,000	2,857,310,000	2,493,606,000	2,439,943,000
	보육	5,689,214,000	5,872,783,000	5,959,703,000	5,893,110,000	6,678,017,000	7,609,545,000
	청소년	99,909,000	122,217,000	126,724,000	156,391,000	123,501,000	111,576,000
	소계(B)	67,558,216,000	68,888,339,000	67,068,343,000	79,490,517,000	89,705,230,000	83,563,961,000
(B)/(A)*100(%)		20.3	19.3	17.6	18.9	20.1	18.6
아동·청소년 인구(명)		7,964,880	7,710,946	7,483,944	7,271,460	7,077,206	6,876,330
1인당 지출비용(천원)		8,487	8,945	8,962	10,932	12,675	12,152
GDP(국내총생산)		1,919.9조원	1,933.2조원	2,071.6조원	2,161.7조원	2,236.3조원	2,556.9조원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 비율(%)		3.5	3.6	3.2	3.7	4.0	3.3

* 예산 출처: 기획재정부 (2019-2020). 나라살림 예산.
기획재정부 (2021-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index)에서 2025년 10월 2일 인출(업데이트).
* 국가 전체 예산(A)은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 「나라살림 예산개요」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임.
* 아동 · 청소년 예산 산출식: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 기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051항 유아 및 초중등교육)
+ (소년사법 예산: 1632항 소년보호)
+ (아동복지 예산: 1300항 아동보호 및 복지 강화 + 2539항 아동수당 지원)
+ (보육 예산: 3100항 보육지원강화)
+ (청소년 예산: 2200항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 + 2136항 아동·여성안전정책지원 + 2137항 아동·청소년 성보호정책지원)

* 아동 · 청소년 인구(명) 출처: 통계청 KOSIS(2019-2023).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중 0세~17세 인구수의 합.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entrType=#SelectStatsBoxDiv에서 2024년 8월 14일 인출.
행정안전부(2024).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 중 0세~17세 인구수의 합. https://jumin.mois.go.kr/# 에서 2025년 10월 8일 인출(인출일인 2025년 10월 8일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통계청 KOSIS 자료가 활용가능하지 않아 행정안전부(2024).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함).
* 1인당 지출비용(천원) 산출식: 아동 · 청소년 예산(총계)(B)/아동·청소년인구(명)
* GDP(국내총생산)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2019-2024).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에서 2025년 10월 2일 인출(업데이트).
* GDP 대비 아동 · 청소년 예산 비율(%) 산출식: 아동 · 청소년 예산 소계(B)/GDP×100

(2) 인권에 대한 인식

①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살펴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는 '모른다' 31.3%, '이름만 들어봤다' 48.5%,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는 20.2%였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모른다' 45.9%, '이름만 들어봤다' 44.3%,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는 9.8%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모른다' 23.6%, '이름만 들어봤다' 53.3%,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는 23.1%였다(표 Ⅳ-2-3).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모두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의 비율이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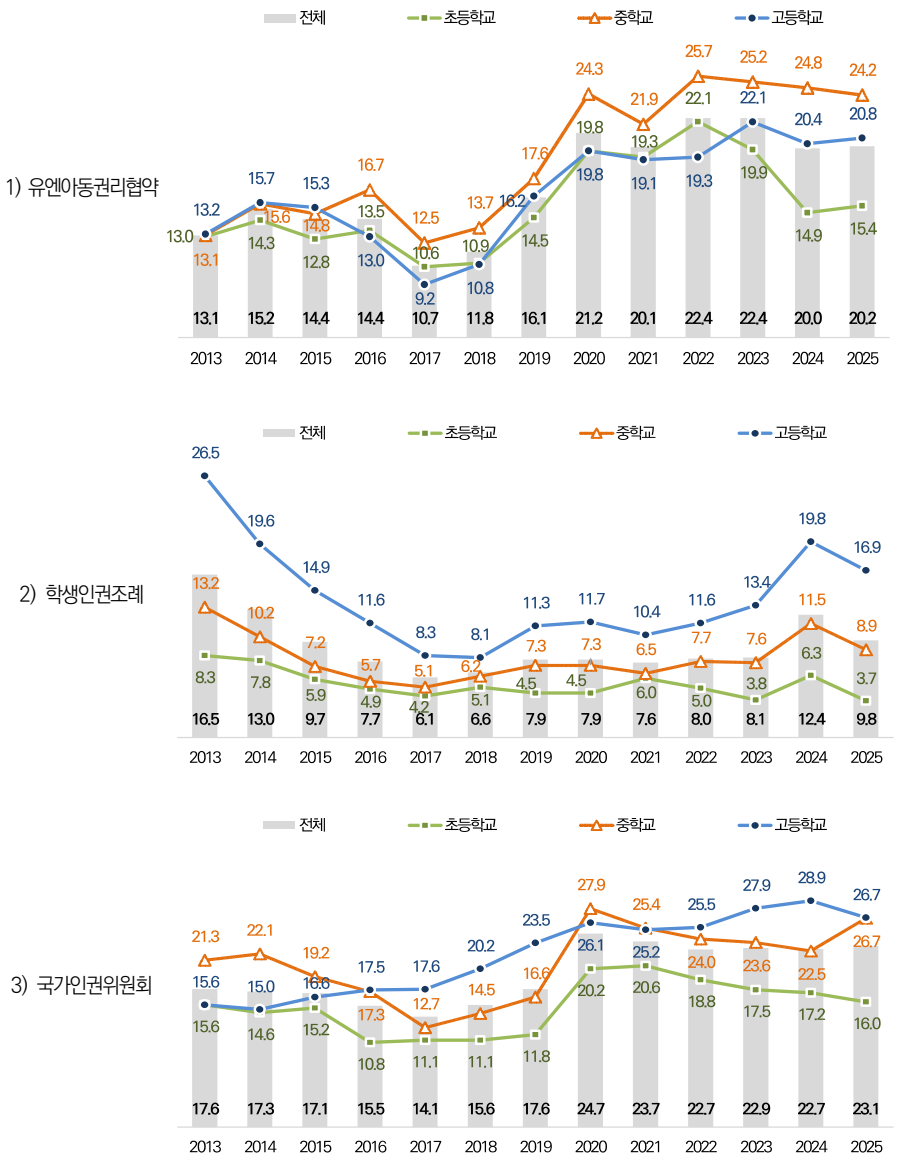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는 2013년부터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증가하다가 작년에 감소했는데 올해 다시 약간 증가하였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는 2013년부터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증가하다가 올해 약간 감소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2013년부터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약간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약간 증가하였다(그림 Ⅳ-2-1).

표 Ⅳ-2-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2025년)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전체		31.3	48.5	20.2	100.0(8,737)	
	성별	남학생	32.1	46.9	21.0	100.0(4,496)	10.104**
		여학생	30.4	50.3	19.3	100.0(4,241)	
	학교급	초등학교	46.9	37.7	15.4	100.0(2,910)	509.918***
		중학교	21.4	54.3	24.2	100.0(2,941)	
		고등학교	25.6	53.6	20.8	100.0(2,885)	
	지역규모	대도시	28.4	49.7	22.0	100.0(3,447)	33.074***
		중소도시	34.0	47.1	18.9	100.0(4,229)	
		읍면지역	30.1	50.6	19.3	100.0(1,061)	
2) 학생인권조례	전체		45.9	44.3	9.8	100.0(8,725)	
	성별	남학생	48.3	42.0	9.7	100.0(4,493)	23.606***
		여학생	43.2	46.8	10.0	100.0(4,233)	
	학교급	초등학교	62.7	33.6	3.7	100.0(2,903)	701.908***
		중학교	43.8	47.3	8.9	100.0(2,940)	
		고등학교	31.0	52.1	16.9	100.0(2,883)	
	지역규모	대도시	45.5	45.5	9.0	100.0(3,440)	29.638***
		중소도시	47.5	43.0	9.5	100.0(4,223)	
		읍면지역	40.7	45.8	13.6	100.0(1,062)	
3) 국가인권위원회	전체		23.6	53.3	23.1	100.0(8,727)	
	성별	남학생	26.4	51.7	21.9	100.0(4,492)	40.219***
		여학생	20.7	54.9	24.4	100.0(4,235)	
	학교급	초등학교	31.2	52.8	16.0	100.0(2,903)	215.060***
		중학교	21.6	51.8	26.7	100.0(2,940)	
		고등학교	18.0	55.3	26.7	100.0(2,884)	
	지역규모	대도시	22.3	52.8	24.9	100.0(3,442)	23.819***
		중소도시	25.1	53.8	21.1	100.0(4,224)	
		읍면지역	21.9	52.4	25.7	100.0(1,061)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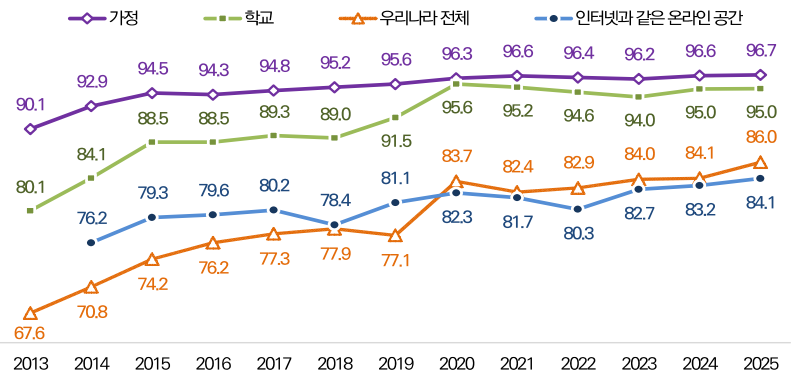


* 주: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Ⅳ-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2013~2025년)

②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공간, 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들 중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가정(96.7%), 학교(95.0%), 우리나라 전체(86.0%), 온라인 공간(84.1%) 순으로 높았다(그림 Ⅳ-2-2).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공간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약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그림 Ⅳ-2-2). 전년도에 비해 학교는 변화가 없었고 가정,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공간은 약간 높아졌다.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2-2.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전체 영역(2013~2025년)

가.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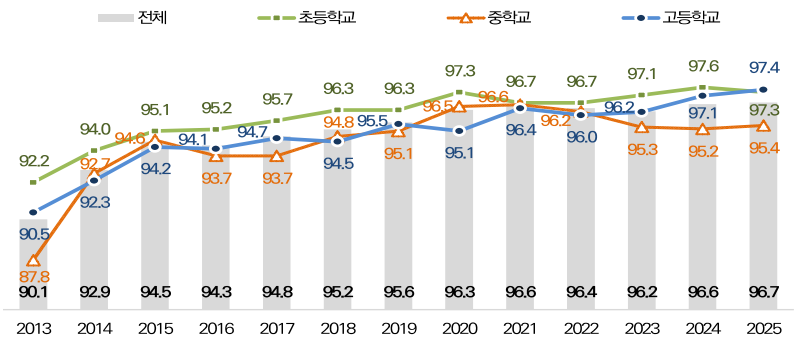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가정에서의 자신의 인권 존중 비율은 96.7%로 매우 높았는데 존중받는 편 35.9%, 매우 존중 60.8%였다. 매우 존중 응답의 경우 남학생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표 Ⅳ-2-4). 학교급별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수년간 초등학생은 약간 증가하다가 올해 약간 감소하였고, 중학생은 약간 감소하다가 올해 약간 증가하였으며, 고등학생은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2-3).

표 Ⅳ-2-4.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57(0.57)	0.5	2.8	35.9	60.8	100.0(8,736)	
성별	남학생	3.59(0.57)	0.7	2.4	34.5	62.5	100.0(4,494)	21.573***
	여학생	3.55(0.57)	0.3	3.2	37.4	59.1	100.0(4,242)	
학교급	초등학교	3.65(0.55)	0.5	2.2	28.7	68.6	100.0(2,909)	134.162***
	중학교	3.52(0.61)	0.7	3.9	38.0	57.4	100.0(2,945)	
	고등학교	3.54(0.56)	0.3	2.3	41.0	56.4	100.0(2,882)	
경제적 수준	상	3.66(0.53)	0.4	1.8	29.7	68.1	100.0(5,265)	412.406***
	중	3.48(0.59)	0.5	3.3	43.7	52.5	100.0(2,770)	
	하	3.26(0.68)	1.5	9.1	51.8	37.7	100.0(650)	

*p 〈 .05, **p 〈 .01, ***p 〈 .001.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2-3.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2013~2025년)

나.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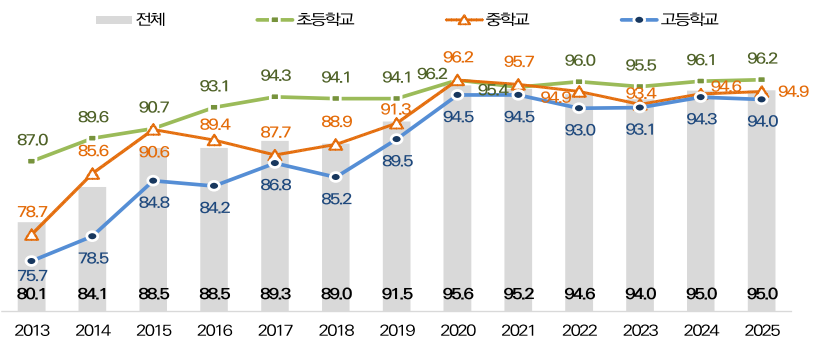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학교에서의 자신의 인권 존중 비율은 95.0%로 매우 높았는데, 존중받는 편 51.5%, 매우 존중 43.6%였다. 매우 존중 응답의 경우 남학생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표 Ⅳ-2-5). 학교급별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수년간 초등학생은 약간 증가하였고, 중학생도 약간 증가하였으며, 고등학생은 약간 증가하다가 올해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2-4).

표 Ⅳ-2-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38(0.61)	0.9	4.1	51.5	43.6	100.0(8,734)	
성별	남학생	3.39(0.63)	1.3	4.2	48.4	46.1	100.0(4,493)	48.041***
	여학생	3.36(0.58)	0.5	4.0	54.7	40.9	100.0(4,241)	
학교급	초등학교	3.47(0.59)	0.7	3.1	44.4	51.8	100.0(2,909)	
	중학교	3.35(0.60)	0.9	4.2	54.3	40.6	100.0(2,942)	127.789***
	고등학교	3.31(0.62)	1.1	4.9	55.7	38.3	100.0(2,884)	
경제적 수준	상	3.44(0.60)	0.6	3.5	47.1	48.7	100.0(5,264)	
	중	3.32(0.60)	1.0	4.2	57.2	37.7	100.0(2,770)	190.987***
	하	3.15(0.65)	2.3	7.7	62.7	27.3	100.0(650)	

*p 〈 .05, **p 〈 .01, ***p 〈 .001.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2-4.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2013~2025년)

다. 우리나라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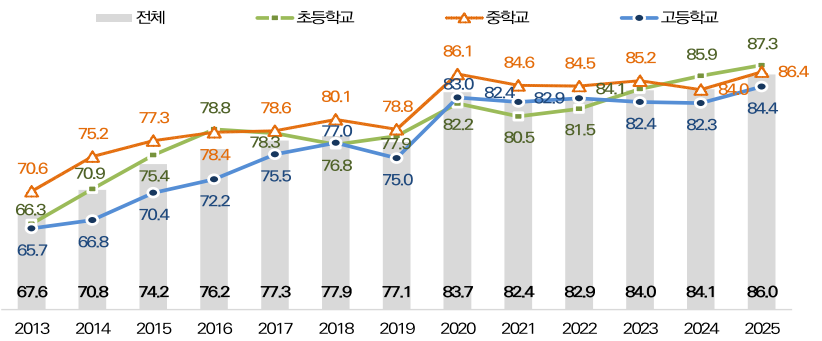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체에서의 자신의 인권 존중 비율은 86.0%로 매우 높았는데 존중받는 편 57.2%, 매우 존중 28.8%였다. 매우 존중 응답의 경우 남학생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표 Ⅳ-2-6). 학교급별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수년간 초등학생은 약간 증가하였고, 중학생은 전년도에 약간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약간 증가하였으며, 고등학생도 전년도에 약간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2-5).

표 Ⅳ-2-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12(0.70)	2.4	11.5	57.2	28.8	100.0(8,725)	
성별	남학생	3.11(0.75)	3.5	12.4	53.5	30.6	100.0(4,490)	81.507***
	여학생	3.14(0.64)	1.3	10.6	61.2	26.9	100.0(4,234)	
학교급	초등학교	3.20(0.71)	2.3	10.4	52.1	35.2	100.0(2,905)	
	중학교	3.11(0.69)	2.5	11.1	58.8	27.6	100.0(2,937)	100.815***
	고등학교	3.06(0.68)	2.5	13.0	60.8	23.6	100.0(2,882)	
경제적 수준	상	3.18(0.69)	2.1	10.3	55.1	32.5	100.0(5,260)	
	중	3.09(0.66)	2.1	11.4	61.9	24.5	100.0(2,765)	192.526***
	하	2.83(0.78)	6.0	21.9	55.1	17.0	100.0(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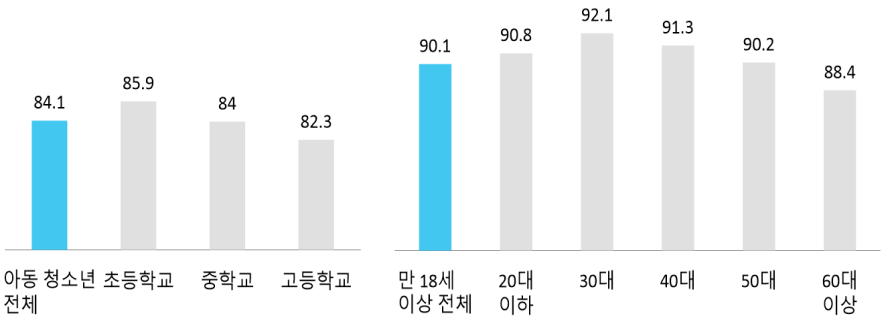
*p < .05, **p < .01, ***p < .001.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2-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2013~2025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본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실태조사'의 2024년 조사 결과 중 우리나라 전체에서의 자신의 인권 존중 비율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은 84.1%, 성인은 90.1%로 나타나 아동·청소년이 성인보다 약간 낮았다(그림 Ⅳ-2-6).



* 출처: 유민상 외 (2024).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p.126.
국가인권위원회 (2024). 2024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 p.222.

* 주: 1)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2) 2024 국가인권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전국에 걸친 표본 추출을 통해 얻은 표본 가구의 **만 18세 이상 국민이며,** 최종 조사 표본은 9,137가구의 15,597명이었다. 조사 기간은 2024년 7월에서부터 2024년 9월까지였다. 조사 방법은 TAPI(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 방식의 일대일 면접조사로 이루어졌으며, 부득이한 경우 유치조사와 웹-모바일 방식의 조사가 함께 병행되었다.
3) 국가인권실태조사는 당해년도 11월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는 익년 1월에 공표되어 당해년도 데이터 비교가 힘들므로 전년도인 2024년도 결과를 기준으로 제시함.

그림 Ⅳ-2-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우리나라 전체: 아동·청소년과 성인 비교

라. 온라인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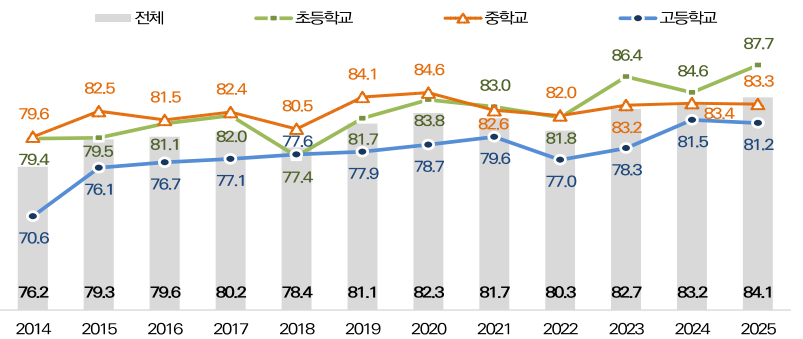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신의 인권 존중 비율은 84.1%로 많이 높았는데, 존중받는 편 57.3%, 매우 존중 26.7%였다. 매우 존중 응답의 경우 남학생일수록, 학교급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표 Ⅳ-2-7). 학교급별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수년간 초등학생은 전년도에 약간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약간 증가하였고, 중학생은 전년도까지 약간 증가했다가 올해 약간 감소하였으며, 고등학생도 전년도까지 약간 증가했다가 올해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그림 Ⅳ-2-7).

표 Ⅳ-2-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χ^2
전체		3.07(0.74)	4.2	11.7	57.3	26.7	100.0(8,716)	
성별	남학생	3.02(0.80)	5.9	13.7	53.1	27.3	100.0(4,487)	120.249***
	여학생	3.12(0.67)	2.5	9.5	61.8	26.1	100.0(4,229)	
학교급	초등학교	3.19(0.74)	3.7	8.6	53.0	34.7	100.0(2,889)	170.767***
	중학교	3.04(0.73)	4.0	12.7	58.6	24.7	100.0(2,941)	
	고등학교	2.97(0.74)	5.1	13.7	60.3	20.8	100.0(2,886)	
경제적 수준	상	3.13(0.73)	3.7	10.4	55.6	30.3	100.0(5,247)	145.163***
	중	3.01(0.72)	4.3	12.5	60.9	22.2	100.0(2,767)	
	하	2.81(0.81)	8.5	18.5	56.1	16.9	100.0(651)	

*p < .05, **p < .01, ***p < .001.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2-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2014~2025년)

③ 인권의식 및 태도(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 및 태도 중 아동·청소년의 참여관련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에는 65.9%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22.5%, 그렇지 않은 편이다 43.4%)고 응답하였고,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에는 80.4%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54.6%, 매우 그렇다 25.8%)고 응답했으며,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질문에는 85.9%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60.8%, 매우 그렇다 25.1%)고 응답했다(표 Ⅳ-2-8).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주체적 결정능력 존중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2013년부터 약간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약간 감소하였고,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2013년부터 약간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약간 감소하였으며, 자치조직 의의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2013년부터 증가하다가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약간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2-8).

표 Ⅳ-2-8. 인권 의식 및 태도_아동·청소년의 참여 관련 인식(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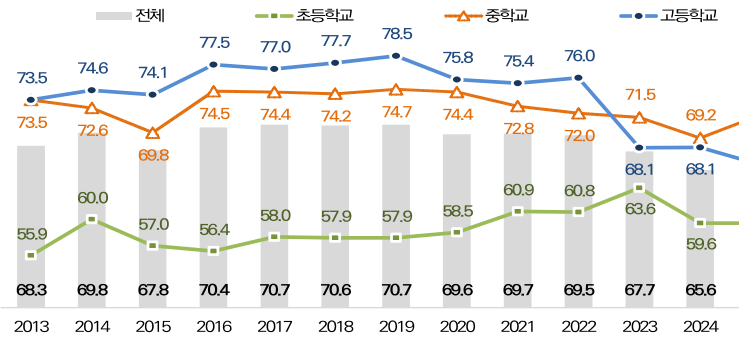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주체적 결정 능력 부족 (*부정적 질문)	전체		2.17(0.83)	22.5	43.4	29.2	4.9	100.0(8,729)	
	성별	남학생	2.21(0.86)	22.3	40.3	31.1	6.3	100.0(4,491)	68.440***
		여학생	2.11(0.79)	22.8	46.6	27.3	3.4	100.0(4,238)	
	학교급	초등학교	2.25(0.90)	23.1	36.4	32.7	7.7	100.0(2,906)	
		중학교	2.08(0.78)	23.9	48.0	24.9	3.2	100.0(2,942)	160.641***
		고등학교	2.17(0.79)	20.5	45.6	30.1	3.8	100.0(2,881)	
2) 사회참여 필요성	전체		3.02(0.76)	4.2	15.4	54.6	25.8	100.0(8,721)	
	성별	남학생	2.97(0.81)	5.7	17.2	51.7	25.4	100.0(4,489)	84.757***
		여학생	3.08(0.70)	2.6	13.6	57.6	26.3	100.0(4,232)	
	학교급	초등학교	3.00(0.85)	6.1	17.5	46.6	29.8	100.0(2,901)	
		중학교	2.94(0.74)	4.2	18.1	56.9	20.8	100.0(2,940)	216.756***
		고등학교	3.12(0.67)	2.2	10.7	60.2	26.9	100.0(2,880)	
3) 자치조직 의의	전체		3.08(0.69)	3.1	11.0	60.8	25.1	100.0(8,716)	
	성별	남학생	3.03(0.74)	4.4	12.7	58.7	24.2	100.0(4,485)	85.222***
		여학생	3.13(0.64)	1.7	9.2	63.0	26.1	100.0(4,231)	
	학교급	초등학교	3.18(0.74)	3.1	10.2	52.1	34.6	100.0(2,896)	
		중학교	3.04(0.67)	3.2	10.8	65.0	21.0	100.0(2,938)	214.294***
		고등학교	3.02(0.66)	2.9	12.1	65.2	19.9	100.0(2,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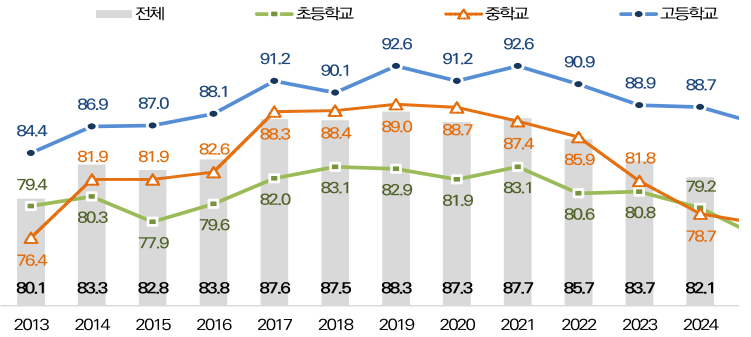
*p 〈 .05, **p 〈 .01, ***p 〈 .001.

주) 1. 2019년 조사부터 초등학교 문항 추가됨.
2. 2022년 조사부터 '사회문제' 문구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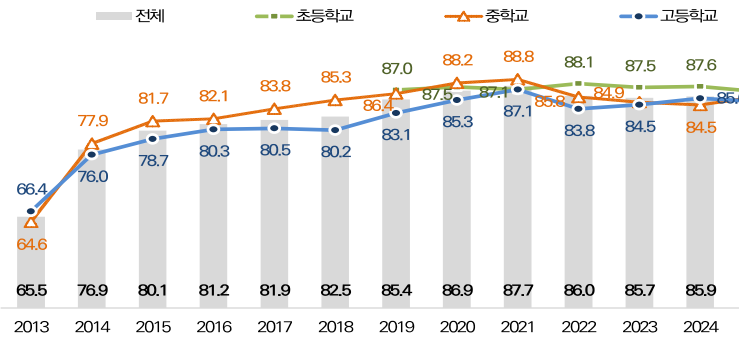
1) 주체적 결정 능력 존중



2) 사회참여 필요성



3) 자치조직 의의



* 주: 1) 첫 번째 문항은 '청소년의 주체적 결정 능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응답률(부정형 질문이므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합계)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문항은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임(단위: %)
2) 자치조직 의의 문항은 초등학교 조사에는 2019년부터 포함됨. 2022년 조사부터 '학교의 문제'에서 '학교나 사회 문제'로 수정함.

그림 Ⅳ-2-8. 인권의식 및 태도_아동·청소년의 참여 관련 인식(2013~2025년)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 및 태도 중 아동·청소년의 차별관련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에는 96.2%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39.8%, 매우 그렇다 56.4%)고 응답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 안 된다'에는 97.6%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23.8%, 매우 그렇다 73.8%)고 응답하였으며, '모든 인간은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에는 97.3%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25.9%, 매우 그렇다 71.4%)고 응답하였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에는 93.6%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33.7%, 매우 그렇다 59.9%)고 응답하였으며, '모든 인간은 성정체성과 성적지향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에는 91.0%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36.4%, 매우 그렇다 54.6%)고 응답하였다(표 Ⅳ-2-9).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의견표명권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2013년부터 증가하다가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약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했고, 경제적 이유 차별금지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2013년부터 증가하다가 약간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약간 증가하였으며, 양성평등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2013년부터 증가하다가 약간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년도에 약간 감소한 후 올해 다시 증가하였고, 이주배경주민 교육권 평등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2013년부터 증가하다가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년도에 약간 증가한 후 올해 다시 감소하였으며, 성정체성 및 성적 지향 평등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최근 수년간 약간 감소하였다(그림 Ⅳ-2-9).

표 Ⅳ-2-9. 인권의식 및 태도_차별 관련 인식(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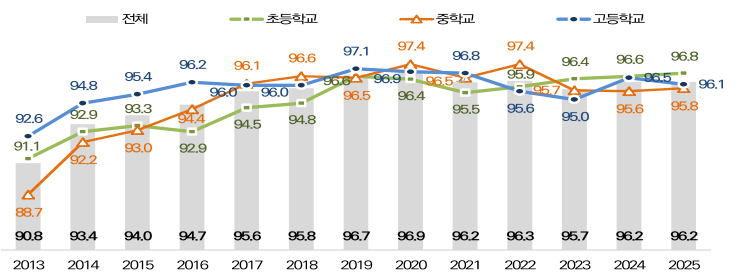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의견표명권	전체		3.52(0.61)	1.1	2.7	39.8	56.4	100.0(8,715)	
	학교급	초등학교	3.66(0.57)	1.0	2.2	26.9	69.9	100.0(2,893)	332.925***
		중학교	3.46(0.62)	1.2	3.0	44.2	51.6	100.0(2,940)	
		고등학교	3.43(0.60)	1.0	2.9	48.2	47.8	100.0(2,882)	
2) 경제적 이유 차별금지	전체		3.70(0.55)	1.1	1.3	23.8	73.8	100.0(8,722)	
	학교급	초등학교	3.82(0.49)	1.3	0.8	12.4	85.5	100.0(2,901)	350.205***
		중학교	3.65(0.59)	1.3	2.0	27.6	69.1	100.0(2,941)	
		고등학교	3.64(0.54)	0.7	1.2	31.3	66.9	100.0(2,880)	
3) 양성평등	전체		3.68(0.56)	1.0	1.7	25.9	71.4	100.0(8,704)	
	학교급	초등학교	3.80(0.49)	0.9	1.3	14.5	83.3	100.0(2,895)	318.137***
		중학교	3.63(0.58)	1.0	1.8	30.0	67.1	100.0(2,936)	
		고등학교	3.59(0.59)	1.1	2.1	33.2	63.7	100.0(2,873)	
4) 이주배경 주민 교육권 평등	전체		3.52(0.67)	1.8	4.6	33.7	59.9	100.0(8,721)	
	학교급	초등학교	3.65(0.63)	1.6	4.2	21.6	72.7	100.0(2,899)	335.964***
		중학교	3.49(0.66)	1.7	4.4	37.4	56.5	100.0(2,942)	
		고등학교	3.41(0.69)	2.2	5.2	42.1	50.4	100.0(2,880)	
5) 성정체성 및 성 적 지 향 평등	전체		3.42(0.75)	3.5	5.5	36.4	54.6	100.0(5,819)	
	학교급	중학교	3.49(0.70)	2.3	5.0	33.9	58.8	100.0(2,941)	56.841***
		고등학교	3.35(0.80)	4.8	6.0	39.0	50.2	100.0(2,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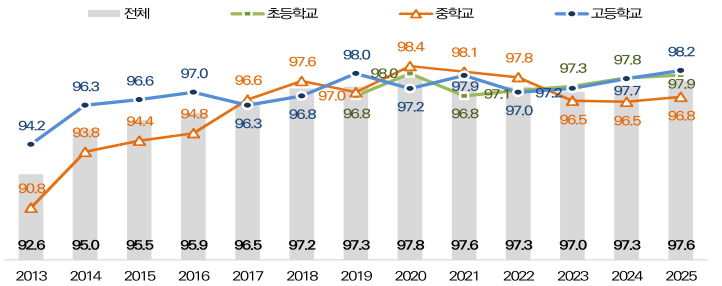
*p 〈 .05, **p 〈 .01, ***p 〈 .001.

* 주: 1) 성정체성 및 성적지향 평등 문항은 2023년부터 중고등학생 조사에 하위문항 추가하여 조사 실시함.
2) 양성평등 문항은 2022년 이전에는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2023년부터 '모든 인간은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로 변경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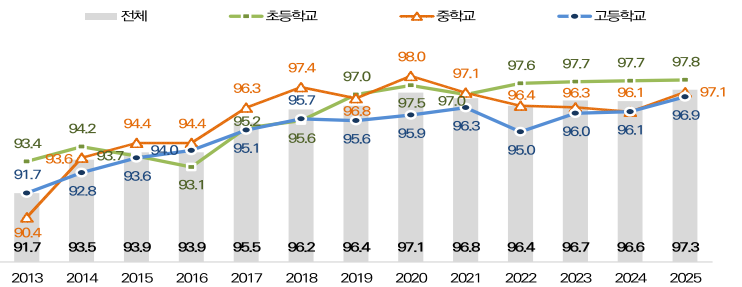
1) 의견표명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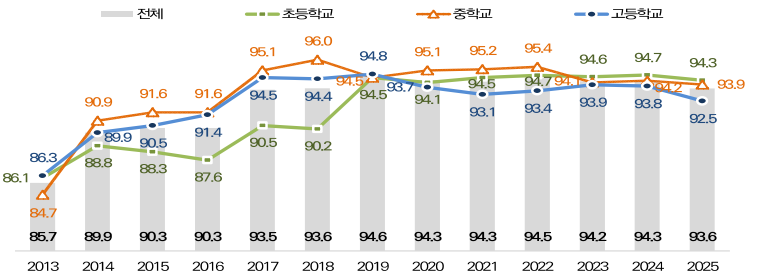
2) 경제적 이유 차별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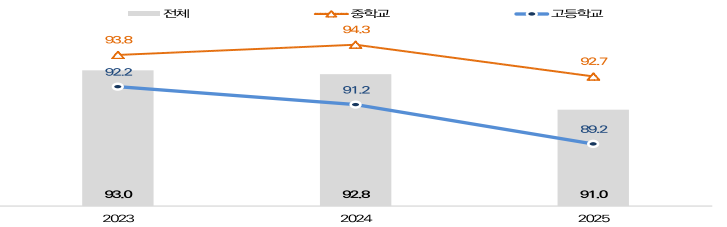
3) 양성평등



4) 이주배경주민 교육권



(5) 성정체성 및 성적지향 평등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경제적 이유 차별금지 문항은 초등학교 조사에는 2019년부터 포함됨.

그림 Ⅳ-2-9. 인권의식 및 태도_차별 관련 인식(2013~2025년)

④ 아동·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신의 권리 보장 정도(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에서는 아동·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얼마나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권리는 교육, 환경, 생활수준, 폭력, 건강, 비차별, 의견표현 및 존중, 사생활 보호, 놀이/휴식/여가, 사회참여에 대한 권리 등 10가지로 나누어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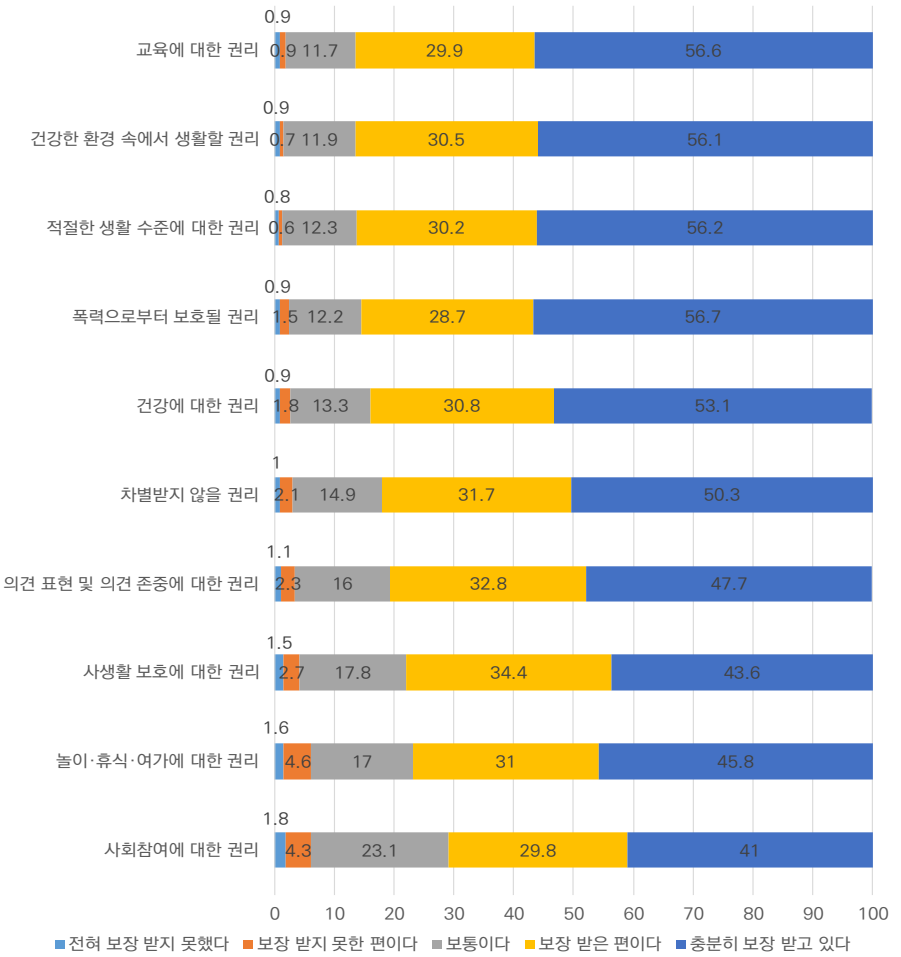


그림 Ⅳ-2-10. 아동·청소년이 인식하는 자신의 권리 보장 정도(2025년)

그 결과, 청소년들은 교육에 대한 권리,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보장 받고 있다('보장 받는 편이다'와 '충분히 보장 받고 있다' 응답의 합산 비율)는 응답이 약 86%로 높게 나타났다.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의견표현 및 의견 존중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80%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 놀이/휴식/여가에 대한 권리, 사회참여에 대한 권리는 70%대로 하위권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놀이, 휴식, 여기, 문화생활에 대한 권리, 사회참여에 대한 권리 보장 수준이 비교적 낮다는 걸 보여준다. 이들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집중적인 권리 증진 시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 학교 차원에서의 놀이, 휴식, 여기, 문화생활에 대한 권리 보장,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인권교육

① 인권교육 실시 현황

국가인권위원회의 2024년 인권교육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운영 145회(3,742명), 방문 프로그램 204회(2,783명), 사이버 인권교육 2,805회(785,711명), 인권특강 1,345회(75,475명), 플랫폼공동 활용교육 1,473회(93,595명)를 실시하여, 전체 5,972회(961,306명)의 인권교육을 실시했다(표 Ⅳ-2-10). 2023년보다 횟수는 줄었지만 인원은 많이 증가했는데, 교육과정 운영, 방문 프로그램, 플랫폼공동 활용교육은 횟수, 인원 모두 감소하였고,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은 횟수, 인원 모두 증가하였다(표 Ⅳ-2-10).

표 Ⅳ-2-1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회, 명)

구분	계		교육과정 운영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나라배움터) 플랫폼공동 활용교육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9	6,282	445,807	330	12,527	556	10,694	1,363	261,505	2,699	107,372	1,334	53,709
2020	3,443	362,459	150	5,011	163	2,700	1,131	220,392	733	29,846	1,266	104,510
2021	4,607	351,463	257	6,279	322	4,332	1,677	205,738	1,012	33,669	1,339	101,445

구분	계		교육과정 운영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나라배움터) 플랫폼공동 활용교육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22	5,804	582,733	214	5,947	423	6,488	2,419	433,244	1,076	46,837	1,672	90,217
2023	6,554	762,132	175	5,245	360	5,277	2,747	584,760	1,278	53,829	1,994	113,021
2024	5,972	961,306	145	3,742	204	2,783	2,805	785,711	1,345	75,475	1,473	93,595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25). 202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p.291.

② 인권교육 경험(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의 인권교육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최근 1년간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의 비율은 40.9%였는데, 남학생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인권교육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11).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약간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 약간씩 감소하였다(그림 Ⅳ-2-11).

표 Ⅳ-2-11. 인권교육 경험 여부(2025년)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40.9	59.1	100.0(8,664)	
성별	남학생	38.1	61.9	100.0(4,451)	29.129***
	여학생	43.8	56.2	100.0(4,214)	
학교급	초등학교	48.0	52.0	100.0(2,861)	104.432***
	중학교	39.8	60.2	100.0(2,928)	
	고등학교	34.8	65.2	100.0(2,875)	
학업성적	상	46.9	53.1	100.0(3,226)	114.692***
	중	40.1	59.9	100.0(3,531)	
	하	31.6	68.4	100.0(1,865)	

*p 〈 .05, **p 〈 .01, ***p 〈 .001.
*주: 2019년 조사부터 '횟수→경험유무'로 척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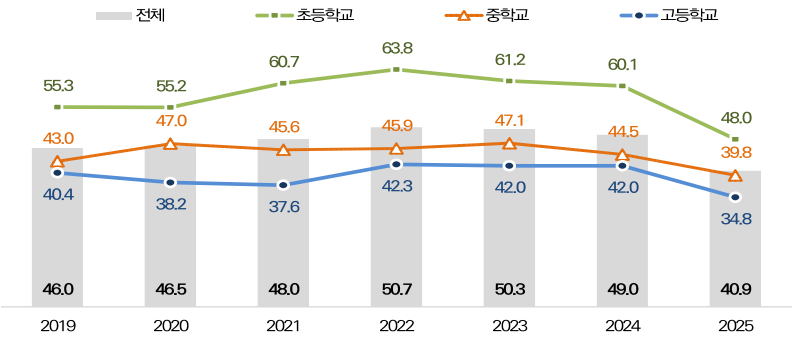


그림 Ⅳ-2-11. 인권교육 경험(2019~2025년)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에 대한 질문에는 90.8%(도움이 되는 편이다 58.5%, 매우 도움이 된다 32.3%)의 응답자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에 대한 질문에는 91.2%(도움이 되는 편이다 50.0%, 매우 도움이 된다 41.2%)의 응답자가,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에 대한 질문에는 87.9%(도움이 되는 편이다 50.9%, 매우 도움이 된다 37.0%)의 응답자가 인권교육이 도움된다고 답하였다. 학교급별로는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보면 학교급이 낮을수록 도움된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표 Ⅳ-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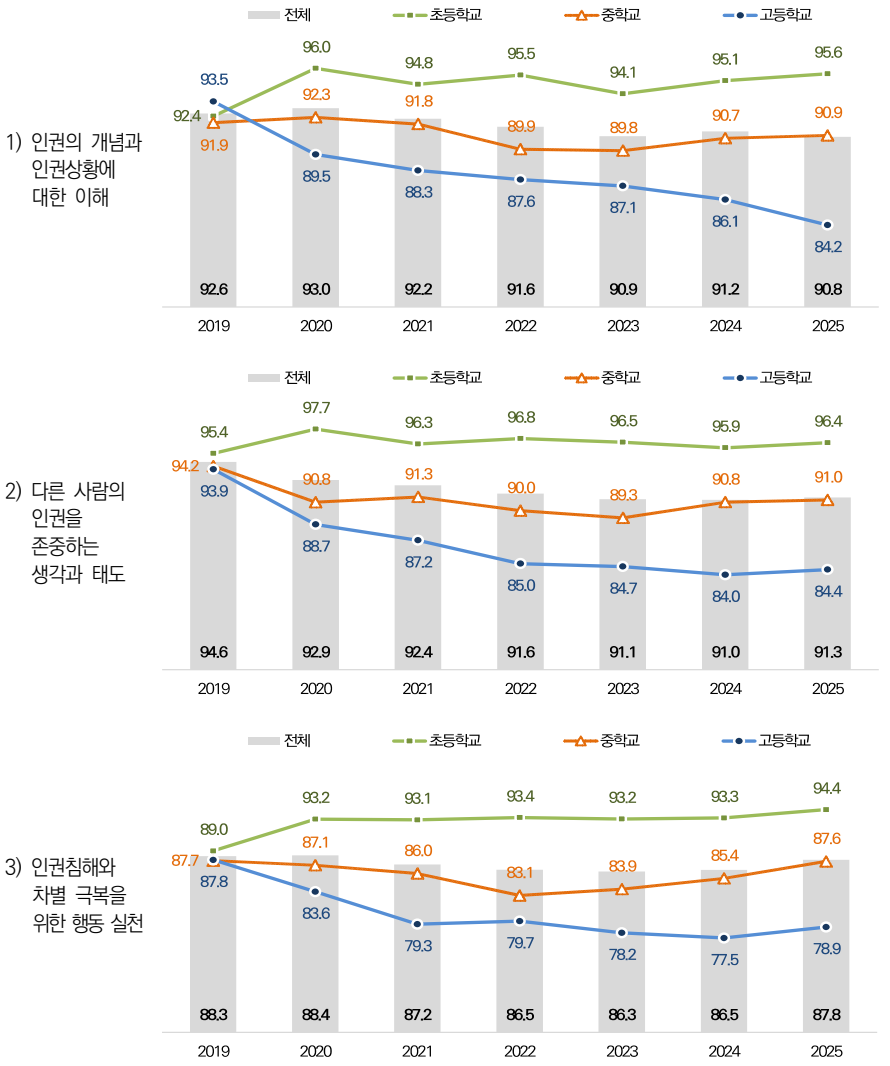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는 2019년부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약간 증가했다가 올해 다시 약간 감소하였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는 2019년부터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약간 증가하였으며,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은 2019년부터 약간 증가 후 감소하다가 작년부터 다시 약간 증가하였다(그림 Ⅳ-2-12).

표 Ⅳ-2-12.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교급별, 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N)	χ^2
1)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	전체	3.20(0.67)	2.7	6.4	58.5	32.3	100.0(3,498)	
	초등학교	3.38(0.61)	1.4	3.0	51.9	43.7	100.0(1,359)	
	중학교	3.18(0.66)	2.7	6.4	61.4	29.5	100.0(1,151)	203.972***
	고등학교	2.99(0.70)	4.6	11.2	64.3	19.9	100.0(988)	
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	전체	3.30(0.70)	2.8	6.0	50.0	41.2	100.0(3,497)	
	초등학교	3.55(0.61)	1.3	2.3	36.9	59.5	100.0(1,358)	
	중학교	3.24(0.70)	3.1	5.8	55.2	35.8	100.0(1,152)	378.570***
	고등학교	3.02(0.72)	4.5	11.1	61.9	22.5	100.0(988)	
3)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	전체	3.22(0.73)	3.1	9.1	50.9	37.0	100.0(3,496)	
	초등학교	3.46(0.64)	1.3	4.3	41.6	52.8	100.0(1,358)	
	중학교	3.16(0.73)	3.6	8.8	55.3	32.3	100.0(1,150)	321.977***
	고등학교	2.95(0.75)	5.0	16.1	58.3	20.6	100.0(988)	

*p 〈 .05, **p 〈 .01, ***p 〈 .001.



*주: 1) '도움이 되는 편이다'와 '매우 도움이 된다' 응답값의 합계(단위: %)
2) 2019년부터 하위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함.

그림 Ⅳ-2-12.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 정도(2019~2025년)

2) 소결

이 절에서는 지표체계 대분류 영역 중 일반 이행조치의 하위 지표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률들의 지난 1년간 주요 제·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이버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 아동에 대한 폭력 관련 7건, 대안교육기관 학생 지원, 교내 디지털 교과서 활용 규정 강화,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 등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관련 3건, 빈곤아동 보건의료 지원 등 건강 관련 2건이 개정되었다. 2024년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비율은 3.3%로 2023년 4.0%에 비해 0.7% 감소하였는데, 그래도 최근 수년간 3% 이상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25년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를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는 응답 중심으로 살펴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20.2%, 학생인권조례는 9.8%, 국가인권위원회는 23.1%로 낮게 나타났는데, 아동권리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는 올해 약간 증가했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는 올해 약간 감소했다. 2025년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정(96.7%), 학교(95.0%), 우리나라 전체(86.0%), 온라인 공간(84.1%) 순으로 높았는데, 가정, 학교,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공간 모두 최근 수년간 약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였다. 2025년 인권의식 및 태도 중 참여관련 인식에 대해서는 주체적 결정 능력 65.9%, 사회참여 필요성 80.4%, 자치조직 의의 85.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주체적 결정능력 존중, 사회참여 필요성은 최근 수년간 약간 감소했고, 자치조직 의의는 최근 수년간 약간 감소하다가 올해 약간 증가했다. 차별관련 인식에 대해서는 의견표명권 96.2%, 경제적 이유의 차별금지 97.6%, 양성평등 97.3%, 이주배경주민 교육권 93.6%, 성 정체성 및 성적지향 평등에는 91.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의견표명권, 경제적 이유 차별금지, 양성평등은 올해 약간 증가하였고, 이주배경주민 교육권, 성 정체성 및 성적지향 평등은 올해 약간 감소하였다. 자신의 권리 보장 정도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권리,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보장 받고 있다는 응답이 약 86%로 높게 나타났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의견표현 및 의견 존중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80%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 놀이/휴식/여가에 대한 권리, 사회참여에 대한 권리는 70%대로 하위권이었다.

2025년 아동·청소년의 인권교육 경험의 비율은 40.9%였는데, 최근 수년간 약간씩 감소하였다. 2025년 인권교육 목표별 도움정도에 대해서는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 90.8%,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 91.2%,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 87.9%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일반 이행조치 대분류 영역의 하위 지표들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법률들의 제·개정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비율은 전년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으나 최근 수년간 3% 이상은 계속 유지 중이며, 아동·청소년들의 참여관련 인식, 차별관련 인식 등 인권의식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놀이, 휴식, 여가, 문화생활에 대한 권리, 사회참여에 대한 권리 보장 수준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들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인권교육 경험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인권교육 경험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절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률들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인 개인 진정 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OPIC)를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정부는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AC),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SC)는 비준하였으나, OPIC 비준은 진행하지 않고 있어 비준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국가 아동·청소년 예산에 대한 통합 관리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아동·청소년 예산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체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거나 관리하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국가 아동·청소년 예산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2025년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경험 비율이 40.9%로 나타나 아동·청소년 대상의 인권교육을 보다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에서 시행 중인 찾아가는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인권교육도 보다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

일반 원칙 클러스터 개요 및 주요 내용 요약

○ 일반 원칙 클러스터 개요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 원칙이란 협약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차별(non-discrimination), 아동 이익 최우선(best interests of the child), 생명, 생존 및 발달(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아동 의견 존중(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등임.
- 이 원칙들은 협약의 모든 권리를 해석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가치임. 이 절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일반 원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지표를 통해 살펴보고 있음.

○ 일반 원칙 클러스터의 주요 내용 요약

- 아동·청소년의 차별 피해 경험은 외모 및 신체조건 14.1%, 학업성적 13.4%, 성별 12.4%, 나이 12.0% 순으로 10명 중에 1명꼴 이상으로 차별 경험이 있었음. 차별 가해 경험은 외모 및 신체조건 8.8%, 학업성적 6.8%, 성별 6.1%, 나이 5.0% 순이었음.
- 아동·청소년 10명 중 9명꼴로 가정에서 의사결정 시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고 존중받는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집안 중대사 결정 시 나의 의견 존중 90.6%, 상급학교 진학 결정 시 나의 의사 존중 93.4%,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 존중 93.7%, 공부 시간이나 방법 결정 시 존중 90.2%, 쉬는 시간 선택 존중 87.6%, 내가 하고 싶은 것 선택 존중 90.7%로 높았음.
- 아동·청소년이 인식하는 참여 방해 요인으로는 시간 부족 39.3%,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24.7%, 참여 활동 정보 부족 21.3%,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 10.9% 순으로 나타났음.

1) 일반 원칙

(1) 차별 경험률

①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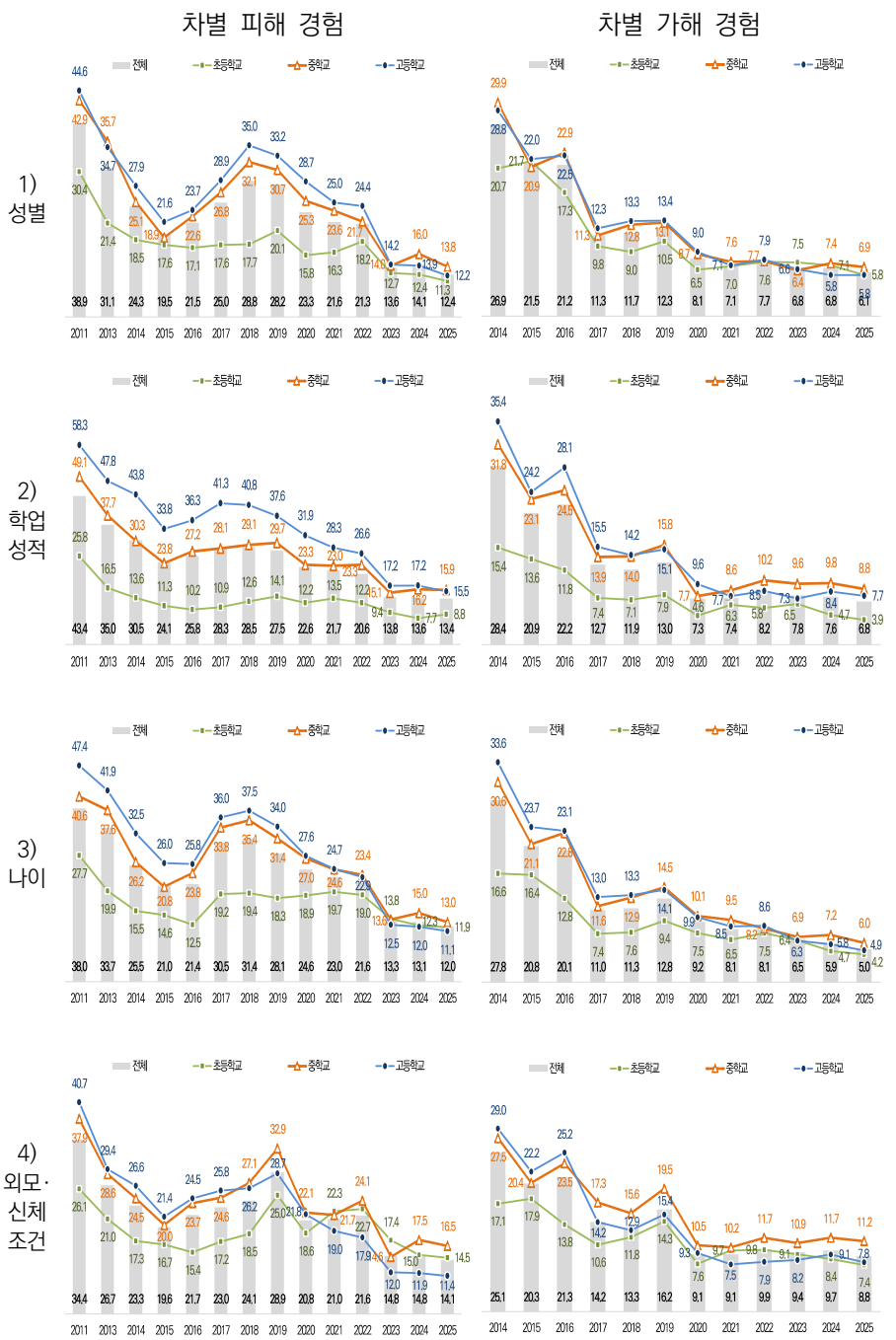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차별 피해 경험은 성별 12.4%, 학업성적 13.4%, 나이 12.0%, 외모 및 신체조건 14.1%, 경제적 이유 1.0%, 사는 동네 1.5%, 종교 1.1%, 가족 유형 0.6%, 장애 0.5%, 다문화가정 0.6%였다. 최근 1년간 차별 가해 경험은 성별 6.1%, 학업성적 6.8%, 나이 5.0%, 외모 및 신체조건 8.8%, 경제적 이유 0.9%, 사는 동네 0.7%, 종교 0.7%, 가족 유형 0.8%, 장애 3.4%, 다문화가정 0.8%의 분포를 보였다(표 Ⅳ-3-1). 차별 피해 경험은 외모 및 신체조건, 학업성적, 성별, 나이순이었고, 차별 가해 경험은 외모 및 신체조건, 학업성적, 성별, 나이순이었다.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차별 피해, 차별 가해 경험 모두 지난 십 수년간 약간의 증감은 있으나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차별 피해 경험은 가족 유형, 장애만 올해 약간 증가하였고, 차별 가해 경험은 장애만 올해 약간 증가했다(그림 Ⅳ-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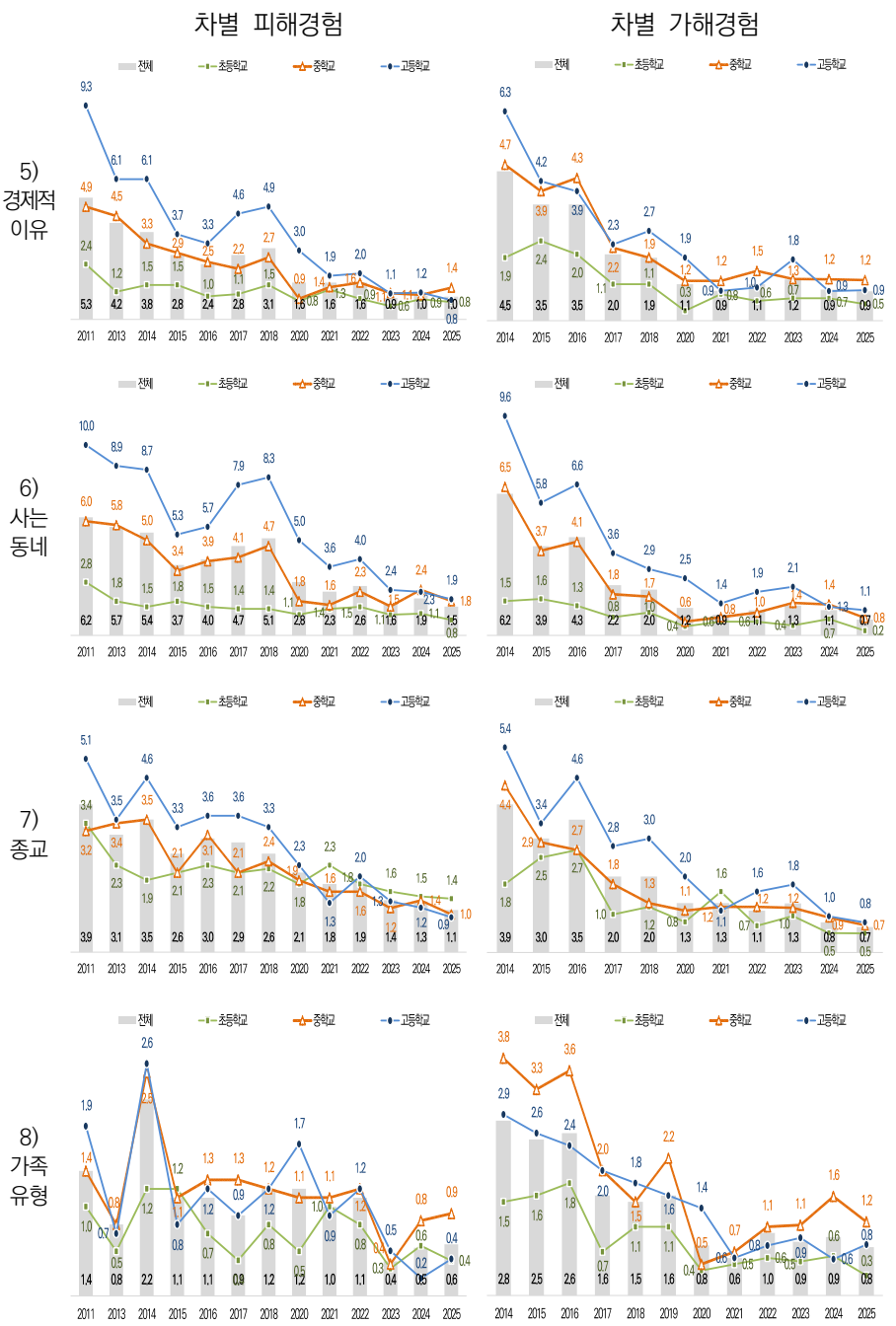
표 Ⅳ-3-1.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종합, 2025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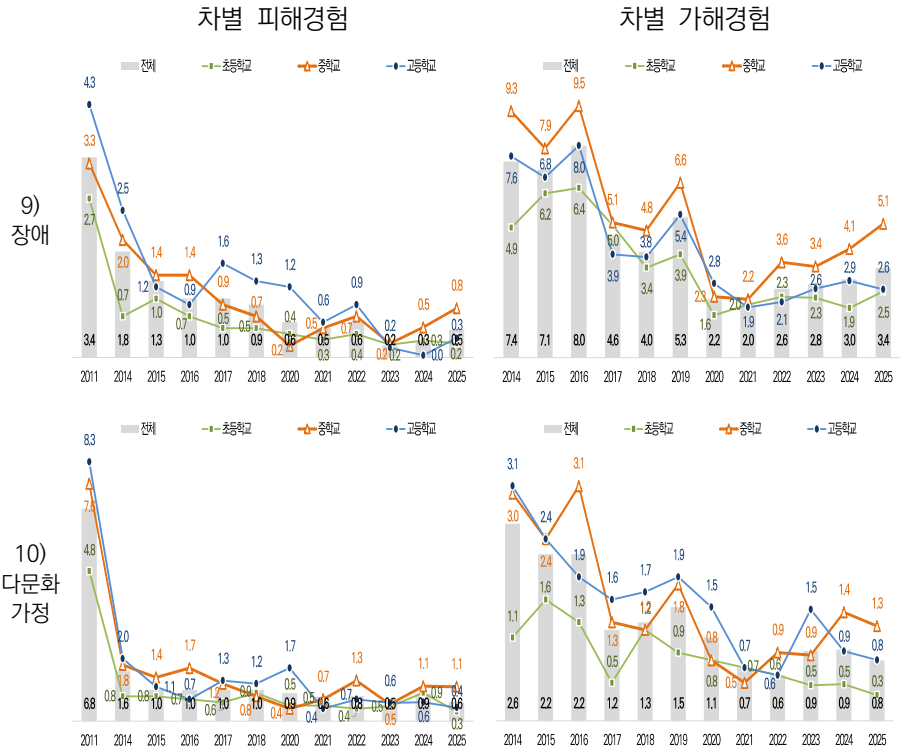
차별사유	차별 피해 경험					차별 가해 경험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성별	87.6	8.6	2.1	1.0	0.7	93.9	4.7	0.7	0.5	0.3
2) 학업성적	86.6	7.4	2.8	1.9	1.3	93.2	4.7	1.2	0.6	0.4
3) 나이	88.0	7.9	2.5	1.0	0.6	95.0	3.6	0.8	0.3	0.2
4) 외모·신체조건	85.9	7.7	2.7	2.2	1.6	91.2	5.6	1.7	0.8	0.7
5) 경제적 이유	99.0	0.6	0.2	0.1	0.1	99.1	0.4	0.3	0.1	0.1
6) 사는 동네	98.5	1.0	0.3	0.1	0.1	99.3	0.3	0.2	0.1	0.1
7) 종교	98.9	0.7	0.2	0.1	0.1	99.3	0.4	0.1	0.0	0.1
8) 가족유형	99.4	0.3	0.1	0.1	0.2	99.2	0.3	0.2	0.1	0.2
9) 장애	99.5	0.2	0.1	0.0	0.2	96.6	2.2	0.6	0.3	0.3
10) 다문화가정	99.4	0.3	0.1	0.1	0.1	99.2	0.4	0.2	0.1	0.1



* 주 :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주 :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주: 1)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2) 차별 피해 경험 중에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가족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등 6개 문항과 차별 가해 경험 중에 '경제적 이유, 고향/지역, 종교' 등 3개 문항은 2019년 제외되었다가 2020년부터 다시 포함됨.

그림 Ⅳ-3-1. 차별 경험(2011~2025년)

② 차별받은 후 상담 또는 도움 받은 사람(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차별받은 후 상담 또는 도움 받은 사람에 대해 살펴보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음이 45.9% 절반에 가깝게 나타난 가운데, 도움 받은 사람 54.1%는 친구 23.0%, 부모님(보호자) 22.7%, 선생님 3.8%, 형제·자매 2.2%, 선·후배 0.9%, 전문 상담가 0.4%, 경찰 0.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Ⅳ-3-2).

표 Ⅳ-3-2. 차별받은 후 상담 또는 도움 받은 사람(2025년)

(단위 : %(명))

구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친구	선·후배	부모님(보호자)	형제·자매	선생님	전문 상담가	경찰	기타	전체(N)
전체		45.9	23.0	0.9	22.7	2.2	3.8	0.4	0.2	0.9	100.0(2,211)
성별	남학생	47.7	22.7	0.8	20.9	2.1	4.4	0.3	0.3	0.7	100.0(1,042)
	여학생	44.2	23.3	0.9	24.3	2.4	3.2	0.5	0.1	1.0	100.0(1,168)
학교급	초등학교	35.6	20.2	1.8	34.0	2.1	4.8	0.2	0.2	1.3	100.0(704)
	중학교	46.5	27.0	0.6	18.6	2.1	4.2	0.3	0.2	0.5	100.0(817)
	고등학교	55.6	21.2	0.4	16.0	2.6	2.3	0.8	0.2	0.9	100.0(690)

*p<.05, **p<.01, ***p<.001
주) 2023년 추가된 문항임.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①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정책기획 단계에서부터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할 목적으로 2019년 1차, 2020년 2차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부터 자체평가와 전문평가의 두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5b).

2021년에는 자체평가와 전문평가 3건(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보호대상아동 정신건강 정책, 아동의 법정대리인 제도), 2022년에는 자체평가와 전문평가 4건(방송콘텐츠 심의 정책, 재난관리 정책, 건강형평 정책, 여가·놀이·문화 정책), 2023년에는 자체평가와 전문평가 4건(아동 주거지원 정책,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아동 진로교육 정책, 아동 의료보장 정책), 2024년에는 자체평가와 전문평가 2건(아동가구 고용지원 정책,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 대상정책별 현안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Ⅳ-3-3).

표 Ⅳ-3-3.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현황(2021~2024년)

연도	추진경과
2021	'21년 자체평가 실시(본 사업 1년차) 아동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구축·운영('21.2.~12.) 아동정책영향평가 매뉴얼 및 교육영상 4편 개발('21.12.) '21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분석연구('21.12.)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 실시(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보호대상아동 정신건강 정책, 아동의 법정대리인 제도, '21.10.) 「2021 아동정책영향평가 공유·확산 포럼」 개최('21.12.)
2022	'22년 자체평가 실시(본 사업 2년차) 아동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확대 구성 및 운영('22.1.~12.) 아동정책영향평가 매뉴얼 개정 및 작성사례집 발간('22. 5.) '22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분석연구('22.12.)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 실시(방송콘텐츠 심의 정책, 재난관리 정책, 건강형평 정책, 여가·놀이·문화 정책, '22.11.) 「2022 아동정책포럼」 개최 및 우수지자체 포상('22.12.)
2023	'21년 자체평가 이행점검 및 '23년 자체평가 실시(본 사업 3년차) 아동정책영향평가 매뉴얼 개정('23.5.)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 실시(아동 주거지원 정책,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 정책, 아동 진로교육 정책, 아동 의료보장 정책, '23.11.) 「2023 제2차 아동정책포럼」 개최 및 우수지자체 포상('23.12.)
2024	'22년 자체평가 이행점검 및 '24년 자체평가 실시(본 사업 4년차) 아동정책영향평가 매뉴얼 개정 및 브로셔 제작('24.5.) '23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종합분석연구('24.10.)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 실시(아동가구 고용지원 정책,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 대상정책별 현안분석, '24.12.) 「제12회 아동정책포럼」 개최 및 우수지자체 포상('24.12.)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2025b).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사업안내.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397&cntntsId=1326에서 2025년 10월 2일 인출.

(3)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①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 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면, 집안 중대사 결정 시 나의 의견 존중 90.6%, 상급학교 진학결정 시 나의 의사 존중 93.4%,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 존중 93.7%, 공부 시간이나 방법

결정 시 존중 90.2%, 쉬는 시간 선택 존중 87.6%, 내가 하고 싶은 것 선택 존중 90.7%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Ⅳ-3-4).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문항에서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했다(그림 Ⅳ-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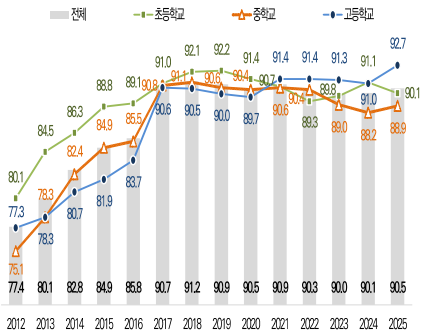
표 Ⅳ-3-4.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의견 존중 정도, 2025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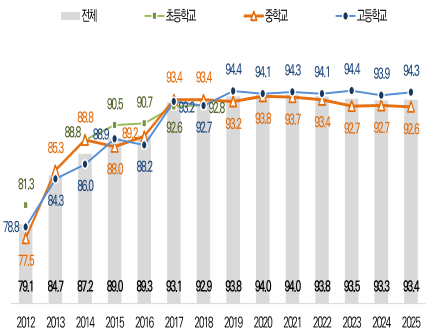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집안의 중대사 결정	전체		3.31(0.67)	1.1	8.4	48.8	41.8	100.0(8,732)	
	학교급	초등학교	3.34(0.69)	1.4	8.6	44.3	45.8	100.0(2,906)	67.889***
		중학교	3.26(0.67)	1.0	10.1	51.1	37.8	100.0(2,943)	
		고등학교	3.34(0.63)	0.8	6.5	50.9	41.8	100.0(2,883)	
2) 상급 학교 결정	전체		3.43(0.64)	1.0	5.6	43.0	50.4	100.0(5,814)	
	학교급	중학교	3.40(0.66)	1.1	6.3	44.3	48.3	100.0(2,937)	14.782**
		고등학교	3.46(0.63)	0.8	5.0	41.6	52.7	100.0(2,877)	
3) 진로(직업) 결정	전체		3.49(0.65)	1.2	5.1	36.9	56.8	100.0(8,688)	
	학교급	초등학교	3.52(0.68)	1.7	5.6	31.3	61.4	100.0(2,896)	97.585***
		중학교	3.43(0.66)	1.3	6.0	41.6	51.2	100.0(2,924)	
		고등학교	3.53(0.60)	0.7	3.8	37.6	58.0	100.0(2,868)	
4) 공부시간·방법 결정	전체		3.34(0.70)	1.8	8.0	44.6	45.6	100.0(5,803)	
	학교급	중학교	3.25(0.75)	2.6	10.6	46.0	40.7	100.0(2,930)	106.440***
		고등학교	3.43(0.64)	0.9	5.4	43.1	50.6	100.0(2,874)	
5) 쉬는시간 결정	전체		3.28(0.73)	2.0	10.4	45.3	42.3	100.0(8,696)	
	학교급	초등학교	3.26(0.75)	2.6	11.1	44.4	41.9	100.0(2,882)	76.940***
		중학교	3.21(0.75)	2.6	12.3	46.3	38.8	100.0(2,937)	
		고등학교	3.37(0.66)	0.9	7.8	45.1	46.2	100.0(2,877)	
6) 내가 하고 싶은 것 결정	전체		3.34(0.69)	1.6	7.8	45.3	45.4	100.0(5,809)	
	학교급	중학교	3.29(0.71)	2.1	8.8	47.1	42.0	100.0(2,932)	40.205***
		고등학교	3.40(0.66)	1.0	6.7	43.5	48.8	100.0(2,877)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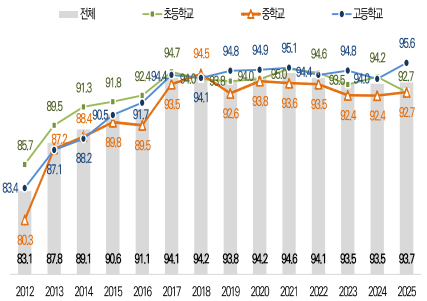
* 주: 쉬는시간 결정, 내가 하고 싶은 것 결정 문항은 2023년부터 하위문항을 추가하여 조사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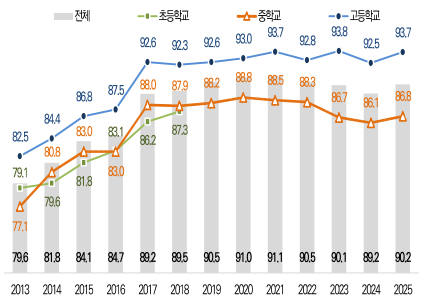
1) 집안의 중대사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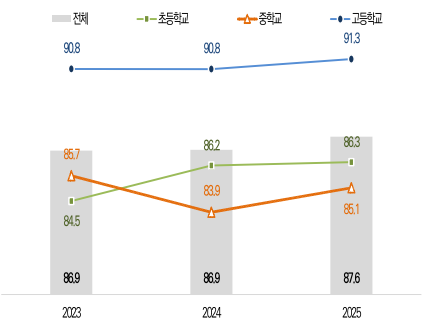
2) 상급학교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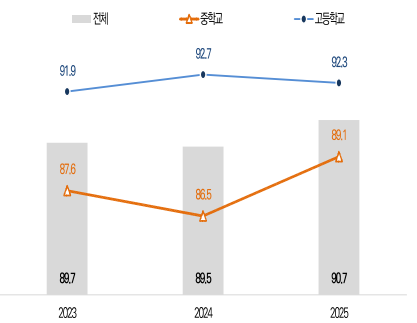
3) 진로(직업) 결정



4) 공부시간·방법 결정



5) 쉬는 시간 결정



6) 내가 하고 싶은 것 결정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2019년 조사부터 상급학교 결정과 공부시간 결정 문항은 초등 설문지에서 제외됨

그림 Ⅳ-3-2.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의견 존중 정도, 2012~2025년)

(4)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①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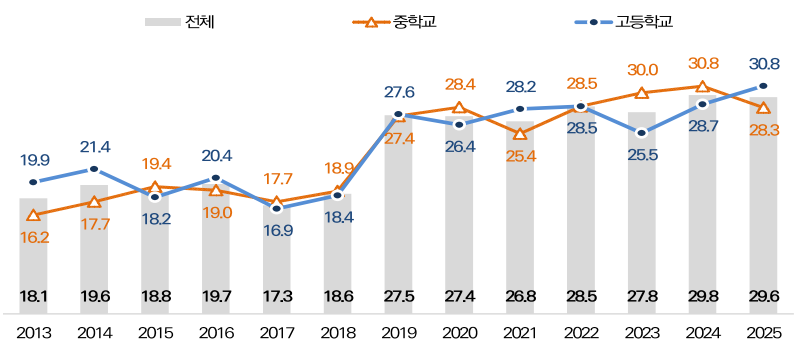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잘 모르겠다는 항목을 제외하고 참여가능하며 발언권 있음 29.6%, 참여가능하지만 발언권 없음 5.3%, 참여할 수 없음 5.1%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참여가능하며 발언권 있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학생, 고등학생이 약간 더 높았다(표 Ⅳ-3-5). 참여가능하며 발언권 있음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최근 수년간 증감을 반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3-3).

표 Ⅳ-3-5.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2025년)

(단위 : %(명))

구분		참여할 수 없다	참여가능, 발언권 없음	참여가능, 발언권 있음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전체		5.1	5.3	29.6	60.1	100.0(5,665)	
성별	남학생	6.5	5.5	24.9	63.1	100.0(2,896)	76.565***
	여학생	3.6	5.0	34.4	57.1	100.0(2,768)	
학교급	중학교	5.6	5.7	28.3	60.4	100.0(2,870)	7.828*
	고등학교	4.5	4.9	30.8	59.8	100.0(2,795)	

*p 〈 .05, **p 〈 .01, ***p 〈 .001.



* 주: '참여가능, 발언권 있음'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Ⅳ-3-3.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2013~2025년)

②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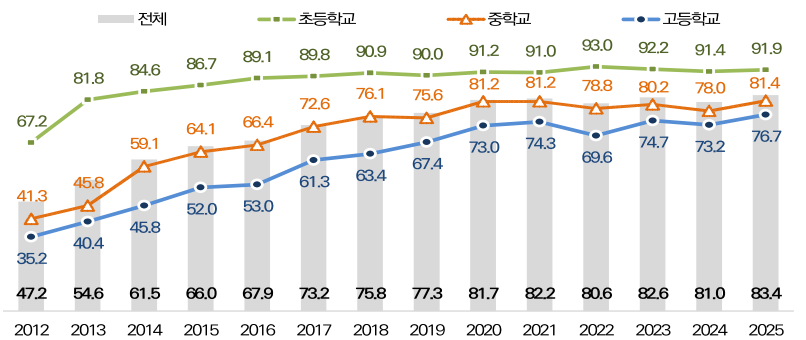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이 83.3%(그런 편이다 55.0%, 매우 그렇다 28.3%)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보면 남학생일수록, 학교급이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표 Ⅳ-3-6). 그렇다는 응답의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2021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최근 수년간 증감을 반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3-4).

표 Ⅳ-3-6.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7(0.76)	4.3	12.4	55.0	28.3	100.0(8,720)	
성별	남학생	3.08(0.77)	4.8	11.5	54.1	29.6	100.0(4,484)	20.405***
	여학생	3.06(0.74)	3.6	13.4	56.0	27.0	100.0(4,236)	
학교급	초등학교	3.37(0.72)	3.1	5.0	43.6	48.3	100.0(2,900)	967.251***
	중학교	2.99(0.73)	4.4	14.2	59.7	21.7	100.0(2,940)	
	고등학교	2.86(0.72)	5.3	18.0	61.8	14.9	100.0(2,880)	

*p 〈 .05, **p 〈 .01,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3-4.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2012~2025년)

③ 징계 시 의견 수렴(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징계처리절차에서의 학생의 의견표명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이 79.1%(그런 편이다 64.3%, 매우 그렇다 14.8%)로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중학교가 더 높게 나타났다(표 Ⅳ-3-7).

표 Ⅳ-3-7. 징계처리절차에서의 의견표명 정도(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88(0.71)	5.5	15.4	64.3	14.8	100.0(5,780)	
성별	남학생	2.88(0.76)	6.6	15.7	60.6	17.1	100.0(2,974)	49.406***
	여학생	2.89(0.66)	4.3	15.1	68.3	12.3	100.0(2,806)	
학교급	중학교	2.91(0.73)	5.4	15.2	62.2	17.3	100.0(2,919)	30.084***
	고등학교	2.85(0.69)	5.6	15.7	66.6	12.2	100.0(2,861)	

*p<.05, **p<.01, ***p<.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5) 사회에서의 참여정도

① 아동·청소년 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 정도

2024년 아동·청소년 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 정도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정책참여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21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아동들이 교육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직접 제안한 14건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표 Ⅳ-3-8)(아동권리보장원, 2024). 이 결의문은 해당 부처에 전달되고 국무총리 산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된다.

표 Ⅳ-3-8. 2024년 제21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2024년 제21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1. 교육부에서 교과서 물려주기 기간을 7월과 12월로 정하고, 참여한 아동에게 일정 봉사시간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주세요.
2.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상황 시, 만5~14세 아동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재난문자를 보내고, 장애 아동에게도 실용적인 경보기를 공급해 주세요.
3. 아동이 기후 변화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역교육청에서 '온라인 아동 환경 토론 앱'을 운영하고, 분기별로 우수 토론자를 선정하여 시상해 주세요.
4. 아동이 수산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바다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 해초지·염습지(갯벌) 복원사업을 확대해 주세요.
5. 교육부는 2주에 한 번 이상 로컬푸드를 활용한 저탄소환경급식을 의무화해 주세요.
6.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재활용 종이와 친환경 잉크로 제작한 교과서를 도입해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자원을 보호해 주세요.
7. 교육부는 초등학교로 외부강사를 지원하여 연 2회 이상 기후변화로 인한 해충 예방 및 퇴치 교육을 시행해 주세요.
8.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내구성이 높은 경사로의 전국적인 설치를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9. 교육부는 교육청 단위로 수업 자료가 삽입된 지역별 온라인 수업 앱을 만들어, 재난으로 인해 등교가 어려운 상황에도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해 주세요.
10. 환경부는 아동의 의견이 환경오염 시설에 관한 지역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1. 환경부와 교육부는 매년 아동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후 위기 관련 행사를 마련해 주세요.
12. 교육부는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지역 특색을 반영한 '환경 과목'을 만들어 주세요.
13. 환경부와 교육부는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기후환경 교육을 매년 실시해 주세요.
14.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처한 동아시아 아동이 도움을 요청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플랫폼을 EAS(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제안해 주세요.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24). 2024년 제21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 결의문.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89&cntntsId=1483에서 2025년 7월 30일 인출.

다음으로 여성가족부는 2024년 224개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584개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였고(표 Ⅳ-3-9), 2024년 청소년 특별회의에서는 '모두를 위한 한걸음, 미래로 도약하는 청소년'이라는 의제 하에 디지털, 리더십, 지속가능 역량 3개 분야 24개 과제를 제안했는데, 관련 정부에서 22개 과제(수용률 91.7%)를 수용하였다(표 Ⅳ-3-10).

표 Ⅳ-3-9.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현황(2014~2024년)

(단위 : 개(%))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청소년참여위원회	197 (81.1)	204 (84.0)	216 (88.9)	221 (90.9)	230 (94.7)	239 (98.4)	239 (98.4)	240 (98.8)	241	241	224
청소년운영위원회	305	305	305	305	305	305	331	331	331	331	584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p.119-120. 재구성.
여성가족부(2023). 2022 청소년백서. p.150-152. 재구성.
여성가족부(2024a). 2023 청소년백서. p.125-126. 재구성.
여성가족부(2025a). 2024 청소년백서. p.145-146. 재구성.

*주: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율 = 위원회수/전국 기초지자체 수*100

표 Ⅳ-3-10.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2011~2024년)

연도	의제	수용률(%)
2011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개 영역 41개 과제 제안	36개 수용 (87.8)
2012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 활동 -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3개 영역 30개 과제(89개 세부과제) 제안	81개 수용 (91.0)
2013	•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 진로체험활동 등 3개 영역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5)
2014	•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 청소년 참여로 만드는 안전 등 4개 영역 31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0.3)
2015	•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 역사교육 질적 강화 및 역사 인재 양성 등 3개 분야 23개 과제 제안	20개 수용 (87.0)
2016	•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등 4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5)
2017	•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 3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24개 수용 (80.0)
2018	•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 - 청소년 참정권 확대 등 3개 분야 22개 과제 제안	20개 수용 (90.9)
2019	• 인권, 양성평등, 학교밖청소년 지원, 안전, 경제활동 - 청소년 기초 노동 지원 프로그램 등 5개 분야 28개 과제 제안	25개 수용 (89.9)
2020	• 스스로 서는 청소년, 세상의 중심에서 미래를 외치다 - '자립' 정책영역의 취업, 정보, 보호, 경제 등 5개 분야 33개 과제 제안	32개 수용 (96.9)
2021	• 시작점이 같은 청소년, 각자의 기회에서 빛나다 - 청소년쉼터 지원 강화 등 5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3.3)
2022	• 넘어져도 괜찮아, 걱정 없는 청소년 - 뉴미디어·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등 4개 분야 32개 과제 제안	29개 수용 (90.6)
2023	• 70억 조별과제, 청소년이 먼저 용기 내다! - 기후환경, 디지털 역량, 마음건강 등 3개 분야 34개 과제 제안	33개 수용 (97.1)
2024	• 모두를 위한 한걸음, 미래로 도약하는 청소년 - 미래역량, 정책영역의 디지털 역량, 리더십 역량, 자기주도 역량 3개 분야 24개 과제 제안	22개 수용 (91.7)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p.121-122.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154.
여성가족부(2024a). 2023 청소년백서. p.128.
여성가족부(2025a). 2024 청소년백서. p.148.

②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정책참여기구(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학생참여단 등)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10.6%(알고 있으나 참여해보지는 않음 8.6%,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음 2.0%)였다. 여학생이, 초등학생이, 대도시가 약간 더 높았다(표 Ⅳ-3-11).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는 수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3년부터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그림 Ⅳ-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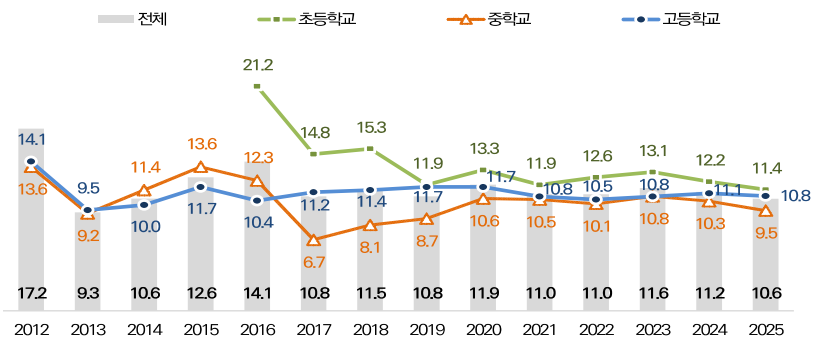
표 Ⅳ-3-11.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2025년)

(단위 : %(명))

구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알고 있다 합계	전체(N)	χ^2
전체		49.2	40.2	8.6	2.0	10.6	100.0(8,735)	
성별	남학생	54.4	35.5	8.5	1.6	10.1	100.0(4,491)	105.230***
	여학생	43.8	45.1	8.7	2.4	11.1	100.0(4,244)	
학교급	초등학교	46.5	42.0	9.5	1.9	11.4	100.0(2,904)	19.327**
	중학교	51.8	38.8	7.5	2.0	9.5	100.0(2,947)	
	고등학교	49.4	39.7	8.8	2.0	10.8	100.0(2,884)	
지역 규모	대도시	47.7	41.3	9.1	2.0	11.1	100.0(3,441)	6.693
	중소도시	50.4	39.3	8.2	2.0	10.2	100.0(4,232)	
	읍면지역	49.6	40.1	8.4	1.8	10.2	100.0(1,063)	

*p 〈 .05, **p 〈 .01, ***p 〈 .001.

주) 2016년 조사부터 초등학교 문항 추가됨.



* 주: 1)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 않았다'와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의 합계(단위: %)
2) 2016년부터 전체값에 초등학생 응답이 포함됨.

그림 Ⅳ-3-5.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2012~2025년)

③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방해 이유(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가. 참여권 보장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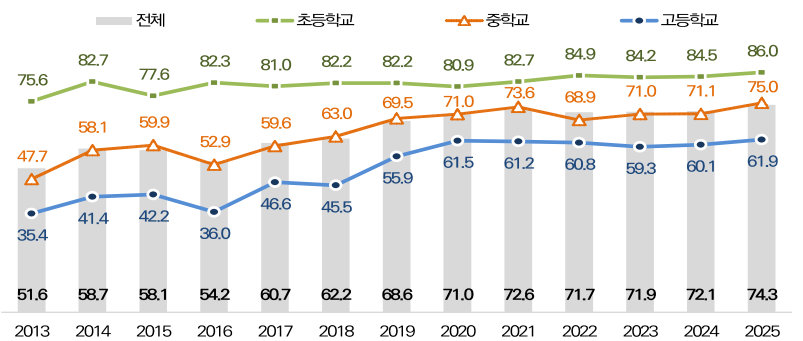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관련 사안 결정 및 해결 과정에 청소년 의견 청취 및 참여권 보장 문항에 대해서 74.3%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55.6%, 매우 그렇다 18.7%)고 응답했다. 여학생이, 학교급이 낮을수록 그렇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 Ⅳ-3-12).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에 감소하였는데, 이후 약간씩 증가하였다(그림 Ⅳ-3-6).

표 Ⅳ-3-12.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89(0.75)	4.4	21.3	55.6	18.7	100.0(8,721)	
성별	남학생	2.87(0.78)	5.6	20.6	55.1	18.7	100.0(4,486)	35.761***
	여학생	2.91(0.72)	3.0	22.1	56.1	18.7	100.0(4,235)	
학교급	초등학교	3.14(0.69)	2.1	12.0	56.2	29.7	100.0(2,902)	654.498***
	중학교	2.87(0.71)	3.9	21.1	59.0	16.1	100.0(2,938)	
	고등학교	2.65(0.76)	7.2	30.9	51.5	10.3	100.0(2,881)	

*p 〈 .05, **p 〈 .01,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3-6.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2013~2025년)

나. 참여의 방해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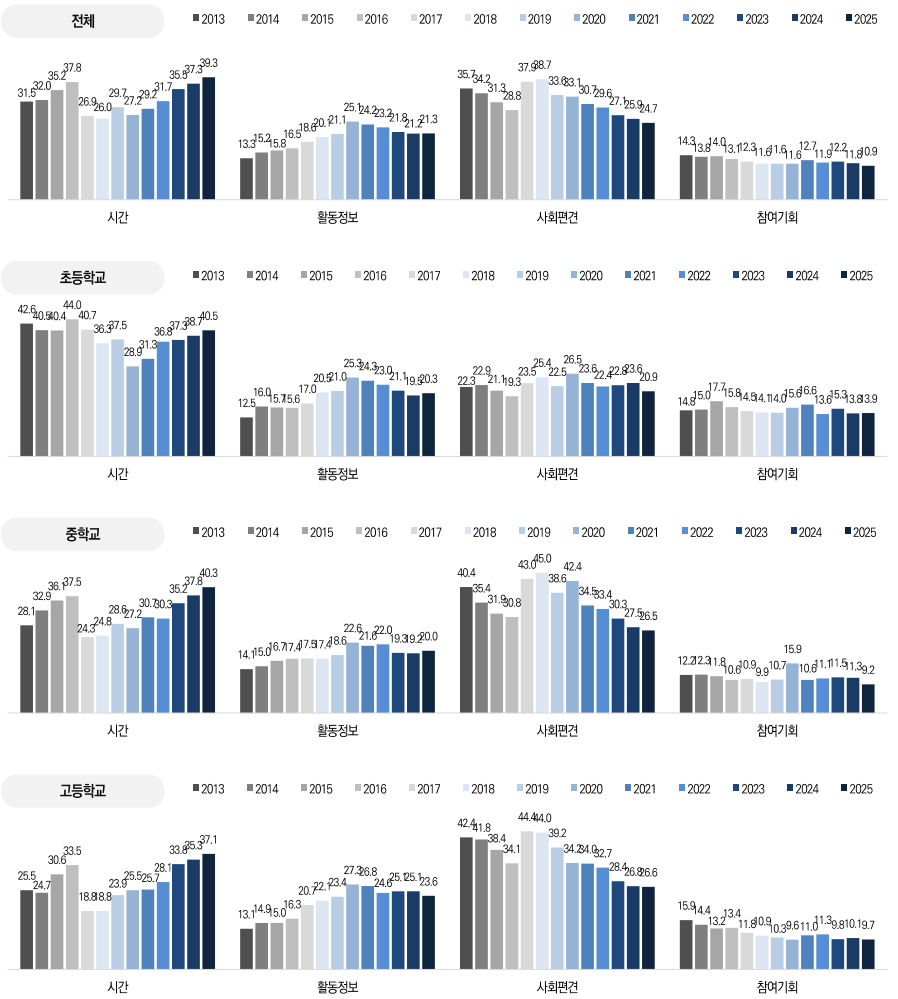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참여의 방해요인을 살펴보면, 시간 부족 39.3%,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24.7%, 참여 활동 정보 부족 21.3%,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 10.9%, 부모님(보호자) 반대 2.1%,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함 1.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Ⅳ-3-13).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수년간 시간 부족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참여 활동 정보 부족,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3-7).

표 Ⅳ-3-13. 아동·청소년 참여의 방해 요인(2025년)

(단위 : %(명))

구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	부모님 (보호자) 반대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 부족	전체(N)	χ^2
전체		39.3	21.3	2.1	1.7	24.7	10.9	100.0(8,658)	
성별	남학생	41.4	19.8	2.8	2.2	23.9	9.9	100.0(4,440)	63.962***
	여학생	37.2	22.8	1.4	1.1	25.5	12.0	100.0(4,217)	
학교급	초등학교	40.5	20.3	3.2	1.3	20.9	13.9	100.0(2,867)	118.816***
	중학교	40.3	20.0	2.3	1.7	26.5	9.2	100.0(2,933)	
	고등학교	37.1	23.6	0.9	2.1	26.6	9.7	100.0(2,857)	

*p < .05, **p < .01, ***p < .001.



* 주: 단위: %

그림 Ⅳ-3-7. 아동·청소년 참여의 방해 요인(2013~2025년)

3) 소결

이 절에서는 지표체계 대분류 영역 중 일반 원칙의 하위 지표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5년 차별 피해 경험은 외모 및 신체조건 14.1%, 학업성적 13.4%, 성별 12.4%, 나이 12.0% 순이었고, 차별 가해 경험은 외모 및 신체조건 8.8%, 학업성적 6.8%, 성별 6.1%, 나이 5.0% 순이었다. 종단적 변화를 보면, 차별 피해 경험은 올해 가족 유형, 장애가 약간 증가하였고, 차별 가해 경험은 올해 장애가 약간 증가하였다. 2025년 차별받은 후 상담 또는 도움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음이 45.9%인 가운데, 도움 받은 사람 54.1%는 친구 23.0%, 부모님(보호자) 22.7%, 선생님 3.8%, 형제·자매 2.2% 순이었다.

2024년 아동정책영향평가는 2021년에는 자체평가와 전문평가 3건, 2022년에는 자체평가와 전문평가 4건, 2023년에는 자체평가와 전문평가 4건, 2024년에는 자체평가와 전문평가 2건를 수행하였다.

2025년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를 살펴보면, 집안 중대사 결정 시 나의 의견 존중 90.6%, 상급학교 진학결정 시 나의 의사 존중 93.4%,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 존중 93.7%, 공부 시간이나 방법 결정 시 존중 90.2%, 쉬는 시간 선택 존중 87.6%, 내가 하고 싶은 것 선택 존중 90.7%로 높게 나타났다.

2025년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에 대해서는 참여가능하며 발언권 있음 29.6%, 참여가능하지만 발언권 없음 5.3%, 참여할 수 없음 5.1%로 나타났다.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83.3%였다. 징계처리절차에서의 학생의 의견표명 정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79.1%였다.

2024년 제21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는 아동들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직접 제안한 14건의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청소년 특별회의에서는 디지털, 리더십, 지속가능 역량 3개 분야 24개 과제를 제안했다. 2025년 아동·청소년 정책참여기구(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학생참여단 등)에 대한 인지도는 10.6%였다. 2025년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관련 사안 결정 및 해결 과정에 청소년 의견 청취 및 참여권 보장 문항에 대해서 74.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2025년 아동·청소년 참여의 방해요인은 시간 부족 39.3%,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24.7%, 참여 활동 정보 부족 21.3%,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 10.9%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원칙 대분류 영역의 하위 지표들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적지 않은 비율의 아동·청소년들이 차별 피해를 경험하고 있고,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는 높지 않으며, 시간 부족, 사회의 편견, 정보 부족 등 참여의 제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절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들의 차별 피해 및 가해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올해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 많은 수의 아동·청소년들이 차별 피해 및 가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은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부정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들의 차별 피해 및 가해를 줄이려는 제도, 프로그램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학교 규칙 제개정, 징계처리절차에서의 의견표명 등 학교에서의 참여를 증진시키려는 노력들도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올해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 20% 정도의 아동·청소년들이 학교 규칙 제개정, 징계처리절차에서의 의견표명 등에서 참여에 제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당사자들의 보다 강화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아동·청소년들 참여의 방해 요인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올해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시간 부족,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참여 활동 정보 부족,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 등으로 참여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약 요인을 개선하려는 제도적, 교육적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s)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클러스터 개요 및 주요 내용 요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클러스터 개요

- 이 절의 내용은 올해 수정이 이루어진 영역으로 '시민적 권리와 자유'라는 클러스터 명칭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음.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조는 표현의 자유, 제14조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제15조는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제16조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 17조 정보 접근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클러스터의 내용과 연관됨.
- 이에 따라 이 절에서는 표현, 사상, 양심, 종교, 정보, 참여권과 관계된 지표를 다루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얼마나 보장받고 있는지에 관한 지표를 살펴봄.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클러스터의 주요 내용 요약

- 아동·청소년의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유 보장 정도를 보면, '선생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 47.1%, '임원후보 자격에 성적 제한 기준 없음' 26.5%,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장소, 시간 보장' 52.1%,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 59.0%로 나타났음.
- 아동·청소년의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관련해서는,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93.6%)고 생각하고 있었음. 종교의 자유 보장 관련해서는, 부모, 형제와 관계없이 종교 선택에는 84.6%가,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에는 48.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2025년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및 SNS 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12.3%, 거리집회나 문화행사에 참여한 비율은 6.1%로 실제 참여율은 낮은 편임.

1) 표현의 자유

(1) 학생 자치활동을 통한 표현의 자유

①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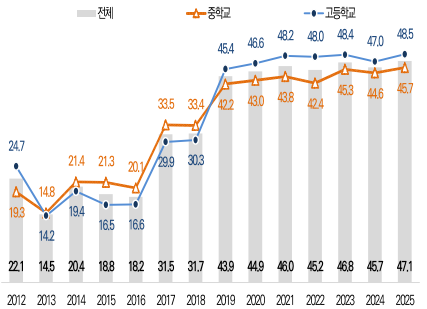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선생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 47.1%, 임원후보 자격에 성적 제한기준 없음 26.5%,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장소, 시간 보장 52.1%,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 59.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는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장소, 시간 보장은 차이가 없었고, 선생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은 고등학생이 약간 더 높았고, 임원후보 자격에 성적 제한기준 없음,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은 중학생이 약간 더 높았다(표 Ⅳ-4-1).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십 여년동안 임원후보 자격에 성적 제한기준 없음만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여주었고 다른 문항들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임원후보 자격에 성적 제한기준 없음만 올해 약간 감소하였고, 다른 문항들은 올해 약간 증가하였다(그림 Ⅳ-4-1).

표 Ⅳ-4-1.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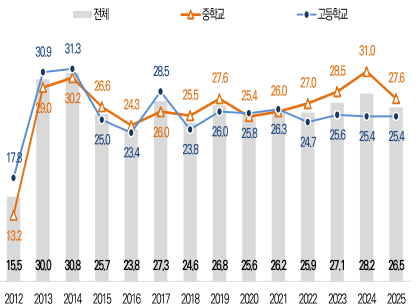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1) 선생님의 간섭없이 활동(자치권)	전체		7.1	47.1	45.8	100.0(5,803)	
	학교급	중학교	6.6	45.7	47.7	100.0(2,931)	8.925*
		고등학교	7.6	48.5	43.9	100.0(2,873)	
2) 임원후보 성적기준 있음(*역문항)	전체		35.1	26.5	38.4	100.0(5,802)	
	학교급	중학교	32.8	27.6	39.6	100.0(2,931)	14.280***
		고등학교	37.5	25.4	37.1	100.0(2,871)	
3) 예산·장소·시간 보장	전체		3.5	52.1	44.5	100.0(5,799)	
	학교급	중학교	3.4	50.9	45.7	100.0(2,929)	3.802
		고등학교	3.5	53.3	43.2	100.0(2,871)	
4)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	전체		3.3	59.0	37.7	100.0(5,802)	
	학교급	중학교	3.1	61.5	35.3	100.0(2,932)	15.354***
		고등학교	3.4	56.5	40.1	100.0(2,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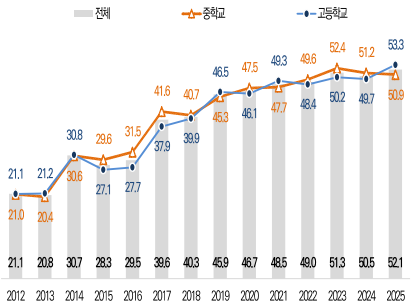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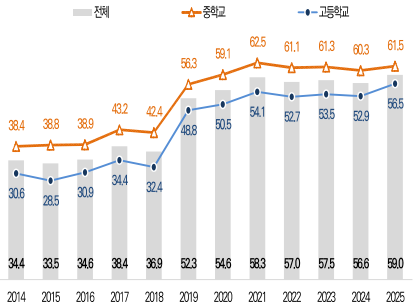
1) 자치권 보장



2) 임원후보 성적제한 없음



3) 예산, 장소, 시간 보장



4)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

* 주: 1) 1, 3, 4번 그래프는 '그렇다'의 응답값(단위: %)
2) 2번 그래프는 '아니다' 응답값(부정적 질문이므로 '아니다' 값을 반영하여 성적제한이 없음을 나타냄.)

그림 Ⅳ-4-1.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2012~2025년)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①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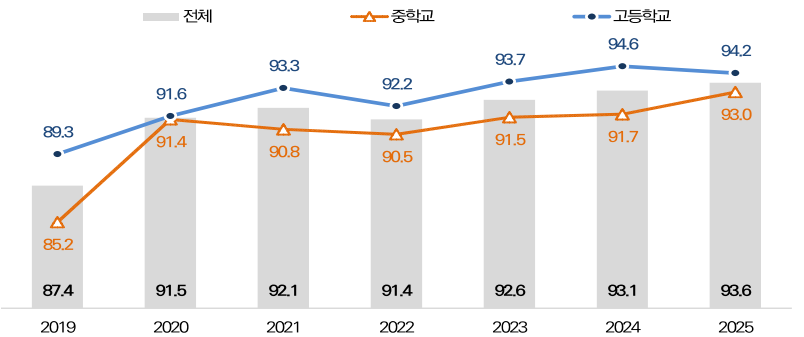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 항목으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고등학생들의 93.6%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48.3%, 매우 그렇다 45.3%)고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을 중심으로 보면 남학생이 높았고 학교급은 차이가 없었다(표 Ⅳ-4-2).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수년간 약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그림 Ⅳ-4-2).

표 Ⅳ-4-2.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38(0.64)	1.2	5.2	48.3	45.3	100.0(5,817)	
성별	남학생	3.39(0.68)	1.9	5.4	45.0	47.7	100.0(2,998)	45.555***
	여학생	3.37(0.60)	0.5	4.9	51.8	42.8	100.0(2,819)	
학교급	중학교	3.37(0.65)	1.3	5.6	48.3	44.8	100.0(2,940)	3.329
	고등학교	3.39(0.63)	1.1	4.7	48.3	45.9	100.0(2,877)	

*p 〈 .05, **p 〈 .01,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4-2.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2019~2025년)

(2) 종교 자유 보장 정도

①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가정, 학교, 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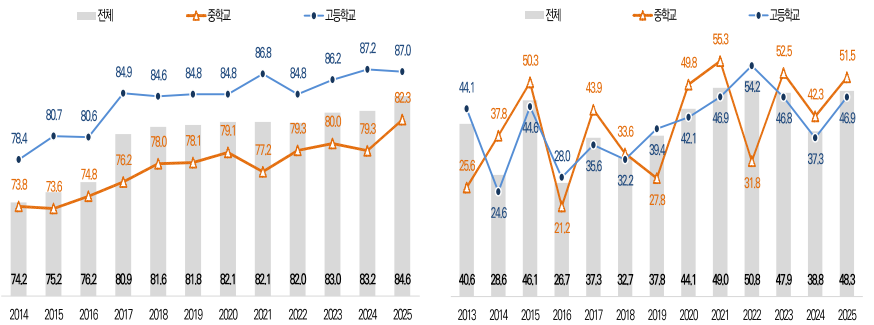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가정과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부모, 형제와 관계없이 종교 선택에는 84.6%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38.8%, 매우 그렇다 45.8%)고 응답하였고,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에는 48.3%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31.8%, 매우 그렇다 16.5%)고 응답하였다(표 Ⅳ-4-3).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최근 수년간 증가하였고,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작년에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였다(그림 Ⅳ-4-3).

표 Ⅳ-4-3.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부모·형제와 관계없이 종교 선택	전체		3.26(0.82)	4.4	11.0	38.8	45.8	100.0(5,821)	
	학교급	중학교	3.20(0.85)	5.2	12.5	39.3	43.1	100.0(2,940)	31.643***
		고등학교	3.32(0.79)	3.5	9.4	38.4	48.7	100.0(2,881)	
2) 학교 종교 행사에 자율적 참여	전체		2.38(1.05)	27.0	24.7	31.8	16.5	100.0(462)	
	학교급	중학교	2.50(1.10)	24.6	23.9	28.8	22.7	100.0(146)	6.033
		고등학교	2.32(1.03)	28.1	25.0	33.2	13.7	100.0(316)	

*p 〈 .05, **p 〈 .01, ***p 〈 .001.



1)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2)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2017년부터 전체 값에 중·고등학교 응답값만 포함됨.
3) '학교 종교 행사에 자율적 참여' 문항은 종교재단 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그림 Ⅳ-4-3.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2013~2025년)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1) 결사·집회 경험률

① 결사·집회 경험률(경험 여부, 피해 경험, 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결사 및 집회 경험을 살펴보면,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및 SNS 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12.3%(가끔 7.9%, 자주 4.4%)였고, 거리집회나 문화행사에 참여한 비율은 6.1%(가끔 4.8%, 자주 1.3%)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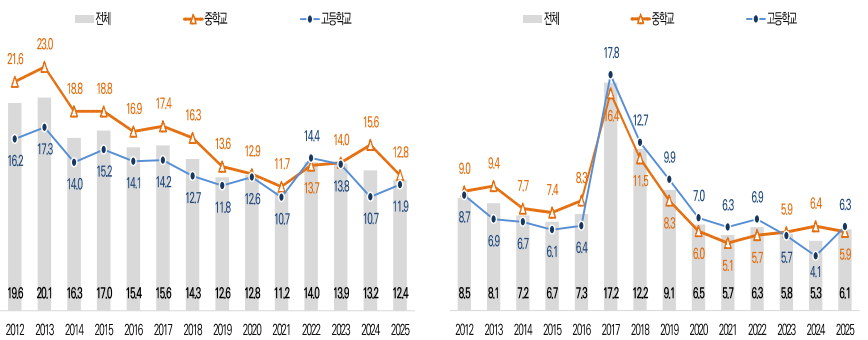
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약간 더 높았다(표 Ⅳ-4-4).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및 SNS 활동 참여,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모두 이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4-4).

표 Ⅳ-4-4.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체(N)	χ^2
1)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및 SNS 활동	전체		1.58(0.82)	58.3	29.4	7.9	4.4	100.0(5,796)	
	학교급	중학교	1.62(0.85)	56.5	30.7	7.2	5.6	100.0(2,932)	29.060***
		고등학교	1.55(0.78)	60.1	28.0	8.7	3.2	100.0(2,864)	
2) 거리 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전체		1.40(0.64)	67.4	26.5	4.8	1.3	100.0(5,756)	
	학교급	중학교	1.42(0.65)	65.7	28.4	4.4	1.5	100.0(2,910)	14.116**
		고등학교	1.38(0.64)	69.1	24.6	5.2	1.1	100.0(2,846)	

*p < .05, **p < .01, ***p < .001.
주) 2022년 조사부터 'SNS 활동' 추가됨.



1)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및 SNS 활동　　2)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 주: '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4-4.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2012~2025년)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사회문제 관련 참여 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이 94.9%이고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음이 5.1%로 나타났는데, 피해 경험의 내용으로는 경고 및 훈계 3.0%, 교내 상담 및 학부모 상담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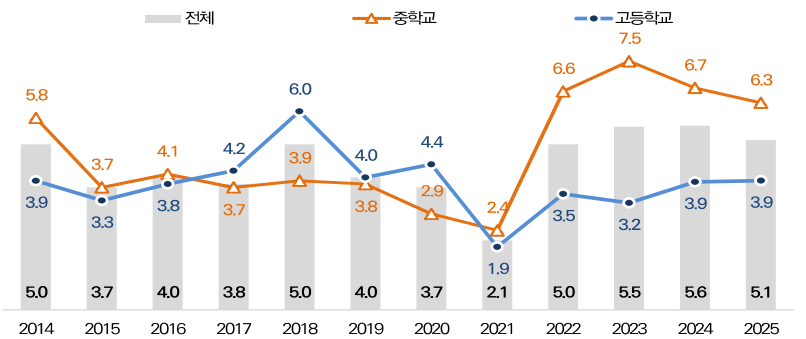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0.7%의 순이었다. 성별, 학교급별로는 차이가 없었다(표 Ⅳ-4-5).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경고 및 훈계, 상담, 징계 등의 피해 경험은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다(그림 Ⅳ-4-5).

표 Ⅳ-4-5.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2025년)

(단위 : %(명))

구분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경고 및 훈계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	선도 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기타	전체(N)	χ^2
전체		94.9	3.0	1.0	0.7	0.4	100.0(774)	
성별	남학생	93.0	4.4	0.8	1.1	0.6	100.0(371)	7.431
	여학생	96.6	1.8	1.2	0.2	0.2	100.0(404)	
학교급	중학교	93.7	3.7	1.0	1.0	0.6	100.0(405)	2.909
	고등학교	96.1	2.3	1.1	0.3	0.2	100.0(369)	

*p<.05, **p<.01, ***p<.001



* 주: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4-5.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2014~2025년)

4) 사생활의 보호

(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① 용모·복장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경험률(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학교에서의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학교에서의 용모 검사 경험 11.1%, 복장 검사 경험 45.1%, 소지품 검사 경험 8.4%로 나타났다(표 Ⅳ-4-6).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용모검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복장검사와 소지품 검사는 최근 수년간 증가했다가 올해 다시 감소하였다(그림 Ⅳ-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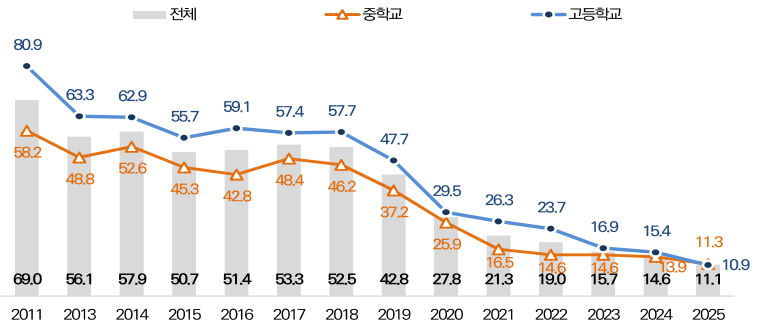
표 Ⅳ-4-6.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2025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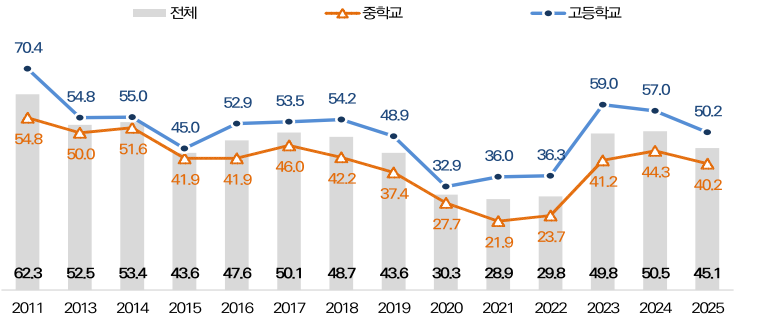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1) 용모 검사	전체		88.9	5.7	1.9	1.6	1.9	11.1	100.0(5,821)	
	학교급	중학교	88.7	5.6	2.2	1.8	1.7	11.3	100.0(2,943)	4.628
		고등학교	89.1	5.7	1.7	1.4	2.1	10.9	100.0(2,878)	
2) 복장검사	전체		54.9	15.3	6.6	7.3	15.9	45.1	100.0(5,821)	
	학교급	중학교	59.8	15.4	6.4	6.7	11.7	40.2	100.0(2,943)	95.083***
		고등학교	49.8	15.3	6.7	8.0	20.1	50.1	100.0(2,878)	
3) 소지품 검사	전체		91.6	5.9	1.0	1.0	0.5	8.4	100.0(5,822)	
	학교급	중학교	90.5	7.5	1.0	0.6	0.4	9.5	100.0(2,946)	36.860***
		고등학교	92.7	4.3	1.0	1.4	0.6	7.3	100.0(2,876)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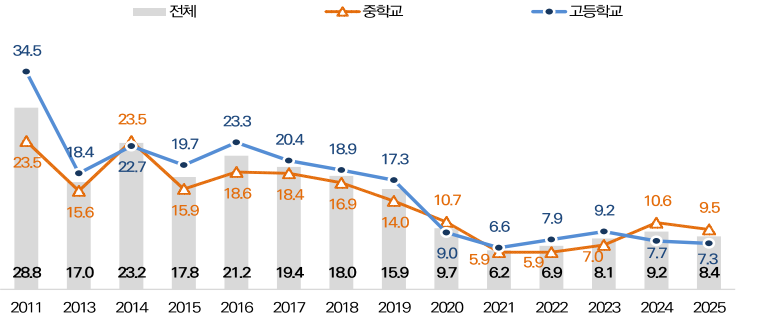
1) 용모 검사



2) 복장 검사



3) 소지품 검사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4-6.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2011~2025년)

(2) 학생 정보 보호 정도

①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민감정보, 징계처분 내용, 개인 성적, 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민감)정보에 대한 공개는 8.4%(그런 편이다 5.2%, 매우 그렇다 3.2%), 징계사항에 대한 공개는 12.6%(그런 편이다 9.9%, 매우 그렇다 2.7%), 개인 시험성적에 대한 공개 정도는 9.9%(그런 편이다 7.7%, 매우 그렇다 2.2%)로 나타났다(표 Ⅳ-4-7). 종단적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개인(민감)정보에 대한 공개, 징계사항에 대한 공개, 개인 시험성적에 대한 공개 모두 최근 수년간 증감을 반복하였다(그림 Ⅳ-4-7).

표 Ⅳ-4-7.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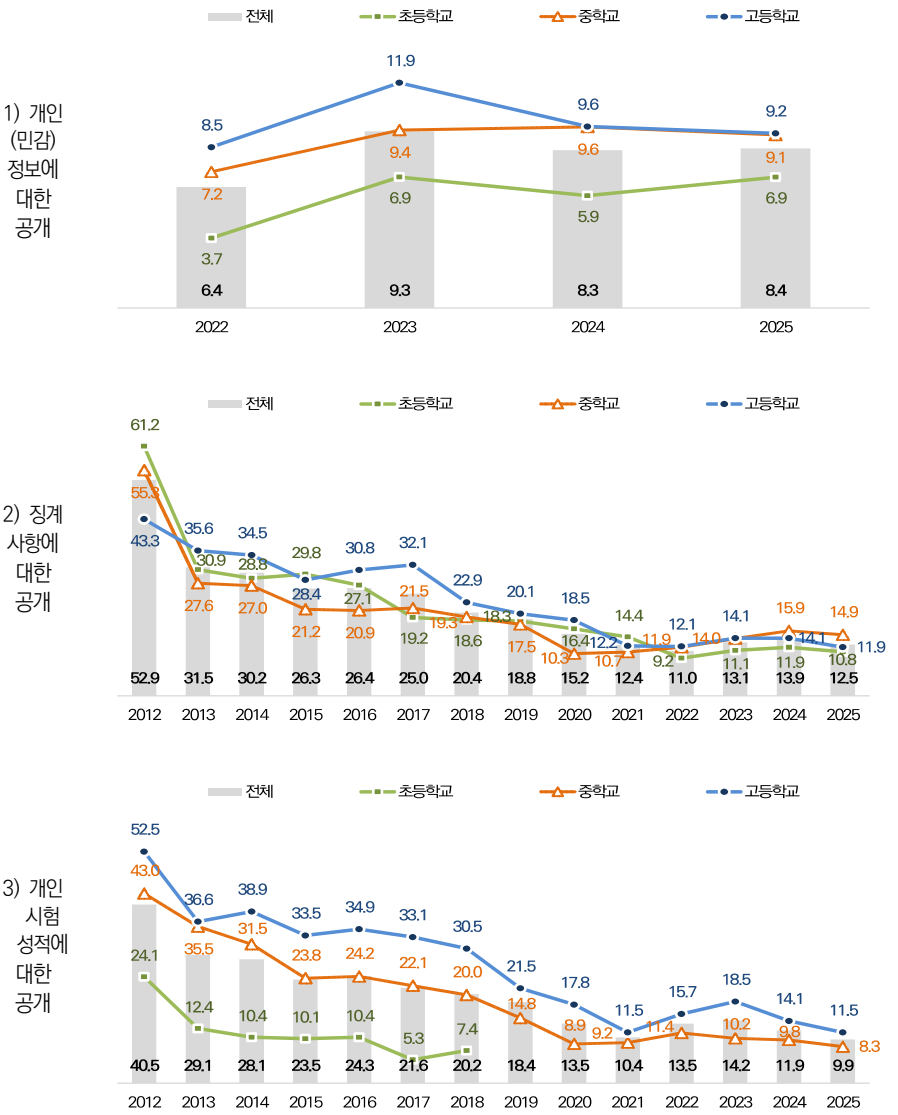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1) 개인(민감) 정보에 대한 공개	전체		1.42(0.74)	69.2	22.4	5.2	3.2	100.0(8,696)	
	학교급	초등학교	1.31(0.70)	79.1	14.0	3.6	3.3	100.0(2,887)	221.244***
		중학교	1.47(0.75)	65.1	25.8	6.0	3.2	100.0(2,931)	
		고등학교	1.49(0.75)	63.4	27.4	6.1	3.2	100.0(2,878)	
2) 징계 사항에 대한 공개	전체		1.68(0.76)	46.8	40.7	9.9	2.7	100.0(8,652)	
	학교급	초등학교	1.57(0.76)	57.0	32.2	7.8	3.0	100.0(2,859)	206.746***
		중학교	1.77(0.76)	40.6	44.4	12.4	2.6	100.0(2,920)	
		고등학교	1.72(0.74)	42.8	45.3	9.4	2.5	100.0(2,873)	
3) 개인 시험 성적에 대한 공개	전체		1.56(0.73)	56.1	34.0	7.7	2.2	100.0(5,794)	
	학교급	중학교	1.52(0.70)	58.5	33.2	6.5	1.8	100.0(2,928)	22.594***
		고등학교	1.60(0.76)	53.7	34.8	8.9	2.6	100.0(2,867)	

*p 〈 .05, **p 〈 .01, ***p 〈 .001.

* 주) 1. 개인(민감) 정보 공개 경험 문항은 2022년부터 신규 추가됨.

2. 개인(민감) 정보 공개 경험 문항은 2022년에는 '학교에서 학생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나 가정형편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다'로 측정되었고, 2023년부터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생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나 가정형편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다'로 수정되었음.



* 주: 1)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2) 시험 성적 공개 문항은 2019년부터 초등 문항에서 제외됨.
3) 2022년부터 교육비 미납 공개 여부는 삭제하고 개인(민감)정보 공개 문항을 신규 추가함.

그림 Ⅳ-4-7.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2012~2025년)

5) 정보접근권

(1) 매체 접근율

① 매체 이용률

2024년 아동·청소년 인터넷 이용 빈도에 대해 살펴보면, 3~9세도 하루 1회 이상이 77.2%, 10대도 하루 1회 이상이 93.1%, 20대도 하루 1회 이상이 95.1%를 나타내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들이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다. 하루 1회 이상 응답을 중심으로 보면 3~9세, 10대, 20대 모두 전년도에 비해 약간 줄었다(표 Ⅳ-4-8). 2024년 아동·청소년 인터넷 주 평균 이용시간에 대해 살펴보면, 3~9세 10.2시간, 10대 20.0시간, 20대 29.2시간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았다. 3~9세, 10대, 20대 모두 전년도에 비해 약간 줄었다(표 Ⅳ-4-8).

표 Ⅳ-4-8.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 시간(2017~2024년)

(단위 : %, 시간)

구분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주 평균 이용시간
2017	3~9세	73.1	15.2	11.0	0.7	7.2
	10대	98.1	0.9	1.0	-	16.9
	20대	100.0	-	0.0	-	23.6
2018	3~9세	75.5	16.2	7.6	0.7	8.9
	10대	98.1	1.2	0.7	-	17.8
	20대	99.9	0.1	0.0	-	24.2
2019	3~9세	82.3	15.2	2.5	0.0	9.3
	10대	96.9	2.6	0.5	0.0	17.6
	20대	98.6	0.9	0.4	0.0	24.3
2020	3~9세	85.6	13.2	1.1	0.1	12.5
	10대	98.5	1.5	0.0	0.0	27.6
	20대	99.3	0.6	0.14	0.0	29.5
2021	3~9세	86.2	13.0	0.7	0.0	11.1
	10대	98.8	1.1	0.0	0.0	24.9
	20대	99.8	0.2	0.0	0.0	30.4
2022	3~9세	82.2	16.5	1.3	0.1	12.4
	10대	96.7	3.2	0.1	0.0	24.3
	20대	98.2	1.7	0.0	0.0	33.4
2023	3~9세	78.2	19.9	1.5	0.5	11.2
	10대	96.5	3.0	0.4	0.1	21.1
	20대	99.3	0.6	0.0	0.0	29.5
2024	3~9세	77.2	22.3	0.4	0.0	10.2
	10대	93.1	6.6	0.2	0.1	20.0
	20대	95.1	4.8	0.1	0.0	29.2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8~2019a). 2017-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20).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76-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a).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114-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a).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p.114-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a). 202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117-1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4a). 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123-1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5). 2024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125-126.

2024년 아동·청소년 인터넷 이용 목적에 대해 살펴보면, 3~9세는 여가활동 96.1%, 자료 및 정보획득 61.8%, 커뮤니케이션 61.6%, 교육 및 학습 55.3%, 홈페이지 운영 22.9% 등의 순이었고, 10대는 자료 및 정보획득 99.9%, 커뮤니케이션 99.8%, 여가활동 97.8%, 교육 및 학습 93.2%, 홈페이지 운영 69.2% 등의 순이었으며, 20대는 커뮤니케이션 100.0%, 자료 및 정보획득 99.5%, 여가활동 99.3%, 홈페이지 운영 82.9%, 교육 및 학습 78.7% 등으로 나타났다. 종단적으로는 전년도와 비슷한 경향이었다(표 Ⅳ-4-9).

표 Ⅳ-4-9. 인터넷 이용 목적(2017~2024년)

(단위 : %)

구분		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자료 및 정보획득	홈페이지 등 운영	교육·학습	직업·직장	기타
2017	3~9세	42.2	97.7	31.5	5.6	42.9	-	-
	10대	97.1	98.9	92.6	53.8	73.6	7.8	-
	20대	100.0	99.4	100.0	78.2	64.3	51.3	-
2018	3~9세	46.4	97.0	37.5	12.2	51.6	-	0.4
	10대	98.2	99.5	95.6	70.1	83.8	7.7	30.5
	20대	100.0	99.7	100.0	90.9	65.5	59.8	93.4
2019	3~9세	48.9	96.1	36.0	10.3	50.0	0.0	3.4
	10대	98.6	99.5	96.0	69.9	83.5	8.9	27.3
	20대	100.0	99.7	100.0	91.8	70.2	60.8	91.0
2020	3~9세	53.1	89.3	43.1	18.6	48.5	2.4	3.1
	10대	98.5	99.1	95.2	64.8	99.9	9.4	37.7
	20대	99.9	99.8	100.0	87.4	82.6	51.5	96.2
2021	3~9세	71.5	91.2	54.9	87.0	56.2	1.1	3.8
	10대	99.8	100.0	99.9	47.4	99.9	9.4	71.8
	20대	100.0	100.0	100.0	99.8	77.9	55.2	99.9
2022	3~9세	66.8	99.1	58.5	87.6	63.9	2.6	2.1
	10대	100.0	100.0	100.0	48.9	100.0	11.3	88.2
	20대	100.0	100.0	100.0	100.0	90.7	59.0	100.0
2023	3~9세	57.4	95.6	73.4	18.5	58.3	0.0	1.7
	10대	99.1	99.2	95.8	68.6	98.3	3.5	48.6
	20대	99.9	99.9	99.9	85.7	78.6	29.3	98.4
2024	3~9세	61.6	96.1	61.8	22.9	55.3	0.0	4.9
	10대	99.8	97.8	99.9	69.2	93.2	14.4	57.6
	20대	100.0	99.3	99.5	82.9	78.7	54.0	98.5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8~2019a). 2017-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20).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7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a).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1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a).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1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a). 202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1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4a). 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1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5). 2024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129.

* 주: 1) 복수응답 결과
2) '기타' 항목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추가됨.

2024년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에 대해 살펴보면, 과의존 위험군(10~19세)은 42.6%(초등학생 37.3%, 중학생 41.7%, 고등학생 41.4%)였는데, 고위험군은 5.2%, 잠재적 위험군은 37.4%였다. 전년도에 비해 과의존 위험군(10~19세)이 약간 증가하였다. 2024년 아동·청소년(10~19세)의 스마트폰 주 이용 콘텐츠는 메신저, 영화·TV·동영상, 학업·업무용 검색, 게임, 음악, 관심사 검색의 순으로 높았다(표 Ⅳ-4-10).

표 Ⅳ-4-1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및 주이용 콘텐츠(복수응답, 2019~2024년)

(단위 : %)

	과의존 위험군 (10-19세)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주이용 콘텐츠							
				메신저	영화 TV 동영상	학업 업무용 검색	게임	관심사 (취미) 검색	음악	상품/ 서비스 판매	교육
2019	30.2	3.8	26.4	97.3	97.5	93.9	93.1	91.0	88.5	79.0	-
2020	35.8	5.0	30.8	98.3	98.2	96.6	95.6	95.2	91.1	85.1	84.1
2021	37.0	5.7	31.3	96.5	98.5	96.0	96.7	92.2	91.0	83.5	86.6
2022	40.1	5.2	34.9	96.5	98.4	94.9	94.4	90.3	90.0	81.3	74.2
2023	40.1	5.2	34.9	99.5	96.5	92.5	95.2	90.9	91.1	48.2	82.4
2024	42.6	5.2	37.4	98.7	98.0	93.4	92.4	90.2	90.8	46.0	74.2
초등학생	37.3	4.6	32.8	90.4	97.0	78.4	93.8	71.6	74.5	18.7	57.8
중 학 생	41.7	4.6	37.2	98.8	97.7	96.0	92.3	92.6	92.7	45.3	76.5
고등학생	41.4	5.7	35.7	99.5	98.3	95.4	91.1	94.9	94.1	57.4	77.6

* 출처: 여성가족부(2022.05.25.). 보도자료: 2022 청소년 통계. p.34.
여성가족부(2023.05.30.). 보도자료: 2023 청소년 통계. p.3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307에서 2023년 8월 23일 인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b). 202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b).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74.
여성가족부(2024.05.29.) 보도자료: 2024 청소년 통계. p.3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3059#pressRelease에서 2024년 7월 12일 인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4b).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73, 163.
* 원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b). 202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주: 1) '스마트폰 과의존'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 능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
2)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은 상위 콘텐츠를 제시함.
3) 필수교육 부분은 2023 청소년 통계에는 수치가 나타나 있지 않아 원자료인 202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71에서 해당 수치를 찾아 기입하였음. 필수교육 2022년 전체 수치는 청소년(만10~19세) 수치임(원자료 p.71참조).

2023년 전국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에 대해 살펴보면, 전국 일반 공공도서관은 1,159개관, 어린이도서관은 112개관이 운영되었다. 전년도인 2022년에 비해 전국 일반 공공도서관은 30개관, 어린이도서관은 5개관이 증가하였다(표 Ⅳ-4-11).

표 Ⅳ-4-11.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2012~2023년)

(단위 : 개관)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반 공공도서관	745	780	842	889	918	947	997	1,033	1,068	1,103	1,129	1,159
어린이도서관	83	85	88	89	92	95	99	101	104	105	107	112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년도(20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1.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년도(2018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4.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년도('19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4.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년('20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4.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년('21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8.
문화체육관광부(2023). 2023년('22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6.
문화체육관광부(2024b). 2024년('23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8.

② 유해매체 이용 경험

2024년 아동·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에 대해 살펴보면, 초(4~6학년), 중, 고 아동·청소년의 26.5%가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학교급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았다.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면, 2022년에 많이 증가했다가 전년도인 2024년에 많이 감소하였다(표 Ⅳ-4-12).

표 Ⅳ-4-12.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2016~2024년)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6	41.5	51.7	30.5	18.6(5~6학년 16.1)	42.4	58.0
2018	39.4	48.7	29.4	19.6(5~6학년 17.7)	41.6	53.3
2020	37.4	44.3	29.7	33.8(5~6학년 29.3)	32.2	45.1
2022	47.5	53.4	41.2	40.0(5-6학년 38.6)	46.1	56.6
2024	26.5	33.9	18.7	13.7(5-6학년 13.3)	28.2	38.5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53.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76.
여성가족부(2022c).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94.
여성가족부(2024c). 2024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79.

* 주: 1) 초등학생의 경우, 4~6학년을 조사 대상으로 함.
2) 2016년과 2018년, 2020년, 2022년, 2024년 결과는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024년 아동·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시청 이용 경로를 살펴보면, 온라인동영상 제공 서비스(OTT) 17.0%,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7.7%, TV 방송 7.4%, 숏폼 콘텐츠 7.3%, SNS 7.3%,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5.2%, 게임 4.7%, 화상회의 플랫폼 3.2%, 메타버스 2.9%, 생성형 AI 1.9%, 포털 미디어 플랫폼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에 비해 TV 방송, 온라인동영상 제공 서비스(OTT),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SNS, 메타버스는 감소하였다(표 Ⅳ-4-13).

표 Ⅳ-4-13. 최근 1년간 이용 경로별 성인용 영상물 시청 경험(2018~2024년)

(단위 : %)

구분		TV 방송			동영상 서비스											
					온라인동영상 제공 서비스(OTT)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숏폼 콘텐츠			포털 미디어 플랫폼		
		2020	2022	2024	2020	2022	2024	2020	2022	2024	2020	2022	2024	2020	2022	2024
전체		13.5	19.3	7.4	-	31.2	17.0	17.3	21.3	7.7	-	-	7.3	-	-	1.8
성별	남자	14.5	19.8	9.1	-	32.0	19.9	19.9	24.9	10.9	-	-	9.7	-	-	2.5
	여자	12.5	18.8	5.7	-	30.4	13.9	14.6	17.5	4.2	-	-	4.8	-	-	1.0
학교급	초등학교	16.1	24.3	7.3	-	24.2	9.4	21.6	24.9	6.2	-	-	6.3	-	-	2.0
	중학교	11.0	16.1	7.4	-	29.7	17.0	14.4	19.4	7.7	-	-	7.6	-	-	1.5
	고등학교	13.3	17.7	7.6	-	39.7	25.1	15.9	19.6	9.2	-	-	8.1	-	-	1.9

구분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SNS			화상회의 플랫폼			메타버스			생성형 AI		
		2020	2022	2024	2020	2022	2024	2020	2022	2024	2020	2022	2024	2020	2022	2024
전체		12.6	12.6	5.2	12.8	11.6	7.3	-	-	3.2	-	8.1	2.9	-	-	1.9
성별	남자	13.6	13.9	7.4	12.8	12.1	9.1	-	-	4.8	-	9.0	3.9	-	-	2.7
	여자	11.6	11.1	2.8	12.8	11.2	5.4	-	-	1.4	-	7.2	1.7	-	-	1.0
학교급	초등학교	18.4	17.1	3.7	11.1	8.8	2.9	-	-	2.7	-	17.5	4.3	-	-	1.4
	중학교	10.5	10.6	5.6	12.5	13.1	8.4	-	-	3.8	-	4.4	2.1	-	-	1.6
	고등학교	9.0	9.9	6.3	14.6	13.1	10.9	-	-	3.1	-	2.5	2.1	-	-	2.6

구분		온라인/모바일게임			인터넷 포털 사이트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스마트폰 앱		
		2020	2022	2024	2020	2022	2024	2020	2022	2024	2020	2022	2024
전체		-	-	4.7	23.9	25.2	-	5.7	-	-	13.4	-	-
성별	남자	-	-	6.9	31.3	34.4	-	6.9	-	-	14.7	-	-
	여자	-	-	2.3	15.9	15.3	-	4.4	-	-	11.9	-	-
학교급	초등학교	-	-	5.3	19.4	18.8	-	6.9	-	-	18.5	-	-
	중학교	-	-	3.8	20.1	24.3	-	4.4	-	-	11.2	-	-
	고등학교	-	-	4.9	31.8	32.5	-	5.7	-	-	10.3	-	-

* 출처: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77.
여성가족부(2022c).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96.
여성가족부(2024c). 2024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83.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20년도는 '성인용 TV 프로그램, 영화, 동영상 등'으로, ′22년도에는 '성인용(19금) TV 프로그램, 영화, 동영상 등'으로 질의함.
3) TV방송의 예시는 각 년도별로 다름. ′20년도에는 'TV방송(지상파, 케이블, IPTV 등)', ′22년도, ′24년도에는 'TV방송(KBS, MBC, SBS, EBS, tvN, Mnet, OCN, JTBC 등)'임.
4) ′22년에는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의 예시를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왓챠 등으로 제시함. ′24년에는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OTT)의 예시를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왓챠 등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5)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의 예시는 각 년도별로 다름. ′20년도는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유튜브, 팝콘TV, 팟캐스트, 아프리카TV, 틱톡 등)', ′22년도는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유튜브, 틱톡 등)'임. ′24년도는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치지직 등)'임.
6)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예시는 각 년도별로 다름. ′20년도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22년도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등)'임. ′24년도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페이스북 메신저 등)'임.
7) ′20년도 SNS 예시는 각 년도별로 다름. ′20년도에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텀블러, 인스타그램, 블로그, 인터넷 카페, 밴드 등으로 질의하였고 ′22년도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에스크 등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24년도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에스크, 트위터 등으로 변경하여 질의함.
8) ′22년도에 '메타버스(제페토, 로블록스, 이프렌드 등)'를 신규로 측정함. ′24년도에는 예시에 마인크래프트, 본디 추가하여 질의함.
9) ′22년도에는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문항 삭제함. ′24년도에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삭제함.
10) ′24년도에 '숏폼 콘텐츠', '포털 미디어 플랫폼', '화상회의 플랫폼', '생성형 AI',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신규로 측정함.

(3) 미디어 리터러시

① 매체이용 교육 경험

2024년 아동·청소년의 매체이용 교육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은 57.4%,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은 73.8%,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은 75.3%,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72.2%가 교육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은 약간 감소했으나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약간 증가하였다(표 Ⅳ-4-14).

표 Ⅳ-4-14. 매체이용 교육 경험(복수응답, 2020~2024년)

(단위 : %)

구분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2020	2022	2024	2020	2022	2024	2020	2022	2024	2022	2024
전체		51.2	57.8	57.4	48.4	55.5	73.8	73.5	80.9	75.3	68.7	72.2
성별	남자	55.0	61.4	61.7	52.5	57.9	73.6	73.3	79.3	73.7	67.4	72.2
	여자	47.1	54.1	52.8	44.0	53.0	74.0	73.6	82.5	77.0	70.0	72.3
학교급	초등학교	50.3	57.4	62.6	42.4	43.8	69.9	78.4	80.9	79.7	66.2	77.2
	중학교	55.4	62.1	59.0	51.7	62.0	79.3	75.2	85.2	76.7	75.4	73.9
	고등학교	48.3	53.9	50.1	51.3	60.8	72.2	67.1	83.0	69.1	64.1	65.1

* 출처: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113.
여성가족부(2022c).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128.
여성가족부(2024c). 2024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119.

*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복수응답
2) '22년도부터 'SNS 등 이용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문항 추가함. '24년도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으로 질의 수정함.

2024년 아동·청소년의 매체이용 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은 78.3%(약간 도움이 됨 39.6%, 매우 도움이 됨 38.7%)가,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은 80.7%(약간 도움이 됨 38.9%, 매우 도움이 됨 41.8%)가,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은 79.3%(약간 도움이 됨 40.3%, 매우 도움이 됨 39.0%)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은 83.8%(약간 도움이 됨 37.0%, 매우 도움이 됨 46.8%)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표 Ⅳ-4-15).

표 Ⅳ-4-15. 매체 이용 교육의 도움 정도(2020~2024년)

(단위 : 명, %)

매체 종류			약간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2020	2022	2024	2020	2022	2024
1)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	전체		52.0	39.9	39.6	19.7	25.2	38.7
	성별	남자	48.6	38.3	38.5	18.7	23.7	38.1
		여자	56.3	41.9	41.0	21.1	27.0	39.4
	학교급	초등학교	51.0	38.3	32.3	38.8	51.6	58.8
		중학교	57.1	45.1	44.5	14.3	14.3	31.4
		고등학교	47.6	35.5	43.4	6.6	9.2	20.8

매체 종류			약간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2020	2022	2024	2020	2022	2024
2)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	전체		51.3	38.8	38.9	24.9	31.0	41.8
	성별	남자	47.9	35.8	35.5	25.5	32.1	44.0
		여자	55.6	42.3	42.4	24.1	29.6	39.5
	학교급	초등학교	46.5	31.2	27.3	44.5	59.0	65.0
		중학교	56.5	43.4	42.5	23.1	25.5	37.1
		고등학교	50.1	39.5	46.7	11.1	15.7	23.2
3)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	전체		50.9	39.9	40.3	18.1	23.8	39.0
	성별	남자	48.9	38.3	37.1	18.7	23.5	40.5
		여자	53.1	41.6	43.5	17.5	24.2	37.5
	학교급	초등학교	54.8	41.9	31.4	32.5	43.9	58.9
		중학교	52.8	41.8	44.0	13.9	15.6	33.5
		고등학교	44.6	35.3	46.9	6.6	9.5	20.8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전체		-	42.4	37.0	-	30.8	46.8
	성별	남자	-	39.1	34.6	-	30.8	47.7
		여자	-	45.8	39.6	-	30.8	45.8
	학교급	초등학교	-	35.7	25.4	-	54.1	68.5
		중학교	-	47.1	41.4	-	23.7	40.8
		고등학교	-	43.8	46.6	-	14.5	26.4

* 출처: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115.
여성가족부(2022c).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130.
여성가족부(2024c). 2024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121.

* 주: 1)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 한함.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3) 원자료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됨', '별로 도움이 안 됨', '약간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에 대한 값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 수치 위주로 제시함.
4) '22년도부터 'SNS 등 이용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문항 추가함. '24년도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으로 질의 수정함.
5) '22년도에 '도움이 안 됨'을 '별로 도움이 안 됨'으로, '도움이 됨'을 '약간 도움이 됨'으로 수정함.

② 미디어 역량

2024년 아동·청소년(10~19세) 디지털 사용 역량에 대해 살펴보면,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정보 및 콘텐츠를 잘 찾을 수 있다에 91.6%, 온라인상에서 획득한 정보가 신뢰할만한지 판단할 수 있다에 75.7%, 온라인상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다에 64.7%,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에 관련한 이슈를 파악하고 있다에 58.5%, 온라인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학업·직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에 65.9%,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다에 43.8%의 아동·청소년들이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4-16).

표 Ⅳ-4-16. 디지털 사용 역량(2020~2024년)

(단위 : %)

매체 종류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정보 및 콘텐츠를 잘 찾을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획득한 정보가 신뢰할만한지 판단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에 관련한 이슈를 파악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학업·직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2020	전체	20.2	79.8	27.3	72.7	37.0	63.0	40.3	59.7	44.2	55.8	65.5	34.5
	청소년(만 10~19세)	18.3	81.7	30.3	69.7	39.7	60.3	41.4	58.6	33.2	66.8	63.0	37.0
	초등학교	27.9	72.1	45.2	54.8	56.4	43.6	56.3	43.7	40.7	59.3	73.8	26.2
	중학교	17.5	82.5	28.5	71.5	36.7	63.3	39.4	60.6	32.1	67.9	67.0	33.0
	고등학교	11.8	88.2	20.4	79.6	29.7	70.3	32.0	68.0	29.0	71.0	52.8	47.2
2021	전체	21.4	78.6	29.4	70.6	37.5	62.5	46.4	53.6	47.0	53.0	59.0	41.0
	청소년(만 10~19세)	16.3	83.7	29.8	70.2	41.6	58.4	48.8	51.2	34.5	65.5	57.4	42.6
	초등학교	26.6	73.4	49.1	50.9	59.0	41.0	60.2	39.8	42.6	57.4	71.1	28.9
	중학교	15.1	84.9	25.9	74.1	41.0	59.0	50.0	50.0	34.1	65.9	55.6	44.4
	고등학교	8.4	91.6	16.5	83.5	27.0	73.0	38.0	62.0	27.9	72.1	47.1	52.9
2022	전체	22.5	77.5	31.3	68.7	40.2	59.8	47.0	53.0	45.8	54.2	58.5	41.5
	청소년(만 10~19세)	17.7	82.3	33.1	66.9	44.7	55.3	46.9	53.1	35.9	64.1	53.1	46.9
	초등학교	24.1	75.9	45.3	54.7	60.9	39.1	60.5	39.5	44.5	55.5	66.3	33.7
	중학교	15.8	84.2	32.1	67.9	41.8	58.2	47.3	52.7	36.5	63.5	50.1	49.9
	고등학교	14.9	85.1	24.5	75.5	35.7	64.3	36.0	64.0	29.3	70.7	46.8	53.2
2023	전체	15.4	84.6	24.4	75.6	32.9	67.1	39.9	60.1	44.5	55.5	55.0	45.0
	청소년(만 10~19세)	9.8	90.2	25.9	74.1	37.3	62.7	42.8	57.2	33.8	66.2	51.6	48.4
	초등학교	19.7	80.3	44.2	55.8	56.9	43.1	63.4	36.6	44.5	55.5	70.1	29.9
	중학교	6.2	93.8	25.1	74.9	35.9	64.1	38.6	61.4	31.0	69.0	49.3	50.7
	고등학교	6.8	93.2	15.6	84.4	27.2	72.8	35.0	65.0	29.4	70.6	43.6	56.4
2024	전체	13.1	86.9	23.3	76.7	32.2	67.8	38.8	61.2	46.7	53.3	60.0	40.0
	청소년(만 10~19세)	8.4	91.6	24.3	75.7	35.3	64.7	41.5	58.5	34.1	65.9	56.2	43.8
	초등학교	18.5	81.5	45.1	54.9	55.8	44.2	61.1	38.9	45.8	54.2	72.1	27.9
	중학교	6.2	93.8	19.9	80.1	34.4	65.6	41.0	59.0	32.1	67.9	57.2	42.8
	고등학교	3.5	96.5	14.5	85.5	23.6	76.4	30.0	70.0	27.9	72.1	47.3	52.7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b).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b). 202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3b).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8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4b).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p.89.

* 주: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는 가구방문조사로 실시되며 통계표의 '전체'값은 성인을 포함한 조사대상 전체 응답값임.

6) 소결

이 절에서는 지표체계 대분류 영역 중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하위 지표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5년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를 살펴보면, 선생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 47.1%, 임원후보 자격에 성적 제한기준 없음 26.5%,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장소, 시간 보장 52.1%, 학생회 의견 존중 및 반영 59.0%로 나타났다.

2025년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고등학생들의 93.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2025년 종교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부모, 형제와 관계없이 종교 선택에는 84.6%가,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에는 48.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2025년 결사 및 집회 경험을 살펴보면,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및 SNS 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12.3%, 거리집회나 문화행사에 참여한 비율은 6.1%였다. 사회문제 관련 참여 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이 94.9%이고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음이 5.1%(경고 및 훈계 3.0%, 교내 상담 및 학부모 상담 1.0%,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0.7% 등)로 나타났다.

2025년 학교에서의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 경험을 살펴보면, 학교에서의 용모 검사 경험 11.1%, 복장 검사 경험 45.1%, 소지품 검사 경험 8.4%였다.

2025년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를 살펴보면, 개인(민감)정보에 대한 공개는 8.4%, 징계사항에 대한 공개는 12.6%, 개인 시험성적에 대한 공개는 9.9%로 나타났다.

2024년 아동·청소년 인터넷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들이 하루 1회 이상(3~9세 77.2%, 10대 93.1%, 20대 95.1%)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다. 2024년 아동·청소년 인터넷 주 평균 이용시간은 3~9세 10.2시간, 10대 20.0시간, 20대 29.2시간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아동·청소년 인터넷 이용 목적은 3~9세, 10대, 20대 연령별로 다양하게 달랐다. 2024년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10~19세)은 42.6%(초등학생 37.3%, 중학생 41.7%, 고등학생 41.4%)였다. 2023년 전국 일반 공공도서관은 1,159개관, 어린이도서관은 112개관이 운영되었다. 2024년 아동·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초(4-6학년), 중, 고 아동·청소년의 26.5%가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2024년 아동·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시청 이용경로는 온라인동영상 제공 서비스(OTT),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TV 방송, 숏폼 콘텐츠, SNS,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게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아동·청소년의 매체이용 교육 경험은 성인용 콘텐츠 피해 예방 교육은 57.4%, 온라인 도박 피해 예방 교육이 73.8%,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교육은 75.3%,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72.2%의 아동·청소년이 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아동·청소년(10~19세) 디지털 사용 역량은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정보 및 콘텐츠를 잘 찾을 수 있다에 91.6%, 온라인상에서 획득한 정보가 신뢰할만한지 판단할 수 있다에 75.7%, 온라인상에서 사회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다에 64.7%,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에 관련한 이슈를 파악하고 있다에 58.5%, 온라인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학업·직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에 65.9%,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할 수 있다에 43.8%의 아동·청소년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대분류 영역의 하위 지표들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등에서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 참여, 학교에서의 검사, 개인정보 보호, 스마트폰 과의존 등에 대해서는 보다 향상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절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에서의 검사 경험을 보다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올해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 많은 수의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에서의 검사 경험을 줄이려는 관련 당사자들의 보다 강화된 관심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정도를 지금보다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올해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개인(민감)정보, 징계사항, 개인 시험성적에 대한 공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이 보다 관심을 갖고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24년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를 살펴보면, 과의존 위험군(10~19세)은 42.6%(고위험군 5.2%, 잠재적 위험군 3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집중력 저하, 불안 및 우울감 증가 등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를 지금보다 줄이려는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아동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children)

아동에 대한 폭력 클러스터 개요 및 주요 내용 요약

○ 아동에 대한 폭력 클러스터 개요

- 아동에 대한 폭력 클러스터는 아동학대 및 방임, 체벌, 착취 등 아동·청소년에게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폭력에 관한 클러스터임.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항은 19조로 아동·청소년을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음.
- 이 절에서는 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 디지털(온라인) 환경에서 얼마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지를 보고 하였음.

○ 아동에 대한 폭력클러스터의 주요 내용 요약

- 아동·청소년의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32.5%, 신체적인 벌(체벌) 경험률은 25.3%였으며,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10.4%, 신체적인 벌(체벌) 경험률은 4.3%였음. 학교에서의 폭력은 상당 부분 감소하였으나 가정에서의 폭력 경험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며, 여전히 20명 중에 1명 꼴로는 학교에서 체벌을 경험하고, 10명 중 1명은 정서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이 친구, 선·후배로부터 경험한 폭력은 욕설 및 모욕 19.9%, 폭행 및 구타 9.1%, 따돌림 8.4%, 성적인 희롱 및 추행 3.2%, 돈, 물건 빼앗김 2.6%, 강제적인 심부름 2.2% 순이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은 욕설 및 모욕 26.1%, 협박 4.4%, 사생활 침해 4.4%, 성희롱(놀림) 4.2%, 따돌림 3.2% 순이었음.
- 2024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50,242건이었고, 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93.7%인 47,096건, 이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는 52.0%인 24,492건이었음. 아동학대 행위자로는 부모가 84.1%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학대 사례 유형으로는 정서학대가 46.8%로 가장 많았음.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1) 청소년폭력 경험률

① 가정(부모)에서의 폭력피해 경험(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아동·청소년이 부모님(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32.5%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양부모가정이나 한부모가정보다는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경제적 수준이 '하'일 경우, '상'이나 '중'일 경우보다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표 Ⅳ-5-1).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2024년보다는 2025년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한 비율이 조금 감소하였다. 2011년 이후의 추세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초등학생은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한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Ⅳ-5-1).

표 Ⅳ-5-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2025년)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67.5	16.4	6.8	5.0	4.3	100.0(8,723)	
성별	남학생	67.5	16.3	6.6	5.1	4.5	100.0(4,483)	1.390
	여학생	67.4	16.5	7.0	5.0	4.1	100.0(4,240)	
학교급	초등학교	63.8	18.4	6.8	5.5	5.5	100.0(2,893)	95.501***
	중학교	64.6	17.3	7.9	5.5	4.5	100.0(2,947)	
	고등학교	74.1	13.4	5.6	4.0	2.9	100.0(2,884)	
지역 규모	대도시	67.2	15.9	7.6	5.3	3.9	100.0(3,440)	12.217
	중소도시	67.4	17.0	6.2	4.7	4.8	100.0(4,225)	
	읍면지역	68.6	15.8	6.5	5.2	3.9	100.0(1,05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7.9	16.2	6.7	5.0	4.1	100.0(7,822)	25.275*
	한부모가정	64.6	16.9	7.8	4.7	6.1	100.0(680)	
	조손가정	55.8	29.1	6.7	2.5	5.9	100.0(74)	
	기타	56.8	20.2	7.2	7.8	8.0	100.0(87)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67.9	16.5	5.9	5.0	4.7	100.0(3,244)	30.575***
	중	68.4	16.7	6.9	4.5	3.4	100.0(3,559)	
	하	64.8	15.6	8.1	6.0	5.5	100.0(1,872)	
경제적 수준	상	69.5	16.2	6.2	4.4	3.7	100.0(5,257)	113.681***
	중	67.2	16.2	7.1	5.1	4.4	100.0(2,765)	
	하	52.1	18.9	10.3	9.5	9.2	100.0(648)	

*p 〈 .05, **p 〈 .01, ***p 〈 .001.
* 주: 1)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2) 2023년 조사부터는 '모욕적인 말(욕설)'에서 '정서적인 공격(모욕적인 말, 욕설 등)'으로 설문문항 문구 수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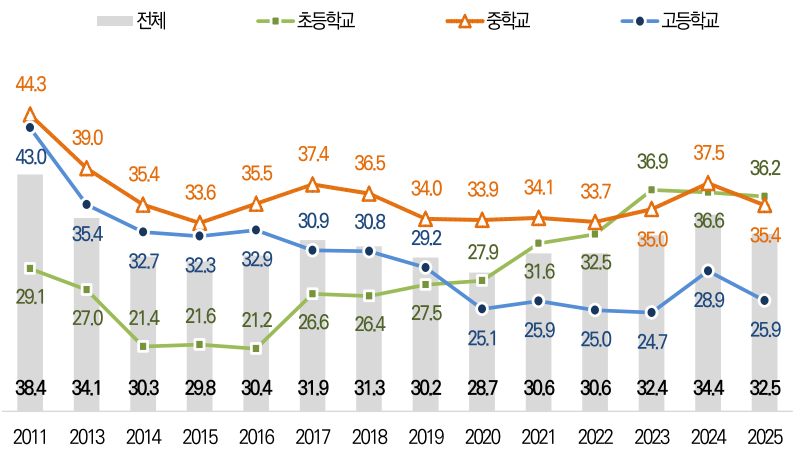


그림 Ⅳ-5-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2011~2025년)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아동·청소년이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25.3%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중학생이었으며, 고등학생이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인 집단이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을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중' 집단이었으며, '하'인 집단이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을 경험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표 Ⅳ-5-2).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을 경험한 비율은 2011년 39.3%였으나, 2025년 25.3%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초등학생은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2016년 29.6%로 최소 비율을 보였다가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5년에는 39.8%가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Ⅳ-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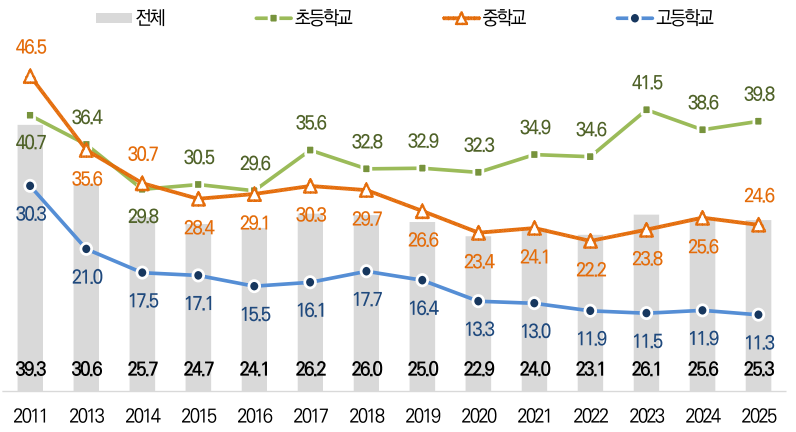
표 Ⅳ-5-2. 체벌 경험 여부_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 2025년)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74.7	17.0	4.5	2.4	1.3	100.0(8,735)	
성별	남학생	73.5	17.7	4.8	2.6	1.5	100.0(4,491)	8.260
	여학생	76.1	16.2	4.2	2.3	1.2	100.0(4,244)	
학교급	초등학교	60.2	25.6	7.2	4.5	2.5	100.0(2,900)	643.742***
	중학교	75.4	16.9	4.6	2.0	1.0	100.0(2,950)	
	고등학교	88.7	8.4	1.7	0.7	0.5	100.0(2,885)	
지역 규모	대도시	74.4	16.9	4.9	2.5	1.3	100.0(3,445)	6.213
	중소도시	74.7	17.1	4.3	2.5	1.5	100.0(4,228)	
	읍면지역	76.1	17.0	4.1	1.8	1.0	100.0(1,0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4.6	17.2	4.5	2.4	1.3	100.0(7,833)	18.300
	한부모가정	78.3	14.5	3.2	2.3	1.6	100.0(681)	
	조손가정	73.9	18.2	4.0	2.7	1.2	100.0(74)	
	기타	60.2	23.6	9.0	5.0	2.2	100.0(87)	
학업 성적	상	71.5	18.4	5.2	2.9	2.0	100.0(3,247)	46.449***
	중	75.7	16.9	4.4	2.0	0.9	100.0(3,565)	
	하	78.6	14.6	3.5	2.3	1.0	100.0(1,875)	
경제적 수준	상	74.4	17.5	4.3	2.3	1.5	100.0(5,265)	11.535
	중	75.9	16.2	4.5	2.3	1.1	100.0(2,766)	
	하	73.2	16.0	6.0	3.4	1.4	100.0(651)	

*p < .05, **p < .01, ***p < .001.

* 주: 1)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2) 2023년 조사부터는 '체벌'에서 '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으로 설문문항 문구 수정되었음.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5-2. 체벌 경험 여부_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2011~2025년)

② 교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아동·청소년이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10.4%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한 비율이 더 낮았다(표 Ⅳ-5-3).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30.0%가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2025년에는 10.4%로 많이 감소하였다. 특히, 고등학생은 2011년 41.9%, 중학생은 2011년 38.0%가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2025년에는 각각 11.8%, 12.7%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그림 Ⅳ-5-3).

표 Ⅳ-5-3.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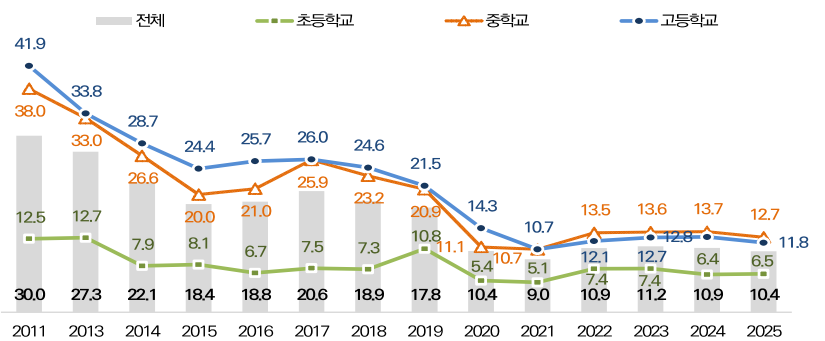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89.6	6.8	1.5	1.1	1.0	100.0(8,718)	
성별	남학생	88.4	7.3	1.9	1.1	1.3	100.0(4,481)	21.605***
	여학생	90.9	6.2	1.1	1.0	0.7	100.0(4,237)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학교급	초등학교	93.5	4.0	1.1	0.8	0.6	100.0(2,892)	72.929***
	중학교	87.3	8.2	1.9	1.3	1.4	100.0(2,943)	
	고등학교	88.2	8.1	1.6	1.1	1.0	100.0(2,883)	
지역 규모	대도시	90.0	6.8	1.4	1.0	0.7	100.0(3,436)	8.101
	중소도시	89.6	6.5	1.6	1.1	1.2	100.0(4,223)	
	읍면지역	88.2	7.8	1.8	1.0	1.1	100.0(1,05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9.9	6.6	1.5	1.0	0.9	100.0(7,813)	21.893*
	한부모가정	87.4	7.9	1.9	1.5	1.3	100.0(681)	
	조손가정	89.6	8.4	0.8	0.0	1.2	100.0(75)	
	기타	81.4	9.7	3.0	1.9	4.1	100.0(87)	
학업 성적	상	89.7	6.8	1.3	1.0	1.2	100.0(3,244)	24.653**
	중	90.8	6.3	1.5	0.8	0.7	100.0(3,556)	
	하	87.3	7.6	2.0	1.6	1.4	100.0(1,869)	
경제적 수준	상	90.2	6.5	1.3	1.0	1.0	100.0(5,254)	18.155*
	중	89.5	6.8	1.7	1.1	1.0	100.0(2,761)	
	하	86.2	8.5	3.1	1.3	0.9	100.0(649)	

*p 〈 .05, **p 〈 .01, ***p 〈 .001.

* 주: 1)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2) 2023년 조사부터는 '모욕적인 말(욕설)'에서 '정서적인 공격(모욕적인 말, 욕설 등)'으로 설문 문항 문구 수정되었음.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5-3.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2011~2025년)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아동·청소년이 교사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4.3%였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교사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중학생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

보다 교사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표 Ⅳ-5-4).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교사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을 경험한 비율은 2011년 38.4%에서, 2025년 4.3%로 많이 감소하였다. 특히, 중학생은 2011년 48.8%, 고등학생은 47.1%로 약 반 정도가 교사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2025년에는 각각 6.2%, 2.8%만이 교사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Ⅳ-5-4).

표 Ⅳ-5-4. 체벌 경험 여부_교사로부터 신체적 벌(체벌,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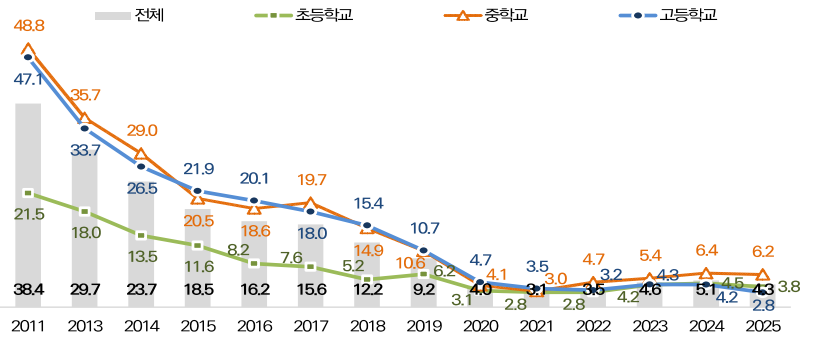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5.7	2.5	0.7	0.6	0.5	100.0(8,716)	
성별	남학생	94.4	3.2	0.9	0.7	0.8	100.0(4,480)	47.788***
	여학생	97.2	1.9	0.4	0.4	0.2	100.0(4,236)	
학교급	초등학교	96.2	2.6	0.4	0.5	0.3	100.0(2,891)	50.171***
	중학교	93.8	3.4	1.1	0.8	0.9	100.0(2,943)	
	고등학교	97.2	1.7	0.5	0.3	0.3	100.0(2,882)	
지역 규모	대도시	95.7	2.6	0.6	0.6	0.5	100.0(3,434)	11.163
	중소도시	96.0	2.4	0.6	0.5	0.3	100.0(4,223)	
	읍면지역	94.5	2.8	1.0	0.6	1.0	100.0(1,05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5.9	2.5	0.6	0.6	0.4	100.0(7,812)	29.370**
	한부모가정	95.3	2.8	0.8	0.2	1.0	100.0(681)	
	조손가정	92.6	3.0	1.8	1.5	1.2	100.0(75)	
	기타	90.6	2.8	1.4	3.1	2.1	100.0(87)	
학업 성적	상	95.7	2.4	0.8	0.4	0.7	100.0(3,245)	9.577
	중	96.1	2.5	0.5	0.6	0.3	100.0(3,557)	
	하	95.2	2.9	0.7	0.7	0.5	100.0(1,866)	
경제적 수준	상	96.1	2.4	0.6	0.5	0.5	100.0(5,256)	7.019
	중	95.3	2.7	0.8	0.7	0.5	100.0(2,758)	
	하	94.7	3.5	0.6	0.7	0.5	100.0(649)	

*p 〈 .05, **p 〈 .01, ***p 〈 .001.

* 주: 1)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2) 2023년 조사부터는 '체벌'에서 '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으로 설문문항 문구 수정되었음.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5-4. 체벌 경험 여부_교사로부터 신체적 벌(2011~2025년)

③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들로부터 경험한 폭력은 욕설 및 모욕 19.9%, 폭행 및 구타 9.1%, 따돌림 8.4%, 성적인 희롱 및 추행 3.2%, 돈, 물건 빼앗김 2.6%, 강제적인 심부름 2.2%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따돌림을 제외한 모든 폭력 유형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피해 경험률이 더 높았고,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성적인 희롱 및 추행을 제외한 모든 폭력 유형에서 초등학생의 경험률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욕설 및 모욕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25.1%, 폭행 및 구타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20.6%로, 높은 폭력 피해 경험률을 보였다(표 Ⅳ-5-5).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2024년보다 2025년 모든 폭력 유형에서 피해 경험률이 조금씩 증가하였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2024년보다 2025년 모든 폭력 유형에서 피해 경험률이 조금씩 감소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2011년 이후 2013년 폭행 및 구타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다소 감소한 해도 있긴 하지만(예: 2020년 10.5%로 감소),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 즉 초등학생 5명 중 1명 정도가 폭행 및 구타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욕설 및 모욕 비율은 2020년 14.4%에서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25년에는 25.1%, 즉 초등학생 4명 중 1명 정도가 욕설 및 모욕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Ⅳ-5-5).

표 Ⅳ-5-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 여부(2025년)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욕설·모욕	전체		80.1	11.1	3.5	2.2	3.1	100.0(8,741)	
	성별	남학생	77.2	11.6	4.2	2.6	4.4	100.0(4,496)	86.812***
		여학생	83.3	10.5	2.8	1.7	1.6	100.0(4,246)	
	학교급	초등학교	74.9	15.2	4.0	2.6	3.3	100.0(2,906)	228.007***
		중학교	76.7	12.1	4.5	2.8	4.0	100.0(2,952)	
		고등학교	89.0	5.9	2.0	1.2	1.8	100.0(2,884)	
	지역규모	대도시	81.0	10.2	3.3	2.3	3.2	100.0(3,447)	8.418
		중소도시	79.5	11.8	3.8	2.1	2.9	100.0(4,233)	
		읍면지역	80.0	11.0	3.1	2.5	3.4	100.0(1,061)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80.5	11.1	3.4	2.1	2.9	100.0(7,837)	31.210**
		한부모가정	77.7	10.6	4.8	3.6	3.3	100.0(681)	
		조손가정	73.7	14.8	3.0	3.0	5.6	100.0(75)	
		기타	69.6	12.6	5.8	1.7	10.3	100.0(88)	
	학업성적	상	78.8	11.9	4.0	2.0	3.3	100.0(3,248)	21.569**
		중	81.5	10.7	3.1	2.3	2.3	100.0(3,569)	
		하	80.1	10.3	3.5	2.3	3.9	100.0(1,875)	
	경제적수준	상	80.2	11.5	3.5	2.0	2.8	100.0(5,268)	30.853***
		중	81.6	9.8	3.4	2.2	3.0	100.0(2,769)	
		하	74.5	12.6	3.8	4.0	5.0	100.0(649)	
폭행·구타	전체		90.9	5.1	1.5	1.0	1.4	100.0(8,738)	
	성별	남학생	87.8	6.7	2.3	1.3	1.9	100.0(4,495)	110.978***
		여학생	94.1	3.5	0.7	0.7	1.0	100.0(4,243)	
	학교급	초등학교	79.4	12.0	3.7	2.1	2.9	100.0(2,906)	718.057***
		중학교	95.4	2.4	0.5	0.8	0.9	100.0(2,948)	
		고등학교	97.8	1.1	0.4	0.2	0.5	100.0(2,884)	
	지역규모	대도시	90.5	5.1	1.6	1.2	1.6	100.0(3,444)	10.869
		중소도시	90.5	5.5	1.5	1.0	1.4	100.0(4,232)	
		읍면지역	93.4	3.7	1.3	0.5	1.1	100.0(1,063)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1.1	5.0	1.5	1.1	1.4	100.0(7,837)	25.548*
		한부모가정	90.7	5.0	1.9	0.5	1.9	100.0(679)	
		조손가정	88.3	8.0	2.5	0.0	1.2	100.0(75)	
		기타	77.6	11.8	3.5	3.4	3.8	100.0(87)	
	학업성적	상	88.5	6.9	1.8	1.0	1.8	100.0(3,246)	51.681***
		중	91.5	4.7	1.5	1.1	1.2	100.0(3,567)	
		하	93.8	3.0	1.1	0.8	1.3	100.0(1,876)	
	경제적수준	상	90.0	5.7	1.8	1.0	1.5	100.0(5,266)	17.539*
		중	92.3	4.3	1.2	0.9	1.3	100.0(2,766)	
		하	91.9	3.9	1.3	1.6	1.4	100.0(651)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따돌림	전체		91.6	5.3	1.3	0.7	1.1	100.0(8,737)	
	성별	남학생	92.0	4.7	1.3	0.7	1.2	100.0(4,490)	9.819*
		여학생	91.2	5.9	1.3	0.7	0.9	100.0(4,246)	
	학교급	초등학교	86.9	8.9	2.0	1.0	1.3	100.0(2,902)	173.121***
		중학교	91.9	4.7	1.5	0.6	1.3	100.0(2,950)	
		고등학교	96.1	2.3	0.6	0.5	0.5	100.0(2,885)	
	지역 규모	대도시	91.3	5.8	1.2	0.5	1.2	100.0(3,445)	9.080
		중소도시	91.7	5.0	1.4	0.9	1.0	100.0(4,231)	
		읍면지역	92.5	4.5	1.2	0.9	0.9	100.0(1,0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1.8	5.2	1.2	0.7	1.0	100.0(7,835)	30.656**
		한부모가정	91.8	4.9	1.7	0.8	0.8	100.0(680)	
		조손가정	91.8	2.9	3.3	0.8	1.2	100.0(75)	
		기타	78.3	14.0	4.6	0.0	3.1	100.0(87)	
	학업 성적	상	91.2	5.7	1.2	0.6	1.3	100.0(3,248)	10.958
		중	92.3	4.9	1.2	0.8	0.8	100.0(3,564)	
		하	91.0	5.4	1.7	0.8	1.1	100.0(1,875)	
	경제적 수준	상	91.7	5.3	1.2	0.7	1.1	100.0(5,265)	21.082**
		중	92.4	4.8	1.3	0.7	0.7	100.0(2,765)	
		하	87.5	7.1	2.2	1.1	2.0	100.0(651)	
돈·물건 빼앗김	전체		97.4	1.6	0.5	0.3	0.3	100.0(8,734)	
	성별	남학생	96.8	1.9	0.6	0.3	0.4	100.0(4,491)	13.019*
		여학생	97.9	1.4	0.3	0.2	0.1	100.0(4,242)	
	학교급	초등학교	96.5	2.2	0.6	0.4	0.3	100.0(2,904)	24.566**
		중학교	97.2	1.8	0.6	0.2	0.3	100.0(2,949)	
		고등학교	98.4	0.9	0.2	0.1	0.3	100.0(2,882)	
	지역 규모	대도시	97.3	1.6	0.5	0.3	0.3	100.0(3,444)	4.901
		중소도시	97.4	1.7	0.5	0.2	0.2	100.0(4,227)	
		읍면지역	97.6	1.2	0.4	0.4	0.4	100.0(1,06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6	1.5	0.5	0.2	0.2	100.0(7,833)	45.899***
		한부모가정	96.6	2.3	0.4	0.1	0.6	100.0(679)	
		조손가정	96.8	1.2	0.0	0.8	1.2	100.0(75)	
		기타	89.0	5.1	1.4	2.2	2.3	100.0(87)	
	학업 성적	상	96.8	1.9	0.5	0.4	0.4	100.0(3,246)	16.039*
		중	97.7	1.5	0.4	0.2	0.3	100.0(3,563)	
		하	97.6	1.4	0.7	0.0	0.2	100.0(1,875)	
	경제적 수준	상	97.1	1.8	0.5	0.3	0.3	100.0(5,265)	11.843
		중	97.9	1.2	0.5	0.3	0.2	100.0(2,764)	
		하	96.8	2.1	0.9	0.0	0.3	100.0(650)	
성적인 희롱(놀림)·추행	전체		96.8	1.7	0.6	0.4	0.5	100.0(8,743)	
	성별	남학생	96.5	1.5	0.7	0.5	0.8	100.0(4,496)	32.790***
		여학생	97.2	2.0	0.4	0.3	0.1	100.0(4,247)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학교급	초등학교	97.5	1.4	0.3	0.4	0.4	100.0(2,909)	31.304***
		중학교	95.5	2.6	0.9	0.4	0.6	100.0(2,951)	
		고등학교	97.5	1.2	0.5	0.4	0.4	100.0(2,884)	
	지역 규모	대도시	96.4	2.0	0.6	0.4	0.6	100.0(3,448)	14.967
		중소도시	97.3	1.6	0.4	0.3	0.3	100.0(4,233)	
		읍면지역	96.2	1.5	0.8	0.6	0.9	100.0(1,06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0	1.6	0.5	0.4	0.4	100.0(7,839)	58.934***
		한부모가정	95.9	2.5	0.5	0.5	0.6	100.0(681)	
		조손가정	98.0	0.0	0.8	0.0	1.2	100.0(75)	
		기타	87.4	5.7	5.6	0.0	1.2	100.0(88)	
	학업 성적	상	97.0	1.6	0.6	0.4	0.5	100.0(3,249)	12.399
		중	97.2	1.6	0.4	0.3	0.4	100.0(3,569)	
		하	95.7	2.3	0.7	0.7	0.7	100.0(1,875)	
	경제적 수준	상	97.0	1.6	0.5	0.4	0.5	100.0(5,270)	15.336
		중	96.9	1.9	0.6	0.4	0.3	100.0(2,768)	
		하	94.9	2.9	0.7	0.5	1.1	100.0(651)	
강제적인 심부름	전체		97.8	1.2	0.5	0.2	0.3	100.0(8,740)	
	성별	남학생	97.4	1.2	0.6	0.3	0.6	100.0(4,495)	23.111***
		여학생	98.2	1.2	0.4	0.1	0.0	100.0(4,246)	
	학교급	초등학교	97.4	1.6	0.6	0.2	0.3	100.0(2,907)	9.749
		중학교	97.7	1.2	0.6	0.2	0.3	100.0(2,949)	
		고등학교	98.4	0.7	0.4	0.2	0.3	100.0(2,884)	
	지역 규모	대도시	98.0	1.0	0.4	0.3	0.2	100.0(3,447)	15.916*
		중소도시	97.9	1.2	0.5	0.1	0.3	100.0(4,231)	
		읍면지역	96.5	1.8	0.8	0.1	0.7	100.0(1,06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8.0	1.1	0.5	0.2	0.2	100.0(7,840)	48.507***
		한부모가정	97.4	1.4	0.2	0.0	0.9	100.0(678)	
		조손가정	94.6	4.1	0.0	0.0	1.2	100.0(75)	
		기타	93.0	1.4	2.4	2.0	1.2	100.0(88)	
	학업 성적	상	98.1	0.9	0.6	0.2	0.4	100.0(3,251)	6.032
		중	97.8	1.3	0.5	0.2	0.2	100.0(3,566)	
		하	97.5	1.4	0.5	0.2	0.3	100.0(1,874)	
	경제적 수준	상	97.8	1.2	0.5	0.1	0.3	100.0(5,270)	5.030
		중	97.9	1.1	0.4	0.3	0.3	100.0(2,766)	
		하	97.7	1.1	0.7	0.1	0.3	100.0(649)	

*p 〈 .05, **p 〈 .01,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5-5.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폭력 경험 여부(2011~2025년)

④ 온라인 환경(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최근 1년 동안 온라인 환경(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에 대한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온라인 환경에서의 욕설 및 모욕은 26.1%, 협박 4.4%, 사생활 침해 4.4%, 성희롱(놀림) 4.2%, 따돌림 3.2%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피해 유형에서 남학생의 피해 경험률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따돌림을 제외한 모든 폭력 유형에서 중학생의 피해 경험률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높았다(표 Ⅳ-5-6).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사생활 침해의 경우에는 2024년보다 2025년 피해 경험률이

낮았으나, 그 외의 유형인 욕설 및 모욕, 협박, 성희롱, 따돌림에서는 2024년보다 2025년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욕설 및 모욕은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21.0%였으나 2025년 26.1%로 많이 증가하였다. 따돌림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그림 Ⅳ-5-6).

표 Ⅳ-5-6. 온라인 환경(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 여부(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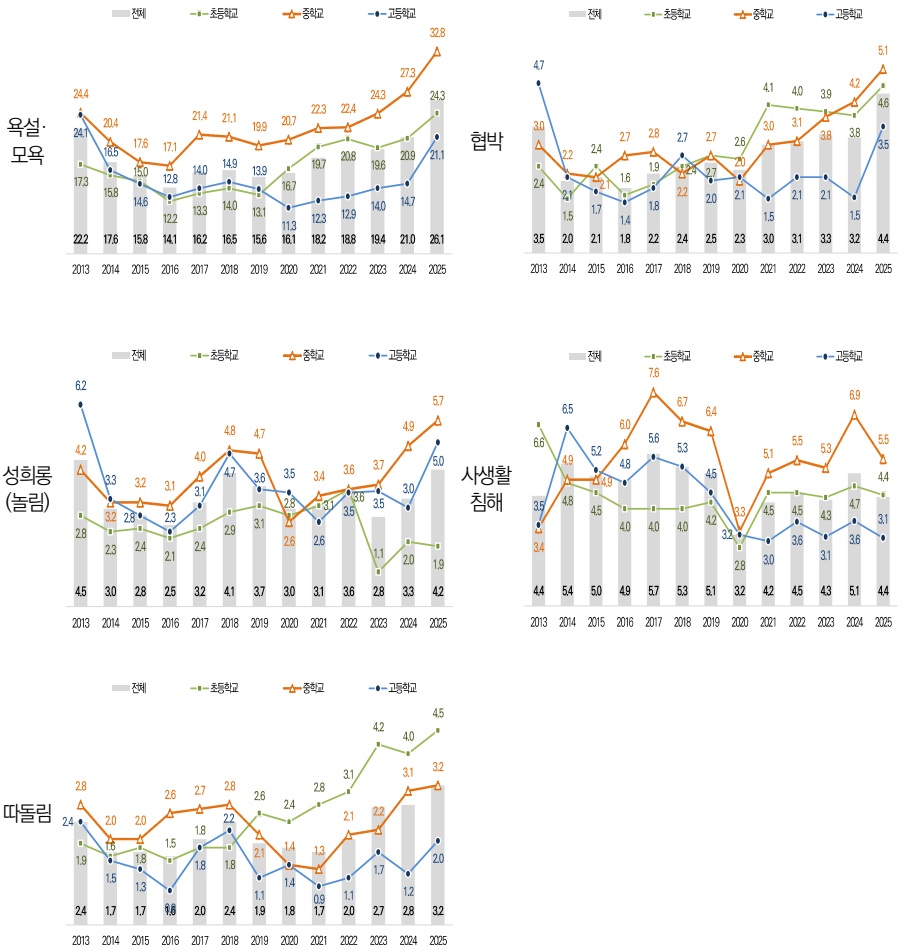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욕설·모욕	전체		73.9	11.5	4.8	4.2	5.6	100.0(8,749)	
	성별	남학생	65.7	12.9	6.4	5.8	9.2	100.0(4,500)	422.695***
		여학생	82.5	10.1	3.2	2.4	1.8	100.0(4,249)	
	학교급	초등학교	75.7	12.3	4.4	3.5	4.2	100.0(2,912)	149.161***
		중학교	67.2	12.7	5.9	5.9	8.4	100.0(2,952)	
		고등학교	78.9	9.5	4.2	3.1	4.1	100.0(2,885)	
	지역 규모	대도시	75.1	11.0	4.5	4.1	5.2	100.0(3,449)	8.413
		중소도시	73.5	11.8	5.0	4.1	5.7	100.0(4,236)	
		읍면지역	71.4	11.9	5.6	4.9	6.3	100.0(1,06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4.3	11.4	4.8	4.1	5.4	100.0(7,843)	23.182*
		한부모가정	70.4	12.9	6.4	4.4	5.9	100.0(682)	
		조손가정	72.7	12.5	3.4	2.9	8.5	100.0(75)	
		기타	71.1	8.3	2.3	3.7	14.6	100.0(88)	
	학업 성적	상	73.4	11.6	5.2	4.5	5.3	100.0(3,251)	40.537***
		중	76.0	11.4	4.6	3.6	4.4	100.0(3,571)	
		하	71.0	11.5	4.8	4.6	8.1	100.0(1,878)	
	경제적 수준	상	74.1	11.9	4.4	4.2	5.4	100.0(5,274)	44.383***
		중	75.8	9.7	5.5	3.7	5.4	100.0(2,769)	
		하	65.1	15.5	5.7	6.3	7.4	100.0(651)	
협박	전체		95.6	2.4	0.9	0.4	0.7	100.0(8,752)	
	성별	남학생	93.7	3.0	1.3	0.7	1.3	100.0(4,501)	92.947***
		여학생	97.6	1.7	0.4	0.2	0.1	100.0(4,251)	
	학교급	초등학교	95.4	2.7	0.9	0.5	0.5	100.0(2,916)	17.796*
		중학교	94.9	2.8	1.1	0.4	0.8	100.0(2,951)	
		고등학교	96.5	1.5	0.7	0.4	0.8	100.0(2,885)	
	지역 규모	대도시	95.7	2.3	0.9	0.5	0.7	100.0(3,451)	5.592
		중소도시	95.7	2.5	0.9	0.4	0.6	100.0(4,238)	
		읍면지역	95.0	2.3	1.0	0.7	1.0	100.0(1,064)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5.9	2.2	0.9	0.4	0.7	100.0(7,846)	34.386***
		한부모가정	93.5	3.8	1.0	0.7	0.9	100.0(682)	
		조손가정	93.4	3.3	1.4	0.8	1.2	100.0(75)	
		기타	88.2	4.2	2.3	1.3	4.1	100.0(88)	
	학업 성적	상	95.5	2.3	0.9	0.4	0.9	100.0(3,254)	19.029*
		중	96.4	2.1	0.6	0.4	0.5	100.0(3,572)	
		하	94.3	2.9	1.3	0.7	0.8	100.0(1,878)	
	경제적 수준	상	95.7	2.2	0.8	0.5	0.8	100.0(5,277)	20.078*
		중	96.1	2.1	1.0	0.3	0.5	100.0(2,769)	
		하	92.6	4.5	1.3	0.7	0.9	100.0(651)	
성희롱 (놀림)	전체		95.8	1.7	1.0	0.8	0.7	100.0(8,749)	
	성별	남학생	94.6	1.5	1.5	1.2	1.2	100.0(4,501)	81.206***
		여학생	97.1	1.9	0.5	0.4	0.1	100.0(4,249)	
	학교급	초등학교	98.1	1.0	0.4	0.3	0.2	100.0(2,915)	67.086***
		중학교	94.3	2.0	1.5	1.2	1.1	100.0(2,949)	
		고등학교	95.0	2.1	1.3	0.8	0.8	100.0(2,885)	
	지역 규모	대도시	95.6	1.7	1.0	1.0	0.7	100.0(3,450)	6.925
		중소도시	95.9	1.7	1.1	0.7	0.6	100.0(4,238)	
		읍면지역	95.8	1.6	0.8	0.5	1.2	100.0(1,0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1	1.6	1.0	0.8	0.6	100.0(7,843)	34.712***
		한부모가정	93.7	2.5	1.4	1.1	1.5	100.0(682)	
		조손가정	92.7	2.9	1.8	1.4	1.2	100.0(75)	
		기타	89.1	2.3	4.6	0.0	3.9	100.0(88)	
	학업 성적	상	96.1	1.5	0.9	0.5	1.0	100.0(3,254)	52.031***
		중	96.9	1.4	0.8	0.6	0.3	100.0(3,571)	
		하	93.3	2.5	1.7	1.5	1.0	100.0(1,876)	
	경제적 수준	상	95.9	1.8	1.0	0.7	0.7	100.0(5,275)	15.991*
		중	96.0	1.6	1.2	0.8	0.4	100.0(2,768)	
		하	94.3	1.7	1.2	1.2	1.6	100.0(651)	
사생활 침해	전체		95.6	2.9	0.8	0.3	0.4	100.0(8,749)	
	성별	남학생	95.3	2.8	0.9	0.3	0.7	100.0(4,499)	23.328***
		여학생	96.0	3.0	0.7	0.3	0.1	100.0(4,250)	
	학교급	초등학교	95.6	3.3	0.6	0.2	0.3	100.0(2,914)	32.353***
		중학교	94.5	3.6	1.1	0.5	0.3	100.0(2,950)	
		고등학교	96.9	1.8	0.6	0.2	0.5	100.0(2,885)	
	지역 규모	대도시	95.6	2.9	0.8	0.4	0.3	100.0(3,450)	18.671*
		중소도시	96.0	2.8	0.7	0.2	0.3	100.0(4,238)	
		읍면지역	94.4	3.2	1.1	0.3	1.0	100.0(1,062)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5.9	2.7	0.8	0.3	0.3	100.0(7,843)	36.034***
		한부모가정	93.5	4.9	0.6	0.2	0.7	100.0(682)	
		조손가정	91.8	4.4	2.5	0.0	1.2	100.0(75)	
		기타	87.2	9.3	2.3	0.0	1.2	100.0(88)	
	학업 성적	상	96.1	2.4	0.8	0.2	0.5	100.0(3,254)	21.768**
		중	96.0	2.9	0.5	0.4	0.3	100.0(3,571)	
		하	94.2	3.9	1.2	0.3	0.5	100.0(1,876)	
	경제적 수준	상	95.7	2.9	0.7	0.3	0.4	100.0(5,275)	21.454**
		중	96.1	2.5	0.7	0.3	0.5	100.0(2,769)	
		하	92.7	4.8	1.9	0.3	0.2	100.0(650)	
따돌림	전체		96.8	1.9	0.6	0.3	0.5	100.0(8,748)	
	성별	남학생	96.3	1.8	0.8	0.4	0.7	100.0(4,498)	19.829***
		여학생	97.2	2.0	0.3	0.2	0.3	100.0(4,250)	
	학교급	초등학교	95.5	2.8	0.8	0.4	0.6	100.0(2,914)	32.152***
		중학교	96.8	1.9	0.5	0.4	0.5	100.0(2,949)	
		고등학교	98.0	1.0	0.4	0.2	0.4	100.0(2,885)	
	지역 규모	대도시	96.8	1.9	0.5	0.3	0.5	100.0(3,449)	4.743
		중소도시	96.8	1.8	0.6	0.3	0.4	100.0(4,237)	
		읍면지역	96.3	2.3	0.5	0.2	0.7	100.0(1,0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0	1.8	0.6	0.3	0.4	100.0(7,842)	80.196***
		한부모가정	96.1	2.2	0.4	0.6	0.7	100.0(682)	
		조손가정	96.2	0.0	0.0	1.8	2.0	100.0(75)	
		기타	84.5	7.0	2.0	1.1	5.4	100.0(88)	
	학업 성적	상	96.8	1.7	0.7	0.2	0.7	100.0(3,252)	13.018
		중	97.1	1.8	0.5	0.4	0.3	100.0(3,571)	
		하	96.1	2.4	0.5	0.5	0.5	100.0(1,876)	
	경제적 수준	상	96.8	2.0	0.5	0.4	0.4	100.0(5,276)	8.316
		중	97.0	1.6	0.7	0.2	0.5	100.0(2,767)	
		하	95.6	2.7	0.7	0.4	0.6	100.0(650)	

*p 〈 .05, **p 〈 .01,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5-6. 온라인 환경(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 여부(2013~2025년)

(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① 성폭력 피해 아동 · 청소년 인구 비율

성폭력 피해자는 2023년 총 36,534건으로, 이 중 13세 이상이 95.9%(35,034건), 13세 미만이 4.1%(1,500건)로 나타났다. 2021년 총 29,901건에서 2022년 총 38,625건

으로 많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에는 2022년에 비해 약 2천 건 정도 감소하였다. 다만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표 Ⅳ-5-7).

표 Ⅳ-5-7.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별 현황(2019~2023년)

(단위 : 건(%))

구분 / 연도	계	13세 미만	13세 이상
2019	29,676(100)	1,375(4.6)	28,301(95.4)
2020	28,289(100)	1,155(4.1)	27,134(95.9)
2021	29,901(100)	1,210(4.0)	28,691(96.0)
2022	38,625(100)	1,342(3.5)	37,283(96.5)
2023	36,534(100)	1,500(4.1)	35,034(95.9)

* 출처: 법무연수원(2025). 2024 범죄백서. p.191.

* 주: 1) 대검찰청「범죄분석」, 각년도.
2) 성별, 연령 미상은 제외.

②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3.1%가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적 피해 경험률이 높았고,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높았다. 또한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하인 경우가 상이나 중인 경우보다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표 Ⅳ-5-8).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2024년 3.6%에서 2025년 3.1%로 조금 감소하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2024년에 비해 2025년 감소하였으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24년 1.9%에서 2025년 2.3%로 조금 증가하였다(그림 Ⅳ-5-7).

표 Ⅳ-5-8.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2025년)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3.1	96.9	100.0(8,672)	
성별	남학생	2.7	97.3	100.0(4,452)	5.611*
	여학생	3.6	96.4	100.0(4,220)	
학교급	초등학교	3.7	96.3	100.0(2,874)	9.307**
	중학교	3.3	96.7	100.0(2,928)	
	고등학교	2.3	97.7	100.0(2,870)	
지역 규모	대도시	2.9	97.1	100.0(3,416)	0.759
	중소도시	3.2	96.8	100.0(4,204)	
	읍면지역	3.5	96.5	100.0(1,0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	97.1	100.0(7,783)	11.089*
	한부모가정	4.2	95.8	100.0(669)	
	조손가정	3.3	96.7	100.0(75)	
	기타	8.4	91.6	100.0(85)	
학업 성적	상	2.9	97.1	100.0(3,222)	13.319**
	중	2.6	97.4	100.0(3,531)	
	하	4.4	95.6	100.0(1,870)	
경제적 수준	상	2.8	97.2	100.0(5,225)	6.746*
	중	3.3	96.7	100.0(2,748)	
	하	4.7	95.3	100.0(643)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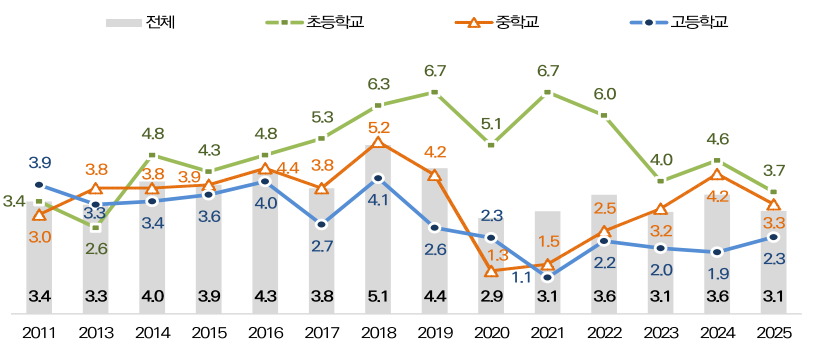


그림 Ⅳ-5-7.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2011~2025년)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에 도움을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대한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33.9%로 가장 높았으며, 친구 25.9%, 부모님(보호자) 19.0%, 선생님 14.3%, 형제·자매 2.4%, 선후배 1.6%, 전문 상담가 1.5%, 경찰 0.3% 순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표 Ⅳ-5-9).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순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비율이 높았고, 학업성적인 하인 경우가 상이나 중인 경우보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표 Ⅳ-5-9).

표 Ⅳ-5-9.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2025년)

(단위 : %(명))

구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친구	선·후배	부모님(보호자)	형제·자매	선생님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경찰	기타	전체(N)
전체		33.9	25.9	1.6	19.0	2.4	14.3	1.5	0.3	1.1	100.0(256)
성별	남학생	31.3	31.7	1.7	17.7	2.6	12.0	1.0	0.3	1.7	100.0(112)
	여학생	35.9	21.3	1.4	20.1	2.3	16.1	1.9	0.4	0.6	100.0(144)
학교급	초등학교	17.9	24.9	1.1	33.2	5.3	16.6	0.0	0.0	0.9	100.0(100)
	중학교	36.2	33.3	3.1	6.4	0.0	16.7	2.5	0.0	1.9	100.0(94)
	고등학교	55.9	16.3	0.0	15.3	1.5	7.2	2.5	1.4	0.0	100.0(62)
지역 규모	대도시	44.3	22.5	1.0	10.7	3.4	14.1	2.3	0.0	1.9	100.0(92)
	중소도시	27.2	24.6	2.4	27.4	2.5	14.5	0.0	0.7	0.7	100.0(129)
	읍면지역	31.0	39.5	0.0	10.0	0.0	14.4	5.1	0.0	0.0	100.0(3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5.1	25.5	1.4	19.5	1.5	14.2	1.8	0.1	0.8	100.0(217)
	한부모가정	34.1	20.9	0.0	21.7	0.0	17.4	0.0	2.1	3.7	100.0(25)
	조손가정	73.8	26.2	0.0	0.0	0.0	0.0	0.0	0.0	0.0	100.0(02)
	기타	0.0	28.1	14.6	14.0	35.1	8.2	0.0	0.0	0.0	100.0(06)
학업 성적	상	29.2	27.8	0.0	26.2	2.5	11.9	1.3	0.0	1.1	100.0(87)
	중	35.9	20.5	2.5	20.0	2.4	16.2	0.0	0.6	2.0	100.0(90)
	하	37.1	30.4	2.2	10.2	1.4	15.1	3.6	0.0	0.0	100.0(78)
경제적 수준	상	31.0	26.5	1.5	23.3	1.6	12.8	1.4	0.0	2.0	100.0(137)
	중	40.9	21.8	1.3	15.5	3.7	14.9	1.4	0.6	0.0	100.0(88)
	하	27.4	36.7	2.9	10.2	0.0	20.3	2.4	0.0	0.0	100.0(29)

* 주: 2017년도 조사부터는 전년도 보기 문항 중 '선배'가 '선 · 후배'로 수정되었으며, '인터넷'이 제외되었음.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① 아동학대 사례 건수

2024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50,242건으로, 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93.7%(47,096건), 일반 상담이 5.1%(2,579건), 동일 신고가 1.1%(567건), 해외발생 사례가 0.0%(0건)였다(표 Ⅳ-5-10).

표 Ⅳ-5-10.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2024년)

(단위 : 건(%))

아동학대 의심사례	동일 신고	일반 상담	해외발생 사례	계
47,096 (93.7)	567 (1.1)	2,579 (5.1)	0 (0)	50,242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25a).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p.2.

* 주: 1) 최초 신고접수 이후에 동일한 학대 내용(동일시점 및 동일행위)에 대한 신고가 다른 신고자를 통해 접수

2024년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접수된 총 47,096건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는 52.0%(24,492건)였으며, 일반사례는 46.9%(22,068건), 조사 진행 중 사례는 1.1%(536건)였다(표 Ⅳ-5-11).

표 Ⅳ-5-11. 아동학대 신고접수 사례판단 결과(2024년)

(단위 : 건(%))

아동학대사례[1)]	일반사례[2)]	조사진행중사례	계
24,492 (52.0)	22,068 (46.9)	536 (1.1)	47,096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25a).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p.8.

* 주: 1) 아동학대로 판단할 만한 증거 및 진술로 인해 학대의 정황이 뚜렷하다고 판단된 사례
2) 학대 의심사례로 신고접수 되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사례

2024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24,492건(18,899명)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아 50.6%, 여아 49.4%로 비슷한 성별 분포를 보였고,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3세~15세 24.8%, 10세~12세 23.4%, 7세~9세 18.9%, 4세~6세 11.9%, 16세~17세 10.2%, 3세 이하 9.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Ⅳ-5-12).

표 Ⅳ-5-12. 아동학대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2024년)

(단위 : 건, 명(%))

구분		건수(비율)	명수(비율)
성별	남아	12,394(50.6)	9,633(51.0)
	여아	12,098(49.4)	9,266(49.0)
연령별	3세 이하	2,199(9.0)	1,443(7.6)
	4세 ~ 6세	2,925(11.9)	2,039(10.8)
	7세 ~ 9세	4,638(18.9)	3,432(18.2)
	10세 ~ 12세	5,721(23.4)	4,523(23.9)
	13세 ~ 15세	6,077(24.8)	5,005(26.5)
	16세 ~ 17세	2,487(10.2)	2,153(11.4)
계		24,492(100.0)	18,899(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25a).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pp.10~11의 내용을 재구성함.

* 주: 아동학대사례 24,492건에는 동일한 아동이 두 번 이상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이거나, 혹은 동일한 아동이 두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아동 건수와 명수는 일치하지 않음.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아동학대 사례 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2020년 2.9% 증가, 2021년 21.7% 증가하였다가, 2022년 25.6% 감소, 2023년 8.0% 감소, 2024년 4.8% 감소하였다(표 Ⅳ-5-13).

표 Ⅳ-5-13.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증가율(2020~2024년)

(단위 : 건(%))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아동학대사례수 (증가율)	30,905 (2.9)	37,605 (21.7)	27,971 (-25.6)	25,739 (-8.0)	24,492 (-4.8)

* 출처: 보건복지부(2025a).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p.45.

2024년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친부모, 계부모, 양부모)가 84.1%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양육자(부모동거인, 유치원/보육 교직원, 초중고 교원, 학원/교습소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7.0%, 타인(이웃 및 낯선 사람) 5.5%, 친인척(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2.7%, 기타 0.7% 순으로 나타났다(표 Ⅳ-5-14).

표 Ⅳ-5-14.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2024년)

(단위 : 건(%))

구분	부모				친인척					총계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소계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소계	
명 (%)	19,902 (81.3)	647 (2.7)	54 (0.2)	20,603 (84.1)	205 (0.8)	186 (0.8)	170 (0.7)	100 (0.4)	661 (2.7)	24,492 (100.0)

구분	대리양육자									타인	기타
	부모 동거인	유치원/ 보육 교직원	초중고 교원	학원/ 교습소 종사자	아동복 지시설 종사자	기타 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종사자	위탁 부모	아이 돌보미	소계	이웃, 낯선 사람	
명 (%)	170 (0.7)	452 (1.8)	572 (2.3)	245 (1.0)	119 (0.5)	120 (0.5)	6 (0.0)	6 (0.0)	30 (0.1)	1,720 (7.0)	1,335 (5.5)	173 (0.7)

* 출처: 보건복지부(2025a).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pp.47~48.

②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2024년 아동학대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정서학대가 46.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중복학대 24.4%, 신체학대 18.9%, 방임 7.3%, 성학대 2.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Ⅳ-5-15).

표 Ⅳ-5-15.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2024년)

(단위 : 건(%))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계
건수(%)	4,625 (18.9)	11,466 (46.8)	619 (2.5)	1,800 (7.3)	5,982 (24.4)	24,492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25a).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p.18.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사례 중 정서학대 비율은 2021년에 2020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2년 다시 감소하였고, 2023년부터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복학대 비율은 2021년에 2020년보다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신체학대 비율 역시 2021년에 2020년에 비해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며, 방임 비율도 2022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성학대 비율은 2023년까지 감소하다가, 2024년 조금 증가하였다(표 Ⅳ-5-16).

표 Ⅳ-5-16.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 건(%))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계
2020	3,807(12.3)	8,732(28.3)	695(2.2)	2,737(8.9)	14,934(48.3)	30,905(100.0)
2021	5,780(15.4)	12,351(32.8)	655(1.7)	2,793(7.4)	16,026(42.6)	37,605(100.0)
2022	4,911(17.6)	10,632(38.0)	609(2.2)	2,044(7.3)	9,775(34.9)	27,971(100.0)
2023	4,689(18.3)	11,094(43.1)	585(2.3)	1,979(7.7)	7,383(28.7)	25,739(100.0)
2024	4,625(18.9)	11,466(46.8)	619(2.5)	1,800(7.3)	5,982(24.4)	24,492(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p.31.
보건복지부(2022).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p.23.
보건복지부(2023a).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p.30.
보건복지부(2024).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p.18.
보건복지부(2025a).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p.18.

③ 가정 내 방임 정도(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가정 내 야간시간 방임에 대한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야간시간 방임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이었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인 경우가 가장 높고, 중, 상의 순이었다(표 Ⅳ-5-17).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2014년 가장 높은 방임 경험률을 보였다가 이후 2021년까지 감소하였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2025년 조금 감소하였다. 2025년에는 2024년에 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야간 방임 경험률은 감소하였으나, 초등학생은 조금 증가하였다(그림 Ⅳ-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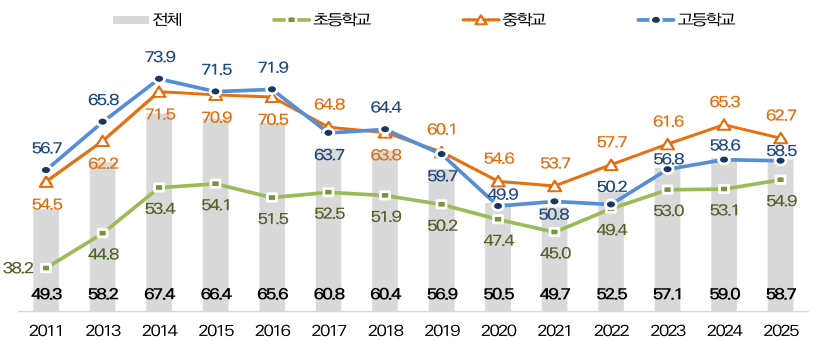
표 Ⅳ-5-17. 방임_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2025년)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41.3	35.5	11.5	6.4	5.3	100.0(8,724)	
성별	남학생	40.0	36.1	11.7	6.8	5.5	100.0(4,478)	8.178
	여학생	42.7	34.9	11.4	5.9	5.1	100.0(4,246)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학교급	초등학교	45.1	34.3	9.2	5.2	6.2	100.0(2,898)	70.035***
	중학교	37.3	36.4	13.8	7.5	5.1	100.0(2,945)	
	고등학교	41.5	36.0	11.6	6.4	4.5	100.0(2,881)	
지역 규모	대도시	42.9	34.8	11.6	6.2	4.5	100.0(3,440)	14.105
	중소도시	40.3	36.4	11.4	6.2	5.7	100.0(4,222)	
	읍면지역	39.9	34.7	12.1	7.5	5.8	100.0(1,0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2.0	36.0	11.5	6.1	4.4	100.0(7,821)	156.152***
	한부모가정	32.7	31.2	12.2	10.4	13.5	100.0(679)	
	조손가정	33.9	35.7	8.5	8.3	13.5	100.0(76)	
	기타	42.9	33.5	10.5	1.7	11.5	100.0(88)	
학업 성적	상	45.2	34.1	10.3	5.9	4.4	100.0(3,240)	75.731***
	중	40.3	37.0	12.2	5.9	4.6	100.0(3,565)	
	하	36.5	35.3	12.4	7.9	7.9	100.0(1,870)	
경제적 수준	상	43.0	36.0	11.0	5.7	4.3	100.0(5,254)	94.465***
	중	40.2	35.7	11.8	6.7	5.6	100.0(2,765)	
	하	32.9	31.4	14.8	9.6	11.3	100.0(650)	

*p < .05, **p < .01,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응답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5-8. 방임_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경험(2011~2025년)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의 8.0%가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가장 높고, 고등학생, 초등학생 순이었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인 경우가 상이나 중인 경우보다 높았다(표 Ⅳ-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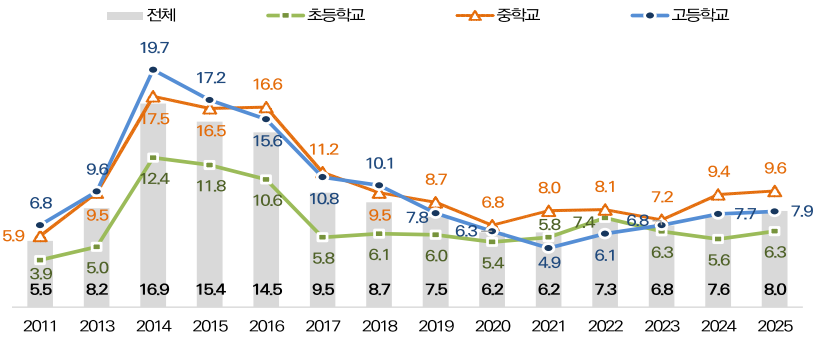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2014년에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경험 비율이 16.9%로 높았다가 이후 2021년까지 점차 감소하였다. 2022년 다시 증가하였다가 2023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4년과 2025년에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Ⅳ-5-9).

표 Ⅳ-5-18. 방임_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2025년)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2.0	5.2	1.0	0.8	0.9	100.0(8,710)	
성별	남학생	91.1	5.7	1.2	0.9	1.1	100.0(4,471)	13.264*
	여학생	93.0	4.7	0.8	0.8	0.7	100.0(4,240)	
학교급	초등학교	93.7	4.8	0.6	0.3	0.6	100.0(2,889)	38.446***
	중학교	90.4	6.2	1.4	1.0	1.1	100.0(2,946)	
	고등학교	92.1	4.6	1.1	1.2	1.0	100.0(2,875)	
지역 규모	대도시	92.4	4.8	1.1	0.8	0.9	100.0(3,438)	11.075
	중소도시	91.8	5.6	0.9	0.9	0.8	100.0(4,210)	
	읍면지역	91.5	4.9	1.4	0.7	1.4	100.0(1,0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2.6	5.0	0.9	0.8	0.8	100.0(7,809)	59.043***
	한부모가정	87.3	7.7	2.1	1.7	1.1	100.0(680)	
	조손가정	86.4	7.7	0.0	2.1	3.8	100.0(73)	
	기타	85.8	6.4	2.3	0.6	4.8	100.0(88)	
학업 성적	상	93.4	4.5	0.8	0.5	0.8	100.0(3,232)	41.823***
	중	92.4	5.0	1.1	0.9	0.6	100.0(3,562)	
	하	88.9	6.9	1.3	1.3	1.6	100.0(1,867)	
경제적 수준	상	93.3	4.5	0.9	0.6	0.7	100.0(5,245)	39.936***
	중	90.8	5.7	1.3	1.1	1.1	100.0(2,760)	
	하	87.6	8.8	1.0	1.3	1.4	100.0(650)	

*p < .05, **p < .01,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응답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5-9. 방임_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2011~2025년)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부모님(보호자)이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에 대한,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의 4.4%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인 경우가 중이나 상인 경우보다 부모님(보호자)이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이 더 높았다(표 Ⅳ-5-19).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2014년과 2016년 약간의 증가가 있긴 하였으나,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2025년에는 2024년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다(그림 Ⅳ-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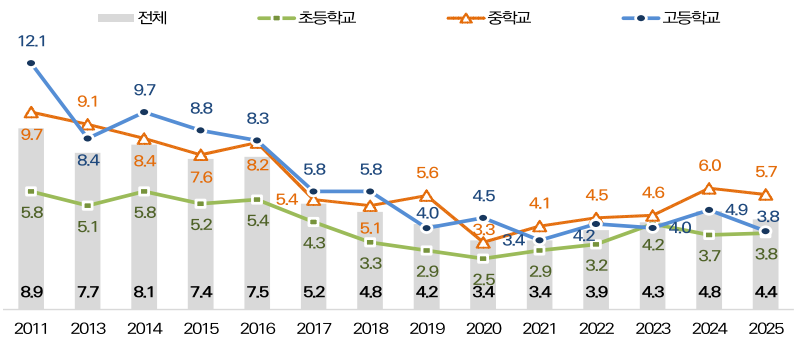
표 Ⅳ-5-19. 방임_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2025년)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5.6	3.1	0.8	0.2	0.3	100.0(8,710)	
성별	남학생	96.0	2.6	0.8	0.1	0.4	100.0(4,466)	11.796*
	여학생	95.2	3.6	0.8	0.2	0.2	100.0(4,244)	
학교급	초등학교	96.2	2.9	0.5	0.1	0.2	100.0(2,888)	21.886**
	중학교	94.3	3.9	1.1	0.2	0.5	100.0(2,945)	
	고등학교	96.2	2.5	0.9	0.2	0.2	100.0(2,877)	
지역 규모	대도시	95.9	2.8	0.8	0.1	0.3	100.0(3,436)	6.777
	중소도시	95.3	3.4	0.8	0.2	0.3	100.0(4,212)	
	읍면지역	95.5	2.7	1.1	0.3	0.5	100.0(1,062)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0	2.9	0.7	0.1	0.3	100.0(7,808)	47.662***
	한부모가정	92.4	4.5	1.9	0.5	0.7	100.0(678)	
	조손가정	88.6	9.5	0.8	0.0	1.2	100.0(75)	
	기타	90.2	5.6	2.0	1.0	1.2	100.0(88)	
학업 성적	상	96.6	2.3	0.6	0.1	0.4	100.0(3,231)	61.170***
	중	96.3	2.6	0.8	0.1	0.2	100.0(3,558)	
	하	92.5	5.4	1.3	0.4	0.4	100.0(1,871)	
경제적 수준	상	96.7	2.3	0.6	0.1	0.3	100.0(5,243)	76.947***
	중	94.9	3.7	0.8	0.3	0.3	100.0(2,761)	
	하	89.8	6.9	2.5	0.2	0.6	100.0(650)	

*p 〈 .05, **p 〈 .01,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5-10. 방임_3)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2011~2025년)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부모님(보호자)이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비율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보다 높았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인 경우가 상이나 중인 경우보다 높았다(표 Ⅳ-5-20).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2011년과 2013년에는 각각 12.1%, 13.7%로 10%대를 넘겼으나 그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21년 4.6%까지 내려갔다가, 이후 2024년까지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2025년 다시 조금 감소하였다(그림 Ⅳ-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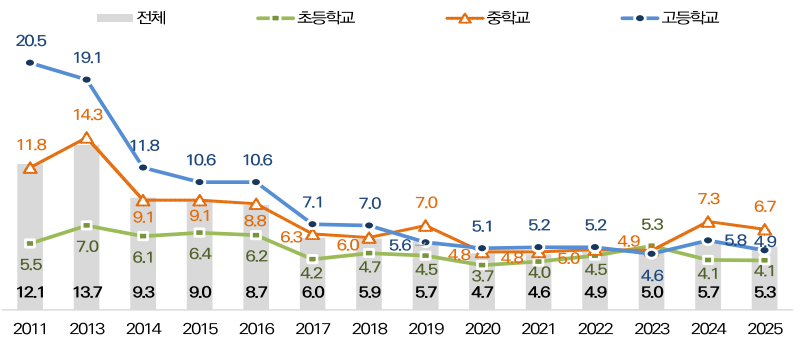
표 Ⅳ-5-20. 방임_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2025년)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4.7	3.0	1.0	0.6	0.7	100.0(8,710)	
성별	남학생	95.2	2.7	0.7	0.6	0.9	100.0(4,468)	16.307**
	여학생	94.3	3.2	1.3	0.7	0.5	100.0(4,242)	
학교급	초등학교	95.9	2.5	0.5	0.4	0.6	100.0(2,888)	28.599***
	중학교	93.3	3.5	1.3	1.0	0.9	100.0(2,946)	
	고등학교	95.1	2.8	1.1	0.5	0.5	100.0(2,876)	
지역 규모	대도시	95.3	2.9	0.8	0.4	0.7	100.0(3,436)	13.917
	중소도시	94.6	3.0	0.9	0.8	0.7	100.0(4,213)	
	읍면지역	93.6	3.2	1.7	0.8	0.7	100.0(1,06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5.2	2.8	0.9	0.6	0.6	100.0(7,809)	70.206***
	한부모가정	91.4	4.7	1.5	1.2	1.2	100.0(677)	
	조손가정	88.4	7.7	2.7	0.0	1.2	100.0(75)	
	기타	84.8	5.0	5.2	0.9	4.1	100.0(88)	
학업 성적	상	95.5	2.3	1.0	0.5	0.6	100.0(3,231)	34.402***
	중	95.3	2.8	0.8	0.4	0.6	100.0(3,560)	
	하	92.4	4.5	1.1	1.1	0.9	100.0(1,869)	
경제적 수준	상	96.0	2.2	0.7	0.5	0.6	100.0(5,246)	87.507***
	중	94.0	3.5	1.2	0.6	0.6	100.0(2,759)	
	하	87.7	6.7	2.5	1.7	1.4	100.0(649)	

*p 〈 .05, **p 〈 .01,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응답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5-11. 방임_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2011~2025년)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부모님(보호자)이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은 경험에 대한,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의 1.8%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인 경우가 상이나 중인 경우보다 더 높았다(표 Ⅳ-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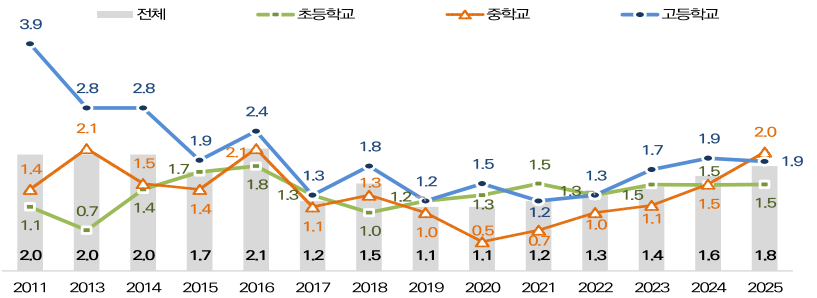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2020년 이후 부모님(보호자)이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는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중학생의 경우 이러한 추세가 더 명확히 드러났다(그림 Ⅳ-5-12).

표 Ⅳ-5-21. 방임_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2025년)

(단위 : %)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98.2	0.9	0.4	0.1	0.4	100.0(8,703)	
성별	남학생	98.1	1.0	0.3	0.1	0.6	100.0(4,461)	10.584*
	여학생	98.3	0.7	0.4	0.2	0.3	100.0(4,241)	
학교급	초등학교	98.5	0.8	0.0	0.1	0.5	100.0(2,881)	16.593*
	중학교	98.0	0.9	0.5	0.1	0.5	100.0(2,944)	
	고등학교	98.1	0.9	0.5	0.2	0.3	100.0(2,877)	
지역 규모	대도시	98.5	0.5	0.4	0.1	0.5	100.0(3,432)	9.964
	중소도시	98.1	1.0	0.3	0.2	0.4	100.0(4,208)	
	읍면지역	97.5	1.4	0.4	0.1	0.6	100.0(1,0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8.5	0.8	0.3	0.1	0.3	100.0(7,801)	62.233***
	한부모가정	96.5	1.5	0.7	0.3	1.0	100.0(678)	
	조손가정	97.4	0.0	1.4	0.0	1.2	100.0(75)	
	기타	88.7	5.0	1.4	1.6	3.4	100.0(88)	
학업 성적	상	98.7	0.6	0.1	0.2	0.4	100.0(3,227)	31.584***
	중	98.4	0.8	0.3	0.1	0.4	100.0(3,557)	
	하	96.8	1.5	0.8	0.2	0.7	100.0(1,869)	
경제적 수준	상	98.8	0.6	0.2	0.1	0.4	100.0(5,240)	49.665***
	중	97.6	1.0	0.6	0.3	0.6	100.0(2,757)	
	하	96.0	2.4	1.1	0.1	0.4	100.0(649)	

*p 〈 .05, **p 〈 .01, ***p 〈 .001.
* 주: 2017년 조사부터 응답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5-12. 방임_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2011~2025년)

(2) 학대 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①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보호기관 수

2024년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를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총 98개였고,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 수는 약 249.9개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4년에는 전년도보다 6개 증가하였고,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 수는 감소하였다(표 Ⅳ-5-22).

표 Ⅳ-5-22.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2009~2024년)

(단위: 건, 개소)

구분	아동학대 사례 건수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 수	구분	아동학대 사례 건수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 수
2009	5,685	44	129.2	2017	22,367	60	372.8
2010	5,657	44	128.6	2018	24,604	62	396.8
2011	6,058	44	137.7	2019	30,045	67	448.4
2012	6,403	46	139.2	2020	30,905	71	435.3
2013	6,796	50	135.9	2021	37,605	77	488.4
2014	10,027	51	196.6	2022	27,971	85	329.1
2015	11,715	56	209.2	2023	25,739	92	279.8
2016	18,700	59	316.9	2024	24,492	98	249.9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21.
보건복지부(2022).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p.53.
보건복지부(2023a).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p.60.
보건복지부(2024).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p.45.
보건복지부(2025a).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p.45.

② 서비스 제공 정도와 조치 결과

2024년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을 살펴보면, 피해아동에게는 864,992건, 학대 행위자에게는 621,388건, 부모 또는 가족에게는 344,013건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2023년도에 비하여 피해아동에게 제공한 서비스 수는 조금 감소하였으나, 학대 행위자와 부모 또는 가족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수는 증가하였다(표 Ⅳ-5-23).

표 Ⅳ-5-23.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2018~2024년)

(단위: 건)

구분	서비스 건수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피해아동	461,891	555,312	651,619	791,587	886,989	872,694	864,992
학대 행위자	206,419	259,967	335,818	437,644	536,730	580,794	621,388
부모 또는 가족	137,127	144,634	165,586	183,756	244,761	296,334	344,013
계	805,437	956,913	1,153,023	1,412,987	1,668,480	1,750,122	1,830,393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4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48.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p.48.
보건복지부(2022).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p.40.
보건복지부(2023a).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p.46.
보건복지부(2024).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p.34.
보건복지부(2025a).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p.31.

2024년 대상별 서비스 제공 실적을 살펴보면, 상담 서비스 지원이 아동, 행위자, 부모 및 가족 모두에게 가장 높은 비율로 제공되었다. 아동에게 제공된 총 864,992건의 서비스를 살펴보면, 상담 68.5%, 가족기능 강화 11.7%, 심리치료지원 7.9%, 기타 6.5%, 사건처리지원 4.2% 순이었으며, 행위자에게 제공된 총 621,388건의 서비스를 살펴보면, 상담 74.7%, 가족기능 강화 7.0%, 사건처리지원 6.6%, 심리치료지원 5.5%, 행위자 수탁프로그램 5.0% 순이었다. 부모 및 가족에게 제공된 총 344,013건의 서비스를 살펴보면, 상담 76.0%, 가족기능 강화 14.6%, 심리치료지원 5.7% 순이었다(표 Ⅳ-5-24).

표 Ⅳ-5-24. 대상별 서비스 제공 실적(2024년)

(단위: 회, %)

구분	아동		행위자		부모 및 가족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상담	592,310	(68.5)	464,139	(74.7)	261,332	(76.0)
의료지원	4,178	(0.5)	894	(0.1)	539	(0.2)
심리치료지원	68,135	(7.9)	34,045	(5.5)	19,656	(5.7)
가족기능 강화	101,176	(11.7)	43,803	(7.0)	50,287	(14.6)
학습 및 보호지원	5,785	(0.7)	778	(0.1)	409	(0.1)
사건처리지원	36,041	(4.2)	41,165	(6.6)	3,291	(1.0)
행위자 수탁프로그램	703	(0.1)	31,008	(5.0)	708	(0.2)
피해아동 수탁프로그램	57	(0.0)	128	(0.0)	9	(0.0)
기타	56,607	(6.5)	5,428	(0.9)	7,782	(2.3)
계	864,992	(100.0)	621,388	(100.0)	344,013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25a).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p.32.

2024년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면, 원가정 보호 90.1%, 분리 보호 9.4%, 가정복귀 1.6%, 기타 0.6% 순이었다.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원가정 보호는 202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4년 조금 감소하였고, 분리보호는 2022년 10% 미만으로 떨어져 유지하고 있으며, 가정복귀도 2022년 1%대로 떨어져 유지되고 있다(그림 Ⅳ-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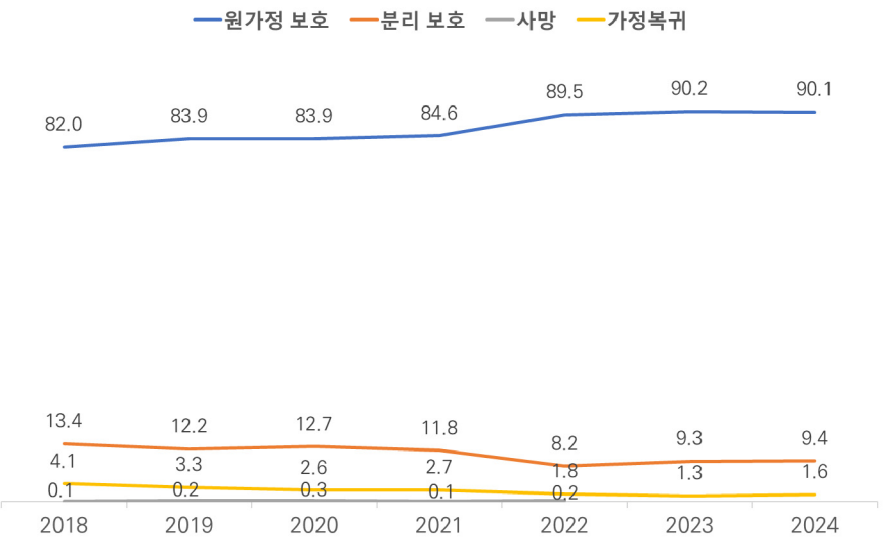
표 Ⅳ-5-25.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 피해아동 상황(2018~2024년)

(단위: 건(%))

연도	원가정 보호	분리 보호	사망[1)]	기타[2)]	가정복귀[3)]	계
2018	20,164(82.0)	3,287(13.4)	32(0.1)	101(0.4)	1,020(4.1)	24,604(100.0)
2019	25,206(83.9)	3,669(12.2)	60(0.2)	121(0.4)	989(3.3)	30,045(100.0)
2020	25,916(83.9)	3,926(12.7)	90(0.3)	175(0.6)	798(2.6)	30,905(100.0)
2021	31,804(84.6)	4,439(11.8)	44(0.1)	320(0.9)	998(2.7)	37,605(100.0)
2022	25,028(89.5)	2,293(8.2)	52(0.2)	104(0.4)	494(1.8)	27,971(100.0)
2023	23,214(90.2)	2,393(9.3)	-	132(0.5)	325(1.3)	25,739(100.0)
2024	22,057(90.1)	2,292(9.4)	-	143(0.6)	403(1.6)	24,492(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35.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p.35.
보건복지부(2022).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p.27.
보건복지부(2023a).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pp.33~34.
보건복지부(2024).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pp.21~22.
보건복지부(2025a).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pp.21~22.

* 주: 1) 2023년부터 피해아동의 상황을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기타로 구분하여, 사망 인원이 집계에서 제외됨
2) 소년원 입소,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아동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2022년부터 가정복귀 인원은 분리보호에 포함하여 산정



* 주: 본 그림은 〈표 Ⅳ-5-25〉에 해당하는 내용을 도식화한 것임(단위: %).

그림 Ⅳ-5-13.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 결과(2018~2024년)

3) 소결

본 절에서는 2025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대분류의 아동에 대한 폭력영역을 살펴보았다. 우선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의 청소년폭력 경험률은 가정(부모)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교사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친구,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경험, 온라인 환경(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최근 1년 동안 아동·청소년이 부모(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한 비율은 32.5%, 부모(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을 경험한 비율은 25.3%였으며, 최근 1년 동안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한 비율은 10.4%, 교사로부터 신체적인 벌(체벌)을 경험한 비율은 4.3%였다.

친구, 선후배로부터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경험한 폭력은 욕설 및 모욕 19.9%, 폭행 및 구타 9.1%, 따돌림 8.4%, 성적인 희롱 및 추행 3.2%, 돈, 물건 빼앗김 2.6%, 강제적인 심부름 2.2% 순이었으며, 고등학생은 2024년보다 2025년 모든 폭력 유형에서 피해 경험률이 조금씩 증가하였고, 초등학생은 2024년보다 2025년 모든 폭력 유형에서 피해 경험률이 조금씩 감소하였다. 최근 1년 동안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으로는 욕설

및 모욕은 26.1%, 협박 4.4%, 사생활 침해 4.4%, 성희롱(놀림) 4.2%, 따돌림 3.2%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 환경(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 중, 사생활 침해의 경우에는 2024년보다 2025년 피해 경험률이 낮았으나, 그 외의 유형인 욕설 및 모욕, 협박, 성희롱, 따돌림은 2024년보다 2025년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욕설 및 모욕은 201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21.0%였으나 2025년 26.1%로 많이 증가하였고, 따돌림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성폭력 피해 경험률을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자는 2023년 총 36,534건으로, 이 중 13세 이상이 95.9%(35,034건), 13세 미만이 4.1%(1,500건)였다. 202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3.1%가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적 피해 경험률이 높았고,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다.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응답한 비율이 33.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친구 25.9%, 부모님(보호자) 19.0%, 선생님 14.3%, 형제·자매 2.4%, 선후배 1.6%, 전문 상담가 1.5%, 경찰 0.3% 순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의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2024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50,242건이었고, 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93.7%(47,096건)였다.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접수된 47,096건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는 52.0%(24,492건)였으며, 일반사례는 46.9%(22,068건), 조사 진행 중 사례는 1.1%(536건)였다. 아동학대 사례 수는 2024년 3.8% 감소하였으며, 아동학대 행위자로는 부모가 84.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대리양육자(부모동거인, 유치원/보육 교직원, 초중고 교원, 학원/교습소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7.0%, 타인(이웃 및 낯선 사람) 5.5%, 친인척(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2.7%, 기타 0.7% 순이었다. 2024년 아동학대 사례 유형으로는 정서학대가 46.8%로 가장 많았으며, 중복학대 24.4%, 신체학대 18.9%, 방임 7.3%, 성학대 2.5% 순이었다.

가정 내 방임에 대한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밤늦게까지 부모(보호자)가 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8.7%,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 부모님(보호자)이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4.4%, 부모님(보호자)이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5.3%, 부모님(보호자)이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8%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초등학생의 경험 비율이 54.9%로, 절반 정도의 초등학생이 야간의 방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대 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을 살펴보면, 2024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98개,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 수는 249.9개로, 2023년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6개 증가하였고, 기관 평균 담당 학대 사례 수는 감소하였다. 2024년 피해 아동에게는 864,992건, 학대 행위자에게는 621,388건, 부모 또는 가족에게는 344,013건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로는, 상담이 68.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가족기능 강화 11.7%, 심리치료지원 7.9%, 기타 6.5%, 사건처리지원 4.2% 순이었다. 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역시, 상담이 74.7%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기능 강화 7.0%, 사건처리지원 6.6%, 심리치료지원 5.5%, 행위자 수탁프로그램 5.0% 순이었고, 부모 및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로는, 상담 76.0%, 가족기능 강화 14.6%, 심리치료지원 5.7% 순이었다. 2024년 학대 피해아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면, 원가정 보호는 90.1%, 분리보호 9.4%, 가정복귀 1.6%, 기타 0.6% 순이었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온전히 근절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절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의 폭력, 학대 및 방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32.5%) 혹은 신체적 벌(체벌; 25.3%)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여전히 많았으며, 아동학대 행위자로는 부모(84.1%)가 가장 많았다. 또한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밤늦게까지 부모(보호자)가 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8.7%로 야간 방임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2명 중 1명꼴이었다. 가정은 아동을 폭력, 학대 및 방임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절대적 안전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가정의 폭력, 학대 및 방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가정에서의 폭력, 학대, 방임 근절을 위한 예방적 접근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저연령층 아동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연구 결과에서 초등학생의 폭력 피해 경험률을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경험한 비율은 36.2%,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을 경험한 비율은 39.8%나 되었으며, 선후배 혹은 친구로부터 욕설·모욕을 경험한 비율은 25.1%, 폭행·구타를 경험한 비율은 20.6%나 되었다. 또한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3.1%가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2024 범죄백서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연령층 아동기의 경험은 청소년,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저연령층 아동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적 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6.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클러스터 개요 및 주요 내용 요약

○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클러스터 개요

-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클러스터는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권리, 원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적절한 대안 양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등에 대해 다루고 있음.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5조와 제18조를 통해 아동 발달에 있어 부모와 가족의 역할이 최우선임을 강조하고 있고, 제20조를 통해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 보호에 있어 시설보호보다 가정형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여기서는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과 대안양육 형태 관련 통계 지표들을 통해 그 아동·청소년이 어떠한 환경에 있는지를 분석하였음.

○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클러스터의 주요 내용 요약

- 2024년 기준 보호대상아동은 총 1,978명이었으며, 이 중 83.3%(1,647명)가 빈곤·실직·학대로 발생하였음. 또한 시설보호가 56.9%(1,126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가정위탁 35.7%(707명), 입양 6.2%(123명), 가정형 보호 1.1%(22명) 순이었음. 2024년 총 212명의 아동이 입양되었으며, 이 중 72.6%(154명)가 국내로, 27.4%(58명)가 국외로 입양되었음.
- 지난 1년간 가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였으며, 가출 경험 횟수는 1회가 58.9%, 2회가 22.5%였음. 다만 5회 이상도 6.0%로 나타나, 무시할 수 없는 수의 아동·청소년이 잦은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가장 최근에 가출을 한 기간은 하루가 69.7%, 2-3일 13.1%, 한 달 이상 7.9% 순으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의 아동·청소년이 한 달 이상의 긴 시간 동안 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가출한 주된 이유로는,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 61.3%, 학업문제 14.1%,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7.8%였음. 가출 후 지낸 장소로는 노숙이 48.7%로 가장 많았음.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1) 부모와의 관계

①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통계청에서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조사(승인번호 제101018호)에 의하면, 2024년 만13~19세의 아동·청소년의 49.7%가 부모와의 관계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4.2%가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하면서, 약 85% 정도의 아동·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2016년 이후로 부모와의 관계를 만족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Ⅳ-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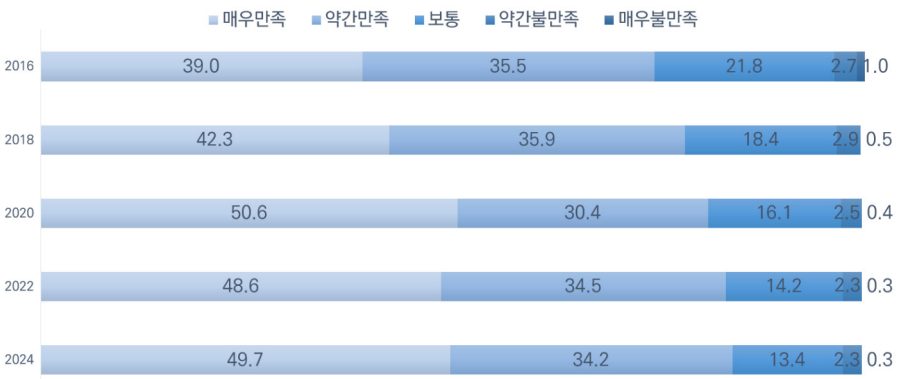


그림 Ⅳ-6-1. 부모와의 관계만족도(13~19세) 연도별 추이

*출처: 통계청(2016, 2016, 2018, 2020, 2024). 2016-2024 사회조사 보고서.

*주: 단위: %

(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① 보육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보육시설 설치 개소 수는 201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2024년 총 27,387개로, 2018년보다 약 1만 2천 개 정도 감소하였다.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개소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2024년 총 6,521개로, 2018년의 3,602개보다 약 3천 개 정도 증가하였고, 직장 보육시설 설치 개소 수도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4년에는 2023년보다 3개 감소하였다. 그 외의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보육시설 설치 개소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 역시, 2018년부터 꾸준히 감소하였으며, 2024년 총 941,303명으로 2018년보다 약 50만 명 정도 감소하였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재원하는 아동 수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약 293,049명이 국·공립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 보육시설에 재원하는 아동 수는 2022년 이후 약 6만 1천 명 정도를 유지하였다. 그 외의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표 Ⅳ-6-1).

표 Ⅳ-6-1. 연도별 및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2018~2024년)

(단위 : 개소, 명)

구분·연도 \ 설립주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보육시설 설치 개소 수 (개소)	2018	3,602	1,377	748	13,518	18,651	164	1,111	39,171
	2019	4,324	1,343	707	12,568	17,117	159	1,153	37,371
	2020	4,958	1,316	671	11,510	15,529	152	1,216	35,352
	2021	5,437	1,285	640	10,603	13,891	142	1,248	33,246
	2022	5,801	1,254	610	9,726	12,109	132	1,291	30,923
	2023	6,187	1,206	551	8,886	10,692	124	1,308	28,954
	2024	6,521	1,171	507	8,181	9,586	116	1,305	27,387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 (명)	2018	200,783	92,787	41,298	711,209	302,674	4,360	62,631	1,415,742
	2019	232,123	86,775	38,538	664,106	273,399	4,121	66,023	1,365,085
	2020	253,251	78,322	34,066	578,196	230,444	3,716	66,401	1,244,396
	2021	268,967	72,085	30,998	535,428	208,842	3,465	64,931	1,184,716
	2022	276,670	64,503	27,743	477,628	184,053	3,203	61,650	1,095,450
	2023	286,487	56,812	24,010	420,219	159,864	2,851	61,570	1,011,813
	2024	293,049	50,377	20,778	373,524	139,172	2,662	61,741	941,303

* 출처: 교육부(2025). 2024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 pp.2-3.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현황을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2024년 정원 대비 현원 이용률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78.2%로 가장 높았으며, 가정 어린이집이 77.0%.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68.9%, 민간 어린이집이 68.2%, 직장 어린이집이 63.1%,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이 58.6%,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50.4% 순이었다.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2018년 이후 이용률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4년에는 전체 70.2%로 나타났다(표 Ⅳ-6-2).

표 Ⅳ-6-2.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현황(2018~2024년)

(단위 : 명, %)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2018	정원	230,508	128,810	54,900	886,818	344,412	5,451	81,425	1,732,324
	현원	200,783	92,787	41,298	711,209	302,674	4,360	62,631	1,415,742
	이용률	87.1	72.0	75.2	80.2	87.9	80.0	76.9	81.7
2019	정원	269,500	124,040	51,736	832,749	318,092	5,297	85,459	1,686,873
	현원	232,123	86,775	38,538	664,106	273,399	4,121	66,023	1,365,085
	이용률	86.1	70.0	74.5	79.7	85.9	77.8	77.3	80.9
2020	정원	302,378	119,289	48,839	772,536	290,123	4,958	90,137	1,628,260
	현원	253,251	78,322	34,066	578,196	230,444	3,716	66,401	1,244,396
	이용률	83.8	65.7	69.8	74.8	79.4	74.9	73.7	76.4
2021	정원	326,210	113,294	46,084	715,671	259,901	4,636	91,700	1,557,496
	현원	268,967	72,085	30,998	535,428	208,842	3,465	64,931	1,184,716
	이용률	82.5	63.6	67.3	74.8	80.4	74.7	70.8	76.1
2022	정원	343,104	108,825	43,619	654,154	226,994	4,401	95,589	1,476,686
	현원	276,670	64,503	27,743	477,628	184,053	3,203	61,650	1,095,450
	이용률	80.6	59.3	63.6	73.0	81.1	72.8	64.5	74.2
2023	정원	359,817	103,921	39,011	596,075	201,026	4,046	97,544	1,401,440
	현원	286,487	56,812	24,010	420,219	159,864	2,851	61,570	1,011,813
	이용률	79.6	54.7	61.5	70.5	79.5	70.5	63.1	72.2
2024	정원	374,641	99,948	35,456	547,612	180,680	3,865	97,885	1,340,087
	현원	293,049	50,377	20,778	373,524	139,172	2,662	61,741	941,303
	이용률	78.2	50.4	58.6	68.2	77.0	68.9	63.1	70.2

* 출처: 보건복지부(2018). 2018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9). 2019 보육통계. p.17.
보건복지부(2020). 2020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22b). 2021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23). 2022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24). 2023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 p.5
교육부(2025a). 2024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 p.5

②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현황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총 3,931개의 센터가 개소되었으며, 연 이용 인원은 총 104,033명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이용 인원을 학령별로 살펴보면, 초등 고학년이 42,150명, 초등 저학년이 38,9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중학생 17,277명, 고등학생 3,659명, 미취학 아동 1,886명, 탈학생 101명 순이었다(표 Ⅳ-6-3).

표 Ⅳ-6-3.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증가 및 이용 아동 현황·추이(2019~2023년)

(단위 : 개소, 명)

구분	센터 개소수	연 인원						
		합계	미취학	초등		중학생	고등학생	탈학생
				저학년	고학년			
2019	4,081	108,971	2,146	44,094	43,681	15,531	3,443	76
2020	4,008	106,510	1,900	40,199	43,492	17,207	3,578	134
2021	4,057	106,746	2,067	38,471	44,260	18,064	3,800	84
2022	4,005	105,210	1,972	38,133	43,846	17,495	3,680	84
2023	3,931	104,033	1,886	38,960	42,150	17,277	3,659	101

* 출처: 보건복지부(2023b).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2023년 12월말 기준). pp.44-45.

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2025년 8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에 총 1,264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경기에 367개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서울 278개, 경북 77개, 부산 72개, 충남 59개, 전북 55개 순이었다(표 Ⅳ-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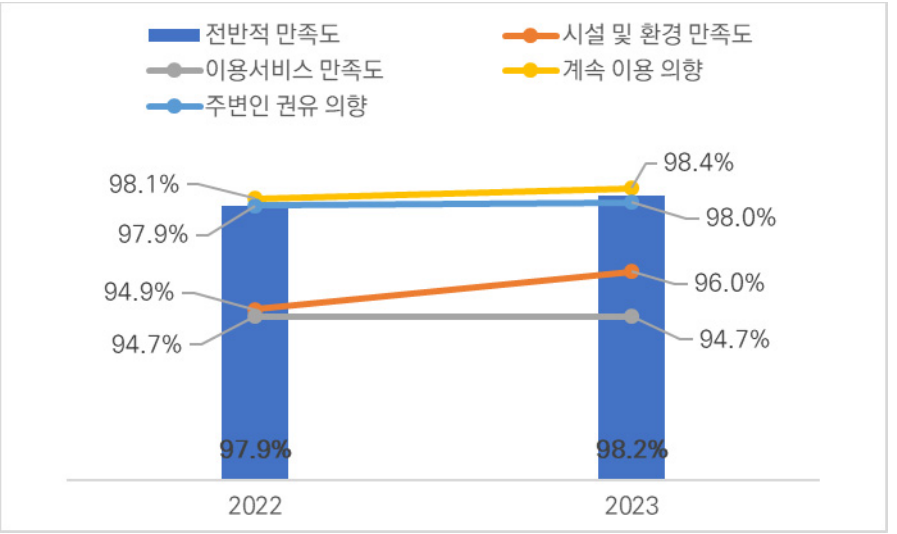
표 Ⅳ-6-4.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현황(2025년 8월 기준)

(단위 : 개소)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개소	278	72	18	44	34	36	30	10	367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개소	50	41	59	55	44	77	39	10	1,264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2025a).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현황(2025년 8월 기준). https://www.dadol.or.kr/board/center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2023년 다함께돌봄 이용자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8.2%로,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98.4%, 주변인에게 권유 의향이 있는 응답자가 98.0%로 나타나, 다함께돌봄 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Ⅳ-6-2).



* 출처: 아동권리보장원(2022). 돌봄행복플러스(2편), 통계로 보는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권리보장원(2023). 2023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만족도 조사 결과 그림을 그래프로 재구성

* 주 1) 단위: %
2) 긍정 응답(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산)의 비율을 제시하였음(단위 %)

그림 Ⅳ-6-2. 다함께돌봄 이용자 만족도(2022~2023년)

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개소 수는 총 355개로, 2017년 250개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약 100개 정도가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한 인원 역시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24년에는 14,712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2017년보다 5천 명가량 증가하였다(표 Ⅳ-6-5).

표 Ⅳ-6-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2017~2024년)

(단위 : 개소, 명)

구분	개소	인원	구분	개소	인원
2017	250	9,773	2021	332	13,145
2018	260	10,742	2022	342	14,059
2019	280	11,584	2023	350	14,588
2020	304	12,341	2024	355	14,712

* 출처: 여성가족부(2025a). 2024 청소년백서. p.205.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만족도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83.6점,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은 82.5점, 개인생활지원에 대한 생각은 84.3점으로, 전체 만족도는 83.8점이었다. 서비스 만족도의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2022년 이후 꾸준히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표 Ⅳ-6-6).

표 Ⅳ-6-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만족도(2022~2024년)

(단위 :점)

연도	만족도 영역 / 구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만족도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	개인생활지원에 대한 생각	전체
2022	평균(표준편차)	4.07(0.68)	4.15(0.75)	4.08(0.79)	4.10(0.67)
	100점 만점 환산점수	81.3	80.4	83.6	81.8
2023	평균(표준편차)	4.15(0.63)	4.05(0.70)	4.13(0.72)	4.15(0.60
	100점 만점 환산점수	83.0	80.9	82.7	82.9
2024	평균(표준편차)	4.18(0.62)	4.12(0.67)	4.22(0.70)	4.19(0.59)
	100점 만점 환산점수	83.6	82.5	84.3	83.8

* 출처: 서정아, 조아미(2023). 2023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p.30.
서정아, 장여옥(2024).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p.29.

* 주: 만족도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임.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 청소년

(1) 입양률

① 국내·외 입양 현황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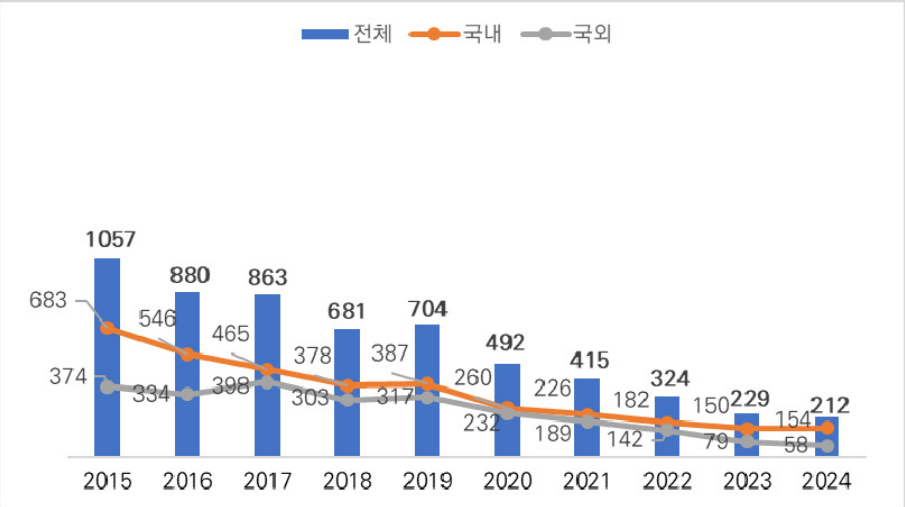
2024년 국내·외 입양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2명의 아동이 입양되었으며, 이 중 72.6%(154명)가 국내로, 27.4%(58명)가 국외로 입양되었다. 국내·외 입양의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2015년 이후 201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5년에는 1천 명이 넘는 아동이 입양되었는데, 2024년에는 212명으로, 9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입양 비율은 2015년 이후 2017년까지 감소하다가, 그 이후 2020년까지는 증감을 반복, 2020년 이후에는 꾸준히 증가하였다(표 Ⅳ-6-7).

표 Ⅳ-6-7.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2015~2024년)

(단위 : 명(%))

연도	계	국내	국외	연도	계	국내	국외
2015	1,057	683 (64.6)	374 (35.4)	2020	492	260 (52.8)	232 (47.2)
2016	880	546 (62.0)	334 (38.0)	2021	415	226 (54.5)	189 (45.5)
2017	863	465 (53.9)	398 (46.1)	2022	324	182 (56.2)	142 (43.8)
2018	681	378 (55.5)	303 (44.4)	2023	229	150 (65.5)	79 (34.5)
2019	704	387 (55.0)	317 (45.0)	2024	212	154 (72.6)	58 (27.4)

* 출처: 보건복지부(2016-2025).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국내·외 입양현황(2015-202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N001&conn_path=I2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및 재구성.



* 출처: 보건복지부(2016-2025).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국내·외 입양현황(2015-202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N001&conn_path=I2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및 재구성.

* 주: 단위: 명

그림 Ⅳ-6-3. 연도별 국내·외 입양 아동 수(2015~2024년)

② 입양체계 개편

입양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영구적으로 가정을 제공하여 아동 등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해 국내 이행 법률안을 제·개정하여 공적 입양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중심 입양절차를 추진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 2023년에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변화가 있었는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헤이그협약과 절차를 준수하는 체계로 개편하였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

입양 절차의 개편을 살펴보면, 기존 보호대상 아동 입양의 절차가 '지자체가 입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입양기관이 보호하면서 예비 양부모를 결연해주고', '법원허가를 거쳐 입양을 완료하며', '입양기관이 사후관리'를 진행했다면, 2025년 7월부터는 입양 절차의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하에 수행하여, '지자체가 입양대상 아동을 결정하여

보호'하고, '복지부(위탁가능)가 예비 양부모를 조사하고 복지부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연'하여, '법원이 임시양육결정과 입양허가를 진행하고', '복지부(위탁가능)가 입양된 아동의 적응상황을 점검'하는 절차로 변경되었다(표 Ⅳ-6-8).

표 Ⅳ-6-8. 입양 절차 개편

기존 보호대상 아동 입양 절차	'25.7월부터의 입양 절차
지자체가 입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입양기관이 보호하면서 적합한 예비 양부모를 결연해주고 법원허가 거쳐 입양 완료 → 입양기관이 입양가정 사후관리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지자체 책임하에 수행 지자체가 입양대상아동 결정 후 입양 전까지 보호 → 복지부(위탁가능)가 예비양부모 조사, 복지부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연 → 법원이 임시양육결정 및 입양허가 → 복지부(위탁가능)가 아동 적응상황 점검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 2025 입양실무매뉴얼. p.1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살펴보면, 우선 실태조사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제10조), 정책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고(제12조),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한다(제13조제1항)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표 Ⅳ-6-9).

표 Ⅳ-6-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함 (제10조)
·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둠 (제12조)
·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해당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함 (제13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도록 할 수 있고,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제3항 및 제3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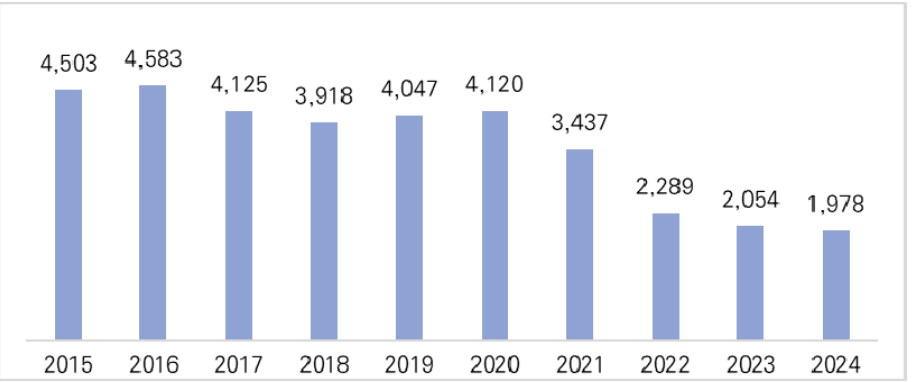
주요 내용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19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함 (제20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제31조)
·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제33조)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 2025 입양실무매뉴얼. p.14-15.

(2) 대안양육 비율

①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호대상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보호대상아동이 4,503명이었는데, 2024년 1,978명으로 거의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4,120명에서 2021년 3,437명으로 급감하였고, 다시 2022년 2,289명으로 급감하였다(그림 Ⅳ-6-4).



* 출처: 보건복지부(2025e). 2024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연도별).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m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tag=&act=view&list_no=1482557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 주: '귀가 및 연고자 인도' 사례는 제외(단위: 명)

그림 Ⅳ-6-4.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현황 추이(2015~2024년)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전체 1,978명 중에, 83.3%(1,647명)가 빈곤·실직·학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부모 및 혼외자로 인한 발생이 11.1%(219명), 보호출산으로 인한 발생이 2.3%(46명), 비행·가출로 인한 발생이 1.8%(36명), 유기로 인한 발생이 1.5%(30명) 순이었다.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2018년 이후 빈곤·실직·학대로 발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2022년 이후에는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미혼부모 및 혼외자로 인한 발생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23년까지 다시 증가하였고, 2024년 다시 감소하였다(표 Ⅳ-6-10).

표 Ⅳ-6-10.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2018~2024년)

(단위 :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3,918	4,047	4,120	3,437	2,289	2,054	1,978
빈곤·실직·학대[1]	2,726 (69.6)	2,865 (70.8)	3,006 (73.0)	2,661 (77.4)	1,953 (85.3)	1,692 (82.4)	1,647 (83.3)
비행·가출[2]	231 (5.9)	473 (11.7)	468 (11.4)	293 (8.5)	11 (0.5)	14 (0.7)	36 (1.8)
미혼부모·혼외자	623 (15.9)	464 (11.5)	466 (11.3)	366 (10.6)	252 (11.0)	259 (12.6)	219 (11.1)
유기	320 (8.2)	237 (5.9)	169 (4.1)	117 (3.4)	73 (3.2)	88 (4.3)	30 (1.5)
미아	18 (0.5)	8 (0.2)	11 (0.3)	0 (-)	0 (-)	1 (-)	0 (-)
보호출산[3]	-	-	-	-	-	-	46 (2.3)

* 출처: 보건복지부(2025e).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m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tag=&act=view&list_no=1482557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 주: 1) 학대, 빈곤, 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이며, 2020년부터는 부모교정시설입소가 포함
2) 비행, 가출, 부랑 포함
3) 2024년부터 보호출산 항목이 신설됨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전체 1,978명 중에, 시설보호가 56.9%(1,126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가정위탁 35.7%(707명), 입양 6.2%(123명), 가정형 보호 1.1%(22명) 순이었다.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시설보호는 2019년 이후 2023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4년 다시 증가하였으며, 가정위탁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24년 다시 감소하였다(표 Ⅳ-6-11).

표 Ⅳ-6-11.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2018~2024년)

(단위 :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3,918	4,047	4,120	3,437	2,289	2,054	1,978
시설보호[1)2)]	2,449 (62.5)	2,739 (67.7)	2,727 (66.2)	2,183 (63.5)	1,294 (56.5)	1,067 (51.9)	1,126 (56.9)
가정위탁	937 (23.9)	1,003 (24.8)	1,068 (25.9)	1,028 (29.9)	802 (35.0)	783 (38.1)	707 (35.7)
입양[3)]	174 (4.4)	104 (2.6)	88 (2.1)	75 (2.2)	52 (2.3)	162 (7.9)	123 (6.2)
입양전 위탁[4)]	357 (9.1)	196 (4.84)	237 (5.8)	151 (4.4)	114 (5.0)	-	-
소년소녀가정[5)]	1 (0.0)	5 (0.1)	0 (-)	0 (-)	-	-	-
가정형 보호	-	-	-	-	27 (1.2)	42 (2.0)	22 (1.1)

* 출처: 보건복지부(2025e) 2024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연도별)
* 원출처: 보건복지부「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주 1) 시설보호는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포함됨.
2) 2022년부터 기존 통계표의 시설입소-일시보호에 해당하는 항목을 별도 일시보호로 구분 및 일시보호-가정보호 항목 신설
3)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민법상의 입양(사인간의 입양)은 미포함
4) 2023년부터 입양대상 아동으로 입양+입양전위탁 아동 통합
5) 2022년부터 소년소녀가정 항목 삭제

②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 · 청소년 비율

2023년 가정위탁 보호유형별 위탁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는 아동은 총 9,526명이었으며, 이 중 중장기보호 아동은 99.9%인 9,513명, 일시가정위탁 아동은 0.1%인 13명으로, 거의 모든 아동이 중장기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보호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인척의 일반가정 위탁아동은 87.5%(8,338명), 친인척외의 일반가정 위탁아동은 9.1%(863명)였으며, 전문가정 위탁아동은 3.3%(312명)였다(표 Ⅳ-6-12).

표 Ⅳ-6-12. 가정위탁 보호유형별 위탁아동현황(2019~2023년)

(단위 : 명(%))

구분	2019	2020	2021	구분			2022	2023
전체	10,384	9,923	9,535	전체			9,330	9,526
대리양육 위탁아동	6,905 (66.5)	6,542 (65.9)	6,107 (64.0)	중장기 보호	소계		9,312(99.8)	9,513(99.9)
					일반가정 위탁아동	친인척	8,204(87.9)	8,338(87.5)
친인척 위탁아동	2,572 (24.8)	2,447 (24.7)	2,344 (24.6)			친인척외	871(9.3)	863(9.1)
					전문가정 위탁아동		237(2.5)	312(3.3)
일반 위탁아동	907 (8.7)	934 (9.4)	1,084 (11.4)	일시가정위탁			18(0.2)	13(0.1)

* 출처: 보건복지부(2020-2022).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2019~202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_N005&conn_path=I2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보건복지부(2025c).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23.12.31기준).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107010000&bid=0040&act=view&list_no=1484371&tag=&cg_code=&list_depth=1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아동복지시설 수는 총 450개로, 2019년의 281개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이며, 특히 2022년 306개에서 1년 사이에 약 150개가 증가하였다. 입소아동의 수를 살펴보면 2023년 10,228명으로, 201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시설 수 대비 입소아동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표 Ⅳ-6-13).

표 Ⅳ-6-13. 아동복지시설 수 및 보호아동[1] 현황(2019~2023년)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3]
시설 수	281	274	299	306	450
현재 입소아동[2]	11,665	11,356	11,005	10,312	10,228

* 출처: 보건복지부(2020c). 2020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2019년 12월 31일 현재). p.1.
보건복지부(2021c). 2021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2020년 12월 31일 현재). p.1.
보건복지부(2022d). 2022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2021년 12월 31일 현재). p.1.
보건복지부(2023d). 2023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2022년 12월 31일 현재). p.1.
보건복지부(2024d). 2024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2023년 12월 31일 현재). p.1

* 주: 1)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전국의 아동복지시설로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아동
2) 현재 입소아동: 기아, 사생아, 미아, 비행·가출·부랑아, 빈곤·실직·가정, 전입 등으로 시설에 입소된 아동으로 퇴소아동을 제외한 연말 현재 수용아동 수
3) 2023년도부터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추가됨

공동생활가정 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공동생활가정 시설 수는 520개로 2022년의 시설 수와 동일하다. 시설의 수는 2019년 이후 2021년까지 증가하였다가 2022년 감소하였다. 이용하는 보호아동의 수는 2023년 총 2,578명으로 2020년 다소 증가하였다가, 이후 2023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표 Ⅳ-6-14).

표 Ⅳ-6-14. 공동생활가정 시설 수 및 보호아동 현황(2019~2023년)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시설 수		578	595	617	520	520
이용 인원	계	2,949	3,126	3,105	2,669	2,578
	남	1,602	1,686	1,676	1,467	1,417
	여	1,347	1,440	1,429	1,202	1,161

* 출처: 보건복지부(2020a). 2020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19.12.31.현재). p.1
보건복지부(2021b). 2021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20.12.31.현재). p.1
보건복지부(2022). 2022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21.12.31.현재). p.1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2022.12.31.현재). p.1
보건복지부(2024c). 2024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Ⅱ(공동생활가정)(2023.12.31.현재). p.1

(3) 가정 밖(가출)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① 가정 밖(가출) 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가출 여부에 대한,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가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였다. 남학생의 가출 경험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읍면지역의 가출 경험률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중소도시, 대도시 순이었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하인 경우가 중과 상인 경우보다 가출 경험률이 높았다(표 Ⅳ-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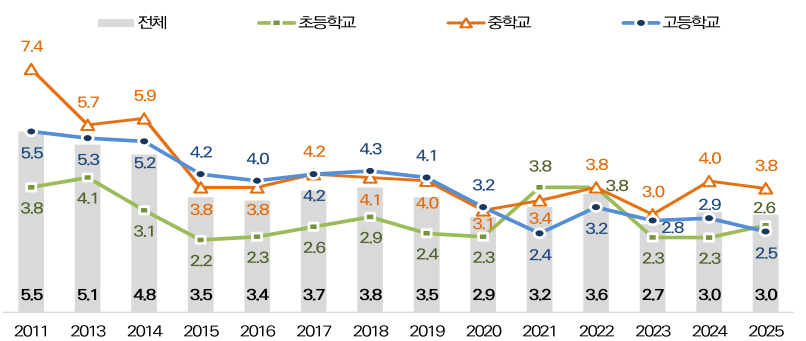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가출 경험률은 2011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2011년 5.5%에서 2025년 3.0%로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가출 경험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초등학생은 2021년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는 듯하였으나, 2025년 다시 조금 증가하였다(그림 Ⅳ-6-5).

표 Ⅳ-6-15. 가출 여부(2025년)

(단위 : %(명))

구분		가출한 적이 있다	가출한 적이 없다	전체(N)	χ^2
전체		3.0	97.0	100.0(8,641)	
성별	남학생	3.5	96.5	100.0(4,441)	100.0(4,441)
	여학생	2.4	97.6	100.0(4,200)	
학교급	초등학교	2.6	97.4	100.0(2,842)	100.0(2,842)
	중학교	3.8	96.2	100.0(2,929)	
	고등학교	2.5	97.5	100.0(2,870)	
지역규모	대도시	2.5	97.5	100.0(3,397)	4.082
	중소도시	3.1	96.9	100.0(4,186)	
	읍면지역	3.6	96.4	100.0(1,057)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2.5	97.5	100.0(7,754)	63.999***
	한부모가정	7.5	92.5	100.0(669)	
	기타	6.9	93.1	100.0(159)	
학업 성적	상	2.2	97.8	100.0(3,219)	32.518***
	중	2.6	97.4	100.0(3,517)	
	하	4.9	95.1	100.0(1,857)	
경제적 수준	상	2.3	97.7	100.0(5,208)	31.906***
	중	3.3	96.7	100.0(2,733)	
	하	6.2	93.8	100.0(644)	

*p 〈 .05, **p 〈 .01, ***p 〈 .001.



* 주: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Ⅳ-6-5. 가출 여부: 학교급별(2011~2025년)

가출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최근 1년 동안의 가출 경험 횟수에 대한,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회가 58.9%로 가장 많았으며, 2회가 22.5%로 그 뒤를 이었으며, 5회 이상도 6.0%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1회 가출 경험률과 5회 이상 가출 경험률이 높았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1회 가출 경험률과 5회 이상 가출 경험률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인 경우가 5회 이상 가출 경험률이 10.8%로 높게 나타났다(표 Ⅳ-6-16).

표 Ⅳ-6-16. 가출 경험 횟수(2025년)

(단위 : %(명))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전체(N)	χ^2
2025		58.9	22.5	9.7	2.9	6.0	100.0(250)	
성별	남학생	62.2	22.2	6.4	2.7	6.6	100.0(152)	4.557
	여학생	53.9	22.9	14.8	3.3	5.1	100.0(98)	
학교급	초등학교	63.8	25.7	3.7	0.0	6.8	100.0(72)	16.778*
	중학교	52.1	25.0	14.1	2.1	6.6	100.0(110)	
	고등학교	64.9	14.7	8.7	7.3	4.3	100.0(67)	
고교 유형	일반계고	71.8	9.7	10.4	6.1	1.9	100.0(56)	15.609**
	특성화계고	29.0	41.0	0.0	13.7	16.3	100.0(11)	
지역 규모	대도시	54.9	16.6	17.7	3.6	7.2	100.0(85)	19.369*
	중소도시	63.8	26.3	4.3	0.7	4.8	100.0(129)	
	읍면지역	51.0	22.6	9.5	9.4	7.6	100.0(3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8.7	24.3	9.4	2.8	4.7	100.0(186)	12.920
	한부모가정	66.2	15.5	10.5	2.6	5.2	100.0(50)	
	기타	35.1	19.0	12.3	6.8	26.9	100.0(11)	
주관적 학업 성적	상	60.4	20.3	5.8	2.7	10.8	100.0(68)	13.619
	중	63.8	26.2	6.0	1.2	2.8	100.0(89)	
	하	52.0	21.0	16.4	4.9	5.8	100.0(90)	
주관적 경제 수준	상	64.5	19.4	5.3	3.1	7.7	100.0(119)	11.107
	중	49.2	27.6	14.2	4.1	4.8	100.0(86)	
	하	60.9	22.7	12.1	0.0	4.3	100.0(40)	

*p<.05, **p<.01, ***p<.001
주) 2025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가출한 경험이 아동·청소년의 최근 1년 동안의 가출 경험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가출을 한 기간에 대한,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하루가 69.7%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2-3일 13.1%, 한 달 이상 7.9% 순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의 아동·청소년이 한 달 이상 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한 달 이상 가출 경험률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초등학생의 한 달 이상 가출 경험률이 15.1%로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별로 살펴보면, 상인 경우가 중이나 하인 경우보다 한 달 이상 가출한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표 Ⅳ-6-17).

표 Ⅳ-6-17. 가출 기간(2025년)

(단위 : %(명))

구분		하루	2~3일	4~7일	8~14일	15~29일	한 달 이상	전체(N)	χ^2
2025		69.7	13.1	4.3	3.2	1.8	7.9	100.0(248)	
성별	남학생	67.1	13.2	4.4	4.0	1.7	9.7	100.0(151)	2.720
	여학생	73.7	13.0	4.3	1.9	2.0	5.1	100.0(97)	
학교급	초등학교	77.7	5.6	1.7	0.0	0.0	15.1	100.0(70)	23.276**
	중학교	67.0	12.5	5.7	5.2	3.2	6.4	100.0(109)	
	고등학교	65.7	21.9	5.0	3.2	1.5	2.8	100.0(68)	
고교 유형	일반계고	65.6	24.4	2.8	3.8	0.0	3.4	100.0(57)	10.462
	특성화계고	65.9	8.3	16.6	0.0	9.2	0.0	100.0(11)	
지역 규모	대도시	64.7	15.1	7.6	6.7	3.0	2.9	100.0(85)	24.463**
	중소도시	69.7	13.8	3.4	0.0	1.6	11.6	100.0(125)	
	읍면지역	81.2	6.2	0.0	5.9	0.0	6.7	100.0(3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1.7	11.9	4.0	3.2	1.5	7.8	100.0(185)	15.398
	한부모가정	72.9	15.7	5.5	0.0	1.6	4.3	100.0(47)	
	기타	37.0	17.4	0.0	8.0	9.0	28.6	100.0(11)	
주관적 학업 성적	상	70.2	7.8	7.7	1.6	1.1	11.5	100.0(67)	12.116
	중	71.5	12.5	4.3	2.1	1.3	8.3	100.0(89)	
	하	67.0	17.9	1.9	5.5	2.8	4.9	100.0(90)	
주관적 경제 수준	상	72.5	8.0	5.7	3.6	0.0	10.2	100.0(118)	15.755
	중	65.1	17.4	4.3	3.4	3.2	6.7	100.0(87)	
	하	70.6	19.9	0.9	0.0	4.3	4.3	100.0(40)	

*p<.05, **p<.01, ***p<.001
주) 2025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가출한 주된 이유에 대한,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가출했다는 응답 비율이 61.3%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학업문제 때문에(14.1%),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7.8%), 기타(7.5%) 순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학업문제 때문에 가출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가출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별로 살펴보면, 하인 경우가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가출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중이나 상보다 높았다(표 Ⅳ-6-18).

표 Ⅳ-6-18. 가출한 주된 이유(2025년)

(단위 : %(명))

구분		학업문제 때문에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부모님의 폭력, 학대, 방임 때문에	학교 문제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기타	전체(N)	χ^2
전체		14.1	61.3	3.9	3.3	2.2	7.8	7.5	100.0(241)	
성별	남학생	17.9	54.4	2.8	3.9	3.6	10.4	7.1	100.0(146)	14.256*
	여학생	8.3	72.1	5.5	2.3	0.0	3.8	8.0	100.0(95)	
학교급	초등학교	17.3	47.5	9.9	6.6	5.5	6.2	7.1	100.0(70)	25.262*
	중학교	13.8	66.9	1.0	1.6	1.4	7.3	8.0	100.0(105)	
	고등학교	11.2	67.2	1.9	2.3	0.0	10.4	7.0	100.0(66)	
지역 규모	대도시	14.1	66.0	2.9	2.7	0.9	3.6	9.8	100.0(84)	8.403
	중소도시	13.8	58.4	4.8	3.8	3.1	11.1	5.1	100.0(123)	
	읍면지역	15.0	60.6	2.8	2.8	2.2	6.4	10.1	100.0(3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4.2	64.9	3.3	2.5	0.8	8.4	5.9	100.0(178)	23.738*
	한부모가정	11.1	56.9	7.1	7.1	3.8	5.7	8.3	100.0(49)	
	기타	19.1	32.8	0.0	0.0	12.6	0.0	35.5	100.0(10)	
학업 성적	상	14.5	54.0	6.2	3.4	2.3	12.1	7.5	100.0(64)	15.794
	중	15.1	60.5	2.1	3.6	4.3	10.4	4.0	100.0(89)	
	하	11.6	69.3	4.0	2.9	0.0	2.2	10.0	100.0(86)	
경제적 수준	상	14.5	60.7	5.4	1.9	1.7	10.0	5.8	100.0(115)	15.747
	중	14.8	58.2	2.2	6.8	3.1	8.7	6.1	100.0(83)	
	하	9.2	72.2	3.3	0.0	1.9	0.0	13.3	100.0(38)	

*p 〈 .05, ***p 〈 .001.

주) 2024년까지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로 포괄적으로 질문했던 것을 2025년부터 두 개 문항으로 분류하여 질문함.

종단적 추세를 살펴보면, 부모님과의 문제 때문에 가출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2024년 70.2%로, 2023년 52.0%에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25년 65.2%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학업 문제 때문에 가출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2024년 10.8%로 2023년 21.8%에서 크게 감소하였다가, 2025년 14.1%로 다시 조금 증가하였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님과의 문제 때문에 가출하였다는 비율이 2023년 39.6%에서 2024년 66.3%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가 2025년 57.4%로 다소 감소하였고, 학업 문제 때문에 가출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2024년 5.8%에서 2025년 17.3%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Ⅳ-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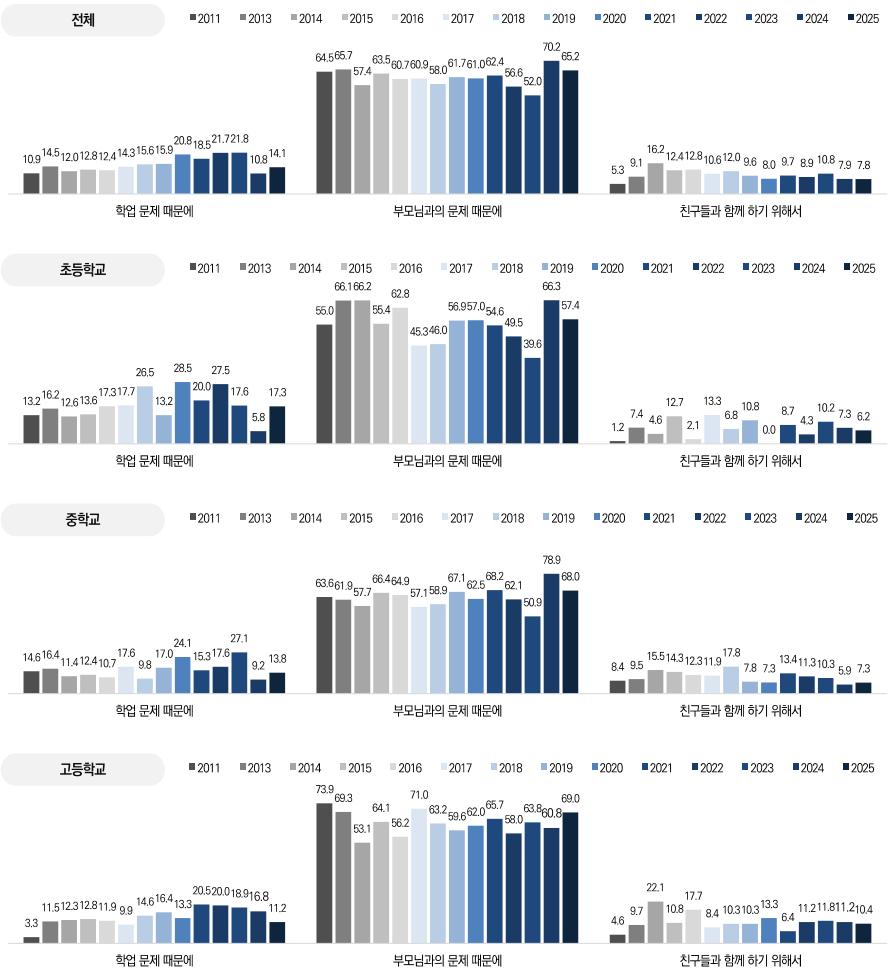


그림 Ⅳ-6-6. 가출을 한 주된 이유(2011~2025년)

가출 후 지낸 장소에 대한,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노숙이 48.7%로 가장 높았으며, 가출 전부터 알던 친구, 선·후배 집이 34.0%, 친·인척집이 13.5%, 24시간 상점이 12.9% 순이었다.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 후 노숙 등 비교적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노숙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노숙하는 비율이 높았다(표 Ⅳ-6-19).

표 Ⅳ-6-19. 가출 후 지낸 장소(복수응답, 2025년)

(단위 : %(명))

구분		친·인척집	가출 전부터 알던 친구, 선·후배 집	가출 후 알게 된 친구, 선·후배 집	고시원, 모텔, 원룸 등	24시간 상점 (PC방, 찜질방, 코인 노래방 등)	노숙 (거리, 남의 집 옥상, 건물 안 계단 등)	청소년 복지 시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아동 복지 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	기타	전체(N)
2025		13.5	34.0	1.4	1.7	12.9	48.7	1.1	1.6	2.4	100.0(248)
성별	남학생	11.3	28.2	0.3	0.9	13.9	55.9	0.5	1.5	1.9	100.0(150)
	여학생	16.8	42.9	3.1	3.0	11.3	37.7	2.1	1.8	3.0	100.0(98)
학교급	초등학교	14.2	14.8	1.8	0.0	7.3	64.0	0.0	4.0	2.7	100.0(72)
	중학교	14.6	42.2	1.6	0.8	13.8	46.0	1.9	0.0	0.0	100.0(109)
	고등학교	11.0	41.3	0.7	5.1	17.4	36.6	1.1	1.6	5.8	100.0(67)
고교 유형	일반계고	11.2	44.8	0.8	4.7	11.5	35.1	0.0	1.9	6.9	100.0(56)
	특성화계고	9.9	23.2	0.0	6.8	48.3	44.3	6.9	0.0	0.0	100.0(11)
지역 규모	대도시	15.4	35.8	3.1	2.5	14.5	46.2	1.0	0.0	6.7	100.0(85)
	중소도시	14.1	34.5	0.7	0.5	11.3	46.7	0.9	2.2	0.2	100.0(128)
	읍면지역	6.9	27.9	0.0	4.4	14.7	61.6	2.1	3.1	0.0	100.0(3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1.0	36.9	1.2	0.7	12.3	49.8	0.0	1.6	1.2	100.0(184)
	한부모가정	22.8	26.1	2.7	5.0	17.8	44.0	4.1	2.2	7.5	100.0(50)
	기타	18.4	22.0	0.0	5.5	4.8	41.9	7.3	0.0	0.0	100.0(10)
주관적 학업 성적	상	8.0	28.6	1.3	2.0	8.7	50.0	0.0	4.4	1.7	100.0(65)
	중	15.7	30.9	0.0	0.0	16.3	53.0	0.0	1.2	0.0	100.0(90)
	하	14.5	41.8	2.9	3.3	12.9	43.3	3.1	0.0	5.3	100.0(90)
주관적 경제 수준	상	13.3	29.2	0.7	1.1	10.6	49.7	0.7	3.4	4.1	100.0(117)
	중	12.5	41.5	3.0	1.7	15.2	48.5	0.9	0.0	0.2	100.0(87)
	하	15.1	33.2	0.0	3.7	14.0	43.4	2.9	0.0	2.1	100.0(40)

*p<.05, **p<.01, ***p<.001

주) 2025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② 가정 밖(가출) 청소년 보호시설 수

청소년쉼터는 24시간에서 7일 이내의 일시보호를 제공하는 일시쉼터, 3개월 이내의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단기쉼터, 3년 이내의 중장기보호를 제공하는 중장기쉼터로 구분되는데, 2024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일시쉼터는 33개소, 단기쉼터는 66개소, 중장기쉼터는 38개소 운영되었다(표 Ⅳ-6-20).

표 Ⅳ-6-20. 청소년쉼터의 종류 및 기능

구분	일시쉼터(33개소)	단기쉼터(66개소)	중장기쉼터(38개소)
기 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15개월 한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최장 24개월))	3년 이내 중장기보호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이용대상	가정 밖·거리배회·노숙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기 능	• 가정 밖 청소년 조기구조·발견, 단기·중장기 청소년 쉼터와 연결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 가정 밖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 및 예방활동 •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 서비스 제공 • 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전문기관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보호 서비스 제공
위 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 출처: 여성가족부 (2025a). 2024 청소년백서. p.188.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용 및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일시쉼터의 수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증가의 폭이 크지는 않았고(2015년 26개소->2024년33개소), 단기쉼터의 수는 매해 증감을 반복하고는 있으나 2015년의 52개소에서 2024년 66개소로 증가하였다. 중장기쉼터는 변화의 폭이 크지는 않으나 2015년 41개소에서 2024년 38개소로 조금 감소하였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만 명의 청소년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 약 2만 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 다시 증가, 이후 2023년 감소한 추세를 보였다(표 Ⅳ-6-21).

표 Ⅳ-6-21.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2015~2024년)

(단위 : 개소, 백만 원, 명)

구분 / 연도	쉼터 수(개소)				예산 (백만 원)	입소 청소년 수(명)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총계		
2015	26	52	41	119	10,002	25,012
2016	28	51	40	119	12,666	30,329
2017	30	53	40	123	13,565	31,197
2018	30	62	38	130	15,570	32,109
2019	31	63	40	134	18,970	32,402
2020	32	61	40	133	19,385	20,401
2021	32	63	36	134	19,556	21,475
2022	32	67	39	138	22,314	28,627
2023	33	66	39	138	25,290	24,654
2024	33	66	38	137	26,232	24,233

* 출처: 여성가족부 (2025a). 2024 청소년백서. p.188.
여성가족부 (2016-2022). 여성가족부 결산 사업설명자료.
여성가족부 (2023b).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77.
여성가족부 (2024b). 2024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73.

③ 가출 후 기관 이용 경험(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가출 후 기관 이용 경험에 대한,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1년 동안 가출 당시 위클래스 또는 위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6%였으며, 청소년쉼터가 4.8%,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3.4%, 청소년전화1388이 3.1%, 청소년수련관이 2.7%였다.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위클래스 또는 위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전화1388을 이용한 경험률이 더 높았으며, 남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한 경험률이 더 높았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위클래스 또는 위센터 이용율이 18.1%로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 높았으며,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위클래스 또는 위센터를 이용하는 경험률이 높았다(표 Ⅳ-6-22).

표 Ⅳ-6-22. 가출 후 이용한 기관(2025년)

(단위 : %)

구분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전화1388	청소년 수련관	위클래스 또는 위센터	기타
전체		4.8	3.4	3.1	2.7	10.6	0.0
성별	남학생	4.5	4.2	2.5	3.1	8.8	0.0
	여학생	5.2	2.1	4.3	2.0	13.6	0.0
학교급	초등학교	6.8	3.2	1.6	4.8	8.1	0.0
	중학교	3.4	1.6	3.8	0.8	7.8	0.0
	고등학교	4.8	6.9	3.7	3.7	18.1	0.0
지역 규모	대도시	3.1	3.6	2.1	1.0	14.1	0.0
	중소도시	6.1	3.2	4.3	4.1	8.6	0.0
	읍면지역	3.7	3.8	1.6	1.6	9.7	0.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1	2.1	2.0	2.6	11.7	0.0
	한부모가정	9.7	5.4	5.5	0.9	2.6	0.0
	기타	30.5	19.5	12.8	12.8	27.5	0.0
학업 성적	상	3.8	3.8	3.8	5.3	10.3	0.0
	중	4.6	1.8	3.3	2.0	9.6	0.0
	하	5.8	4.9	2.5	1.5	12.2	0.0
경제적 수준	상	5.9	4.8	4.1	3.1	11.6	0.0
	중	3.4	1.8	2.5	2.6	7.4	0.0
	하	5.0	3.4	2.1	2.1	15.6	0.0

주) 2025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1) 양육·보호 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① 양육·보호 서비스 모니터링

가.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에 기반하여, 시설운영의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시설의 경우에는 역량강화 교육지원, 시설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제공한다(중앙사회서비스원, 2025).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는 23년 3월 계획을 수립하며 자문회의 및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으며, 크게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아동의 권리', '시설운영전반'의 영역을 평가한다(표 Ⅳ-6-23).

표 Ⅳ-6-23. 2025년도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

2025년도 평가지표	
A. 시설 및 환경	A1. (전체공통)시설 이용의 안전성
	A2. (생활공통)시설 이용의 편리성
	A3. (생활공통)시설 이용의 쾌적성
	A4. 기본시설의 적절성 및 충분성
	A5. 조리공간 위생상태 및 식품(식재료) 구입·보관의 적절성
B. 재정 및 조직운영	B1. (전체공통)사업비
	B2. (전체공통)후원금
	B3. (전체공통)직원 충원율
	B4. (전체공통)직원 근속률
	B5. (전체공통)직원 채용의 공정성
	B6. (전체공통)시설장 및 최고중간관리자(사무국장)의 전문성
	B7. (전체공통)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B8. (전체공통)직원복지
	B9. (전체공통)직원의 인권 및 안전보장
	B10. (전체공통)외부자원개발
	B11. (전체공통)사회적가치 실현 기여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C1.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C2. 초기 적응 프로그램
	C3. 맞춤형서비스 제공의 체계성과 전문성
	C4. 아동의 건강한 식사지원
	C5. 가족·연고자 연계 서비스
	C6. 초등생 이상 아동 멘토-멘티 결연
	C7. 지역사회연계
	C8.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C9. 일지 및 입·퇴소 관련 기록
	C10.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욕구 및 만족도 조사
	C11. 퇴소 및 보호기간 연장종료 아동 관리의 적절성
	C12. 특성화 사업 Ⅰ, Ⅱ
D. 아동의 권리	D1. (전체공통)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
	D2. (전체공통)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D3. (전체공통) 고충처리

2025년도 평가지표	
	D4. (생활공통) 서비스 정보제공
	D5. (생활공통) 서비스과정 참여 및 자기 결정권
	D6. 아동의 인권보호
	D7.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E. 시설운영 전반	E1. (전체공통) 시설운영의 전반적 수준 (시설장 인터뷰 및 현장평가 자료)
	E2. (전체공통) 서비스 질적 수준 (직원 인터뷰 및 현장평가 자료)
	E3. (전체공통) 자체평가의 정확성
	E4. (전체공통) 시설의 정보화 수준

* 출처: 중앙사회서비스원(2025).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 pp.17-18.

각 평가지표 영역의 배점을 살펴보면,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30점, 재정 및 조직운영 29점, 아동의 권리 20점, 시설 및 환경 10점, 시설운영전반 6점으로, 총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된다(표 Ⅳ-6-24).

표 Ⅳ-6-24.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 배점

2025년도 평가영역별 배점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A. 시설 및 환경	10
B. 재정 및 조직운영	29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35
D. 아동의 권리	20
E. 시설운영전반	6
총계	100

* 출처: 중앙사회서비스원(2025).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 p.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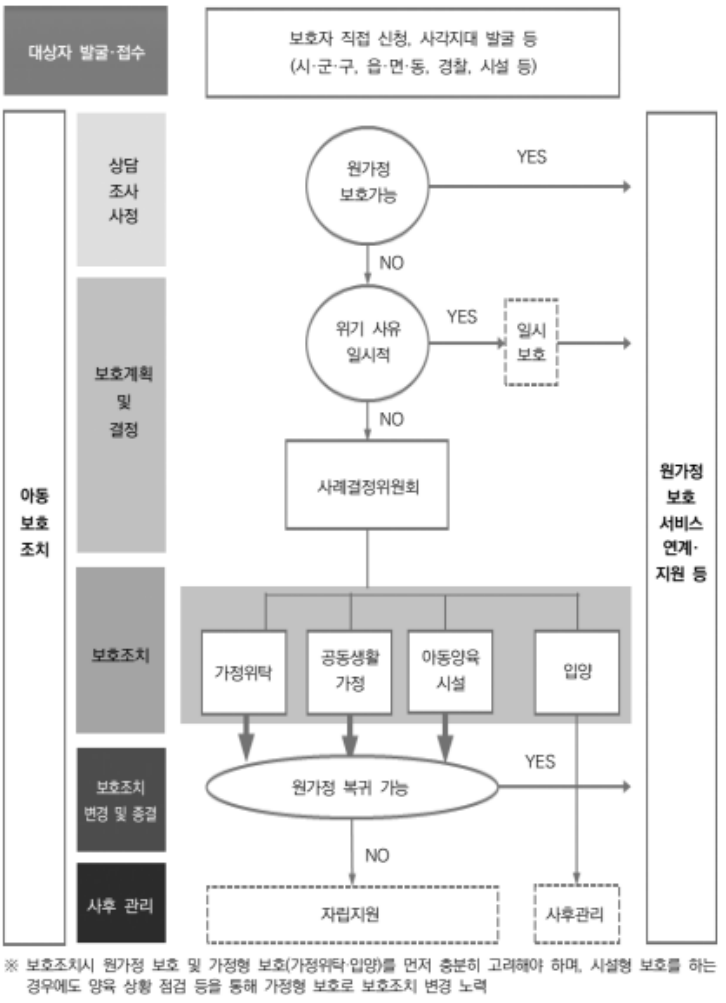
나. 아동보호체계

아동보호서비스의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법제화 되어있었으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현실에서 작동되고 있지 않았고, 아동을 시설 등에 보호 의뢰한 경우 민간기관 위주의 보호가 계속되고, 보호자의 의뢰가 없는 경우에는 아동의 상황 변경에 따라 보호조치의 변경 및 원가정 복귀 절차가 지자체 내에 부재하여

추진되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

2016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18.3. 시행),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2017년에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이 제정되고 지자체에 배포되었으며,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 국정과제에 피해아동과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 2019년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공적인 책임 강화가 첫 번째 핵심과제인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되었고, 2020년 10월부터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원가정 복귀 등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시·군·구에 배치하였으며, 이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지속적으로 추가 배치하여 현재 총 715명이 배치되어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

아동보호는 5개의 단계로 진행되는데, 먼저 '1단계:상담·조사·사정'에서는 접수상담, 일시보호, 욕구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다음으로 '2단계: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에서는 1단계 과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보호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세 번째, '3단계: 보호조치'에서는 원가정 외 보호기관과 협업하여 아동을 위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기관과 원가정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4단계: 보호조치 종결'에서는 목적 달성 여부 등을 점검하여 보호조치를 종결하고, 마지막으로 '5단계: 사후관리'에서는 아동의 가정방문 및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지도와 관리를 제공한다(그림 Ⅳ-6-7).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5). 2025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p.82

그림 Ⅳ-6-7. 아동보호 업무 흐름도

4) 소결

본 절에서는 2025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대분류의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을 살펴보았다. 우선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를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2024년 만13~19세의 아동·청소년의 약 85% 정도가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의 실태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과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차원에서 살펴보았는데, 우선 보육시설의 수는 2024년 총 27,387개였으며,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는 총 941,303명으로, 전체 보육시설의 수와 재원 아동 수는 2018년보다 크게 감소하였으나, 국·공립 보육시설 수와 국·공립 보육시설에 재원하는 아동의 수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현황을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2024년 정원 대비 현원 이용률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78.2%로 가장 높았으며, 가정 어린이집(77.0%). 부모협동 어린이집(68.9%), 민간 어린이집(68.2%), 직장 어린이집(63.1%),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58.6%),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50.4%) 순이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해 살펴보았다. 지역아동센터는 2023년 총 3,931개가 운영 중이었으며, 이용 인원은 총 104,033명이었다. 초등 고학년(42,150명), 초등 저학년(38,960)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중학생(17,277명), 고등학생(3,659명), 미취학 아동(1,886명), 탈학생(101명) 순이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에 총 1,264개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었으며, 2023년에는 98.2%가 다함께돌봄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개소 수는 총 355개, 이용 인원은 14,712명이었다.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100점 기준, 전체적인 만족도가 83.8점(5점 만점으로 4.19)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입양, 대안양육, 가정 밖(가출) 청소년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2024년 국내·외 입양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2명의 아동이 입양되었으며, 이 중 72.6%(154명)가 국내로, 27.4%(58명)가 국외로 입양되었다. 입양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영구적으로 가정을 제공하여 아동 등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2023년의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의 변화가 있었으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헤이그협약과 절차를 준수하는 체계로 개편하였고, 보다 구체적으로 입양 절차 측면에서 입양 절차의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

다음으로 대안양육 차원에서 보호대상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총 1,978명으로 2015년의 4,503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총 1,978명 중 83.3%(1,647명)가 빈곤·실직·학대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4년 전체 1,978명 중, 시설보호가 56.9%(1,126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가정위탁 35.7%(707명), 입양 6.2%(123명), 가정형 보호 1.1%(22명) 순이었다. 2023년 가정위탁 보호유형별 위탁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는 아동은 총 9,526명이었으며, 이 중 99.9%(9,513명)가 중장기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보호 유형으로는, 친인척의 일반가정 위탁아동이 87.5%(8,338명)로 가장 많았다. 2023년 아동복지시설 수는 총 450개, 입소아동은 10,228명으로 2019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2023년 공동생활가정 시설 수는 총 520개, 공동생활가정 시설을 이용하는 보호아동의 수는 2023년 총 2,578명이었다.

가출 여부에 대한,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가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0%로, 남학생의 가출 경험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중학생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가출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최근 1년 동안의 가출 경험 횟수를 살펴보면, 1회가 58.9%로 가장 많았으며, 2회가 22.5%로 그 뒤를 이었다. 다만 5회 이상도 6.0%로 나타나, 무시할 수 없는 수의 아동·청소년이 잦은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출한 경험이 아동·청소년의 최근 1년 동안의 가출 경험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가출을 한 기간을 살펴보면, 하루가 69.7%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2-3일 13.1%, 한 달 이상 7.9% 순으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의 아동·청소년이 한 달 이상의 긴 시간 동안 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한 달 이상 가출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 저연령층의 가출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가출한 주된 이유로는,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가출했다는 응답 비율이 61.3%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이 학업문제(14.1%),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7.8%), 기타(7.5%) 순이었다. 가출 후 지낸 장소로는 노숙이 48.7%로 가장 높았으며, 가출 전부터 알던 친구, 선·후배 집이

34.0%, 친·인척집이 13.5%, 24시간 상담이 12.9% 순이었다. 이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 후 노숙 등 비교적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초등학생의 노숙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저연령층 가출의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가출 후 기관 이용 경험으로는, 최근 1년 동안 가출 당시 위클래스 또는 위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6%로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쉼터(4.8%), 청소년상담복지센터(3.4%), 청소년전화1388(3.1%), 청소년수련관(2.7%) 순이었다. 2024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일시쉼터는 33개소, 단기쉼터는 66개소, 중장기쉼터는 38개소 운영되었다.

마지막으로 양육·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에 기반하여, 시설운영의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시설의 경우에는 역량강화 교육지원, 시설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제공한다(중앙사회서비스원, 2025). 평가지표는 크게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아동의 권리', '시설운영전반'의 영역으로 구분된다(중앙사회서비스원, 2025). 아동보호서비스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법제화되어있었으나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현실에서 작동되고 있지 않았고, 아동을 시설 등에 보호 의뢰한 경우 민간기관 위주의 보호가 계속되고, 보호자의 의뢰가 없는 경우에는 아동의 상황 변경에 따라 보호조치의 변경 및 원가정 복귀 절차가 지자체 내에 부재하여 추진되었으며, '1단계:상담·조사·사정', '2단계: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 '3단계: 보호조치', '4단계: 보호조치 종결', '5단계: 사후관리'의 과정으로 진행한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

아동·청소년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호하는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영역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영역이다. 본 절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여 다음과 같다.

첫째,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통하여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중의 가출 기간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한 달 이상 가출 경험률(가출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중 6.8%)이 결코 낮지 않고, 가출 후 노숙하는 비율(가출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 중 15.1%)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비율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생은 가출 시 더욱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가정 외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안전한 곳에 머무를 수 있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저연령층의 가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 및 그에 따른 세부적인 정책 대안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보호대상아동의 절반 이상(56.9%)이 시설보호를 받고 있다는 결과는 원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대안양육 형태에 대해서 보다 숙고하고 구체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모든 아동·청소년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대규모 단체생활 시설을 중심으로 한 대안양육 체계가 자리잡혀있다. 탈시설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으로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이 자랄 수 있는 실용성 있는 로드맵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입양의 목적이 보다 명확화되고 이에 따라 입양 절차가 개편되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강조되었는데, 법률에 근거하여 이러한 체계가 변화된 만큼, 실질적으로 본 목적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변경된 절차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모니터링 등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이러한 체계의 변화가 현실에 잘 반영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7.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Children with disabilities)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 클러스터 개요 및 주요 내용 요약

○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 클러스터 개요

- 이 절에서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음.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3조는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이 그들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을 촉진하며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장려하는 여건에서, 충분하고 품위있는 생활을 향유해야 함을 인정한다" 고 명시하고 있음. 국가는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대해 지원할 책무가 있음.
-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시스템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이러한 성장이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통합과 포용을 위한 교육으로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 클러스터의 주요 내용 요약

- 전체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에 2.2%에 도달함. 특수학교, 특수학급, 교원 수도 지속적으로 확충됨.
- 장애아통합어린이집도 증가하였고,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비율도 74.1%로 점진적으로 상승함.
- 장애 청소년의 졸업 후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 2025년 기준 취업률은 23.3%에 머물렀으며, 졸업생 10명 중 3명꼴(31.5%)로 진학도, 취학도 하지 못함.
- 장애아동의 학대피해는 대다수 중증장애아동(97.0%)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복학대(27.8%)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의 장애 감수성은 높은 편으로 함께 수업을 듣는 것에 대한 수용성은 91.5%로 나타나지만, 실제 장애를 가진 친구와 어울리는 게 편하게 여길 것이라는 응답은 83.1%로 낮아짐. 수용성은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보다 높은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중고등학교에서의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 분위기 등 때문인 것으로 보임. 실제 학교 환경이 포용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

1) 장애

(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① 특수교육 현황 및 특수교사 수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는 흐름 속에서도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은 2016년 1.3%, 2020년 1.6%, 2025년 2.2%로 늘어났다.

표 Ⅳ-7-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2013~2025년)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비율(%)	1.3	1.4	1.4	1.5	1.6	1.7	1.8	1.9	2.0	2.2

* 출처: 교육부(2025b). 202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3.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을 보면, 2025년은 특수학교 수가 196개교, 특수학급 수는 14,658개로 2024년에 비해 특수학교 수는 1개, 특수학급 수는 727개 증가하였다. 학생 수는 120,735명으로 2024년에 비해 5,125명 증가하였다. 교원 수는 2025년 28,445명으로 2024년에 비해 1,361명 증가하였다. 특수교육 학교, 학급, 학생, 교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으므로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즉,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의 학습권과 삶의 질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환경을 위한 교원의 업무 부담 완화, 보조교사 배치, 역량 강화 지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표 Ⅳ-7-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2019~2025년)

(단위: 교, 학급, 명)

연도	특수학교 수	특수학급 수	학생 수							교원수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계	
2019	177	11,105	532	5,989	41,091	18,462	21,502	5,382	92,958	20,773
2020	182	11,661	439	6,536	43,205	19,140	20,655	5,445	95,420	22,145
2021	187	12,042	369	7,197	44,814	20,212	20,169	5,393	98,154	23,494
2022	192	12,712	359	8,248	48,448	21,462	19,867	5,311	103,695	24,962

연도	특수학교 수	특수학급 수	학생 수							교원수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계	
2023	194	13,287	407	8,781	51,585	23,005	20,725	5,200	109,703	25,599
2024(A)	195	13,931	470	8,746	54,283	25,013	22,040	5,058	115,610	27,084
2025(B)	196	14,658	360	8222	56,725	27,188	23,326	4,914	120,735	28,445
B-A	1	727	-110	-524	2,442	2,175	1,286	-144	5,125	1,361

* 출처: 교육부(2025). 202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5.

② 장애아동 · 청소년 통합교육·보육비율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통합시설은 꾸준히 증가 확대되고 있다. 장애아전문시설보다 장애아통합시설의 확대가 더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아 전문시설은 2015년 175개소, 2020년 177개소, 2024년 178개소이고, 장애아통합시설은 2015년 899개소, 2020년 1,211개소, 2024년 1,718개소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아동 수 감소를 감안하면 더 급격한 증가라 할 수 있다. 장애아동 보육정책이 분리에서 통합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Ⅳ-7-3. 장애아전문·통합시설 현황(2015~2024년)

(단위: 개소)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074	1,088	1,124	1,177	1,276	1,388	1,495	1,570	1,637	1896
장애아전문시설	175	177	178	177	176	177	178	177	173	178
장애아통합시설	899	911	946	1,000	1,100	1,211	1,317	1,393	1,464	1,718

* 출처: 통계청 KOSIS(2025c). 특수보육어린이집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2&tblId=DT_15407_NN009&conn_path=I3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 원자료: 교육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학교 현장에서의 통합교육도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 비율은 감소, 일반학교 배치학생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은 25.9%, 일반학교 배치학생 비율은 74.1%(특수학급 57.9%, 일반학급 16.2%)였다. 인구감소에도 배치 학생 수도 함께 증가하

고 있다. 2025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 수는 31,295명, 일반학교 배치학생 수는 89,440명이었다. 통합의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물리적 통합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교육(integration education)에서 포용적 교육(inclusive education)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158]

표 Ⅳ-7-4.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2021~2025년)

(단위 : 명(%))

연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 수	일반학교 배치학생 수			전체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소계	
2021	27,288(27.8)	54,266(55.3)	16,600(16.9)	70,866(72.2)	98,154(100.0)
2022	28,233(27.2)	57,948(55.9)	17,514(16.9)	75,462(72.8)	103,695(100.0)
2023	29,236(26.7)	61,993(56.5)	18,474(16.8)	80,467(73.3)	109,703(100.0)
2024	30,390(26.3)	65,996(57.1)	19,254(16.6)	85,220(73.7)	115,610(100.0)
2025	31,295(25.9)	69,908(57.9)	19,532(16.2)	89,440(74.1)	120,735(100.0)

* 출처: 교육부(2025). 202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6.

③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학교는 통합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장애 청소년들의 졸업 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25년 기준 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진학률은 58.9%, 취업률은 23.3%, 비진학·미취업률은 31.5%였다.

진학률은 2021년에 52.5%에 비해 높아진 58.9%였다. 취업률은 2021년 10.7%에 비해 23.3%로 높아졌는데, 2021년과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이 어느 정도는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은 비진학·미취업률은 2021년 34.8%에서 2025년 31.5%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정규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아동·청소년기 교육정책을 넘어 청년기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촘촘한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58) UN장애인권리위원회(UNCRPD)의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및 일반논평 제4호(General Comment No. 4 on the right to inclusive education, CRPD/C/GC/4) 참고

표 Ⅳ-7-5.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2021~2025년)

(단위 : %(명))

연도	구분	졸업자(명)	진학률(명)	취업률(명)	비진학·미취업(명)
2021	특수학교	2,108	58.6 (1,235)	2.9 (61)	38.5 (812)
	특수학급	3,614	49.5 (1,789)	17.0 (617)	33.4 (1,208)
	일반학급	1,105	63.0 (696)	4.9 (54)	32.1 (355)
	계	6,827	54.5 (3,720)	10.7 (732)	34.8 (2,375)
2022	특수학교	2,167	60.3 (1,307)	2.7 (59)	37.0 (801)
	특수학급	3,497	51.3 (1,795)	16.0 (559)	32.7 (1,143)
	일반학급	1,098	63.6 (698)	4.8 (53)	31.6 (347)
	계	6,762	56.2 (3,800)	9.9 (671)	33.9 (2,291)
2023	특수학교	2,076	57.9 (1,202)	5.1 (45)	39.9 (829)
	특수학급	3,354	56.1 (1,883)	32.8 (483)	29.5 (988)
	일반학급	1,098	61.6 (676)	13.7 (58)	33.2 (364)
	계	6,528	57.6 (3,761)	21.2 (586)	33.4 (2,181)
2024	특수학교	2,032	59.9 (1,218)	7.1 (58)	37.2 (756)
	특수학급	3,263	57.5 (1,876)	37.1 (515)	26.7 (872)
	일반학급	952	65.7 (625)	15.3 (50)	29.1 (277)
	계	6,247	59.5 (3,719)	24.6 (623)	30.5 (1,905)
2025	특수학교	2,036	59.7 (1,216)	10.2 (84)	36.1 (736)
	특수학급	3,425	55.9 (1,916)	32.7 (494)	29.6 (1,015)
	일반학급	1,080	66.9 (722)	13.7 (49)	28.6 (309)
	계	6,541	58.9 (3,854)	23.3 (627)	31.5 (2,060)

* 출처: 교육부(2021, 2022, 2023, 2024, 2025b). 2021~202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9.

④ 장애 아동·청소년 학대 현황

2023년 한 해 동안 학대 피해가 확인된 장애 아동·청소년은 263명이었다. 피해 아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남자가 59.7%로 여자 40.3%에 비해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13~15세가 30.4%로 주요한 피해가 집중되는 특성을 보였다.

표 Ⅳ-7-6. 학대피해 장애아동 성별 및 연령(2023년)

(단위: 명/%)

구 분	0~2세		3~6세		7~9세		10~12세		13~15세		16~17세		계	
남	1	0.4	27	10.3	28	10.6	36	13.7	45	17.1	20	7.6	157	59.7
여	2	0.8	8	3.0	14	5.3	19	7.2	35	13.3	28	10.6	106	40.3
계	3	1.1	35	13.3	42	16.0	55	20.9	80	30.4	48	18.3	263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4). 2023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p.144.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 아동이 전체 피해의 58.2%를 차지했으며, 자폐성 장애 아동이 17.9%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발달장애 아동이 학대 피해에 취약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을 2가지로 나누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경증장애인)'으로 살펴보면, 장애의 정도에 있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97.0%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장애아동의 학대 유형은 방임이 2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신체적 학대도 26.2%로 나타났다. 성적 학대는 17.5%로 높게 나타나 2024년에 비해 증가되어 그 사유와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표 Ⅳ-7-7. 학대피해 장애아동 장애유형(2023년)

(단위: 건/%)

장애유형	건수	비율
지체장애	6	2.3
뇌병변장애	12	4.6
시각장애	3	1.1
청각장애	6	2.3
언어장애	5	1.9
지적장애	153	58.2
자폐성장애	47	17.9
정신장애	1	0.4
미등록	30	11.4
계	263	100.0

장애정도	건수	비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226	97.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경증장애인)	7	3.0
계	233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4). 2023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pp.145-146.

표 Ⅳ-7-8. 장애아동 학대유형(2023년)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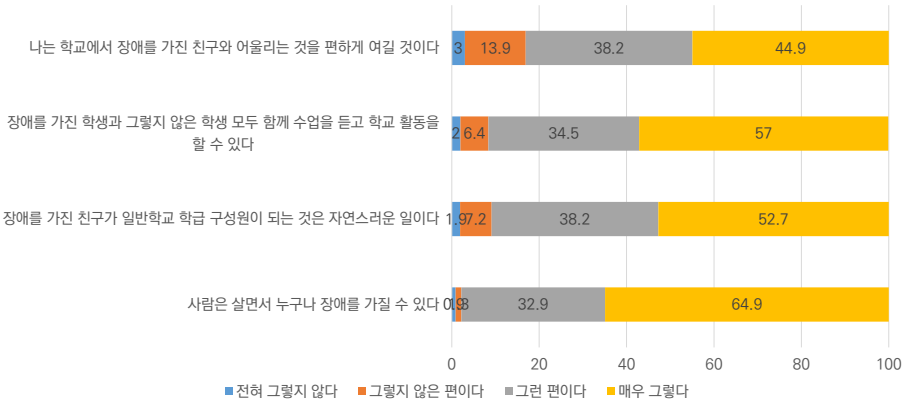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69	26.2
정서적 학대	50	19.0
성적 학대	46	17.5
경제적 착취	11	4.2
방임	14	5.3
중복 학대	73	27.8
계	249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4). 2023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p.153.

장애아동의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2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신체적 학대도 26.2%로 나타났다. 성적 학대는 17.5%로 높게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 19%, 경제적 착취 4.2%, 방임 5.3%로 나타났다.

⑤ 아동·청소년의 장애에 대한 인식(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네 가지 문항으로 아동·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각 문항과 결과를 동의비율('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로 보면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97.8%, '장애를 가진 친구가 일반학교 학급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는 90.9%, '장애를 가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 함께 수업을 듣고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91.5%, '나는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편하게 여길 것이다'는 83.1%로 나타났다.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10명에 9명 이상으로 매우 수용적이지만, 실제 장애를 가진 친구와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비율을 보였다.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장애에 대해 수용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장애를 가진 청소년과 교류 기회가 주어지면 현재보다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저자 작성 (2025「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도식화하였음)

그림 Ⅳ-7-1. 아동·청소년의 장애에 대한 인식(2025년)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에 대한 동의비율('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은 97.8%이었다.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성별로는 남학생 96.8% 여학생 99%,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98% 중학교 97.3% 고등학교 98.3% 등으로 유사하였다.

표 Ⅳ-7-9. 장애인 인권 인식 및 태도_1)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2025		3.62(0.56)	0.9	1.3	32.9	64.9	100.0(8,656)	
성별	남학생	3.55(0.61)	1.5	1.7	37.3	59.5	100.0(4,450)	148.535***
	여학생	3.69(0.49)	0.2	0.8	28.4	70.6	100.0(4,205)	
학교급	초등학교	3.72(0.53)	0.8	1.2	23.3	74.7	100.0(2,896)	
	중학교	3.56(0.58)	0.9	1.7	37.4	59.9	100.0(2,922)	197.082***
	고등학교	3.57(0.56)	0.9	0.8	38.2	60.1	100.0(2,838)	
지역 규모	대도시	3.63(0.56)	1.0	1.1	32.0	65.9	100.0(3,410)	
	중소도시	3.61(0.56)	0.8	1.3	33.7	64.2	100.0(4,201)	3.754
	읍면지역	3.61(0.57)	1.0	1.4	32.9	64.7	100.0(1,046)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62(0.55)	0.8	1.2	32.8	65.2	100.0(7,764)	35.980***
	한부모가정	3.60(0.56)	0.5	2.1	34.4	63.1	100.0(678)	
	조손가정	3.63(0.67)	3.2	0.8	26.3	69.7	100.0(76)	
	기타	3.38(0.79)	4.9	4.0	39.5	51.6	100.0(88)	
주관적 학업 성적	상	3.68(0.54)	0.9	1.2	27.1	70.8	100.0(3,225)	89.449***
	중	3.60(0.56)	0.8	1.1	35.3	62.8	100.0(3,526)	
	하	3.55(0.58)	1.0	1.6	38.3	59.0	100.0(1,863)	
주관적 경제 수준	상	3.64(0.55)	0.8	1.2	30.9	67.1	100.0(5,218)	34.234***
	중	3.59(0.57)	0.9	1.1	35.7	62.2	100.0(2,743)	
	하	3.54(0.63)	1.8	2.0	36.6	59.6	100.0(647)	

*p<.05, **p<.01, ***p<.001
주) 2022년은 미승인통계로 측정되었으며, 2023년부터 변경승인을 통해 승인통계로 측정됨.

'장애를 가진 친구가 일반학교 학급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에 대한 동의비율('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은 90.9%이었다.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 88.4% 여학생 93.7%,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95.4% 중학교 90.1% 고등학교 87.3% 등이었다. 10명 중 9명꼴로 동의하고 있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등학교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이를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인식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 구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통합과 포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 잘 정착된다면 이 수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표 Ⅳ-7-10. 장애인 인권 인식 및 태도_2) 장애를 가진 친구가 일반학교 학급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2025		3.42(0.71)	1.9	7.2	38.2	52.7	100.0(8,647)	
성별	남학생	3.34(0.76)	2.8	8.8	39.6	48.8	100.0(4,442)	107.353***
	여학생	3.50(0.64)	0.9	5.4	36.8	56.9	100.0(4,205)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학교급	초등학교	3.62(0.60)	0.8	3.8	27.9	67.5	100.0(2,893)	415.760***
	중학교	3.35(0.72)	2.3	7.7	42.6	47.5	100.0(2,919)	
	고등학교	3.28(0.75)	2.6	10.1	44.3	43.0	100.0(2,836)	
지역 규모	대도시	3.39(0.73)	2.5	7.7	38.2	51.7	100.0(3,406)	15.915*
	중소도시	3.44(0.69)	1.6	6.7	37.9	53.9	100.0(4,198)	
	읍면지역	3.41(0.69)	1.4	7.5	39.8	51.3	100.0(1,04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42(0.70)	1.8	7.2	38.0	53.1	100.0(7,755)	18.929*
	한부모가정	3.38(0.72)	2.2	7.2	41.3	49.2	100.0(678)	
	조손가정	3.44(0.76)	3.2	6.3	33.3	57.2	100.0(76)	
	기타	3.20(0.89)	7.4	9.4	39.0	44.2	100.0(88)	
주관적 학업 성적	상	3.48(0.71)	2.1	6.7	32.6	58.6	100.0(3,225)	122.024***
	중	3.42(0.67)	1.1	6.6	40.8	51.4	100.0(3,518)	
	하	3.30(0.76)	3.0	9.2	42.8	45.1	100.0(1,862)	
주관적 경제 수준	상	3.44(0.71)	1.9	7.0	35.9	55.2	100.0(5,211)	56.194***
	중	3.40(0.69)	1.6	6.8	41.6	50.0	100.0(2,742)	
	하	3.27(0.79)	3.7	9.9	41.7	44.6	100.0(647)	

*p<.05, **p<.01, ***p<.001
주) 2022년은 미승인통계로 측정되었으며, 2023년부터 변경승인을 통해 승인통계로 측정됨.

'장애를 가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 함께 수업을 듣고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다'에 대한 동의비율('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은 91.5%이었다.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 90% 여학생 93.1%,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96.7% 중학교 90.7% 고등학교 87.2% 등이었다. 이 문항 역시 10명 중 9명꼴로 동의하고 있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학교급별로 응답률이 다를 것은 실제 교육 현장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표 Ⅳ-7-11. 장애인 인권 인식 및 태도_3) 장애를 가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 함께 수업을 듣고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2025		3.47(0.71)	2.0	6.4	34.5	57.0	100.0(8,649)	
성별	남학생	3.41(0.74)	2.8	7.1	36.6	53.4	100.0(4,444)	64.175***
	여학생	3.53(0.66)	1.2	5.7	32.3	60.8	100.0(4,204)	
학교급	초등학교	3.72(0.55)	0.8	2.5	20.3	76.4	100.0(2,894)	716.213***
	중학교	3.39(0.72)	2.4	6.9	40.4	50.3	100.0(2,919)	
	고등학교	3.28(0.76)	2.8	10.0	43.1	44.1	100.0(2,836)	
지역 규모	대도시	3.44(0.73)	2.5	7.1	34.2	56.2	100.0(3,404)	19.545**
	중소도시	3.49(0.68)	1.7	5.8	34.1	58.5	100.0(4,199)	
	읍면지역	3.43(0.70)	1.8	6.9	37.6	53.7	100.0(1,04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47(0.70)	1.9	6.4	34.4	57.4	100.0(7,757)	25.251**
	한부모가정	3.40(0.73)	2.4	7.1	38.2	52.2	100.0(678)	
	조손가정	3.56(0.75)	2.4	8.0	20.4	69.2	100.0(76)	
	기타	3.35(0.87)	6.3	7.3	31.3	55.1	100.0(88)	
주관적 학업 성적	상	3.52(0.72)	2.3	6.3	28.0	63.3	100.0(3,223)	157.741***
	중	3.48(0.66)	1.3	5.4	37.1	56.2	100.0(3,522)	
	하	3.33(0.76)	2.9	8.8	40.5	47.8	100.0(1,862)	
주관적 경제 수준	상	3.50(0.70)	1.9	6.4	31.3	60.4	100.0(5,213)	85.098***
	중	3.43(0.69)	1.8	5.9	39.5	52.8	100.0(2,740)	
	하	3.32(0.80)	4.1	8.8	38.0	49.1	100.0(647)	

*p<.05, **p<.01, ***p<.001

주) 2022년은 미승인통계로 측정되었으며, 2023년부터 변경승인을 통해 승인통계로 측정됨.

‘나는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편하게 여길 것이다’에 대한 동의비율(‘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은 83.1%이었다.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지만 가족유형의 유의도는 높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학생 82.2% 여학생 83.9%,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91.2% 중학교 79.4% 고등학교 78.5% 등이었다. 초등학생은 10명 중 9명꼴, 중고등학교는 10명 중 8명꼴이었다. 동의도가 낮아지는 것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대학입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일부 반영하고 있어 보인다. 학교생활에서 장애

를 가진 아동·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융화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포용적 교육환경과 협력적 교실 문화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표 Ⅳ-7-12. 장애인 인권 인식 및 태도_4) 나는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편하게 여길 것이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2025		3.25(0.80)	3.0	13.9	38.2	44.9	100.0(8,647)	
성별	남학생	3.22(0.82)	3.6	14.2	38.8	43.4	100.0(4,441)	14.941**
	여학생	3.28(0.79)	2.5	13.6	37.4	46.5	100.0(4,206)	
학교급	초등학교	3.51(0.70)	1.4	7.5	30.1	61.1	100.0(2,896)	
	중학교	3.13(0.83)	4.1	16.5	42.0	37.4	100.0(2,918)	500.674***
	고등학교	3.11(0.82)	3.6	17.9	42.4	36.1	100.0(2,833)	
지역 규모	대도시	3.24(0.82)	3.6	14.0	37.5	44.8	100.0(3,402)	
	중소도시	3.26(0.79)	2.7	13.5	38.5	45.3	100.0(4,200)	10.139
	읍면지역	3.23(0.80)	2.5	15.2	38.9	43.3	100.0(1,04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25(0.80)	2.9	14.0	37.8	45.3	100.0(7,755)	
	한부모가정	3.19(0.81)	3.8	13.8	41.9	40.5	100.0(678)	17.123*
	조손가정	3.38(0.76)	2.4	9.3	36.1	52.2	100.0(76)	
	기타	3.14(0.87)	7.1	10.2	44.0	38.7	100.0(88)	
주관적 학업 성적	상	3.30(0.83)	3.3	13.7	32.6	50.4	100.0(3,225)	
	중	3.26(0.77)	2.5	12.9	41.0	43.6	100.0(3,522)	101.656***
	하	3.15(0.81)	3.6	16.1	42.5	37.8	100.0(1,858)	
주관적 경제 수준	상	3.29(0.81)	3.1	13.2	35.8	47.9	100.0(5,213)	
	중	3.22(0.79)	2.7	14.2	41.8	41.3	100.0(2,741)	61.057***
	하	3.10(0.84)	4.3	17.9	41.4	36.4	100.0(645)	

*p<.05, **p<.01, ***p<.001
주) 2022년은 미승인통계로 측정되었으며, 2023년부터 변경승인을 통해 승인통계로 측정됨.

2) 소결

이 절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클러스터가 변경되면서 신설된 클러스터이다. 여기서는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이 클러스터에서 주요하게 다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의 양적 성적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숙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수교육대상자 비율과 관련 인프라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지난 10년간 약 2배 늘어나는 등 통합교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학생 수의 증가에도 교원 수의 증가가 더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실제 교실에서의 포용을 이루이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통합교육이 포용교육(inclusive education)으로 나아가도록 질적 성숙을 이룰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의 학교 졸업 후 사회로의 이행(transition)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졸업생의 취업률은 23.3%에 머물렀으며, 10명 중 3명(31.5%)은 진학도 취업도 하지 못한 상태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특수학교 졸업생의 취업률(10.2%)이 특수학급 졸업생(32.7%)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었다.

셋째, 장애아동은 여전히 학대와 폭력의 위험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학대피해 아동의 대다수(97.0%)가 중증 장애를 가졌으며,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아동에게 피해가 집중되었다. 신체적·성적 학대뿐 아니라,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중복학대'(27.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피해의 심각성과 복합성을 드러냈다.

넷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장애 인권 인식은 높은 편이었으나, 실제 환경에서의 실천과는 약간의 괴리가 나타났다. 통합교육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장애를 가진 친구와 편하게 어울릴 것'이라는 관계적 수용성은 83.1%로 다소 낮아졌다. 이러한 심리적 간극은 입시 경쟁이 심화되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더욱 벌어져, 경쟁 중심의 교육 환경이 포용적 또래 문화 형성을 저해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이 절에서 정리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 정책은 통합(integration)교육을 넘어 포용(inclusion)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위한 인프라는 지난 수년간 성장해왔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의 물리적 통합이 통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학생 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원 충원율, 특수교육 보조 인력의 부족 등은 교육의 질적 저하를 만들어낼 수 있다. 포용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교실에서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원에 대한 지원과 보조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해야 한다.

둘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transition)을 지원하는 교육과 훈련이 뒤따라야 한다. 학교 문을 나선 장애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는 현실은 이행기 절벽(transition cliff)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교육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진로·직업 교육을 강화하고, 졸업 후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는 촘촘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진정한 통합과 포용정책이 될 수 있다.

셋째, 교실 내에서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관계적 수용성'을 높이는 포용적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청소년 10명 중 9명이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과 교실 내에서 함께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실제 편하게 어울리는 실제적 관계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입시 경쟁이 심화되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덜 자연스러워 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편견 때문인지 아니면 어울리지 못하게 만드는 학습 환경 때문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교생활에서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융화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포용적 교육환경과 협력적 교실 문화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것은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성인기 직장 내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어울리는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8. 건강(health)

건강 클러스터 개요 및 주요 내용 요약

○ 건강 클러스터 개요

- 이 절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살펴보았음. 아동권리협약 제6조는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24조는 구체적으로 아동의 건강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대해 규정함.
- 여기서는 아동·청소년들이 어떠한 생존 및 발달의 상황에 있는지,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황에 있는지를 살펴보았음.

○ 건강 클러스터의 주요 내용 요약

- 아동·청소년 10명 중 8명꼴로(범죄 87.4%, 교통사고 81.8%) 거주지역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20세 이하 범죄율은 2024년 1.3%로 증가하였고, 디지털 기반의 지능범죄 피해건수가 급증하여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음.
-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수면시간이 급감하여 고등학생은 6.1시간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 이런 패턴이 유지되고 있음. 청소년 2명 중 1명꼴(47.0%)로 수면부족을 호소함.
- 청소년 4명 중 1명꼴로 지난 1년 간 죽고 싶다는 생각(27.0%)을 해본 적이 있고, 10명 중 1명꼴(9.9%)로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음. 5명 중 1명꼴(20.1%)로는 외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
- 청소년 10명 중 1명은 고민을 나눌 상대가 없다(8.9%)고 응답하였고, 위기 시 도움받을 사람이 없다(9.0%)는 청소년도 비슷한 비율로 존재함.
- 정서적 문제는 여성학, 고학년, 저소득층 학생에게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10대 자살률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됨.

1) 생존 및 발달

(1) 사망률

① 영아 · 아동 · 청소년 사망률

연도별 영아사망률은 신생아 사망률, 신생아 후기 사망률로 나누어볼 수 있다. 2023년 기준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2.5명이었으며, 2018년 2.8명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2022년 2.3명에 비해서는 다시 증가하였다. 2023년 기준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당 1.3명, 신생아 후기사망률은 1.2명이었다.

표 Ⅳ-8-1. 연도별 영아사망률(2018~2023년)

(단위 : 명/1,000명 당)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신생아 사망률	1.8	1.4	1.7	1.6	1.5	1.5	1.4	1.1	1.3	1.3	1.2	1.3	1.3	1.1	1.2	1.4	1.1	1.3
신생아 후기사망률	1.3	1.1	1.2	1.4	1.0	1.2	1.4	1.0	1.2	1.3	1.0	1.2	1.2	0.9	1.1	1.3	1.1	1.2
영아 사망률	3.2	2.5	2.8	3.0	2.4	2.7	2.8	2.2	2.5	2.6	2.2	2.4	2.5	2.0	2.3	2.7	2.2	2.5

* 출처: 통계청 KOSIS(2018~2023). 사망원인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8&vw_cd=MT_ZTITLE&list_id=F_27&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2&path=%252Fcommon%252Fmeta_onedepth.jsp에서 2024년 10월 5일 인출.
* 원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제101054호).

* 주: 1) 신생아 사망률: 생후 28일 미만의 영아 사망률 *(당해연도 28일 미만 사망아수/당해연도 연간출생아수)×1,000.*
신생아 후기 사망률: 생후 4주 이상 1년 이내 사망률 *(당해연도 28일 미만 사망아수/당해연도 연간출생아수)×1,000.*
영아사망률: 생후 1년 이내 사망률 *(당해연도 0세 사망아수/당해연도 연간출생아수)×1,000.*
2) 통계청으로 통합된 이후 첫 조사(2012년 실시, 2009~2011년 대상) 이후 매년 작성

연도별 10만 명당 사망률을 0세부터 19세까지 살펴보면, 2023년 기준 0세 10만 명당 사망률은 239.9명, 1~4세 13.5명, 5~9세 7.2명, 10~14세 10.5명, 15~19세 24.0명이었다. 사망률은 0세에서 5~9세까지 감소하다가 10~14세부터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다만, 사망률은 연령대에 따라 시기별 추이가 달랐는데 2018년 이후 0세 사망률은 효과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15~19세 사망률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2.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2018~2023년)

(단위: 명/10만 명당 사망자 수)

연령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사망자 수	사망률
0세	931	280.7	822	268.3	674	240.6	626	241.2	565	226.8	564	239.9
1~4세	220	13.0	233	14.5	185	12.5	151	11.2	201	16.3	155	13.5
5~9세	177	7.6	178	7.7	142	6.2	136	6.0	183	8.4	148	7.2
10~14세	221	9.5	184	8.0	203	8.8	237	10.1	246	10.4	245	10.5
15~19세	620	21.6	610	22.4	563	22.1	536	22.4	550	23.5	558	24.0
20~24세	1,144	33.3	1,126	33.6	1,118	34.2	1,138	35.8	1,073	35.5	1,039	36.3

* 출처: 통계청 KOSIS(2018~2023). 사망원인통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7&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4년 10월 5일 인출.

* 주: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② 사고 사망률

0~19세까지의 사고 사망률을 10만 명당 사망률 기준으로 보면, 0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증가하였다가 2023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4세, 15~19세까지는 2018년 이래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10~14세는 2018년 3.7명에서 2023년 5.2명으로 증가하였고, 15~19세는 2018년 13.9명에서 2023년 16.4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Ⅳ-8-3. 연령별(0~24세) 사고 사망률(2018~2023년)

(단위 : 명/10만 명당)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0세	12.7	16.6	20.0	21.2	21.3	19.1
1~4세	4.0	4.7	3.5	4.1	3.4	4.4
5~9세	2.4	2.9	2.4	1.8	1.9	2.0
10~14세	3.7	3.4	3.7	4.7	4.9	5.2
15~19세	13.9	14.4	15.6	15.4	15.2	16.4
20~24세	22.6	23.6	24.8	25.9	24.7	24.7

* 출처: 통계청 KOSIS(2018~2023).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4년 10월 5일 인출.

* 주: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2) 사망원인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을 보면 자살의 증가가 가장 눈에 띈다. 2023년 기준 10~14세는 10만 명당 3.6명, 15~19세는 12.3명으로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표 Ⅳ-8-4.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2019~2023년)

(단위 : 명/10만 명당)

구분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자살	타살
2019	0세	1.0	1.0	0.7	-	-	-	4.9
	1~4세	1.2	0.6	0.6	0.1	-	-	1.0
	5~9세	0.9	0.3	0.3	0.0	0.0	0.1	0.9
	10~14세	0.4	0.3	0.3	-	-	2.1	0.4
	15~19세	3.0	0.4	0.6	0.1	0.1	8.5	0.3
	20~24세	3.9	0.3	0.2	0.1	0.2	17.8	0.4
2020	0세	0.4	1.4	0.4	-	-	-	6.1
	1~4세	0.6	0.9	0.5	0.3	0.1	-	0.7
	5~9세	0.7	0.3	0.2	0.3	-	0.1	0.6
	10~14세	0.2	0.3	0.2	0.2	0.1	2.1	0.3
	15~19세	3.7	0.2	0.5	0.0	0.1	10.4	0.2
	20~24세	3.0	0.3	0.4	-	0.1	19.6	0.6
2021	0세	0.8	1.5	1.5	-	-	-	5.4
	1~4세	0.6	1.0	0.4	0.1	0.1	-	1.3
	5~9세	0.6	0.2	0.2	0.2	-	0.0	0.4
	10~14세	0.5	0.1	0.2	0.1	-	3.2	0.3
	15~19세	3.2	0.2	0.5	-	0.1	11.0	0.1
	20~24세	3.4	0.5	0.4	0.0	0.2	20.4	0.3
2022	0세	0.4	1.2	-	-	-	-	4.0
	1~4세	0.5	0.6	0.7	-	-	-	0.7
	5~9세	0.4	0.3	0.3	0.1	-	-	0.5
	10~14세	0.4	0.1	0.3	0.0	0.0	3.3	0.3
	15~19세	2.6	0.0	0.3	0.0	0.1	11.1	0.3
	20~24세	3.4	0.3	0.5	0.0	0.1	18.1	0.4
2023	0세	0.9	-	-	-	-	-	4.0
	1~4세	0.6	0.8	0.9	-	0.1	-	0.9
	5~9세	0.3	0.2	0.4	0.0	-	-	0.5
	10~14세	0.3	0.1	0.2	-	-	3.6	0.3
	15~19세	2.4	-	0.5	0.0	0.1	12.3	0.4
	20~24세	2.4	0.3	0.5	0.1	0.2	19.6	0.3

* 출처: 통계청 KOSIS(2019~2023).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4년 10월 5일 인출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서 2레벨 선택).

* 주: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2) 운수사고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사고를 의미하며, 육상, 수상, 항공의 교통 및 비교통사고(논밭의 트랙터 사고 등)를 포함, 반면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를 의미
3) 추락사고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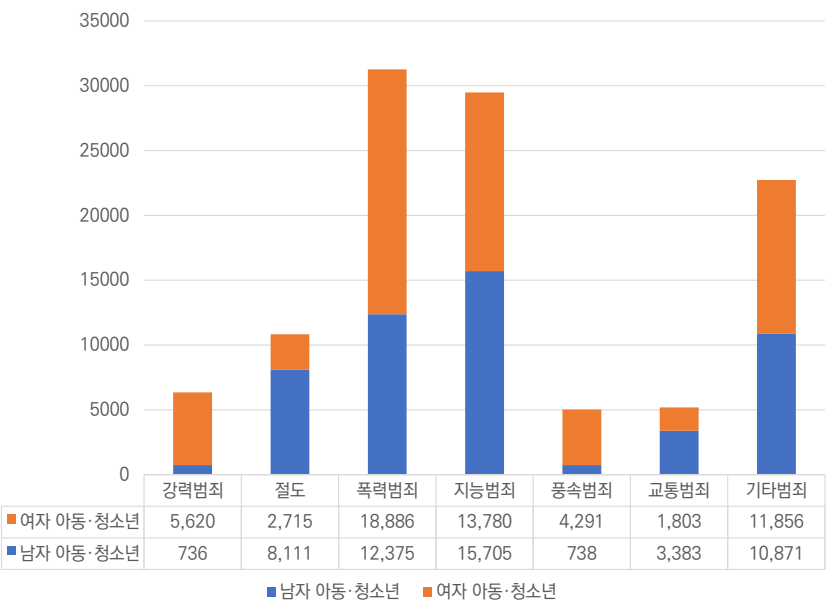
(2) 안전에 대한 인식률

① 범죄 피해율

2024년 기준, 20세 이하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은 약 1.3%로 산출되었다. 이는 2020년 1.0%, 2021년 0.9%, 2022.0.7%, 2023년 0.6%에 비해 높아진 수치이다. 전체 피해 건수는 110,870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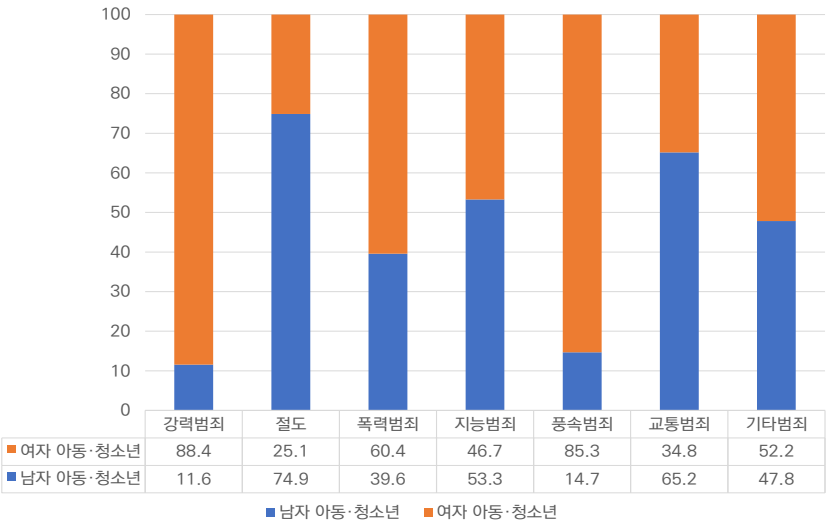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별에 따른 피해 양상이 달랐다. 강력범죄는 전체 피해자 중 여성이 88.4%를 차지하여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폭력 범죄도 여성이 60.4%로 남성 피해자에 비해 많았다. 반면, 절도 범죄에서는 남성 피해자가 74.9%로 훨씬 많았고, 교통범죄도 65.2%로 남성 피해자가 더 많았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젠더 기반 폭력과 범죄 예방에 있어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위: 건)



	강력범죄	절도	폭력범죄	지능범죄	풍속범죄	교통범죄	기타범죄
여자 아동·청소년	5,620	2,715	18,886	13,780	4,291	1,803	11,856
남자 아동·청소년	736	8,111	12,375	15,705	738	3,383	10,871

(단위: 비율)



* 출처: 저자 작성 (경찰청(2025). 2024 경찰청범죄통계. pp.468-469. 자료를 활용하여 도식화하였음)

그림 Ⅳ-8-1.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범죄 유형별 건수, 성별 비율, 2024)

표 Ⅳ-8-5.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2020~2024년)

(단위 : 건, %)

구분		남자 아동·청소년		여자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전체	
		피해 건수	비율	피해 건수	비율	피해 건수	비율
2020	강력범죄	478	8.1	5,400	91.9	5,878	100.0
	절도	7,060	72.2	2,717	27.8	9,777	100.0
	폭력범죄	13,481	68.3	6,262	31.7	19,743	100.0
	지능범죄	17,428	58.0	12,609	42.0	30,037	100.0
	풍속범죄	141	5.1	2,619	94.9	2,760	100.0
	교통범죄	9,352	66.9	4,628	33.1	13,980	100.0
	기타범죄	5,551	45.5	6,645	54.5	12,196	100.0
	계	53,491	56.7	40,880	43.3	94,371	100.0
	피해율	53,491/4,847,451(1.1)		40,880/4,554,063(0.9)		94,371/9,401,514(1.0)	
2021	강력범죄	437	7.7	5,206	92.3	5,643	100.0
	절도	5,705	71.3	2,302	28.7	8,007	100.0
	폭력범죄	11,152	67.9	5,275	32.1	16,427	100.0
	지능범죄	12,175	54.1	10,341	45.9	22,516	100.0
	풍속범죄	421	11.7	3,168	88.3	3,589	100.0

구분		남자 아동·청소년		여자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전체	
		피해 건수	비율	피해 건수	비율	피해 건수	비율
	교통범죄	7,618	66.8	3,788	33.1	11,406	100.0
	기타범죄	8,116	47.7	8,906	52.3	17,022	100.0
	계	51,919	53.9	58,951	46.1	110,870	100.0
	피해율	45,624/4,649,020(1.0)		38,986/4,378,594(0.9)		84,610/9,027,614(0.9)	
2022	강력범죄	263	7.4	3,292	92.6	3,555	100.0
	절도	4,027	65.9	2,081	34.1	6,108	100.0
	폭력범죄	8,498	69.8	3,677	30.2	12,175	100.0
	지능범죄	14,169	59.0	9,848	41.0	24,017	100.0
	풍속범죄	941	28.1	2,405	71.9	3,346	100.0
	교통범죄	1,971	63.5	1,132	36.5	3,103	100.0
	기타범죄	2,020	37.1	3,419	62.9	5,439	100.0
	계	31,889	55.2	25,854	44.8	57,743	100.0
	피해율	31,889/4,490,755(0.7)		25,854/4,238,002(0.6)		57,743/8,728,757(0.7)	
2023	강력범죄	298	9.1	2,991	90.9	3,289	100.0
	절도	4,098	65.6	2,149	34.4	6,247	100.0
	폭력범죄	4,188	54.8	3,450	45.2	7,638	100.0
	지능범죄	12,918	56.6	9,904	43.4	22,822	100.0
	풍속범죄	842	27.7	2,197	72.3	3,039	100.0
	교통범죄	1,499	65.2	799	34.8	2,298	100.0
	기타범죄	2,128	38.4	3,408	61.6	5,536	100.0
	계	25,971	51.1	24,898	48.9	50,869	100.0
	피해율	25,971/4,355,810(0.6)		24,898/4,119,957(0.6)		50,869/8,475,767(0.6)	
2024	강력범죄	736	11.6	5,620	88.4	6,356	100.0
	절도	8,111	74.9	2,715	25.1	10,826	100.0
	폭력범죄	12,375	39.6	18,886	60.4	31,261	100.0
	지능범죄	15,705	53.3	13,780	46.7	29,485	100.0
	풍속범죄	738	14.7	4,291	85.3	5,029	100.0
	교통범죄	3,383	65.2	1,803	34.8	5,186	100.0
	기타범죄	10,871	47.8	11,856	52.2	22,727	100.0
	계	51,919	46.8	58,951	53.2	110,870	100.0
	피해율	51,919/4,226,639(1.2)		58,951/4,004,588(1.5)		110,870/8,231,227(1.3)	

* 출처: 경찰청(2020). 2020 경찰범죄통계. pp.466-467.
경찰청(2021). 2021 경찰범죄통계. pp.474-475.
경찰청(2022). 2022 경찰범죄통계. pp.474-475.
경찰청(2024). 2023 경찰청범죄통계. pp.476-477.
경찰청(2025). 2024 경찰청범죄통계. pp.468-469.
행정안전부(2025). 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 주: 1) 피해율: 전체, 성별에 따른 전체 피해 건수/해당연도 만 20세 이하 인구*100
(피해자 연령: 만 나이를 적용하여 산정)
2) 강력범죄: 살인미·기수, 강도, 강간 등
3) 폭력범죄: 상해, 폭행, 협박 등
4) 지능범죄: 통화, 문서·인장, 사기, 횡령 등
5) 전체인구: 2024년 20세 이하 청소년 총 8,231,227명(남:4,226,639명/여:4,004,588명)

②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 (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지역사회 안전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2025년 조사 결과,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87.4%였다('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 이러한 인식은 지난 10년 간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2020년 이래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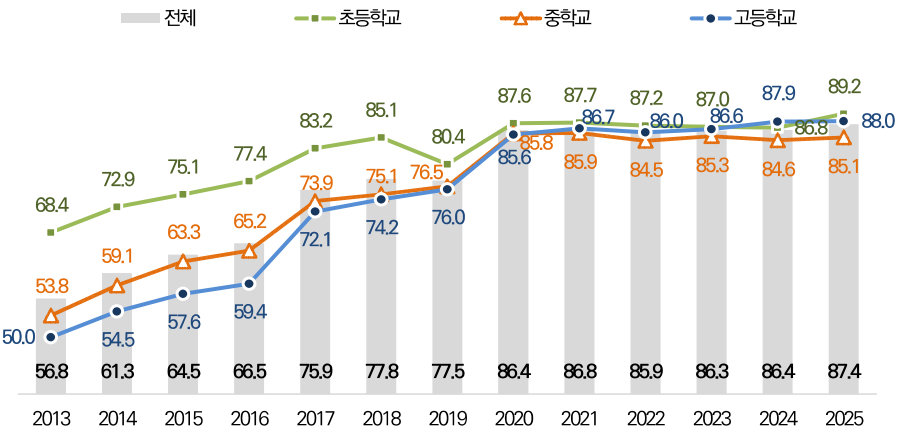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89.2%, 여학생이 85.6%로 성별 차이가 있었다. 경제적 수준으로 보면 '상'인 집단이 89%인 것에 비해, '하'인 집단은 77.5%로 나타나 소득 계층 간 동네 범죄로부터의 안전하다는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6.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전체		3.20(0.71)	2.2	10.3	53.0	34.4	100.0(8,739)
성별	남학생	3.29(0.73)	2.8	8.1	46.6	42.6	100.0(4,496)
	여학생	3.10(0.66)	1.7	12.7	59.9	25.7	100.0(4,243)
학교급	초등학교	3.30(0.72)	2.5	8.3	46.1	43.1	100.0(2,904)
	중학교	3.13(0.71)	2.4	12.5	55.3	29.8	100.0(2,952)
	고등학교	3.16(0.67)	1.8	10.2	57.7	30.3	100.0(2,883)
지역 규모	대도시	3.21(0.72)	2.3	10.6	51.1	36.0	100.0(3,446)
	중소도시	3.20(0.69)	2.1	9.7	54.3	33.8	100.0(4,230)
	읍면지역	3.15(0.71)	2.4	11.9	54.1	31.6	100.0(1,06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20(0.70)	2.1	9.9	53.5	34.5	100.0(7,832)
	한부모가정	3.12(0.73)	2.5	13.8	52.3	31.4	100.0(682)
	조손가정	3.15(0.83)	1.9	21.7	35.9	40.4	100.0(76)
	기타	3.11(0.93)	9.6	9.5	41.4	39.5	100.0(88)
주관적 학업 성적	상	3.29(0.71)	2.0	8.9	46.8	42.3	100.0(3,247)
	중	3.18(0.69)	2.3	9.5	56.1	32.1	100.0(3,562)
	하	3.06(0.70)	2.5	14.3	58.0	25.2	100.0(1,881)
주관적 경제 수준	상	3.26(0.70)	2.1	8.9	50.1	38.9	100.0(5,268)
	중	3.13(0.68)	2.2	11.1	58.2	28.5	100.0(2,765)
	하	2.97(0.75)	3.4	19.0	54.4	23.1	100.0(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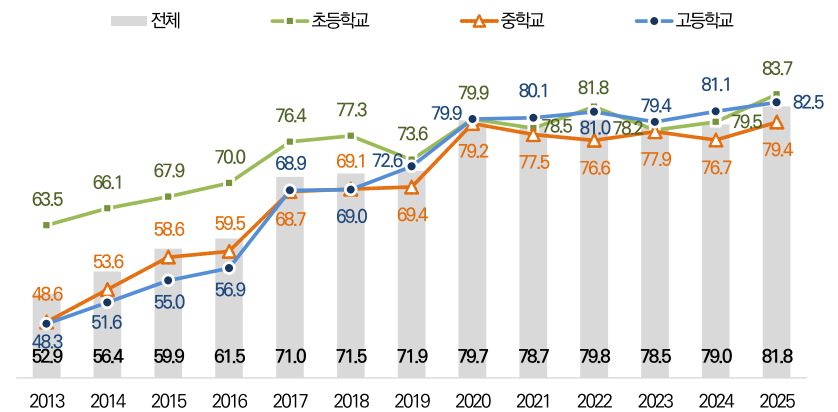
*p 〈 .05, **p 〈 .01,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8-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2013~2025년)

다음으로,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81.8%였다('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 이러한 인식도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20년 들어서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유지되어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8-3.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2013~2025년)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82.7%, 여학생이 80.9%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역규모 차원에서 대도시는 82.3%, 중소도시는 82.5%였던 반면, 읍면지역은 78%로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안전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상'인 집단이 83.3%, '하'인 집단이 72.3%로 비교적 크게 차이가 났다. 이는 소득 계층에 따라 거주환경이나 지역사회 환경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동·청소년의 통학로나 여가 공간 등 주변의 환경 개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Ⅳ-8-7.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3(0.72)	3.0	15.1	57.5	24.3	100.0(8,691)	
성별	남학생	3.08(0.76)	3.8	13.5	53.6	29.1	100.0(4,461)	146.192***
	여학생	2.98(0.67)	2.2	16.8	61.7	19.2	100.0(4,231)	
학교급	초등학교	3.10(0.73)	2.9	13.4	54.1	29.6	100.0(2,881)	77.859***
	중학교	2.97(0.72)	3.5	17.1	58.4	21.0	100.0(2,936)	
	고등학교	3.02(0.69)	2.7	14.8	60.2	22.3	100.0(2,874)	
지역 규모	대도시	3.05(0.71)	2.7	15.0	57.1	25.2	100.0(3,421)	17.223**
	중소도시	3.03(0.71)	3.0	14.5	58.4	24.1	100.0(4,213)	
	읍면지역	2.96(0.75)	4.3	17.8	55.8	22.2	100.0(1,05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4(0.71)	2.9	15.0	57.9	24.3	100.0(7,795)	34.643***
	한부모가정	2.98(0.72)	3.1	17.4	57.8	21.7	100.0(677)	
	조손가정	3.00(0.88)	6.4	19.4	42.1	32.1	100.0(74)	
	기타	2.99(0.93)	9.8	13.5	44.5	32.2	100.0(88)	
주관적 학업 성적	상	3.11(0.73)	2.9	13.3	54.2	29.7	100.0(3,228)	120.508***
	중	3.03(0.69)	2.6	14.7	60.2	22.6	100.0(3,544)	
	하	2.91(0.73)	4.2	18.9	58.8	18.0	100.0(1,871)	
주관적 경제 수준	상	3.08(0.73)	3.1	13.5	55.7	27.6	100.0(5,239)	125.581***
	중	2.99(0.68)	2.4	16.2	61.5	19.9	100.0(2,754)	
	하	2.83(0.75)	5.2	22.4	56.7	15.6	100.0(643)	

*p 〈 .05, **p 〈 .01, ***p 〈 .001.

2) 보건서비스 및 약물남용

(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① 보건교사 배치율

보건교사 배치율은 2018년 67.1%에서 2024년 78.3%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5개 학교 중 1개교 이상에는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표 Ⅳ-8-8.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율(2018~2024년)

(단위 :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보건교사 배치율	67.1	69.1	70.5	73.9	77.3	78.0	78.3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4b). 2024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4&menuSeq=3894&publSeq=2&itemCode=02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특히 중학교의 배치율은 2024년 기준 70.3%로 초등학교(83.1%)나 고등학교(76.8%)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보건교사 배치율의 학교급별 불균형 해소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인 학교 보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표 Ⅳ-8-9. 보건교사 배치현황(2021~2024년)

(단위 : 개교,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2021	학교 수	6,157	3,245	2,375	187	11,964
	교사 수 (배치율)	4,814 (78.2)	2,098 (64.7)	1,776 (74.8)	151 (80.7)	8,839 (73.9)
2022	학교 수	6,163	3,258	2,373	192	11,986
	교사 수 (배치율)	5,047 (81.9)	2,243 (68.8)	1,821 (76.7)	155 (80.7)	9,266 (77.3)
2023	학교 수	6,175	3,265	2,379	194	12,013
	교사 수 (배치율)	5,104 (82.7)	2,279 (69.8)	1,838 (77.3)	154 (79.4)	9,375 (78.0)
2024	학교 수	6,183	3,272	2,380	195	12,030
	교사 수 (배치율)	5,139 (83.1)	2,300 (70.3)	1,828 (76.8)	157 (80.5)	9,424 (78.3)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4). 2024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4&menuSeq=3894&publSeq=2&itemCode=02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각 학교급별 개황, 직위별 교원수(2)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② 어린이전문 의료기관(어린이 전문병원) 설치 현황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어린이전문 의료기관(어린이 전문병원) 설치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14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2개소, 달빛어린이병원 119개소 등이 구축되어 있다. 중증질환이나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의료체계가 마련되고 있는 일은 긍정적이나, 다수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아동·청소년이 보편적으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건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표 Ⅳ-8-10.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 운영(선정) 현황

(단위 : 개소)

의료기관 유형	운영 현황	개소
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	서울(4), 인천(1), 경기(1), 강원(1), 경남·부산·울산(1), 경북·대구(1), 충북(1), 충남·대전·세종(1), 전북(1), 전남·광주(1), 제주(1)	14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서울(3), 인천(2), 경기(2), 충남(1), 세종(1), 경남(1), 대구(1), 전북(1)	12
달빛 어린이병원	서울(15), 부산(8), 대구(5), 인천(7), 광주(4), 대전(6), 울산(3), 세종(1), 경기(34), 강원(3), 충북(5), 충남(5), 전북(6), 전남(4), 경남(9), 제주(4)	119

* 출처: 보건복지부(2024g). 공공전문진료센터 현황.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107010000&bid=0043&act=view&list_no=1481817&tag=&cg_code=&list_depth=1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보건복지부(2025b). 2025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2차 공모 및 선정계획
중앙응급의료센터(2025). 달빛 어린이병원 웹사이트. https://www.e-gen.or.kr/moonlight/main.do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③ 정신보건 및 심리상담 기관 현황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인프라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 프로젝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현황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지역사회 기반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94.7%에 설치되어 높은 접근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강원(73.7%), 충북(50.0%) 등 일부 지역의 설치율은 저조하여 지역 간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표 Ⅳ-8-11.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2024년)

(단위 : 개소, %)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시·군·구	223	25	15	9	10	5	2	5	-	32	13	12	15	14	22	22	21	2
계	240	26	16	10	11	6	3	6	1	33	14	13	16	15	23	23	22	3
설치율	94.7	96.2	94.1	100	90.9	100	50.0	83.3	100	100	73.7	100	100	100	100	95.7	100	100

* 출처: 여성가족부(2025a). 2024 청소년백서. p.230

나. 위(Wee) 프로젝트 운영 현황

위(Wee)프로젝트는 학교와 교육기관 기반의 위기 학생 지원 시스템으로 2019년 7,460개소에서 2023년 9,119개소로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2024년에는 Wee클래스 9,115개소, Wee센터 259개소, Wee스쿨 17개소로 총 9,374개소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전국 위클래스 평균 설치율은 76.8%에 불과하며, 경상북도가 59.7%, 충청남도가 61.3%, 경상남도가 65.9%로 낮게 나타났다(경남신문, 2025.9.28.).

위(Wee)프로젝트는 학교 안의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마음건강)을 예방적으로 대응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지역 간, 학교급 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표 Ⅳ-8-12. Wee센터 및 Wee클래스, Wee스쿨 설치 현황(2019~2023년)

(단위 : 개소)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Wee클래스		7,230	7,631	8,059	8,619	8,863	9,115
Wee센터	일반형	190	204	206	206	206	207
	가정형	17	17	19	19	19	19
	병원형	9	10	13	13	14	16
Wee스쿨		14	15	15	16	17	17
계		7,460	7,877	8,312	8,873	9,119	9,374

* 출처: Wee 웹사이트. https://www.wee.go.kr/home/cms/cmsCont.do?cntnts_sn=22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보면 지역 간 격차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총 263개소(광역 17개, 기초 246개) 설치되어 있다. 자살예방센터는 전국에 6개소이며, 서울에 2개소, 인천에 1개소, 경기에 3개소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전국에 6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비교적 많이 설치되어 있다. 단, 세종에만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센터는 아동·청소년 특화 기관으로 설계된 것이 아닌 만큼, 전체적인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Ⅳ-8-13.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정신건강	광역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기초	246	25	16	9	11	5	5	5	1	37	18	14	17	14	23	24	20	2
	계	263	26	17	10	12	6	6	6	2	38	19	15	18	15	24	25	21	3
자살예방센터		6	2	-	-	1	-	-	-	-	3	-	-	-	-	-	-	-	-
중독관리통합지원		60	3	3	2	5	5	5	2	-	10	4	2	2	4	2	2	6	3

* 출처: 통계청 KOSIS(2024). 정신건강 관련 기관 설치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920023_A001&conn_path=I2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의료급여 대상 아동·청소년의 수는 2021년 175,516명에서 2023년 151,488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의 영향일 수 있으나, 부모수당 및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성 급여로 인해 아동·청소년 가구의 소득수준이 빈곤선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OECD 기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가구의 빈곤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공공부조 수급자의 변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표 Ⅳ-8-14. 의료급여 대상 아동·청소년 현황(2021~2023년)

(단위 : 명)

구분	0세	1~4세	5~9세	10~14세	15~19세	합계
2021	1,640	14,336	34,630	54,257	70,653	175,516
2022	1,347	12,342	30,729	51,934	66,098	162,450
2023	1,362	10,639	27,918	49,262	62,307	151,488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 2021 의료급여통계. pp.20-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3). 2022 의료급여통계. p.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4). 2023 의료급여통계. p.20.

연간 병의원 미충족 의료율을 보면, 아동·청소년의 미충족 의료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9년 1.8%에 불과했던 미충족 의료율은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3.6%로 증가하였고, 2023년 2.6%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2019년 1.8%, 2021년 2.0%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1~5세의 미충족 의료율이 4.0%로 높아진 것은 관심이 필요하다. 만약 지역의 소아청소년과 의료 부족 등 보건의료인프라에 의해 발생한 결과라면, 영유아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Ⅳ-8-15. 아동·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충족의료율(2019~2023년)

(단위 : 명, %)

구분		연령					소득수준			
		전체	1~5세	6~11세	12~14세	15~18세	하	중하	중상	상
2019	N	1,391	355	566	216	254	270	289	281	266
	분율 (표준오차)	1.8 (0.5)	0.1 (0.1)	0.9 (0.4)	2.1 (0.9)	4.6 (1.8)	1.7 (0.7)	3.2 (1.3)	0.7 (0.5)	0.4 (0.3)
2020	N	1,128	292	433	201	202	227	225	225	227
	분율 (표준오차)	2.8 (0.7)	1.4 (0.8)**	1.8 (0.7)*	2.3 (1.6)**	6.0 (2.2)*	5.1 (1.9)*	1.4 (1.1)**	0.7 (0.5)**	2.9 (1.5)**
2021	N	1,031	232	412	194	193	207	212	205	199
	분율 (표준오차)	2.0 (0.5)*	2.4 (1.1)*	1.5 (0.8)**	0.3 (0.3)**	3.8 (1.7)*	2,5 (1.0)*	3.1 (1.3)*	0.9 (0.8)*	2.5 (1.3)**
2022	N	926	211	392	164	159	-	-	-	-
	분율 (표준오차)	3.6 (0.9)	0.9 (0.6)**	3.9 (1.5)*	5.6 (1.9)*	4.1 (1.6)*	-	-	-	-
2023	N	1,007	220	06	183	198	-	-	-	-
	분율 (표준오차)	2.6 (0.7)*	4.0 (2.9)**	1.5 (0.7)*	1.7 (1.0)**	3.6 (1.6)*	-	-	-	-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2017). 2014-2016 국민건강통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8-2020). 2017-2019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 표번호 7-1.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
질병관리청(2022). 2020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 표번호 7-1.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
질병관리청(2023). 2021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 표번호 7-1.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
질병관리청(2024). 2023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표번호 7-2.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병의원))

* 주: 1) 소아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 $\sqrt{\text{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
3) 변동계수: *는 25-50%, **는 50% 이상.
4) 2022년부터 조사방법 변경(면접→자기기입)으로 연도별 결과 비교시 주의

치과 미충족 의료율을 보면, 아동·청소년의 미충족 의료율이 비교적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3%에서 2022년 13.7%까지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6.7%로 낮아졌다. 이는 소아청소년과와 달리 의료 공급 체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건강보험의 치과 진료비 부담 지원이 확대된 것,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확산된 것 등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5~18세의 경우 14.1%로 미충족 의료율이 높은 만큼 청소년기 치과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표 Ⅳ-8-16.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충족의료율(2019~2023년)

(단위 : 명, %)

구분		연령					소득수준				
		전체	1~5세	6~11세	12~14세	15~18세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9	N	1,089	259	511	156	163	202	223		237	216
	분율 (표준오차)	9.3 (1.0)	10.8 (2.2)	7.1 (1.5)	7.1 (2.0)	13.7 (2.8)	16.9 (3.3)	8.9 (2.1)		6.2 (1.9)	5.9 (1.8)
2020	N	907	205	397	158	147	177	181		190	181
	분율 (표준오차)	12.4 (1.4)	13.2 (2.9)	10.4 (2.0)	12.7 (2.8)	15.1 (2.9)	17.1 (3.5)	10.9 (2.4)		6.0 (3.1)	7.5 (2.3)
2021	N	792	160	370	137	125	154	160		162	161
	분율 (표준오차)	11.0 (1.3)	13.5 (3.1)	9.2 (1.7)	7.3 (2.4)*	15.1 (3.4)	15.8 (3.3)	10.1 (3.3)*		8.3 (2.3)*	11.4 (3.1)*
2022	N	775	160	370	137	108	148	148	152	151	174
	분율 (표준오차)	13.7 (1.8)	9.8 (2.8)*	14.3 (3.1)	12.4 (3.1)*	17.1 (3.8)	20.6 (5.5)*	11.0 (3.2)*	14.3 (3.0)	10.8 (3.7)*	12.5 (4.2)*
2023	N	782	146	372	129	135	-	-	-	-	-
	분율 (표준오차)	6.7 (1.1)	6.9 (2.9)*	4.3 (1.2)*	2.4 (1.2)**	14.1 (3.4)	-	-	-	-	-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20). 2019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 표번호 7-1.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
질병관리청(2022a). 2020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 표번호 7-1.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
질병관리청(2022b). 2021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 표번호 7-2.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
질병관리청(2023). 2022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 표번호 7-.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치과))
질병관리청(2024). 2023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_표번호 7-4. 소아청소년 연간미충족의료율(치과))

* 주: 1) 소아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sqrt{\text{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 2022년도 자료부터는 월가구균등화소득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

3) 변동계수: *는 25-50%, **는 50% 이상.

4) 2022년부터 조사방법 변경(면접→자기기입)으로 연도별 결과 비교시 주의

(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① 흡연율

청소년의 흡연율(최근 30일 내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은 2020년 4.4%였으나 2024년 3.6%로 0.8%P 감소하였다. 중학생은 2020년 1.7%에서 2023년 2.2%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2024년 1.7%로 감소하였다. 고등학생은 2020년 7.1%에서 2024년 5.6%로 점진적인 하락 추세에 있었다.

표 Ⅳ-8-17. 흡연율 추이(2020~2024년)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20	4.4	1.7	7.1	0.7	1.6	3.0	4.8	7.2	9.2
2021	4.5	1.9	7.2	0.8	1.8	3.0	5.4	7.3	8.8
2022	4.5	2.1	7.1	0.8	2.2	3.1	5.1	7.1	9.2
2023	4.2	2.2	6.4	0.9	2.1	3.5	4.3	7.3	7.9
2024	3.6	1.7	5.6	0.5	1.9	2.8	4.0	5.7	7.3

* 출처: 교육부, 질병관리청(2025). 제20차(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37

* 주: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② 음주율

청소년의 음주율(최근 30일 내 1잔 이상 음주한 사람의 분율)도 약간 하락하였다. 2020년 10.7%에서 2022년 13.0%까지 증가하였으나, 2024년은 9.7%로 감소하였다. 중학생은 4.9%, 고등학생은 14.6%로 나타났는데, 고1의 경우 10%대에서 9.3%로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은 여전히 15%~20% 사이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표 Ⅳ-8-18. 음주율 추이(2020~2024년)

(단위: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20	10.7	5.4	15.9	3.7	4.9	7.8	10.9	15.8	20.9
2021	10.7	5.6	16.0	3.4	5.4	8.2	12.1	16.4	19.3
2022	13.0	7.0	19.5	4.0	7.1	9.6	14.5	20.3	23.7
2023	11.1	5.9	16.5	3.2	5.5	9.0	11.6	18.1	20.7
2024	9.7	4.9	14.6	3.1	5.0	6.9	9.3	15.4	19.4

* 출처: 교육부, 질병관리청(2025). 제20차(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57

* 주: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③ 기타 약물 사용률

기타 약물 사용율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또는 일부러 약물(신경안정제, 각성제, 수면제, 식욕억제제, 마약성 진통제 등)을 먹거나 본드(접착제), 대마초, 코카인, 부탄가스 등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 2022년에는 1.8%로 나타났고, 2024년 1.6%로 소폭 감소하였다. 아직 절대적으로는 작은 비율을 나타내나, 최근 펜타닐 등 마약성 약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표 Ⅳ-8-19. 습관적 및 의도적 평생 약물 사용 경험률(2022~2024년)

(단위 : %)

구분	2022	2023	2024
남학생	1.6	1.7	1.4
여학생	1.5	1.5	1.2
전 체	1.8	1.8	1.6

* 출처: 교육부, 질병관리청(2025). 제20차(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140

* 주: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또는 일부러 약물(신경안정제, 각성제, 수면제, 식욕억제제, 마약성 진통제 등)을 먹거나 본드(접착제), 대마초, 코카인, 부탄가스 등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④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은 흡연 및 음주 예방교육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먼저, 연간 흡연 예방교육 경험률은 2024년 71.6%로 나타났다. 2018년 72.5%였다가 2021년 코로나-19로 63.2%까지 감소하였으나 다시 71.6%로 증가하였다. 중학생은 78.4%, 고등학생은 64.6%로 학교급간 차이가 있었다. 중학교 1학년은 79.4%에서 고등학교 3학년은 60.5%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지면서 경험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20. 연간 흡연 예방교육 경험률(2015~2024년)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5	59.6	65.7	54.2	64.0	67.5	65.5	57.6	59.8	45.5
2016	65.3	71.4	60.2	72.5	71.4	70.5	64.6	64.5	51.5
2017	70.7	77.2	65.4	77.8	78.0	75.7	67.5	70.0	58.8
2018	72.5	79.1	66.7	80.5	79.6	77.3	70.6	70.3	60.4
2021	63.2	70.2	55.9	72.4	69.8	68.4	59.2	58.6	50.3
2024	71.6	78.4	64.6	79.4	78.8	76.8	66.7	66.3	60.5

* 출처: 교육부, 질병관리청(2025). 제20차(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엑셀 표번호 1-24.

* 주: 1)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연간 음주 예방교육 경험률은 44.9%로 흡연 예방교육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중학생은 52.6%, 고등학생은 37.1%로 학교급별 차이가 있었으며, 중학교 1학년은 55.4%에서 고등학교 3학년은 33.6%로 학년이 높아지면서 경험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21.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2015~2024년)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5	34.6	42.8	27.3	45.5	44.4	39.4	32.9	29.7	19.7
2016	38.8	46.8	32.2	49.3	47.4	44.1	36.5	35.3	24.7
2017	41.2	49.3	34.5	50.5	50.1	47.2	37.8	37.7	28.3
2018	42.0	48.8	36.1	51.4	48.3	46.9	41.0	39.4	29.2
2021	33.0	37.2	28.7	40.4	36.1	35.0	30.1	29.2	26.8
2024	44.9	52.6	37.1	55.4	53.3	48.9	39.6	37.8	33.6

* 출처: 교육부, 질병관리청(2025). 제20차(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pp.66-67

* 주: 1)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술(알코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3)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

(1) 신체적 건강

① 주관적 신체적 건강 수준 평가(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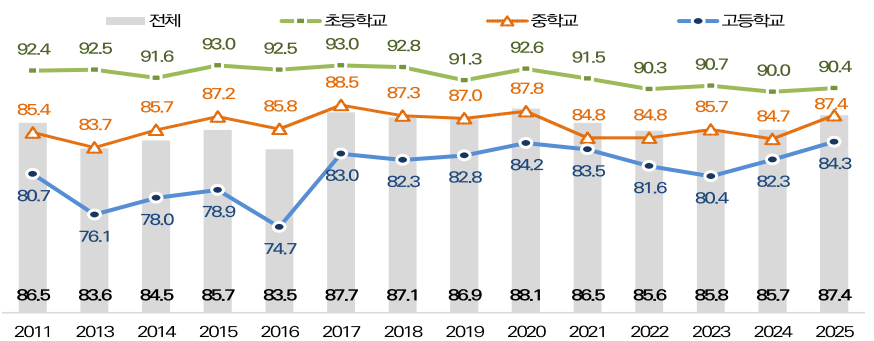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자신의 신체적 건강이 '건강한 편이다' 또는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8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져 초등학생 90.5%, 중학생 87.4%, 고등학생 84.4%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경제적 수준이 '하'인 집단은 74.5%, '상'인 집단은 90.0%로 나타나 아동·청소년기 건강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건강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22.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전체(N)	χ^2
전체		3.19(0.67)	1.0	11.6	54.8	32.6	100.0(8,728)	
성별	남학생	3.21(0.69)	1.1	12.1	51.4	35.3	100.0(4,489)	43.852***
	여학생	3.17(0.64)	0.8	11.2	58.3	29.7	100.0(4,239)	
학교급	초등학교	3.29(0.66)	0.9	8.7	51.0	39.5	100.0(2,888)	135.945***
	중학교	3.19(0.66)	0.8	11.9	55.2	32.2	100.0(2,952)	
	고등학교	3.09(0.67)	1.3	14.4	58.2	26.2	100.0(2,888)	
지역 규모	대도시	3.18(0.67)	1.0	12.0	54.8	32.2	100.0(3,443)	10.078
	중소도시	3.20(0.66)	0.8	11.4	54.3	33.5	100.0(4,226)	
	읍면지역	3.16(0.68)	1.6	11.4	56.7	30.3	100.0(1,05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20(0.66)	0.8	11.0	55.1	33.0	100.0(7,825)	76.577***
	한부모가정	3.04(0.71)	2.1	17.4	55.2	25.4	100.0(679)	
	조손가정	3.06(0.72)	2.3	15.7	55.2	26.8	100.0(76)	
	기타	3.26(0.87)	2.6	20.1	26.3	51.0	100.0(87)	
주관적 학업 성적	상	3.30(0.66)	1.0	8.6	49.7	40.8	100.0(3,240)	316.179***
	중	3.19(0.63)	0.6	10.2	58.5	30.8	100.0(3,557)	
	하	2.99(0.70)	1.8	19.6	56.8	21.8	100.0(1,881)	
주관적 경제 수준	상	3.27(0.66)	1.0	9.0	52.0	38.0	100.0(5,262)	278.822***
	중	3.10(0.64)	0.8	13.9	60.2	25.2	100.0(2,762)	
	하	2.92(0.71)	1.9	23.7	54.9	19.6	100.0(648)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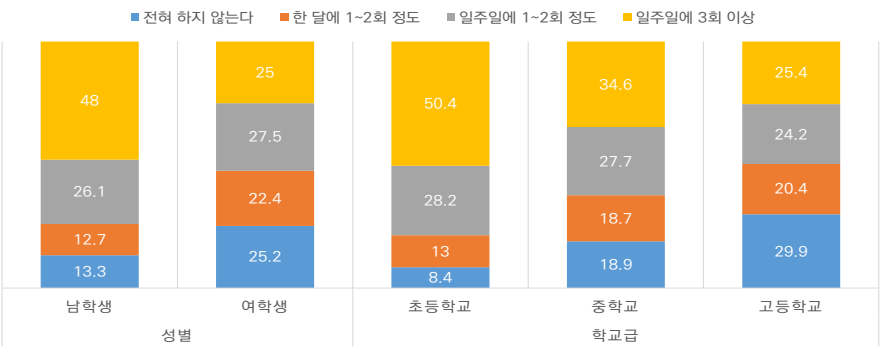


* 주: '건강한 편이다'와 '매우 건강하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8-4.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2011~2025년)

② 운동 실천율(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일주일에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아동·청소년은 36.8%였다. 초등학교에서는 50.4%, 중학교에서는 34.6%, 고등학교에서는 25.4%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주3회 운동하는 비율이 낮아졌다. 이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시간이 늘어나 운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특기할만한 상황은 주3회 운동하는 남학생은 48.0%, 여학생은 25.0%이라는 것인데 여학생의 운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러한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 출처: 저자 작성 (2025「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도식화하였음)

그림 Ⅳ-8-5.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학교급별)

표 Ⅳ-8-23.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2025년)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한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19.1	17.4	26.7	36.8	100.0(8,723)	
성별	남학생	13.3	12.7	26.1	48.0	100.0(4,481)	597.205***
	여학생	25.2	22.4	27.5	25.0	100.0(4,242)	
학교급	초등학교	8.4	13.0	28.2	50.4	100.0(2,885)	660.510***
	중학교	18.9	18.7	27.7	34.6	100.0(2,951)	
	고등학교	29.9	20.4	24.2	25.4	100.0(2,887)	
지역 규모	대도시	18.9	17.6	27.5	36.0	100.0(3,441)	4.485
	중소도시	19.1	17.4	26.5	37.0	100.0(4,222)	
	읍면지역	19.8	16.6	25.1	38.6	100.0(1,06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8.8	17.5	27.1	36.6	100.0(7,818)	23.846**
	한부모가정	24.0	16.6	24.3	35.2	100.0(681)	
	조손가정	14.7	18.9	21.1	45.3	100.0(76)	
	기타	14.8	13.2	19.9	52.2	100.0(88)	
주관적 학업 성적	상	14.8	15.4	28.4	41.4	100.0(3,238)	162.131***
	중	18.8	18.1	27.4	35.7	100.0(3,557)	
	하	27.1	19.3	23.0	30.5	100.0(1,879)	
주관적 경제 수준	상	15.4	16.3	28.9	39.4	100.0(5,254)	167.327***
	중	24.0	19.5	24.3	32.2	100.0(2,763)	
	하	28.9	16.1	21.1	33.9	100.0(650)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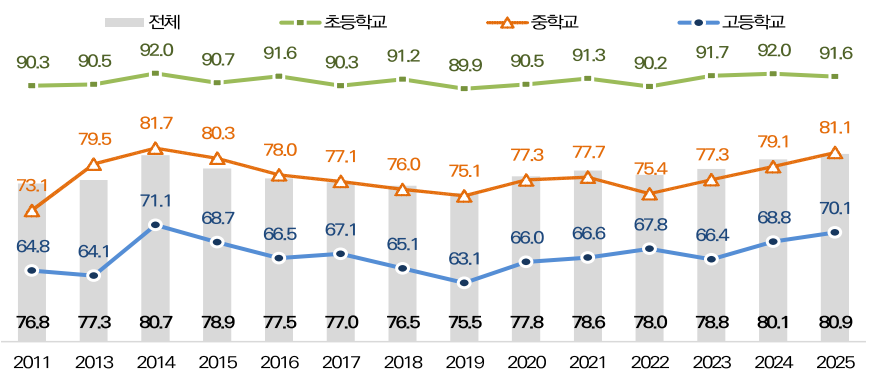


그림 Ⅳ-8-6.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2011~2025년)

③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학기 중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7.4시간으로 비교적 짧았다. 초등학생은 8.7시간, 중학생은 7.2시간, 고등학생은 6.0시간으로 학교급이 높으면 수면시간이 급격히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 권장되는 8~10시간의 수면시간에 비해 짧은 것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이러한 패턴은 2010년대 중반 조사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표 Ⅳ-8-24. 수면 시간(2025년)

(단위 : %(명), 시간)

구분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 7시간 미만	7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 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평균 (시간)	전체(N)
전체		5.8	13.3	19.0	21.4	21.7	18.7	7.4	100.0(8,584)
성별	남학생	4.2	10.8	17.9	22.2	23.6	21.4	7.6	100.0(4,417)
	여학생	7.6	16.1	20.2	20.5	19.7	15.9	7.1	100.0(4,167)
학교급	초등학교	0.3	1.1	3.9	12.2	34.9	47.7	8.7	100.0(2,847)
	중학교	3.3	10.4	21.0	33.5	24.4	7.4	7.2	100.0(2,899)
	고등학교	14.0	28.7	32.1	18.3	5.7	1.3	6.1	100.0(2,838)
지역 규모	대도시	7.8	13.9	20.7	20.1	20.5	17.1	7.2	100.0(3,382)
	중소도시	4.5	11.9	17.3	21.7	23.6	21.1	7.5	100.0(4,165)
	읍면지역	4.9	17.4	20.5	24.5	18.0	14.7	7.2	100.0(1,03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8	13.2	18.8	21.3	21.8	19.1	7.4	100.0(7,707)
	한부모가정	6.6	15.4	22.1	23.7	21.4	10.8	7.1	100.0(667)
	조손가정	10.8	14.2	18.2	20.7	12.1	24.1	7.3	100.0(70)
	기타	3.8	9.1	11.3	14.5	28.4	32.9	8.0	100.0(83)
주관적 학업 성적	상	4.1	8.9	15.8	20.4	24.9	25.8	7.7	100.0(3,201)
	중	5.6	13.9	18.4	21.3	22.6	18.2	7.3	100.0(3,508)
	하	9.6	20.1	25.6	23.2	14.1	7.5	6.7	100.0(1,830)
주관적 경제 수준	상	5.3	11.3	17.6	20.6	23.6	21.7	7.5	100.0(5,184)
	중	5.9	15.3	20.9	23.2	19.2	15.4	7.2	100.0(2,718)
	하	10.5	22.5	21.4	19.9	16.6	9.1	6.7	100.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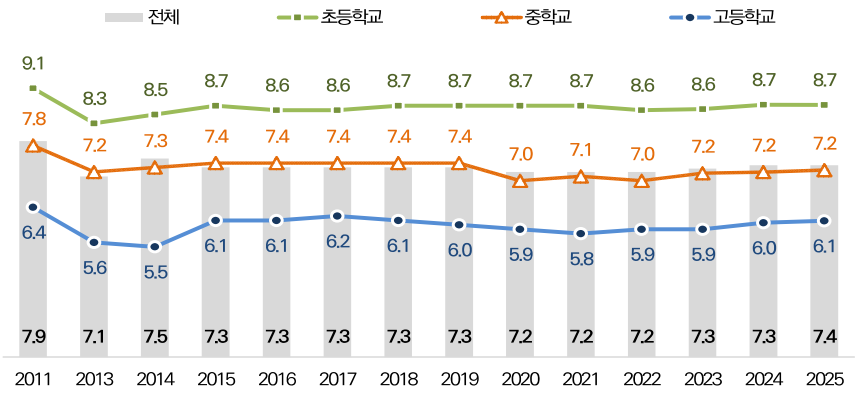


그림 Ⅳ-8-7. 수면 시간(2011~2025년)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스스로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전체 학생의 47%였다. 남학생은 40.9%, 여학생은 53.4%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수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수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학교급으로 보면 고등학교(64.4%), 중학교(45.9%), 초등학교(30.6%) 순이었다. 지역 규모로 보면 대도시(66.2%), 중소도시(55.9%), 읍면지역(47.9%)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수면 부족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업성적은 '상' 집단이 41.1%, '하'집단이 42.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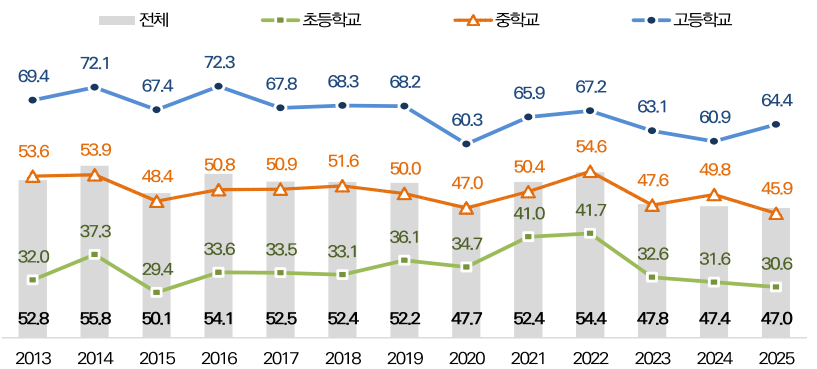
수면 부족의 차별 추이를 보면 2020~2022년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초, 중, 고등학생의 수면 부족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3년에 다시 감소하였다. 이후 초등학생은 하락 추세, 중학생은 혼조세를 보이나, 고등학생은 2025년 다시 64.4%로 증가하였다. 고등학생의 학업부담으로 인한 수면 부족이 다시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모니터링해야할 필요가 있다.

표 Ⅳ-8-25. 수면 부족 여부(2025년)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전체(N)	χ^2
전체		47.0	53.0	100.0(8,478)	
성별	남학생	40.9	59.1	100.0(4,331)	132.320***
	여학생	53.4	46.6	100.0(4,147)	
학교급	초등학교	30.6	69.4	100.0(2,794)	649.794***
	중학교	45.9	54.1	100.0(2,845)	
	고등학교	64.4	35.6	100.0(2,839)	
지역규모	대도시	66.2	33.8	100.0(2,346)	18.927***
	중소도시	55.9	44.1	100.0(493)	
	읍면지역	47.9	52.1	100.0(3,307)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45.3	54.7	100.0(4,138)	13.208**
	한부모가정	51.1	48.9	100.0(1,032)	
	조손가정	46.7	53.3	100.0(7,616)	
	기타	52.0	48.0	100.0(655)	
주관적 학업 성적	상	51.1	48.9	100.0(69)	8.541*
	중	41.5	58.5	100.0(80)	
	하	42.6	57.4	100.0(3,171)	
주관적 경제 수준	상	45.5	54.5	100.0(3,448)	111.429***
	중	57.7	42.3	100.0(1,812)	
	하	43.5	56.5	100.0(5,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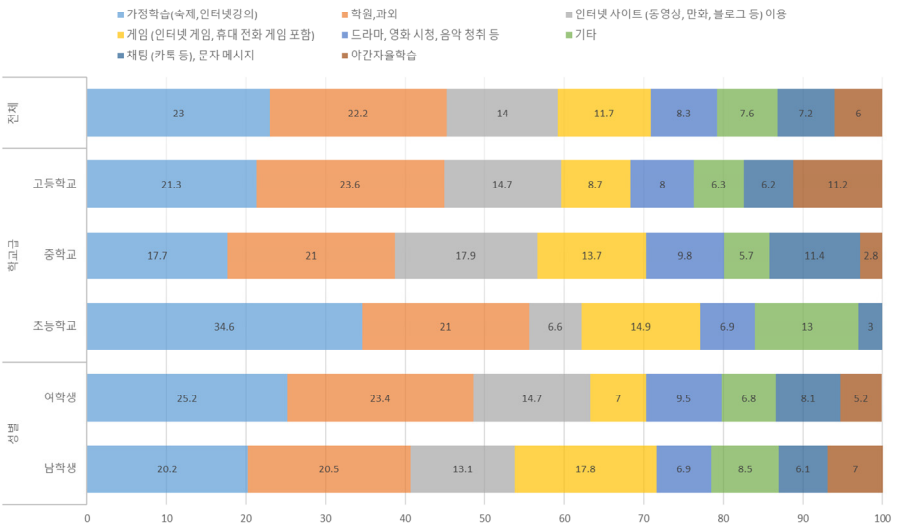
*p 〈 .05, **p 〈 .01, ***p 〈 .001.



*주: 수면부족에 '예'라고 응답한 값(단위: %)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8-8. 수면 부족 여부(2013~2025년)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Ⅳ-8-9. 성별, 학교급별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2025년)

스스로 '수면부족' 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에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전체적으로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23%, 학원, 과외 22.2%, 야간자율학습 6%로 절반가량의 아동·청소년이 학업과 관련된 이유로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수면 부족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초등학생들 중 34.6%가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으로 수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초등학생들도 학업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반면,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은 14%, 게임은 전체의 11.7%, 드라마, 영화시청, 음악 청취 등은 8.3%, 채팅(카톡 등), 문자 메세지 등은 8.3%였다. 학업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매체 사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적정 수면시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절반은 스스로 수면 부족 상태에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수면 부족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심화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표 Ⅳ-8-26. 수면이 부족한 이유(1순위, 2025년)

(단위 : %(명))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 학습 (숙제, 인터넷 강의)	게임 (인터넷 게임, 휴대 전화 게임 포함)	채팅 (카톡 등), 문자 메시지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기타	전체(N)	χ^2
전체		6.0	22.2	23.0	11.7	7.2	14.0	8.3	7.6	100.0(3,885)	
성별	남학생	7.0	20.5	20.2	17.8	6.1	13.1	6.9	8.5	100.0(1,712)	133.977***
	여학생	5.2	23.4	25.2	7.0	8.1	14.7	9.5	6.8	100.0(2,173)	
학교급	초등학교	0.0	21.0	34.6	14.9	3.0	6.6	6.9	13.0	100.0(844)	399.715***
	중학교	2.8	21.0	17.7	13.7	11.4	17.9	9.8	5.7	100.0(1,284)	
	고등학교	11.2	23.6	21.3	8.7	6.2	14.7	8.0	6.3	100.0(1,757)	
지역 규모	대도시	4.0	23.2	26.6	9.6	6.8	13.3	9.2	7.3	100.0(1,542)	172.806***
	중소도시	4.4	21.8	22.5	13.1	7.7	14.9	8.0	7.6	100.0(1,831)	
	읍면지역	17.4	20.3	14.0	13.3	6.8	12.9	7.0	8.2	100.0(51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2	22.4	24.3	11.5	7.0	13.2	8.0	7.4	100.0(3,463)	69.260***
	한부모가정	4.1	17.6	11.9	13.2	10.0	20.9	12.7	9.5	100.0(330)	
	조손가정	2.4	25.9	13.2	19.7	2.6	18.5	10.2	7.5	100.0(35)	
	기타	3.4	39.3	11.8	12.4	5.4	10.7	2.7	14.3	100.0(32)	
주관적 학업 성적	상	5.4	24.9	31.8	9.4	5.1	10.9	5.9	6.6	100.0(1,330)	212.517***
	중	7.1	22.9	22.7	11.2	6.9	14.0	7.9	7.4	100.0(1,522)	
	하	5.2	17.7	11.9	15.6	10.3	17.9	12.3	9.1	100.0(1,010)	
주관적 경제 수준	상	5.8	25.0	24.3	11.4	7.5	11.6	7.1	7.3	100.0(2,183)	63.105***
	중	6.4	18.9	22.3	12.5	6.8	15.6	9.7	7.8	100.0(1,277)	
	하	5.7	18.0	18.1	10.7	7.0	22.0	10.4	8.0	100.0(397)	

*p 〈 .05, **p 〈 .01, ***p 〈 .001.

표 Ⅳ-8-27. 수면이 부족한 이유(복수응답: 1+2순위,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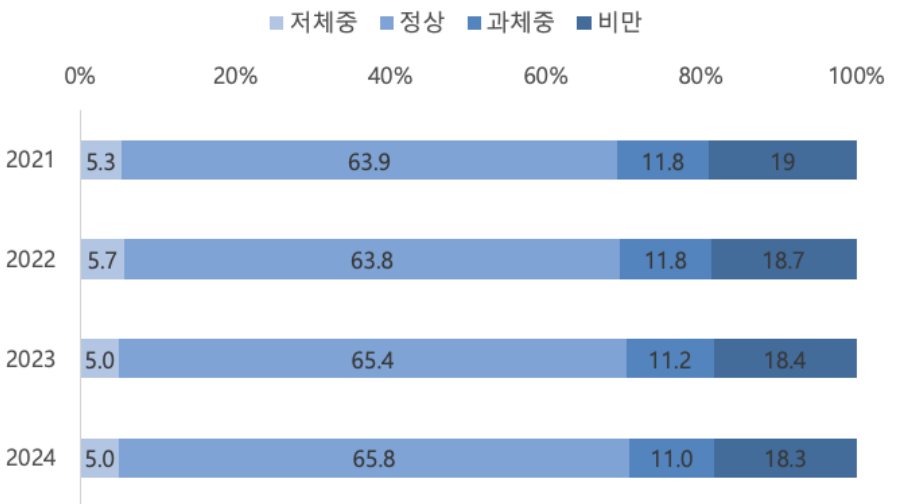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 학습 (숙제, 인터넷 강의)	게임 (인터넷 게임, 휴대 전화 게임 포함)	채팅 (카톡 등), 문자 메시지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기타	전체(N)
전체		9.4	36.9	40.6	23.1	18.7	30.3	21.9	10.3	100.0(3,885)
성별	남학생	11.0	35.9	35.1	33.8	15.1	29.5	18.6	11.4	100.0(1,712)
	여학생	8.1	37.7	44.9	14.6	21.5	31.0	24.6	9.4	100.0(2,173)
학교급	초등학교	0.0	38.9	55.3	28.3	11.0	19.3	17.0	18.0	100.0(844)
	중학교	6.4	34.5	35.2	26.1	25.5	34.0	24.1	7.7	100.0(1,284)
	고등학교	16.1	37.7	37.5	18.3	17.3	33.0	22.7	8.4	100.0(1,757)
지역 규모	대도시	7.6	39.2	43.1	21.1	18.0	30.4	21.9	9.6	100.0(1,542)
	중소도시	7.4	36.8	40.7	24.5	19.0	30.7	21.4	10.7	100.0(1,831)
	읍면지역	22.0	30.3	32.5	24.0	19.4	28.7	24.0	10.7	100.0(51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	37.7	42.3	22.1	18.0	29.7	21.6	10.1	100.0(3,463)
	한부모가정	7.8	26.7	26.6	29.5	24.3	37.6	28.0	12.0	100.0(330)
	조손가정	10.0	49.8	30.4	30.2	16.7	23.2	20.5	7.5	100.0(35)
	기타	3.4	44.4	29.3	48.3	26.3	20.6	4.5	16.1	100.0(32)
주관적 학업 성적	상	9.0	44.5	53.4	19.6	13.8	26.6	16.5	9.2	100.0(1,330)
	중	10.5	37.3	39.5	21.9	19.4	29.7	22.7	10.0	100.0(1,522)
	하	8.4	26.6	25.4	29.5	24.0	35.9	27.9	12.0	100.0(1,010)
주관적 경제 수준	상	9.4	40.8	43.8	22.3	17.9	27.5	19.5	10.1	100.0(2,183)
	중	9.6	32.7	37.3	23.1	19.2	33.1	25.4	10.4	100.0(1,277)
	하	9.3	29.9	34.3	27.4	20.7	36.4	23.9	10.7	100.0(397)

④ 아동·청소년의 질병 유형

가. 비만율

2024년 학생 건강검사 결과, 과체중은 11.0%, 비만은 18.3%로 나타났다. 2021년 이래로 정상체중의 비율이 63.9%에서 65.8%로 증가하였고, 저체중은 5.3%에서 5.0%로 감소, 과체중과 비만은 각각 11.8%, 19%에서 11.0%, 18.3%로 감소하였다.



* 출처: 교육부(2025.4.30.). 보도자료: 2024년 학생 건강검사 주요 결과. pp. 6-7.

* 주: 2020년 검사는 COVID-19로 인하여 표본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분석 대상자만 제시하고 가중 산술치를 제시하지 않음.

그림 Ⅳ-8-10. 비만도 현황(2021~2024년)

비만율은 모든 학교급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남학생의 비만율은 21.3%(여학생 14.5%), 중학교 남학생의 비만율은 19.4%(여학생 13.9%), 고등학교 남학생의 비만율은 23.9%(여학생 16.9%)로 모든 학교급에서 남학생의 비만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교 남학생의 비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높아졌던 남자 초중등 학생의 비만율이 지속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생애적인 건강관리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표 Ⅳ-8-28. 체질량지수(BMI) 기준 비만율(2021~2024년)

(단위 : %)

연도/구분			체질량지수(BMI) 기준 비만율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2021	전체		5.3	63.9	11.8	19.0
	초등학생	남학생	3.9	60.2	13.3	22.6
		여학생	5.2	68.2	12.0	14.6
	중학생	남학생	5.0	57.7	13.1	24.2
		여학생	6.1	70.2	10.0	13.7
	고등학생	남학생	6.4	60.9	11.0	21.7
		여학생	6.5	66.7	9.6	17.2
2022	전체		5.7	63.8	11.8	18.7
	초등학생	남학생	5.1	60.6	13.8	20.5
		여학생	6.4	68.6	10.4	14.7
	중학생	남학생	3.8	58.8	12.0	25.3
		여학생	6.8	65.7	10.1	17.5
	고등학생	남학생	7.0	59.9	13.3	19.8
		여학생	6.4	67.1	9.8	16.6
2023	전체		5.0	65.4	11.2	18.4
	초등학생	남학생	4.6	61.1	12.4	21.9
		여학생	5.4	68.6	11.6	14.4
	중학생	남학생	3.8	63.8	11.2	21.2
		여학생	4.2	72.2	9.7	13.9
	고등학생	남학생	5.5	61.4	11.0	22.1
		여학생	6.3	67.4	9.5	16.9
2024	전체		5.0	65.8	11.0	18.3
	초등학생	남학생	4.8	61.9	12.0	21.3
		여학생	5.4	69.0	10.8	14.5
	중학생	남학생	3.6	65.4	11.5	19.4
		여학생	4.0	72.1	10.0	13.9
	고등학생	남학생	5.1	59.4	11.6	23.9
		여학생	6.1	68.4	8.6	16.9

* 출처: 교육부(2025.4.30.). 보도자료: 2024년 학생 건강검사 주요 결과. pp. 5-6.

* 주: 1) 체질량지수(BMI, kg/m2) 기준 비만율 : 저체중군, 5백분위수 미만 / 정상, 5백분위수 이상 85백분위수 이하 / 과체중군, 85백분위수 초과 95백분위수 미만 / 비만군, 95백분위수 이상
2) 2017년 개정된 소아청소년 성장도표(질병관리본부, 대한소아과학회) 적용하여 분석
3) 2020년 검사는 COVID-19로 인하여 표본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분석대상자만 제시하고 가중산술치를 제시하지 않음.

(2) 정신적 건강

① 주관적 정신적 건강 수준 평가(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자신의 정신적 건강이 '건강한 편이다' 또는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건강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만 조사되었는데 중학생은 77.9%, 고등학생은 73.5%였다. 경제적 수준이 '하'인 집단은 55.5%, '상'인 집단은 79.6%로 나타나 경제적 상황에 따른 격차도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에 비하여 정신적 건강을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들이 많아 아동·청소년기 마음건강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 Ⅳ-8-29.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전체(N)	χ^2
전체		2.96(0.79)	4.2	20.1	50.8	24.9	100.0(5,840)	
성별	남학생	3.06(0.80)	3.7	17.8	46.9	31.6	100.0(3,013)	149.919***
	여학생	2.86(0.76)	4.7	22.6	55.0	17.8	100.0(2,827)	
학교급	중학교	3.01(0.78)	3.9	18.2	50.6	27.3	100.0(2,953)	25.185***
	고등학교	2.92(0.79)	4.5	22.1	51.0	22.5	100.0(2,887)	
지역 규모	대도시	2.99(0.77)	3.7	18.6	52.2	25.4	100.0(2,330)	10.671
	중소도시	2.95(0.79)	4.4	20.5	50.4	24.7	100.0(2,692)	
	읍면지역	2.92(0.81)	4.7	22.9	48.0	24.4	100.0(81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9(0.77)	3.6	19.5	51.7	25.2	100.0(5,149)	79.237***
	한부모가정	2.77(0.87)	9.1	24.3	46.5	20.0	100.0(550)	
	조손가정	2.93(0.84)	3.3	28.8	39.7	28.1	100.0(45)	
	기타	2.77(1.09)	15.9	25.1	25.4	33.6	100.0(53)	
주관적 학업 성적	상	3.08(0.76)	2.8	16.6	50.3	30.4	100.0(1,683)	208.796***
	중	3.04(0.73)	2.7	17.1	54.1	26.1	100.0(2,424)	
	하	2.75(0.83)	7.6	27.9	46.9	17.6	100.0(1,697)	
주관적 경제 수준	상	3.05(0.76)	3.0	17.4	51.1	28.5	100.0(3,202)	196.849***
	중	2.93(0.77)	4.0	21.0	52.8	22.2	100.0(2,055)	
	하	2.57(0.86)	11.2	33.3	42.3	13.2	100.0(538)	

*p 〈 .05, **p 〈 .01, ***p 〈 .001.

* 주: 2024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② 자살 생각과 그 이유(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자살생각 여부와 그 이유, 자해 생각 및 시도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자해 생각 및 시도는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자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2024년부터 추가된 문항이다.

먼저 자살생각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조사에서는 자살이라는 용어가 아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으며, 지난 1년 간 생각해본 경험에 관해 빈도 형태로 묻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7%의 청소년들이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의 30.8%에 비해서는 감소된 수치이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가끔 생각한다는 23.0%, 자주 생각한다는 4.0%로 2024년 조사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성별 차이가 큰 편으로 남학생은 20.1%인 것에 비해 여학생은 34.3%로 1.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는 본 조사뿐만 아니라 실제 10~19세 청소년 자살률이 10대에서만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159].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경제적 수준이 '상'인 집단은 25.7%, '하'인 집단은 43.5%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이 '상'인 집단이라고 하여 심각도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하'인 집단은 심각도가 다른 집단들에 비해 가장 높은 편이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자살률이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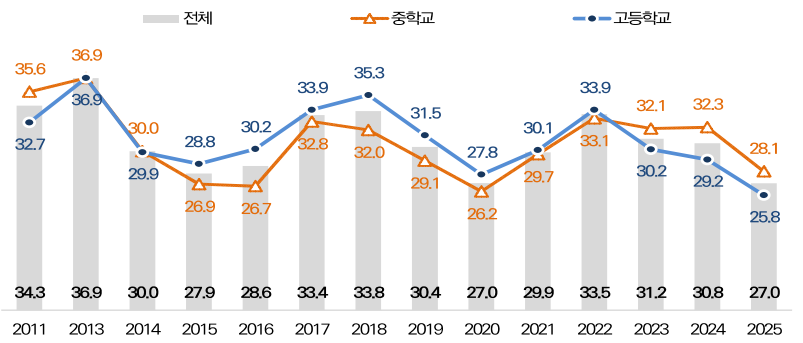
159)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의 「2024 자살원인통계」 따르면 2024년 기준 10~19세 남성의 자살률은 10만명당 7.4명, 여성의 자살률은 10만명 당 8.7명으로 성비는 0.8을 기록했음. 전체 연령의 자살률 성비는 2.5였으나 10대 청소년만 0.8로 여성의 비율이 전체 연령집단에서 유일하게 높게 나타났음(국가데이터처, 2025).

표 Ⅳ-8-30. 자살 생각 여부(2025년)

(단위 : %(명))

구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	전체(N)	χ^2
전체		73.0	23.0	4.0	100.0(5,781)	
성별	남학생	79.9	17.8	2.4	100.0(2,976)	154.177***
	여학생	65.7	28.5	5.8	100.0(2,805)	
학교급	중학교	71.9	24.1	4.0	100.0(2,921)	4.031
	고등학교	74.2	21.9	4.0	100.0(2,861)	
지역규모	대도시	72.4	23.9	3.8	100.0(2,301)	2.914
	중소도시	73.6	22.4	4.0	100.0(2,670)	
	읍면지역	72.9	22.3	4.7	100.0(810)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73.9	22.4	3.8	100.0(5,109)	31.901***
	한부모가정	66.2	27.8	6.0	100.0(536)	
	조손가정	75.1	24.9	0.0	100.0(43)	
	기타	58.1	28.8	13.1	100.0(51)	
주관적 학업 성적	상	77.3	19.9	2.9	100.0(1,669)	114.022***
	중	76.5	20.4	3.0	100.0(2,407)	
	하	63.7	29.7	6.6	100.0(1,670)	
주관적 경제 수준	상	76.2	20.9	2.8	100.0(3,170)	102.579***
	중	72.3	23.0	4.7	100.0(2,038)	
	하	56.5	35.2	8.3	100.0(530)	

*p 〈. 05, **p 〈 .01, ***p 〈 .001.



* 주: '가끔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8-11. 자살 생각 여부(2011~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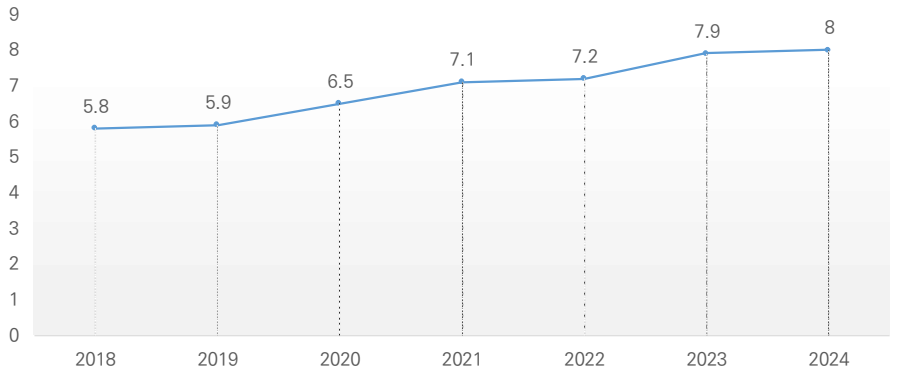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우리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히 변화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순위는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로 37.9%, 2순위는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20%, 3순위는 가족 간의 갈등(18.5%)이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모두 학업문제가 1순위로 나타났지만, 중학생은 2순위가 가족 간의 갈등(25.5%)이었고, 고등학생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 2순위였다.

표 Ⅳ-8-31. 자살 생각 이유(2025년)

(단위 : %(명))

구분		학업 문제 (학업 부담, 성적 등)	가족 간의 갈등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학교 폭력 등)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	기타	전체(N)	χ^2
전체		37.9	18.5	8.4	0.8	20.0	14.3	100.0(1,487)	
성별	남학생	35.3	20.7	8.0	1.1	21.4	13.5	100.0(568)	7.240
	여학생	39.6	17.2	8.7	0.6	19.2	14.8	100.0(920)	
학교급	중학교	33.7	25.5	12.7	0.7	13.9	13.4	100.0(789)	122.241***
	고등학교	42.7	10.7	3.5	0.9	26.9	15.3	100.0(698)	
지역 규모	대도시	36.9	17.9	8.5	1.1	20.1	15.6	100.0(607)	4.702
	중소도시	39.2	18.7	7.9	0.5	20.6	13.1	100.0(675)	
	읍면지역	36.8	20.2	9.5	0.8	18.0	14.8	100.0(20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9.2	17.8	8.1	0.6	19.7	14.6	100.0(1,280)	53.211***
	한부모가정	31.4	22.5	7.8	2.2	24.2	11.9	100.0(168)	
	조손가정	27.3	28.1	10.9	11.1	22.6	0.0	100.0(08)	
	기타	11.7	31.3	34.6	0.0	11.2	11.2	100.0(20)	
주관적 학업 성적	상	42.9	20.4	7.8	0.4	13.8	14.6	100.0(360)	34.819***
	중	42.4	18.2	7.3	0.7	20.1	11.3	100.0(539)	
	하	31.0	17.4	9.8	1.1	24.1	16.6	100.0(578)	
주관적 경제 수준	상	41.1	16.8	9.6	0.2	18.4	13.9	100.0(722)	59.959***
	중	39.2	17.8	6.7	0.1	20.9	15.3	100.0(539)	
	하	24.9	25.3	8.7	4.3	24.4	12.4	100.0(215)	

*p ⟨. 05, **p ⟨ .01, ***p ⟨ .001.



* 출처: 통계청(2020.9.22). 보도자료: 2019년 사망원인통계 p.18. 통계청(2021.9.28.). 보도자료: 2020년 사망원인통계 p.18. 통계청 (2022.9.27.). 보도자료: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p.18. 통계청 (2023.9.21.). 보도자료: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p.16. 통계청 (2024.10.5.). 보도자료: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p.16., 통계청 (2025.9.27.). 보도자료: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p.17.

* 주: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그림 Ⅳ-8-12. 인구 십만 명당 10~19세 자살률(2018~2024년)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보면, 10~19세의 청소년들은 2018년 10 만명 당 5.8명 자살을 하였으나, 2024년에는 10 만명 당 8명 자살을 하였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자살생각을 한 비율이 연차별로 증감을 하는 것에 비해, 실제 자살률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 가지 특기할만한 사항은 10대 청소년들에서만 여성 자살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앞서 여성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이 남성 청소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과 같이, 여성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8.7명으로 남성 청소년 자살률의 10만 명당 7.4%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반영한 성비(남/여)는 0.8명으로 모든 연령대 중 유일하게 여성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4년의 성비는 1.6명으로 현재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자살 자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여성 청소년의 정신 건강 악화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③ 자해 생각 및 시도 여부

자해를 생각해 본 청소년은 전체의 24%가량이었다. 자해를 생각은 해본 적은 있으나 시도한 적은 없는 청소년은 14.1%, 한 번 이상 시도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9.9%가량이었다. 즉, 전체 청소년 중 4명 중 1명꼴로 자해를 생각해 본 경험이 있고, 전체 청소년 중 10명 중 1명꼴로 한 번 이상 자해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다. 자해는 자살에 대한 위기 신호이자 정신 건강의 위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 자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Ⅳ-8-32. 자해 생각 및 시도 여부(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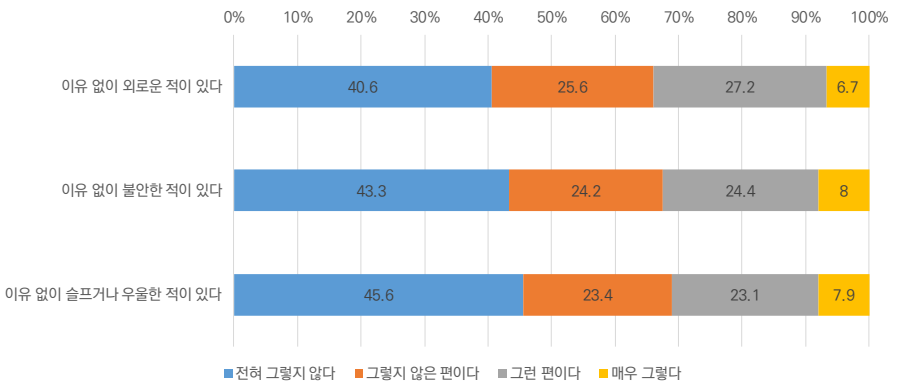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생각해 본 적은 있으나, 시도한 적은 없다	한번 시도해 본 적 있다	가끔 시도한다	자주 시도한다	전체(N)	χ^2
전체		76.1	14.1	4.6	4.3	1.0	100.0(5,799)	
성별	남학생	81.8	11.6	3.6	2.4	0.5	100.0(2,990)	128.357***
	여학생	70.0	16.6	5.6	6.3	1.4	100.0(2,810)	
학교급	중학교	71.3	16.8	5.6	5.3	0.9	100.0(2,930)	76.141***
	고등학교	80.9	11.2	3.5	3.3	1.0	100.0(2,869)	
지역 규모	대도시	76.1	13.8	4.7	4.4	0.9	100.0(2,309)	4.270
	중소도시	75.7	14.6	4.5	4.4	0.8	100.0(2,675)	
	읍면지역	76.9	13.1	4.4	4.1	1.5	100.0(81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6.8	13.7	4.3	4.2	0.9	100.0(5,115)	22.739*
	한부모가정	69.5	17.9	6.3	5.2	1.1	100.0(548)	
	조손가정	80.9	6.8	4.6	7.7	0.0	100.0(43)	
	기타	65.0	18.2	7.1	7.5	2.1	100.0(51)	
주관적 학업 성적	상	79.4	12.6	3.9	3.7	0.4	100.0(1,674)	105.797***
	중	78.7	12.6	4.6	3.7	0.3	100.0(2,406)	
	하	69.1	17.6	5.1	5.7	2.4	100.0(1,684)	
주관적 경제 수준	상	78.7	12.6	4.6	3.5	0.6	100.0(3,177)	79.760***
	중	75.1	15.4	3.6	4.8	1.1	100.0(2,045)	
	하	64.4	18.1	7.9	7.0	2.6	100.0(535)	

*p 〈. 05, **p 〈 .01, ***p 〈 .001.
*주 : 2024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④ 우울감('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우울감에 대해 3가지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질문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결과를 함께 제시하면,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는 33.9%(그런 편이다: 27.2%, 매우 그렇다: 6.7%)였고,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는 32.4%(그런 편이다: 24.4%, 매우 그렇다: 8%),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31%(그런 편이다: 23.1%, 매우 그렇다 7.9%)였다. 전체적으로 응답자 3명 중에 1명 꼴로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00명 중 6~8명가량은 외로움, 우울, 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을 만성적이거나 심각하게 호소하는 청소년들은 정신건강 위기군으로 볼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출처: 저자 작성 (2025「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도식화하였음)

그림 Ⅳ-8-13. 우울감 척도의 항목별 응답 결과(2025년)

다음으로 각 문항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는 전체의 33.9%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27.2%, 매우 그렇다: 6.7%)로 응답하였다. 4점 척도 평균으로 보면, 여자는 2.15점, 남자는 1.86점으로 여자 청소년의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학교급으로 보면, 고등학교(2.13점), 중학교(2.08점), 초등학교(1.79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초등학생 중 '매우 그렇다(4.8%)', '그런 편이다'(20.2%)하여 이를 합산하면, 초등학생 4명 중 1명꼴로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낮은 비율이 아니므로 관심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경제적 수준 '상' 집단(1.88점)에 비해 '하'집단(2.49점)이 낮게 나타나 사회계층적인 차이도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는 전체의 32.4%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24.4%, 매우 그렇다: 8%)로 응답하였다. 4점 척도 평균으로 보면, 여자는 2.12점, 남자는 1.82점으로 여자 청소년의 불안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고등학생(2.11점), 중학생(2.03점), 초등학생(1.77점)으로 고등학생의 불안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 '상' 집단은 1.87점인 것에 반해 '하'집단은 2.41점으로 비교적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전체의 31%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23.1%, 매우 그렇다 7.9%)로 응답하였다. 4점 척도 평균으로 보면, 여자는 2.15점, 남자는 1.72점으로 여자 청소년의 점수가 더 높았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2.08점), 중학교(1.99점), 초등학교(1.72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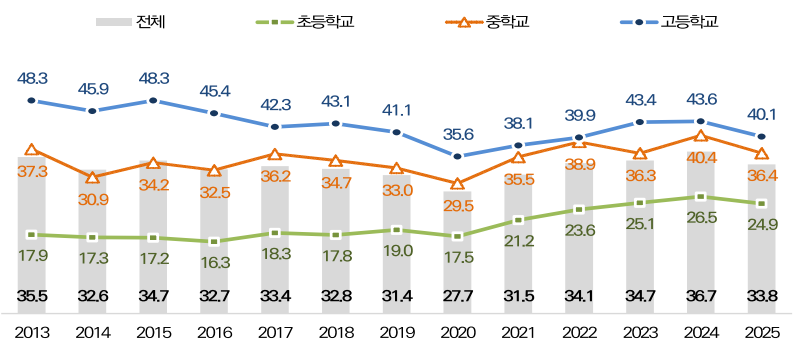
연차별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상승 추세가 나타나다가 최근 다시 하강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불안은 이전에 비해서 초, 중, 고 모두에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초등학생이 장기 추세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특히 2020년대 들어서면서 증가 추세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디지털화의 영향이 함께 작용하는 것일 수 있으며, 심리정서적 문제가 저연령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속적으로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더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표 Ⅳ-8-33. 우울감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00(0.97)	40.6	25.6	27.2	6.7	100.0(8,667)	
성별	남학생	1.86(0.94)	47.6	24.4	22.8	5.2	100.0(4,445)	209.025***
	여학생	2.15(0.98)	33.2	26.9	31.7	8.3	100.0(4,222)	
학교급	초등학교	1.79(0.93)	50.9	24.2	20.2	4.8	100.0(2,861)	226.401***
	중학교	2.08(0.97)	36.1	27.5	29.0	7.4	100.0(2,932)	
	고등학교	2.13(0.98)	34.8	25.0	32.2	7.9	100.0(2,873)	
지역 규모	대도시	1.97(0.96)	41.5	26.1	26.5	5.9	100.0(3,420)	23.281***
	중소도시	1.99(0.98)	41.1	25.2	26.9	6.8	100.0(4,198)	
	읍면지역	2.12(1.00)	35.4	25.6	30.3	8.7	100.0(1,05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8(0.96)	41.2	26.2	26.2	6.3	100.0(7,770)	67.297***
	한부모가정	2.26(1.02)	31.8	20.8	37.2	10.3	100.0(676)	
	조손가정	2.00(1.02)	43.3	20.7	28.4	7.6	100.0(76)	
	기타	2.03(1.04)	44.3	16.1	31.7	8.0	100.0(85)	
주관적 학업 성적	상	1.84(0.93)	47.9	24.9	22.3	4.8	100.0(3,215)	290.845***
	중	1.98(0.94)	39.8	27.2	27.9	5.2	100.0(3,531)	
	하	2.29(1.03)	29.6	23.9	34.0	12.6	100.0(1,872)	
주관적 경제 수준	상	1.88(0.94)	45.6	25.9	23.3	5.3	100.0(5,212)	291.612***
	중	2.10(0.97)	35.3	26.3	31.3	7.1	100.0(2,752)	
	하	2.49(1.01)	22.9	20.6	40.9	15.6	100.0(647)	

*p 〈 .05, **p 〈 .01,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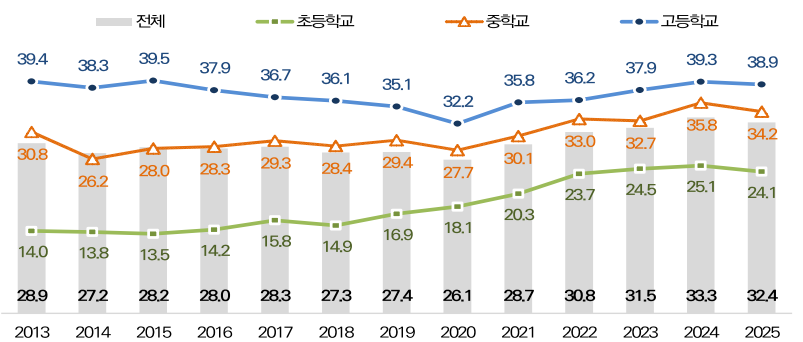
그림 Ⅳ-8-14. 우울감_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2013~2025년)

표 Ⅳ-8-34. 우울감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97(1.00)	43.3	24.2	24.4	8.0	100.0(8,668)	
성별	남학생	1.82(0.96)	50.2	23.2	20.6	6.0	100.0(4,444)	201.288***
	여학생	2.12(1.02)	36.2	25.3	28.4	10.1	100.0(4,224)	
학교급	초등학교	1.77(0.94)	52.7	23.3	18.5	5.5	100.0(2,861)	198.371***
	중학교	2.03(0.99)	39.4	26.4	25.9	8.4	100.0(2,933)	
	고등학교	2.11(1.03)	38.1	23.0	28.7	10.1	100.0(2,874)	
지역 규모	대도시	1.94(0.98)	44.3	24.7	23.9	7.1	100.0(3,420)	14.040*
	중소도시	1.98(1.01)	43.4	23.7	24.5	8.3	100.0(4,196)	
	읍면지역	2.06(1.02)	39.8	24.9	25.4	9.9	100.0(1,0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6(0.99)	43.9	24.3	24.2	7.7	100.0(7,768)	28.680***
	한부모가정	2.14(1.04)	36.7	24.4	27.5	11.4	100.0(677)	
	조손가정	1.80(0.95)	49.4	27.6	16.2	6.8	100.0(76)	
	기타	2.12(1.10)	40.0	22.7	22.9	14.4	100.0(86)	
주관적 학업 성적	상	1.85(0.97)	49.0	23.2	21.4	6.4	100.0(3,214)	198.887***
	중	1.94(0.97)	43.8	25.6	24.0	6.7	100.0(3,532)	
	하	2.24(1.05)	32.9	23.5	30.3	13.3	100.0(1,872)	
주관적 경제 수준	상	1.87(0.97)	47.7	24.2	21.5	6.5	100.0(5,211)	210.089***
	중	2.06(1.01)	39.0	25.1	27.0	8.9	100.0(2,753)	
	하	2.41(1.05)	26.7	21.2	36.1	16.0	100.0(647)	

*p 〈 .05, **p 〈 .01,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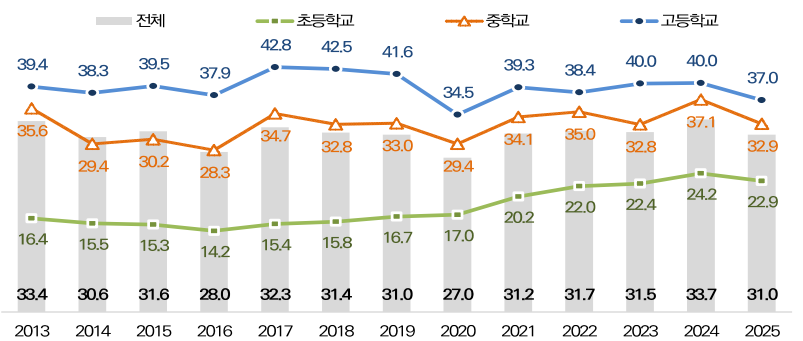
그림 Ⅳ-8-15. 우울감_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2013~2025년)

표 Ⅳ-8-35. 우울감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93(1.00)	45.6	23.4	23.1	7.9	100.0(8,636)	
성별	남학생	1.72(0.92)	54.9	22.9	17.1	5.0	100.0(4,431)	409.796***
	여학생	2.15(1.03)	35.7	24.0	29.4	10.9	100.0(4,206)	
학교급	초등학교	1.72(0.95)	56.7	20.4	16.7	6.2	100.0(2,839)	234.122***
	중학교	1.99(0.99)	41.5	25.5	25.0	7.9	100.0(2,929)	
	고등학교	2.08(1.02)	38.7	24.3	27.6	9.5	100.0(2,868)	
지역 규모	대도시	1.90(0.98)	45.9	25.1	21.9	7.1	100.0(3,406)	24.102***
	중소도시	1.93(1.01)	46.3	22.2	23.6	8.0	100.0(4,179)	
	읍면지역	2.03(1.03)	41.9	22.9	25.2	10.0	100.0(1,05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1(0.99)	46.3	23.5	22.8	7.4	100.0(7,740)	42.288***
	한부모가정	2.15(1.06)	36.5	24.3	26.6	12.6	100.0(674)	
	조손가정	1.87(1.01)	50.2	19.4	23.0	7.3	100.0(76)	
	기타	2.03(1.09)	45.7	16.9	26.0	11.4	100.0(86)	
주관적 학업 성적	상	1.78(0.96)	53.1	21.6	19.1	6.2	100.0(3,197)	267.114***
	중	1.90(0.97)	45.7	24.6	23.4	6.4	100.0(3,525)	
	하	2.24(1.05)	32.8	24.2	29.4	13.6	100.0(1,865)	
주관적 경제 수준	상	1.82(0.96)	50.9	23.0	19.7	6.4	100.0(5,190)	245.421***
	중	2.05(1.01)	39.8	24.6	27.0	8.7	100.0(2,747)	
	하	2.38(1.06)	28.3	21.6	34.1	16.0	100.0(643)	

*p 〈 .05, **p 〈 .01,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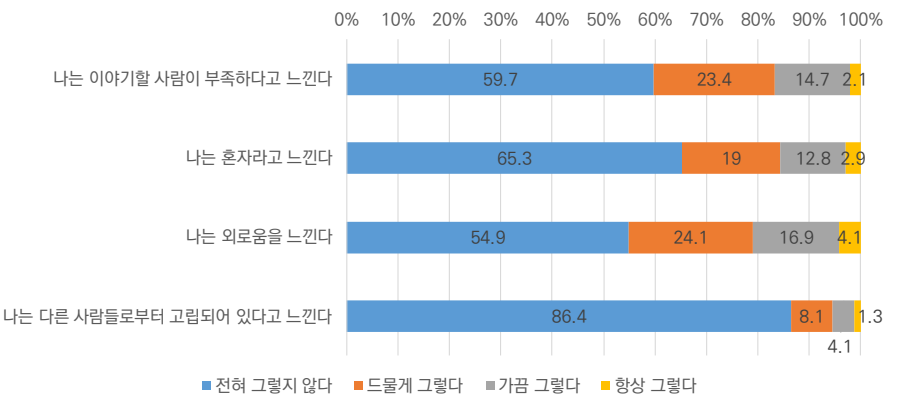
그림 Ⅳ-8-16. 우울감_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2013~2025년)

⑤ 외로움(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최근 외로움(loneliness)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OECD와 WHO 같은 국제기구들은 사회적 연결성을 공중보건 문제로 보고,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 같은 지표를 측정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영국 통계청(ONS)에서 제안한 UCLA 외로움 척도(UCLA loneliness scale)를 3문항과 직접적으로 외로움을 측정하는 문항 등 4개 문항을 통해 2023년부터 측정하고 있다. 개별 문항은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등 4가지이다.

외로움 문항들에서 다소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끔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의 합산 비율을 보면,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16.8%,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는 15.7%,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는 5.4%,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는 21%로 나타났다. 외로움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인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를 기준으로 하면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외로움의 문제가 비단 노년이나 중장년의 문제가 아닌 아동·청소년기에도 관심을 가져야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출처: 저자 작성 (2025「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도식화하였음)

그림 Ⅳ-8-17. 외로움 4개 문항 결과(2025년)

개별 문항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UCLA 외로움 척도에서 다소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가끔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의 비율 위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4점 척도 평균은 1.59점이었으며, '가끔 그렇다' 14.7%, '항상 그렇다' 2.1%로 두 응답의 합은 16.8%였다. 이 문항은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수준이 '하'인 집단은 '항상 그렇다'는 응답이 7.7%였던 것에 비해, '상'인 집단은 1.5%로 나타나 비교적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참여의 기회, 교류의 기회, 그리고 관계 형성의 기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Ⅳ-8-36. 외로움_1)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59(0.82)	59.7	23.4	14.7	2.1	100.0(8,715)	
성별	남학생	1.54(0.80)	62.6	22.5	12.6	2.2	100.0(4,475)	44.483***
	여학생	1.64(0.83)	56.6	24.4	16.9	2.1	100.0(4,240)	
학교급	초등학교	1.50(0.77)	65.9	20.0	12.6	1.4	100.0(2,891)	74.372***
	중학교	1.65(0.84)	55.9	25.9	15.6	2.6	100.0(2,942)	
	고등학교	1.63(0.83)	57.4	24.3	15.9	2.4	100.0(2,881)	
지역 규모	대도시	1.57(0.80)	61.1	22.8	14.1	2.0	100.0(3,435)	6.744
	중소도시	1.60(0.82)	59.0	23.8	15.1	2.1	100.0(4,217)	
	읍면지역	1.63(0.84)	57.8	24.2	15.2	2.8	100.0(1,0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58(0.81)	60.4	23.3	14.3	2.0	100.0(7,814)	26.485**
	한부모가정	1.72(0.86)	53.1	24.9	19.5	2.5	100.0(678)	
	조손가정	1.72(0.90)	52.8	28.0	14.1	5.1	100.0(76)	
	기타	1.66(0.93)	60.3	18.6	16.0	5.1	100.0(88)	
주관적 학업 성적	상	1.49(0.75)	65.9	21.0	11.8	1.4	100.0(3,235)	213.585***
	중	1.57(0.79)	60.0	24.4	14.1	1.5	100.0(3,555)	
	하	1.82(0.92)	48.6	25.8	20.9	4.7	100.0(1,876)	
주관적 경제 수준	상	1.50(0.76)	64.9	21.5	12.1	1.5	100.0(5,247)	292.377***
	중	1.66(0.83)	55.0	25.5	17.4	2.1	100.0(2,762)	
	하	2.02(0.97)	38.0	29.9	24.5	7.7	100.0(651)	

*p<.05, **p<.01, ***p<.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4점 척도 평균은 1.53점이었으며, '가끔 그렇다' 12.8%, '항상 그렇다' 2.9%로 두 응답의 합은 15.7%였다. 이 문항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 문항도 여자 청소년(17.9%)이 남자 청소년(13.5%)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학교급에 따라서 고등학교(19.8%), 중학교(16.1%), 초등학교(11.2%)로 학교급이 높은 청소년 중에 혼자라고 느낀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다만, 고등학교는 5명 중에 1명꼴로, 초등학교는 10명 중 1명꼴로 혼자라고 느끼고 있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외로움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체 평균으로 '가끔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의 합산 비율이 15.7%인 것에 비해 학업성적 '하'인 청소년은 25.8%, 경제적 수준 '하'인 청소년은 31.9%로 비교적 차이가 나타났다.

표 Ⅳ-8-37. 외로움_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53(0.82)	65.3	19.0	12.8	2.9	100.0(8,708)	
성별	남학생	1.47(0.79)	69.2	17.3	10.9	2.6	100.0(4,472)	63.833***
	여학생	1.60(0.85)	61.2	20.8	14.7	3.2	100.0(4,236)	
학교급	초등학교	1.38(0.73)	74.9	13.9	9.4	1.8	100.0(2,887)	193.884***
	중학교	1.57(0.84)	62.5	21.3	12.8	3.3	100.0(2,940)	
	고등학교	1.65(0.87)	58.5	21.7	16.2	3.6	100.0(2,881)	
지역 규모	대도시	1.51(0.81)	66.3	18.6	12.3	2.7	100.0(3,435)	11.097
	중소도시	1.53(0.82)	65.5	18.9	12.8	2.8	100.0(4,213)	
	읍면지역	1.61(0.87)	61.3	20.5	14.3	3.9	100.0(1,06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51(0.81)	66.0	19.0	12.4	2.6	100.0(7,809)	52.542***
	한부모가정	1.68(0.92)	58.3	20.0	16.7	5.0	100.0(676)	
	조손가정	1.67(0.94)	59.3	20.5	13.9	6.3	100.0(76)	
	기타	1.69(1.05)	64.5	11.4	14.3	9.8	100.0(88)	
주관적 학업 성적	상	1.40(0.73)	72.0	17.5	8.6	1.9	100.0(3,232)	294.353***
	중	1.50(0.80)	66.8	18.2	12.7	2.2	100.0(3,552)	
	하	1.81(0.95)	51.1	23.0	20.0	5.8	100.0(1,875)	
주관적 경제 수준	상	1.43(0.74)	70.9	17.6	9.6	1.9	100.0(5,242)	308.086***
	중	1.64(0.87)	59.6	20.7	16.2	3.5	100.0(2,759)	
	하	1.95(1.01)	45.1	23.0	23.6	8.3	100.0(651)	

*p<.05, **p<.01, ***p<.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문항은 직접적으로 외로움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영국 통계청에서 UCLA 외로움 척도 3개 이외에 추가한 문항이다.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에 대해서는 4점 척도 평균은 1.70점이었으며, '가끔 그렇다' 16.9%, '항상 그렇다' 4.1%로 두 응답의 합은 21%였다. 이 문항은 학교급, 지역규모,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서는 읍면지역(25.7%), 중소도시(20.7%), 대도시(20%)였다. 읍면지역 청소년은 4명 중 1명꼴, 대도시 지역 청소년은 5명 중 1명꼴로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외로움이 가장 높은 집단은 경제적 수준 '하'인 집단으로 40.3%로 나타났다.

표 Ⅳ-8-38. 외로움_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70(0.89)	54.9	24.1	16.9	4.1	100.0(8,705)	
성별	남학생	1.60(0.85)	60.8	21.8	14.2	3.2	100.0(4,468)	137.574***
	여학생	1.81(0.92)	48.7	26.4	19.8	5.1	100.0(4,237)	
학교급	초등학교	1.53(0.81)	64.6	21.0	11.4	3.0	100.0(2,884)	207.074***
	중학교	1.74(0.90)	52.7	25.1	17.7	4.5	100.0(2,941)	
	고등학교	1.84(0.93)	47.4	26.0	21.7	4.9	100.0(2,879)	
지역 규모	대도시	1.68(0.86)	55.6	24.4	16.8	3.2	100.0(3,433)	27.058***
	중소도시	1.71(0.90)	54.8	24.4	16.1	4.6	100.0(4,212)	
	읍면지역	1.78(0.95)	52.9	21.4	20.4	5.3	100.0(1,06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68(0.88)	55.7	24.2	16.3	3.8	100.0(7,805)	56.860***
	한부모가정	1.92(0.98)	45.5	23.9	23.7	6.9	100.0(677)	
	조손가정	1.80(0.94)	49.4	28.5	15.3	6.9	100.0(76)	
	기타	1.85(1.04)	53.1	17.3	21.0	8.6	100.0(88)	
주관적 학업 성적	상	1.56(0.81)	61.5	23.2	12.7	2.5	100.0(3,232)	305.144***
	중	1.67(0.87)	56.0	23.7	17.3	3.1	100.0(3,549)	
	하	2.00(1.00)	41.4	26.2	23.7	8.7	100.0(1,875)	
주관적 경제 수준	상	1.59(0.83)	60.3	23.2	13.8	2.8	100.0(5,242)	324.160***
	중	1.80(0.93)	50.2	24.7	20.2	4.9	100.0(2,756)	
	하	2.20(1.00)	31.2	28.6	29.1	11.2	100.0(651)	

*p<.05, **p<.01, ***p<.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라는 문항은 자신의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을 자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다. 이는 다른 문항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4점 척도 평균은 1.20점이었으며, '가끔 그렇다' 4.1%, '항상 그렇다' 1.3%로 두 응답의 합은 5.4%였다. 이 문항은 학교급, 지역규모,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자는 6.8%, 남자는 4.1%로 성차가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6.3%), 중학생(6.1%), 초등학생(4%)으로 중고등학생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 평균으로 '가끔 그렇다'와 '항상 그렇다'의 합산 비율이 5.4%였던 것을 감안하면, 가족유형의 '기타' 집단(13.1%), 학업성적 '하' 집단(10.4%), 경제적 수준 '하' 집단(13.6%)은 고립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39. 외로움_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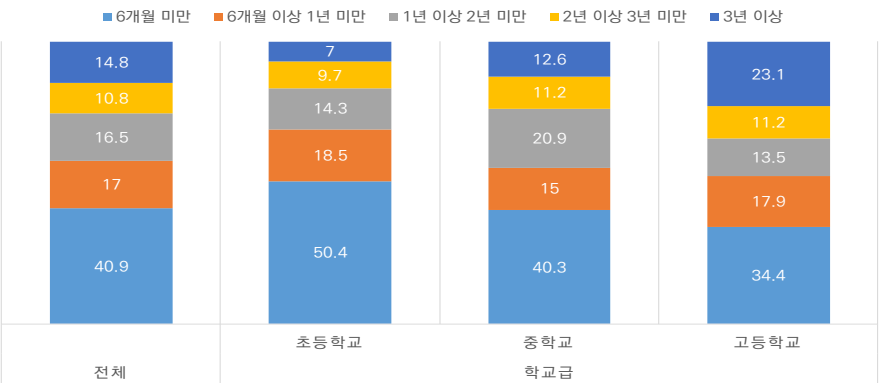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20(0.57)	86.4	8.1	4.1	1.3	100.0(8,667)	
성별	남학생	1.16(0.51)	88.7	7.1	3.1	1.0	100.0(4,454)	46.187***
	여학생	1.25(0.62)	84.0	9.2	5.2	1.6	100.0(4,213)	
학교급	초등학교	1.16(0.50)	88.9	7.1	3.2	0.8	100.0(2,879)	29.622***
	중학교	1.22(0.59)	84.9	8.9	4.8	1.3	100.0(2,924)	
	고등학교	1.23(0.61)	85.4	8.4	4.5	1.8	100.0(2,864)	
지역 규모	대도시	1.19(0.56)	87.5	7.1	4.1	1.2	100.0(3,415)	13.575*
	중소도시	1.20(0.56)	86.0	8.7	4.0	1.2	100.0(4,192)	
	읍면지역	1.24(0.63)	84.2	9.1	4.8	1.9	100.0(1,06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19(0.55)	87.0	8.0	4.0	1.1	100.0(7,772)	41.388***
	한부모가정	1.29(0.70)	82.0	9.6	5.5	2.9	100.0(674)	
	조손가정	1.33(0.76)	79.8	11.2	4.9	4.1	100.0(75)	
	기타	1.41(0.82)	75.8	11.1	9.2	3.9	100.0(88)	
주관적 학업 성적	상	1.15(0.49)	89.5	6.5	3.1	0.9	100.0(3,219)	150.551***
	중	1.18(0.51)	87.5	8.3	3.3	0.9	100.0(3,538)	
	하	1.34(0.74)	79.0	10.7	7.5	2.9	100.0(1,862)	
주관적 경제 수준	상	1.15(0.49)	89.6	6.6	3.0	0.8	100.0(5,225)	216.516***
	중	1.24(0.61)	84.1	9.3	5.0	1.6	100.0(2,748)	
	하	1.48(0.83)	70.3	16.0	9.3	4.3	100.0(639)	

*p<.05, **p<.01, ***p<.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라는 문항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86.4%)의 사람을 제외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느꼈는지를 물어보았다. 40.9%는 ’6개월 미만‘으로 단기에 있었으나, 14.8%는 ’3년 이상‘이라고 이야기해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립을 자각하는 청소년의 7명 중 1명꼴로 3년 이상의 장기 고립 상태에 있어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



* 출처: 저자 작성 (2025「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도식화하였음)

그림 Ⅳ-8-18.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고립된 기간 응답(2025년)

표 Ⅳ-8-40.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 기간(2025년)

(단위 : %(명))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전체(N)	χ^2
전체		40.9	17.0	16.5	10.8	14.8	100.0(1,170)	
성별	남학생	43.5	16.5	15.1	9.8	15.0	100.0(496)	3.350
	여학생	39.1	17.3	17.5	11.5	14.6	100.0(674)	
학교급	초등학교	50.4	18.5	14.3	9.7	7.0	100.0(317)	56.243***
	중학교	40.3	15.0	20.9	11.2	12.6	100.0(439)	
	고등학교	34.4	17.9	13.5	11.2	23.1	100.0(415)	
지역 규모	대도시	42.4	16.4	17.0	9.7	14.6	100.0(423)	2.456
	중소도시	40.7	17.6	16.3	10.9	14.6	100.0(581)	
	읍면지역	38.4	16.3	16.0	13.2	16.0	100.0(16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1.5	17.0	17.1	10.4	13.9	100.0(1,004)	10.441
	한부모가정	35.1	15.9	14.0	14.5	20.6	100.0(121)	
	조손가정	35.4	26.6	4.3	16.0	17.6	100.0(15)	
	기타	48.1	13.2	11.0	8.4	19.4	100.0(21)	
주관적 학업 성적	상	46.0	18.6	14.5	9.8	11.1	100.0(334)	31.183***
	중	42.6	17.8	16.5	11.9	11.1	100.0(437)	
	하	34.8	14.7	17.7	10.7	22.1	100.0(391)	
주관적 경제 수준	상	44.3	16.6	15.9	10.2	13.0	100.0(540)	12.442
	중	38.7	17.3	18.6	10.8	14.6	100.0(435)	
	하	36.5	17.5	12.3	13.1	20.6	100.0(186)	

*p<.05, **p<.01, ***p<.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⑥ 고민거리 대화상대(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고민거리가 있을 때 대화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어머니(40.4%), 친구(36.1%), 아버지(5.9%), 형제/자매(5.3%) 등이었다. 학교 담임 선생님(0.6%), 학교 상담선생님(0.5%), 청소년상담관련 기관 선생님(0.3%)으로 공적 서비스 체계를 통해 고민거리를 나누는 경우는 여전히 소수였다. 공적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상담 서비스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민거리 대화상대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8.9%로 청소년 10명 중 1명꼴로 고민거리가 생겨도 대화상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8-41. 고민거리 대화상대(2025년)

(단위 : %(명))

구분		없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담임선생님	학교상담선생님	친구	이웃/친척	청소년상담관련기관선생님	기타	전체(N)	χ^2
전체		8.9	5.9	40.4	5.3	0.6	0.5	36.1	0.8	0.3	1.3	100.0(8,344)	
성별	남학생	8.9	9.2	41.7	3.9	0.8	0.5	32.3	0.9	0.3	1.5	100.0(4,260)	248.078***
	여학생	8.9	2.4	39.0	6.8	0.3	0.4	40.0	0.8	0.2	1.2	100.0(4,084)	
학교급	초등학교	6.8	6.1	53.4	5.3	0.5	0.5	23.9	1.4	0.2	1.9	100.0(2,748)	396.915***
	중학교	9.8	6.2	33.6	5.1	0.6	0.2	42.4	0.8	0.3	1.1	100.0(2,855)	
	고등학교	10.2	5.3	34.3	5.6	0.6	0.6	41.7	0.3	0.3	1.0	100.0(2,740)	
지역규모	대도시	9.1	5.7	41.4	5.1	0.6	0.3	35.2	0.9	0.2	1.4	100.0(3,278)	20.433
	중소도시	8.6	5.8	40.7	5.4	0.6	0.5	36.0	0.8	0.3	1.3	100.0(4,054)	
	읍면지역	9.7	6.6	35.6	5.6	0.6	0.7	39.2	0.4	0.3	1.3	100.0(1,012)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8.6	5.6	42.2	5.4	0.6	0.4	35.2	0.7	0.2	1.3	100.0(7,521)	326.486***
	한부모가정	11.9	9.6	23.9	5.0	0.8	1.2	44.7	1.6	0.6	0.7	100.0(639)	
	조손가정	15.5	10.2	26.3	6.0	0.0	0.0	28.8	8.0	0.0	5.2	100.0(71)	
	기타	10.1	0.0	14.0	4.6	1.6	1.9	51.5	2.1	6.7	7.6	100.0(60)	
주관적 학업 성적	상	6.9	6.8	47.9	5.5	0.6	0.4	29.6	0.9	0.2	1.3	100.0(3,109)	320.051***
	중	8.3	5.7	41.4	5.4	0.6	0.4	35.9	0.8	0.3	1.2	100.0(3,400)	
	하	13.5	4.5	25.4	5.0	0.6	0.7	47.5	0.8	0.3	1.7	100.0(1,793)	
주관적 경제 수준	상	6.7	6.3	45.6	5.0	0.6	0.4	32.9	0.8	0.1	1.5	100.0(4,992)	271.447***
	중	10.7	5.1	35.1	5.9	0.5	0.5	40.1	0.8	0.3	0.9	100.0(2,672)	
	하	18.1	5.6	22.2	5.9	0.7	0.7	43.1	0.8	1.1	1.7	100.0(632)	

*p 〈 .05, **p 〈 .01, ***p 〈 .001.

⑦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부(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앞선 고민거리 대화상대 문항과 같이 9%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났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남자는 10.4%, 여자는 7.5%가 '없다'고 응답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로움이나 고립감은 여성이 더 높았으나, 사회적 지지체계 자체는 여성이 더 나은 상황일 수 있다. 또한, 전체 평균이 9%였을 때 가족 유형의 '조손가정'은 24.6%, '기타'는 19.7%로 가족 유형에서 오는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영케어러(young carer)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가족돌봄 부담이나 자기돌봄 부담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Ⅳ-8-42. 어려운 상황에서 외면하지 않는 사람(2025년)

(단위 : %(명))

구분		없다	있다	전체(N)	χ^2
전체		9.0	91.0	100.0(8,698)	
성별	남학생	10.4	89.6	100.0(4,466)	21.957***
	여학생	7.5	92.5	100.0(4,232)	
학교급	초등학교	7.5	92.5	100.0(2,889)	14.561***
	중학교	10.4	89.6	100.0(2,940)	
	고등학교	9.0	91.0	100.0(2,869)	
지역규모	대도시	8.0	92.0	100.0(3,430)	15.055***
	중소도시	9.0	91.0	100.0(4,212)	
	읍면지역	11.9	88.1	100.0(1,057)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8.5	91.5	100.0(7,796)	40.835***
	한부모가정	10.8	89.2	100.0(677)	
	조손가정	24.6	75.4	100.0(76)	
	기타	19.7	80.3	100.0(88)	
주관적 학업 성적	상	6.7	93.3	100.0(3,228)	47.885***
	중	9.1	90.9	100.0(3,548)	
	하	12.5	87.5	100.0(1,873)	
주관적 경제 수준	상	7.4	92.6	100.0(5,244)	57.887***
	중	10.6	89.4	100.0(2,750)	
	하	15.4	84.6	100.0(649)	

*p 〈 .05, **p 〈 .01,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사회적 지지체계(social support)를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을 측정하였다. 이는 사회조사의 문항을 아동·청소년에게 맞게 수정하여 2023년부터 측정한 것이다(유민상 외, 2023). 이 문항은 국가데이터처의 '사회조사'에서는 사회적 지지체계라는 명칭으로 조사되고 있다.

여기서는 6가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내가 모르는 공부 내용이나 학업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앞으로의 진로나 진학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학교 가기 어려운 경우, 숙제 등 학교 일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몸이 아파서 혼자 움직이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등이었다.

표 Ⅳ-8-43. 필요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사회적 지지체계, 2025년)

(단위 : %)

구분		내가 모르는 공부 내용이나 학업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앞으로의 진로나 진학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학교 가기 어려운 경우, 숙제 등 학교 일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몸이 아파서 혼자 움직이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전체		6.6	10.7	7.3	5.8	9.9	6.4
성별	남학생	7.1	10.7	8.3	6.1	11.1	7.1
	여학생	6.1	10.8	6.2	5.5	8.7	5.7
학교급	초등학교	5.9	12.0	7.6	4.1	13.8	6.3
	중학교	6.5	11.0	7.3	6.8	9.0	6.5
	고등학교	7.6	9.1	6.9	6.5	7.0	6.4
지역 규모	대도시	6.6	9.5	6.9	5.3	9.5	6.4
	중소도시	6.5	11.4	7.4	6.0	10.3	6.7
	읍면지역	7.5	11.8	7.9	6.5	9.9	5.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2	10.5	6.9	5.2	9.5	6.8
	한부모가정	7.8	11.1	8.7	9.7	10.3	7.8
	조손가정	13.4	14.1	11.8	14.1	24.2	6.1
	기타	24.5	17.9	22.7	13.8	27.7	7.0
주관적 학업 성적	상	5.7	9.6	6.1	4.4	9.4	13.3
	중	5.9	9.8	6.8	5.3	9.5	15.6
	하	9.7	14.1	10.3	9.2	11.7	5.9
주관적 경제 수준	상	5.5	9.2	6.1	4.5	9.1	5.8
	중	7.5	12.2	7.7	6.6	10.4	8.4
	하	12.1	16.6	14.8	12.6	15.1	5.4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의 비율을 6가지로 나누어보면, '내가 모르는 공부 내용이나 학업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6.6%, '앞으로의 진로나 진학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10.7%, '학교 가기 어려운 경우, 숙제 등 학교 일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7.3%, '몸이 아파서 혼자 움직이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5.8%, '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9.9%, '내가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6.4%였다.

'내가 모르는 공부 내용이나 학업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등 5가지 문항에서는 가족 유형 중 '조손가정'과 '기타' 유형에서의 비율이 높았고, 경제적 수준의 '하'집단도 비율이 높았다. 예를 들어, '내가 모르는 공부 내용이나 학업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의 평균은 6.6%였으나 '기타' 유형은 24.5%, 조손가정은 13.4%였다. '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의 평균은 9.9%였으나, 조손가정은 24.2%, '기타' 유형은 27.7%였다. 아동·청소년에게는 가족이 가장 큰 지지체계이나, 가족 지지체계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자체의 지원도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지지체계 역시 함께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지지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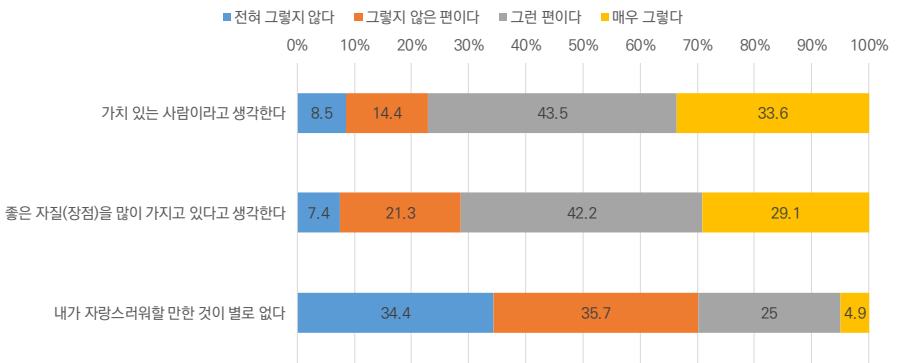
한 가지 특기할만한 것은 내가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부족한 집단은 학업성적이 '중'(15.6%)이거나 '상'(13.3%)인 집단이라는 것이다. 가족유형이나 경제적 수준에서 기존에 취약하게 나타났던 집단보다는 학업성적이 높은 편인 집단이 해당 자원이 부족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업으로 인한 놀이, 여가, 문화생활 부족으로 이에 대한 네트워크 역시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업 몰입이 놀이, 여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친구의 형성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⑧ 자아존중감('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3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등이었다.

여기서 '그렇다'('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을 중심으로 보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77.1%, '나는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71.3%,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29.9%였다. 마지막 문장은 부정적 문항이므로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70.1%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변수들은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등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지역규모는 일부 변수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 출처: 저자 작성 (2025「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도식화하였음)

그림 Ⅳ-8-19. 자아존중감 항목별 조사결과(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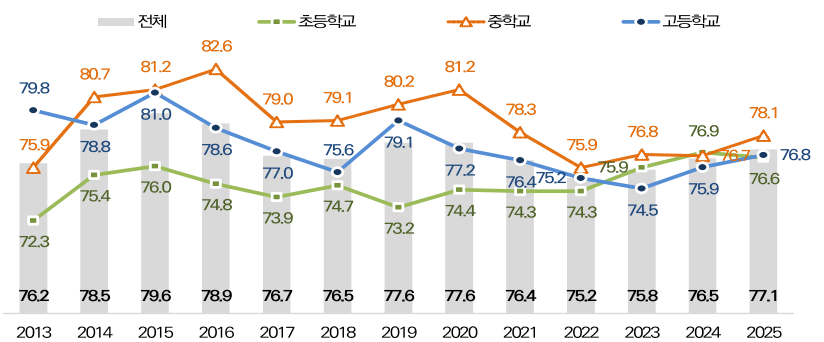
연차별로 보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후 초중고가 함께 살짝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는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고등학교는 유지, 중학교는 다소 하락 추세 속에서 등락이 있었다.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수준은 유지되나 등락이 있었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등락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상승 추세이므로 관심이 필요하다.

표 Ⅳ-8-44.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2(0.90)	8.5	14.4	43.5	33.6	100.0(8,645)	
성별	남학생	3.04(0.96)	10.5	11.9	40.2	37.3	100.0(4,433)	145.382***
	여학생	3.00(0.85)	6.3	17.0	47.0	29.7	100.0(4,212)	
학교급	초등학교	3.06(1.01)	12.3	11.2	35.0	41.6	100.0(2,848)	
	중학교	3.04(0.85)	6.0	15.9	46.2	31.8	100.0(2,926)	267.881***
	고등학교	2.97(0.85)	7.2	16.1	49.2	27.5	100.0(2,871)	
지역 규모	대도시	3.05(0.89)	8.0	13.7	44.1	34.2	100.0(3,406)	
	중소도시	3.02(0.91)	8.6	14.6	43.1	33.7	100.0(4,187)	7.390
	읍면지역	2.97(0.92)	9.4	16.0	43.1	31.5	100.0(1,0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4(0.90)	8.1	13.9	43.6	34.4	100.0(7,751)	
	한부모가정	2.89(0.91)	9.6	18.5	45.3	26.6	100.0(673)	70.811***
	조손가정	2.98(0.88)	7.2	17.6	45.3	29.9	100.0(75)	
	기타	2.50(1.15)	27.8	19.1	27.9	25.2	100.0(86)	
주관적 학업 성적	상	3.21(0.91)	8.1	9.2	36.6	46.2	100.0(3,208)	
	중	2.99(0.87)	8.1	13.9	48.5	29.5	100.0(3,521)	519.100***
	하	2.76(0.88)	9.7	24.1	46.1	20.0	100.0(1,867)	
주관적 경제 수준	상	3.12(0.91)	8.4	10.7	41.7	39.2	100.0(5,199)	
	중	2.92(0.87)	8.0	18.6	46.9	26.5	100.0(2,748)	286.246***
	하	2.72(0.91)	11.1	25.8	43.4	19.7	100.0(641)	

*p 〈 .05, **p 〈 .01,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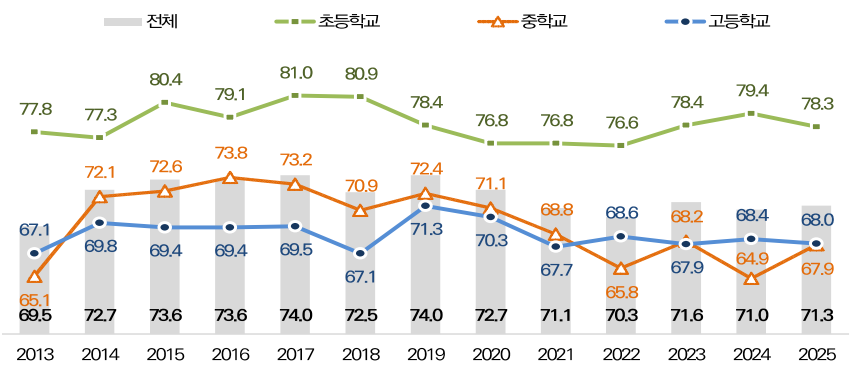
그림 Ⅳ-8-20. 자아존중감_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2013~2025년)

표 Ⅳ-8-45.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3(0.89)	7.4	21.3	42.2	29.1	100.0(8,630)	
성별	남학생	2.98(0.92)	8.6	17.9	40.7	32.8	100.0(4,427)	116.413***
	여학생	2.88(0.86)	6.1	24.9	43.8	25.2	100.0(4,204)	
학교급	초등학교	3.11(0.89)	6.5	15.3	39.5	38.8	100.0(2,838)	219.804***
	중학교	2.85(0.88)	7.7	24.5	43.2	24.7	100.0(2,923)	
	고등학교	2.84(0.88)	8.0	24.0	43.9	24.1	100.0(2,869)	
지역 규모	대도시	2.96(0.88)	6.8	20.2	43.0	29.9	100.0(3,397)	15.343*
	중소도시	2.92(0.89)	7.3	22.2	41.8	28.7	100.0(4,183)	
	읍면지역	2.88(0.93)	9.8	20.8	41.3	28.1	100.0(1,05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5(0.88)	6.9	20.8	42.4	29.8	100.0(7,736)	65.962***
	한부모가정	2.77(0.89)	9.6	25.2	43.9	21.4	100.0(672)	
	조손가정	2.84(0.90)	5.3	33.3	33.6	27.9	100.0(76)	
	기타	2.71(1.15)	21.8	18.8	25.9	33.5	100.0(86)	
주관적 학업 성적	상	3.18(0.85)	5.4	12.9	40.0	41.7	100.0(3,203)	664.423***
	중	2.89(0.85)	6.6	22.1	46.7	24.6	100.0(3,515)	
	하	2.58(0.90)	12.1	34.2	37.3	16.3	100.0(1,864)	
주관적 경제 수준	상	3.07(0.86)	6.0	15.9	43.1	34.9	100.0(5,185)	391.182***
	중	2.76(0.88)	8.3	28.6	41.8	21.3	100.0(2,746)	
	하	2.56(0.93)	13.9	32.6	36.7	16.7	100.0(644)	

*p 〈 .05, **p 〈 .01,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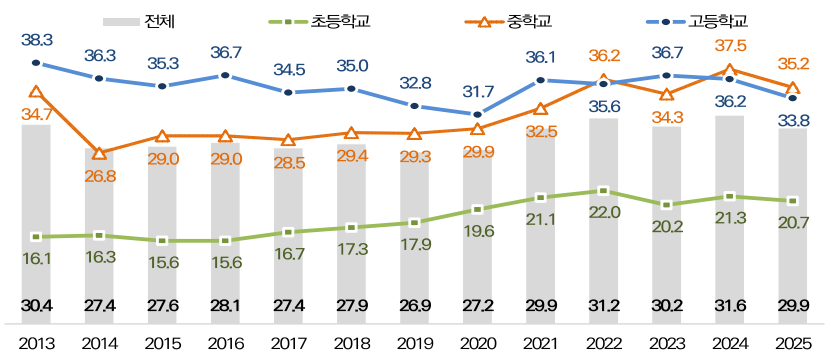
그림 Ⅳ-8-21.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2013~2025년)

표 Ⅳ-8-46.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00(0.89)	34.4	35.7	25.0	4.9	100.0(8,635)	
성별	남학생	1.90(0.88)	40.0	34.9	20.8	4.4	100.0(4,421)	155.248***
	여학생	2.12(0.89)	28.5	36.5	29.5	5.5	100.0(4,214)	
학교급	초등학교	1.78(0.86)	46.7	32.6	17.0	3.7	100.0(2,847)	323.334***
	중학교	2.13(0.89)	27.9	36.9	29.4	5.8	100.0(2,925)	
	고등학교	2.10(0.88)	28.7	37.5	28.6	5.2	100.0(2,863)	
지역 규모	대도시	1.97(0.88)	35.5	36.3	23.7	4.5	100.0(3,407)	20.060**
	중소도시	2.02(0.90)	34.4	34.3	26.3	5.0	100.0(4,181)	
	읍면지역	2.05(0.89)	30.9	39.0	24.1	6.0	100.0(1,04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9(0.88)	34.9	36.0	24.4	4.7	100.0(7,742)	42.791***
	한부모가정	2.18(0.90)	26.4	36.2	30.5	6.9	100.0(671)	
	조손가정	2.14(0.95)	32.6	27.0	34.1	6.3	100.0(76)	
	기타	1.98(1.03)	44.1	23.3	23.0	9.6	100.0(85)	
주관적 학업 성적	상	1.73(0.81)	47.7	34.6	15.1	2.7	100.0(3,205)	796.173***
	중	2.04(0.85)	30.2	39.8	26.1	3.8	100.0(3,516)	
	하	2.42(0.92)	19.6	29.9	39.7	10.8	100.0(1,864)	
주관적 경제 수준	상	1.86(0.85)	40.5	36.8	19.3	3.5	100.0(5,191)	444.229***
	중	2.17(0.89)	26.6	35.1	32.5	5.8	100.0(2,744)	
	하	2.45(0.95)	19.2	29.5	38.2	13.1	100.0(644)	

*p < .05, **p < .01, ***p < .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8-22. 자아존중감_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2013~2025년)

(3) 주관적 웰빙

①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행복한 정도를 묻고,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에게 그 이유를 묻는 방식으로 문항을 구성하고 있다.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84.9%가 '행복하다'('행복한 편이다'와 '매우 행복하다'의 합산 비율)라고 응답하였으며, 4점 척도 점수는 3.10점이었다. 지역규모를 제외한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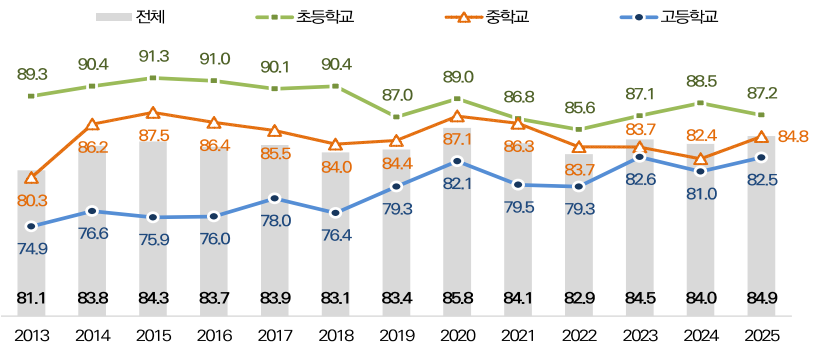
연차별로 보면, 각각의 변동성 안에서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행복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장기적으로 고등학생이 행복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잠깐 하락했던 것과 다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은 변동이 있으나 2024년에 비해서는 상승하였다. 초등학생은 가장 행복하다는 비율이 높지만, 2010년대 91.3%(2015년)까지 상승했던 것에 비하면 87.2%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의 행복도가 더 감소하지 않도록 추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표 Ⅳ-8-47. 행복한 정도(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	전체(N)	χ^2
전체		3.10(0.67)	1.3	13.8	58.7	26.2	100.0(8,334)	
성별	남학생	3.15(0.68)	1.5	12.2	56.0	30.3	100.0(4,261)	87.379***
	여학생	3.04(0.65)	1.1	15.5	61.6	21.8	100.0(4,073)	
학교급	초등학교	3.23(0.70)	1.3	11.5	50.2	37.0	100.0(2,837)	281.401***
	중학교	3.07(0.64)	1.1	14.1	62.0	22.8	100.0(2,795)	
	고등학교	2.99(0.63)	1.5	16.0	64.3	18.2	100.0(2,701)	
지역 규모	대도시	3.10(0.66)	1.4	13.0	59.6	26.1	100.0(3,272)	7.142
	중소도시	3.10(0.67)	1.3	14.2	57.7	26.8	100.0(4,057)	
	읍면지역	3.07(0.66)	1.2	14.9	60.0	23.9	100.0(1,00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1(0.66)	1.2	13.3	59.0	26.5	100.0(7,492)	49.345***
	한부모가정	2.99(0.68)	1.9	17.9	60.0	20.2	100.0(634)	
	조손가정	3.05(0.78)	2.7	19.6	47.6	30.1	100.0(70)	
	기타	3.06(0.89)	5.8	18.5	39.2	36.5	100.0(84)	
주관적 학업 성적	상	3.22(0.67)	1.3	10.1	53.9	34.8	100.0(3,136)	347.664***
	중	3.10(0.63)	0.9	12.9	61.4	24.8	100.0(3,395)	
	하	2.87(0.66)	2.3	21.7	62.4	13.6	100.0(1,759)	
주관적 경제 수준	상	3.18(0.64)	0.9	10.5	57.9	30.7	100.0(5,052)	288.497***
	중	3.01(0.66)	1.4	17.1	61.0	20.5	100.0(2,620)	
	하	2.79(0.72)	4.3	25.9	56.7	13.1	100.0(611)	

*p 〈 .05, **p 〈 .01, ***p 〈 .001.



* 주: '행복한 편이다'와 '매우 행복하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8-23. 행복한 정도(2013~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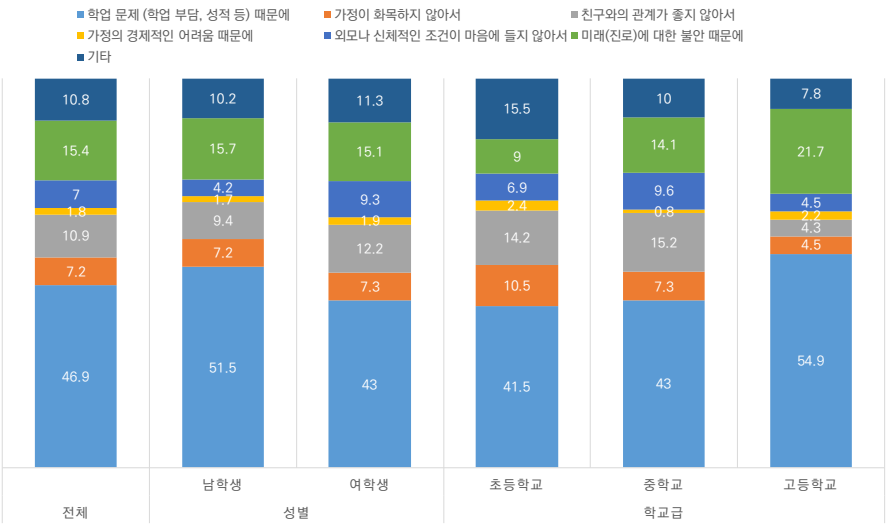
표 Ⅳ-8-48. 행복하지 않은 이유(2025년)

(단위 : %(명))

구분		학업 문제 (학업 부담, 성적 등)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기타	전체(N)	χ^2
전체		46.9	7.2	10.9	1.8	7.0	15.4	10.8	100.0(1,193)	
성별	남학생	51.5	7.2	9.4	1.7	4.2	15.7	10.2	100.0(548)	18.032**
	여학생	43.0	7.3	12.2	1.9	9.3	15.1	11.3	100.0(645)	
학교급	초등학교	41.5	10.5	14.2	2.4	6.9	9.0	15.5	100.0(352)	89.016***
	중학교	43.0	7.3	15.2	0.8	9.6	14.1	10.0	100.0(405)	
	고등학교	54.9	4.5	4.3	2.2	4.5	21.7	7.8	100.0(437)	
지역 규모	대도시	47.9	6.8	11.2	2.1	3.3	16.5	12.1	100.0(435)	24.913*
	중소도시	46.2	7.3	10.8	1.5	8.1	14.9	11.2	100.0(606)	
	읍면지역	46.8	7.9	10.6	2.1	12.9	14.2	5.5	100.0(1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9.0	6.8	11.1	1.4	7.5	13.8	10.5	100.0(1,028)	59.632***
	한부모가정	36.0	10.1	7.2	4.8	2.8	26.2	12.9	100.0(122)	
	조손가정	48.5	14.8	0.0	0.0	0.0	30.4	6.3	100.0(15)	
	기타	17.5	10.9	30.3	8.1	0.0	9.3	24.0	100.0(19)	
주관적 학업 성적	상	53.8	7.8	9.9	2.1	6.0	9.0	11.3	100.0(340)	39.204***
	중	49.6	7.5	11.9	1.9	5.7	13.2	10.2	100.0(441)	
	하	38.9	6.6	10.4	1.4	8.4	23.1	11.1	100.0(400)	
주관적 경제 수준	상	50.5	6.0	12.1	0.3	5.3	15.8	10.0	100.0(550)	67.695***
	중	47.1	7.8	9.6	1.2	6.7	15.2	12.5	100.0(458)	
	하	36.1	10.3	10.0	8.3	11.3	14.7	9.3	100.0(171)	

*p < .05, **p < .01, ***p < .001.

주) 2017년도 조사부터 전년도 보기문항 중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가 삭제되었음.



* 출처: 저자 작성 (2025「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도식화하였음)

그림 Ⅳ-8-24. 학교급별 행복하지 않은 이유(2025년)

'행복하지 않다'('행복하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행복하지 않다')로 응답한 아동·청소년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 7가지로 물어보았다. 그 이유는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기타' 등이었다.

전체 결과를 보면, 가장 높은 응답은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때문에'로 46.9%였고,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는 15.4%였다.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는 10.9%,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는 7.0%였다. 고등학교가 되면 학업 문제(54.9%) 뿐만 아니라 미래(진로) 불안(21.7%)의 비율도 높아진다. 이는 초등학생 시기보다 고등학생 시기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더 뚜렷해 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학생의 삶에서 현재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몰입으로 인한 휴식 부족, 미래의 진학과 진로에 대한 불안 등이 전반적으로 행복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행복에는 현재와 미래의 이중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② 삶의 만족도(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앞서 측정한 행복 정도는 '행복'에 대해 4개 선택지로만 구성되어 있어 분석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부분인 '삶의 만족도'를 0점부터 10점까지의 11점 척도로 단일하게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평균 삶의 만족도 점수는 7.13점이었고, 학교,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7.35점)에 비해 여학생(6.89점)의 삶의 만족도가 낮았다. 각 집단들 중 평균과 가장 차이가 나는 집단은 경제적 수준 '하' 집단이었고 5.87점으로 유일하게 6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삶의 만족도 취약 계층(여기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삶의 만족도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Ⅳ-8-49. 삶의 만족도(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N)	χ^2
전체		7.13(2.12)	0.4	0.5	1.7	4.0	5.5	10.4	10.6	17.8	21.4	13.1	14.6	100.0(8,509)	
성별	남학생	7.35(2.07)	0.5	0.4	1.5	3.0	4.3	9.0	9.6	18.1	22.9	13.7	17.0	100.0(4,388)	130.919***
	여학생	6.89(2.16)	0.3	0.7	1.9	5.0	6.8	11.9	11.7	17.4	19.8	12.4	12.0	100.0(4,121)	
학교급	초등학교	7.70(2.09)	0.4	0.5	1.0	2.7	4.2	7.7	7.9	14.3	19.1	19.2	23.2	100.0(2,867)	
	중학교	6.97(2.10)	0.6	0.5	1.8	4.4	5.6	11.1	11.4	18.1	22.9	12.9	10.7	100.0(2,866)	543.790***
	고등학교	6.71(2.06)	0.4	0.6	2.2	4.8	6.9	12.5	12.7	21.1	22.0	7.0	9.8	100.0(2,776)	
지역 규모	대도시	7.18(2.07)	0.4	0.5	1.5	3.3	5.5	10.1	10.7	18.3	22.4	12.9	14.5	100.0(3,346)	
	중소도시	7.11(2.16)	0.5	0.5	1.8	4.5	5.6	10.6	10.3	17.1	20.7	13.6	14.9	100.0(4,136)	20.442
	읍면지역	7.03(2.13)	0.5	0.7	1.7	4.1	5.7	10.7	11.9	18.9	20.5	11.5	13.9	100.0(1,02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17(2.10)	0.4	0.5	1.5	3.9	5.5	10.1	10.4	17.8	21.6	13.5	14.8	100.0(7,639)	
	한부모가정	6.70(2.19)	0.4	1.4	2.4	4.5	6.6	14.5	12.4	17.7	19.9	8.9	11.4	100.0(651)	77.868***
	조손가정	6.97(2.25)	0.0	0.0	3.3	7.9	2.8	9.6	15.0	18.5	16.0	9.8	17.2	100.0(73)	
	기타	6.79(2.72)	2.7	0.6	6.2	5.9	3.0	12.5	9.4	13.7	13.3	12.3	20.5	100.0(86)	
주관적 학업 성적	상	7.68(2.00)	0.4	0.3	1.0	3.1	3.4	5.4	8.5	16.8	22.9	17.4	20.7	100.0(3,189)	
	중	7.14(2.01)	0.2	0.5	1.2	3.0	5.7	11.9	10.5	18.7	22.4	13.0	12.9	100.0(3,468)	704.413***
	하	6.15(2.20)	0.9	1.2	3.5	7.3	9.2	16.2	14.5	17.7	16.9	5.7	7.0	100.0(1,807)	
주관적 경제 수준	상	7.51(1.96)	0.2	0.3	0.8	3.2	3.9	7.5	9.2	17.8	24.2	15.7	17.2	100.0(5,154)	
	중	6.70(2.19)	0.8	0.6	2.1	4.6	7.5	15.2	11.9	17.7	18.2	9.8	11.6	100.0(2,680)	593.997***
	하	5.87(2.28)	0.9	2.1	5.9	7.6	10.7	14.2	16.0	18.2	12.4	6.2	5.8	100.0(623)	

*p 〈 .05, **p 〈 .01, ***p 〈 .001.

주) 2017년 조사부터는 '삶의 수준'에서 '삶의 만족도'로 설문문항 문구 수정되었음.

⓪ 매우 불만족/ ⑤ 중간 / ⑩ 매우 만족

앞서 측정한 행복 정도와 삶의 만족도는 단일하게 측정하고 있지만,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다문항으로 측정하는 방식도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現 성평등가족부)에서 아동·청소년의 행복을 최상위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다각도로 측정하고 다양한 분석의 기반을 마련하기 다문항 척도를 추가하였다.

결과를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점 만점에서 7.09점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고, 지역은 일부 문항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이 문항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의 '하'집단이 6점 미만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 패턴도 동일하였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앞서 정서적 상태 관련 문항에서는 가족유형 중 조손가정이나 기타 유형이 가장 취약하게 나타났으나, 행복과 삶의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안녕감에서는 한부모가정이 더 낮은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표 Ⅳ-8-50. 주관적 안녕감 평균(CW-SWBS, 2025년)

(단위 : 점)

		1)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2)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	3)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4)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5) 나는 내 인생이 좋다	6) 나는 내 인생에 대한 행복감을 느낀다	전체 평균
전체		7.17	6.69	7.35	6.74	7.30	7.30	7.09
성별	남학생	7.44	6.90	7.57	6.89	7.62	7.58	7.33
	여학생	6.90	6.46	7.10	6.58	6.95	7.02	6.84
학교급	초등학교	7.72	7.47	8.09	7.27	8.09	8.06	7.78
	중학교	7.01	6.46	7.12	6.53	7.01	7.06	6.87
	고등학교	6.78	6.12	6.82	6.42	6.78	6.78	6.62
지역규모	대도시	7.19	6.72	7.38	6.85	7.36	7.35	7.14
	중소도시	7.19	6.71	7.34	6.69	7.28	7.31	7.09
	읍면지역	7.08	6.48	7.23	6.57	7.13	7.14	6.94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7.22	6.75	7.41	6.81	7.36	7.37	7.15
	한부모가정	6.76	6.05	6.74	6.06	6.65	6.73	6.50
	조손가정	6.93	6.12	7.18	6.49	7.40	7.05	6.86
	기타	6.84	6.30	7.22	6.50	7.01	7.09	6.83
주관적 학업 성적	상	7.73	7.44	8.01	7.39	8.00	7.95	7.75
	중	7.13	6.64	7.32	6.70	7.28	7.29	7.06
	하	6.30	5.47	6.24	5.69	6.11	6.22	6.01
주관적 경제 수준	상	7.56	7.12	7.80	7.18	7.76	7.75	7.53
	중	6.71	6.20	6.82	6.25	6.76	6.80	6.59
	하	5.99	5.25	5.89	5.23	5.83	5.86	5.68

4) 소결

이 절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에 대해 다양한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이 클러스터에서 주요하게 다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범죄 87.4%, 교통사고 81.8%)이 거주 지역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등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일상에서의 안전 수준은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의 영향이 높아지면서 위험도는 다소 높아지고 있었다. 디지털 기반의 '지능범죄' 피해가 급증하여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둘째, 청소년 4명 중 1명(27.0%)이 자살을 생각했고, 10명 중 1명(9.9%)은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여학생, 고학년, 저소득층 학생에게 가중되어 나타났으며, 그 근본 원인은 학업 문제와 미래 불안이었다. 특히 전체 연령집단에서 모두 남성의 자살률이 높은 상황에서 10대 자살률만 여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건강에 위기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매우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평균 수면 시간은 급격히 감소하여 고등학생은 6.1시간에 불과했고, 청소년 절반이 만성적 수면 부족을 호소했다. 규칙적 운동 실천율(36.8%) 역시 저조했으며, 특히 여학생의 운동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모든 건강 지표에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격차는 아동기부터 건강 불평등이 고착화될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다.

넷째, 고민이 있을 때 10명 중 1명의 청소년은 도움 받을 곳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고민 상담 시 교사나 전문 상담기관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찾는 비율은 1.4%에 불과했으며, 대다수가 어머니(40.4%)와 친구(36.1%)에게 의존했다.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묻는 질문에서 10명 중 1명꼴로 위기 시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이야기했으며, 지지체계의 부재는 조손가정 등 취약 가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 절에서 정리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쉴 권리'가 필요하다.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이 6.1시간에 불과하고, 그 원인은 오랫동안 '학업부담'이 되어 왔다. 아동·청소년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이 '쉴 권리'에 맞추어져 있어야 하며 적절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휴식 시간, 수면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청소년 4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10명 중 1명이 자해를 시도하는 현실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여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고통이

집중되는 현상은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불평등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학업'과 '미래 불안'이라는 변치 않는 원인은, 이 문제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닌 살인적인 경쟁 시스템의 필연적 결과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담 인프라 확충을 넘어, 경쟁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정신건강 검진 강화 및 고위험군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위기 개입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건강 관련 지표들은 성별, 가구 구성, 가구소득 등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건강 불평등이 출발선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심화되고 있는 지역 격차는 인프라의 격차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모든 아동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9. 생활 수준(standard of living)

생활 수준 클러스터 개요 및 주요 내용 요약

○ 생활 수준 클러스터 개요

- 생활수준은 올해에 별도로 분리된 클러스터임. 빈곤과 결핍에서 벗어나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는지에 관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6조는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제27조는 "당사국은 모든 아동에게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적시함. 즉, 국가는 아동·청소년 발달을 위해 기본적인 의식주를 지원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제공해야 함.

○ 생활 수준 클러스터의 주요 내용 요약

- 가처분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은 2018년 12.3%에서 2022년 9.5%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다만 10명 중 1명꼴로 빈곤상태에 있어 지속적인 관심 필요.
- 가정위탁 지원 예산과 자립지원 예산은 몇 년간 감소 추세를 보여 정책의 일관적 사업 운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드림스타트는 서비스 대상자 증가에도 전체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함.
- 아동·청소년의 7명 중 1명꼴(16.5%)로 가정의 경제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으며,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 걱정 비율이 높았음. 객관적 빈곤이 주관적, 심리적 고통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1)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수준

① 취약계층 아동 현황(빈곤율 포함)

가. 아동빈곤율

'아동빈곤율'은 아동가구 빈곤율로 빈곤가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수를 세서 전체 아동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18년 가처분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은 12.3%였으나, 2022년 9.5%로 낮아졌다. 시장소득 기준과 가처분소득 기준 아동빈곤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이 많아지면서 나타난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아동의 10명 중 1명꼴로 빈곤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

표 Ⅳ-9-1. 아동빈곤율(2018~2022년)

(단위 : %)

구분	중위소득 50%기준 상대적 아동빈곤율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2018	13.1	12.3	12.3
2019	12.1	10.8	10.6
2020	12.9	10.5	9.8
2021	12.7	10.2	9.9
2021*	12.7	10.2	9.6
2022	11.6	9.9	9.5

* 출처: 여유진, 최준영 (2024). 2024 빈곤통계연보 〈표 3-11〉 아동빈곤율(중위소득·지출) p.43.

* 주: 1) 시장소득은 시장(노동, 금융, 서비스 시장 등)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합계,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연금·정부지원금등 공적이전소득임.
2) 2021년(소득 기준연도) 이후 소득자료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급여 소득을 행정자료로 보완, 제공함(2021년 재분석* 결과는 기존 빈곤통계연보와 수치에 차이가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public assistant) 제도로 빈곤선 이하의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현금과 현물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수급자'로 명명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를 보면, 2024년 기준 수급자 수는 376,705명으로 전체 일반 수급자의 14.6%였다. 0~4세는 1.0%, 5~9세는 2.8%, 10~19세는 10.8%로 나타났다.

표 Ⅳ-9-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019~2024년)

(단위 : 명, %)

연도	0~4세	5~9세	10~19세	수급자 전체
2019	24,198	68,695	263,138	1,792,012
	1.4	3.8	14.7	100.0
2020	27,383	75,857	273,719	2,046,213
	1.3	3.7	13.4	100.0
2021	27,473	79,313	278,053	2,268,852
	1.2	3.5	12.3	100.0
2022	25,829	75,178	275,527	2,359,228
	1.1	3.2	11.7	100.0
2023	25,145	73,831	275,640	2,458,608
	1.0	3.0	11.2	100.0
2024	24,655	72,880	279,170	2,573,778
	1.0	2.8	10.8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25d).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주: 수급자 전체는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전체를 말함.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이 정에 따른 한부모가구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1,494천 가구였으며, 전체가구 대비 6.7%였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 대상인 한부모가족 중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190천가구, 이외 한부모 가족은 31천가구였다.

표 Ⅳ-9-3. 한부모가구 비율(2018~2023년)

(단위 : 천 가구, %)

구분	한부모 가구 수 (전체가구 대비 비율)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2018	1,539(7.5)	184	56
2019	1,529(7.3)	183	51
2020	1,533(7.1)	184	40
2021	1,510(6.9)	185	31
2022	1,494(6.7)	190	31

* 출처: 사회보장위원회 (2024).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3. p.45.

* 주: 1)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2) 저소득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동시보장결정가구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의미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는 194,273가구이고, 지원대상자는 484,180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2023년 기준 모자가족은 80.1%, 부자가족은 19.2%, 조손가족은 0.7%였다. 2019년 이래로 모자가족, 조손가족의 비율이 증가하고, 부자가족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Ⅳ-9-4.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2019~2023년)

(단위 : 세대, 명, %)

구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2019	수	182,606	453,045	143,740	356,895	37,969	94,064	897	2,086
	비율	100.0		78.7		20.8		0.5	
2020	수	184,006	457,236	145,482	361,998	37,660	93,234	864	2,004
	비율	100.0		79.1		20.5		0.4	
2021	수	185,461	463,084	146,973	367,366	37,432	93,260	1,056	2,458
	비율	100.0		79.2		20.2		0.6	
2022	수	190,421	474,194	151,733	378,176	37,381	92,964	1,307	3,054
	비율	100.0		79.7		19.6		0.7	
2023	수	194,273	484,180	155,661	388,010	37,245	92,948	1,367	3,222
	비율	100.0		80.1		19.2		0.7	

* 출처: 여성가족부(2024d).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5.
여성가족부(2025d). 202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5.

* 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동시보장결정가구 포함)
* 비율은 세대 기준임

②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가. 취약계층 보호·양육시설 지원

취약계층 보호·양육시설 지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예산 상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2025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이 241,483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2021년 148,600백만원에 비해 크게 증액된 것이다. 가정형 보호 체계인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예산은 2025년 기준 46,903백만원으로 2021년 26,746백만원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으나, 2024년 52,276백만원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다. '가정위탁 지원·운영' 예산은 5,706백만원으로 2021년 940백만원이었다가 2022년 7,995백만원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25년에는 5,706백만원이었다. '보호대상아동 발달지원' 예산은 1,038백만원이었으며, 2021년 3,164백만원에 비하여 2025년 1,038백만원으로 감소되고 있다. 시설보호를 넘어 지역사회와 가정형 돌봄으로 강화되는 추세 속에

서도 취약한 상황의 아동·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보호, 돌봄, 성장, 발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의 안정적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표 Ⅳ-9-5. 취약계층 보호·양육시설 예산(2021~2025년)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 연도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보호대상아동 발달지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가정위탁 지원·운영 (가정위탁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021	26,746	3,164	940	148,600
2022	39,426	1,276	7,995	158,000
2023	47,131	1,276	7,874	185,580
2024	52,276	1,038	6,340	213,666
2025	46,903	1,038	5,706	241,483

* 출처: 보건복지부(2021c).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0, 84.
보건복지부(2021d).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p.128, 133.
보건복지부(2022d). 2022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21, 85.
보건복지부(2022e).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p.443.452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23, 91.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p.157, 165, 172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특별회계). p.12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64
보건복지부(2024e).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p.168, 178, 185
보건복지부(2024f).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특별회계). p.9
보건복지부(2025).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51
보건복지부(2025).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p.178, 188, 201
보건복지부(2025).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특별회계). p.13

나. 드림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 중인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대상 맞춤형 통합지원 사업이다.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법 제37조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를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2023년 229개 시군구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예산은 541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드림스타트의 지원대상 가구는 2019년 122,557가구에서 2023년 122,557가구로 증가하였다. 아동 수 역시 165,917명으로 2019년 156,439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하지만 예산은 2019년 677억원에서 2023년 541억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예산 역시 함께 증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영유아기에서부터 청소년기(만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더 적극적인 예산지원 및 투자를 해야한다.

표 Ⅳ-9-6.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현황 및 이용 아동 수(2019~2023년)

(단위 : 억원, 명, 가구)

구분	시·군·구 (사업실시 단위)	사업예산(억원)	아동 수(명)	가구 수(가구)
2019	229	677	156,439	102,459
2020	229	551	160,501	105,730
2021	229	533	162,451	108,047
2022	229	537	163,779	110,176
2023	229	541	165,917	122,557

* 출처: 여성가족부(2025a). 2024 청소년백서. p.222

다.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은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이 성인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emnt Account)로 출발하여 디딤씨앗통장이라는 브랜드로 명명되었으며, 아동복지법 제42조, 43조, 44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아동적립(후원금)과 정부매칭 지원금이 1:2로 운영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2025).[160]

저축 현황을 보면 2024년 지원 아동수는 159,653명으로 2023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차상위가구 아동으로 범위를 확대한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 적립금은 71,841원이고, 월평균 매칭금은 94,806원이었다. 적립금은 10,612억원으로 2020년 5,397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표 Ⅳ-9-7. 디딤씨앗통장 저축현황(2020~2024년)

구분	지원아동수(명)	월평균 적립금(원)	월평균 매칭금(원)	적립금 누계(억원)
2020	74,685	65,013	39,632	5,397
2021	68,481	66,034	41,379	6,195
2022	64,791	76,308	89,582	7,359
2023	63,200	85,308	93,399	8,528
2024	159,653	71,841	94,806	10,612

* 출처: 여성가족부(2025a). 2024 청소년백서. p.212.

* 주: 만기(18세) 후 통장보유 아동 제외.

160)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페이지 참고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5&cntntsId=1142)

③ 아동·청소년의 가정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 정도(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생활 수준과 관련하여 주관적인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정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는 아동의 물질적 웰빙(material well-being)에 대해 주관적인 인식을 조사하는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항상 걱정한다는 5.4%, 자주 걱정한다는 49.6%,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33.9%였다. 성별,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가장 걱정 정도가 높은 집단은 경제적 수준 '하' 집단으로 27.2%가 '항상 걱정한다'고 응답하였고, 37.6%가 '자주 걱정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가족 유형 중 한부모가정으로 11.4%가 '항상 걱정한다', 17.9%가 '자주 걱정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기 경제적 불평등이 심리·정서적인 격차와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Ⅳ-9-8. 가정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 정도(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가끔 걱정한다	자주 걱정한다	항상 걱정한다	전체(N)	χ^2
전체		1.88(0.81)	33.9	49.6	11.1	5.4	100.0(8,714)	
성별	남학생	1.83(0.81)	37.5	47.2	10.2	5.0	100.0(4,473)	55.641***
	여학생	1.93(0.80)	30.0	52.2	12.1	5.7	100.0(4,241)	
학교급	초등학교	1.84(0.78)	35.3	50.0	10.1	4.6	100.0(2,897)	12.879*
	중학교	1.90(0.82)	33.3	49.7	11.1	5.8	100.0(2,940)	
	고등학교	1.90(0.82)	33.1	49.2	12.1	5.7	100.0(2,877)	
지역 규모	대도시	1.85(0.79)	35.6	49.3	10.2	4.9	100.0(3,434)	16.382*
	중소도시	1.89(0.81)	33.3	49.4	11.9	5.4	100.0(4,217)	
	읍면지역	1.93(0.82)	30.9	51.5	10.9	6.7	100.0(1,06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85(0.79)	35.1	49.7	10.5	4.7	100.0(7,814)	145.499***
	한부모가정	2.21(0.89)	19.7	51.0	17.9	11.4	100.0(680)	
	조손가정	1.97(0.88)	30.5	51.9	7.9	9.7	100.0(74)	
	기타	1.97(1.01)	39.2	37.7	9.8	13.2	100.0(86)	
주관적 학업 성적	상	1.78(0.77)	39.2	47.9	8.7	4.2	100.0(3,237)	191.608***
	중	1.86(0.77)	33.3	51.7	10.7	4.3	100.0(3,561)	
	하	2.08(0.88)	26.0	48.8	15.9	9.2	100.0(1,867)	
주관적 경제 수준	상	1.68(0.70)	43.6	47.9	5.9	2.6	100.0(5,248)	1725.699***
	중	2.02(0.77)	22.9	57.2	14.6	5.3	100.0(2,762)	
	하	2.89(0.84)	3.3	31.9	37.6	27.2	100.0(648)	

*p 〈 .05, **p 〈 .01, ***p 〈 .001.

* 주: 2024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3) 소결

이 절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클러스터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클러스터가 생활수준으로 나뉜 것이다. 여기서는 아동·청소년의 생활수준을 여러 지표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 클러스터에서 주요하게 다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기준을 적용하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사는 아동·청소년의 빈곤 비율을 봤을 때, 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동·청소년 10명 중 1명은 빈곤한 상태에 놓여져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예산의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돌봄은 강화되고 있으나 가정형, 자립지원 예산은 연차별로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아동 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예산은 줄어들고 있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아동·청소년 7명 중 1명(16.5%)꼴로 가정의 경제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경제적 불안 상태에 있었으며, 이는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에게 집중되고 있어 불평등의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절에서 정리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공정한 출발선 보장이라는 목표 아래 지속적인 사회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정책의 정책 기조는 전통적 시설 보호를 넘어 '탈시설화'와 '지역사회·가정형 돌봄'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탈시설화의 가장 핵심적인 대안인 '가정위탁 지원' 예산과, 보호 체계를 떠나는 아이들의 첫걸음을 지지해야 할 '자립지원' 예산이 수년간 감소하거나 정체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관점에서 핵심 사업들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인구감소 시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투자가 축소되지 않도록 사회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어 취약계층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대표적인 출발선 보장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서비스 대상 아동과 가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관련 예산은 오히려 수년 전보다 감소한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가로 막고 사업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는 지역에서 축적한 사회서비스의 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다. 사업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수요에 비례하는 현실적인 예산 유지

와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생활 수준에 대한 지향은 탈빈곤이 아니라 물질적 웰빙(material well-being)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7명 중 1명꼴로 집안의 경제 사정을 걱정하고, 특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이 이러한 중압감을 받는 현실은 물질적 결핍뿐만 아니라 정서적 결핍과 불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빈곤정책은 물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불평등과 물질적 웰빙의 시각으로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이 악화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 틀과 물질적 지원과 사회서비스 지원이 함께 가는 방식으로 조율되어야 한다.

10.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환경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환경 클러스터 개요 및 주요 내용 요약

○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환경 클러스터 개요

-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환경은 새롭게 제안된 클러스터로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환경과 연관되어 있음. 특히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발간한 일반논평 제25호(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제26호(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은 기존의 아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관심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 여기서는 지역사회 환경, 디지털 환경, 기후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지표를 구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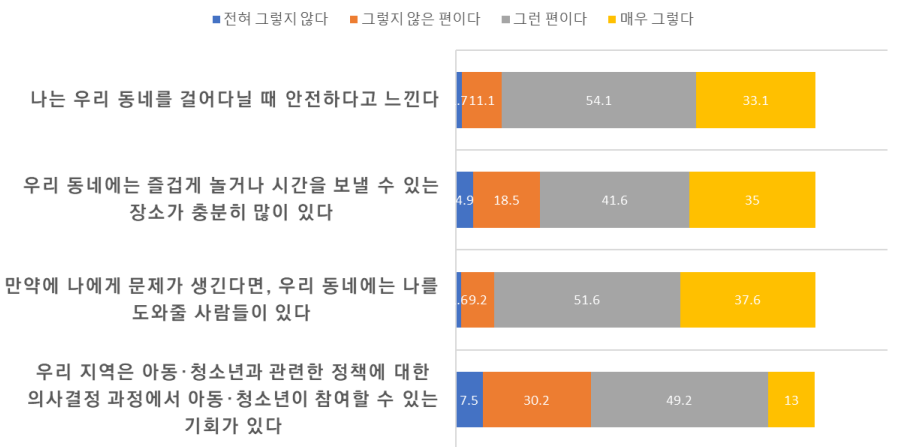
○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환경 클러스터의 주요 내용 요약

- 지역사회에 대해 아동·청소년들은 걸어다닐 때 안전하다(87.2%), 지역에 즐겁게 시간을 보낼 장소가 있다(76.6%) 등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였으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기회가 있다(62.2%)에 대한 동의율은 낮았음.
- 디지털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유출(62.2%)과 사진·영상 유출(60.5%)에 대한 걱정이 높게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과 고학년에서의 걱정이 높은 편이었음
- 디지털 권리 보호 노력에 대해 학교(82.2%)와 정부(75.1%)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온라인 게임 업체(66.8%)와 인터넷 업체(60.9%) 등 민간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이었음.
- 디지털 환경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 10명 중 3명(29.0%)은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남.
- 기후환경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10명 중 8명(80.5%)이 기후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10명 중 6명(60.2%)은 자신에게도 영향이 심각하다고 느낌.
- 학교 환경교육에 대해 충분하다는 긍정 응답은 64.5%였으나, 이 비율은 입시 부담이 가중되는 고등학교(52.6%)에서 하락하여 교육 지속성의 한계를 보임.

1)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환경

(1) 지역사회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4년 조사에서부터는 아동·청소년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4가지 질문이 추가되었다. 이 문항은 Children's World에서 진행하는 국제아동삶의질조사(ISCWeB)의 문항으로 4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의 안전, 놀이/여가, 이웃으로부터의 도움, 지역사회 참여 등 문항이다.



* 출처: 저자 작성 (2025「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도식화하였음)

그림 Ⅳ-10-1.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인식(2025년)

각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 '나는 우리 동네를 걸어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87.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우리 동네에는 즐겁게 놀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많이 있다'는 76.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만약에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동네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89.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에는 62.2%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다른 문항들에 비해 긍정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3%에 불과하였다. 이는 지역사회에

서 투표권이 없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정책 참여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가지 질문들을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우리 동네를 걸어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에 대한 긍정 비율('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은 전체가 87.2%였으며 남학생 89.5%, 여학생 84.6%로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 규모에서는 대도시 87.5%, 읍면지역 84.3%로 농산어촌에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수준에서는 '상'인 집단은 89.1%, '하'인 집단은 79%로 계층 간 주거환경, 지역사회환경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Ⅳ-10-1. 거주지역 상황_1) 나는 우리 동네를 걸어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18(0.69)	1.7	11.1	54.1	33.1	100.0(8,738)	
성별	남학생	3.28(0.70)	2.0	8.5	48.7	40.8	100.0(4,495)	278.501***
	여학생	3.08(0.66)	1.5	13.9	59.8	24.8	100.0(4,243)	
학교급	초등학교	3.28(0.71)	1.7	10.2	46.2	41.9	100.0(2,906)	161.007***
	중학교	3.12(0.68)	1.8	12.5	57.6	28.1	100.0(2,951)	
	고등학교	3.15(0.67)	1.8	10.6	58.4	29.2	100.0(2,881)	
지역 규모	대도시	3.20(0.69)	1.5	11.0	53.9	33.6	100.0(3,441)	12.240
	중소도시	3.19(0.69)	1.7	10.7	54.5	33.1	100.0(4,234)	
	읍면지역	3.12(0.73)	2.7	13.1	53.4	30.9	100.0(1,06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9(0.68)	1.5	10.9	54.2	33.4	100.0(7,834)	42.437***
	한부모가정	3.10(0.71)	2.3	13.3	56.0	28.4	100.0(680)	
	조손가정	3.16(0.88)	5.0	16.7	35.3	43.0	100.0(76)	
	기타	3.04(0.86)	6.9	14.0	47.2	31.9	100.0(87)	
주관적 학업 성적	상	3.28(0.70)	1.7	9.5	48.3	40.6	100.0(3,244)	199.109***
	중	3.18(0.66)	1.4	10.0	57.5	31.0	100.0(3,568)	
	하	3.03(0.71)	2.6	15.6	58.0	23.8	100.0(1,878)	
주관적 경제 수준	상	3.25(0.68)	1.5	9.5	51.3	37.8	100.0(5,270)	172.685***
	중	3.11(0.67)	1.7	12.5	59.2	26.6	100.0(2,764)	
	하	2.97(0.75)	4.0	17.0	56.6	22.4	100.0(649)	

*p<.05, **p<.01, ***p<.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우리 동네에는 즐겁게 놀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많이 있다’에 대한 긍정 비율(‘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은 전체가 76.6%였으며, 남학생 79%, 여학생 74.2%로 성별 간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도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은 88.3%, 중학생은 72.2%, 고등학생은 69.4%로 학교급이 증가할수록 동네에 놀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도시규모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도시 78.8%, 중소도시 77.5%로 유사하였으나, 읍면지역은 66.3%로 낮게 나타났다. 주로 농산어촌에 해당하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은 여가, 놀이를 위한 공간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관적 경제 수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주관적 경제 수준이 ‘상’인 집단은 80.3%, ‘중’인 집단은 72.9%, ‘하’인 집단은 62.9%로 주관적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2. 거주지역 상황_2) 우리 동네에는 즐겁게 놀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많이 있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7(0.85)	4.9	18.5	41.6	35.0	100.0(8,720)	
성별	남학생	3.13(0.86)	5.0	16.0	39.6	39.4	100.0(4,483)	89.879***
	여학생	3.00(0.84)	4.8	21.1	43.8	30.4	100.0(4,237)	
학교급	초등학교	3.40(0.75)	2.3	9.4	34.7	53.6	100.0(2,895)	748.231***
	중학교	2.94(0.85)	5.6	22.1	44.4	27.8	100.0(2,948)	
	고등학교	2.86(0.85)	6.8	23.8	45.8	23.6	100.0(2,877)	
지역 규모	대도시	3.11(0.84)	4.5	16.7	42.2	36.6	100.0(3,435)	88.679***
	중소도시	3.09(0.84)	4.3	18.2	42.0	35.5	100.0(4,222)	
	읍면지역	2.85(0.93)	8.7	25.0	38.5	27.8	100.0(1,06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9(0.84)	4.4	18.1	41.9	35.6	100.0(7,819)	64.028***
	한부모가정	2.88(0.91)	8.5	22.8	41.4	27.3	100.0(678)	
	조손가정	2.91(1.07)	14.5	18.0	29.4	38.1	100.0(75)	
	기타	3.14(0.94)	6.4	18.5	30.2	44.9	100.0(87)	
주관적 학업 성적	상	3.21(0.85)	4.1	15.2	35.7	44.9	100.0(3,239)	363.263***
	중	3.08(0.81)	4.0	17.5	45.2	33.3	100.0(3,561)	
	하	2.79(0.87)	8.1	25.6	45.2	21.0	100.0(1,871)	
주관적 경제 수준	상	3.17(0.84)	4.1	15.6	39.5	40.8	100.0(5,256)	280.303***
	중	2.96(0.83)	4.9	22.2	45.2	27.7	100.0(2,759)	
	하	2.71(0.91)	11.6	25.5	43.5	19.4	100.0(649)	

*p<.05, **p<.01, ***p<.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만약에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동네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에 대한 긍정 비율('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은 전체가 89.2%이고, 남학생은 89.5%, 여학생은 88.9%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92.9%, 중학생이 88.2%, 고등학생이 86.6%로 응답하여 초등학생의 긍정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 규모를 보면 대도시가 90.3%, 중소도시가 88.9%, 읍면지역이 86.8%로 대도시가 읍면지역보다 긍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 수준으로 보면 '상'집단은 91.5%, '하'집단은 79.5%로 비교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3. 거주지역 상황_3) 만약에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동네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25(0.69)	1.6	9.2	51.6	37.6	100.0(8,701)	
성별	남학생	3.28(0.70)	1.8	8.7	48.8	40.7	100.0(4,476)	41.320***
	여학생	3.22(0.67)	1.5	9.6	54.6	34.3	100.0(4,225)	
학교급	초등학교	3.43(0.66)	1.2	5.9	41.2	51.7	100.0(2,879)	393.504***
	중학교	3.20(0.68)	1.5	10.4	54.6	33.6	100.0(2,946)	
	고등학교	3.12(0.68)	2.2	11.1	58.9	27.7	100.0(2,876)	
지역 규모	대도시	3.28(0.67)	1.3	8.3	51.7	38.6	100.0(3,430)	24.079***
	중소도시	3.25(0.69)	1.7	9.4	50.7	38.2	100.0(4,211)	
	읍면지역	3.17(0.71)	2.4	10.9	54.6	32.2	100.0(1,06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26(0.68)	1.5	8.7	51.6	38.1	100.0(7,798)	54.924***
	한부모가정	3.14(0.71)	2.0	13.3	53.8	30.9	100.0(678)	
	조손가정	3.20(0.82)	4.0	12.8	42.6	40.6	100.0(75)	
	기타	3.19(0.91)	8.0	9.1	39.3	43.7	100.0(88)	
주관적 학업 성적	상	3.39(0.67)	1.2	6.6	43.8	48.4	100.0(3,227)	367.648***
	중	3.24(0.66)	1.4	8.6	54.8	35.2	100.0(3,553)	
	하	3.04(0.70)	2.9	14.4	58.9	23.8	100.0(1,871)	
주관적 경제 수준	상	3.34(0.67)	1.5	7.0	47.7	43.8	100.0(5,243)	275.844***
	중	3.15(0.67)	1.5	11.2	57.6	29.7	100.0(2,755)	
	하	2.98(0.73)	3.7	16.8	57.1	22.4	100.0(648)	

*p<.05, **p<.01, ***p<.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2024 변경 전)

‘우리 지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에 대한 긍정 비율(‘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은 62.2%였다. 다른 지역사회 관련 지표들에 비해 낮은 긍정 비율이 특징적이다. 긍정 응답 비율에 대해 성별로 나누어보면 남학생은 65.1%, 여학생은 59.2%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지역에서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이 64.6%, 고등학생이 59.8%로 중학생의 긍정 인식 비율이 더 높았다. 지역 규모별로 보면, 대도시는 63.6%, 중소도시는 62.1%, 읍면지역은 58.6%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읍면지역에서 자신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적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장 큰 차이는 주관적 경제 수준에 따라 나타나고 있었는데, 주관적 경제 수준으로 보면 ‘상’집단은 65%, ‘하’ 집단은 48.4%로 비교적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4. 거주지역 상황_4) 우리 지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2025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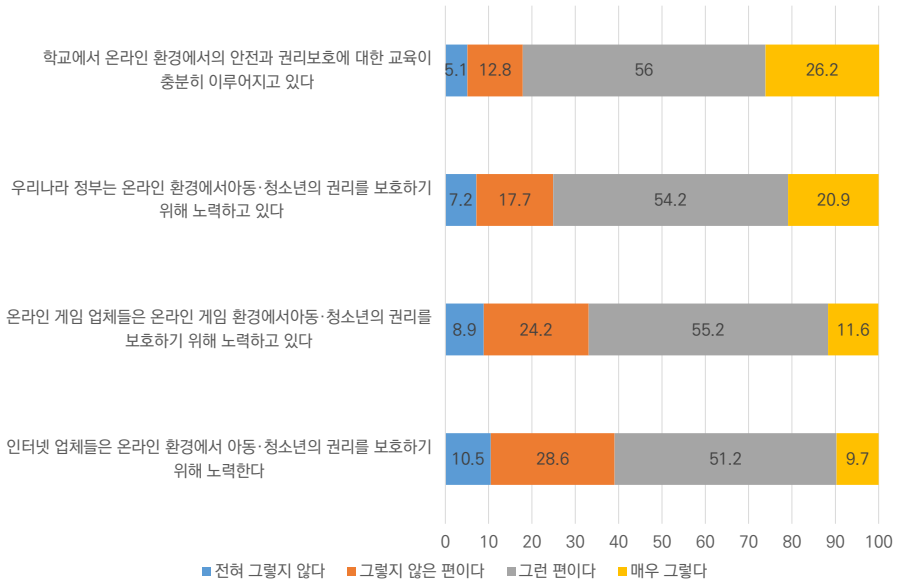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68(0.79)	7.5	30.2	49.2	13.0	100.0(5,807)	
성별	남학생	2.74(0.84)	8.4	26.6	48.2	16.9	100.0(2,993)	105.252***
	여학생	2.61(0.74)	6.7	34.1	50.3	8.9	100.0(2,814)	
학교급	중학교	2.71(0.77)	6.5	28.9	51.6	13.0	100.0(2,938)	18.680***
	고등학교	2.64(0.81)	8.6	31.6	46.8	13.0	100.0(2,869)	
지역 규모	대도시	2.70(0.80)	7.4	28.9	49.6	14.0	100.0(2,315)	18.526**
	중소도시	2.67(0.77)	6.9	31.0	50.2	11.9	100.0(2,677)	
	읍면지역	2.62(0.84)	9.9	31.5	44.9	13.7	100.0(81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68(0.79)	7.3	30.5	49.4	12.9	100.0(5,120)	31.521***
	한부모가정	2.63(0.81)	9.6	29.2	49.9	11.3	100.0(548)	
	조손가정	2.61(0.80)	8.4	33.4	47.2	10.9	100.0(44)	
	기타	2.96(0.95)	6.6	26.7	31.0	35.7	100.0(53)	
주관적 학업 성적	상	2.68(0.83)	8.9	29.0	47.7	14.4	100.0(1,669)	24.490***
	중	2.70(0.77)	6.0	31.1	49.6	13.3	100.0(2,417)	
	하	2.64(0.79)	8.5	30.2	50.2	11.0	100.0(1,686)	
주관적 경제 수준	상	2.74(0.79)	6.6	28.4	49.9	15.1	100.0(3,187)	77.990***
	중	2.65(0.78)	7.7	30.7	50.7	10.9	100.0(2,040)	
	하	2.44(0.82)	12.8	38.9	40.2	8.2	100.0(536)	

*p<.05, **p<.01, ***p<.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2)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① 아동·청소년이 인식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보호 노력 (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 출처: 저자 작성 (2025「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도식화하였음)

그림 Ⅳ-10-2. 디지털 환경에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기업, 학교의 노력 인식(2025년)

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보호노력 인식 정도를 파악하였다. 첫째는 인터넷 업체, 온라인 게임 업체, 우리나라 정부 등이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는지이다. 둘째는 학교에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이다.

먼저, 인터넷 업체, 온라인 게임 업체, 우리나라 정부 등이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고 생각하는지를 보면, 정부(75.1%), 온라인 게임 업체(66.8%), 인터넷 업체(60.9%) 순으로 권리보

호를 위해 노력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포털의 권리보호 노력이 온라인 게임 업체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표 Ⅳ-10-5.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_1) 인터넷 업체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60(0.80)	10.5	28.6	51.2	9.7	100.0(5,812)	
성별	남학생	2.62(0.85)	12.1	26.3	49.6	12.1	100.0(2,997)	63.356***
	여학생	2.58(0.75)	8.9	31.1	52.8	7.2	100.0(2,815)	
학교급	중학교	2.68(0.78)	8.4	26.2	54.0	11.4	100.0(2,935)	62.320***
	고등학교	2.52(0.81)	12.6	31.1	48.2	8.1	100.0(2,877)	
지역 규모	대도시	2.60(0.81)	11.0	27.6	51.9	9.6	100.0(2,323)	7.377
	중소도시	2.61(0.79)	9.9	29.0	51.6	9.5	100.0(2,674)	
	읍면지역	2.58(0.83)	11.3	30.2	47.6	10.9	100.0(81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61(0.80)	10.2	28.8	51.3	9.7	100.0(5,151)	22.553**
	한부모가정	2.55(0.82)	12.8	27.4	51.7	8.0	100.0(550)	
	조손가정	2.79(0.90)	9.6	23.3	45.3	21.8	100.0(45)	
	기타	2.54(0.99)	18.2	26.3	38.5	17.1	100.0(53)	
주관적 학업 성적	상	2.59(0.85)	12.6	27.8	48.0	11.6	100.0(1,676)	35.890***
	중	2.64(0.78)	8.7	28.4	52.9	10.0	100.0(2,420)	
	하	2.56(0.79)	11.2	29.4	51.9	7.5	100.0(1,686)	
주관적 경제 수준	상	2.63(0.81)	10.5	27.1	51.4	10.9	100.0(3,189)	19.128**
	중	2.58(0.78)	10.1	30.1	51.5	8.3	100.0(2,050)	
	하	2.52(0.81)	12.5	31.0	48.6	7.9	100.0(534)	

*p 〈 .05, **p 〈 .01,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다음으로 인터넷 업체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고 생각하는 비율은 60.9%였으며,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 남성(61.7%)이 여성(60%)보다, 학교급별로 중학생(65.4%)이 고등학생(56.3%)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온라인 게임 업체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고 생각하는 비율은 66.8%였으며, 성별,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집단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학교급별로 중학생(70.5%)이 고등학생(63.1%)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Ⅳ-10-6.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_2)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70(0.79)	8.9	24.2	55.2	11.6	100.0(5,808)	
성별	남학생	2.71(0.85)	11.0	22.1	52.0	14.8	100.0(2,995)	107.787***
	여학생	2.68(0.72)	6.7	26.4	58.7	8.2	100.0(2,813)	
학교급	중학교	2.77(0.77)	7.3	22.2	57.0	13.5	100.0(2,932)	51.163***
	고등학교	2.62(0.80)	10.6	26.3	53.4	9.7	100.0(2,876)	
지역 규모	대도시	2.69(0.79)	8.8	24.7	54.6	11.9	100.0(2,322)	11.006
	중소도시	2.70(0.77)	8.6	23.4	57.1	10.9	100.0(2,673)	
	읍면지역	2.67(0.83)	10.4	25.5	51.0	13.2	100.0(81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70(0.78)	8.8	23.9	55.8	11.6	100.0(5,148)	15.425
	한부모가정	2.64(0.80)	9.9	27.0	52.7	10.4	100.0(549)	
	조손가정	2.82(0.86)	8.1	23.0	48.1	20.8	100.0(45)	
	기타	2.61(0.96)	13.8	30.7	35.6	19.8	100.0(53)	
주관적 학업 성적	상	2.69(0.84)	10.3	24.4	51.2	14.1	100.0(1,676)	37.353***
	중	2.72(0.76)	7.5	24.4	56.4	11.7	100.0(2,416)	
	하	2.66(0.78)	9.8	23.6	57.6	9.0	100.0(1,686)	
주관적 경제 수준	상	2.72(0.80)	9.0	23.1	54.7	13.2	100.0(3,186)	21.720**
	중	2.68(0.77)	8.5	25.5	55.9	10.1	100.0(2,049)	
	하	2.62(0.78)	10.4	24.9	56.5	8.2	100.0(534)	

*p 〈 .05, **p 〈 .01,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마지막으로 정부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고 생각하는 비율은 75.1%였으며,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번에는 여성(77.7%)이 남성(72.7%)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여성 청소년이 정부의 노력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문항은 초등학생도 조사되었는데, 초등학생(86.8%), 중학생(74.2%), 고등학생(64.2%) 순이었다.

표 Ⅳ-10-7.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_3) 우리나라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89(0.81)	7.2	17.7	54.2	20.9	100.0(8,700)	
성별	남학생	2.84(0.88)	10.3	17.0	50.9	21.8	100.0(4,476)	145.930***
	여학생	2.94(0.73)	4.0	18.3	57.8	19.9	100.0(4,224)	
학교급	초등학교	3.21(0.76)	3.7	9.5	49.4	37.4	100.0(2,893)	917.553***
	중학교	2.82(0.79)	7.9	17.9	58.4	15.8	100.0(2,932)	
	고등학교	2.63(0.79)	10.2	25.6	54.8	9.4	100.0(2,875)	
지역 규모	대도시	2.90(0.81)	6.9	17.3	54.3	21.4	100.0(3,435)	11.935
	중소도시	2.89(0.81)	7.2	17.4	54.2	21.2	100.0(4,207)	
	읍면지역	2.81(0.82)	8.4	20.1	53.8	17.7	100.0(1,05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0(0.81)	7.0	17.4	54.6	21.0	100.0(7,832)	30.130***
	한부모가정	2.81(0.83)	8.3	21.0	52.2	18.5	100.0(682)	
	조손가정	2.85(0.93)	11.3	17.6	46.1	25.0	100.0(76)	
	기타	2.69(1.03)	18.6	16.8	41.6	22.9	100.0(88)	
주관적 학업 성적	상	3.00(0.83)	6.3	15.9	49.0	28.8	100.0(3,235)	286.063***
	중	2.89(0.78)	6.4	17.0	57.4	19.1	100.0(3,561)	
	하	2.68(0.80)	10.5	21.8	57.2	10.5	100.0(1,871)	
주관적 경제 수준	상	2.96(0.82)	6.6	15.9	52.4	25.1	100.0(5,249)	186.405***
	중	2.81(0.77)	7.3	19.4	58.4	14.9	100.0(2,764)	
	하	2.63(0.85)	12.6	23.8	51.5	12.1	100.0(647)	

*p 〈 .05, **p 〈 .01,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다음으로 학교에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는 82.2%의 청소년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84%)이 남성(80.4%)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92.6%), 중학교(82.2%), 고등학교(71.5%) 순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과 권리보호 교육이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므로 이것이 세대 간 차이인지, 연령에 적합한 교육 방식의 차이인지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표 Ⅳ-10-8.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_4) 학교에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3(0.77)	5.1	12.8	56.0	26.2	100.0(8,680)	
성별	남학생	3.01(0.82)	6.9	12.6	53.2	27.2	100.0(4,463)	78.147***
	여학생	3.06(0.71)	3.1	12.9	58.9	25.1	100.0(4,217)	
학교급	초등학교	3.37(0.68)	2.1	5.3	46.7	45.9	100.0(2,877)	1115.710***
	중학교	2.98(0.74)	5.3	12.6	61.3	20.9	100.0(2,931)	
	고등학교	2.75(0.76)	8.0	20.5	59.8	11.7	100.0(2,873)	
지역 규모	대도시	3.04(0.78)	4.9	13.7	54.3	27.1	100.0(3,426)	32.035***
	중소도시	3.05(0.76)	5.1	11.3	57.1	26.5	100.0(4,202)	
	읍면지역	2.94(0.77)	5.7	15.9	56.9	21.5	100.0(1,0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4(0.76)	4.8	12.6	56.4	26.2	100.0(7,814)	25.362**
	한부모가정	2.95(0.80)	6.4	15.6	54.3	23.8	100.0(680)	
	조손가정	3.01(0.92)	9.6	12.1	45.7	32.6	100.0(76)	
	기타	2.96(0.96)	10.6	15.6	40.5	33.3	100.0(88)	
주관적 학업 성적	상	3.18(0.78)	4.0	11.0	48.5	36.5	100.0(3,227)	374.074***
	중	3.02(0.74)	4.8	12.1	59.8	23.3	100.0(3,551)	
	하	2.82(0.76)	7.5	17.0	61.8	13.7	100.0(1,868)	
주관적 경제 수준	상	3.10(0.77)	4.5	11.5	53.1	30.9	100.0(5,238)	181.515***
	중	2.95(0.73)	5.3	13.8	61.7	19.3	100.0(2,756)	
	하	2.82(0.82)	8.7	18.4	55.5	17.5	100.0(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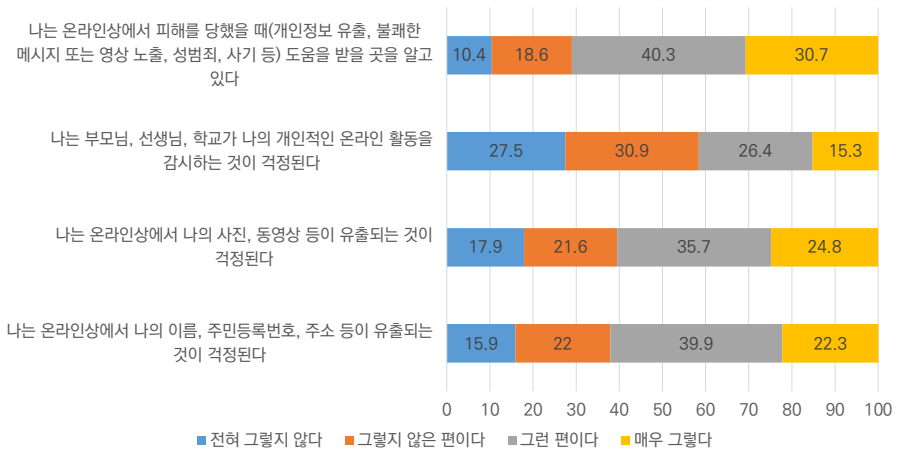
*p 〈 .05, **p 〈 .01,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②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에 대한 우려(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에 대한 우려를 조사하였다. 이는 두 가지로 조사되었는데 첫째는 개인정보유출 우려, 개인 사생활 유출 우려, 사생활 감시 우려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에 대한 우려였다. 둘째는 온라인 상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받을 곳을 알고 있는지였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에 대한 우려('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62.2%, 개인 사생활 유출 우려는 60.5%, 사생활 감시 우려는 41.7%였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유출에 대해 걱정하는 아동·청소년은 10명에 6명꼴이었으며, 사생활 감시를 걱정하는 아동·청소년은 10명에 4명꼴이었다. 사생활 유출을 우려하는 아동·청소년이 절반을 넘고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 상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 받을 곳을 알고 있는지는 71%라고 응답하였다. 다만, 도움 받을 곳을 모르고 있는 아동·청소년도 10명에 3명꼴(29%)로 나타났다.



* 출처: 저자 작성 (2025「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도식화하였음)

그림 Ⅳ-10-3.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침해 걱정 및 구제 방법 인지 여부(2025년)

구체적으로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62.2%였다.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68.1%)이 남성(56.5%)에 비해 우려하는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67.3%), 중학생(60%), 초등학생(59.4%)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표 Ⅳ-10-9.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_1)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69(0.99)	15.9	22.0	39.9	22.3	100.0(8,710)	
성별	남학생	2.56(1.04)	21.0	22.5	35.6	20.9	100.0(4,480)	204.617***
	여학생	2.82(0.91)	10.4	21.4	44.3	23.8	100.0(4,230)	
학교급	초등학교	2.64(1.07)	20.7	20.0	34.4	25.0	100.0(2,901)	151.199***
	중학교	2.64(0.96)	15.2	24.7	40.6	19.4	100.0(2,933)	
	고등학교	2.78(0.92)	11.6	21.1	44.7	22.6	100.0(2,876)	
지역 규모	대도시	2.68(0.99)	15.8	22.4	39.5	22.3	100.0(3,441)	4.184
	중소도시	2.68(0.99)	16.3	21.8	39.9	22.1	100.0(4,210)	
	읍면지역	2.74(0.97)	14.3	21.1	41.2	23.3	100.0(1,05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69(0.99)	15.7	21.7	40.3	22.2	100.0(7,840)	24.379**
	한부모가정	2.68(0.99)	15.2	23.8	38.3	22.7	100.0(684)	
	조손가정	2.60(1.17)	24.7	21.1	23.5	30.7	100.0(76)	
	기타	2.40(1.08)	25.9	27.4	27.2	19.5	100.0(88)	
주관적 학업 성적	상	2.66(1.04)	18.8	20.0	37.1	24.1	100.0(3,239)	54.548***
	중	2.70(0.96)	14.2	22.6	41.7	21.5	100.0(3,567)	
	하	2.69(0.96)	14.1	24.0	40.9	20.9	100.0(1,871)	
주관적 경제 수준	상	2.66(1.01)	17.6	21.3	38.8	22.3	100.0(5,259)	37.266***
	중	2.72(0.94)	12.9	23.5	41.8	21.7	100.0(2,765)	
	하	2.75(0.99)	14.8	20.5	39.5	25.2	100.0(647)	

*p 〈 .05, **p 〈 .01,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사진, 동영상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60.5%였다.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나, 가족유형의 유의도는 높지 않았다. 성별로는 여성(67.5%)이 남성(53.8%)에 비해 우려하는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64.5%), 중학생(59.5%), 초등학생(57.6%)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표 Ⅳ-10-10.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_2)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사진, 동영상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67(1.04)	17.9	21.6	35.7	24.8	100.0(8,703)	
성별	남학생	2.52(1.08)	23.5	22.6	31.9	21.9	100.0(4,475)	234.733***
	여학생	2.83(0.97)	11.9	20.6	39.6	27.9	100.0(4,228)	
학교급	초등학교	2.62(1.12)	23.3	19.2	29.5	28.1	100.0(2,896)	164.803***
	중학교	2.65(1.01)	16.7	23.8	37.0	22.5	100.0(2,932)	
	고등학교	2.75(0.97)	13.7	21.9	40.6	23.9	100.0(2,875)	
지역 규모	대도시	2.67(1.03)	17.7	21.7	36.1	24.6	100.0(3,435)	5.014
	중소도시	2.66(1.04)	18.5	21.6	35.2	24.6	100.0(4,209)	
	읍면지역	2.73(1.02)	16.0	21.5	36.1	26.5	100.0(1,05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67(1.04)	18.0	21.4	35.8	24.8	100.0(7,834)	18.921*
	한부모가정	2.73(1.01)	14.6	23.8	35.7	25.9	100.0(684)	
	조손가정	2.49(1.15)	28.3	19.2	28.2	24.3	100.0(76)	
	기타	2.45(1.13)	28.4	21.2	27.6	22.8	100.0(88)	
주관적 학업 성적	상	2.65(1.09)	21.2	19.7	31.9	27.3	100.0(3,238)	72.631***
	중	2.69(1.01)	16.3	22.3	37.8	23.6	100.0(3,563)	
	하	2.68(0.99)	15.5	23.6	37.9	23.0	100.0(1,868)	
주관적 경제 수준	상	2.64(1.06)	20.0	20.8	34.2	25.0	100.0(5,257)	50.736***
	중	2.72(0.99)	14.3	23.6	38.0	24.1	100.0(2,760)	
	하	2.74(1.03)	16.7	19.3	37.1	26.9	100.0(646)	

*p 〈 .05, **p 〈 .01,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나는 부모님, 선생님, 학교가 나의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걱정된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41.7%였다.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44.2%)이 남성(39.3%)에 비해 우려하는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44.4%), 중학생(44.8%)이 거의 비슷하였고 초등학생(35.8%)은 이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Ⅳ-10-11.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_3) 나는 부모님, 선생님, 학교가 나의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걱정된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29(1.03)	27.5	30.9	26.4	15.3	100.0(8,697)	
성별	남학생	2.22(1.04)	31.6	29.1	25.0	14.3	100.0(4,474)	77.743***
	여학생	2.37(1.01)	23.1	32.7	27.9	16.3	100.0(4,222)	
학교급	초등학교	2.16(1.07)	35.1	29.1	20.4	15.4	100.0(2,897)	158.875***
	중학교	2.37(1.01)	23.3	31.9	28.9	15.9	100.0(2,930)	
	고등학교	2.35(1.00)	24.0	31.6	29.9	14.5	100.0(2,870)	
지역 규모	대도시	2.30(1.03)	27.4	30.9	26.2	15.5	100.0(3,435)	8.560
	중소도시	2.27(1.03)	28.3	30.5	26.5	14.7	100.0(4,205)	
	읍면지역	2.36(1.03)	24.4	32.1	26.6	16.9	100.0(1,05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29(1.03)	27.6	31.0	26.3	15.1	100.0(7,826)	11.415
	한부모가정	2.38(1.03)	24.2	30.6	28.1	17.1	100.0(684)	
	조손가정	2.24(1.11)	35.2	22.3	25.9	16.6	100.0(76)	
	기타	2.15(1.06)	34.5	29.8	21.5	14.1	100.0(88)	
주관적 학업 성적	상	2.25(1.08)	32.1	27.5	23.9	16.6	100.0(3,238)	94.099***
	중	2.28(1.00)	26.1	33.5	26.9	13.4	100.0(3,560)	
	하	2.40(1.01)	22.4	31.6	29.5	16.5	100.0(1,865)	
주관적 경제 수준	상	2.24(1.05)	30.6	30.1	24.3	15.0	100.0(5,250)	78.502***
	중	2.37(0.99)	22.5	33.0	29.4	15.1	100.0(2,762)	
	하	2.42(1.04)	23.9	27.9	30.0	18.2	100.0(645)	

*p 〈 .05, **p 〈 .01,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다음으로 '나는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개인정보 유출, 불쾌한 메시지 또는 영상 노출, 성범죄, 사기 등) 도움을 받을 곳을 알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71%였다.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73%)이 남성(69.1%)에 비해 인지 비율이 높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72.3%), 초등학생(71.3%), 고등학생(69.3%) 순으로 인지 비율이 높았다. 전체 평균이 71%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지역별로 읍면지역(66.7%), 가구유형별로 조손가정(59.1%)과 기타(47.4%) 유형, 경제적 수준별로 '하'집단(63.9%)이 낮게 나타나 지원체계의 인지율과 접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Ⅳ-10-12.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_4) 나는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개인정보 유출, 불쾌한 메시지 또는 영상 노출, 성범죄, 사기 등) 도움을 받을 곳을 알고 있다(2025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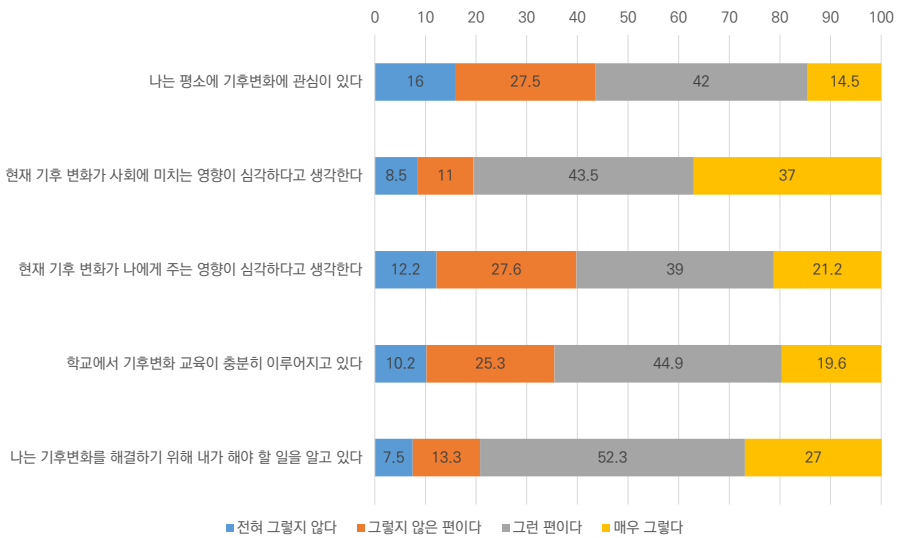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1(0.95)	10.4	18.6	40.3	30.7	100.0(8,700)	
성별	남학생	2.88(1.01)	13.2	17.7	36.9	32.2	100.0(4,478)	105.741***
	여학생	2.95(0.88)	7.5	19.5	43.9	29.1	100.0(4,223)	
학교급	초등학교	2.98(1.04)	13.0	15.7	31.9	39.4	100.0(2,896)	247.880***
	중학교	2.92(0.91)	9.0	18.6	43.9	28.4	100.0(2,933)	
	고등학교	2.84(0.90)	9.2	21.5	45.1	24.2	100.0(2,871)	
지역 규모	대도시	2.92(0.95)	10.4	17.8	40.7	31.1	100.0(3,436)	17.847**
	중소도시	2.93(0.95)	9.9	18.7	39.9	31.5	100.0(4,205)	
	읍면지역	2.80(0.96)	12.4	20.8	40.6	26.1	100.0(1,05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3(0.94)	10.0	18.3	40.7	31.0	100.0(7,830)	47.824***
	한부모가정	2.84(0.97)	12.2	19.9	39.4	28.5	100.0(684)	
	조손가정	2.73(1.11)	18.5	22.3	27.0	32.1	100.0(76)	
	기타	2.43(1.11)	26.9	25.6	25.5	21.9	100.0(88)	
주관적 학업 성적	상	3.00(0.98)	10.8	15.5	36.4	37.3	100.0(3,238)	134.027***
	중	2.90(0.92)	9.7	19.6	42.4	28.4	100.0(3,563)	
	하	2.79(0.93)	11.5	21.8	43.0	23.7	100.0(1,867)	
주관적 경제 수준	상	2.97(0.96)	10.4	16.5	39.3	33.8	100.0(5,252)	79.792***
	중	2.85(0.92)	10.0	21.3	42.5	26.2	100.0(2,763)	
	하	2.77(0.97)	12.6	23.5	38.5	25.4	100.0(645)	

*p 〈 .05, **p 〈 .01,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2) 기후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① 환경에 대한 권리 인식 정도(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환경에 대한 인식은 5가지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영향인식, 교육 충분성, 본인이 해야할 일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결과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로 살펴보면 '나는 평소에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다'는 56.5%, '현재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80.5%, '현재 기후 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60.2%,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64.5%, '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는 79.3%였다.



* 출처: 저자 작성 (2025「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도식화하였음)

그림 Ⅳ-10-4.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관심 정도(2025년)

'나는 평소에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다' 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는 56.6%였다. 이는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 54.5%, 여성 58.2%였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8.2%, 중학교 50.9%, 고등학교 60.5%였다. 전체적으로 응답자 2명중에 1명 이상이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표 Ⅳ-10-13. 기후환경 변화와 권리_1) 나는 평소에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55(0.93)	16.0	27.5	42.0	14.5	100.0(8,712)	
성별	남학생	2.51(0.96)	19.0	26.5	39.5	15.0	100.0(4,480)	68.773***
	여학생	2.60(0.88)	12.9	28.5	44.6	14.0	100.0(4,232)	
학교급	초등학교	2.60(0.95)	15.4	26.4	40.8	17.4	100.0(2,900)	86.770***
	중학교	2.44(0.92)	18.3	30.8	39.5	11.4	100.0(2,936)	
	고등학교	2.61(0.90)	14.2	25.2	45.7	14.8	100.0(2,876)	
지역 규모	대도시	2.58(0.92)	14.9	27.2	43.0	14.9	100.0(3,443)	10.386
	중소도시	2.54(0.93)	16.3	28.1	41.1	14.5	100.0(4,209)	
	읍면지역	2.51(0.94)	18.3	26.0	42.2	13.6	100.0(1,06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56(0.92)	15.7	27.4	42.2	14.7	100.0(7,842)	27.805**
	한부모가정	2.49(0.91)	16.7	29.9	41.1	12.3	100.0(684)	
	조손가정	2.50(1.01)	22.3	21.1	41.2	15.5	100.0(76)	
	기타	2.31(1.09)	32.5	19.1	33.1	15.3	100.0(88)	
주관적 학업 성적	상	2.72(0.94)	13.1	22.7	43.7	20.6	100.0(3,240)	255.366***
	중	2.51(0.89)	15.3	30.2	43.0	11.6	100.0(3,568)	
	하	2.34(0.93)	22.4	30.6	37.3	9.7	100.0(1,871)	
주관적 경제 수준	상	2.60(0.92)	14.7	26.6	43.0	15.6	100.0(5,259)	39.562***
	중	2.47(0.92)	17.7	29.5	40.7	12.1	100.0(2,766)	
	하	2.52(0.97)	18.7	26.1	39.3	15.9	100.0(647)	

*p 〈 .05, **p 〈 .01,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현재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은 80.5%였으며,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 76.4%, 여성 84.9%였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4.7%, 중학교 80.9%, 고등학교 86%였다. 전체적으로 응답자 10명중 8명꼴로 기후 변화의 영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Ⅳ-10-14. 기후환경 변화와 권리_2) 현재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09(0.90)	8.5	11.0	43.5	37.0	100.0(8,709)	
성별	남학생	3.00(0.96)	11.2	12.5	41.2	35.2	100.0(4,478)	114.866***
	여학생	3.18(0.82)	5.7	9.4	46.0	38.9	100.0(4,231)	
학교급	초등학교	3.02(0.96)	10.0	15.3	37.1	37.6	100.0(2,897)	157.271***
	중학교	3.06(0.89)	8.8	10.3	46.6	34.3	100.0(2,935)	
	고등학교	3.19(0.84)	6.7	7.3	46.8	39.2	100.0(2,876)	
지역 규모	대도시	3.11(0.89)	7.9	10.8	43.5	37.9	100.0(3,440)	5.894
	중소도시	3.08(0.91)	8.7	11.3	43.5	36.4	100.0(4,209)	
	읍면지역	3.07(0.92)	9.7	10.0	43.7	36.7	100.0(1,06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0(0.90)	8.3	10.9	43.3	37.4	100.0(7,838)	51.174***
	한부모가정	3.11(0.86)	7.5	9.5	47.9	35.1	100.0(684)	
	조손가정	3.01(0.93)	11.0	9.7	47.2	32.2	100.0(76)	
	기타	2.53(1.10)	24.6	20.9	31.7	22.7	100.0(88)	
주관적 학업 성적	상	3.21(0.89)	7.6	9.0	38.7	44.8	100.0(3,237)	150.667***
	중	3.04(0.88)	8.1	12.7	45.9	33.3	100.0(3,568)	
	하	2.98(0.92)	10.7	11.1	47.5	30.8	100.0(1,870)	
주관적 경제 수준	상	3.10(0.91)	8.4	11.4	41.9	38.4	100.0(5,257)	27.563***
	중	3.06(0.89)	8.6	10.8	46.9	33.8	100.0(2,765)	
	하	3.14(0.90)	8.8	8.2	43.5	39.5	100.0(647)	

*p 〈 .05, **p 〈 .01,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현재 기후 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은 60.2%였으며,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 57.2%, 여성 63.4%였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0.6%, 중학교 62%, 고등학교 67.9%였다. 전체적으로 응답자 10명중 6명꼴로 기후 변화가 자신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기할만한 상황은 가구유형의 한부모 가정(65.8%), 경제적 수준의 '하' 집단(65.6%)과 같이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응답자가 위기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 경험에 의한 차이인지, 인식의 차이인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표 Ⅳ-10-15. 기후환경 변화와 권리_3) 현재 기후 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69(0.94)	12.2	27.6	39.0	21.2	100.0(8,689)	
성별	남학생	2.63(0.99)	15.5	27.3	35.6	21.6	100.0(4,469)	111.527***
	여학생	2.75(0.88)	8.7	27.9	42.6	20.8	100.0(4,220)	
학교급	초등학교	2.55(0.98)	15.9	33.5	30.5	20.1	100.0(2,885)	205.497***
	중학교	2.71(0.92)	11.3	26.7	41.3	20.7	100.0(2,931)	
	고등학교	2.81(0.89)	9.4	22.6	45.1	22.8	100.0(2,873)	
지역 규모	대도시	2.70(0.93)	12.1	26.8	40.1	21.0	100.0(3,436)	5.176
	중소도시	2.68(0.94)	12.3	28.5	38.1	21.1	100.0(4,195)	
	읍면지역	2.72(0.95)	12.1	26.5	38.9	22.4	100.0(1,05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69(0.94)	12.1	28.1	38.8	21.1	100.0(7,821)	41.789***
	한부모가정	2.79(0.91)	10.1	24.0	42.8	23.0	100.0(682)	
	조손가정	2.68(0.99)	16.4	20.8	41.7	21.2	100.0(76)	
	기타	2.38(1.12)	31.4	18.0	31.9	18.8	100.0(87)	
주관적 학업 성적	상	2.75(0.97)	12.2	26.2	36.3	25.4	100.0(3,230)	71.370***
	중	2.67(0.91)	11.2	29.6	40.1	19.1	100.0(3,559)	
	하	2.63(0.93)	14.0	26.5	41.5	17.9	100.0(1,865)	
주관적 경제 수준	상	2.68(0.95)	12.4	28.3	37.9	21.4	100.0(5,243)	20.416**
	중	2.69(0.92)	11.5	28.0	40.5	20.0	100.0(2,759)	
	하	2.77(0.96)	12.9	21.5	41.2	24.4	100.0(647)	

*p 〈 .05, **p 〈 .01,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은 64.5%였다.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 65.4%, 여성 63.6%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8.4%, 중학교 62.6%, 고등학교 52.6%였다. 전체적으로 응답자 10명중 6명꼴로 기후 변화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합산 비율)도 35.5%로 나타나 아동·청소년의 욕구와 발달단계에 맞는 환경교육의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표 Ⅳ-10-16. 기후환경 변화와 권리_4)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74(0.89)	10.2	25.3	44.9	19.6	100.0(8,692)	
성별	남학생	2.74(0.92)	12.0	22.6	44.3	21.1	100.0(4,472)	64.187***
	여학생	2.73(0.85)	8.3	28.0	45.6	18.0	100.0(4,220)	
학교급	초등학교	3.04(0.84)	5.9	15.7	46.6	31.8	100.0(2,890)	637.674***
	중학교	2.68(0.88)	11.0	26.4	46.2	16.4	100.0(2,928)	
	고등학교	2.49(0.86)	13.7	33.7	42.0	10.6	100.0(2,874)	
지역 규모	대도시	2.72(0.88)	9.9	26.7	44.7	18.7	100.0(3,433)	23.874***
	중소도시	2.78(0.89)	10.0	23.7	45.2	21.2	100.0(4,202)	
	읍면지역	2.66(0.89)	11.9	26.8	44.8	16.5	100.0(1,05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74(0.89)	10.0	25.3	45.0	19.7	100.0(7,826)	23.193**
	한부모가정	2.73(0.87)	9.9	25.4	46.9	17.9	100.0(680)	
	조손가정	2.71(0.92)	13.4	19.9	49.1	17.6	100.0(76)	
	기타	2.57(1.10)	21.6	25.4	27.0	26.1	100.0(88)	
주관적 학업 성적	상	2.87(0.91)	8.7	22.7	41.4	27.2	100.0(3,231)	278.784***
	중	2.74(0.85)	9.2	24.5	49.4	16.9	100.0(3,558)	
	하	2.51(0.88)	14.5	31.1	42.9	11.4	100.0(1,869)	
주관적 경제 수준	상	2.81(0.90)	9.2	23.6	44.0	23.3	100.0(5,246)	131.132***
	중	2.65(0.85)	11.0	27.3	47.7	14.0	100.0(2,760)	
	하	2.56(0.90)	13.9	30.1	42.2	13.7	100.0(647)	

*p 〈 .05, **p 〈 .01,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마지막으로 '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 비율)은 79.3%였다. 성별, 학교급, 가족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남성 75.2%, 여성 83.4%였다.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항목에서 성차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유는 추가로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2.1%, 중학교 77.4%, 고등학교 78.3%였다. 전체적으로 응답자 10명중 8명꼴로 자신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해야할 일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Ⅳ-10-17. 기후환경 변화와 권리_5) 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9(0.84)	7.5	13.3	52.3	27.0	100.0(8,700)	
성별	남학생	2.92(0.90)	9.8	15.0	48.7	26.5	100.0(4,473)	110.489***
	여학생	3.06(0.77)	5.0	11.5	56.0	27.4	100.0(4,227)	
학교급	초등학교	3.16(0.87)	6.4	11.6	41.7	40.4	100.0(2,895)	427.097***
	중학교	2.92(0.84)	8.4	14.3	54.5	22.9	100.0(2,931)	
	고등학교	2.88(0.78)	7.7	14.1	60.7	17.6	100.0(2,873)	
지역 규모	대도시	2.99(0.83)	7.2	13.6	52.4	26.8	100.0(3,433)	12.373
	중소도시	3.00(0.83)	7.2	13.1	51.9	27.8	100.0(4,209)	
	읍면지역	2.91(0.87)	9.5	13.5	53.1	23.9	100.0(1,05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0(0.83)	7.2	13.0	52.3	27.4	100.0(7,833)	54.249***
	한부모가정	2.89(0.82)	8.0	15.3	56.1	20.7	100.0(681)	
	조손가정	2.94(0.93)	8.5	20.5	39.6	31.4	100.0(76)	
	기타	2.67(1.12)	22.3	17.0	31.9	28.9	100.0(87)	
주관적 학업 성적	상	3.15(0.82)	5.7	10.5	46.7	37.2	100.0(3,235)	354.445***
	중	2.96(0.80)	6.8	13.7	56.7	22.9	100.0(3,562)	
	하	2.76(0.87)	11.8	17.7	53.3	17.2	100.0(1,869)	
주관적 경제 수준	상	3.05(0.83)	6.8	12.2	50.7	30.3	100.0(5,254)	82.770***
	중	2.90(0.83)	8.4	15.3	54.7	21.6	100.0(2,760)	
	하	2.91(0.84)	8.5	14.2	54.6	22.7	100.0(646)	

*p 〈 .05, **p 〈 .01, ***p 〈 .001.
*주: 2023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2) 소결

이 클러스터는 새롭게 제안된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이 절에서는 동네 환경, 디지털 환경, 기후 환경을 다루었다. 지금까지 이 클러스터에서 주요하게 다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네를 걸어 다닐 때 안전하다(87.2%)거나 위급 시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89.2%)는 인식은 높았지만, 지역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는 긍정 응답은 62.2%로 모든 지역사회 관련 지표 중 가장 낮았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의 동등한 주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참여에 기회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아동·청소년 10명 중 6명 이상이 개인정보(62.2%) 및 사진·영상(60.5%) 유출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다. 학교와 정부의 보호 노력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인터넷 업체(60.9%) 및 게임 업체(66.8%)의 노력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더욱이, 피해를 경험했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을 모르는 아동·청소년이 10명 중 3명에 달해 관련 교육과 지원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청소년 10명 중 8명(80.5%)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학교 환경교육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고등학교로 갈수록 하락하여 입시 중심 교육과정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의 학습권과 참여권이 보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이 절에서 정리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자신의 둘러싼 환경에서의 참여권 보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지역환경, 디지털 환경, 생태환경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와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적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환경에 대한 의사결정, 정책형성 과정에서의 참여권이 주어져야 하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참여를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은 민간 인터넷 기업이나 게임 업체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편으로, 권리보호 책임을 기업의 자율적 선의에만 맡겨둘 수 없다.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알고리즘 추천을 제한하는 안전 가이드레일(safety guide rail)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10명 중 8명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청소년 세대가 단순한 상징이 아닌 실질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를 넘어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11.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클러스터 개요 및 주요 내용 요약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클러스터 개요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클러스터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교육), 제29조(교육의 목적), 제31조(휴식, 놀이 및 여가)에 관한 클러스터임. 제28조와 제29조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제31조는 충분한 휴식과 놀이,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 장에서는 교육 현황과 놀이, 여가, 문화와 관련한 통계 지표로 이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정리하였음.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클러스터의 주요 내용 요약

- 교육 권리와 관련하여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에서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모두 증가하고 있음. 학령인구 인구 감소로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구당 소득수준이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기회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포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학업중단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로는 '공부하기 싫어서'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가 가장 많음.
- 학교교육 만족도와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대인 관계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수업이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는 75%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수련시설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이 여가나 문화 활동 등을 누릴 수 있는 시설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긍정비율 낮아짐.

1) 교육에의 권리

(1) 교육기회 보장 정도

①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에의 권리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교육기회 보장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을 살펴보면,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과정에서의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초등과 중등교육과정의 경우 2021년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00년 대비 4.7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값도 같은 기간 동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증가 속도는 우리나라의 경우가 훨씬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OECD 평균값이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높았으나, 2015년부터는 우리나라의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값을 초과하였으며, 그러한 흐름은 2021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에 고등교육과정의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이나 중등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다소 상이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2021년 고등교육과정의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이나 중등교육과정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고등교육과정의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그 증가 속도는 초등이나 중등교육과정의 공교육비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OECD 평균값과 비교하여 볼 때, 여전히 OECD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오히려 그 차이는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비의 비율도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등과 중등교육과정의 경우 공교육비 비율은 2000년 각각 21%, 27%였으나, 2021년에는 31%, 40%로 증가하여 10%P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OECD 평균과 비교해 보면, 2000년에는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초등교육과정에서는 9%P, 중등교육과정에서는 15%P 차이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등교육과정의 공교육비는 2000년에 40%로 초등이나 중등교육과정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1년에는 28%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OECD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약 10%P 정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교육과정에서의 공교육비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Ⅳ-11-1.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단위 : ppp, %)

구 분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2000 (2003)	한국	3,155	21	4,069	27	6,118	40
	OECD 평균	4,381	19	5,957	25	9,571	42
2005 (2008)	한국	4,691	22	6,645	31	7,606	36
	OECD 평균	6,252	21	7,804	26	11,512	40
2010 (2013)	한국	7,453	26	8,911	31	9,998	35
	OECD 평균	7,974	23	9,014	26	13,528	41
2015 (2018)	한국	11,047	31	12,202	35	10,109	29
	OECD 평균	8,631	22	10,010	25	15,656	38
2016 (2019)	한국	11,029	30	12,370	33	10,486	28
	OECD 평균	8,470	21	9,968	25	15,556	38
2017 (2020)	한국	11,702	29	13,579	33	10,633	26
	OECD 평균	9,090	21	10,547	24	16,327	36
2018 (2021)	한국	12,535	30	14,978	35	11,290	27
	OECD 평균	9,550	21	11,192	25	17,065	37
2019 (2022)	한국	13,341	31	17,078	40	11,287	26
	OECD 평균	9,923	22	11,400	24	17,559	37
2020 (2023)	한국	13,278	30	17,038	38	12,225	27
	OECD 평균	10,658	23	11,942	25	18,105	38
2021 (2024)	한국	14,873	31	19,299	40	13,573	28
	OECD 평균	11,902	22	13,324	25	20,499	38

* 출처: 김영지 외(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p.34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a). 2021 간추린 교육통계. p.54.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2a). 2022 간추린 교육통계. p.54.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3b), 2023 간추린 교육통계, p.54.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4a). 2024 간추린 교육통계. p.54.
* 원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각 년도.

* 주: 1)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산출식: 「OECD 교육지표 2018」부터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산출기준 변경
– 기존 산출식: {(경상지출+자본적 지출)/학생 수}/PPP
– 신규 산출식: {(교육기관 직접 지출)/학생 수}/PPP
2) 구분 연도는 회계연도, ( )안의 연도는 EAG(Education at a Glance)자료 발표년도
3) 과정별 포함 학제는 일러두기 참조
4) 「OECD 교육지표 2019」부터 전년도 이월금 및 적립금이 공교육비에서 제외됨(고등교육단계는 「OECD 교육지표 2018」부터 제외)
5) 「OECD 교육지표 2017」부터 교육단계 구분 없는 프로그램의 지출액을 각 교육단계에 포함하여 공교육비 산출 –'10년(회계연도) 한국 자료는 시계열 비교를 위하여 KEDI에서 산출한 수치임
6) 한국 1인당 GDP(회계연도 기준)는 '00년 US$ 15,186, '05년 US$ 21,342, '10년 US$ 28,829, '19년 US$ 43,045, '20년 US$ 44,695, '21년 US$ 48,595
7) 한국 PPP환율(회계연도 기준)은 '00년 $1당 731.19원, '05년 $1당 788.92원, '10년 $1당 823.67원, '19년 $1당 864.63원, '20년 $1당 837.67원, '21년 $1당 827.27원

②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유치원은 9.0명, 초등학교는 12.7명, 중학교는 11.6명, 고등학교는 10.1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고는 10.9명, 특목고는 7.5명, 특성화고는 7.3명, 자율과는 11.3명으로 특성화고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2011년부터 2024년까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감소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나,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급당 학생 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4년 기준 유치원의 학급당 학생 수는 15.7명이었으며, 초등학교는 20.0명, 중학교는 24.5명, 고등학교는 23.4명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율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급에서 25명 이하로 확인되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유치원의 학급당 학생 수는 5.2명이, 초등학교에서도 5.2명이 감소하였으며, 중학교에서는 8.5명이, 고등학교에서는 9.7명이 감소함으로써 감소 폭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2. 교원 1인당 학생 수(2011~2024년)

(단위 : %)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유치원		14.6	14.5	14.3	13.4	13.4	13.3	12.9	12.3	11.9	11.4	10.9	10.3	9.4	9.0
초등학교		17.3	16.3	15.3	14.9	14.9	14.6	14.5	14.5	14.6	14.2	14.0	13.7	13.3	12.7
중학교		17.3	16.7	16.0	15.2	14.3	13.3	12.7	12.1	11.7	11.8	11.9	11.7	11.6	11.6
고등학교	전체	14.8	14.4	14.2	13.7	13.2	12.9	12.4	11.5	10.6	10.1	9.9	9.6	9.8	10.1
	일반고	15.8	15.4	15.2	14.6	14.1	13.7	13.1	12.1	11.1	10.7	10.5	10.3	10.5	10.9
	특목고	11.0	10.3	10.0	9.7	9.3	9.1	8.9	8.6	8.3	8.0	7.9	7.6	7.4	7.5
	특성화고	12.5	12.1	12.0	11.6	11.4	11.0	10.6	9.8	9.1	8.4	8.0	7.5	7.3	7.3
	자율고	15.2	14.6	14.3	13.9	13.7	13.5	13.2	12.4	11.5	11.1	11.2	11.4	11.8	11.3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a). 2021 간추린 교육통계. p.16.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2a). 2022 간추린 교육통계. p.16.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3b), 2023 간추린 교육통계, p.16.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4). 2024 간추린 교육통계. p.16.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교원 1인당 학생수.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46에서 2022년 9월 15일 인출.

* 주: 1) 교원 1인당 학생수 = 학생수 / 교원수
2) 유치원~고등학교 교원은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휴직 교원 포함. 퇴직 교원 및 강사는 제외

표 Ⅳ-11-3. 학급당 학생 수(2011~2024년)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유치원		20.9	21.6	21.5	19.7	20.0	19.7	19.0	17.9	17.0	16.7	17.5	16.7	16.1	15.7
초등학교		25.2	24.3	23.2	22.8	22.6	22.4	22.3	22.3	22.2	21.8	21.5	21.1	20.7	20.0
중학교		33.0	32.4	31.7	30.5	28.9	27.4	26.4	25.7	25.1	25.2	25.5	25.0	24.6	24.5
고등학교	전체	33.1	32.5	31.9	30.9	30.3	29.3	28.2	26.2	24.5	23.4	23.1	22.6	22.9	23.4
	일반고	34.7	34.2	33.6	32.4	31.3	30.6	29.3	27.1	25.2	24.2	24.0	23.7	24.1	24.8
	특목고	28.4	26.7	25.8	25.0	24.4	24.0	24.7	23.1	22.8	22.3	22.1	21.3	20.8	20.7
	특성화고	28.5	28.0	27.6	26.9	26.4	25.7	23.7	23.0	21.3	19.8	19.2	18.1	17.7	17.6
	자율고	33.5	32.3	31.5	30.7	30.3	30.2	29.6	28.1	26.5	25.5	25.9	26.0	26.7	26.1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a). 2021 간추린 교육통계. p.15.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2a). 2022 간추린 교육통계. p.15.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3b), 2023 간추린 교육통계, p.15.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4). 2024 간추린 교육통계. p.15.
김영지 외(2021). 2021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p.344.

* 주: 1) 학급당 학생수=학생수/학급수 (학급수는 인가학급 기준임)
2) 학급수 기준은 인가기준(~2020년)에서 편성기준(2021년~)으로 변경됨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값과 비교해 보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32.1명에서 15.8명으로, 중등학교 과정에서는 21.5명에서 13.1명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20.9명에서 12.7명으로 감소하였으나, OECD의 경우에는 초등교육과정에서 17.7명에서 14.0명으로, 중학교 과정에서는 15.0명에서 12.8명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13.9명에서 12.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감소폭이 훨씬 더 큰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에도 OECD 평균값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 같은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각 14.5명, 12.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학급당 학생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좋은 교육을 위한 여건이 향상되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Ⅳ-11-4.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국제비교(2000~2022년)

(단위 : 명)

구 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2000	한국	32.1	21.5	20.9	36.5	38.5
(2002)	OECD 평균	17.7	15.0	13.9	21.9	23.6
2005	한국	28.0	20.8	16.0	32.6	35.7
(2007)	OECD 평균	16.7	13.7	13.0	21.5	24.1
2010	한국	21.1	19.7	16.5	27.5	34.7
(2012)	OECD 평균	15.9	13.7	13.8	21.2	23.4
2015	한국	16.8	15.7	14.1	23.4	30.0
(2017)	OECD 평균	15.2	13.0	13.1	21.1	23.3
2016	한국	16.5	14.7	13.8	23.2	28.4
(2018)	OECD 평균	15.0	12.7	13.0	21.3	22.9
2017	한국	16.4	14.0	13.2	23.1	27.4
(2019)	OECD 평균	15.2	13.3	13.4	21.2	22.9
2018	한국	16.5	13.5	12.2	23.1	26.7
(2020)	OECD 평균	14.6	13.0	13.0	21.1	23.3
2019	한국	16.6	13.0	11.4	23.0	26.1
(2021)	OECD 평균	14.5	13.1	13.0	21.1	23.3
2020	한국	16.3	13.1	10.9	22.7	26.2
(2022)	OECD 평균	14.4	13.2	12.6	20.3	22.6
2021	한국	16.1	13.3	10.7	22.5	26.5
(2023)	OECD 평균	14.6	13.2	13.3	20.6	23.0
2022	한국	15.8	13.1	10.5	22.0	26.0
(2024)	OECD 평균	14.0	12.8	12.7	20.6	22.8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a). 2021 간추린 교육통계. p.5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2a). 2022 간추린 교육통계. p.5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3b). 2023 간추린 교육통계, p.5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4). 2024 간추린 교육통계. p.51.
김영지 외(2021). 2021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p.345.
* 원자료: OECD(해당 발표년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OECD Statistics (https://data-explorer.oecd.org/)

* 주: 1) 교사는 수업담당교사(교장·교감, 영양·사서·보건·전문상담교사 제외)만 대상
2) 구분 연도는 학년도, ( )안의 연도는 EAG(Education at a Glance)자료 발표년도
3) 2020학년도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2021학년도 학급당 학생수 자료는 OECD Statistics (https://data-explorer.oecd.org/)에만 수록됨
4) 과정별 포함 학제는 일러두기 참조

③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산출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024년 기준 47.4만 원이었으며, 초등학생이 44.2만 원, 중학생이 49만 원, 고등학생이 52만 원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지출되는 사교육비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비는 1인당 사교육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포함하여 산출된 값인데 비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비는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외하고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 만을 대상으로 산출된 값이다. 2024년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기준 1인당 사교육비는 59.2만원이었으며, 초등학생이 50.4만 원, 중학생이 62.8만 원, 고등학생이 77.2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 동안 전체 학생 대상 사교육비는 32.1만 원에서 47.4만 원으로 15.3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42.9만 원에서 59.2만 원으로 16.3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의 증가폭이 전체 학생이나 참여 학생을 기준으로 한 경우 모두에서 다른 학교급에 비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 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1-5.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019~2024년)

(단위 : 만원, %)

구 분	전체 학생				참여 학생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9	32.1	29.0	33.8	36.5	42.9	34.7	47.4	59.9
2020	30.2	23.5	34.2	39.6	45.0	33.8	50.8	64.3
2021	36.7	32.8	39.2	41.9	48.5	40.0	53.5	64.9
2022	41.0	37.2	43.8	46.0	52.4	43.7	57.5	69.7
2023	43.4	39.8	44.9	49.1	55.3	46.2	59.6	74.0
2024	47.4	44.2	49.0	52.0	59.2	50.4	62.8	77.2
증감률	9.3	11.1	9.0	5.8	7.2	9.0	5.3	4.4

* 출처: 통계청(2022.3.11). 보도자료: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8.
통계청(2023.3.7). 보도자료: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8.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70100&bid=245&tag=&act=view&list_no=424071&ref_bid=에서 2023년 8월 16일 인출.
통계청(2024.3.14). 보도자료: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5.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45&list_no=429923&act=view&mainXml=Y에서 2024년 7월 13일 인출.
통계청(2025.3.13). 보도자료: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5.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45&list_no=435485&act=view&mainXml=Y에서 2025년 8월 6일 인출.

가구 소득수준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수준을 살펴보면, 2023년과 2024년 모두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높음을 알 수 있다. 2024년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5만 원이었으나, 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67.6만 원으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2023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가구 소득수준과 사교육비는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 소득수준과 사교육 참여율과의 관계도 앞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사교육 참여율은 58.1% 수준이었으나, 가구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경우의 사교육 참여율은 87.6%로 나타남으로써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이 교육기회에의 접근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결과는 교육기회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가구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보다 다양한 교육 기회에 접근이 가능하며, 이러한 차이는 2019년 이래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1-6. 가구 소득수준별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2023~2024년)

(단위 : 만원, %, %p)

구 분	사교육비			참여율		
	2023	2024	증감률	2023	2024	증감
전체	43.4	47.4	9.3	78.5	80.0	1.5
300만원 미만	18.3	20.5	12.3	57.2	58.1	0.9
300~400만원 미만	27.9	28.5	2.1	70.3	68.2	-2.0
400~500만원 미만	35.3	36.6	3.6	76.8	77.3	0.4
500~600만원 미만	41.2	44.0	6.9	80.6	82.0	1.5
600~700만원 미만	48.4	49.1	1.4	85.1	83.9	-1.2
700~800만원 미만	52.7	55.6	5.5	85.8	86.2	0.4
800만원 이상	67.1	67.6	0.8	87.9	87.6	-0.3

* 출처: 통계청(2024.3.14). 보도자료: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10, 31-32.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45&list_no=429923&act=view&mainXml=Y에서 2024년 7월 13일 인출.
통계청(2025.3.13). 보도자료: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p.5.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45&list_no=435485&act=view&mainXml=Y에서 2025년 8월 6일 인출.

(2) 학교 부적응률

① 학업중단율

학교 부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급별 학업중단율을 살펴보았다. 우선 2024년 기준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는 0.7%, 중학교는 0.8%, 고등학교는 2.1%로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의 학업중단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1.8%에서 2.1%로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등교하지 않았던 2020년의 학업중단율은 모든 학교급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정상적인 등교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의 2020년 학업중단율이 1.1% 수준이었으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2.1%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율 증가와 관련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Ⅳ-11-7.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2012~2024년)

(단위 :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초등학교	0.6	0.6	0.5	0.5	0.6	0.6	0.7	0.7	0.4	0.6	0.7	0.7	0.7
중학교	0.9	0.8	0.7	0.6	0.6	0.7	0.7	0.8	0.5	0.5	0.7	0.7	0.8
고등학교	1.8	1.6	1.4	1.3	1.4	1.5	1.6	1.7	1.1	1.5	1.9	2.0	2.1
계 (학업 중단자)	1.0 (68,188)	0.9 (60,568)	0.8 (51,906)	0.8 (47,070)	0.8 (47,663)	0.9 (50,057)	0.9 (52,539)	1.0 (52,261)	0.6 (32,027)	0.8 (42,755)	1.0 (52,981)	1.0 (54,615)	1.1 (54,516)

* 출처: 교육부(2022.8.30.). 2022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14.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3231&pWise=main&pWiseMain=C3에서 2022년 8월 31일 인출.
교육부(2023.8.30.). 2023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14.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619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3년 9월 8일 인출.
교육부(2024.8.29.). 2024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14.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089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4년 8월 31일 인출.
교육부(2025.8.28.). 2025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p.20.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edi.re.kr/khome/main/announce/selectBroadAnnounceForm.do?selectTp=0&board_sq_no=3&article_sq_no=36108에서 2025년 9월 29일 인출.

* 주: 1) 학업 중단율(%) = 학업 중단자 수 / 학생 수 * 100
2)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 장기결석자를 학업 중단자로 봄
3)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 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 유예, 면제, 제적임
4) 학업 중단자에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② 학업중단 생각과 이유

다음으로 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살펴보면, 2025년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5%로 응답자의 1/4을 상회하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23%)보다는 여학생(34.3%)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고등학생 가운데에는 1/3을 초과하는 35.1%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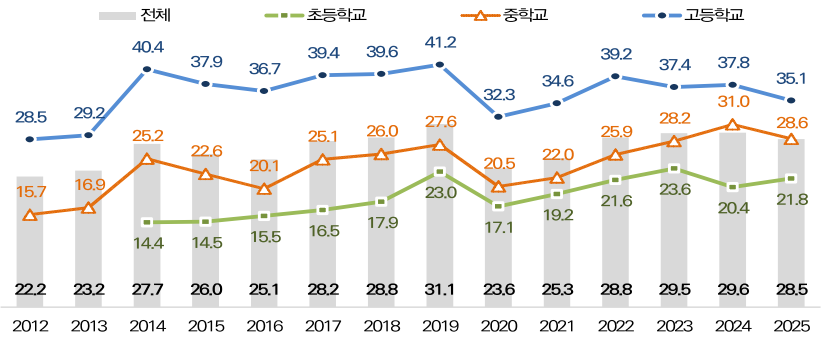
또한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서 학업중단 생각 비율이 높았으며, 한부모가정의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생각 비율이 다른 형태의 가족유형에서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학업중단 의사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1-8. 학업중단 생각 경험(2025년)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28.5	71.5	100.0(8,654)	
성별	남학생	23.0	77.0	100.0(4,439)	134.444***
	여학생	34.3	65.7	100.0(4,215)	
학교급	초등학교	21.8	78.2	100.0(2,834)	122.429***
	중학교	28.6	71.4	100.0(2,933)	
	고등학교	35.1	64.9	100.0(2,887)	
지역 규모	대도시	27.0	73.0	100.0(3,410)	12.271**
	중소도시	28.8	71.2	100.0(4,193)	
	읍면지역	32.6	67.4	100.0(1,05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7.6	72.4	100.0(7,767)	40.730***
	한부모가정	39.0	61.0	100.0(667)	
	조손가정	29.0	71.0	100.0(75)	
	기타	34.2	65.8	100.0(88)	
학업 성적	상	20.8	79.2	100.0(3,215)	390.759***
	중	26.0	74.0	100.0(3,522)	
	하	46.2	53.8	100.0(1,869)	
경제적 수준	상	24.3	75.7	100.0(5,212)	167.895***
	중	32.1	67.9	100.0(2,743)	
	하	46.7	53.3	100.0(644)	

*p 〈 .05, **p 〈 .01, ***p 〈 .001.
주) 초등학생 문항은 2013년도부터 추가되었음.



* 주 :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Ⅳ-11-1. 학업중단 생각 경험(2012~2025년)

이러한 학업중단 생각 비율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2014년 이후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 주춤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2020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31%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비율은 2014년 40.4%를 기록한 이후 2019년의 41.2%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코로나19로 2020년에 32.3%로 감소하였고, 2022년의 39.2%를 기점으로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이 꼽은 학업중단 생각 이유는 '공부하기 싫어서'가 26.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가 2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좋지 않아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도 11%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공부하기 싫어서'가 가장 많이 언급된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학교급별 분포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우선 초등학생의 경우 '괴롭힘을 당해서'가 13.8%로 다른 학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18.1%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학교급에 따라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가 다소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거주지의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에서는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가 대도시에서는 1.8%인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6.0%로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가족 유형에 있어서는 조손가정의 청소년이 '괴롭힘을 당해서'와 '공부하기 싫어서',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를 다른 가족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중단 생각 이유로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 수준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 '괴롭힘을 당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성적이 좋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배경 변인에 따른 학업중단 생각 이유의 분포는 각 변인별로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인별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Ⅳ-11-9. 학업중단 생각 이유(2025년)

(단위 : %(명))

구분		괴롭힘을 당해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기타	전체(N)
전체		7.1	11.6	3.3	0.2	26.4	3.4	7.0	25.9	15.0	100.0(2,418)
성별	남학생	6.2	11.8	4.1	0.3	30.6	3.5	7.8	21.4	14.3	100.0(998)
	여학생	7.7	11.5	2.7	0.2	23.5	3.3	6.5	29.1	15.5	100.0(1,421)
학교급	초등학교	13.8	6.5	6.1	0.1	29.4	2.3	2.6	20.5	18.6	100.0(608)
	중학교	7.9	7.7	2.6	0.1	28.6	3.1	4.6	30.6	14.9	100.0(824)
	고등학교	2.2	18.1	2.2	0.5	22.8	4.3	11.8	25.3	12.8	100.0(987)
지역 규모	대도시	8.0	11.3	1.8	0.5	26.7	3.1	6.8	26.3	15.6	100.0(911)
	중소도시	6.9	11.1	3.8	0.1	26.6	3.4	7.0	26.2	14.9	100.0(1,179)
	읍면지역	5.0	14.7	6.0	0.3	25.1	4.0	7.5	23.7	13.7	100.0(32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9	11.6	3.3	0.1	27.4	3.3	6.5	25.7	15.2	100.0(2,096)
	한부모가정	5.7	13.9	3.7	1.2	20.9	4.3	10.1	27.7	12.3	100.0(255)
	조손가정	19.2	4.4	0.0	0.0	33.1	0.0	19.4	23.9	0.0	100.0(22)
	기타	22.5	7.2	8.1	1.9	11.8	0.0	8.8	20.0	19.8	100.0(30)
학업 성적	상	10.9	5.9	4.8	0.1	26.4	3.4	5.1	23.6	19.8	100.0(661)
	중	6.5	12.0	2.8	0.5	29.0	3.1	6.0	25.8	14.3	100.0(892)
	하	4.8	15.7	2.4	0.1	24.1	3.7	9.6	27.9	11.6	100.0(843)
경제적 수준	상	8.2	12.3	3.7	0.1	28.1	2.9	7.0	22.4	15.3	100.0(1,242)
	중	5.7	10.4	2.7	0.0	26.4	3.8	6.8	31.5	12.8	100.0(865)
	하	6.6	12.3	2.9	1.6	21.1	4.6	7.7	24.0	19.2	100.0(289)

* 주: * 항목은 2016년부터 추가되었으며, 2019년 조사부터 1개 선택으로 변경됨(2018년까지는 우선순위별로 3개 선택).

(3) 통합교육

① 장애아동 · 청소년 통합보육·교육비율

장애아동 · 청소년과 비장애아동 · 청소년의 통합교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장애아 전문시설의 경우 2015년의 175개에서 2024년 178개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나, 장애아 통합시설은 같은 기간 동안 899개에서 1,718개로 약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시설의 현격한 증가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Ⅳ-11-10. 장애아전문·통합시설 현황(2015~2024년)

(단위: 개소)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074	1,088	1,124	1,177	1,276	1,388	1,495	1,570	1,637	1,896
장애아전문시설	175	177	178	177	176	177	178	177	173	178
장애아통합시설	899	911	946	1,000	1,100	1,211	1,317	1,393	1,464	1,718

* 출처: 통계청 KOSIS(2025c) . 특수보육어린이집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2&tblId=DT_15407_NN009&conn_path=I3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 원자료: 교육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이와 관련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배치된 학생은 30,390명으로 전체 대상 학생 중 26.3% 수준인 반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은 65,996명(57.1%),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은 19,254명(16.6%)으로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생의 비율이 7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배치 현황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학생의 비율은 2020년 27.9%에서 2024년 26.3%로 1.6%P 감소한 반면,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특수학급에 배치된 비율은 55.3%에서 57.1%로 1.8%P 증가함에 따라,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생의 비율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특기할 것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수가 2020년에 95,420명에서 2024년에는 115,610명으로 나타남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1-11.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2020~2024년)

(단위 : 명(%))

연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 수	일반학교 배치학생 수			전체 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소계	
2020	26,615(27.9)	52,744(55.3)	16,061(16.8)	68,805(72.1)	95,420(100.0)
2021	27,288(27.8)	54,266(55.3)	16,600(16.9)	70,866(72.2)	98,154(100.0)
2022	28,233(27.2)	57,948(55.9)	17,514(16.9)	75,462(72.8)	103,695(100.0)
2023	29,236(26.7)	61,993(56.5)	18,474(16.8)	80,467(73.3)	109,703(100.0)
2024	30,390(26.3)	65,996(57.1)	19,254(16.6)	85,220(73.7)	115,610(100.0)

* 출처: 교육부(2024a). 202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6.

2) 교육의 목표

(1)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

① 학교생활 만족도(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4.2%가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들(93.8%)보다는 여학생(94.7%)들에게서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93.2%)보다는 초등학생(94.8%)이나 고등학생(94.8%)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비해 친구들에게서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며, 조손가정 및 기타 유형의 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양부모나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으로써 가족 유형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학교 친구들로부터 존중과 배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친구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은 학업성적 및 가정의 경제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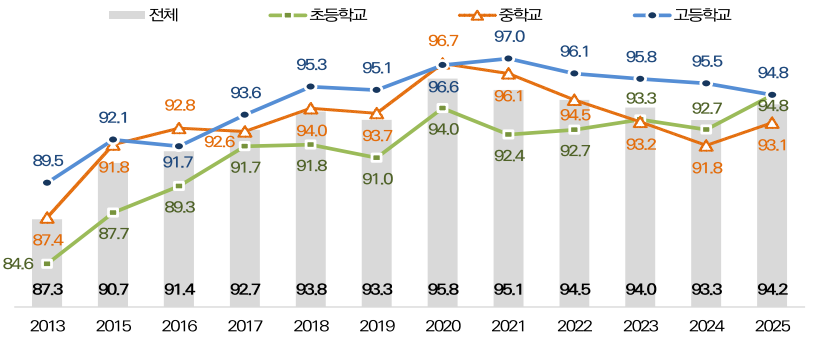
표 Ⅳ-11-12.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33(0.61)	1.1	4.7	54.6	39.6	100.0(8,618)	
성별	남학생	3.32(0.63)	1.6	4.7	54.4	39.4	100.0(4,410)	20.469***
	여학생	3.34(0.59)	0.5	4.8	55.0	39.7	100.0(4,208)	
학교급	초등학교	3.40(0.62)	1.1	4.1	48.1	46.7	100.0(2,865)	102.032***
	중학교	3.28(0.61)	1.0	5.9	57.7	35.5	100.0(2,911)	
	고등학교	3.30(0.60)	1.1	4.1	58.2	36.6	100.0(2,842)	
지역 규모	대도시	3.34(0.61)	0.8	4.8	53.7	40.7	100.0(3,396)	16.175*
	중소도시	3.33(0.61)	1.0	4.8	54.7	39.6	100.0(4,178)	
	읍면지역	3.28(0.64)	2.0	4.2	57.8	36.0	100.0(1,04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34(0.61)	0.9	4.6	54.7	39.9	100.0(7,726)	96.325***
	한부모가정	3.26(0.63)	1.6	5.4	58.4	34.6	100.0(669)	
	조손가정	3.28(0.76)	3.2	8.7	45.1	43.0	100.0(76)	
	기타	3.19(0.95)	10.2	6.9	37.1	45.8	100.0(87)	
학업 성적	상	3.43(0.61)	1.0	3.7	46.7	48.6	100.0(3,207)	269.836***
	중	3.32(0.59)	0.8	3.7	57.6	37.9	100.0(3,512)	
	하	3.16(0.63)	1.7	8.2	62.6	27.6	100.0(1,849)	
경제적 수준	상	3.38(0.61)	1.0	3.8	51.5	43.7	100.0(5,194)	139.278***
	중	3.28(0.60)	0.9	5.1	59.6	34.4	100.0(2,727)	
	하	3.15(0.68)	2.3	10.0	58.6	29.1	100.0(641)	

*p 〈 .05, **p 〈 .01, ***p 〈 .001.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존중과 배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부터 2020년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감소 경향은 중학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4년에는 91.8%까지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21년까지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감소 경향의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11-2.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2013~2025년)

2025년 선생님이 학생들을 존중한다는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96.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 문항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 39.1%인 것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에는 43.9%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선생님이 학생을 존중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47.4%로 다른 학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거주지역의 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선생님이 학생들을 존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남에 따라 선생님의 학생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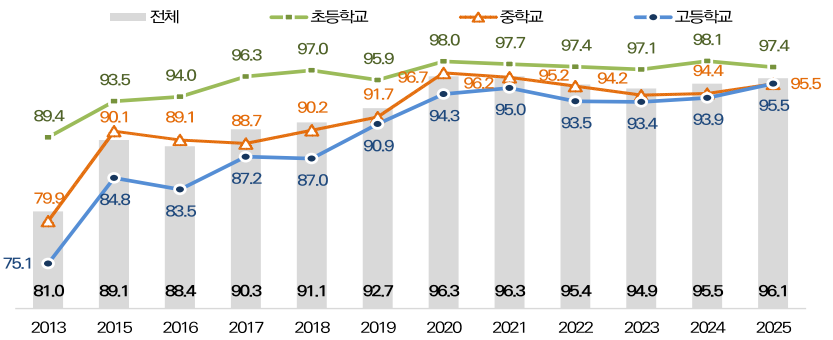
표 Ⅳ-11-13.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49(0.62)	1.3	2.6	41.5	54.6	100.0(8,614)	
성별	남학생	3.51(0.63)	1.7	2.5	39.1	56.7	100.0(4,409)	32.043***
	여학생	3.48(0.60)	0.8	2.8	43.9	52.4	100.0(4,206)	
학교급	초등학교	3.70(0.55)	1.0	1.6	23.3	74.1	100.0(2,862)	
	중학교	3.42(0.62)	1.4	3.2	47.7	47.8	100.0(2,910)	678.179***
	고등학교	3.36(0.61)	1.4	3.2	53.5	42.0	100.0(2,842)	
지역 규모	대도시	3.52(0.60)	0.9	2.6	40.2	56.3	100.0(3,396)	
	중소도시	3.49(0.62)	1.4	2.5	41.4	54.7	100.0(4,174)	22.356**
	읍면지역	3.42(0.65)	1.8	3.1	46.1	49.0	100.0(1,04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51(0.60)	1.1	2.5	41.1	55.3	100.0(7,722)	
	한부모가정	3.40(0.66)	1.8	4.0	46.6	47.6	100.0(670)	61.481***
	조손가정	3.50(0.74)	4.6	0.5	35.3	59.6	100.0(76)	
	기타	3.31(0.88)	8.0	3.6	38.0	50.4	100.0(87)	
학업 성적	상	3.61(0.58)	1.0	2.0	32.3	64.7	100.0(3,207)	
	중	3.49(0.60)	1.2	2.0	43.3	53.5	100.0(3,506)	320.104***
	하	3.31(0.65)	1.9	4.8	53.7	39.6	100.0(1,852)	
경제적 수준	상	3.55(0.60)	1.2	2.4	36.6	59.9	100.0(5,192)	
	중	3.43(0.60)	1.1	2.7	48.6	47.7	100.0(2,724)	163.938***
	하	3.32(0.69)	2.8	4.4	50.3	42.5	100.0(642)	

*p 〈 .05, **p 〈 .01, ***p 〈 .001.

선생님이 학생을 존중하는가에 대한 응답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11-3.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2013~2025년)

학생들이 수업시간을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72.5%가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응답자의 약 3/4 가량은 학교 수업시간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 가운데 수업시간을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들이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의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거주지역의 규모가 커질수록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수업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교 수업의 흥미도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학업성적이 낮거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 수업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학업중단 의사와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수업 흥미도를 높이는 것은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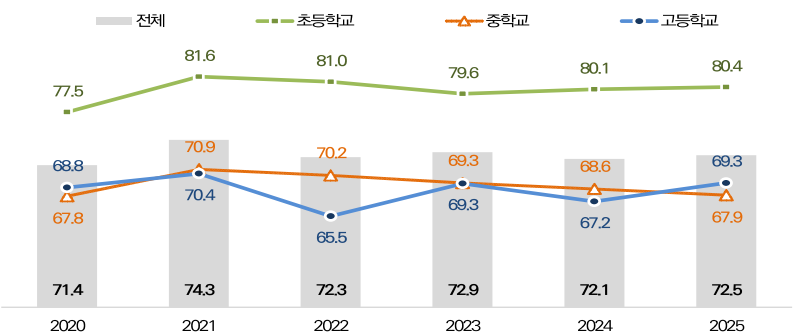
2020년 이후 학교 수업에 대한 흥미도는 2021년에 다소 증가한 이후 72~73%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바람직하나,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Ⅳ-11-14. 나는 수업 시간이 재밌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2(0.85)	6.5	20.9	46.5	26.0	100.0(8,613)	
성별	남학생	2.97(0.87)	6.8	18.8	45.2	29.2	100.0(4,407)	57.800***
	여학생	2.87(0.83)	6.2	23.2	47.9	22.8	100.0(4,206)	
학교급	초등학교	3.10(0.83)	5.0	14.6	46.1	34.3	100.0(2,860)	213.624***
	중학교	2.83(0.86)	7.4	24.7	45.8	22.2	100.0(2,914)	
	고등학교	2.84(0.84)	7.2	23.5	47.7	21.7	100.0(2,840)	
지역 규모	대도시	2.98(0.83)	5.5	19.1	47.8	27.6	100.0(3,396)	29.186***
	중소도시	2.89(0.87)	7.3	21.7	45.9	25.2	100.0(4,175)	
	읍면지역	2.87(0.86)	6.7	24.1	44.7	24.5	100.0(1,04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4(0.84)	6.0	20.5	46.9	26.6	100.0(7,721)	72.729***
	한부모가정	2.71(0.87)	9.6	27.6	45.1	17.7	100.0(669)	
	조손가정	2.84(1.03)	13.1	22.5	31.5	32.9	100.0(76)	
	기타	2.85(1.03)	16.0	13.0	41.4	29.7	100.0(87)	
학업 성적	상	3.14(0.80)	4.0	14.0	46.0	36.1	100.0(3,204)	649.284***
	중	2.92(0.81)	5.1	21.2	49.9	23.8	100.0(3,509)	
	하	2.53(0.88)	13.4	32.6	41.2	12.8	100.0(1,851)	
경제적 수준	상	3.02(0.82)	5.2	17.4	47.6	29.8	100.0(5,193)	243.055***
	중	2.82(0.85)	7.4	24.8	46.2	21.5	100.0(2,722)	
	하	2.56(0.90)	13.1	32.8	39.3	14.8	100.0(642)	

*p 〈 .05, **p 〈 .01, ***p 〈 .001.
주) 2020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11-4. 나는 수업 시간이 재밌다(2020~2025년)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운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2025년에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한 비율은 73.4%로 응답자의 약 3/4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거주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긍정적인 응답 비율의 차이가 다소 현격하게 나타남에 따라 학교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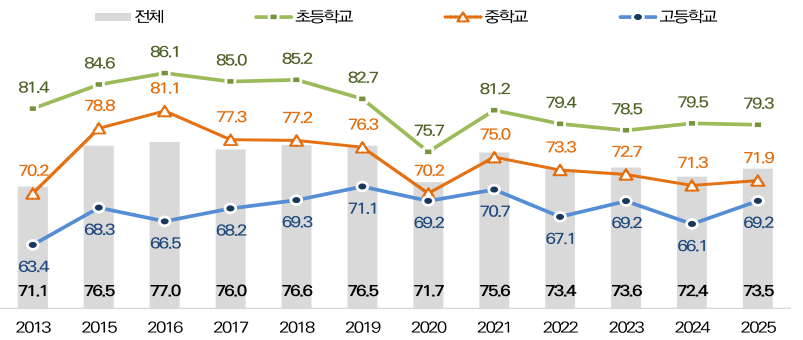
표 Ⅳ-11-15.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95(0.88)	7.3	19.3	44.6	28.8	100.0(8,613)	
성별	남학생	2.98(0.89)	7.6	18.3	43.1	31.0	100.0(4,408)	25.458***
	여학생	2.92(0.86)	6.9	20.3	46.2	26.6	100.0(4,204)	
학교급	초등학교	3.11(0.87)	6.0	14.7	41.3	37.9	100.0(2,858)	209.967***
	중학교	2.91(0.88)	7.5	20.6	44.9	27.0	100.0(2,912)	
	고등학교	2.83(0.86)	8.3	22.5	47.6	21.6	100.0(2,842)	
지역 규모	대도시	3.01(0.84)	5.8	17.7	46.3	30.1	100.0(3,393)	37.690***
	중소도시	2.93(0.89)	7.9	19.9	43.6	28.6	100.0(4,176)	
	읍면지역	2.85(0.91)	9.4	21.8	43.1	25.7	100.0(1,04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8(0.86)	6.5	19.0	44.9	29.6	100.0(7,721)	90.731***
	한부모가정	2.70(0.92)	12.8	23.5	44.3	19.4	100.0(670)	
	조손가정	2.92(1.04)	15.0	12.9	37.5	34.6	100.0(76)	
	기타	2.76(1.07)	18.5	15.9	36.8	28.7	100.0(87)	
학업 성적	상	3.15(0.85)	5.3	13.6	41.7	39.4	100.0(3,205)	569.468***
	중	2.96(0.82)	5.3	19.5	49.1	26.1	100.0(3,506)	
	하	2.59(0.92)	14.3	28.5	41.3	15.8	100.0(1,852)	
경제적 수준	상	3.06(0.85)	5.6	16.3	44.6	33.6	100.0(5,190)	277.779***
	중	2.84(0.88)	8.8	22.2	45.8	23.3	100.0(2,724)	
	하	2.54(0.90)	14.3	31.1	40.7	13.9	100.0(642)	

*p 〈 .05, **p 〈 .01, ***p 〈 .001.

2013년 이후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9년까지는 75%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여파로 다소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서 다소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20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11-5.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2013~2025년)

(2) 진로·직업교육

① 진로교육 현황

2024년 각급학교의 진로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 중 진로탐색과 진로심리검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9% 수준이었으며, 진로 상담을 받은 경험은 45.6%로 다른 진로활동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학생의 경우에는 「진로와 직업」수업을 통해 참여한 비율이 91.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수업 중 진로탐색, 진로 심리검사, 진로체험 등의 순으로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체험 참여도가 85.2%로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고등학생은 수업 중 진로탐색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진로상담이나 진로동아리 활동 참여도가 다른 학교급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학교급에서 다양한 유형의 진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로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초등학교가 4.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Ⅳ-11-16. 학교 진로활동 참여 현황 및 만족도

(단위 : %, 점)

구분	학교 진로활동 참여 비율							진로활동 만족도 (평균)
	수업 중 진로탐색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 심리검사	진로 체험	진로 상담	진로 동아리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 교육	
초등학교	89.6	-	88.8	70.8	45.6	-	57.1	4.08
중학교	89.4	91.9	87.4	85.2	64.1	45.5	43.7	3.74
고등학교	91.1	82.6	88.1	73.9	71.6	59.4	37.5	3.67

* 출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4).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4). p.74-80.

* 주: 1) 만족도 문항의 응답 범위는 1점(매우 불만족)~5점(매우 만족)임.
2) 비율, 평균, 표준편차에 가중치를 적용함.

② 직업교육 현황

가. 직업교육 경험

15~29세 청년들의 직업교육(훈련)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2025년 해당 청년 인구 중 15.6%가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보다는 여자들의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해당 기간 동안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청년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18.8%에서 15.6%로 3.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 경향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남자의 경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2018년 21.8%에서 2025년 17.3%로 4.5%P 감소하였다. 청년 실업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Ⅳ-11-17. 15~29세 청년 직업교육(훈련) 경험(2018~2025년)

(단위 : 천명, %)

구분	청년 인구	경험 비율	남자	여자
2018	9,157	18.8	16.3	21.3
2019	9,073	18.0	15.4	20.6
2020	8,934	18.2	15.8	20.6
2021	8,799	17.9	15.4	20.5
2022	8,595	17.0	14.5	19.5
2023	8,416	16.1	13.6	18.6
2024	8,173	16.7	15.0	18.5
2025	7,974	15.6	14.0	17.3

* 출처 : 통계청(2018~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34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2년 8월 24일 인출.
통계청(2022.7.19). 보도자료: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p.10.
통계청(2023.7.18). 보도자료: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p.10.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0&tag=&act=view&list_no=426365&ref_bid=203,204,205,206,207,210,211,11109,11113,11814,213,215,214,11860,11695,216,218,219,220,10820,11815,11895,11816,208,245,222,223,225,226,227,228,229,230,11321,232,233,234,12029,10920,11469,11470,11817,236,237,11471,238,240,241,11865,243,244,11893,11898,12031,11825,246에서 2023년 8월 16일 인출.
통계청(2024.7.16.). 보도자료: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p.11.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30200&bid=210&act=view&list_no=431803에서 2024년 8월 6일 인출.
통계청(2025.7.24.). 보도자료: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p.11.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0&tag=&act=view&list_no=437676&ref_bid=에서 2025년 8월 7일 인출.

* 주: 학교 교육 외에 학원이나 훈련 기관 및 시설 등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

나.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을 살펴보면, 2024년 전체 졸업자 중 진학자의 비율은 51.8%로 가장 높았으며, 취업자는 23.1%, 입대자가 2.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직업계 특성화고 졸업자들이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졸업 후 상황에 대한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2017년 진학자 비율이 32.8%, 취업자의 비율은 50%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진학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에 50%를 초과함으로써 직업계 특성화고 졸업자의 절반 이상이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취업자의 경우는 2017년에 50%로 진학자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23.1%로 졸업자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직업계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진학 선호 경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1-18.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2017~2024년)

(단위 : 명, (%))

구분	졸업자 총계 (A)	진학자(B)							취업자	입대자	기타
		소계	국내진학				국외진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	각종학교	전문대학	대학			
2017	96,022	31,466	21,934	6	8,937	400	79	110	48,001	429	16,126
2018	91,886	33,072	23,556	7	9,160	187	65	97	37,995	489	20,330
2019	90,116	38,321	27,139	8	10,845	139	36	154	27,904	701	23,190
2020	81,190	36,412	25,508	14	10,875	4	0	11	20,885	1,189	22,704
2021	70,802	33,859	22,290	0	11,557	0	7	5	18,492	1,295	17,156
2022	68,585	33,115	20,179	0	12,934	0	0	2	18,355	1,433	15,682
2023	63,595	32,174	18,517	0	13,648	0	6	3	15,473	1,412	14,536
2024	55,552	28,769	-	-	-	-	-	-	12,848	1,264	12,671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b). 2021 교육통계연보(유초중등통계). 연도별 고등학교 유형별 졸업 후 상황 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1&cd=5493&survSeq=2021&itemCode=01&menuId=m_010105&uppCd1=010105&uppCd2=010105&flag=A 2022년 8월 25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2b). 2022 교육통계연보(유초중등통계). 연도별 고등학교 유형별 졸업 후 상황 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1&cd=5493&survSeq=2022&itemCode=01&menuId=m_010105&uppCd1=010105&uppCd2=010105&flag=B 2023년 8월 16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3c). 2023 교육통계연보(유초중등통계). 연도별 고등학교 유형별 졸업 후 상황 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1&cd=6863&survSeq=2023&itemCode=01&menuId=m_010105&uppCd1=010105&uppCd2=010105&flag=B에서 2024년 7월 13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4c). 2024 교육통계연보(유초중등통계). 연도별 졸업 후 상황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5년 8월 7일 인출.

* 주: 1) 조사 기준일
- 졸업자: 해당년도 2월 기준 졸업자
- 진학자: 2010년까지 해당년도 2월 기준, 2011년부터 해당년도 4월 1일 기준

2) 고등학교 유형은 2011년 변경되었으나, 졸업자는 2014년부터 발생되어 2013년까지는 변경 전 학제로 졸업자를 표기함
- 2010년까지: 일반계고/전문계고
- 2011년부터: 일반고/특수목적고/특성화고(대안,특성화고 포함)/자율고

3) 기타에는 무직, 미상, 특수학교 전공과, 미취업자, 제외인정자가 포함됨

4) 진학자 학교 구분
- 2020년까지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자는 국내(전문대학/교육대학/대학/각종학교), 국외(전문대학/대학)으로 조사함
  · 국내 대학: 일반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포함
- 2021년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자는 국내(전문대학, 대학), 국외(전문대학/대학)으로 조사함.
  · 전문대학 : 전문대학(2,3,4년제), 기능대학, 전공대학, 사내대학(전문대학 과정) 포함
  · 대학 :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각종학교(대학과정), 사내대학(대학과정) 포함

5) 2020년부터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신규 실시로 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은 2024년 11월 업데이트 완료함

6) 2009년~2010년 교육통계연보에는 진학자에 특수학교 전공과가 포함됨. 본 자료에서는 자료의 일관성을 위하여 특수학교 전공과는 진학자에서 제외되어 기타에 포함됨.

7) 고등학교는 입학 기준으로 2011년 변경 된 학제로 졸업자를 표기함

다음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졸업 후 상황을 살펴보면, 2024년 전체 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은 55.3%로 나타났으며, 진학자 비율은 48%로 취업자의 비율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취업자 중 대부분은 보험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학자 중 54.5%는 전문대학에, 나머지는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취업자 비율은 2020년에 27.8%였으나 2021년 55.4%로 나타났으며,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의 낮은 취업률은 코로나19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진학자의 경우 2020년에 42.5%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4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직업계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변화 추이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직업계고 졸업자의 경우에도 진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1-19. 직업계고 졸업자 졸업 후 상황(2020~2024년)

(단위 : 명, (%))

구분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현황			입대자	제외 인정자	미 취업자	진학자 (진학률)	진학자 현황	
			보험 가입자	해외 취업자	농림 어업 종사자					전문 대학	대학
2020	89,998	24,938 (27.8)	24,858	-	80	1,585	970	24,290	38,215 (42.5)	27,169	11,046
2021	78,994	22,583 (55.4)	22,492	-	91	1,809	862	18,211	35,529 (45.0)	23,751	11,778
2022	76,760	22,709 (57.8)	22,603	21	85	1,873	942	16,550	34,686 (45.2)	21,517	13,169
2023	71,591	19,526 (55.7)	19,401	70	55	1,940	971	15,533	33,621 (47.0)	19,750	13,871
2024	63,005	16,588 (55.3)	16,435	105	48	1,716	1,059	13,426	30,216 (48.0)	16,467	13,749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2d). 22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p.1~5.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289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에서 2023년 8월 16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3d). 2023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p.2, 4.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686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2024년 7월 14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4d).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학교유형별 설립별 졸업 후 현황 https://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24&menuSeq=5869&publSeq=83&menuCd=102821&itemCode=02&menuId=2_2_1&language=en에서 2025년 8월 7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2024.11.7.). 보도자료: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발표. p.2. https://www.kedi.re.kr/khome/main/announce/selectBroadAnnounceForm.do?selectTp=0&board_sq_no=3&article_sq_no=35824 에서 2025년 8월 7일 인출.

* 주: 1) 조사기준일 : 2024년 4월 1일
2) 특성화고 477개교, 마이스터고 51개교, 일반고 직업반 49개교(2021년 입학당시 기준)

3) 취업자 : 보험가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4) 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직장)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5) 보험가입자에는 '21년 7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의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됨
6) 취업률(%) =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 × 100
7) 진학률(%) = (진학자 / 졸업자) × 100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1) 여가·문화·활동 인프라 및 이용 만족도

① 청소년 여가 · 문화 · 활동 시설 수

청소년들이 여가나 문화 혹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여가 · 문화 · 활동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청소년수련관은 203개소, 청소년문화의집은 363개소, 청소년수련원은 150개소, 청소년야영장은 35개소, 유스호스텔은 99개소, 청소년 특화시설은 14개소로 총 864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은 685개소로 전체 시설 가운데 79% 수준이었으며,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 가운데 민간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57.3%, 7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개소 수는 2019년 814개소에서 2024년 864개소로 50개소가 증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15개, 74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은 각각 21개, 3개, 15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감소는 주로 민간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 이후 청소년활동의 양상이 다소 변화하면서 적지 않은 수의 민간시설이 운영 상의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Ⅳ-11-20.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19~2024년)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2019	전 체	814	188	289	171	38	114	14
2020	전 체	799	191	294	159	32	108	15
	공 공	601	190	290	62	18	27	14
	민 간	198	1	4	97	14	81	1
2021	전 체	813	195	314	154	33	103	14
	공 공	622	193	310	62	19	25	13
	민 간	191	2	4	92	14	78	1
2022	전 체	837	198	333	154	32	106	14
	공 공	647	196	329	64	19	26	13
	민 간	190	2	4	90	13	80	1
2023	전 체	850	199	346	152	35	104	14
	공 공	661	197	342	64	19	26	13
	민 간	189	2	4	88	16	78	1
2024	전 체	864	203	363	150	35	99	14
	공 공	685	202	359	64	19	28	13
	민 간	179	1	4	86	16	71	1

* 출처: 여성가족부(2020.3.31.). 2019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19.12.31.기준).
여성가족부(2021.3.2.). 2020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20.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91에서 2021년 8월 11일 인출.
여성가족부(2022.3.7.). 2021년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21.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2년 8월 25일 인출.
여성가족부(2023.3.13.). 2022년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22.12.31.기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3년 8월 16일 인출.
여성가족부(2024.2.28.). 2023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세부현황(2023.12.31.기준).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4년 7월 14일 인출.
여성가족부(2025.3.5.). 2024년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24.12.31.기준).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5년 8월 7일 인출.

청소년수련시설의 전국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864개 시설 가운데 경기도에 위치한 시설이 186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원과 경남, 서울, 전남, 경북, 전북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의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수가 가장 많았으며, 유스호스텔도 경남 및 제주와 더불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관은 경기에 이어 서울에 위치한 시설 수가 두 번째로 많았으나, 청소년문화의집 수는 경기에 이어 강원, 서울, 전남과 제주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원의 경우에는 경기에 이어 경남과 충북에 많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1-21. 전국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특화시설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계	864	203	363	14	150	35	99
서울	76	32	29	8	3	-	4
부산	27	9	11	-	4	1	2
대구	22	5	10	2	3	-	2
인천	23	9	9	-	2	-	3
광주	19	5	12	1	1	-	-
대전	15	4	9	-	2	-	-
울산	15	4	8	-	1	2	-
세종	5	2	3	-	-	-	-
경기	186	39	90	1	32	10	14
강원	77	16	36	1	12	3	9
충북	49	8	18	-	18	1	4
충남	47	12	16	-	12	2	5
전북	57	11	22	1	12	3	8
전남	63	10	25	-	13	6	9
경북	58	16	19	-	11	1	11
경남	77	18	21	-	20	4	14
제주	48	3	25	-	4	2	14

* 출처: 여성가족부(2025a). 2024 청소년백서. p.511-512.

* 주: 국립 청소년시설(7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청남도 천안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도 평창군), 국립청소년우주센터(전라남도 고흥군), 국립청소년해양센터(경상북도 영덕군),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전라북도 김제시),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경상북도 봉화군), 국립청소년생태센터(부산 사하구)

다음으로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전국의 공공도서관은 1,271개소로 나타났으며, 박물관은 916개소, 미술관은 288개소이고, 문예회관과 지방문화원 및 생활문화센터는 각각 280개소, 232개소, 21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화기반시설은 모두 3,294개소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시설들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충되었는데, 전체를 기준으로 2013년 2,182개소에서 3,294개로 1,000개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문화의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 수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여가나 문화 활동 등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11-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2013~2024년)

(단위 : 개소)

구분	총 계	국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 문화센터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의 집	문학관
2013	2,182	-	828	740	171	-	214	229	-	-
2014	2,375	1	865	754	190	-	220	229	116	-
2015	2,519	1	930	809	202	-	232	229	116	-
2016	2,595	1	978	826	219	-	229	228	114	-
2017	2,657	1	1,010	853	229	-	236	228	100	-
2018	2,749	1	1,042	873	251	-	251	231	100	-
2019	2,825	3	1,096	881	258	-	255	231	101	-
2020	3,017	3	1,134	897	267	129	256	230	101	-
2021	3,087	4	1,172	900	271	147	262	230	101	-
2022	3,145	4	1,208	909	285	173	267	231	68	-
2023	3,248	4	1,236	913	286	189	272	231	69	48
2024	3,294	4	1,271	916	288	214	280	232	45	44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p.19.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683&pDataCD=0417000000&pType=02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문화체육관광부(2023c). 202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p.19.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818&pDataCD=0417000000&pType=02에서 2024년 7월 14일 인출.
문화체육관광부(2024.12.19.).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CurrentPage=1&pType=02&pTab=01&pSeq=1950&pDataCD=0417000000&pSearchType=01&pSearchWord=%EC%A0%84%EA%B5%AD+%EB%AC%B8%ED%99%94%EA%B8%B0%EB%B0%98%EC%8B%9C%EC%84%A4에서 2025년 8월 8일 인출.

* 주: 1)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의 집('14~), 생활문화센터('20~), 문학관('23~)을 통계에 포함
2) 2019년부터 국립도서관(국회도서관, 법원도서관) 2개관, 2021년부터 국립도서관(국립장애인도서관) 1개관을 통계에 포함

다음으로 전국의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전체 공공체육시설 수는 37,176개소이며, 이 가운데 간이운동장이 26,838개로 가장 많고, 기타, 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5.40㎡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의 전국 공공체육시설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공공체육시설은 15,137개소에서 37,176개소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모든 시설 유형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이운동장과 기타 유형 시설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1인당 체육시설 면적도 2010년의 3.12㎡에서 2024년에는 5.40㎡로 73%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체육시설 기반도 현저하게 확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1-23. 전국 공공체육시설 연도별 현황(2010~2023년)

(단위 : 개소, ㎡)

구분	공공체육시설 수						1인당 체육시설 면적
	계	축구장	체육관	간이운동장	테니스장	기타	
2010	15,137	618	639	11,458	549	1,783	3.12
2011	16,127	649	681	12,194	565	2,038	3.29
2012	17,157	718	738	12,855	598	2,248	3.31
2013	19,398	801	819	14,536	660	2,582	3.57
2014	21,317	852	875	16,046	696	2,848	3.81
2015	22,662	886	905	17,111	718	3,042	3.89
2016	24,303	928	955	18,394	740	3,286	4.05
2017	26,927	984	1,010	20,602	772	3,559	4.28
2018	28,578	1,019	1,066	21,847	797	3,849	4.45
2019	30,185	1,040	1,139	22,866	818	4,322	4.51
2020	31,554	1,064	1,194	23,834	832	4,630	4.59
2021	33,729	1,095	1,275	25,455	856	5,048	4.64
2022	35,941	1,109	1,337	25,983	873	6,639	4.89
2023	37,176	1,146	1,439	26,838	898	6,855	5.40

* 출처: 김영지 외(2021). 2021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p.364.
통계청 e-나라지표(2021).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s://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751&board_cd=INDX_001에서 2022년 8월 25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2022).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1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2023).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jsessionid=SK2IaQ-NXVXOR60rbo4CwPL-N8pvj0NFXh2sCRsl.node11?idx_cd=2751에서 2024년 7월 14일 인출.
지표누리(2025a).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jsessionid=SK2IaQ-NXVXOR60rbo4CwPL-N8pvj0NFXh2sCRsl.node11?idx_cd=2751에서 2025년 8월 8일 인출.
* 원출처: 문화체육관광부.「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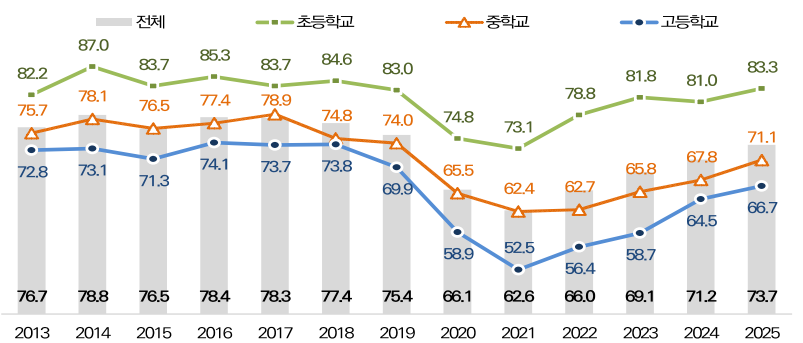
다음으로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을 살펴보았다. 우선 공공도서관의 경우 일년에 1~2회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7%로 응답자의 약 1/4 가량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의 공공도서관 이용 비율이 높았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공공도서관 이용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일주일에 1~2회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8.6%로 다른 학교급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유형의 경우 양부모가정 청소년의 공공도서관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공공도서관 이용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Ⅳ-11-24.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1) 공공도서관(2025년)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26.3	26.5	19.5	16.7	11.0	100.0(8,696)	
성별	남학생	31.8	25.3	17.6	15.5	9.9	100.0(4,465)	145.507***
	여학생	20.5	27.8	21.4	18.1	12.2	100.0(4,232)	
학교급	초등학교	16.7	22.1	21.1	21.4	18.6	100.0(2,884)	
	중학교	28.9	28.9	20.1	14.5	7.6	100.0(2,932)	491.809***
	고등학교	33.3	28.4	17.1	14.4	6.8	100.0(2,881)	
지역 규모	대도시	28.0	27.0	18.7	15.6	10.7	100.0(3,428)	
	중소도시	24.5	26.4	19.9	17.6	11.7	100.0(4,206)	21.630**
	읍면지역	27.9	25.1	20.4	17.1	9.6	100.0(1,0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5.1	26.6	20.0	17.2	11.1	100.0(7,797)	
	한부모가정	35.4	25.8	15.2	13.3	10.3	100.0(681)	83.950***
	조손가정	39.4	31.0	8.4	7.8	13.3	100.0(75)	
	기타	51.3	14.4	14.4	10.4	9.4	100.0(85)	
학업 성적	상	19.4	24.0	21.1	20.5	15.0	100.0(3,231)	
	중	26.1	28.3	19.9	16.1	9.5	100.0(3,541)	337.176***
	하	38.5	27.4	15.8	11.4	6.9	100.0(1,875)	
경제적 수준	상	24.1	25.5	20.4	17.8	12.2	100.0(5,239)	
	중	29.9	27.8	18.2	14.9	9.2	100.0(2,750)	63.075***
	하	29.0	28.3	17.7	16.1	8.9	100.0(651)	

*p 〈 .05, **p 〈 .01, ***p 〈 .001.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11-6.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1) 공공도서관(2013~2025년)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75%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이용 경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2021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73.7%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초·중·고등학생 모두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Ⅳ-11-25.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2)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2025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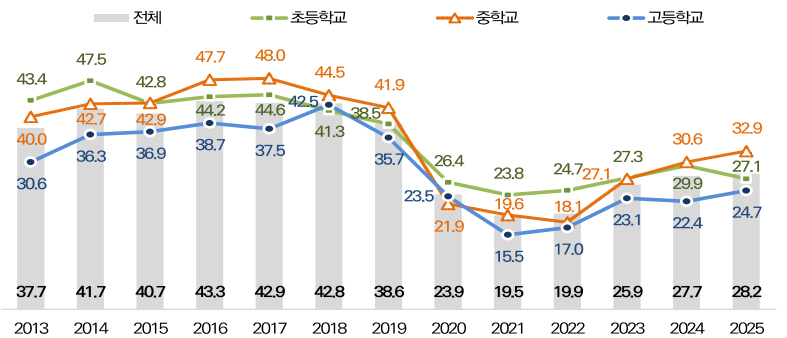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71.8	18.1	4.1	3.4	2.7	100.0(8,627)	
성별	남학생	73.0	17.0	4.2	3.0	2.8	100.0(4,434)	11.974*
	여학생	70.5	19.2	4.0	3.8	2.6	100.0(4,193)	
학교급	초등학교	72.9	14.1	4.9	3.7	4.4	100.0(2,842)	150.732***
	중학교	67.1	21.7	4.4	4.0	2.8	100.0(2,917)	
	고등학교	75.3	18.3	3.0	2.4	0.9	100.0(2,868)	
지역 규모	대도시	73.1	18.3	3.4	2.6	2.6	100.0(3,400)	33.687***
	중소도시	70.0	18.6	4.4	3.9	3.0	100.0(4,175)	
	읍면지역	74.1	15.2	5.2	3.8	1.7	100.0(1,0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1.5	18.4	4.2	3.4	2.6	100.0(7,733)	18.577
	한부모가정	74.7	16.0	2.5	3.5	3.3	100.0(677)	
	조손가정	73.9	15.1	4.7	2.2	4.0	100.0(76)	
	기타	65.6	16.5	6.7	4.2	7.0	100.0(84)	
학업 성적	상	69.9	18.4	4.5	3.8	3.4	100.0(3,202)	20.427**
	중	72.0	18.6	4.0	3.1	2.3	100.0(3,508)	
	하	74.2	16.7	3.7	3.2	2.3	100.0(1,868)	
경제적 수준	상	70.8	18.3	4.3	3.9	2.7	100.0(5,186)	19.110*
	중	74.0	17.2	3.7	2.7	2.4	100.0(2,739)	
	하	68.5	20.7	4.5	2.8	3.6	100.0(647)	

*p < .05, **p < .01, ***p < .001.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수련원 등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일년에 1~2회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2%로 응답자의 1/4이 약간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71.8%는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이용 경험이 다소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의 이용 경험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지역 규모로 살펴보면, 중소도시 청소년의 시설이용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았으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의 시설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의 경우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2019년까지는 40% 내외의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부터 시설 이용 경험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가 2023년부터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코로나19 이전의 이용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11-7.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2)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2013~2025년

다음으로 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68.6%는 일년에 1~2회 이상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이용 경험 비율이 더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체육시설 이용 경험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읍면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체육시설 이용 경험 비율이 다른 지역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체육시설

이용 경험은 학교성적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체육시설 이용 경험 비율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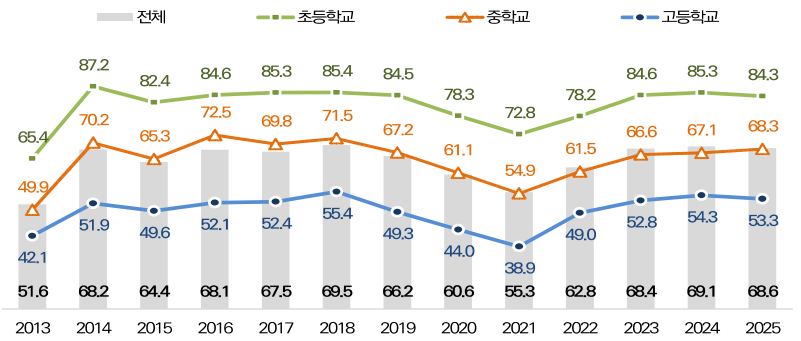
표 Ⅳ-11-26.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2025년)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31.4	24.9	14.3	11.0	18.4	100.0(8,639)	
성별	남학생	28.9	19.3	13.3	13.7	24.8	100.0(4,450)	407.547***
	여학생	34.1	30.9	15.3	8.2	11.5	100.0(4,190)	
학교급	초등학교	15.7	25.6	15.7	13.0	29.9	100.0(2,853)	835.078***
	중학교	31.7	25.3	15.8	11.1	16.0	100.0(2,920)	
	고등학교	46.7	23.8	11.3	8.9	9.2	100.0(2,867)	
지역 규모	대도시	29.9	25.0	14.0	11.0	20.1	100.0(3,401)	38.275***
	중소도시	30.9	25.3	14.7	11.2	17.9	100.0(4,185)	
	읍면지역	38.6	23.1	13.4	10.3	14.6	100.0(1,0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4	25.0	14.6	11.2	18.8	100.0(7,746)	65.705***
	한부모가정	41.0	25.5	11.3	8.5	13.6	100.0(675)	
	조손가정	36.9	22.9	8.4	18.8	12.9	100.0(76)	
	기타	46.2	11.0	8.1	10.1	24.7	100.0(83)	
학업 성적	상	22.7	23.8	16.6	13.0	23.8	100.0(3,211)	323.008***
	중	32.6	26.4	14.0	10.5	16.5	100.0(3,509)	
	하	44.0	24.0	10.9	8.8	12.3	100.0(1,871)	
경제적 수준	상	26.7	23.5	15.5	12.5	21.7	100.0(5,193)	229.582***
	중	37.7	27.7	12.9	8.6	13.2	100.0(2,746)	
	하	42.0	24.8	10.5	9.8	13.0	100.0(644)	

*p 〈 .05, **p 〈 .01, ***p 〈 .001.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체육시설 이용 경험 비율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21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다시 증가하여 2025년에는 예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모든 학교급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11-8.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3) 체육시설(2013~2025년)

다음으로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공간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2025년 77%가 일년에 1~2회 이상 문화예술공간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23%는 전혀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문화예술공간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문화예술공간 이용 경험 비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여가나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 이용에 있어 고등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학업부담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적으로는 대도시 거주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공간 이용 경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읍면지역 청소년들의 이용 경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관련 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예술공간 이용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문화예술 관련 활동에의 참여와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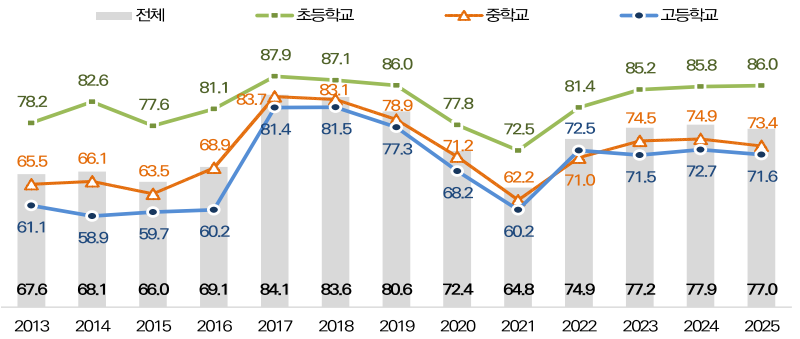
표 Ⅳ-11-27.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2025년)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23.0	35.9	26.5	12.3	2.3	100.0(8,674)	
성별	남학생	28.6	34.2	23.3	11.4	2.6	100.0(4,457)	176.338***
	여학생	17.1	37.6	30.0	13.2	2.1	100.0(4,218)	
학교급	초등학교	14.0	41.0	28.5	13.4	3.1	100.0(2,876)	
	중학교	26.6	36.2	24.7	10.7	1.9	100.0(2,923)	225.630***
	고등학교	28.4	30.4	26.4	12.8	2.0	100.0(2,875)	
지역 규모	대도시	20.3	34.6	28.3	14.2	2.6	100.0(3,412)	
	중소도시	24.1	37.6	25.2	11.0	2.1	100.0(4,203)	56.348***
	읍면지역	27.5	33.0	25.9	11.3	2.2	100.0(1,05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1.9	36.2	27.3	12.4	2.2	100.0(7,775)	
	한부모가정	32.9	31.6	20.5	12.0	3.1	100.0(680)	102.356***
	조손가정	28.7	43.7	14.2	7.4	6.0	100.0(76)	
	기타	44.0	25.0	16.7	6.5	7.9	100.0(86)	
학업 성적	상	16.7	35.6	30.8	13.8	3.1	100.0(3,221)	
	중	23.7	37.5	25.4	11.5	1.9	100.0(3,531)	202.511***
	하	32.6	33.1	21.2	11.2	1.9	100.0(1,873)	
경제적 수준	상	20.6	35.1	27.8	13.8	2.7	100.0(5,219)	
	중	26.4	37.9	24.7	9.4	1.7	100.0(2,749)	82.585***
	하	27.5	33.5	25.1	12.0	1.9	100.0(650)	

*p < .05, **p < .01, ***p < .001.
주) 2017년 조사부터 척도가 변경됨.

문화예술공간 이용 경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7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 이용경험 비율이 84.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 64.8%로 2917년 이전 수준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5년에는 7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문화예술공간 이용 경험 비율은 코로나19 이후 예년 수준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 양상은 초·중·고의 모든 학교급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Ⅳ-11-9. 여가·문화·활동시설 이용 경험_4) 문화 예술 공간(2013~2025년)

②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 만족도(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에 따른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96.1%가 '만족하는 편이다' 또는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시설 이용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이용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조금 더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학교급과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특히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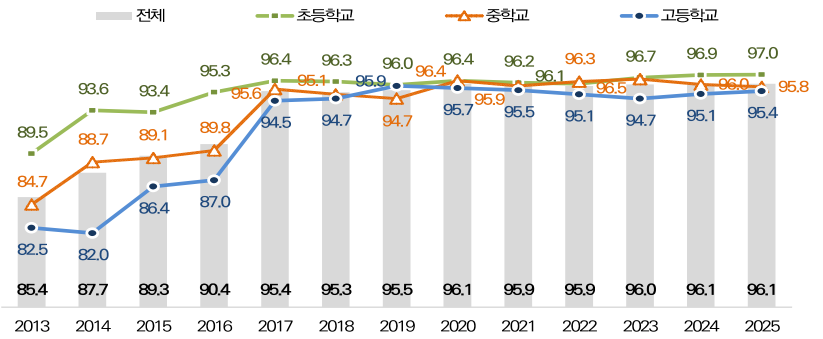
다음으로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시설 이용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그 이후에는 긍정응답 비율이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 양상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들의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에 따른 만족도는 학교급과는 관계없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1-28.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N)	χ^2
전체		3.29(0.55)	0.5	3.4	63.0	33.1	100.0(7,684)	
성별	남학생	3.30(0.58)	0.7	4.2	60.1	35.0	100.0(3,809)	36.674***
	여학생	3.28(0.52)	0.3	2.7	65.8	31.2	100.0(3,875)	
학교급	초등학교	3.43(0.57)	0.4	2.6	50.3	46.6	100.0(2,701)	375.550***
	중학교	3.25(0.54)	0.4	3.8	66.4	29.4	100.0(2,560)	
	고등학교	3.17(0.50)	0.5	4.0	73.4	22.0	100.0(2,423)	
지역 규모	대도시	3.30(0.55)	0.4	3.0	62.3	34.3	100.0(3,037)	23.018***
	중소도시	3.29(0.56)	0.5	3.7	62.0	33.8	100.0(3,724)	
	읍면지역	3.22(0.52)	0.4	3.7	69.2	26.7	100.0(92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30(0.55)	0.4	3.2	62.7	33.6	100.0(6,946)	44.128***
	한부모가정	3.23(0.52)	0.2	4.3	68.1	27.4	100.0(572)	
	조손가정	3.08(0.61)	1.7	9.9	67.3	21.2	100.0(63)	
	기타	3.34(0.77)	4.2	5.6	42.5	47.8	100.0(56)	
학업 성적	상	3.39(0.55)	0.3	2.3	55.8	41.5	100.0(2,975)	178.181***
	중	3.25(0.54)	0.6	3.7	66.4	29.4	100.0(3,125)	
	하	3.18(0.53)	0.6	5.0	69.9	24.5	100.0(1,542)	
경제적 수준	상	3.34(0.55)	0.4	2.9	58.9	37.8	100.0(4,708)	132.147***
	중	3.22(0.52)	0.4	4.0	69.2	26.4	100.0(2,363)	
	하	3.16(0.56)	1.4	4.7	70.5	23.3	100.0(567)	

*p < .05, **p < .01, ***p < .001.



* 주: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Ⅳ-11-10. 이용해 본 시설에 대한 만족도(2013~2025년)

(2)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 정도

①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 수준을 살펴보았다. 우선 15~19세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2024년을 기준으로 하여 취미·오락 활동 비율이 45.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포츠 참여가 28.8%, 사회 및 기타 활동이 1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여가활동 유형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는데, 전체 국민의 경우 스포츠 참여가 40.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취미·오락으로 2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 수준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15~19세 청소년들의 경우 취미·오락 활동은 2018년에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참여 비율은 2018년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스포츠 참여는 201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4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및 기타 활동은 2018년 5.1%에서 2024년에 15.1%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문화·예술 관람 및 문화·예술 참여와 스포츠 관람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은 주목할만한 경향으로 사료된다.

표 Ⅳ-11-29.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의 유형(복수응답, 2018~2024년)

(단위 : %)

구분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	취미·오락	사회 및 기타
2018	전체	5.8	5.9	2.0	44.0	1.6	27.6	13.1
	15-19세	13.7	9.0	3.3	30.2	0.2	38.5	5.1
2019	전체	6.5	4.9	1.8	36.1	2.5	30.8	17.5
	15-19세	13.1	9.6	1.0	30.6	-	35.0	10.9
2020	전체	2.1	4.1	1.4	44.3	2.7	33.4	12.0
	15-19세	2.6	8.0	1.8	33.1	0.2	49.8	4.5
2021	전체	1.5	4.2	1.3	42.6	4.0	35.8	10.5
	15-19세	4.9	6.6	1.2	38.4	0.2	46.1	2.5
2022	전체	2.4	3.1	2.5	36.2	4.2	31.8	19.7
	15-19세	3.3	4.1	4.3	30.8	0.9	41.9	14.7
2023	전체	3.5	3.3	2.5	38.3	4.2	28.9	19.4
	15-19세	3.4	5.4	2.1	38.2	2.8	35.1	13.0
2024	전체	2.3	3.1	3.8	40.1	3.4	27.9	19.4
	15-19세	5.0	3.2	1.6	28.8	0.7	45.6	15.1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a).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p.41.
문화체육관광부(2019a).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p.41.
문화체육관광부(2020a).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p.41.
문화체육관광부(2021a).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p.41.
문화체육관광부(2022a). 2022 국민여가활동조사. p.41.
문화체육관광부(2023b). 2023 국민여가활동조사. p.34, 74.
문화체육관광부(2024a). 2024 국민여가활동조사. p.80.

* 주: 1) 2019년, 2020년 모두 만 15세 이상 남녀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는 2019년 10,060명, 2020년 10,088명으로(조사지역: 전국 17개 시 · 도), 그 가운데 청소년은 2019년 661명, 2020년 619명으로 연령은 15~19세임.
2) 사회 및 기타 활동은 봉사활동, 친구만남 등 사회공헌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함.
3) 지속적 여가활동이란 휴식활동을 제외한 여가활동 중 일/주/월/년 단위로 지속적(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여가활동을 의미함.

청소년들의 일상 시간 활용에 있어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한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일 여가활동 시간과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을 살펴보았는데, 우선 2024년 15~19세 청소년들의 평일 여가활동 시간은 3.1시간이었고,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은 1.7시간이었으며, 주말의 여가활동 시간과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은 각각 5.4시간과 2.4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체 응답자와 비교해 보면, 평일과 주말의 여가활동 시간은 각각 3.7시간, 5.7시간인 반면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은 각각 1.6시간, 2.0시간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시간은 전체 국민의 여가활동 시간에 비해 다소 짧으며, 스마크기기 활용 시간 비중이 전체 국민의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에 비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일일 여가활동 시간과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청소년들의 평일과 주말의 여가활동 시간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평일은 3시간 정도, 주말은 5시간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도 같은 기간 동안 다소 증감은 있었으나, 변화의 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30. 일일 여가활동 시간과 여가활동 시간 중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2018~2024년)

(단위 : 시간)

년도	구분	평일		휴일	
		여가활동시간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여가활동시간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2018	전체	3.3	1.3	5.3	1.8
	15-19세	2.8	1.9	5.1	2.8
2019	전체	3.5	1.3	5.4	1.6
	15-19세	3.0	1.9	5.5	2.6

년도	구분	평일		휴일	
		여가활동시간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여가활동시간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2020	전체	3.7	2.0	5.6	2.3
	15-19세	3.3	2.8	5.8	3.6
2021	전체	3.8	1.9	5.8	2.3
	15-19세	3.4	2.6	5.8	3.4
2022	전체	3.7	1.4	5.5	1.8
	15-19세	3.1	1.8	5.4	2.6
2023	전체	3.6	1.6	5.5	2.0
	15-19세	3.2	1.8	5.6	2.6
2024	전체	3.7	1.6	5.7	2.0
	15-19세	3.1	1.7	5.4	2.4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a).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p.44.
문화체육관광부(2019a).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p.44.
문화체육관광부(2020a).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 p.45.
문화체육관광부(2021a). 2021 국민여가활동조사. p.45.
문화체육관광부(2022a). 2022 국민여가활동조사. p.45.
문화체육관광부(2023b). 2023 국민여가활동조사. p.84.
문화체육관광부(2024a). 2024 국민여가활동조사. p.59.

* 주: 1) 2019년, 2020년 모두 만 15세 이상 남녀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자는 2019년 10,060명, 2020년 10,088명으로(조사지역: 전국 17개 시 · 도), 그 가운데 청소년은 2019년 661명, 2020년 619명으로 연령은 15~19세임.
2) 스마트기기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를 뜻함.

②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및 만족도(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수준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평일 여가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 22.5%,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이 17.1%로 나타났고,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과 5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반면, 1시간 미만과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및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성별에 따른 여가시간의 분포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 4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및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다만 한가지 특기할 것은 초등학생의 경우 평일

여가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4.2%로 다른 학교급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업성적과 평일 여가시간과는 매우 흥미로운 양상이 관찰되는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여가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1시간 미만이거나 1시간 이상 및 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학업성적은 평일 여가시간과는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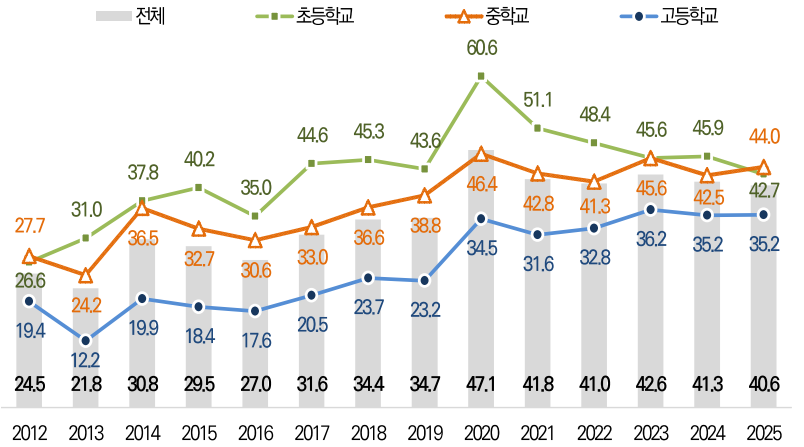
표 Ⅳ-11-31. 평일 여가시간(2025년)

(단위 : %(명))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전체(N)	χ^2
전체		11.9	25.0	22.5	17.1	9.1	14.4	100.0(8,670)	
성별	남학생	11.3	24.4	23.3	16.7	8.5	15.8	100.0(4,449)	24.290***
	여학생	12.6	25.6	21.6	17.6	9.7	13.0	100.0(4,221)	
학교급	초등학교	14.2	22.5	20.6	16.5	11.1	15.0	100.0(2,869)	120.094***
	중학교	9.5	23.1	23.4	18.4	9.3	16.3	100.0(2,925)	
	고등학교	12.0	29.2	23.5	16.5	6.8	11.9	100.0(2,877)	
지역 규모	대도시	12.3	25.9	22.1	17.5	8.8	13.4	100.0(3,417)	12.246
	중소도시	11.4	24.5	22.9	17.1	9.3	14.8	100.0(4,201)	
	읍면지역	12.5	23.5	22.2	16.1	9.3	16.3	100.0(1,0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2.2	25.6	22.7	16.8	8.9	13.7	100.0(7,778)	57.438***
	한부모가정	8.1	19.1	21.3	19.4	10.5	21.6	100.0(676)	
	조손가정	13.2	23.0	23.1	20.4	8.1	12.2	100.0(74)	
	기타	13.1	18.3	16.8	23.2	10.6	18.1	100.0(83)	
학업 성적	상	14.8	28.7	23.2	14.9	8.4	9.9	100.0(3,222)	260.114***
	중	10.4	24.3	23.8	19.0	8.8	13.8	100.0(3,528)	
	하	9.7	20.1	18.7	17.6	10.8	23.2	100.0(1,874)	
경제적 수준	상	12.3	25.7	22.1	17.3	9.4	13.2	100.0(5,223)	35.225***
	중	10.8	25.0	23.7	16.6	8.3	15.7	100.0(2,749)	
	하	12.9	20.0	20.1	18.6	10.1	18.4	100.0(646)	

*p < .05, **p < .01, ***p < .001.

평일 여가시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2년 이후 증가와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2020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후에는 다시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0년에 여가 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예전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 주: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의 합계(단위: %)

그림 Ⅳ-11-11. 평일 여가시간(2012~2025년)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86.6%가 '만족하는 편이다' 또는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긍정응답 비율이 다소 높았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여가활동 만족도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고등학생들의 여가활동 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여가활동에의 참여 정도는 물론 여가활동 만족도도 다른 학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입시 등과 관련한 학업부담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학교성적이 낮거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의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만족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소년들의 거주지역의 규모,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이 여가활동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11-32. 여가활동 만족도(2025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N)	χ^2
전체		3.19(0.72)	2.2	11.2	51.8	34.8	100.0(8,702)	
성별	남학생	3.25(0.72)	2.7	8.8	48.9	39.6	100.0(4,474)	126.440***
	여학생	3.13(0.70)	1.8	13.6	54.7	29.8	100.0(4,227)	
학교급	초등학교	3.40(0.68)	1.2	7.4	41.9	49.5	100.0(2,880)	491.195***
	중학교	3.17(0.71)	2.4	10.9	54.5	32.2	100.0(2,938)	
	고등학교	3.01(0.71)	3.1	15.2	58.8	22.9	100.0(2,883)	
지역 규모	대도시	3.21(0.70)	1.8	10.9	51.7	35.6	100.0(3,423)	27.187***
	중소도시	3.20(0.71)	2.1	11.1	51.5	35.3	100.0(4,220)	
	읍면지역	3.10(0.76)	4.1	12.3	53.0	30.7	100.0(1,05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20(0.71)	2.0	11.0	51.8	35.2	100.0(7,808)	49.813***
	한부모가정	3.10(0.73)	2.8	13.9	54.0	29.3	100.0(677)	
	조손가정	3.14(0.86)	6.8	9.7	46.0	37.4	100.0(76)	
	기타	3.19(0.95)	8.8	10.5	34.1	46.6	100.0(86)	
학업 성적	상	3.30(0.72)	1.9	9.7	45.2	43.2	100.0(3,234)	236.920***
	중	3.19(0.68)	1.7	10.1	55.8	32.4	100.0(3,548)	
	하	3.02(0.75)	3.8	15.7	55.4	25.1	100.0(1,874)	
경제적 수준	상	3.28(0.69)	1.7	8.8	49.4	40.1	100.0(5,245)	289.093***
	중	3.11(0.71)	2.5	12.7	56.5	28.3	100.0(2,757)	
	하	2.86(0.80)	5.5	23.1	51.2	20.2	100.0(649)	

*p 〈 .05, **p 〈 .01, ***p 〈 .001.
*주: 2024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여가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중복응답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그 가운데 1순위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것은 여가활동을 할 시간의 부족이었으며,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5%가 시간부족을 불만족 이유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18.2%가 여가활동을 하기에 돈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꼽았으며, '보호자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생은 시간부족 다음으로 보호자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해서 불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시간부족과 더불어 여가활동에 필요한 돈의 부족을 두 번째 이유로 꼽았다. 특히 시간부족을 불만족 원인으로 지적한 비율은 고등학생의 경우에 월등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고등학생들이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로 시간부족을 선택한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여가생활에 필요한 돈의 부족을 선택한 비율은 반대로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학업성적이 좋거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경우 여가활동에 불만족을 경험하는 주된 이유는 여가 시간의 부족이었으며, 여가활동에 필요한 돈의 부족은 학업성적이 낮거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에게서 불만족 원인으로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Ⅳ-11-33.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1순위, 2025년)

(단위 : %(명))

구분		여가활동을 하기에 돈이 부족해서	여가활동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해서	여가활동 공간(시설)이 부족해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여가활동을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보호자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해서	기타	전체(N)	χ^2
전체		18.2	53.5	0.8	4.2	0.6	3.3	7.4	8.2	3.8	100.0(1,128)	
성별	남학생	16.3	52.8	1.0	4.2	0.9	4.4	7.2	8.5	4.6	100.0(486)	8.274
	여학생	19.6	54.0	0.7	4.1	0.4	2.5	7.6	7.9	3.2	100.0(642)	
학교급	초등학교	13.3	50.5	1.3	5.5	0.7	5.0	4.4	15.8	3.5	100.0(240)	66.619***
	중학교	20.8	46.0	0.6	5.1	0.5	3.0	8.4	10.7	4.9	100.0(374)	
	고등학교	18.5	60.3	0.8	2.8	0.6	2.8	8.2	2.8	3.2	100.0(514)	
지역규모	대도시	15.0	55.1	0.6	5.0	0.5	4.3	6.6	8.5	4.5	100.0(420)	22.504
	중소도시	21.3	51.4	0.7	4.3	0.7	2.9	7.6	8.6	2.6	100.0(537)	
	읍면지역	16.3	56.1	2.1	1.7	0.6	2.2	9.0	6.3	5.7	100.0(171)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16.8	55.1	0.8	4.1	0.5	3.5	6.7	8.7	3.8	100.0(985)	38.705*
	한부모가정	29.5	40.5	1.0	4.4	1.4	0.7	13.0	4.6	5.0	100.0(112)	
	조손가정	30.2	53.2	4.5	3.9	0.0	0.0	0.0	8.3	0.0	100.0(13)	
	기타	17.6	43.3	0.0	8.3	0.0	8.3	15.8	6.6	0.0	100.0(14)	
학업성적	상	9.9	62.3	0.2	3.8	0.7	2.5	6.5	10.1	4.1	100.0(364)	57.409***
	중	19.9	56.0	1.0	3.9	0.3	2.9	5.7	6.9	3.6	100.0(401)	
	하	25.2	40.7	1.5	4.9	0.8	4.8	10.5	7.8	3.8	100.0(355)	
경제적수준	상	12.2	61.6	0.8	4.3	0.4	3.4	6.4	8.1	2.8	100.0(533)	70.714***
	중	18.8	51.2	1.0	3.1	0.3	3.4	7.8	9.0	5.3	100.0(404)	
	하	34.0	33.8	0.6	6.1	1.8	3.3	9.9	7.1	3.3	100.0(182)	

*p < .05, **p < .01, ***p < .001.

* 주: 2024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이 1순위와 2순위로 꼽은 비율을 종합한 결과를 살펴보면, 앞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가활동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서'가 71.7%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여가활동을 하기에 돈이 부족해서'가 3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앞서의 경우와는 달리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2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이 주어져도 그 시간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지 모르는 비율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여가시간 부족과 여가활동에 필요한 돈의 부족을 불만족 이유로 꼽은 비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는 중학생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앞서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Ⅳ-11-34.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1+2순위, 2025년)

(단위 : %(명))

구분		여가 활동을 하기에 돈이 부족 해서	여가 활동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 해서	교통 수단 이용이 불편 해서	여가 활동 공간 (시설)이 부족 해서	여가 활동 프로 그램이 부족 해서	여가 활동을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보호자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해서	기타	전체(N)
전체		36.4	71.7	2.9	12.8	3.9	13.8	23.0	17.6	3.8	100.0(1,128)
성별	남학생	32.5	68.9	3.4	13.0	5.9	15.2	20.4	20.1	4.6	100.0(486)
	여학생	39.3	73.8	2.6	12.7	2.4	12.8	24.9	15.8	3.2	100.0(642)
학교급	초등학교	28.4	64.3	2.8	10.1	5.1	23.2	19.2	28.0	3.5	100.0(240)
	중학교	36.9	67.5	1.5	15.0	3.4	11.8	25.5	21.3	4.9	100.0(374)
	고등학교	39.7	78.2	4.1	12.4	3.8	10.9	22.9	10.1	3.2	100.0(514)
지역 규모	대도시	32.5	73.5	2.0	13.0	4.6	15.5	21.5	17.8	4.5	100.0(420)
	중소도시	38.8	71.4	3.0	11.2	3.6	13.8	24.2	17.5	2.6	100.0(537)
	읍면지역	38.1	68.1	5.2	17.4	3.3	9.7	22.6	17.6	5.7	100.0(17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4.6	72.7	2.9	12.8	4.0	14.1	22.3	18.6	3.8	100.0(985)
	한부모가정	46.1	63.6	3.5	12.9	3.2	10.2	28.9	10.4	5.0	100.0(112)
	조손가정	63.4	83.3	4.5	19.5	0.0	7.2	8.4	8.3	0.0	100.0(13)
	기타	41.9	56.7	0.0	8.3	7.9	20.9	28.3	20.0	0.0	100.0(14)
학업 성적	상	23.4	81.5	1.5	13.9	5.1	13.4	21.3	20.6	4.1	100.0(364)
	중	40.5	72.9	2.8	11.7	3.6	11.0	21.5	16.8	3.6	100.0(401)
	하	44.7	59.6	4.6	12.9	3.1	17.6	26.8	15.6	3.8	100.0(355)
경제적 수준	상	28.1	79.1	2.8	14.2	3.1	14.3	21.5	18.3	2.8	100.0(533)
	중	37.0	70.0	3.5	10.3	4.3	12.0	25.9	18.4	5.3	100.0(404)
	하	57.7	52.8	2.3	14.5	5.6	17.1	21.9	14.5	3.3	100.0(182)

* 주: 2024년부터 추가된 문항임.

③ 하루 평균 학습 시간

2025년 기준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을 살펴보면,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 21%,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이 18.2%였으며, 4시간 이상도 1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약 1/4 정도는 하루 평균 4시간 혹은 그 이상을 공부하는데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 따른 학습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들의 경우 2시간 이상부터 6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들보다 높았으나, 남학생들은 2시간 미만 혹은 6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인 경우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경제적 수준의 경우는 2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은 청소년의 하루 평균 학습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Ⅳ-11-35. 평일 학습 시간(2025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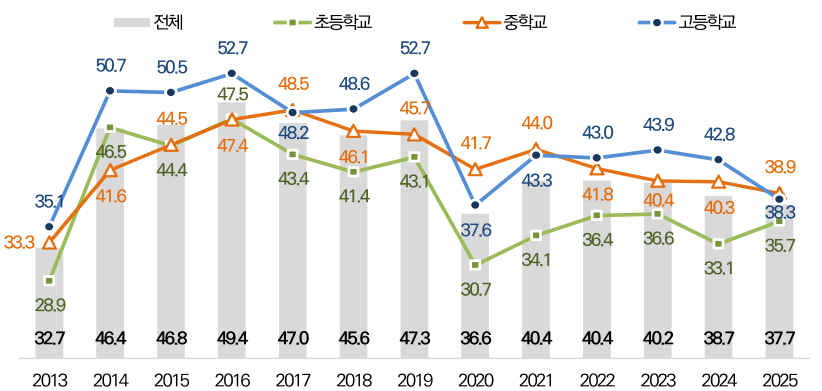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전체(N)	χ^2
전체		18.2	21.0	23.2	18.2	11.0	5.3	3.0	100.0(8,684)	
성별	남학생	19.9	21.2	22.4	17.7	10.3	5.2	3.5	100.0(4,456)	30.730***
	여학생	16.5	20.8	24.0	18.8	11.8	5.5	2.5	100.0(4,227)	
학교급	초등학교	14.6	24.0	25.7	16.5	9.9	5.5	3.8	100.0(2,877)	125.554***
	중학교	17.0	20.4	23.6	19.9	11.4	5.3	2.3	100.0(2,933)	
	고등학교	23.0	18.5	20.2	18.3	11.8	5.2	3.0	100.0(2,874)	
지역 규모	대도시	16.7	18.1	22.1	19.9	13.1	6.3	3.9	100.0(3,424)	111.037***
	중소도시	18.0	22.6	24.9	17.4	10.0	4.6	2.5	100.0(4,201)	
	읍면지역	23.6	23.9	19.6	16.5	8.6	5.3	2.5	100.0(1,05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6.8	21.0	23.4	18.8	11.3	5.6	3.2	100.0(7,789)	125.011***
	한부모가정	32.3	19.8	20.2	13.2	9.6	3.1	1.9	100.0(678)	
	조손가정	21.8	25.3	29.4	12.5	5.9	2.4	2.7	100.0(74)	
	기타	24.8	28.2	20.2	14.0	8.2	1.2	3.5	100.0(84)	
학업 성적	상	8.6	18.2	24.0	21.9	14.5	7.5	5.3	100.0(3,223)	933.895***
	중	16.3	23.3	26.0	18.2	9.8	4.6	1.8	100.0(3,542)	
	하	38.5	21.7	16.1	11.8	7.2	3.1	1.7	100.0(1,873)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전체(N)	χ^2
경제적 수준	상	14.7	20.5	24.4	19.1	11.5	6.2	3.6	100.0(5,234)	151.709***
	중	22.6	21.5	21.5	17.5	10.2	4.4	2.3	100.0(2,751)	
	하	28.1	23.0	19.3	14.3	10.0	3.2	2.1	100.0(647)	

*p 〈 .05, **p 〈 .01, ***p 〈 .001.

평일 학습 시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주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6년에 49.4%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특히 2020년에는 36.6%로 크게 하락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학교가 정상화됨에 따라 2021년의 평일 학습 시간은 다시 증가하였으나, 이후 2025년까지 조금씩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20년 이후 점차 증가하다가 2024년에 다소 하락한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2017년 47%를 고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은 2014년에 50%를 초과한 이후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20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 43.9%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3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 최근 평일 학습 시간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주: '3~4시간', '4~5시간', '5~6시간', '6시간 이상'의 합계(단위: %)

그림 Ⅳ-11-12. 평일 학습 시간(2013~2025년)

4) 소결

먼저 교육에의 권리와 관련하여 교육기회 보장 정도와 관련하여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과정에서의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과 중등교육과정의 경우 2015년에 우리나라의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값을 초과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은 2021년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2021년 고등교육과정의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이나 중등교육과정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2000년부터 2021년까지 OECD 평균값과 비교하여 볼 때, 여전히 OECD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오히려 그 차이는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고등교육과정에서의 공교육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는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OECD 평균값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더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을 위한 여건이 향상되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사교육비의 증가폭이 전체 학생이나 참여 학생을 기준으로 한 경우 모두에서 다른 학교급에 비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이 교육기회에의 접근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면, 가구당 소득수준이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는 교육기회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학교 부적응과 관련하여 학업중단율은 고등학생에게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었으며, 학업중단율이 낮았던 코로나19 시기 이후 정상적인 등교가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1/4을 상회하였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학업중단 의사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로는 '공부하기 싫어서'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가 가장 많았으며, 배경변인에 따른 학업중단 생각 이유의 분포는 각 변인별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인별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애아동 · 청소년 대상 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이 현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을 포함하여 일반학교에 배치된 비율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우선 학교 교육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4개 항목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는 항목에서는 94.2%, 선생님이 학생들을 존중한다는 항목에서는 96.1%, 수업시간이 재미있다는 항목에서는 72.5%,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는 항목에서는 73.4%로 나타남으로써 학교에서의 대인 관계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수업이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서는 75%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초·중·고교에서의 진로교육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활동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15~29세 청년들의 직업교육(훈련) 경험 정도는 약 15.6%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청년의 비율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청년 실업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상황을 살펴보면, 2024년 전체 졸업자 중 진학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17년 이후 진학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직업계 특성화고 졸업자들의 진학 선호 경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도 진학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진학 선호 경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경험과 관련하여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청소년수련시설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은 감소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청소년활동의 양상이 다소 변화하면서 적지 않은 수의 민간시설이 운영 상의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포함한 문화기반시설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이 여가나 문화 활동 등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0년 이후 전체 공공체육시설은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인당 체육시설 면적도 2010년에서 2024년 사이에 73%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체육시설 기반도 현저하게 확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25년 기준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응답자의 3/4정도로 나타났고. 청소년수련시설은 28.2%, 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은 68.6%,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공간은 77%가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시설 이용 경험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학업부담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년들의 여가·문화·활동 시설 이용에 따른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 수준을 살펴보면, 취미·오락 활동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스포츠 참여, 사회 및 기타 활동 등의 순으로 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비중이 전체 국민의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들의 여가의 장(field)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아가고 있으므로 유해환경에 대한 보호는 유지하면서, 온라인에서 긍정적인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수준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평일 여가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순으로 높았고,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로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여가생활 만족도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생활 만족도도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여가활동을 할 시간의 부족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시간부족도 중요한 이유로 언급되었다.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생은 시간부족 다음으로 보호자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해서 불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중학생

과 고등학생은 시간부족과 더불어 여가활동에 필요한 돈의 부족을 두 번째 이유로 꼽았다. 특히 시간부족을 불만족 원인으로 지적한 비율은 고등학생의 경우에 월등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 고등학생들이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루 평균 학습시간과 관련하여 2025년 기준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들의 약 1/4 정도는 하루 평균 4시간 혹은 그 이상을 공부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학습 시간의 변화 양상과 관련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 최근 평일 학습 시간이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2. 특별 보호조치(Special protection measures)

특별 보호조치 클러스터 개요 및 주요 내용 요약

○ 특별 보호조치 클러스터 개요

- 특별 보호조치는 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대상자나 상황에 관한 클러스터로 난민, 소수민족, 사법절차 내 아동, 노동착취 등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해 포괄하고 있음.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2조(난민아동), 제32조(아동노동), 제40조(소년사법) 등과 관련이 있음.
- 이 절에서는 이들 대상과 주제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조치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음.

○ 특별 보호조치 클러스터의 주요 내용 요약

- 전체 난민 신청자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5% 수준인 데 비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인원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였으며, 최근 신규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는 200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2023년 기준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국내 출생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94%로 그 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탈북청소년들의 학교 중도탈락률은 일반청소년들의 중도탈락률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중도탈락률도 상승함.
-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14~15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17세와 18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청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권친화적 사법 환경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사건의 국선보조인 선정 수는 2023년 이후 증가하였으며, 소년보호사건의 항고 및 재항고 건 가운데 기각된 경우가 대부분인 이고, 인용(환송)된 경우는 처리된 건수 가운데 10%를 조금 웃돎.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구 수

① 아동·청소년 난민 수

우리나라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과 관련하여 먼저 아동·청소년 난민에 대해 살펴보면, 2024년 기준 18세 미만 난민 신청자 수는 1,008명으로 전체 신청자 수 대비 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청자 수 대비 18세 미만 신청자 수 비율은 2005년 2.2% 수준에서 2024년에는 5.5%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이 비율은 최근 5.5%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4년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청소년 수는 57명으로 전체 인정자 중 54.3%로서 절반을 조금 초과한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비율은 최근 50% 전후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24년 인도적 체류 결정을 받은 아동·청소년 수는 17명이었으며, 이는 인도적 체류 결정을 받은 전체 인원 대비 16.8% 수준으로 2023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전체 난민 신청자 비율은 5% 수준인데 비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인원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경향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Ⅳ-12-1.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2003~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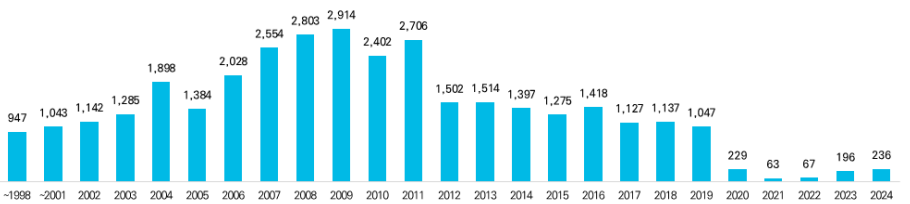
(단위 : 건, 명, %)

구분	신 청			인 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 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2003 이전	9	3.6	251	0	0.0	14	0	0.0	13	0	0.0	41	3	7.3	41
2005	9	2.2	410	0	0.0	9	3	23.1	13	0	0.0	76	1	3.2	31
2010	30	7.1	423	6	12.8	47	5	14.3	35	4	1.3	310	2	2.8	71
2015	315	5.5	5,711	40	38.1	105	52	26.8	194	-	-	3,976	-	-	280
2016	342	4.5	7,541	47	48	98	114	46.3	246	-	-	4,978	-	-	731
2017	357	3.6	9,942	48	39.7	121	102	32.1	318	-	-	5,582	-	-	1,200
2018	556	3.4	16,173	61	42.4	144	38	7.4	514	-	-	3,221	-	-	2,029
2019	459	3.0	15,451	37	46.8	79	41	17.7	232	-	-	5,287	-	-	4,139

구분	신 청			인 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 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비율	전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비율	전체
2020	279	4.2	6,684	36	52.2	69	20	12.9	155	-	-	6,542	-	-	5,930
2021	188	8.0	2,341	40	55.6	72	11	24.4	45	-	-	5,920	-	-	3,694
2022	646	5.6	11,539	87	49.7	175	23	34.3	67	-	-	5,277	-	-	639
2023	1,058	5.6	18,837	45	44.6	101	23	17.8	129	-	-	6,872	-	-	1,136
2024	1,008	5.5	18,336	57	54.3	105	17	16.8	101	-	-	6,602	-	-	1,842

② 탈북 난민 아동·청소년 수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 2,9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1년까지 2천 명을 초과하였다가 2012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입국자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 신규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는 200명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통일부(2022). 2022 통일백서. p.287.
통일부(2023). 2023 통일백서. p.121.
통일부(2024). 2024 통일백서. p.84.
통일부(2025). 2025 통일백서. p.89.

* 주: 단위: 명

그림 Ⅳ-12-1. 연도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1998~2024년)

2025년 3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 청소년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4,293명 가운데 10~19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1.1%이고, 20~29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8.2%인 것으로 나타났다. 10~19세와 20~29세 입국자 가운데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4.7%와 2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체 입국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27.9%,

여성의 비율이 72.1%임을 감안하면, 10~19세 집단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2.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2025년)

(단위 : 명)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652	1,709	2,645	2,177	1,410	609	359	9,561
여	646	2,113	7,042	7,694	4,721	1,510	1,006	24,732
합계	1,298	3,822	9,687	9,871	6,131	2,119	1,365	34,293

* 출처: 통일부(2025.3). 북한이탈주민정책(2025.3월 기준). 연령대별 입국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에서 2025년 8월 8일 인출.

* 주: 2025년 3월말 기준. 입국당시 연령 기준이며,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 등에 있는 일부인원은 제외된 수치로 입국인원과 차이가 있음.

③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수

2023년 기준 다문화가족의 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08,402명 가운데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6% 수준인 반면, 국내 출생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94%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4.6%였으나 이후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국내 출생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95.4%에서 94.7%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다문화가족 자녀의 구성 비율에 있어 국내 출생 자녀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2-3.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2017~2023년)

(단위 : 명, %)

구분	합계			귀화·인지 및 외국국적			국내 출생 자녀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7	222,455	113,686	108,769	10,153	4,825	5,328	212,302	108,861	103,441
2018	237,506	121,278	116,228	11,361	5,441	5,920	226,145	115,837	110,308
2019	264,626	135,110	129,516	12,660	6,026	6,634	251,966	129,084	122,882
2020	275,990	140,750	135,240	14,344	6,846	7,498	261,646	133,904	127,742
2021	289,529	147,612	141,917	15,807	7,513	8,294	273,722	140,099	133,623
2022	299,440	152,620	146,820	17,363	8,310	9,053	282,077	144,310	137,767
2023	308,402	157,348	151,054	18,516	8,899	9,617	289,886	148,449	141,437

* 출처: 행정안전부(2019.11). 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18년 11월 1일 기준). p.75.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행정안전부(2020.11). 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19년 11월 1일 기준). p.71.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에서 2021년 8월 10일 인출.
행정안전부(2021.1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20년 11월 1일 기준). p.73.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GrK7W-FqVupq+xriLgQUMwRY.node50?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8648에서 2022년 8월 26일 인출.
행정안전부(2022.11).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21년 11월 1일 기준). p. 72.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96092에서 2023년 8월 17일 인출.
행정안전부(2023.11).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22년 11월 1일 기준). p. 73.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104797#none에서 2024년 7월 15일 인출.
행정안전부(2024.10).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23년 11월 1일 기준). p. 78.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ebs9UdYP0MQKf1Fj7ud1xvgv.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113261#none에서 2025년 8월 8일 인출.

* 주: 1) 외국인주민 자녀는 미성년자만 집계한 것임.
2) 전체 외국인주민 유형에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및 한국국적취득자로 분류

2023년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34%, 초등학생이 35.9%, 중고생이 30.1%로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미취학 아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구성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 가운데 귀화·인지 및 외국 국적을 가진 미취학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초등학생은 2.4%, 중고생은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내 출생 자녀의 경우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 중 미취학 아동의 비율은 32.9%, 초등학생은 33.5%, 중학생은 27.6%로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2-4.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2023년)

(단위 : 명, %)

연령별		합계		귀화·인지 및 외국 국적		국내 출생	
		N	구성비	N	구성비	N	구성비
계		308,402		18,516		289,886	
소계		104,763	34.0	3,365	1.0	101,398	32.9
미취학 아동	0세	11,874	3.9	29	0.0	11,845	3.8
	1세	12,422	4.0	79	0.0	12,343	4.0
	2세	14,453	4.6	219	0.1	14,234	4.6
	3세	16,286	5.1	494	0.2	15,792	5.1
	4세	16,955	5.3	737	0.2	16,218	5.3

연령별		합계		귀화·인지 및 외국 국적		국내 출생	
		N	구성비	N	구성비	N	구성비
	5세	16,168	5.0	843	0.3	15,325	5.0
	6세	16,605	5.1	964	0.3	15,641	5.1
소계		110,577	35.9	7,249	2.4	103,328	33.5
초등학생	7세	17,330	5.6	1,176	0.4	16,154	5.2
	8세	17,791	5.8	1,159	0.4	16,632	5.4
	9세	17,732	5.7	1,206	0.4	16,526	5.4
	10세	18,614	6.0	1,228	0.4	17,386	5.6
	11세	19,713	6.4	1,280	0.4	18,433	6.0
	12세	19,397	6.3	1,200	0.4	18,197	5.9
소계		93,062	30.1	7,902	2.6	85,160	27.6
중고생	13세	19,216	6.2	1,201	0.4	18,015	5.8
	14세	18,391	6.0	1,416	0.5	16,975	5.5
	15세	17,876	5.8	1,534	0.5	16,342	5.3
	16세	16,029	5.2	1,390	0.5	14,639	4.7
	17세	11,863	3.8	1,231	0.4	10,632	3.4
	18세	9,687	3.1	1,130	0.4	8,557	2.8

* 출처: 행정안전부(2024.10).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23년 11월 1일 기준). p. 81.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ebs9UdYP0MQKf1Fj7ud1xvgv.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113261#none에서 2025년 8월 8일 인출.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

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과 관련하여 우선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분포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 수 가운데 국내출생의 경우는 69.6%, 중도입국은 6.2%, 외국인 가정은 2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가운데 국내출생 비율은 68.2%였으며, 중도입국은 5.1%, 외국인 가정은 26.6% 수준이었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국내 출생의 비율이 7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문화가정 중학생과 고등학생 가운데 국내 출생의 비율은 초등학교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다문화가정 학생 가운데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의 75.6%에서 2024년에 68.2%로 7.4%P 감소한 반면, 외국인 가정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20%에서 26.6%로, 중도입국의 비율은 4.6%에서 5.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내 출생 학생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2-5.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2022~2024년)

(단위 : 명, %)

구분	2022					2023					2024				
	초	중	고	각종학교	계	초	중	고	각종학교	계	초	중	고	각종학교	계
국내출생	84,241	29,940	11,614	234	126,029	82,491	32,210	15,063	146	129,910	80,155	34,682	19,811	169	134,817
중도입국	5,087	2,874	1,784	193	9,938	5,617	3,108	1,928	243	10,896	6,037	3,201	2,412	337	11,987
외국인가정	22,312	6,900	3,346	120	32,678	27,531	8,380	4,199	262	40,372	31,267	10,027	5,450	266	47,010
계	111,640	39,714	16,744	547	168,645	115,639	43,698	21,190	651	181,178	117,459	47,910	27,673	772	193,814
비율	66.2	23.5	9.9	0.3	100	-	-	-	-	-	-	-	-	-	-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5). 연도별 다문화 학생수.
https://kess.kedi.re.kr/kessTheme/zipyo?survSeq=0000&survCd=3397&uppCd1=030201&menuId=m_02_03_01&itemCode=03에서 2025년 8월 8일 인출.
* 원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 주: 1) 다문화 학생 수 = 국제결혼 가정 자녀(국내출생 자녀 + 중도입국 자녀) + 외국인 가정 자녀
2) 국제결혼가정 자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모(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로 국내출생과 중도입국으로 분류됨
2-1) 국내 출생 자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2-2) 중도입국 자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
3) 외국인 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4) 조사기준일: 매년 4월 1일(2012년부터 조사됨)

다문화 학생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2024년까지 다문화학생 수는 38,678명에서 193,814명으로 5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전체 학생 수 가운데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0.55%에서 3.8%로 3.2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학생이 전체 학생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4% 미만이지만 다문화학생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2-6.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2011~2024년)

(단위 : 명,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다문화 학생 수(A)	38,678	46,954	55,780	67,806	82,536	99,186	109,387
전체 학생 수(B)	6,986,853	6,732,071	6,489,349	6,294,148	6,097,297	5,890,949	5,733,132
다문화 학생 비율 (A/B*100)	0.55	0.70	0.86	1.08	1.35	1.68	1.91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다문화 학생 수(A)	122,212	137,225	147,378	160,058	168,645	181,178	193,814
전체 학생 수(B)	5,592,792	5,461,614	5,355,832	5,332,044	5,284,718	5,261,818	5,132,180
다문화 학생 비율 (A/B*100)	2.19	2.51	2.75	3.00	3.19	3.5	3.8

* 출처: 교육부(2020.2).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p.27.
교육부(2021.2). 2021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p.25.
교육부(2022.2).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p.25.
김영지 외(2021). 2021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p.386.
교육부(2023.2).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안). p.26.
한국교육개발원(2023.12.19.). KEDI분석 브리프. 2023년 27호. 2023 교육기본통계로 살펴본 한국 교육 현황. p.3, 5.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KediBriefForm.do?selectTp=0&board_sq_no=41&article_sq_no=35449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교육통계서비스. 2024 교육통계 주요지표 포켓북. 다문화 학생수.
https://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24&menuSeq=3648&publSeq=59&menuCd=102649&itemCode=02&menuId=0_9&language=에서 2025년 8월 8일 인출.
지표누리(2025b). 다문화 학생 비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10&idxCd=F0084에서 2025년 8월 8일 인출.
교육부(2024b). 행복한교육 2024년 겨울호. 다문화 학생 19만 명 넘어, 역대 최고기록.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5160&nttId=39211에서 2025년 8월 9일 인출.

* 주: 2013년도 이후의 수치는 가장 최근 자료에 제시된 수치를 참고하였음.

다음으로 탈북학생의 연도별 재학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전체 2,645명 가운데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4.1%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은 24.7%, 고등학생은 26.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2024년까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탈북학생들 가운데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49.2%에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25%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이 2018년 6.8%에서 2024년에는 8.2%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규학교가 아닌 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탈북학생이 조금씩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2-7.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2010~2024년)

(단위 : 명, (%))

구분	학교 유형				합계
	초	중	고	기타학교*	
2010.4	562(49.2)	305(26.7)	276(24.1)	-	1,143
2011.4	773(54.5)	297(21.0)	347(24.5)	-	1,417
2012.4	1,020(60.7)	288(17.1)	373(22.2)	-	1,681
2013.4	1,204(60.4)	351(17.6)	437(21.9)	-	1,992
2014.4	1,159(57.3)	478(23.6)	385(19.0)	-	2,022
2015.4	1,224(49.5)	824(33.3)	427(17.3)	-	2,475
2016.4	1,143(45.4)	773(30.7)	601(23.9)	-	2,517
2017.4	1,027(40.5)	726(28.6)	785(30.9)	-	2,538
2018.4	932(36.7)	682(26.9)	751(29.6)	173(6.8)	2,538
2019.4	877(34.6)	738(29.2)	752(29.7)	164(6.5)	2,531
2020.4	741(30.4)	782(32.1)	738(30.3)	176(7.2)	2,437
2021.4	654(28.6)	740(32.4)	739(32.3)	176(6.7)	2,287
2022.4	522(25.3)	659(32.0)	725(35.2)	155(7.5)	2,061
2023.4	421(23.8)	513(29.0)	684(38.7)	151(8.5)	1,769
2024.4	965(34.1)	699(24.7)	748(26.5)	233(8.2)	2,645

*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4b). 북한배경학생 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2024년 4월 기준). https://www.hub4u.or.kr/webmdl/sub4uStudentStatus/menuHtmlDetail.do에서 2025년 8월 9일 인출.
* 원자료: 교육부(2024c). 2024년 북한배경학생 통계 현황('24.4. 기준).

* 주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 수
2) 2024년부터 북한배경학생 수에 국내출생을 포함하여 조사함.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들이 적절히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탈북청소년들의 중도탈락률을 살펴보면, 2024년에 2.4%로 일반청소년들의 중도탈락률(1.1%)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중도탈락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탈북청소년들의 중도탈락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까지는 2.0%에서 2.9%까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에 1.2%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Ⅳ-12-8.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2008~2024년)

(단위 : 명, %)

구 분		초	중	고	계
2008	2007.4. 재학생 수	341	232	114	687
	학업중단자 수	12	30	32	74
	학업중단율	3.5	12.9	28.1	10.8
2017	2016.4. 재학생 수	1,143	773	601	2,517
	학업중단자 수	11	14	26	51
	학업중단율	1.0	1.8	4.3	2.0
2018	2017.4. 재학생 수	1,026	697	661	2,384
	학업중단자 수	7	20	32	59
	학업중단율	0.7	2.9	4.8	2.5
2019	2018.4. 재학생 수	932	682	751	2,365
	학업중단자 수	13	22	35	70
	학업중단율	1.4	3.2	4.7	3.0
2020	2019.4. 재학생 수	877	738	752	2,367
	학업중단자 수	13	20	36	69
	학업중단율	1.5	2.7	4.8	2.9
2021	2020.4. 재학생 수	741	782	738	2,261
	학업중단자 수	4	9	14	27
	학업중단율	0.5	1.2	1.9	1.2
2022	2021.4. 재학생 수	654	740	739	2,133
	학업중단자 수	2	13	19	34
	학업중단율	0.3	1.8	2.6	1.6
2023	2022. 4. 재학생수	522	659	725	1,906
	학업중단자 수	6	8	22	36
	학업중단율	1.1	1.2	3.0	1.9
2024	2023. 4. 재학생수	421	513	684	1,618
	학업중단자 수	2	14	28	44
	학업중단율	0.5	2.7	4.1	2.7

* 출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4a). 2024년 북한배경학생 통계 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2024년 4월 기준). p.4. https://www.hub4u.or.kr/usr/portal/board/146/commonBbsDetail.do?p_pageno=1&p_listscale=10&p_bbs_id=146&p_srch_type=p_srch_pst_title_cntnt&p_pst_id=8827&p_srch_text=에서 2025년 8월 9일 인출.

* 주: 1) 학업중단율 산출식 : (해당연도 학업중단자 총수 /전년 재학생 총수) × 100
- ('17년 이전) 전년도 재학생 수 및 해당연도 학업중단자 수에 기타학교를 포함하여 산출
- ('18년 이후) 유초중등교육통계 학업중단율 산출 방법* 준용
  * 재학생 및 학업중단자에 기타학교(각종학교, 공민학교 등) 학생 제외

2) 국내 출생 북한배경학생은 2024년부터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학업중단율 산출 불가

②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차별 경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차별 경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를 확인하였다. 우선 2024년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로 2021년에 비해 2.6%P 증가하였다. 특히 배경 요인에 따른 차별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경우에, 그리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특성에 따라 차별을 경험하는 정도가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Ⅳ-12-9.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난 1년간 사회적 차별 경험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합계
전체(2021)		2.1	97.9	100.0(127,849)
전체(2024)		4.7	95.3	100.0(191,282)
성별	여성	4.6	95.4	100.0
	남성	4.8	95.2	100.0
연령	9-11세	4.6	95.4	100.0
	12-14세	4.8	95.2	100.0
	15-17세	4.0	96.0	100.0
	18세 이상	5.7	94.3	100.0
재학상태	초등학교 재학	4.8	95.2	100.0
	중학교 재학	4.7	95.3	100.0
	고등학교 재학	4.0	96.0	100.0
	대학 이상 재학	3.8	96.2	100.0
	학교에 다니지 않음	7.5	92.5	100.0
성장배경	국내에서만 성장	4.8	95.2	100.0
	외국 거주 경험	2.0	98.0	100.0
	외국에서 주로 성장	7.8	92.2	100.0
다문화가구 유형	결혼이민자	4.0	96.0	100.0
	기타귀화자	4.3	95.7	100.0
	결혼이민자·귀화자 없음	6.8	93.2	10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1.6	88.4	100.0
	100~200만원 미만	6.5	93.5	100.0
	200~300만원 미만	4.0	96.0	100.0
	300~400만원 미만	5.7	94.3	100.0
	400~500만원 미만	3.6	96.4	100.0
	500만원 이상	3.8	96.2	100.0

* 출처: 여성가족부(2022b).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728-729.
여성가족부(2025b).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644.

2024년 기준 지난 1년간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한 사람으로는 학급 동료를 포함한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이 87.1%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웃, 교사. 친척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별을 경험한 청소년들 가운데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3.4%에 달하고 있고, 이전 조사에 비해 차별 경험 비율이 거의 모든 대상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2-10. 지난 1년간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한 사람

(단위 : %, 점)

구분		친구	선생님	친척	이웃	고용주 직장동료	모르는 사람
2015		77.9	16.0	8.8	22.8	-	32.3
2018	차별한 사람(%)	64.0	9.1	6.8	12.8	28.1	11.3
	차별정도(점)	2.51	1.40	1.34	1.54	1.79	1.41
2021	차별한 사람(%)	69.2	20.2	10.4	18.7	4.4	23.7
	차별정도(점)	2.59	1.67	1.34	1.55	1.27	1.58

(단위 : %, 명)

구분	친구 (학급 동료 포함)	선생님 (교사, 교수)	친척	이웃	고용주, 직장동료	모르는 사람
전체 (2021)	86.3	46.3	23.3	35.5	22.3	33.0
전체 (2024)	87.1	43.6	42.1	48.0	34.3	43.4

* 출처: 여성가족부(2019a).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583-584.
여성가족부(2022b).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730-731.
여성가족부(2025b).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647.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차별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19세 청소년의 경우 1.2%, 20대는 7.2% 수준이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 연령대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차별 경험 비율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5~19세 청소년의 경우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9%에서 1.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대의 경우도 17.4%에서 7.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11.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차별 경험(2017~2024년)

(단위 :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차별/무시 당한 경험		차별/무시 당한 경험		차별/무시 당한 경험		차별/무시 당한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5~19세	7.9	92.1	6.0	94.0	8.8	91.2	4.1	95.9
20대	17.4	82.6	16.6	83.4	15.1	84.9	13.2	86.8
30대	24.2	75.8	20.4	79.6	16.9	83.1	16.6	83.4
40대	26.2	73.8	25.0	75.0	19.4	80.6	21.4	78.6
50대	27.8	72.2	21.2	78.8	18.3	81.7	21.4	78.6
60대 이상	17.1	82.9	10.9	89.1	14.7	85.3	15.6	84.4
구분	2021		2022		2023		2024	
	차별/무시 당한 경험		차별/무시 당한 경험		차별/무시 당한 경험		차별/무시 당한 경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5~19세	4.9	95.1	2.7	97.3	2.6	97.4	1.2	98.8
20대	11.8	88.2	11.2	88.8	8.5	91.5	7.2	92.8
30대	15.3	84.7	17.6	82.4	15.6	84.4	12.8	87.2
40대	16.8	83.2	21.8	78.2	18.1	81.9	18.9	81.1
50대	22.1	77.9	26.1	73.9	17.1	82.9	19.7	80.3
60대 이상	12.3	87.7	15.7	84.3	18.4	81.6	17.1	82.9

* 출처: 통계청 KOSIS(2025b). 지난 1년동안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무시당한 경험(2017~2024).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I2%26tblId%3DDT_43701N_194%26orgId%3D437%26에서 2025년 8월 9일 인출.

* 주: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년 조사

③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구금 현황

이주배경 아동의 구금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4개 시설에 구금된 아동은 모두 44명이었으며, 청주외국인보호소에 19명, 화성외국인보호소에 12명이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34명에서 2019년 57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22년에 3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Ⅳ-12-12. 이주아동 구금현황(2015~2024년)

(단위 :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화성외국인보호소	25	24	24	24	32	8	5	1	14	12
청주외국인보호소	7	13	8	25	19	2	2	-	6	19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2	4	3	4	6	2	1	2	10	5
울산출입국외국민사무소						-	-	-	2	8

* 출처: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2020.7).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p.5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내부자료(2021.8.26.). 이주아동 구금현황 참고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내부자료(2022.9.23.). 이주아동 구금현황 참고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 내부자료(2023.9.19.). 이주아동 구금현황 참고자료.
오마이뉴스(2025.9.10.).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된 미성년 이주아동, 얼마나 되나 살펴보니".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4225에서 2025년 10월 15일 인출.

(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이용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대한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우선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지원시설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2021년에 비해 2024년에 이러한 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방과후 교실에 대한 인지도는 같은 기간 동안 6.9%P 감소한 반면,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인지도는 16.5%, 청소년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 사회복지관에 대한 인지도는 20%P 이상, 꿈드림센터는 38.2%P, 레인보우스쿨, 다문화예비학교, 다문화대안학교에 대한 인지도는 40%P 이상 감소하였다. 이러한 인지도의 감소가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의 감소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관련 서비스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시설 인지도는 배경 변인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관련 시설에 대해 조금 많이 알고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관련 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13.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 인지율(복수응답)

(단위: %)

구분		학교 내 방과 후 교실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시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가족 센터	사회 복지관	꿈드림 센터*	레인보우 스쿨	다문화 예비 학교 (예비 학급)	다문화 대안 학교
전체(2021)		97.5	93.5	85.3	82.2	74.2	57.1	54.4	54.0	54.8
전체(2024)		90.6	77.0	61.7	60.4	45.0	18.9	10.7	10.1	13.1
성별	여성	90.8	78.1	62.6	62.7	46.4	19.1	11.7	10.1	13.0
	남성	90.4	75.9	61.0	58.2	43.7	18.6	9.7	10.0	13.2
연령	9~11세	94.5	73.4	42.6	48.4	30.2	8.8	4.9	4.7	5.4
	12~14세	92.4	80.6	62.9	59.6	41.7	16.5	8.6	7.9	10.0
	15~17세	89.9	78.1	72.3	66.2	51.6	24.2	13.1	12.3	16.3
	18세 이상	83.3	75.2	72.8	70.3	61.7	29.2	18.4	17.6	24.2
재학 상태	초등학교 재학	94.7	75.7	44.7	49.1	30.7	9.7	5.5	5.4	5.7
	중학교 재학	91.3	79.5	68.1	63.0	46.4	18.8	9.8	8.3	11.8
	고등학교 재학	89.7	77.1	74.3	67.9	54.2	26.0	14.6	13.9	18.8
	대학 이상 재학	82.3	75.3	71.8	72.1	63.0	34.9	24.0	21.7	27.8
	학교에 다니지 않음	79.3	74.9	71.8	69.4	62.2	24.8	12.7	15.1	21.3
성장 배경	국내에서만 성장	91.4	77.8	62.2	61.1	45.3	19.1	10.7	10.0	13.2
	외국 거주 경험	86.3	72.8	62.3	52.8	43.0	13.7	7.9	9.1	12.4
	외국에서 주로 성장	65.4	50.5	42.6	45.3	36.2	20.1	12.3	13.9	12.9
다문화 가구 유형	결혼이민자	90.5	77.5	62.4	61.1	45.9	18.9	10.9	10.8	13.1
	기타귀화자	89.9	76.6	56.9	56.9	43.3	18.3	9.5	8.7	9.8
	결혼이민자·귀화자 없음	90.8	75.8	61.3	59.3	43.2	18.8	10.2	8.4	14.1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91.1	77.7	67.2	60.8	43.0	24.3	15.5	12.9	19.5
	100~200만원 미만	89.9	77.7	63.6	60.7	38.4	19.7	8.3	7.4	10.9
	200~300만원 미만	90.6	77.6	60.0	59.4	44.8	19.7	11.5	10.9	13.7
	300~400만원 미만	92.0	79.4	59.2	59.7	43.8	19.6	11.1	9.9	14.6
	400~500만원 미만	89.2	75.1	62.0	61.3	43.2	16.5	9.5	9.1	10.6
	500만원 이상	90.5	75.5	63.9	60.8	50.2	18.5	10.7	10.8	13.4

* 출처: 여성가족부(2025b).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653-654.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 이용률도 2021년에 비해 2024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방과후 교실 이용률은 같은 기간 동안 39.9%P 감소하였으며, 공부방 등은 23.6%P, 청소년시설은 11.12%P,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가족센터는 12.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꿈드림센터 이용률은 같은 기간 동안 2.2%P, 레인보우스쿨은

2.6%P, 다문화예비학교와 다문화대안학교는 각각 3.7%P,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꿈드림센터 이용률의 증가는 학교를 그만둔 학생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머지 시설은 다문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시설임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일반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시설보다는 자신들을 위한 시설을 중심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배경 변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의 시설 이용률을 살펴보면, 방과후 교실, 공부방 등, 청소년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이용률은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다소 높았으나, 꿈드림센터, 레인보우스쿨, 다문화예비학교와 다문화대안학교 이용률은 남자 청소년들에게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9~11세 청소년들의 지원시설 이용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들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설 이용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시설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국내에서만 성장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14. 다문화가족 자녀의 시설 이용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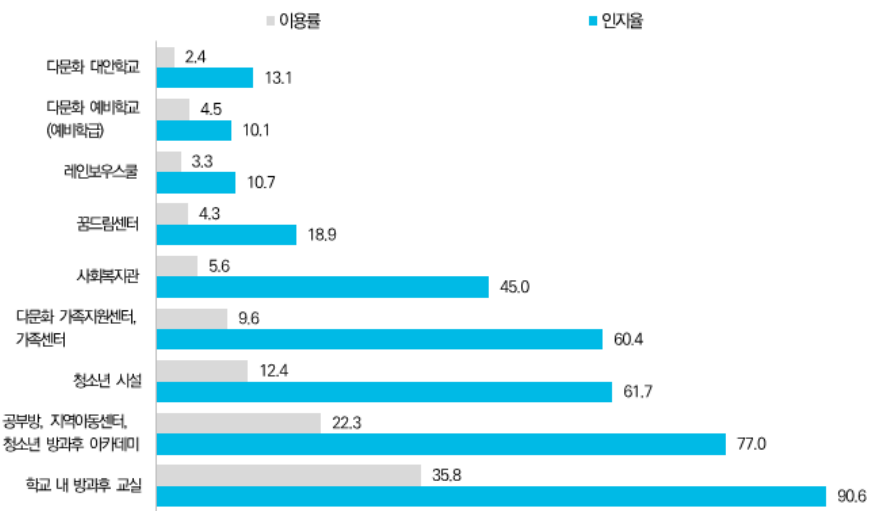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학교 내 방과 후 교실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시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가족센터	사회복지관	꿈드림센터*	레인보우스쿨	다문화예비학교(예비학급)	다문화대안학교
전체(2021)		75.7	45.9	23.5	21.9	8.6	2.1	0.7	0.8	0.7
전체(2024)		35.8	22.3	12.4	9.6	5.6	4.3	3.3	4.5	2.4
성별	여성	36.4	23.2	13.0	9.6	5.3	2.5	2.9	1.3	0.9
	남성	35.1	21.4	11.9	9.5	5.9	5.9	3.7	7.3	3.7
연령	9~11세	56.3	35.9	15.4	14.9	11.1	10.7	1.9	1.8	0.6
	12~14세	41.7	26.3	16.4	12.6	5.9	2.8	7.5	6.7	5.5
	15~17세	27.1	16.5	12.2	7.8	4.2	5.5	2.2	8.5	2.9
	18세 이상	6.2	5.3	5.1	2.8	3.1	1.5	1.8	0.3	0.6
재학상태	초등학교 재학	56.0	35.3	14.6	14.7	11.4	8.7	7.6	6.0	5.4
	중학교 재학	34.7	22.1	16.2	10.3	3.6	2.6	3.4	4.0	1.9
	고등학교 재학	24.1	14.6	12.0	7.6	5.0	4.5	1.8	7.4	3.4
	대학 이상 재학	4.3	1.8	3.4	2.1	3.1	1.3	2.0	2.9	1.6
	학교에 다니지 않음	2.5	4.9	2.9	3.5	1.7	4.4	1.4	1.5	0.2

구분		학교 내 방과 후 교실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시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가족 센터	사회 복지관	꿈드림 센터*	레인 보우 스쿨	다문화 예비 학교 (예비 학급)	다문화 대안 학교
성장 배경	국내에서만 성장	35.8	22.5	12.6	9.4	5.6	4.3	3.0	4.4	2.5
	외국 거주 경험	31.2	13.0	7.0	7.5	1.4	4.0	1.9	3.6	0.0
	외국에서 주로 성장	43.5	32.0	16.6	22.2	13.4	3.8	15.0	7.1	2.8
다문화 가구 유형	결혼이민자	37.0	23.6	12.9	10.5	5.9	4.7	3.9	5.2	3.3
	기타귀화자	32.3	24.1	13.0	12.3	6.4	1.8	2.9	1.8	1.0
	결혼이민자·귀화자 없음	33.3	18.3	11.0	6.3	4.6	3.6	1.5	2.6	0.5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6.7	26.8	7.5	8.7	4.3	8.3	0.0	1.8	0.0
	100~200만원 미만	38.7	26.8	15.6	16.9	9.0	8.5	0.0	0.0	0.0
	200~300만원 미만	38.8	24.5	12.8	7.8	4.9	3.0	4.3	4.3	3.4
	300~400만원 미만	35.0	20.5	10.7	10.2	5.7	1.8	0.3	1.6	0.8
	400~500만원 미만	37.9	23.7	12.7	10.2	5.9	5.2	6.6	13.7	6.6
	500만원 이상	31.3	18.9	12.9	7.4	5.1	4.8	4.3	2.2	1.6

* 출처: 여성가족부(2022b).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743-744.
여성가족부(2025b).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655-656.

* 주: 2024년부터 '지난 1년' 이용 경험 문항으로 변경.



* 출처: 여성가족부(2025b).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653-656.

* 주: 위 출처의 내용을 연구진이 그래프로 도식화함(단위: %).

그림 Ⅳ-12-2.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 인지율과 이용률의 비교(복수응답)

2) 소년 사법

(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현황

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시설 수용 인원수

소년 사법과 관련한 영역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신수용인원은 7,568명으로 이 가운데 보호소년은 2,430명으로 32.1% 정도이며, 위탁소년은 5,158명인 것으로 파악되어 신수용인원 가운데 위탁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일 평균 수용인원의 경우에는 전체 1,445명 가운데 보호소년이 1,016명으로 70.3%였으며, 위탁소년은 429명 수준에 그침으로써 1일 평균 수용인원의 경우에는 보호소년의 비중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2-15.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2011~2024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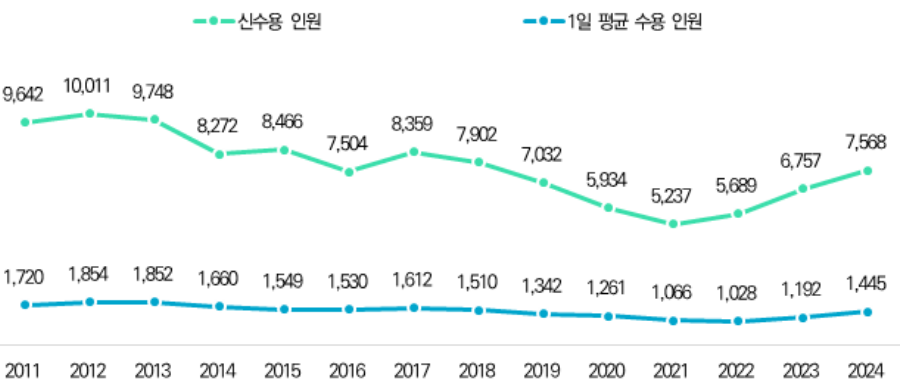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신수용인원	계	9,642	10011	9,748	8,272	8,466	7,504	8,359	7,902	7,032	5,934	5,237	5,689	6,757	7,568
	보호소년	2,960	3,429	3,037	2,363	2,288	2,096	2,450	2,199	2,077	1,637	1,361	1,520	2,092	2,430
	위탁소년	6,682	6,582	6,711	5,909	6,178	5,408	5,909	5,703	4,955	4,297	3,876	4,169	4,665	5,138
1일평균 수용인원	계	1,720	1,854	1,852	1,660	1,549	1,530	1,612	1,510	1,342	1,261	1,066	1,028	1,192	1,445
	보호소년	1,264	1,390	1,380	1,236	1,112	1,132	1,168	1,079	946	927	782	700	807	1,016
	위탁소년	456	464	472	422	437	398	444	431	396	334	284	328	385	429

* 출처: 지표누리. 보호소년 · 위탁소년 현황(2011~2024).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에서 2025년 8월 9일 인출.
* 원자료: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 주: 1) 보호소년: 소년부 판사의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2) 위탁소년: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의거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소년
3) 신수용인원: 당해연도 법원 소년부의 결정에 의해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송치 또는 위탁된 인원과 임시퇴원 취소, 유치 등으로 새로 입원한 인원
4) 일일평균수용인원: 전국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보호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과 위탁소년의 1일평균 수용인원을 나타내는 수치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신수용인원의 경우 2012년 이후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22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모두에게서 관찰되었다. 1일 평균 수용인원의 경우에도 신수용인원의 변화 양상과 유사하게 2021년 혹은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최근 들어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출처: 지표누리(2025c). 보호소년 · 위탁소년 현황(2011~2024).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에서 2025년 8월 9일 인출.
* 원자료: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 주: 단위: 명

그림 Ⅳ-12-3. 보호소년·위탁소년 현황(2011~2024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전체 1,733명이 수용되었으며, 평균 수용기간은 5.0개월로 파악되었다. 이 가운데 1개월 미만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35.6%, 12개월 이상이 15.4%,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 9.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용기간별 인원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수용인원은 3,399명에서 1,733명으로 4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용기간의 경우 2012년의 4.9개월에서 2021년의 7.2개월까지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2012년 49.4%에서 2019년 36.5%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0년과 2021년에 20%대 중반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2개월 이상인 경우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5.5%, 28.8%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Ⅳ-12-16. 연도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 현황(2012~2023년)

(단위 : 명, (%), 월)

구분 / 연도	계	1월 미만	1월 이상~3월 미만	3월 이상~6월 미만	6월 이상~12월 미만	12월 이상	평균 수용 기간
2012	3,399 (100.0)	1,680 (49.4)	125 (3.7)	796 (23.4)	209 (6.1)	589 (17.3)	4.9
2013	3,005 (100.0)	1,348 (44.9)	96 (3.2)	894 (29.8)	232 (7.7)	435 (14.5)	5.0
2014	2,531 (100.0)	969 (38.3)	80 (3.2)	769 (30.4)	208 (8.2)	505 (20.0)	6.3
2015	2,171 (100.0)	883 (40.7)	62 (2.9)	670 (30.9)	181 (8.3)	375 (17.3)	5.9
2016	2,138 (100.0)	773 (36.2)	62 (2.9)	676 (31.6)	189 (8.8)	438 (20.5)	6.6
2017	2,275 (100.0)	902 (39.6)	47 (2.1)	777 (34.1)	179 (8.0)	370 (16.2)	5.8
2018	2,328 (100.0)	830 (35.6)	64 (2.7)	773 (33.2)	214 (9.2)	447 (19.3)	6.4
2019	1,943 (100.0)	710 (36.5)	47 (2.4)	499 (25.7)	300 (15.4)	387 (19.9)	5.6
2020	1,546 (100.0)	405 (26.2)	29 (1.9)	465 (30.1)	253 (16.4)	394 (25.5)	6.7
2021	1,396 (100.0)	332 (23.8)	30 (2.1)	424 (30.4)	208 (14.9)	402 (28.8)	7.2
2022	1,494 (100.0)	498 (33.3)	26 (1.7)	515 (34.5)	160 (10.7)	295 (19.7)	5.7
2023	1,733 (100.0)	660 (38.1)	32 (1.8)	617 (35.6)	157 (9.1)	267 (15.4)	5.0

* 출처: 여성가족부(2024a). 2023 청소년백서. p.488.
여성가족부(2025a). 2024 청소년백서. p.493.
* 원자료: 법무부(2013~2024). 법무연감.

* 주: 퇴원 및 임시퇴원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임.

② 소년범죄자의 교도소 수용 현황

소년범죄자의 교도소 수용현황와 관련하여 우선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전체 66,758명 가운데 15세가 22.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6세가 20.8%, 14세가 22.0%, 17세가 18.9%, 18세가 1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14~16세 청소년의 비율이 63.6%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범죄 연령별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9.9%에서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5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17세와 18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최근으로 올수록 청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Ⅳ-12-17.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2015~2023년)

(단위 : 명(%))

구분	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2015	70,971 (100.0)	-	7 (0.0)	14,387 (20.3)	17,624 (24.8)	18,231 (25.7)	20,722 (29.2)
2016	75,916 (100.0)	-	7,530 (9.9)	13,789 (18.1)	17,589 (23.2)	17,607 (23.2)	19,401 (25.6)
2017	72,666 (100.0)	-	7,703 (10.6)	12,376 (17.0)	16,391 (22.6)	17,358 (23.9)	18,838 (25.9)
2018	66,142 (100.0)	-	8,321 (12.6)	11,595 (17.5)	13,306 (20.1)	15,513 (23.5)	17,407 (26.3)
2019	66,247 (100.0)	-	9,053 (13.7)	11,730 (17.7)	13,548 (20.5)	14,338 (21.6)	17,578 (26.5)
2020	64,480 (100.0)	-	9,124 (14.1)	11,956 (18.5)	13,578 (21.1)	13,725 (21.3)	16,097 (25.0)
2021	54,017 (100.0)	-	8,091 (15.0)	10,301 (19.1)	11,594 (21.5)	11,211 (20.8)	12,820 (23.7)
2022	61,026 (100.0)	-	11,069 (18.1)	12,411 (20.3)	13,003 (21.3)	11,815 (19.4)	12,728 (20.9)
2023	66,758 (100.0)	-	13,462 (20.2)	15,059 (22.6)	13,882 (20.8)	12,648 (18.9)	11,707 (17.5)

* 출처: 여성가족부(2025a). 2024 청소년백서. p.463.
* 원자료: 대검찰청(2015~2024). 범죄분석.

* 주: 2008년 6월 개정 「소년법」시행으로 소년범죄 연령기준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됨.
2018년 이후 14세 미만은 통계에서 제외.

다음으로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인원을 살펴보면, 우선 2024년 165명 가운데 절도가 20.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간 등이 15.2%, 폭력·상해와 강도 등이 9.7%

수준으로 나타남으로써 절도와 강간 등이 소년수형자의 1/3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죄명별 인원이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절도의 경우 2016년에 15.3%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 25.6%에서 2024년에 다시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강간 등의 경우는 2017년 33.8%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2020년까지 감소하다가 2021년과 2022년에 20%를 초과하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현황의 변화에서는 전반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18.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2016~2024년)

(단위 : 명(%))

구분	계	절도	사기·횡령	폭력·상해	강간 등	강도 등	살인	과실범	기타
2016	150(100)	23(15.3)	2(1.3)	27(18.0)	35(23.3)	19(12.7)	5(3.3)	2(1.3)	37(24.7)
2017	130(100)	27(20.8)	9(6.9)	5(3.8)	44(33.8)	11(8.5)	5(3.8)	0(0.0)	29(22.3)
2018	105(100)	17(16.2)	12(11.4)	3(2.9)	24(22.9)	5(4.8)	4(3.8)	1(1.0)	39(37.1)
2019	116(100)	10(8.6)	9(7.8)	11(9.5)	26(22.4)	14(12.1)	3(2.6)	4(3.4)	39(33.6)
2020	115(100)	21(18.3)	8(7.0)	13(11.3)	21(18.3)	13(11.3)	1(0.9)	1(0.9)	37(32.2)
2021	142(100)	26(18.3)	6(4.2)	7(4.9)	31(21.9)	11(7.8)	1(0.7)	2(1.4)	58(40.8)
2022	133(100)	23(17.3)	6(4.5)	10(7.5)	36(27.0)	9(6.8)	1(0.7)	0(0.0)	48(36.1)
2023	160(100)	41(25.6)	3(1.9)	8(5.0)	29(18.1)	26(16.3)	1(0.6)	2(1.3)	50(31.3)
2024	165(100)	34(20.6)	4(2.4)	16(9.7)	25(15.2)	16(9.7)	5(3.0)	1(0.6)	64(38.8)

* 출처: 법무부(2024b). 2024 교정통계연보. p.82-83.
법무부(2025). 2025 교정통계연보. p.164.

* 주: 1) 소년수형자가 수용된 전체 교정기관 통계. 각 년도.
2) 폭력은 폭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

소년수형자의 징역형 형기별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의 159명 가운데 1년 이상 3년 미만이 39.6%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이상 5년 미만이 37.1%, 5년 이상 10년 미만도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에는 징역형 형기가 15년 이상인 경우도 2명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징역형 형기별 인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2015년의

8.5%에서 2023년에는 3.2%로 5.3%P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2015년 9.2%에서 2023년에는 17.0%로 7.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단기 수형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5년 이상 10년 미만 수형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년 이상 3년 미만 및 3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다소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다.

표 Ⅳ-12-19. 소년수형자 징역형 형기별 인원 현황(2015~2023년)

(단위 : 명(%))

구분	계	6월 미만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무기
2015	130 (100)	1 (0.8)	11 (8.5)	56 (43.1)	48 (37.0)	12 (9.2)	2 (1.4)	-	-
2016	149 (100)	1 (0.7)	8 (5.4)	69 (46.3)	56 (37.6)	13 (8.7)	2 (1.3)	-	-
2017	130 (100)	-	7 (5.4)	67 (51.5)	46 (35.4)	9 (6.9)	-	1 (0.8)	-
2018	105 (100)	1 (1.0)	2 (1.9)	55 (52.3)	33 (31.4)	13 (12.4)	-	1 (1.0)	-
2019	116 (100)	-	4 (3.4)	45 (38.8)	45 (38.8)	21 (18.1)	-	1 (0.9)	-
2020	115 (100)	2 (1.7)	2 (1.7)	55 (47.8)	41 (35.7)	15 (13.1)	-	-	-
2021	142 (100)	2 (1.4)	4 (2.8)	65 (45.8)	47 (33.1)	22 (15.5)	2 (1.4)	-	-
2022	133 (100)	2 (1.5)	3 (2.3)	40 (30.1)	62 (46.6)	25 (18.8)	1 (0.7)	-	-
2023	159 (100)	3 (1.9)	5 (3.2)	63 (39.6)	59 (37.1)	27 (17.0)	-	2 (1.2)	-

* 출처: 법무연수원(2025). 2024 범죄백서. p.634.

* 주: 1) 소년수형자가 수용된 전체 교정기관 통계, 각 년도.
2) 부정기형은 단기형을 기준(금고형 선고자 제외).

(2) 인권친화적 사법 환경

①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선정 수

사법환경이 인권친화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 선정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2024년 국선보조인의 조력 횟수는 4,428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선보조인 조력 횟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3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4년에는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20.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조력 횟수(2011~2024년)

(단위: 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국선보조인	3,762	4,096	4,606	4,101	4,408	4,359	4,756	3,960	3,305	3,174	3,157	3,089	3,969	4,428

* 출처: 대한민국정부(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p.115. 부록 통계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2.9.2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3.10.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5.8.21.).
* 원자료 : 법무부 내부자료

* 주: 국선보조인 조력 횟수

②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수용률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률을 살펴보면,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부산소년원의 경우에는 1일 평균 수용률이 각각 108.2%, 114.3%로 수용정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구소년원. 광주소년원, 대전소년원, 춘천소년원, 제주소년원의 경우에는 모두 수용정원 대비 100% 미만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가운데 대전소년원이 90%, 광주소년원이 7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나 부산소년원의 수용률은 2015년에 각각 128.8%, 135.7%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더라도 이러한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반면에 나머지 5개 시설 가운데 제주소년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설의 경우에는 1일 평균 수용률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21. 전국 소년분류심사원 연도별 수용 현황(2015~2023년)

(단위 : 명(%))

분류심사원	1일 평균 수용인원(수용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서울소년 분류심사원 / 정원 170명	219 (128.8)	178 (104.7)	207 (121.8)	212 (124.7)	192 (112.9)	170 (100)	137 (80.6)	158 (92.9)	184 (108.2)	184 (108.2)
부산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70명	95 (135.7)	87 (124.3)	88 (125.7)	82 (117.1)	82 (117.1)	63 (90.0)	61 (87.1)	77 (110)	85 (121.4)	80 (114.3)
대구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50명	33 (66.0)	38 (76.0)	37 (74.0)	31 (62.0)	31 (62.0)	21 (42.0)	21 (42.0)	24 (48.0)	30 (60.0)	30 (60.0)
광주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50명	45 (90.0)	41 (82.0)	53 (106.0)	45 (90.0)	33 (66.0)	29 (58.0)	25 (50.0)	23 (46.0)	38 (76.0)	37 (74.0)
대전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40명	31 (77.5)	42 (105.0)	39 (97.5)	44 (110.0)	37 (92.5)	36 (90.0)	24 (60.0)	32 (80.0)	35 (87.5)	36 (90.0)
춘천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30명	10 (33.3)	10 (33.3)	17 (56.7)	14 (46.7)	16 (53.3)	11 (55.0)	11 (36.7)	11 (36.7)	8 (40.0)	12 (40.0)
제주소년원 (위탁 대행) / 정원 10명	4 (40.0)	2 (20.0)	3 (30.0)	3 (30.0)	5 (50.0)	4 (40.0)	5 (50.0)	3 (30.0)	5 (50.0)	4 (40.0)

* 출처: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2020.7).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p.33-34.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2.9.2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3.10.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5.8.21.).
* 원자료: 법무부 내부자료(소년보호시설 정원 대비 수용 현황)

* 주: '평균값'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현황에 대한 평균값임.

전국 소년원의 수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의 1일 평균 수용률의 평균값이 133.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읍내정보통신학교(대구소년원) 120.0%, 대산학교(대전소년원)과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이 각각 111.3%와 11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

원),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청주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의 1일 평균 수용률의 평균값이 10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1일 평균 수용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가 157.3%에서 58.2%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가 119.0%에서 83.3%로, 읍내정보통신학교(대구소년원)가 144.4%에서 101.1%로 감소하였으며,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청주소년원)의 1일 평균 수용률은 같은 기간 동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시설별로 조금 상이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Ⅳ-12-22. 전국 소년원 연도별 수용 현황(2015~2023년)

(단위 : 명(%))

소년원	1일 평균 수용인원(수용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고봉중고등학교 (서울소년원) / 정원 170명	236 (157.3)	234 (156.0)	246 (164.0)	204 (136.0)	172 (101.2)	206 (121.1)	170 (100.0)	135 (79.4)	99 (58.2)	189 (111.2)
오륜정보산업학교 (부산소년원) / 정원 90명	119 (119.0)	139 (139.0)	125 (125.0)	111 (111.0)	86 (95.6)	86 (95.5)	14 (15.6)	9 (0.001) (리모델링)	75 (83.3)	85 (94.4)
읍내정보통신학교 (대구소년원) / 정원 90명	130 (144.4)	141 (156.7)	137 (152.2)	114 (126.7)	94 (104.4)	86 (95.5)	89 (98.9)	87 (96.7)	91 (101.1)	108 (120.0)
고룡정보산업학교 (광주소년원) / 정원 100명	94 (78.3)	104 (86.7)	135 (112.5)	108 (90.0)	95 (79.2)	104 (104)	99 (99.0)	82 (82.0)	97 (97.0)	102 (102.0)
송천중고등학교 (전주소년원) / 정원 130명	108 (77.1)	92 (65.7)	81 (57.9)	91 (65.0)	102 (78.5)	103 (79.2)	97 (74.6)	97 (74.6)	117 (90.0)	99 (76.2)
대산학교 (대전소년원) / 정원 80명	115 (115.0)	98 (98.0)	122 (122.0)	121 (121.0)	84 (105.0)	69 (86.2)	66 (82.6)	61 (76.3)	63 (78.8)	89 (111.3)
미평여자학교 (청주소년원) / 정원 80명	45 (50.0)	45 (50.0)	45 (50.0)	85 (94.4)	85 (106.3)	66 (82.5)	58 (72.5)	59 (73.8)	71 (88.8)	62 (77.5)

소년원	1일 평균 수용인원(수용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정심여자중고등학교 (안양소년원) / 정원 80명	141 (176.3)	147 (183.8)	127 (158.8)	109 (136.3)	103 (128.8)	103 (128.8)	78 (97.5)	71 (88.8)	83 (103.8)	107 (133.8)
한길정보통신학교 (제주소년원) / 정원 30명	31 (77.5)	43 (107.5)	43 (107.5)	33 (82.5)	33 (82.5)	25 (83.3)	25 (83.3)	25 (62.5)	24 (80.0)	31 (103.3)
신촌정보통신학교 (춘천소년원) / 정원 90명	93 (93.0)	89 (89.0)	107 (107.0)	103 (103.0)	92 (76.7)	79 (87.8)	86 (95.6)	74 (61.7)	87 (96.7)	83 (92.2)

* 출처: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2020.7).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pp.34-3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2.9.2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3.10.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내부자료(2025.8.21.).
* 원자료: 법무부 내부자료(소년보호시설 정원 대비 수용 현황)

* 주: 1) '평균값'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현황에 대한 평균값임.
2) 정원은 2023년 기준임. 2015년~2019년까지 각년도별 정원에 따라 비율 계산되어 있음.(2015~2018년까지 정원: 서울소년원 150명, 부산소년원 100명, 대구소년원 90명, 광주소년원 120명, 전주소년원 80명, 대전소년원 100명, 청주소년원 80명, 안양소년원 80명, 제주소년원 40명, 춘천소년원 100명)
(2019년~2023년까지 정원: 서울소년원 170명, 부산소년원 90명, 대구소년원 90명, 광주소년원 100명, 전주소년원 130명, 대전소년원 80명, 청주소년원 80명, 안양소년원 80명, 제주소년원 30명, 춘천소년원 90명)

③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수가 4,8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행정심판, 고소·고발, 청원, 행정소송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행정심판 신청 건수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고소·고발과 헌법소원 건수는 2020년 정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청원 건수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행정심판 신청 건수의 경우 2023년에 비해 2024년에 2배 정도 급격히 증가하는 등 다소 특이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Ⅳ-12-23.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2014~2024년)

(단위 : 건)

구분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 · 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헌법소원
2014	903	369	61	614	3,745	27
2015	957	552	74	733	3,790	23
2016	797	347	56	698	3,716	38
2017	744	437	70	783	4,528	70
2018	772	310	86	855	4,322	32
2019	558	509	91	916	4,211	29
2020	593	630	60	867	4,124	54
2021	558	443	61	719	4,522	58
2022	508	382	56	716	4,187	49
2023	686	610	70	677	4,530	19
2024	497	1,191	86	622	4,887	19

* 출처: 법무부(2025). 2025 교정통계연보. p.242-254.

* 주: 1) 주요 고소·고발 사유: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2) 주요 행정심판 청구 내역: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징벌처분취소 등
3) 주요 행정소송 청구 사유: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징벌처분무효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등
4) 주요 헌법소원 청구 내역: 징벌처분, 직원고소사건 처리 결과(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불복, 보호장비 사용 등

④ 소년보호사건 항고 및 재항고 접수 건

소년보호사건의 항고 및 재항고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의 경우 항고 건수는 315건, 재항고 건수는 23건으로 나타났다. 항고된 건수 중 인용(환송)된 경우는 32건이었으나, 기각되거나 취하한 경우가 각각 239건, 28건으로 나타났으며, 재항고된 사안의 경우는 모두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고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기각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인용(환송)된 경우는 처리된 건수 가운데 10%룰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재항고된 사건 가운데 인용(환송)된 경우는 2020년의 1건을 제외하고 모든 사건이 기각되거나 취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Ⅳ-12-24. 소년보호 항고·재항고 사건 수(2019~2024년)

(단위 : 건)

연도	구분	접수	처리				
			합계	인용(환송)	기각	취하	기타
2019	항고	271	232	26	186	18	2
	재항고	13	13	-	12	1	-
2020	항고	221	239	25	189	22	3
	재항고	22	26	1	24	1	-
2021	항고	189	195	26	152	16	1
	재항고	15	16	-	16	-	-
2022	항고	219	221	33	167	21	
	재항고	20	14	-	14	-	
2023	항고	297	284	32	213	36	3
	재항고	23	25	-	24	1	-
2024	항고	315	302	34	239	28	1
	재항고	23	18	-	18	-	-

* 출처: 법원행정처(2020). 2020 사법연감. p.1075.
법원행정처(2021). 2021 사법연감. p.1099.
법원행정처(2022). 2022 사법연감. p.1181.
법원행정처(2023). 2023 사법연감. p.779.
법원행정처(2024). 2024 사법연감. p.1229.
법원행정처(2025). 2025 사법연감. p.1253.

(3) 회복적 프로그램(다이버전) 운영

①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 참여자 수

회복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단계에서의 선도프로그램 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30,155명 가운데 59.8%가 사랑의 교실에 참여하였으며, 40.1%가 경찰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치유선도 프로그램 참여자는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선도프로그램 이수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사랑의 교실 참여 비율이 73%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경찰선도 프로그램 참여 비율은 2019년 26.3%에서 2023년 40.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유선도의 경우 2019년 0.8%에서 2023년에는 0.1%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의 경우 사랑의 교실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찰선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25. 선도프로그램 이수 현황(2019~2023년)

(단위 : 명(%))

구분	총계	사랑의 교실	치유선도	경찰선도
2019	25,940	18,929	196	6,815
2020	23,464	15,243	56	8,165
2021	20,411	14,174	21	6,216
2022	26,714	16,547	10	10,157
2023	30,155	18,034	32	12,089

* 출처: 경찰청(2024). 2024 경찰백서. p.131.

② 사회 내 처우 청소년 수

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인원

청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전체 보호관찰 대상 45,613명 중 청소년은 13,480명으로 29.6%였으며,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 인원 중 남자가 75.4%, 14세 이상이 90.2%, 학생이 63.4%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보호관찰 대상 중 청소년의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44.2%에서 2022년 26.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 29.6%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남자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82.9%에서 75.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여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촉법소년의 비율이 2017년 3.2%에서 2023년 9.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은 2019년까지는 55% 미만이었으나 2020년 이후에는 6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26.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현황(2014~2023년)

(단위 : 명, (%))

구분 / 연도	전체 보호관찰 (A)	청소년 보호관찰		성별		연령별		학생여부별	
		인원(B)	(A)/(B)*100	남성	여성	촉법소년	14세 이상	학생	비학생
2014	46,110	20,378	44.2	16,885 (82.9)	3,493 (17.1)	-	-	-	-
2015	47,991	19,271	40.2	16,330 (84.7)	2,971 (15.4)	-	-	-	-
2016	51,884	18,218	35.1	14,980 (82.2)	3,238 (17.8)	-	-	-	-
2017	53,419	17,799	33.3	14,341 (80.6)	3,458 (19.4)	573 (3.2)	17,226 (96.8)	9,756 (54.8)	8,043 (45.2)
2018	49,073	16,659	33.9	13,111 (78.7)	3,548 (21.3)	714 (4.3)	15,945 (95.7)	9,119) (54.7)	7,540 (45.3)
2019	48,508	14,439	29.8	11,118 (77.0)	3,321 (23.0)	768 (5.3)	13,671 (94.7)	7,620 (52.8)	6,819 (47.2)
2020	45,592	13,489	29.6	10,488 (77.8)	3,001 (22.2)	704 (5.2)	12,785 (94.8)	8,159 (60.5)	5,330 (39.5)
2021	43,992	11,853	26.9	9,181 (77.5)	2,672 (22.5)	811 (6.8)	11,042 (93.2)	7,535 (63.6)	4,318 (36.4)
2022	46,444	12,507	26.9	9,668 (77.3)	2,839 (22.7)	1,019 (8.1)	11,488 (91.9)	8,078 (64.6)	4,429 (35.4)
2023	45,613	13,480	29.6	10,162 (75.4)	3,318 (24.6)	1,316 (9.8)	12,164 (90.2)	8,546 (63.4)	4,934 (36.6)

* 출처: 여성가족부(2025a). 2024 청소년백서. p.500.
* 원자료: 법무부(2015~2023). 법무연감.

주: 2014년~2016년 연령과 학생여부별 인원수와 구성비는 공표된 자료가 없어 제시하지 못함.

청소년 보호관찰 처분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소년보호관찰 대상 인원은 38,86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8%인 1,104명은 형사처분을, 93.7%인 36,395명은 소년보호처분을, 3.3%인 1,264명은 선도위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 처분 가운데에는 집행유예의 경유가 가장 많았으며, 소년보호처분 가운데에는 보호관찰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독명령, 임시퇴원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 보호관찰 처분유형별 현황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비중이 87.8%에서 93.7%로 증가한 반면, 선도위탁 처분의

경우가 같은 기간 동안 10.0에서 3.3%로 감소하였으며, 형사처분의 경우는 꾸준히 2~3%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처분 중에는 보호관찰이 7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단독명령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Ⅳ-12-27.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 처분유형별 현황(2013~2023년)

(단위 : 명, (%))

구분 / 연도	소년 보호관찰 전체	형사처분				기타 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				선도위탁	기타
		소계	집행유예	벌금미납	가석방		소계	보호관찰	단독명령	임시퇴원		
2013	65,815 (100.0)	1,388 (2.1)	1,293 (2.0)	50 (0.1)	45 (0.1)	14 (0.0)	57,815 (87.8)	50,369 (76.5)	5,355 (8.1)	2,091 (3.2)	6,585 (10.0)	13 (0.0)
2014	57,064 (100.0)	1,377 (2.4)	1,264 (2.2)	85 (0.1)	28 (0.0)	33 (0.1)	47,874 (83.9)	41,955 (73.5)	3,876 (6.8)	2,043 (3.6)	7,774 (13.6)	6 (0.0)
2015	51,978 (100.0)	1,172 (2.3)	1,060 (2.0)	91 (0.2)	21 (0.0)	38 (0.1)	44,050 (84.7)	38,864 (74.8)	3,454 (6.6)	1,732 (3.3)	6,714 (12.9)	4 (0.0)
2016	49,687 (100.0)	1,035 (2.1)	956 (1.9)	67 (0.1)	12 (0.0)	73 (0.1)	40,693 (81.9)	35,740 (71.9)	3,227 (6.5)	1,726 (3.5)	7,864 (15.8)	21 (0.0)
2017	47,493 (100.0)	1,026 (2.2)	945 (2.0)	68 (0.1)	13 (0.0)	72 (0.2)	40,482 (85.2)	35,186 (74.1)	3,489 (7.3)	1,807 (3.8)	5,894 (12.4)	13 (0.0)
2018	45,364 (100.0)	1,017 (2.2)	949 (2.1)	56 (0.1)	12 (0.0)	55 (0.1)	40,108 (88.4)	34,460 (76.0)	3,685 (8.1)	1,963 (4.3)	4,173 (9.2)	12 (0.0)
2019	40,587 (100.0)	1,129 (2.8)	1,073 (2.6)	37 (0.1)	19 (0.0)	71 (0.2)	36,629 (90.2)	31,285 (77.1)	3,557 (8.8)	1,787 (4.4)	2,750 (6.8)	19 (0.0)
2020	39,291 (100.0)	1,129 (2.9)	1,086 (2.8)	26 (0.1)	17 (0.0)	53 (0.1)	36,281 (92.3)	30,296 (77.1)	4,403 (11.2)	1,582 (4.0)	1,821 (4.6)	17 (0.0)
2021	38,546 (100.0)	1,148 (3.0)	1,116 (2.9)	22 (0.1)	10 (0.0)	65 (0.2)	36,027 (93.5)	29,264 (75.9)	5,272 (13.7)	1,491 (3.9)	1,294 (3.4)	10 (0.0)
2022	36,338 (100.0)	1,082 (3.0)	1,041 (2.9)	23 (0.1)	18 (0.0)	101 (0.3)	33,639 (92.6)	28,193 (77.6)	4,003 (11.0)	1,443 (4.0)	1,384 (3.8)	18 (0.0)
2023	38,856 (100.0)	1,104 (2.8)	1,051 (2.7)	31 (0.1)	22 (0.1)	86 (0.2)	36,395 (93.7)	30,162 (77.6)	4,729 (12.2)	1,504 (3.9)	1,264 (3.3)	7 (0.0)

* 출처: 여성가족부(2024a). 2023 청소년백서. p.496.
여성가족부(2025a). 2024 청소년백서. p.500-501.
* 원자료: 법무부(2014~2024). 법무연감.

* 주 : 1) 실시사건 기준임.
2) 기타보호처분은 성매매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를 의미함.
3) 단독명령은 보호관찰 없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단독으로 받은 경우를 의미함.

청소년 대상 사회봉사명령은 2023년 총 5,754명이 대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보호관찰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66.4%로 2/3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강명령의 경우는 7,840명으로 보호관찰부가 60.9%, 단독명령부가 39.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과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사회봉사명령은 다소 감소한 반면, 수강명령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봉사명령 가운데 보호관찰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65% 전후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강명령 중 보호관찰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72.6%에서 2023년 60.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Ⅳ-12-28.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과 형태(2016~2023년)

(단위 : 명)

구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2016	7,616	4,973	2,643	5,587	3,999	1,588
2017	8,321	5,465	2,856	6,139	4,446	1,693
2018	7,845	5,111	2,734	5,952	4,151	1,801
2019	6,787	4,359	2,428	5,182	3,355	1,827
2020	6,292	4,004	2,288	6,724	4,143	2,581
2021	6,763	4,220	2,543	7,488	4,333	3,155
2022	5,570	3,675	1,895	6,705	4,185	2,520
2023	5,754	3,820	1,934	7,840	4,774	3,066

* 출처: 여성가족부(2025a). 2024 청소년백서. p.502.
* 원자료: 법무부(2015~2024). 법무연감.

* 주: 실시사건 기준임.

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비율

청소년 대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기소유예를 받은 인원은 12,688명으로 전체 처분인원 가운데 24% 수준이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원 가운데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비율은 45.4%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50.2%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34%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15.8%는 보호관찰 선도위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 대상 인원 가운데 기소유예를 받은 비율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청소년의 비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30% 수준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50% 전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선도조건부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보호관찰 선도위탁의 경우는 2015년 37.8%에서 2023년 15.8%로 2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29.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2015~2023년)

(단위 : 명, %)

구분 / 연도	처분인원 (A)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유형별					
						선도 조건부		교육 조건부		보호관찰 선도위탁	
		인원(B)	비율 (B/A ×100)	인원 (C=D+E+F)	비율 (C/B ×100)	인원 (D)	비율 (D/C ×100)	인원 (E)	비율 (E/C ×100)	인원 (F)	비율 (F/C ×100)
2015	56,050	28,333	50.5	13,720	48.4	3,413	24.9	5,123	37.3	5,184	37.8
2016	60,669	26,558	43.8	13,585	51.2	3,409	25.1	5,757	42.4	4,419	32.5
2017	58,218	25,416	43.7	13,282	52.3	3,495	26.3	5,416	40.8	4,371	32.9
2018	52,278	20,237	38.7	9,915	49.0	3,031	30.6	4,365	44.0	2,519	25.4
2019	52,973	19,157	36.2	9,453	49.3	3,000	31.7	4,608	48.7	1,845	19.5
2020	52,529	15,952	30.4	5,288	33.1	1,315	24.9	2,975	56.3	998	18.9
2021	43,971	13,420	30.5	4,322	32.2	1,037	24.0	2,504	57.9	781	18.1
2022	48,470	15,439	31.9	5,881	38.1	1,824	31.0	3,034	51.6	1,023	17.4
2023	52,848	12,688	24.0	5,766	45.4	1,958	34.0	2,896	50.2	912	15.8

* 출처: 여성가족부(2025a). 2024 청소년백서. p.482.
* 원자료 1) 대검찰청(2015~2024). 검찰연감.
2) 대검찰청(2015~2024). 범죄분석.
3) 법무부(2020~2024).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 주: 1) 처분 인원은 한 해 동안 검찰에서 종국처분을 받은 범죄소년의 수, 기소유예 인원은 한 해 동안 종국처분 중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범죄소년의 수를 의미함. 따라서, 해당 연도에 전산 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피의자통계 원표상 범죄소년 중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검찰의 종국처분이 완료된 범죄소년 수를 집계한 결과인 검찰의 범죄소년에 대한 처분 결과에 제시되어 있는 처분 인원 및 기소유예 인원 수와는 차이가 있음.
2) 검찰청별로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표에서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선도위탁 3가지 유형만 제시함.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912명의 선도대상자 가운데 연장을 포함하여 계속 선도위탁을 받은 경우가 5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제가 210명, 취소가 27명으로 나타났다.

연장을 포함하여 계속 선도위탁을 받은 경우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60%를 초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해제는 2019년 이후, 취소는 2020년 이후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30.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2015~2023년)

(단위 : 명)

구분	기소유예자 전체	선도위탁 현황			
		선도대상자	계속(연장포함)	해제	취소
2015	354,370	5,184	4,052	3,098	353
2016	368,001	4,419	2,776	2,087	253
2017	325,215	4,371	2,549	1,679	205
2018	266,032	2,519	2,011	1,162	112
2019	226,842	1,845	1,373	905	100
2020	206,374	998	977	455	73
2021	186,400	781	495	283	43
2022	211,509	1,023	767	278	35
2023	191,261	912	587	210	27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499.
대검찰청(2022). 2022 검찰연감. p.489.
대검찰청(2023). 2023 검찰연감. p.451.
대검찰청(2024). 2024 검찰연감. p.449.
* 원자료: 대검찰청(2012-2021), 검찰연감.

3) 경제적 착취

(1) 청소년 노동조건 수준

① 청소년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

청소년 노동조건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청소년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을 살펴보았다. 2023년 기준 청소년 노동자의 근로일수는 20일이었으며, 근로시간은 157.6시간으로 나타났다. 15~19세 청소년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은 각각 12.6시간, 78.5일인 반면, 20~24세 청소년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은 각각 17.6시간, 129.9시간으로 15~19세 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근로일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20일 수준이었으나, 근로시간의 경우는 남성이 164.4시간으로 148.2시간의 여성보다 16.2시간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15~19세 및 20~24세 모두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노동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모두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일수는 22.2시간에서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은 187시간에서 157.6시간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감소 추세는 15~19세 및 20~24세 집단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근로일수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감소된 수준은 유사하였으나, 근로시간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남성은 190.6시간에서 164.4시간으로 26.2시간이 감소하였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181.1시간에서 148.2시간으로 32.9시간으로 감소함으로써 근로시간에서의 감소폭은 여성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 경향은 연령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12-31.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2010~2023년)

(단위 : 일,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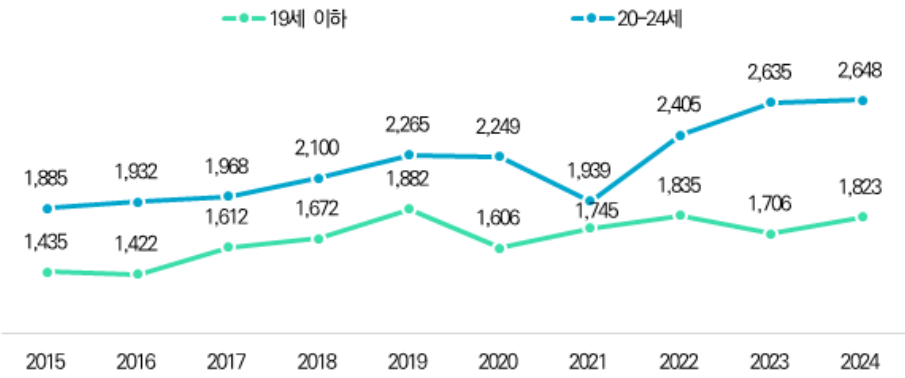
구분		전 체		남 성		여 성	
		근로일수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2010	전 체	22.2	187.0	22.1	190.6	22.3	181.1
	15-19세	18.1	135.5	18.5	143.8	17.8	129.8
	20-24세	21.4	174.5	20.9	178.0	21.6	172.6
2015	전 체	21.6	173.5	21.7	179.2	21.4	165.0
	15-19세	15.0	102.3	15.4	109.0	14.5	96.4
	20-24세	19.9	152.6	19.8	154.9	20.0	151.2
2016	전 체	21.0	171.1	21.0	176.5	20.9	163.1
	15-19세	15.1	105.4	15.8	114.6	14.5	97.0
	20-24세	19.3	151.5	19.1	153.0	19.5	150.4
2017	전 체	20.8	168.5	20.9	174.3	20.6	160.1
	15-19세	14.5	103.4	15.1	112.3	14.0	96.4
	20-24세	18.9	146.0	18.8	148.0	18.9	144.6
2018	전 체	19.5	156.4	19.6	161.8	19.4	148.6
	15-19세	13.8	94.9	14.5	102.6	13.2	88.7
	20-24세	17.7	136.6	17.8	141.2	17.7	133.5
2019	전 체	19.2	152.4	19.2	157.9	19.1	144.6
	15-19세	13.3	89.0	13.5	91.9	13.2	86.4
	20-24세	17.3	130.8	17.4	133.5	17.2	129.0
2020	전 체	20.7	163.6	20.7	169.5	20.8	155.0
	15-19세	12.9	81.6	13.1	87.0	12.7	77.5
	20-24세	18.2	135.7	18.5	143.2	18.0	130.7
2021	전 체	20.8	164.2	20.8	170.4	20.8	155.4
	15-19세	12.9	82.8	13.1	91.8	12.7	77.1
	20-24세	18.0	132.0	18.4	139.6	17.8	127.0
2022	전 체	19.6	154.9	19.6	160.8	19.6	146.7
	15-19세	12.1	77.9	12.3	86.8	11.9	71.3
	20-24세	17.1	129.0	17.4	135.5	16.9	124.8
2023	전 체	20.0	157.6	20.0	164.4	20.0	148.2
	15-19세	12.6	78.5	13.6	88.4	11.8	70.8
	20-24세	17.6	129.9	18.0	138.2	17.3	124.4

* 출처: 여성가족부(2025a). 2024 청소년백서. p.429.
* 원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주: 1) 근로일수 = 소정실근로일수 + 휴일실근로일수.
2) 근로시간 = 소정실근로시간 + 초과실근로시간.
3) 이전 년도의 수치는 최근 자료의 결과값으로 수정하였음.

②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

월 임금총액으로 구성된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2024년 15~19세 청소년의 경우 1,823천 원, 20~24세의 경우 2,684천 원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임금수준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의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2020년과 2021년의 경우는 코로나19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 출처: 여성가족부(2022a). 2021 청소년백서 p.XIV.
여성가족부(2023a). 2022 청소년백서. p.XIV.
여성가족부(2024a). 2023 청소년백서. p.XIV.
여성가족부(2025a). 2024 청소년백서. p.XII.
* 원자료: 고용노동부(2023).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 주: 임금수준은 월 임금 총액을 의미함(단위: 천원).

그림 Ⅳ-12-4.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2015~2024년)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받는 시간당 임금총액은 2024년에 25,156원이었으며, 정규직은 27,703원, 비정규직은 18,404원으로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의 66.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간당 임금총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상승 유형은 정규직와 비정규직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19세 이하 청소년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총액 비율은 2021년에 72.9%였으나, 2024년에는 66.4%로 하락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는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시간당 임금총액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여 40~49세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50세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연도별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32.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2021~2024년)

(단위 : 원(%))

구분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2021	2022	2023	2024	2021	2022	2023	2024	2021	2022	2023	2024
전체	19,806	22,651	22,878	25,156	21,230	24,409	24,799	27,703	15,482 (72.9)	17,233 (70.6)	17,586 (70.9)	18,404 (66.4)
19세 이하	10,651	11,478	11,600	12,402	11,746	13,148	13,445	15,349	10,359 (88.2)	11,014 (83.8)	11,246 (83.6)	11,858 (77.3)
20~29세	14,382	16,471	16,869	18,264	15,593	17,794	18,359	20,269	11,907 (76.4)	13,437 (75.5)	13,754 (74.9)	14,490 (71.5)
30~39세	20,185	22,986	23,580	25,928	20,803	23,770	24,481	27,132	16,593 (79.8)	18,427 (77.5)	18,725 (76.5)	19,628 (72.3)
40~49세	22,699	26,272	26,818	29,664	23,674	27,523	28,132	31,367	17,765 (75.0)	19,625 (71.3)	20,326 (72.3)	21,355 (68.1)
50~59세	21,952	25,135	25,374	27,947	23,395	26,923	27,182	30,285	17,425 (74.5)	19,358 (71.9)	19,878 (73.1)	20,763 (68.6)
60세 이상	17,073	18,901	18,876	20,661	18,703	20,905	20,744	23,712	15,105 (80.8)	16,575 (79.3)	17,054 (82.2)	17,781 (75.0)

* 출처: 고용노동부(2022.5). 2021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고용노동부(2023.5). 2022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고용노동부(2024.4). 2023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고용노동부(2025.4). 2024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 주: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③ 청소년 실업률 추이

청소년 대상 실업률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15~19세는 7.2%, 15~24세는 6.4%로 나타남으로써 전체 실업률 2.8%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15~19세 청소년 가운데 남성의 실업률이 9.5%, 여성은 5.6%인 반면, 15~24세의 경우에는 남성이 6.1%, 여성이 6.6%로 연령대에 따라 실업률 수준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연령대와 관계없이 실업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에게서 동일하게 관찰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청소년 노동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Ⅳ-12-33. 청소년 실업률 추이(2000~2024년)

(단위 :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계	4.4	3.7	3.7	3.6	4.0	3.7	2.9	2.7	2.8
	15~19세	14.5	12.3	11.9	10.6	8.7	8.7	6.5	5.5	7.2
	15~24세	10.8	10.2	9.7	10.5	10.5	8.5	7.1	5.8	6.4
남자	계	5.0	4.0	4.0	3.6	3.9	3.6	2.7	2.6	2.8
	15~19세	15.2	13.0	15.1	10.4	10.8	9.7	6.6	6.5	9.5
	15~24세	13.5	12.1	11.1	11.3	11.1	9.6	7.6	6.3	6.1
여자	계	3.6	3.4	3.3	3.5	4.0	3.8	3.1	2.8	2.9
	15~19세	13.8	11.7	9.6	10.7	7.1	8.0	6.4	4.7	5.6
	15~24세	9.1	8.9	8.9	10.0	10.1	7.8	6.7	5.3	6.6

* 출처: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2025a), 성/연령별 실업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3D%26tblId%3DDT_1DA7102S%26orgId%3D101%26에서 2025년 8월 12일 인출.

* 주: 경제활동인구조사 기본 연령급간의 청소년 연령(15~19세)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9~24세)을 고려한 연령급간(15~24세) 두 가지를 제시함.

(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노력

①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

2025년 기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1%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2013년 이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에게서 더 많았으며, 특히 특성화계고에 재학하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일반계고 학생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로는 한부모 가정과 기타 가정 청소년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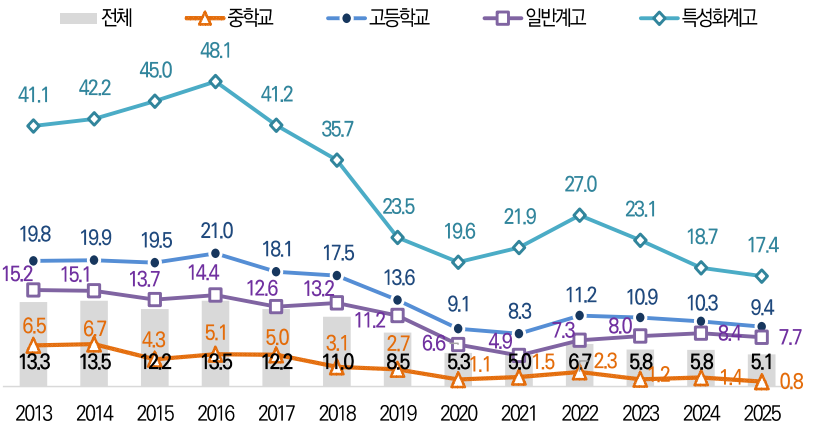
표 Ⅳ-12-34.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2025년)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5.1	94.9	100.0(5,755)	
성별	남학생	5.3	94.7	100.0(2,950)	0.895
	여학생	4.8	95.2	100.0(2,805)	
학교급	중학교	0.8	99.2	100.0(2,900)	224.919***
	고등학교	9.4	90.6	100.0(2,855)	
지역 규모	대도시	5.0	95.0	100.0(2,289)	2.173
	중소도시	4.8	95.2	100.0(2,661)	
	읍면지역	6.2	93.8	100.0(80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7	95.3	100.0(5,091)	11.995**
	한부모가정	7.7	92.3	100.0(537)	
	조손가정	3.6	96.4	100.0(40)	
	기타	10.1	89.9	100.0(48)	
학업 성적	상	2.7	97.3	100.0(1,660)	79.408***
	중	4.0	96.0	100.0(2,388)	
	하	9.0	91.0	100.0(1,673)	
경제적 수준	상	4.4	95.6	100.0(3,164)	19.548***
	중	5.3	94.7	100.0(2,021)	
	하	9.0	91.0	100.0(527)	

*p 〈 .05, **p 〈 .01, ***p 〈 .001.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과 2021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약간 상승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섬으로써,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2025년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주 :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Ⅳ-12-5.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2013~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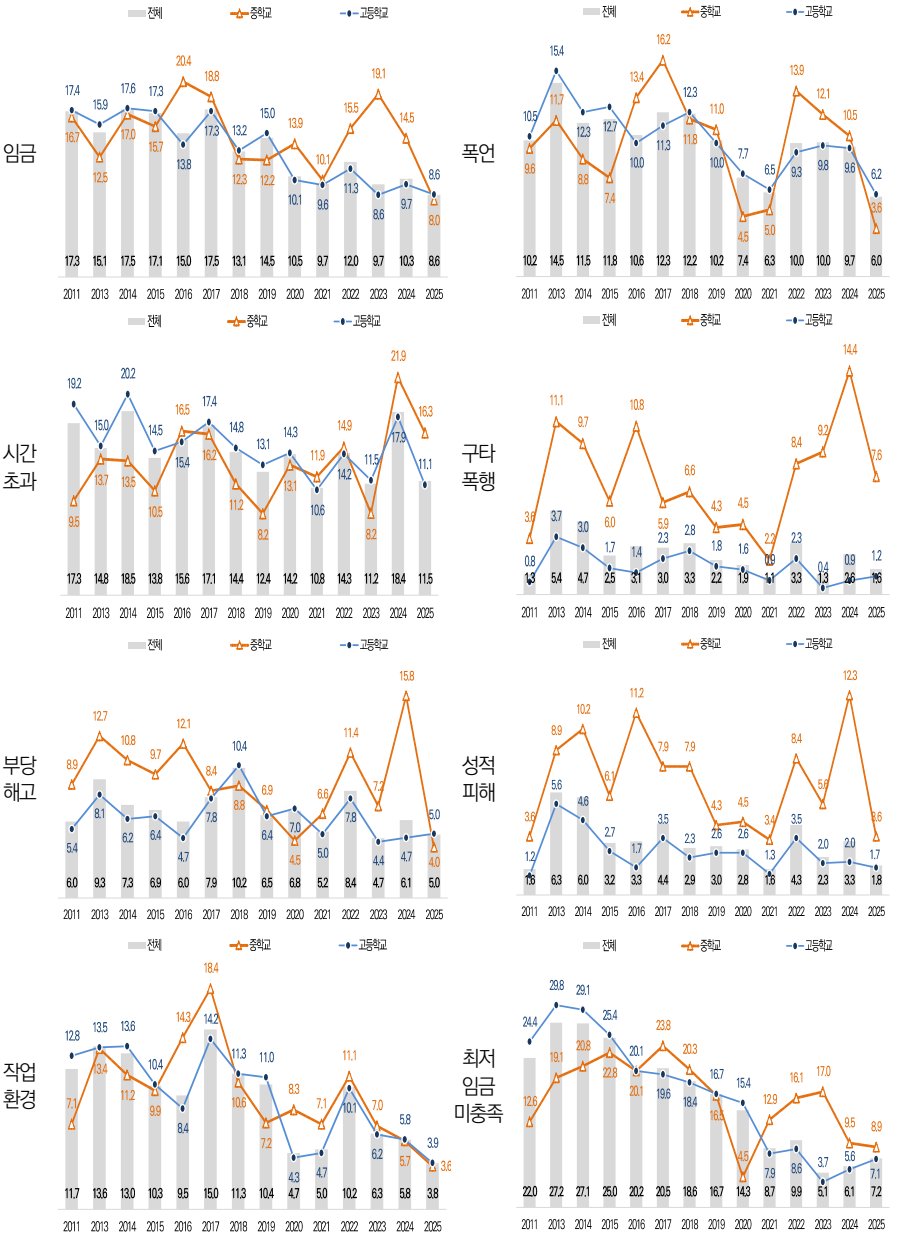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2025년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을 살펴보았다. 우선 9개 항목 가운데 아르바이트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3.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한 경우가 11.5%,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8.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나 7.2%,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 경우가 6% 수준이었으며, 다른 유형의 부당한 행위 경험은 5% 이내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구타나 폭행을 당하거나 성적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를 초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최저임금 미준수 등의 부당한 노동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은 노동시장에서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Ⅳ-12-35.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2025년)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91.4	6.7	1.8	100.0(288)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88.5	5.6	5.9	100.0(288)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76.6	21.1	2.3	100.0(288)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95.0	3.5	1.4	100.0(288)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96.2	2.9	1.0	100.0(288)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94.0	3.9	2.1	100.0(288)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98.4	0.9	0.8	100.0(288)
성적 피해(성희롱 · 성추행)를 경험했다	98.2	1.1	0.8	100.0(287)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92.8	4.0	3.3	100.0(286)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부당 노동행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비중이 매우 낮은 관계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부당 경험과 관련한 양상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이에 비해 안정적인 변화 양상을 보이는데, 임금이나 폭언, 구타폭행, 성적 피해, 작업환경, 최저임금 미충족 등과 관련한 경우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시간 초과와 부당해고의 경우는 뚜렷한 감소 경향은 관찰되지 않고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소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행위로 사료된다. 아울러 대부분의 부당행위와 관련한 그래프에서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다른 시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 자체가 제한적이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주: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 근로계약서 작성문항은 2021년까지는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로 조사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로 변경 조사하여, 추이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그래프를 제시하지 않음

그림 Ⅳ-12-6.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2011~2025년)

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당 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 경험을 살펴보았는데, 2024년 기준 노동인권 교육은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7%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69.6%, 고등학생은 72,7%였고, 특히 일반계고는 71.2%, 직업계고는 81.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70% 전후의 중고등학생들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러한 수준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육받은 장소 및 방법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2024년에 67.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공기관 및 지원기관, 청소년 시설, 스스로 인터넷 정보 또는 동영상으로 학습, 온라인 교육 수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기관 및 지원기관과 청소년시설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학교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지원기관과 청소년시설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신장을 위해 담당하는 역할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표 Ⅳ-12-36.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경험

(단위 : %)

구분		교육 받은 적 있음	교육받은 장소 및 방법(중복응답)					
			학교	공공기관 및 지원기관	청소년 시설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나 업체의 본사	온라인 교육 수강	스스로 인터넷 정보 또는 동영상 으로 학습
전체	2020	50.2	49.1	9.4	8.2	4.8	-	-
	2022	64.0	63.5	15.7	15.0	8.7	-	-
	2024	71.1	67.6	30.7	28.7	19.9	25.2	27.0
중학교	2020	44.5	43.2	8.5	7.9	3.9	-	-
	2022	61.1	60.2	15.0	14.5	7.1	-	-
	2024	69.6	64.9	31.8	31.3	20.0	26.6	27.7
고등학교	2020	55.5	54.6	10.3	8.4	5.7	-	-
	2022	67.1	66.9	16.4	15.5	10.4	-	-
	2024	72.7	70.5	29.6	25.9	19.8	23.6	26.3

구분		교육 받은 적 있음	교육받은 장소 및 방법(중복응답)					
			학교	공공기관 및 지원기관	청소년 시설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나 업체의 본사	온라인 교육 수강	스스로 인터넷 정보 또는 동영상 으로 학습
ㄴ일반계고	2020	53.5	52.7	9.3	7.8	5.1	-	-
	2022	65.0	64.8	14.8	14.4	9.3	-	-
	2024	71.2	68.9	27.5	24.1	18.2	21.9	25.0
ㄴ직업계고	2020	65.1	64.1	15.4	11.7	8.6	-	-
	2022	77.7	77.6	24.5	21.3	16.1	-	-
	2024	81.1	79.4	42.2	36.3	29.0	33.6	33.5

* 출처: 여성가족부(2024c). 2024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291.

* 주: 1) 교육받은 적 있음은 교육기관 중 하나라도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임.
2) '24년도 조사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스스로 인터넷 정보 또는 동영상으로 학습' 조사 항목을 추가하였음.
3)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4) 성적 착취

(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수준

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7,518명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기소된 경우가 3,310명으로 기소중지나 소년보호사건송치 등 기타의 경우 3,361건, 불기소가 78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으로 접수되고 처분된 현황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가 실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의 증가 때문인지 단속을 강화한데 기인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으로 처리되는 사건이 그만큼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 Ⅳ-12-37.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2012~2023년)

(단위 : 명)

구 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2012	4,261	4,186	1,501	390	1,228	1,067
2013	4,526	4,525	1,851	153	1,301	1,220
2014	4,626	4,688	1,882	14	1,430	1,362
2015	4,516	4,505	1,744	0	1,419	1,342
2016	4,615	4,585	1,702	2	1,461	1,420
2017	4,767	4,659	1,720	24	1,460	1,455
2018	4,585	4,513	1,731	19	1,404	1,359
2019	4,468	4,521	1,642	21	1,468	1,390
2020	4,932	4,487	1,799	23	1,174	1,491
2021	5,715	6,071	2,487	49	573	2,962
2022	6,972	6,862	2,988	60	684	3,130
2023	7,518	7,459	3,264	46	788	3,361

* 출처: 대검찰청(2018). 2018 검찰연감. p.410.
대검찰청(2019). 2019 검찰연감. p.378.
대검찰청(2020). 2020 검찰연감. p.350.
대검찰청(2021). 2021 검찰연감. p.373.
대검찰청(2022). 2022 검찰연감. p.362.
대검찰청(2023). 2023 검찰연감. p.328.
대검찰청(2024). 2024 검찰연감. p.321.

* 주: 1) 산출죄명: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력특별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등),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성착취물제작배포 · 소지등)
2) 기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②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현황

주요 지검별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구속률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전체적으로 7.5% 수준이었으며, 지검별로는 부산지검이 11.3%로 가장 높았으며, 의정부지검이 9.5%, 청주지검이 7.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속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적으로는 14.4%에서 7.5%로 절반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 경향은 창원지검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25.5%에서 5.7%로, 청주지검은 21.3%에서 7.6%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만, 부산지검의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 5.7%에서 11.3%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Ⅳ-12-38. 주요 지검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2015~2023년)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14.4	12.5	11.9	10.9	9.3	10.5	9.3	9.3	9.0	7.5
서울중앙지검	11.5	12.5	11.2	10.4	6.0	9.2	5.2	6.5	16.2	6.2
서울동부지검	9.1	11.6	11.5	9.1	5.2	10.3	2.4	8.3	5.1	4.8
서울남부지검	9.2	9.3	6.7	9.9	3.8	10.5	4.8	5.4	4.5	5.0
서울북부지검	11.2	5.6	9.9	8.6	7.5	9.2	9.2	10.2	8.9	6.5
서울서부지검	3.3	7.7	9.1	6.0	3.6	15.2	6.5	4.2	6.3	6.9
의정부지검	16.1	7.6	9.2	10.2	6.0	5.6	9.4	6.8	9.7	9.5
청주지검	21.3	9.8	12.0	10.3	19.8	6.0	13.6	6.4	10.6	7.6
창원지검	25.5	18.7	12.5	14.8	9.2	8.8	7.8	10.1	8.6	5.7
부산지검	5.7	10.6	10.7	6.8	5.0	8.9	8.4	8.6	11.5	11.3

* 출처: 김진애 국회의원(2020.10.19.). 보도자료: 미성년자 ·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 구속률 급감.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kspace406&logNo=222119760258&parentCategoryNo=&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List 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2021.8.26.).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2022.9.29.).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2023.9.21.).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2024.10.17.).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2025.10.1.).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 주: 1) 관련 죄명(2021년 이전) :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추행)
2) 관련 죄명(2021년~) :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의 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준강간등, 위계등간음·추행, 성착취물제작 배포·소지등),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추행)
3) 2021년 전후 관련 죄명의 차이 및 구속률 차이 산식(구속/처분계*100)에 포함되는 산정기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구속률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변화율은 산정하지 않음.
4) 2021년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 송치사건 포함, 송부사건(불송치, 수사중지) 미포함

(2)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정도

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현황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및 성착취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165개 성폭력피해상담소가 있으며, 생활시설로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35개소 운영되고 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40개의 해바라기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생활시설로서 성매매 지원시설

로 36개소와 11개의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도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등 피해이주여성 및 동반자녀들이 2년 이내 머무를 수 있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33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시설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하여 123개의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으며, 64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356호의 폭력피해 주거지원 시설이 있다. 그리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성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 전국에 57개의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등을 위한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도 1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 Ⅳ-12-39. 성폭력·성착취 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구분	시설별	시설수	대상	보호기간(최대)	비고
1	성폭력피해 상담소	165	성폭력 피해자		이용시설
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자립지원 공동생활)	35	성폭력 피해자 등	• 일반(1년+1년 6월+2년) • 장애인(2년+회복 시) • 특별지원(18세+2년) • 자립지원(2년+2년)	생활시설
3	해바라기센터	40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이용시설
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일반 · 청소년)	36	성매매피해자 등	• 일반(1년+1년 6월) • 청소년(19세가 될 때까지+2년)	생활시설
5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1	성매매피해자 등	• 2년+2년	생활시설
6	대안교육 위탁기관	2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	• 1년(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이용시설
7	외국인 여성 지원시설	1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 3개월(수사·소송진행 중인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생활시설
8	자활지원센터	13	성매매피해자 등		이용시설
9	성매매피해상담소	28	성매매피해자 등		이용시설
10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33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 2년 이내	생활시설
11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9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이주여성 및 그 가정 구성원		이용시설

구분	시설별	시설수	대상	보호기간(최대)	비고
12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123 (54)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폭력 피해자 등)		이용시설
1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64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	• 6월(+3개월 2회 연장) ※ 장기시설: 2년 이내	생활시설
14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19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스토킹 등 피해자		이용시설
15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356호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및 그 가정 구성원	• 2년(+2년)	생활시설
16	청소년성문화센터	57	유아·초·중·고생 부모 등 전국민		이용시설
17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지역특화상담소)	14	디지털성범죄피해자 등		이용시설

* 출처: 여성가족부(2025c). 2025 여성 ·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25.

* 주: 2024년 12월 기준

가.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현황

다음으로 2024년 기준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별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93%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나, 남성이 성폭력 피해로 인해 상담을 받은 비율도 5.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체 560명 가운데 20세 이상 성인의 비율이 63.2%로 가장 많았으며, 14~19세 청소년이 14.3%, 8~13세 어린이가 10.7%로 나타났다.

표 Ⅳ-12-40.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명(%))

구분	고령 (65세 이상)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4세-19세)	어린이 (8세-13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7 (1.3)	339 (60.5)	74 (13.2)	52 (9.3)	15 (2.7)	34 (6.1)	521 (93.0)
남	1 (0.2)	13 (2.3)	6 (1.1)	8 (1.4)	1 (0.2)	1 (0.2)	30 (5.4)
기타	-	-	-	-	-	-	-
미상	-	2 (0.4)	-	-	-	7 (1.3)	9 (1.6)
총계	8 (1.4)	354 (63.2)	80 (14.3)	60 (10.7)	16 (2.9)	42 (7.5)	560 (100.0)

*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2025.3). 2024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p.2. https://www.sisters.or.kr/consult/stat/7465에서 2025년 8월 12일 인출.

* 주: 2024년 상담통계 기준

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인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전체는 243명, 장애인은 153명으로 이 가운데 25~64세 이하 성인의 비율이 각각 33.7%, 43.8%로 가장 높았다.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13~18세 이하가 29.6%, 19~24세 이하가 28.8%로 청소년의 비중이 약간 높은 반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각각 23.5%, 26.8%로 19~24세 청년층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비장애인의 경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90명 내외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7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비장애인의 경우 2017년에는 25~64세 이하 보다 13~18세 이하 집단의 비율이 훨씬 높았으나, 이후 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후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23년에는 오히려 25~64세 이하 집단의 비율이 13~18세 이하 집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장애인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인원의 연령별 구성은 성인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2-41.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2017~2023년)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5세 미만	5~12세 이하	13~18세 이하	19~24세 이하	25~64세 이하	65세 이상
2017	전체	285	1	15	123	77	69	0
		100.0	0.4	5.3	43.2	27.0	24.2	0
	장애인	173	0	3	54	60	56	0
		100.0	0	1.7	31.2	34.7	32.4	0
2018	전체	284	2	14	123	71	73	1
		100.0	0.7	4.9	43.3	25.0	25.7	0.4
	장애인	164	0	4	48	51	60	1
		100.0	0	2.4	29.3	31.1	36.6	0.6
2019	전체	287	1	15	125	71	74	1
		100.0	0.3	5.2	43.6	24.8	25.8	0.3

연도	구분	계	5세 미만	5~12세 이하	13~18세 이하	19~24세 이하	25~64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168	0	6	47	52	60	3
		100.0	0	3.6	28.0	31.0	35.6	1.8
2020	전체	295	1	16	114	88	66	10
		100.0	0.3	5.4	38.6	29.8	22.4	3.4
	장애인	166	0	4	46	48	59	9
		100.0	0.0	2.4	27.7	28.9	35.5	5.4
2021	전체	256	0	14	99	73	70	0
		100.0	0.0	5.5	38.7	28.5	27.3	0.0
	장애인	145	0	5	39	41	60	0
		100.0	0.0	3.4	26.9	28.3	41.4	0.0
2022	전체	237	0	11	86	66	73	1
		100.0	0.0	4.6	36.3	27.9	30.8	0.4
	장애인	138	0	4	31	38	65	0
		100.0	0.0	2.9	22.5	27.5	47.1	0.0
2023	전체	243	0	14	72	70	82	5
		100.0	0.0	5.8	29.6	28.8	33.7	2.1
	장애인	153	0	4	36	41	67	5
		100.0	0.0	2.6	23.5	26.8	43.8	3.3

* 출처: 여성가족부(2023.9). 2022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 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 p.4.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704399에서 2024년 7월 22일 인출.
여성가족부(2024.10). 2023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 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 p.4.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704422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지원되는 내용은 심리·정서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 지원, 학교문제(전학) 지원, 자립 지원 등이 있다. 2024년 보호시설에서 가장 많이 지원된 서비스는 심리·정서 지원으로 전체 지원건수의 36%를 차지하였으며, 기타를 제외하고 다음으로 의료 지원이 16.2%, 자립 지원이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심리·정서 지원의 경우 2017년 48.7%에서 2023년 36%로 감소한 반면, 의료 지원은 같은 기간 동안 8.9%에서 16.2%로 증가하여 의료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2-4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내용(2017~2023년)

(단위 : 건, %)

연도	계	심리 · 정서 지원	수사 · 법적 지원	의료 지원	학교문제 (전학)지원	자립 지원	기타
2017	98,954	48,237	1,201	8,844	8,259	10,930	21,483
	100.0	48.7	1.2	8.9	8.3	11.0	21.7
2018	120,675	62,831	1,314	8,911	10,813	17,005	19,801
	100.0	52.1	1.1	7.4	9.0	14.1	16.4
2019	141,719	66,514	1,284	13,898	11,907	20,928	27,188
	100.0	46.9	0.9	9.8	8.4	14.8	19.2
2020	158,991	70,484	1,260	17,500	15,623	19,470	34,654
	100.0	44.3	0.8	11.0	9.8	12.2	21.8
2021	143,263	64,044	2,013	19,647	16,865	14,064	26,630
	100.0	44.7	1.4	13.7	11.8	9.8	18.6
2022	142,501	59,005	1,038	20,075	11,177	17,875	33,331
	100.0	41.4	0.7	14.1	7.8	12.5	23.4
2023	144,632	52,154	1,435	23,417	10,807	18,789	38,030
	100.0	36.0	1.0	16.2	7.5	13.0	26.3

* 출처: 여성가족부(2023.9). 2022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 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 p.6.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704399에서 2024년 7월 22일 인출.
여성가족부(2024.10). 2023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 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 p.6.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704422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다.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다음으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소는 31개소, 지원시설은 39개소, 자활지원센터는 13개소가 운영되었으며, 상담건수는 95,134건이었고 시설 입소 이용인원은 905명, 자활지원인원은 7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소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지원시설이나 자활지원센터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특히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건수는 같은 기간 동안 65,607건에서 95,134건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45%가 증가하였다. 다만, 입소이용인원과 자활지원인원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1,284명서 905명으로, 829명에서 780명으로 감소하여, 상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2-43. 성매매 피해자 지원 현황(2015~2023년)

(단위 : 개, 명,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상담소	26	28	29	29	30	30	30	31	31
지원시설	40	39	39	40	40	40	40	39	39
자활지원센터	10	11	12	12	12	12	12	13	13
상담건수	65,607	64,198	60,322	65,241	61,554	88,672	92,742	89,887	95,134
입소이용인원	1,284	1,217	1,154	1,173	1,274	1,011	922	921	905
자활지원인원	829	910	929	883	920	922	832	782	780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	-	-	-	-	17	-	-

* 출처: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내부자료(2022.10.05.). 아동청소년지원센터 현황.
  지표누리(2025d).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2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 원자료: 여성가족부 내부행정자료

* 주: 1) 누적 개념이 아니라 각 년도의 1년간 실적을 나타냄.

②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37,349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99.5%에 해당하는 37,150건에 국선변호사가 지정되었다. 신청기관별로는 경찰의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해바라기센터, 검사, 상담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사와 상담소 등을 통해 접수된 경우는 100% 지정이 되었으며, 경찰이나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접수된 경우도 99.5% 내외 수준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접수 건수 대비 지정 비율이 93.4% 수준이었으나, 이후 99%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지정은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12-44.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2014~2023년)

(단위 : 건(%))

연도	합계		신청기관										
			경찰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등			검사	
	접수	지정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지정
2014	14,310	13,363 (93.4)	6,334	5,959	375	7,149	6,578	571	223	222	1	604	604
2015	16,138	16,106 (99.8)	8,807	8,778	29	6,481	6,479	2	64	63	1	786	786
2016	19,394	19,336 (99.7)	12,170	12,116	54	6,298	6,295	3	37	37	-	889	888
2017	20,048	19,903 (99.2)	12,220	12,077	143	6,872	6,871	1	62	61	1	894	894
2018	22,859	22,755 (99.5)	14,940	14,866	74	7,011	6,981	30	52	52	-	856	856
2019	25,685	25,459 (99.1)	17,702	17,499	203	7,024	7,002	22	39	38	1	920	920
2020	26,102	26,007 (99.6)	19,200	19,107	93	5,723	5,722	1	38	38	-	1,140	1,140
2021	38,481	38,446 (99.9)	30,898	30,863	35	5,912	5,912	-	36	36	-	1,635	1,635
2022	39,422	39,161 (99.3)	33,188	32,932	256	4,286	4,281	5	18	18	-	1,930	1,930
2023	37,349	37,150 (99.5)	31,798	31,604	194	3,639	3,634	5	18	18	-	1,894	1,894

* 출처: 법무연수원(2020). 2019 범죄백서. p.199.
법무연수원(2021). 2020 범죄백서. p.203.
법무연수원(2022). 2021 범죄백서. p.203.
법무연수원(2023). 2022 범죄백서. p.199.
법무연수원(2024). 2023 범죄백서. p.199.
법무연수원(2025). 2024 범죄백서. p.199.
* 원자료: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통계. 각 연도.

5) 소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과 관련하여 우선 아동·청소년 난민 수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18세 미만 난민 신청자 수는 1,008명으로 전체 신청자 수 대비 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비율은 최근 5.5%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난민 신청자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5% 수준인데 비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인원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고 있음은 주목할만한 경향인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입국자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최근에는 신규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는 200명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 3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 청소년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4,293명 가운데 10~19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1.1%이고, 20~29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8.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다문화가족의 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08,402명 가운데 귀화·인지 및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6% 수준인 반면, 국내 출생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94%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구성 비율에 있어 국내 출생 자녀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분포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중학생과 고등학생 가운데 국내 출생의 비율이 초등학교보다 높으며, 국내 출생 학생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학생이 전체 학생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4% 미만이지만 다문화학생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들이 적절히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탈북청소년들의 중도탈락률을 살펴보면, 2024년에 2.4%로 일반청소년들의 중도탈락률(1.1%)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중도탈락률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로 2021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경우에, 그리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전

조사에 비해 누구로부터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한 비율이 거의 모든 대상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다문화 감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차별 경험의 경우 청소년 연령대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2021년에 비해 2024년에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시설 이용률도 2021년에 비해 2024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일반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시설보다는 자신들을 위한 시설을 중심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 사법과 관련하여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신수용 인원의 경우 2012년 이후 2021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22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최근 들어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평균 5.0개월로 1개월 미만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35.6%, 12개월 이상이 15.4%,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이 9.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9.9%에서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15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17세와 18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최근으로 올수록 청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인원을 살펴보면, 절도가 가장 많았으며, 강간, 폭력상해와 강도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형기별로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친화적 사법 환경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사건의 국선보조인 선정 수는 2023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률을 살펴보면, 서울과 부산 2개소의 경우 수용정원을 초과하였으나, 나머지 시설은 수용률이 100% 미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전국 소년원의 1일 평균 수용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대구소년원),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의 수용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청주소년원)

의 1일 평균 수용률은 같은 기간 동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행정심판, 고소고발, 청원, 행정소송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사건의 항고 및 재항고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기각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인용(환송)된 경우는 처리된 건수 가운데 1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회복적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의 경우 사랑의 교실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경찰선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호관찰 대상 중 청소년의 비율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 이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보호관찰 처분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년보호관찰 대상 인원 중 소년보호처분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 가운데에는 보호관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상 사회봉사명령은 2023년 총 5,754명이 대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보호관찰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66.4%로 2/3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기소유예를 받은 인원은 12,688명으로 전체 처분인원 가운데 24% 수준이었다.

경제적 착취와 관련하여 2023년 기준 청소년 노동자의 근로일수는 20일, 근로시간은 157.6시간이었으며, 전반적으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모두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임금수준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의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 대상 실업률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15~19세는 7.2%, 15~24세는 6.4%로 나타남으로써 전체 실업률 2.8%보다 높은 수준이나,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연령대와 관계없이 실업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청소년 노동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은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에게서 더 많았고, 특히 특성화계고에 재학하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일반계고 학생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부당처우와 관련하여 아르바이트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3.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한 경우가 11.5%,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8.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나 7.2%,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 경우가 6% 수준이었으며, 다른 유형의 부당한 행위 경험은 5% 이내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구타나 폭행을 당하거나 성적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1%를 초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최저임금 미준수 등의 부당한 노동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은 노동시장에서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교육 경험률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노동인권 교육은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7%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성적 착취와 관련하여 우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와 관련한 현황을 살펴보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으로 접수되고 처분된 현황은 202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지검별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2024년 기준 7.5% 수준이었으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 및 연령별 상담의 주 이용자는 여성이 대부분이며, 14~19세 청소년도 14.3%를 차지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13~18세 이하가 29.6%, 장애인의 경우에는 19~24세 청년층이 26.8%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지원되는 서비스 가운데 심리·정서 지원이 전체 지원건수의 36%로 가장 빈번하게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지정도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다차원적 인권침해의 유형과 특징

1. 문제 제기
2. 이론적 배경
3. 분석 방법
4. 분석 결과
5. 시사점

5 다차원적 인권침해의 유형과 특징[161)]

개요(Abstract)

청소년이 경험하는 인권침해는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가정, 학교 등 여러 영역에서 상호 교차하며 누적되는 다차원적 특성을 보인다. 이 장에서는 두 차례 진행된 청소년·청년 대상 질적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차원적 인권침해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실증 분석을 진행한다. 질적연구 결과, 다양한 취약성이 상호 교차·누적되어 누적적 불이익을 형성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질적분석에서 도출된 취약성 구조를 기초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202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데이터에 잠재계층분석(LCA)을 적용하여 가정, 학교, 디지털 환경 등에서의 폭력 경험을 토대로 피해 청소년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다차원적 고위험 집단(6.3%)', '성인 폭력 피해 집단(20.1%)', '또래 폭력 복합 집단(15.8%)', '저위험 집단(57.8%)'으로 구분되었다. '다차원적 고위험 집단'은 전체 청소년 집단의 6.3%에 해당하였으며 자살생각, 자해생각, 차별경험, 학업중단 생각 등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권 침해는 건강권, 학습권 침해 등 다른 권리 침해와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다중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사후적 대응에서 예방적·조기 개입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161) 이 장은 유민상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하였음.

1. 문제 제기

청소년이 경험하는 인권침해는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가정, 학교 등 여러 영역에서 상호 교차하며 누적되는 다차원적 특성을 보인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정, 학교, 디지털 환경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을 유형화하고, 그 집단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가 건강권, 학습권, 차별과 같은 다른 권리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2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2023년, 2024년에 중첩된 취약성과 다중적 인권침해에 관한 청소년, 청년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유민상, 이경상, 유성렬, 이수정, 2023; 유민상 외, 2024).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인생 궤적은 취약성이 상호 연관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한 청소년은 가정에서 시작된 보호권의 위기가 학교로 번져 학교 부적응이 나타났고 결국 학업 중단으로 학습권까지 침해되기도 하였다. 다른 청소년은 학교 부적응이 학업 중단으로 이어졌고, 알바를 위해 찾아간 일터에서 성추행을 당하여 학습권, 노동권, 보호권이 모두 침해당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화가 보여주는 것은 취약성은 교차되고 누적되어 나타나며, 인권침해의 양상도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 취약성이 교차되고 누적된 중첩된 취약성(overlapping vulnerabilities)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여러 권리 미보장의 현실 속에서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며 자살과 자해 생각 등 여러 위기도가 높아질 수 있다. 성장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누적되며, 누적적 불이익(cumulative disadvantage)의 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은 영역별로 분절화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다.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한 청년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학대아동보호체계와 경찰이 자신을 피해자로 보호하지 못하여 결국 가정을 나와 타지로 나와서 노숙을 하고 자살 시도에 이르렀다. 이는 보호권, 발달권, 생명권이 모두 침해된 사례였다. 분절화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체계에서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한 그 청년은 더이상 공적 지지체계를 신뢰하지 못해 도움 요청을 하지 않는 사각지대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다른 청소년은 담임선생님과 위클래스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없었고 스스로 학교를 나와 방황하였다. 학교를 나와 대안학교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하나의 권리 침해 상황에서 피해를

구제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 피해는 누적되고 다른 영역의 권리마저도 침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권리 침해가 한 영역뿐만이 아닌 여러 측면에서 발생하는 패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학대, 방임, 성폭력, 또래폭력, 사이버불링을 가정, 학교, 지역, 디지털 환경에서의 폭력 경험으로 개념화하고, 이들 변수를 통해 잠재집단모형을 활용하여 유형화한다. 이 분석을 통해 유형 간 건강권, 학습권, 차별 관련 변수들을 비교하여 유형의 특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시사점이 무엇인지 정리한다.

이에 이 연구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학대, 방임, 성폭력, 또래폭력, 사이버불링 폭력피해 경험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2. *분류된 잠재계층에 따른 건강권과 학습권 침해, 차별경험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3. *이러한 분석 결과가 다중위기 청소년을 위한 권리보장에 주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다차원적 인권침해 유형과 다른 인권영역과의 연관성은 두 가지 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다차원적 인권침해의 개념이다. 다차원적 인권침해의 개념은 권리 영역(생존, 보호, 발달, 참여)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생태체계(가정, 학교, 지역, 사회)를 기준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다차원적인 인권침해를 살펴본다. 둘째는 취약성이 나타나는 지점으로 교차성(intersectionality) 이론과 누적된 불이익(cumulative disadvantage) 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본 연구의 질적연구에서는 중첩된 취약성(overlapping vulnerabilit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었는데, 하나의 취약성이 다른 취약성과 연결되고 시간이 흐르며 성장에 불이익을 가지고 오는 현상을 이론화한 것이다. 여기서는 다차원적 인권침해와 교차성, 누적된 불이익, 중첩된

취약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국내 선행연구 사례에서 실증적으로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 다차원적 인권침해

다차원적 접근(multidimensional approach)은 다차원적 빈곤, 다차원적 결핍과 같은 학술적 맥락에서 사용되며, OECD의 삶의 질 프레임워크에서는 그 자체로 다차원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다차원적인 빈곤은 소득 빈곤 중심의 시각을 벗어나 삶의 각 영역에서의 결핍 수준을 파악하고, 삶의 질은 소득, 주거, 직업 같은 객관적 조건뿐만 아니라 관계, 만족, 행복 같은 주관적 상태를 결합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을 표방하고 있다. 하나의 현상을 단일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원에 걸쳐 다각도로 현상과 상태를 파악하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다차원적 인권침해로 이 범위를 넓혀 보면 인권이라는 폭넓고 다차원적인 개념을 적용하여 하나의 인권 차원 침해뿐만 아니라 여러 차원의 침해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각이라 할 수 있다.

권리 영역을 다차원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유엔 협약 중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규범적 틀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협약의 권리 영역은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대한 권리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더 다양한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여가 및 휴식에 대한 권리 등 다양한 권리 영역을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생태체계 중심적으로 재배열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협약 제19조는 모든 형태의 폭력(신체·정신 폭력 및 학대, 유기, 방임, 성학대 등)을 규정하고 있어 가정에서의 가정폭력과 학대, 방임, 성학대 뿐만 아니라 학교와 동네에서의 또래 폭력, 따돌림 등을 포괄할 수 있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폭력 역시 포괄할 수 있다. 이는 협약 제19조와 일반논평 제25호 등에 근거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다차원적 접근은 단일한 차원이 아닌 여러 차원에 걸쳐 다각도로 현상과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은 권리 영역 혹은 생태체계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다차원적인 인권침해는 여러 권리 영역 혹은 생태체계에 걸쳐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2) 교차성과 누적된 불이익

(1) 교차성 이론(Intersectionality)

교차성(intersectionality) 이론은 여러 사회적 정체성과 지위가 상호 교차하면서 취약성이 증폭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이다(Crenshaw, 1991). 교차성 이론의 핵심은 다양한 사회적 범주와 지위가 단독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차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Collins, 2015; Crenshaw, 1991; Hankivsky & Christoffersen, 2008). 예를 들어, 인종, 계급, 성별, 장애는 단독적으로 작동하기보다 두 지위가 교차하면서 그 영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청소년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지위가 될 수 있다. 미성년의 청소년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이외의 생태체계에서도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자신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거나 가족 이외의 성인에게 권리를 요구할 기회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정의 보호가 약한 상황에서도 청소년은 자신을 위한 의료보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유민상, 서고운, 신동훈, 이지연, 2023).

청소년기와 성별, 소득계층, 이주배경이 교차하면서 폭력 피해가 심화될 수도 있다. 저소득층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쉽게 폭력과 따돌림에 노출될 수 있고, 여성 청소년들은 성폭력과 범죄피해에 노출되기 쉽고, 최근 이러한 경향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차성은 청소년기 다차원적 인권침해에 특히 더 취약한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틀로 기능할 수 있다.

(2) 누적된 불이익 이론(Cumulative Disadvantage Theory)

누적적 불이익(cumulative disadvantage) 이론은 취약한 대상이 받은 불이익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더 켜켜이 쌓여가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이다. 교차성 이론이 한 시점에서 여러 지위가 취약성을 증폭시키는 것을 설명했다면, 누적적 불이익 이론은 어떠한 과정(process)을 통해 이러한 불이익이 커지는지를 설명한다(Dannefer, 2003; Ferraro & Shippee, 2009).

청소년기는 누적적 불이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태아기, 영유아기는 아동 발달에 결정적인 시기이며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장, 발달한다. 이 시기 폭력, 학대, 빈곤과 같은 부정적 경험이 쌓이면 이러한 영향은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위험의 연쇄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누적된 불이익 이론은 초기 생애의 폭력, 사회경제적 불평등, 차별 경험이 어떻게 다양한 인권침해로 확대되어 나가는지에 대한 설명력을 제공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맥락에서 이 이론은 초기 가족 배경의 불리함,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SES), 또는 차별 경험 등이 청소년을 부정적인 발달 경로로 건강, 사회 적응, 학업 성취 등 다방면에 걸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선행연구 사례: 중첩된 취약성을 중심으로

이 연구의 2023년, 2024년 질적연구에서는 '중첩된 취약성'이라는 가설로 청소년들의 교차성과 누적적 불이익을 설명하였다. 제안된 중첩된 취약성(overlapping vulnerability)은 하나의 취약성이 다른 취약성과 연결되고 시간이 흐르며 성장에 불이익을 가지고 오는 현상을 이론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학대 피해를 당하는 여성 청소년은 탈가정 상황에서 성희롱과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노숙의 경험은 더 큰 위기를 가지고 와 성장의 치명적 위기를 가지고 온다. 다른 예로, 성소수자 청소년은 커밍아웃 단계에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취약성이라는 스트레스 상황과 함께 신체적, 정서적 학대 상황으로 연결되고 탈가정을 반복하는 위기와 연결된다.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경험한 성소수자로서의 차별과 위협은 자해 시도와 자살 생각으로 연결되고 탈학교의 위기로 증폭되기도 한다. 이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 이론에서 설명하는 다양한 부정적 경험이 성인기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틀과도 연결될 수 있다(류정희, 전진아, 이상정, 이주연, 정익중, 유민상, 2018).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과 질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양적 연구를 통해 다차원적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유형을 구분하고, 어떠한 권리 침해와 연관되어 나타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3. 분석 방법

이 장에서는 두 차례 진행된 질적연구의 결과에 토대를 두고 다차원적 인권침해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실증 분석을 진행한다. 질적연구 결과, 하나의 취약성은 다른 취약성과 연결되고, 이러한 영향이 누적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특히 어떤 청소년들은 취약한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등에서 함께 보호받지 못하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고,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다차원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청소년의 유형이 어떻게 나뉘고, 어떠한 어려움을 가졌는지 분석하였다.

1) 분석 자료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한 2024년「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원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 대표성 있는 국가데이터처(前 통계청) 승인통계자료이며 2025년에 원자료 검토가 완료되어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MDIS)에 공개된 자료이다. 분석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총 8,671명이다. 이 자료는 학교를 기반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 분석 방법

이 연구는 R, R-studio, Visual Studio Code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 유형화)을 분석하기 위하여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시행하였다. LCA는 관찰된 응답 패턴을 기반으로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는 잠재계층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개인 중심(person-centered) 접근법이다.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AIC, BIC, SSABIC를 확인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잠재계층을 이론적으로 명명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문제2(잠재계층별 특성 비교)를 분석하기 위하여 LCA를 통해 분류된 잠재계층을 독립변수로 하고, 건강권 침해(자살생각, 자해생각), 학습권 침해(학업중단 생각), 차별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3) 분석 변수

잠재계층을 나누기 위한 지표변수로 5개의 이분형 변수(dichotomous variables)를 사용하였다. 각 변수는 202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원문항을 재구성하여 관련 문항 중 하나로도 '경험 있음'으로 응답한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이분화하였다.

5가지 폭력피해 경험(부모 및 교사 폭력, 또래 폭력, 성적인 피해, 사이버불링, 방임)의 '경험 유무'를 묻는 이분형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변수로 활용되는 학업중단 생각, 자살생각, 자해생각/시도, 외로움 등은 원래의 문항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구성과 측정방식은 [표 V-3-1]과 같다.

표 V-3-1. 분석변수와 측정방식

구분	분석 변수	측정 방식
잠재계층분석 (LCA 지표변수)	부모 및 교사 폭력	4개 문항 중 하나라도 침해 경험(2~5번)이 있으면 '경험 있음', 모두 없으면 '경험 없음'
	또래 폭력	6개 문항 중 하나라도 침해 경험(2~5번)이 있으면 '경험 있음', 모두 없으면 '경험 없음'
	디지털환경 사이버불링	5개 문항 중 하나라도 침해 경험(2~5번)이 있으면 '경험 있음', 모두 없으면 '경험 없음'
	성적인 피해	단일 문항을 '경험 있음', '경험 없음'으로 구분
	방임	4개 문항 중 하나라도 침해 경험(2~5번)이 있으면 '경험 있음', 모두 없으면 '경험 없음'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1=남학생, 2=여학생
	학교급	1=초등학교, 2=중학교, 3=고등학교
	가정형태	1=양부모가정, 2=한부모가정, 3=조손가정, 4=기타
	가정형편	주관적 가정형편으로 1=상, 2=중, 3=하
	학업성적	주관적 학업성적으로 1=상, 2=중, 3=하
	다문화가정	0=아니오, 1=예
결과 변수	학업중단 생각	1=있다, 2=없다
	자살생각	1=생각해 본 적이 없다, 2=가끔 생각한다, 3=자주 생각한다
	자해생각/ 시도	1=생각해 본 적이 없다, 2=생각해 본 적은 있으나, 시도한 적은 없다, 3=한번 시도해 본 적 있다, 4=가끔 시도한다, 5=자주 시도한다
	외로움	1=전혀 그렇지 않다, 2=드물게 그렇다, 3=가끔 그렇다, 4=항상 그렇다

4. 분석 결과

1) 잠재집단 유형

잠재계층분석의 최적 집단 수는 정보기준지수(AIC, BIC), 모형 적합도,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1집단부터 5집단까지 모형을 추정한 결과, AIC와 BIC 값은 4집단 모형에서 최소값을 나타내었다. 특히 BIC는 모형의 복잡성을 가장 엄격히 벌점화하는 지표로, 4집단 모형 이후에는 오히려 증가하여 과적합 가능성을 나타냈다.

또한 4집단 모형은 각 집단의 비율이 모두 5% 이상으로 유지되어 통계적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각 집단의 특징을 실질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IC와 BIC 모두 최저값을 보이고, 해석의 명확성과 통계적 안정성을 동시에 충족한 4집단 모형을 최적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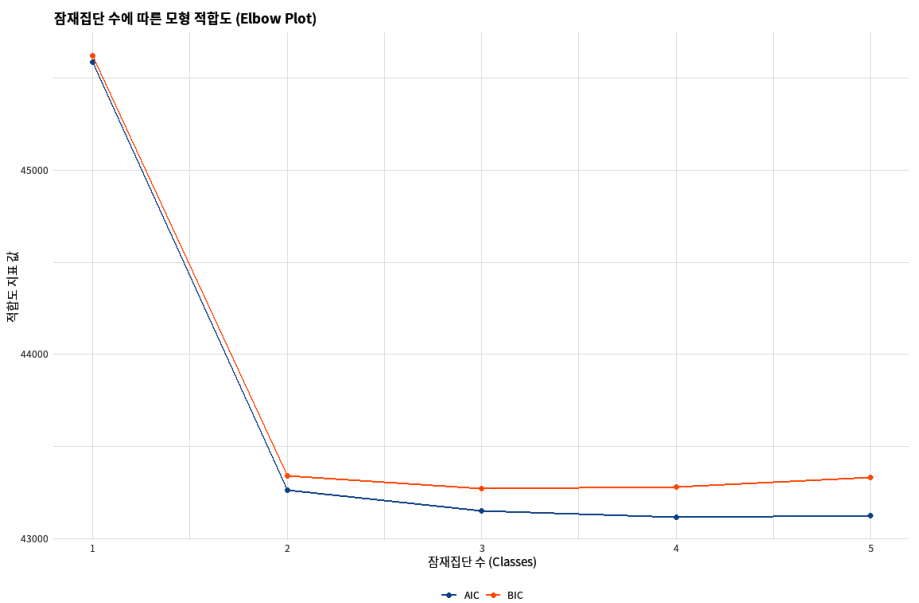


그림 V-4-1. 잠재집단 수 증가에 따른 모형 적합도 지표의 변화(Elbow plot)

표 V-4-1. 잠재계층 수에 따른 모형 적합도 지표

	AIC	BIC	G^2	χ^2 (log-likelihood)	Log-likelihood
1	45586.19	45621.53	2508.95	4184.36	−22,788.10
2	43262.22	43339.97	172.98	176.07	−21,620.11
3	43149.49	43269.64	48.25	49.33	−21,557.74
4	43116.82	43279.38	3.58	3.67	−21,535.41
5	43125.96	43330.93	0.72	0.73	−21,533.98

다음은 4가지 잠재계층별 폭력 경험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잠재집단을 '다차원적 고위험 집단', '성인 폭력 피해 집단', '또래 폭력 복합 집단', '저위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4개의 이질적인 집단을 보면 '다차원적 고위험 집단'은 전체의 6.3%로 모든 영역에서 폭력 경험 확률이 높아 누적적인 인권침해의 전형적 형태를 보였다. '성인 폭력 피해 집단'은 전체의 20.1%로 부모나 교사 등 성인으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집중되어 있었고 방임 비율(27.2%)도 두 번째로 높아 보호권 침해가 발생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또래 폭력 복합 집단'은 또래 폭력, 사이버불링의 비율이 높았고, 부모/교사 폭력의 비율도 낮지 않은 편이어서 복합적인 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집단으로 보았다. 마지막 '저위험 집단'은 전체의 57.8%로 대부분의 폭력 경험이 낮은 편이었다.

표 V-4-2. 잠재계층별 폭력 경험 확률 프로파일

잠재계층(Class)	계층 비율(%)	부모/교사 폭력	방임	또래 폭력	사이버불링	성적인 피해
Class 1: 다차원적 고위험 집단	6.3	97.2	56.8	88.8	77.1	21.9
Class 2: 성인 폭력 피해 집단	20.1	85.6	27.2	25.6	27.2	1.4
Class 3: 또래 폭력 복합 집단	15.8	57.3	8.2	78.7	50.3	10.4
Class 4: 저위험 집단	57.8	22.5	5.8	6.1	7.8	0.4

* 주: N = 8,671. 각 셀의 값은 해당 영역에서 폭력 피해를 경험할 확률을 의미함.

다음으로 잠재계층별 인구사회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첫째, 성별에서는 남학생 비율이 '또래 폭력 복합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또래 관계 중심의 폭력이 남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학교급에서는 '또래 폭력 복합 집단'의 초등학생의 비율이 49.5%로 가장 높아 또래 폭력이 조기 학령기부터 형성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또래폭력의 저연령화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성인 폭력 피해 집단은 고등학생 비율이 35.3%로 비교적 높았다. 셋째, 가정 형태는 '다차원적 고위험 집단'에서 한부모 가정(10.6%), 조손 가정(2.3%)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가정 구조의 취약성과 다차원적 인권침해 간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Ⅴ-4-3. 잠재계층별 인구사회학적,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변수	구분	Class 1 다차원적 고위험 (N = 546)	Class 2 성인 폭력 피해 (N = 1,743)	Class 3 또래 폭력 복합 (N = 1,371)	Class 4 저위험 (N = 5,012)	p-value
성별	남학생	54.9 (192)	52.2 (496)	58.2 (828)	49.3 (2,930)	〈 .001
	여학생	45.1 (158)	47.8 (454)	41.8 (595)	50.7 (3,018)	
학교급	초등학교	33.7 (118)	25.5 (242)	49.5 (704)	27.4 (1,629)	〈 .001
	중학교	46.9 (164)	39.3 (373)	33.3 (474)	31.4 (1,869)	
	고등학교	19.4 (68)	35.3 (335)	17.2 (245)	41.2 (2,450)	
가정 형태	양부모	86.5 (302)	88.7 (840)	90.5 (1,279)	90.4 (5,355)	〈 .001
	한부모	10.6 (37)	10.1 (96)	7.2 (102)	7.5 (447)	
	조손가정	2.3 (8)	0.5 (5)	0.8 (11)	0.9 (56)	
	기타	0.6 (2)	0.6 (6)	1.6 (22)	1.1 (65)	
가정 형편	상	32.6 (113)	33.1 (313)	40.8 (577)	38.1 (2,257)	〈 .001
	중	35.7 (124)	37.9 (358)	39.0 (551)	40.5 (2,399)	
	하	31.7 (110)	29.0 (274)	20.2 (286)	21.4 (1,271)	
학업 성적	상	50.0 (174)	54.1 (512)	64.2 (907)	60.5 (3,580)	〈 .001
	중	31.3 (109)	32.2 (305)	27.8 (393)	32.7 (1,938)	
	하	18.7 (65)	13.7 (130)	8.0 (113)	6.8 (404)	
다문화 여부	예	4.9 (17)	5.3 (50)	4.1 (58)	3.4 (201)	〈 .01
	아니오	95.1 (331)	94.7 (894)	95.9 (1,353)	96.6 (5,707)	

다음으로 잠재집단별 사회경제적 배경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첫째, 가정형편은 '다차원적 고위험 집단'과 '성인 폭력 피해 집단'에서 '하'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또래 폭력 복합 집단'과 '저위험 집단'은 '중'과 '상' 수준 가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자원이 인권침해 경험의 완충 요인일 수 있다. 둘째, 학업성적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다차원적 고위험 집단'은 성적 '하'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저위험 집단'에서는 상위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셋째, 다문화가정 여부는 '다차원적 고위험 집단(4.9%)'와 '성인 폭력 피해 집단(5.3%)'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여부가 인권침해를 가르는 특성이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확률을 높이는 특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종합하면, 가정형편으로 경제적으로 '하' 집단, 학업성취 '하' 집단, 다문화 배경의 복합요인이 다차원적 인권침해와 연관될 수 있다.

2) 폭력 유형과 다른 권리 영역 간의 연관성

다음 그림은 4개의 잠재집단 간 학업중단, 자살·자해 생각, 외로움 경험률 차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결과를 보면, 잠재집단의 고위험 집단은 다른 영역에서도 위험이 크게 나타났다. 하나의 취약성과 위험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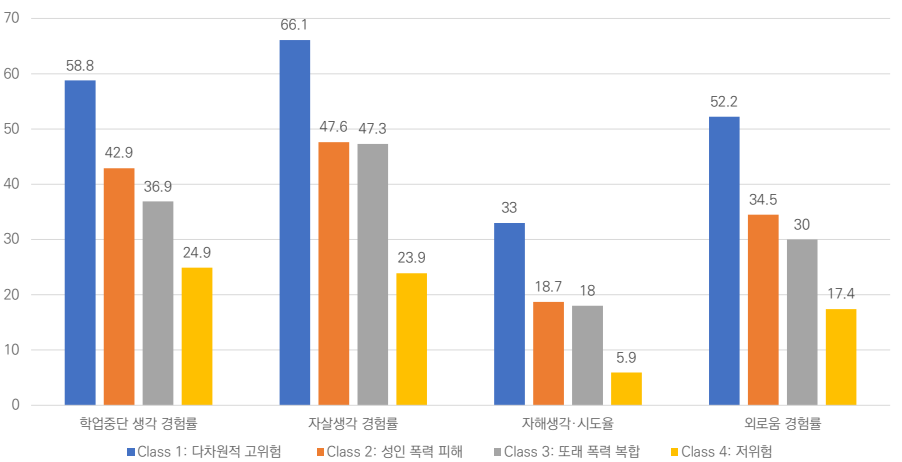


그림 V-4-2. 잠재집단별 학업중단, 자살, 자해, 외로움 경험률 비교

구체적으로 보면, 학업중단 생각은 '다차원적 고위험 집단(58.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학교, 가정 내 폭력 피해가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살생각과 자해생각 및 시도율 모두 '다차원적 고위험 집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누적된 인권침해 경험이 정신건강과 강한 연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외로움 경험율 역시 '다차원적 고위험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성인 폭력 피해 집단'과 '또래 폭력 피해 집단'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차원적 인권침해가 단순하고 개별적인 폭력 피해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권(학업중단 위험), 건강권(자살, 자해 위험), 사회적 관계와 참여(외로움의 증가)로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차된 취약성으로 인한 높은 위험 확률이 누적적 불이익으로 생성하여 여러 차원에서의 다차원적 인권침해를 고착화하는 것이다.

표 V-4-4. 잠재계층별 학습권, 건강권 등과의 특성 비교

변수	구분	Class 1 다차원적 고위험 (N = 546)	Class 2 성인 폭력 피해 (N = 1,743)	Class 3 또래 폭력 복합 (N = 1,371)	Class 4 저위험 (N = 5,012)	p-value
학업중단 생각	있다	58.8 (204)	42.9 (405)	36.9 (523)	24.9 (1,476)	< .001
	없다	41.2 (143)	57.1 (539)	63.1 (894)	75.1 (4,459)	
자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33.9 (78)	52.4 (365)	52.8 (374)	76.2 (3,254)	< .001
	가끔 생각한다	49.1 (113)	38.6 (269)	39.8 (282)	21.3 (908)	
	자주 생각한다	17.0 (39)	9.0 (63)	7.5 (53)	2.6 (110)	
	(경험률 합산)	66.1	47.6	47.3	23.9	
자해 생각·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37.0 (85)	56.8 (401)	60.8 (435)	81.6 (3,507)	< .001
	생각해 본 적만 있다	30.0 (69)	24.5 (173)	21.2 (152)	12.4 (534)	
	한번시도해본적있다	16.5 (38)	9.1 (64)	8.4 (60)	3.1 (135)	
	가끔 시도한다	11.3 (26)	8.5 (60)	7.1 (51)	2.2 (96)	
	자주 시도한다	5.2 (12)	1.1 (8)	2.5 (18)	0.6 (24)	
	(실제 시도율 합산)	33.0	18.7	18.0	5.9	
외로움	전혀 그렇지 않다	22.3 (78)	33.1 (313)	39.9 (564)	58.7 (3,479)	< .001
	드물게 그렇다	25.5 (89)	32.4 (306)	30.1 (425)	23.8 (1,412)	
	가끔 그렇다	36.7 (128)	28.0 (265)	23.8 (336)	15.0 (891)	
	항상 그렇다	15.5 (54)	6.5 (61)	6.2 (88)	2.4 (144)	
	(경험률 합산)	52.2	34.5	30.0	17.4	

5. 시사점

1) 연구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가정, 학교, 디지털 환경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을 유형화하고, 그 집단별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가 건강권, 학습권, 차별과 같은 다른 권리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24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폭력피해 경험은 4개 집단으로 유형화되었으며, '다차원적 고위험 집단(6.3%)', '성인 폭력 피해 집단(20.1%)', '또래 폭력 복합 집단(15.8%)', '저위험 집단(57.8%)'으로 명명되었다. 이들 유형에서 '다차원적 고위험 집단'은 가정형편, 학업성적, 다문화배경 등이 교차하면서 위기를 심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4개 집단은 학습권(학업중단 위험), 건강권(자살, 자해 위험), 사회적 관계와 참여(외로움의 증가)과도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보호권 침해는 교차된 취약성과 누적적 불이익 과정을 통하여 학습권, 건강권, 사회적 관계와 참여권 등에서 다차원적인 침해와 연관될 수 있다. 즉, 중첩된 취약성이 성장 과정에 불이익을 주며 다차원적인 인권침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시사점 및 함의

(1) 이론적 함의

이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질적연구를 통해 발견된 인권침해 패턴을 양적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에 있다. 연차별 연구를 통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혼합 방법으로 특정 현상을 이론화하고 실증 분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잠재계층 모형(LCA)을 통해 변수 중심적 해석이 아닌 사람 중심적으로 집단을 유형화하여 설명했다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 향후 교차성과 누적적 불이익을 성장의 관점에서 통합하고 재해석하는 '중첩된 취약성'의 개념과 역동이 정교화된다면 청소년 복지 지원체계 구성 및 다차원적 인권침해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적 함의

이 연구 결과는 고위험군은 다차원적 인권침해를 경험하나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는 분절되어 있는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가정, 학교, 지역의 지원체계가 각기 다르다면 개인의 적극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피해 구제의 가능성은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가정에서의 지원을 많이 못 받는 상황(학대, 방임)에서 부모가 피해회복을 위해 지원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의 취약성이 다른 취약성과 결합되어 누적적 불이익을 만들기 전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편적인 가정방문 서비스와 같이 취약성이 발현되기 이전에 사회서비스가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적 관점에서 보면 이미 하나의 문제를 경험하고 시간을 보낸 개인은 다른 취약성과 함께 더욱 어려운 문제와 더딘 회복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후적인 접근, 선별적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대응도 통합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드림스타트와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이 작동하고 있으나 통합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다차원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복위기 사례에 통합적 사례관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통합적 서비스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은 어렵지만,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

또한, 중첩된 취약성으로부터 회복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부모로부터 동의와 지원을 받지 못해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회복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자립준비청년 등 청년기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시설 내에 있는 아동·청소년이 더 긍정적인 발달 궤적을 갖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함께 가야한다. 중첩된 취약성이 아동·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요약하자면, 개인의 취약성에서 비롯되는 피해는 단일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다양한 측면에 걸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기에는 이러한 취약성이 여러 영역에서 중첩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되는 양상을 보인다. 아동·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겪는 부정적 경험이나 환경적 불이익은 단기적인 어려움을 넘어 생애 전반의 발달 경로에 지속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2023년, 2024년 진행된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중첩된 취약성과 다중적 인권침해 관련 면담에서 당사자들은 자신이 가진 취약성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면서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걸쳐 다양한 권리 미보장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청소년기 누적된 불이익이 장기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기에 개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는 횡단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없다. 다만 본 연구는 질적연구와의 혼합적인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으므로 면접 결과를 일부 활용하여 종단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다. 이는 패널자료 등 종단 자료를 통해 더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중첩된 취약성을 경험하여 성장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추가 인터뷰를 통해 이론적, 정책적 방향을 정교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제6장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 쟁점
: NGO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1. 배경
2. 연구방법
3. 한눈에 보는 클러스터별 쟁점 정리
4. 주요 쟁점과 의견
5. 요약 및 시사점

6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 쟁점 : NGO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162)]

개요(Abstract)[163)]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대상 의견을 조사하였다. 총 17개의 NGO에서 23명의 활동가 및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의견을 토대로 30개의 쟁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 폭력, 학대, 대입제도 등 전통적인 쟁점 이외에 성소수자 건강, 디지털 환경 안전,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쟁점들도 제기되었다. NGO가 제기하는 쟁점은 협약 이행 기반 마련,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 보장, 법률과 이행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대응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162) 이 장은 유민상 선임연구위원과 서고운 연구위원이 공동 작성하였음.
163) 연구에 참여해주신 활동가 및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 배경

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들이 제기하는 쟁점을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는 주로 두 가지 변화에 기인한다.

첫째, 유엔아동권리협약 보고 절차가 간소화된 절차로 변경되면서 NGO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CRC)에 제기하는 쟁점이 매우 중요해졌다. 국가보고서 심의의 간소화된 절차 채택 이후 과거 국가보고서가 먼저 제출되고 NGO와 아동의 대안 보고서(alternative report)가 제출되었던 것에서, 대안 보고서가 먼저 제출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이와 관련하여 국가에 사전쟁점목록(LOIPR)을 전달하고 이에 대응하여 국가보고서가 작성되는 절차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NGO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전달하는 보고 내용이 매우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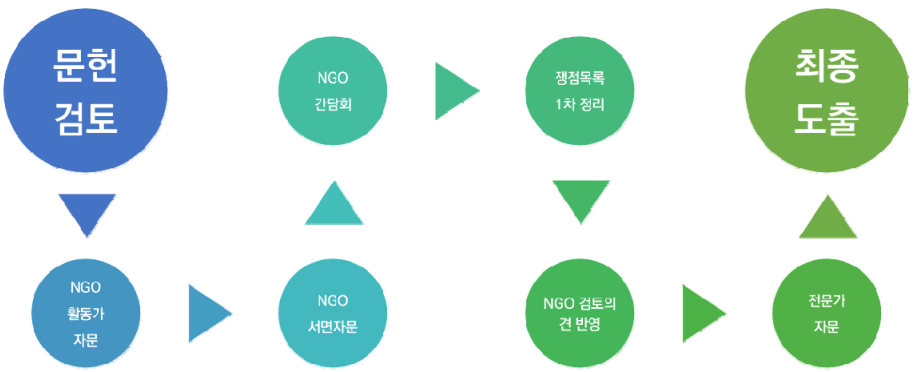
둘째,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클러스터가 기존 9개에서 11개로 변경되었다. 클러스터가 과거에 비해 세분화되면서 개별 클러스터에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클러스터는 각각 장애, 건강, 생활수준 클러스터로 변경되었는데 단일한 클러스터가 분화되면서 해당 클러스터의 쟁점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 클러스터에는 간성(intersex) 부분이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정책적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성소수자 혹은 LGBTQ+ 관련 쟁점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은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다양한 NGO를 섭외하여 쟁점에 관련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는 크게 4가지의 절차로 진행이 되었는데, 1차는 문헌 검토, 2차는 서면자문, 3차는 대면 간담회, 4차는 정리된 내용에 대한 피드백 및 보완이다. 이와 함께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받아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쟁점은 각 클러스터별로 나누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맞게 30개로 한정하였으며, 10,000자 이내 제출인 점을 고려하여 쟁점에 대한 파트 분량을 10,000자 이내로 설정하였다. NGO가 제기한 문제들이 훨씬 풍부하지만 쟁점에 대한 간명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연구방법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인권지표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다양한 인권 상황을 폭넓게 점검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인권 관련 쟁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진은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NGO 활동가들을 통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NGO 활동가들의 의견조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그림 Ⅵ-2-1).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Ⅵ-2-1. 본 연구의 NGO 의견 조사 및 쟁점 정리 주요 흐름

각 절차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문헌 검토를 통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간소화된 심의 절차(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 SRP)의 진행 과정과 우리보다 먼저 SRP 과정을 통해 진행한 국가들의 NGO 쟁점 목록 제안서, CRC의 사전쟁점목록(LOIPR) 내용, 이후 국가보고서까지의 연결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서면자문을 통하여 어떠한 쟁점들이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였고, 세 번째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파악된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네 번째로 서면자문과 간담회를 통해 수합된 자료를

연구진이 정리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정리된 자료를 NGO 활동가들에게 다시 회람하여 정리된 자료를 재점검하고, 마지막으로 NGO 활동가들의 점검 사항을 연구진들이 최종 반영하여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각 단계별로 관련 전문가들에게 방향과 내용의 타당성에 관해 자문을 받아 연구가 타당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학술적 측면에서 NGO들의 의견을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므로 최대한 NGO 활동가들이 제기한 인권 쟁점들을 그대로 정리하여 보고서에 싣도록 노력하였으며, 연구진의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다.[164]

위의 각 절차를 방법론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면자문은 국내 NGO 단체의 활동가들에게 유선 및 메일 연락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자문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참여도가 비교적 낮을 수 있다는 일부 연구진의 우려로 이와 같은 사전 컨택을 진행하였으나, 연락을 받은 대부분의 NGO 활동가들은 연구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후 서면자문 참여에 동의한 NGO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서면자문 양식을 공문 및 이메일로 8월 5일에 발송하였으며, '2025년 현재 NGO가 제기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 쟁점'을 정리하여 8월 20일까지 회신하도록 요청하였다.

서면자문 서식은 영국의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CRAE)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사전쟁점목록(LOIPR) 관련 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한 서식을 참고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다(그림 Ⅵ-2-2).[165]

서면자문 서식에는 총 11개의 유엔아동권리협약 권리 클러스터를 제시하였으며, 최대 3개의 쟁점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였다. 보고서 길이의 제약상 한 쟁점당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서면 자문 서식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202507-HR-고유-003-04)을 거쳐 최종 완성되었다.

164) 단, 내용을 요약하고 유목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는 편집 역할을 연구진이 하면서 발생한 한계로, 향후 NGO가 직접 작성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LOIPR 작성을 위한 의견서 제출 시에는 이런 문제가 한계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165)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홈페이지, News, 'Call for Written Evidence: Civil Society Submission to the UN's List of Issues', https://crae.org.uk/news/call-written-evidence-civil-society-submission-uns-list-issues의 내용 참고.

아동·청소년 인권 쟁점 관련 NGO 활동가 의견 수렴 조사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올해 저희 원 연구과제인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서는 2025년 현재 NGO가 제기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 쟁점을 파악하여, 본 연구가 다루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쟁점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 클러스터 중, 귀하의 전문 분야 혹은 관심 분야에 맞는 클러스터를 고르신 후, 2025년 현재 NGO가 제기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관련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쟁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권리 클러스터 예시

1. 일반 이행 조치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2. 일반 원칙 (General principles)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Civil and political rights)
4. 아동에 대한 폭력 (Violence against children)
5. 가정 환경 및 대안 양육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6. 장애 아동 (Children with disabilities)
7. 건강 (Health)
8. 생활 수준 (Standard of living)
9. 아동의 권리와 환경 (Children's rights and the environment)
10.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11. 특별보호조치 (Special protection measures)

※ 작성방법: 한 쟁점 당 2페이지 이내 작성 후 제출 (최대 3개 쟁점 작성 가능)

(중간 생략)

응답자께서는 11개 클러스터 중 하나를 고르셔서 이 클러스터의 주요한 쟁점과 질문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클러스터와 상관없이 최대 3개 쟁점에 대해 작성 가능하며, 한 쟁점 당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작성 및 회신 방법

○ 1단계: 응답자 혹은 소속기관의 전문 분야의 클러스터 선택
○ 2단계: 서식 작성
(1) 쟁점
(2) 쟁점과 관련된 현재 한국의 상황
(3) 쟁점과 관련된 증거(데이터, 연구, 보고서 등)
(4) 대한민국 정부에 이와 관련하여 제기할 구체적 질의 내용(specific questions, 질문형태)
단, (4)의 질문형태는 선택사항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질문이 없는 경우 (1) ~ (3)까지만 기재

(이하 생략...)

그림 Ⅵ-2-2. NGO 활동가 서면자문 서식

서면자문 결과, 총 17개 NGO 기관의 23명 활동가가 자문에 참여하였으며, 총 39개의 쟁점이 취합되었으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맞춰 30개로 제한하였다.[166] 참여한 기관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비정부기구(NGO)였으며, 참여자들은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들이었다. 이들의 활동 영역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 국제구호, 공익법무지원 등 다양하였으며, 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전문 직종도 다양하였다.

각 쟁점들은 1개 이상의 클러스터에 체크가 되었는데, '1. 일반이행조치' 클러스터에 체크된 쟁점은 4개, '2. 일반원칙' 클러스터에 체크된 쟁점은 7개,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클러스터에 체크된 쟁점은 7개, '4. 아동에 대한 폭력' 클러스터에 체크된 쟁점은 4개, '5. 가정 환경 및 대안 양육' 클러스터에 체크된 쟁점은 5개, '6. 장애 아동' 클러스터에 체크된 쟁점은 2개, '7. 건강' 클러스터에 체크된 쟁점은 4개, '8. 생활수준' 클러스터에 체크된 쟁점은 1개, '9. 아동의 권리와 환경' 클러스터에 체크된 쟁점은 0개, '10.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클러스터에 체크된 쟁점은 2개, '11. 특별보호조치' 클러스터에 체크된 쟁점은 6개였다.[167] 다만 NGO가 직접 해당 클러스터에 체크하지는 않았으나, 연구진의 판단에 따라 디지털·기후 환경 관련 쟁점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환경' 클러스터에 배치하였다.

표 Ⅵ-2-1. NGO 간담회 개최 개요

	1차 (2025년 8월)	2차 (2025년 8월)
시간, 장소	10시~11시 30분, 서울역 회의실	14시~15시 30분, 서울역 회의실
기관의 수	7개 기관	5개 기관
참석자 수	8명의 활동가	6명의 활동가
내용	1) 서면자문을 통해 취합된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및 2) 서면자문으로 취합되지 않은 클러스터의 쟁점 논의	
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참여자 동의 하에 녹음되어 전사	
진행 및 분석	연구진 3명	
비고	참여기관 및 참여자 정보는 익명 처리하였음.	

166) 한 개의 쟁점 안에 여러 개의 복합적인 쟁점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NGO 활동가들이 보내준 서면자문 양식의 단순 개수는 39개였음

167) 하나의 쟁점이 여러 클러스터에 체크 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체크 된 클러스터의 합이 쟁점의 합과 동일하지 않음

다음으로 서면자문에 참여한 NGO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서면자문에 참여한 NGO 중 총 12개 기관의 14명의 활동가가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2025년 8월 같은 날 오전과 오후 두 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비슷한 클러스터 및 참석자들의 가능한 시간을 고려하여 시간대를 배정하였다. 오전에는 7개 기관의 8명의 활동가가 참석하였고, 오후에는 5개 기관의 6명의 활동가가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연구진이 진행하고, NGO 활동가들은 본인이 제시한 쟁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NGO 활동가들은 서로 자유롭게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면자문으로는 취합되지 않은 클러스터의 쟁점들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간담회 내용은 참석자들의 동의에 따라 녹음되었고, 간담회 이후 녹음 자료를 전사하여 녹취록으로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진은 서면자문 내용과 간담회 내용을 취합하여 1차 정리본을 완성하였다. 11개의 클러스터의 30개의 쟁점으로 정리하였으며, 정리본은 서면자문 및 간담회 참여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되어 확인 절차를 거쳤다.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NGO 활동가들의 검토의견을 최종 반영하고, 이를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전문가에게 최종 자문을 받아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3. 한눈에 보는 클러스터별 쟁점 정리

NGO가 제기한 문제들은 주로 전통적으로 지적되어 온 이슈(폭력 및 학대, 학업스트레스, 차별금지, 보편적 출생등록, 참여권 제한, 해외 입양 등)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디지털 환경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기후 환경에서의 권리 침해 및 참여권 보장 등 비교적 새롭게 제기되는 쟁점들도 포함되었다.

각 쟁점은 특정한 이슈에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NGO가 개별적으로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공통으로 제기하는 이슈들도 있었다. 아동기본법과 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법률 제정 지연,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부재는 3개의 NGO가 공통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들 이슈가 각 영역을 관통하는 이슈(cross-cutting issue)로 여러 인권 상황에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NGO가 제기한 쟁점들을 각 클러스터별로 정리하여 30개를 선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음 절에서는 NGO가 제기한 쟁점들과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하는 주요 질문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표 Ⅵ-3-1. 클러스터별 주요 쟁점

클러스터	주요 쟁점	제안기관
일반 이행 조치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I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법률의 제정 지연	A, E
	I2. 파편화된 아동 예산 및 투자 부족	A, B
	I3. 아동의 사법 접근권 제한 및 지역 격차	D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I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	E
	I5.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총체적 차별 및 보호 공백	F, K
	I6.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의 형식적 적용	B
	I7. 아동 참여권 보장의 제도적 후퇴	E, A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Civil and Political Rights)	I8.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부재	A, G, H
	I9.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 제한	I
아동에 대한 폭력 (Violence Against Children)	I10. 아동학대 발견율 감소 및 숨겨진 학대	G, J
	I11.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정책 부재	G
	I12. 가정 및 학교 내 체벌의 불완전한 금지	I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I13.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부재	L, K, F
	I14. 아동·청소년을 포괄하는 탈시설 로드맵 부재	D
	I15. 가정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 공백	C
	I16. 복합위기가정 지원 미흡으로 인한 양육 포기 및 가정 분리	C
	I17. 국제입양 과정의 인권침해	Q
장애 아동 (Children with Disabilities)	I18. '교권 보호' 법안으로 인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	M
	I19. 통합교육의 질적 실패 및 지원 부족	N
건강(Health)	I2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심화 및 자살 문제	A, J
	I21. 아동 신체건강 악화	J, P
	I22.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 방치	F, K
	I23. 이주아동의 건강권 침해	H
생활 수준 (Standard of Living)	I24. 다차원적 아동·청소년 빈곤 및 주거 빈곤 문제	C
아동의 권리와 환경 (Children's Rights and the Environment)	I25.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미비	C, E
	I26. 기후위기로 인한 포괄적 권리 침해 및 참여권 미보장	O, E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I27. 과도한 입시 경쟁을 유발하는 대입 상대평가 제도	P
	I28. 놀이, 휴식, 여가권의 미보장과 행복 격차	P, C
특별 보호 조치 (Special Protection Measures)	I29. 아동사법제도 운영의 문제	B, D
	I30.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적 사회보장 및 불안정한 체류권	H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Ⅵ-2-3. 클러스터별 주요 쟁점(11개 클러스터, 30개 쟁점)

4. 주요 쟁점과 의견

1) 클러스터 1: 일반 이행 조치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I.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법률의 제정 지연(아동기본법)

대한민국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개별 법률들만 존재할 뿐,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 주체'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아동기본법(안)은 모든 아동(아동, 청소년, 학생, 어린이, 영유아, 소년 등)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아동 중심으로 추진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함으로써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핵심적인 법적 기반이지만,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책무 이행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기본법 제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법안 내용, 방향 등)은 무엇인가?*

(I.2) 파편화된 아동 예산 및 투자 부족

아동 예산에 대한 일관된 기준과 정의가 부재하여,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분산되고 총체적인 규모 파악 및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저출생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보건복지부의 아동·청소년 예산은 전년 대비 3.7%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의 2.2%에 불과한 수준이다. 아동·청소년 예산은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사업은 지방 이양되어 있어, 전체 예산규모와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관련 예산 전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과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 *대한민국 정부는 범부처 차원으로 아동 관련 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는가?*
-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 관련 예산을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분*

석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

-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아동복지사업의 지역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가?*

(I.3) 아동의 사법 접근권(Access to Justice) 제한 및 지역 격차

아동이 권리 침해 상황에서 자신을 스스로 구제할 수 있는 사법적 접근성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다. 특히 민사, 가사, 행정 절차에서는 아동의 의견진술이나 소송을 전문적으로 조력하는 제도가 부재하며, 소송비용 부담은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가사조사관, 국선변호인 등 사법 인프라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 지역 아동들은 동등한 사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차별에 놓여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비사법적 권리구제 절차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 *아동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민사, 가사, 행정, 수사단계 등으로 국선제도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가?*
- *친권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아동의 소송능력을 보완하고, 다양한 비사법적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계획)이 있다면 제시하라.*
- *지역별 가사조사관의 수와 전문분야, 국선제도가 적용되는 절차와 법률전문가의 수, 지역별 소년보호, 아동보호, 가정보호 처분을 집행하는 기관과 인력의 수, 지역별 사법 통번역가의 수에 관한 통계를 제공하라.*
-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소년보호 전담판사 등 전문인력 배치, 소년법원 설치 등에 대한 계획 및 예산 마련 계획이 있는가?*

2) 클러스터 2: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I.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지연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인종, 국적 등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역대 국회에서 계속 무산되고 있다. 노키즈존, 성적에 따른

아동·청소년 참여 기회 제한 등 여전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막을 법안이 부재한 상태이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

(I.5)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총체적 차별 및 보호 공백

국가 교육과정 및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용어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관련 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는 등, 국가정책이 성소수자 아동의 존재를 부정하고 비가시화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탈가정 위기에 놓인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청소년 쉼터는 법적 성별에 따라 공간을 엄격히 구분하여,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입소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관련 실태조사나 지원 정책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에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이 포함된다고 보는가?*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의 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원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가?*

(I.6)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의 형식적 적용

2019년부터 시행된 '아동정책영향평가'는 대부분 아동복지 분야에 한정되고, 아동 참여는 보호자 의견 청취 수준에 그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 등 아동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입법 및 행정 과정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이 실질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 전반에 아동 최상의 이익을 결정하고 적용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예: 체크리스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아동 참여와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은 어떻게 점검되고, 개선되고 있는가?*

(I.7) 아동 참여권 보장의 제도적 후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의 견해 존중 권리를 명시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했음에도, 「아동복지법」은 여전히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2024년과 2025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정책참여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대한민국 아동총회는 여전히 법적 근거 없이 연속 사업으로만 추진되고, 그 예산은 10년째 동결되는 등 아동의 참여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아동총회 결의문의 정책 반영 역시 저조하여 아동 참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 *2024년, 2025년 여성가족부(現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정책참여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가?*
- *아동복지법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명시된 아동의 견해 존중 원칙을 명시하고, 이행할 계획은 있는가?*
- *아동총회 결의문 등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3) 클러스터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Civil and political rights)

(I.8)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부재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등록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은 출생등록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4,000명이 넘는 외국인 아동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며, 이들은 의료, 교육, 복지 등 모든 기본권에서 배제되어 방치되고 있다.

지연된 출생등록의 문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는 어머니만 할 수 있고, 생부의 출생신고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의 근거가 되었던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입법 시한이었던 2025년 5월 31일이 지나 효력을 상실하였다.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가 이용되고 있지만, 지자체 담당자가 이를 몰라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고, 부처별 관리번호도 분절되어 아동의 통합적 보호에 미흡하다.

- *대한민국 정부는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대한민국 정부는 부모의 국적, 혼인 관계나 지위 등에 무관하게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을 보장하고,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 *출생등록을 국적 부여와 분리하여 모든 아동의 법적 신분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가?*

(I.9)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 제한

「공직선거법」은 18세 미만의 선거운동을, 「정당법」은 16세 미만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다수 학교의 학칙이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협약의 정신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
- *대한민국 정부는 학교 안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침해를 금지하기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가?*

4) 클러스터 4: 아동에 대한 폭력 (Violence against children)

(I.10) 아동학대 발견율 감소 및 숨겨진 학대

2023년 정부의 공식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0.36%에 불과하나, 아동이 직접 응답한 학대 경험률(신체학대 10%, 정서학대 30.6%)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현행 아동보호 전문기관 중심의 대응체계는 신고 후 개입에 집중되어 있어, 신고되지 않은 학대 및 방임 사례의 조기 발굴과 보호 한계가 있다. 특히 초중고 교직원 및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아동보호체계의 조기 발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그 효과는 어떠한가?*
- *신고되지 않은 아동학대 및 방임 사례를 조기 발견·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예: 보편적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의료·심리 검진, 다기관 연계 등)를 어떻게 구조화할 계획인가?*

(I.11)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 대한 정책 부재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은 극단적 아동학대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 공식 아동학대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다. 2023년에는 아동학대 사망 사례의 52.3%가 '자녀 살해 후 자살'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집계, 원인 분석, 예방 및 생존 아동 지원 정책이 미비하다.

-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포함하는 공식 아동학대 통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가?*
- *자녀 살해 후 자살 예방을 위한 계획과 이러한 사건의 생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계획은 무엇인가?*

(I.12) 가정, 학교 내 체벌의 불완전한 금지 및 근절 문제

2020년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여전히 성인의 64.1%가 훈육을 위한 체벌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아동학대죄로 판단될 정도로 심각한 행위가 아니면 체벌을 가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 체벌 발생 시 이를 제재하거나 피해 아동을 구제할 수 있는 공적 절차가 미비하고, 학교에서의 체벌 및 굴욕적·비인격적 대우를 규율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부재하다.

-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고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집행할 것인가?*
- *대한민국 정부는 학교, 가정 등 모든 환경에서의 체벌을 근절하고 체벌 발생 시 구제하기 위해 어떤 공적 절차와 기구를 배치할 계획인가?*

5) 클러스터 5: 가정 환경 및 대안 양육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I.13)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부재

아동·청소년이 학대, 방임 등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가정을 선택한 경우 국가에게 대안 돌봄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아동권리 접근법을 적용한 대안적 선택 방안들이 개발, 제공되어야 한다. 가정폭력 등 생존을 위해 집을 나온 청소년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선택지는 '원가정 복귀'를 전제로 한 '쉼터' 등 집단시설 수용에 국한되어 있다. 개인의 사생활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연령과 성숙도를 반영한 독립적인 주거 선택권은 박탈되어 있으며, 주거권이 보장받지 못한 청소년은 길거리에서 여러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쉼터 입소 시 부모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는 청소년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보다 민법상 친권자의 권리를 우선시하여, 청소년을 더욱 취약한 상태로 내몰고 있는 현실도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또한 탈가정 성소수자 청소년 등 취약한 상태의 청소년들을 배제하여 더 큰 위험으로 내몰 가능성이 있다.

- *대한민국 정부는 가족 재결합이 불가능하거나 아동이 원하지 않을 경우, 시설 수용 외에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할 방안(예: 연령과 성숙도를 반영한 독립주거 기반 보호)을 고려하고 있는가?*
- *대한민국 정부는 쉼터 입소 시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현행 절차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가?*
- *대한민국 정부는 현실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지원(공간 지원 및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대한민국 정부는 쉼터에 트랜스젠더 청소년도 입소 가능하도록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는가?*

(I.14) 아동·청소년을 포괄하는 탈시설 로드맵의 부재

정부는 2022년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연구를 진행했으나, 이후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탈시설 원칙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또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논의만 일부 있을 뿐, 아동·청소년이 배치될 수 있는 청소년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탈시설 계획은 전혀 없다. 또한 그룹홈과 같은 소규모 생활시설의 가정 기반 보호 전환에 대한 종합적 고려도 부재하다. 오히려 '(가칭) 원가정 복귀 지원센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설 유지를 우선 고려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괄하는 탈시설 로드맵 마련 계획을 제시하라.*
- *대한민국 정부는 탈시설의 대안이 될 청소년의 주거권, 아동의 가정 기반 보호, 지역사회 돌봄 정책에 자원을 집중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가?*

(I.15) 가정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 공백

가정외보호아동은 친권자가 의지를 갖고 제 역할을 하지 않는 한, 법정대리권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금융 및 의료행위, 교육 참여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시설보호아동은 시설장 등이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지만, 다수의 아동을 대리하는 시설장이 개별 아동에게 가장 최선이 되는 대리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가정위탁 보호아동은 민법상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정대리인의 공백이 더 크다.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모두 미성년후견인으로서의 책임(아동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포함)을 우려하여 후견인이 되기를 기피하기도 한다. 2023년 공공후견인제도가 도입되기는 했으나,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일부만 대상으로 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

- *가정외보호아동의 법정대리인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 이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개선 노력은 어떠한가?*
- *가정위탁아동을 포함한 보호대상아동의 친권·후견 공백과 관련하여, 법정대리*

인이 부재한 아동,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아동과 되지 않은 아동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I.16) 복합위기가정 지원 미흡으로 인한 양육 포기 및 가정 분리

2023년 기준, 원가정에서 분리된 보호대상아동 발생 사유의 36.4%가 빈곤, 실직, 이혼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이었다. 이는 국가가 위기아동 가정에 대한 주거, 돌봄, 소득 지원을 충분히 제공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할 권리와 아동의 원가족 보호 원칙을 고려하여 보호자와 아동이 분리되는 상황을 예방 및 회복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 *대한민국 정부는 위기아동 가정의 사회적·경제적 지원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가?*
-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포함해 자녀 돌봄과 근로, 학업 등 정부 부처별 분절화된 위기아동가정 지원제도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인가?*

(I.17) 국제입양 과정의 인권 침해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

과거 수십만 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입양기관과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아동의 신원을 조작하고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을 진행한 사례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아동의 신원을 박탈하고 친생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며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이러한 행위는 국제형사법상 '강제실종'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여전히 제한하는 등 진실 규명과 회복에 소극적이다.

- *정부는 과거 국제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조직적 인권 침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정보 접근권 및 정의를 회복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6) 클러스터 6: 장애 아동 (Children with disabilities)

(I.18) '교권 보호' 법안으로 인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

2023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금지행위(정서적 학대 등) 위반으로 보지 않는 면책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여 가정학습을 보내는 조항은 장애 특성으로 인한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 학생을 교육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배제하고 교육권을 박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는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책 없이 교권 강화만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 *대한민국 정부는 언제까지 학교에서의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학대 위험을 방관할 것인가?*

(I.19) 통합교육의 질적 실패 및 지원 부족

통합교육은 여전히 분리 교육 중심 특수교육 체제에 머물러 있으며, 포괄적 교육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미흡하다. 법·제도·인프라·사회 인식 모두에서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 평균이 6.5명으로 법정기준 4명, OECD 평균 4.5명을 상회하고 있다.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 *대한민국 정부는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하여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의 89%가 지원 없이 배치된 현실을 개선할 방안이 있는가? 또한 특수교사 정원 확보와 지원 인력 확충 로드맵은 마련되어 있는가?*
- *대한민국 정부는 형식화된 개별화교육계획(IEP)을 실질적 교육계획으로 전환하고, 학생·학부모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구체적 방안이 있는가?*

7) 클러스터 7: 건강(Health)

(I.20)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심화 및 자살 문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수년째 자살이 10대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긍정 정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우울감과 자살 생각 경험률은 증가하고 있다. 한국 아동의 정신적 웰빙 수준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조기 발견-전문 치료'로 이어지는 통합적 지원체계가 부재하며,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나 취약계층 아동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대한민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은 무엇인가?*
- *취약계층(저소득, 한부모·조손가구, 다문화가정 등) 아동을 위한 정신건강 맞춤형 지원 확대 정책의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
- *학교 밖 아동을 위한 정신건강 조기 개입 체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 대책이 대부분 고위험군과 사후치료에 집중되어 있다. 예방적 대책 마련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계획과 예산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는가?*

(I.21) 아동 신체 건강 악화 (비만율 증가, 신체활동 부족)

아동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2018년 대비 약 8%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과체중·비만율은 2배 이상 급증했다. 평균 수면 시간은 줄고, 학습 외 목적의 좌식 시간은 급증하는 등 전반적인 신체 건강 지표가 악화하고 있으나,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속에서 체육 및 야외활동 시간은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 *아동 비만율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은 무엇인가?*
- *학교·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신체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 체육·야외활동 시간을 보장하는 구체 정책이 있는가?*

(I.22)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 방치

여러 연구를 통해 성소수자 청소년의 높은 자살 시도율과 정신건강 위기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살예방기본계획이나 정신건강실태조사 등 어떠한 국가정책에서도 성소수자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민감정보라는 이유로 조사 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간성(Intersex) 아동에 대한 실태 파악 또한 전혀 없다. 간성 아동이 본인의 결정과 상관없이 의료적 조치가 취해지는 문제, 사회적 편견 등은 대한민국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간성(intersex) 아동의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I.23) 이주아동의 건강권 침해

미등록 체류 아동은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주아동조차 내국인과 다른 보험료 부과 기준, 가족 범위의 협소한 인정, 체납 시 즉각적인 급여 제한 등 차별적인 제도로 인해 의료 접근성에 심각한 장벽을 겪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을 가질 수 없다.

- *이주아동의 건강보험 가입률 제고 및 보험료 부과 기준 차별 폐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8) 클러스터 8: 생활 수준 (Standard of living)

(I.24) 다차원적 아동·청소년 빈곤 및 주거 빈곤 문제

한국의 아동 빈곤은 단순한 소득 부족을 넘어, 열악하고 불안정한 주거, 교육 기회 부족, 건강 및 심리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다차원적 특성을 보인다. 특히 반지하, 옥탑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안전권, 건강권, 학습권이 심각하

게 침해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국가 단위의 통합적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 정책이 부재하다.

- *다차원빈곤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할 국가 단위 데이터 시스템 구축 계획이 있는가?*
-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열악한 거주환경 개선 및 아동 권리(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등) 보장을 위한 구체적 정책 목표와 실행 계획은 무엇인가?*

9) 클러스터 9: 아동의 권리와 환경(Children's rights and the environment)[168]

(I.25)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미비

현재 한국의 법체계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정보 유통금지 등 사후적 신고·삭제 조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25호가 강조하는 '아동권리 영향평가'나 영국·호주의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처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 예방적 의무를 부과하는 포괄적 법률이 없다. 현행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역할이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보호 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부재하여 아동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 *한국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 및 플랫폼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정부는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의 위험영향 평가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
- *아동·청소년 친화적 서비스 설계, 연령검증 시스템 등 '아동·청소년 보호 안전 설계'를 실정법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가?*

168) 이 보고서는 환경 클러스터에 생태·기후 및 디지털 환경을 포괄하였음. 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아직 변경된 클러스터의 세부 내용을 밝히기 전 연구자가 본 보고서의 취지에 맞게 추가한 부분임을 밝힘.

(I.26) 기후 위기로 인한 포괄적 권리 침해 및 참여권 미보장

기후 위기는 폭염, 집중호우 등 물리적 재난을 통해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발달권과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까지 박탈한다. 특히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아동, 장애아동, 이주 아동은 기후 재난에 더욱 취약하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나 언론, 각종 사회참여 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은 동등한 발언권을 가진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시혜적 대상이나 홍보용 이미지로만 동원된다. 국가 기후 위기 대응 계획에서 아동은 정책 결정의 주체가 아닌, 보호의 대상이나 '미래세대'라는 상징으로만 소비되며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 *현행 국가 기후 위기 대응 계획에 아동·청소년 세대의 장기적 삶의 조건(건강권, 주거권, 생활권)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조항이 있는가?*
- *아동·청소년이 기후 위기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가?*
- *기후 위기 대응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을 권리 보유자(subject of rights)로 인정하고, 보호와 안전망 강화뿐 아니라 권리 보장을 제도화할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

10) 클러스터 10: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I.27) 과도한 입시 경쟁을 유발하는 대입 상대평가제도

대입 상대평가제도는 아동·청소년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아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 수면 부족, 정신건강 악화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이다. 대한민국 고등학생은 50~80시간 학습 노동을 하고 있으며, 2023년 초중고생 자살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경쟁 교육의 폐해가 심각하다. 하지만 정부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경쟁적 교육 시스템 완화 권고에 역행하는 조치이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경쟁적 교육 시스템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

을 마련할 것인가?

- *대입 상대평가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청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I.28) 놀이, 휴식, 여가권의 미보장과 행복 격차

아동의 휴식, 여가 및 놀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 간 학업 시간 차이, 문화·체육·여가 인프라 접근성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행복 격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별 심야 교습 규제에도 차이가 있어 지역별 시간 사용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당수 청소년이 심야까지 학습에 내몰려 수면권과 여가권이 침해되고, 사교육 부담이 심화하고 있다.

- *현행 여가·놀이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지역별 기반 시설 현황은 어떠한가?*
- *한국 아동·청소년의 행복감 하락과 부정적 정서(우울·불안, 자살 생각 등) 증가 추세에 대해 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응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 *지역별로 다른 학원·과외 교습 시간 규제를 통일하기 위한 전국 단위 상한 규제 도입 계획이 있는가?*

11) 클러스터 11: 특별보호조치 (Special protection measures)

(I.29) 아동사법제도 운영의 문제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을 다루는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 아동 권리적 관점이 부재하다. 순환보직 체계로 운영되는 가정법원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형사책임연령 하향 법안은 계속 발의되고 있다. 소년사건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 보도 규제가 미비하며, 소년분류심사원(수용률 152.9%)과 소년원의 과밀수용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경찰·검찰 단계에서 비구금 방식의 다이버전(Diversion) 활용 근거가 부족하여 불필요한 사법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단지 '비행할 우려가 있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아동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우범소년 제도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반복적으

로 삭제를 권고한 대표적인 아동 인권침해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범소년 송치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성착취 피해 아동을 가해자가 아닌 '우범소년'으로 규정하여 사법 절차에 회부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 *아동사법제도의 관계종사자 대상 의무적 아동권리 교육훈련의 제도화 계획과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가?*
- *소년에 대한 수사단계부터 필수적 변호인·보조인 조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논의되고 있는가?*
- *우범소년 규정의 삭제 및 형사미성년 연령을 하향하지 않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무엇인가?*
- *지난 10년 간 우범소년의 송치 또는 통고한 기관(이나 사람)의 비율을 제시하고, 주된 우범의 사유에 대한 통계 및 우범소년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연구 결과물을 제시하라.*

(I.30)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적 사회보장 및 불안정한 체류권

정부가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미등록 이주 아동 체류자격 부여 조치는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부모에게 과도한 범칙금을 부과하여 실효성이 낮다. 2021년 4월부터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2025년 2월 기준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청소년의 수는 1,200명 남짓으로 20,000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의 수에 비해 매우 작다. 아직 다수의 아동이 여전히 불안정한 신분으로 남아있다.

- *대한민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조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한국 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장애가 있는 아동을 비롯해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주 아동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5.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가 제기하는 30개의 쟁점과 대한민국 정부에 던지는 질의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학술적, 정책적 측면에서 NGO가 제기한 쟁점들에 대한 시사점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과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기반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유관 법률인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에는 제한적으로만 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이로 인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실제 사법 절차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용이 되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법률 제정 노력은 지연되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으로 법적, 제도적 기반마저 후퇴되고 있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및 실질적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이행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며 관련 법률에서도 이와 발맞추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권리를 포괄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모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포용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NGO가 제기한 쟁점은 주로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 장애인, 성소수자(LGBTQ+), 학교 밖 아동·청소년, 빈곤 및 취약 아동·청소년 등의 미보장이었다. 역설적이게도 비차별원칙이 가장 필요한 취약한 아동·청소년에게 비차별원칙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가 정책에 의해 이들이 '비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취약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더 통합되어야 하고, 더 포용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모든 아동·청소년을 위한 권리보장은 상징을 넘어 현실이 되어야 한다.

셋째, 법제도와 현실의 이행 격차를 줄여야 한다.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아동참여권의 형식적 보장, 민법상 징계권 폐지 후에도 지속되는 체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낮은 신고율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동권리영향평가(child rights impact assessment, CRIA)와 같은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체계가 결합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특히 형식화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이행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도록 변화시켜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학술적인 배경에서 이와 같은 쟁점 목록 작성 과정을 시행하였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현장 전문가들과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쟁점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심의 전 NGO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작성한 대안 보고서(alternative report)를 취합할 예정이다. 우리보다 앞서 간소화된 절차로 심의를 받은 영국, 스위스 같은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심의 과정이 더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169] 곧 다가올 대한민국의 제7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사전쟁점목록(LOIPR) 작성 및 국가보고서 작성이 내실 있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169) 해외 사례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음.
- 스위스 사례: Child Rights Network Switzerland(2019). NGO-Input on the 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 (LOIPR).
- 영국 사례: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LOIPR(2020). England Civil Society Sub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아동보고서 사례: Kgomotso,Papo, Rorisang Machete, Kgahliso(2022). How to Prepare a Child-led Report for the 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 A case study from South Africa. Save the Children.

제7장 정책제언 및 결론

1. 개요 및 정책 도출과정
2. 주요 내용에 관한 시사점 및 정책방향 도출
3.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 도출
4. 결론: 이행을 위한 제언 및 과제 시행을 위한 총괄표

7 정책제언 및 결론[170], [171]

개요(Abstract)

이 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국내 이행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를 제시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11개 권리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제언을 정리하고,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를 중심으로 생활세계에서의 실천적 변화를 위한 제언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총 19개의 세부과제가 제안되었다. 각 과제는 단기/중기/장기 추진계획과 주관 부처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국가보고서 이행과 정책 피드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정부의 협약 이행 수준을 높이고,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권리 이행의 실효성 제고와 정책 피드백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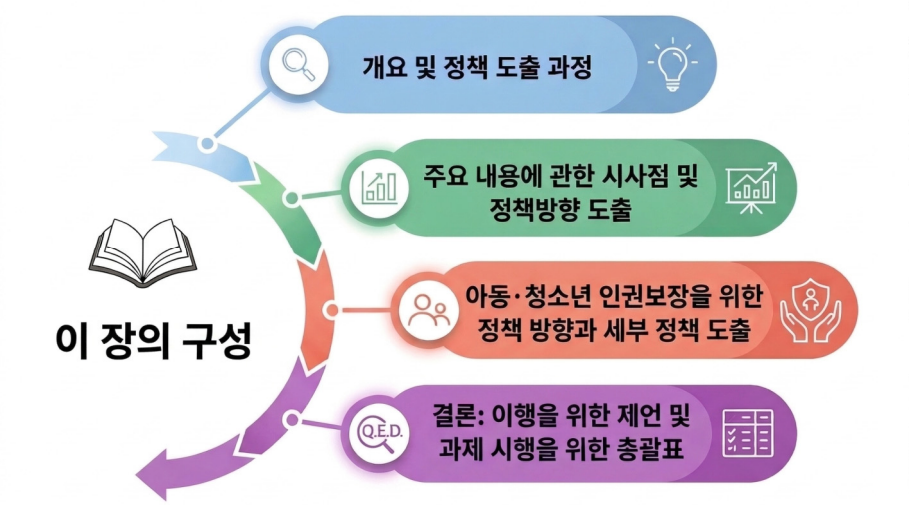
170) 이 챕터에서 제시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1996).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편.), (2006).「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보고서와 권고문Ⅰ」. (pp. 71-74).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2차 권고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편.), (2006).「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보고서와 권고문Ⅱ」. (pp. 95-105).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정책자료 2011-04) (pp. 467-489).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9).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정부 공식 번역본). 세종: 보건복지부.

171) 이 장은 공동연구진들이 정리한 요약과 시사점을 토대로 유민상 선임연구위원이 대표 작성하였음.

1. 개요 및 정책 도출과정

1) 이 장의 구성

이 장에서는 각 장에서 시행한 분석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여기서는 세부 내용을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정책화하기 위하여 몇 가지 단계를 설정하였다. 먼저,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후, 정책 방안에 대해 정리한다(1절). 둘째, 정책 제시를 위한 기본 틀을 구성하고, 이에 맞게 정책을 배열하고 개발한다(2절). 셋째, 세부 정책을 소개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3절). 넷째, 정책 시행을 위한 정보를 집약하고, 정책 이행을 위한 핵심 내용을 제시한다(4절). 이 장은 이와 같은 순서로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를 도식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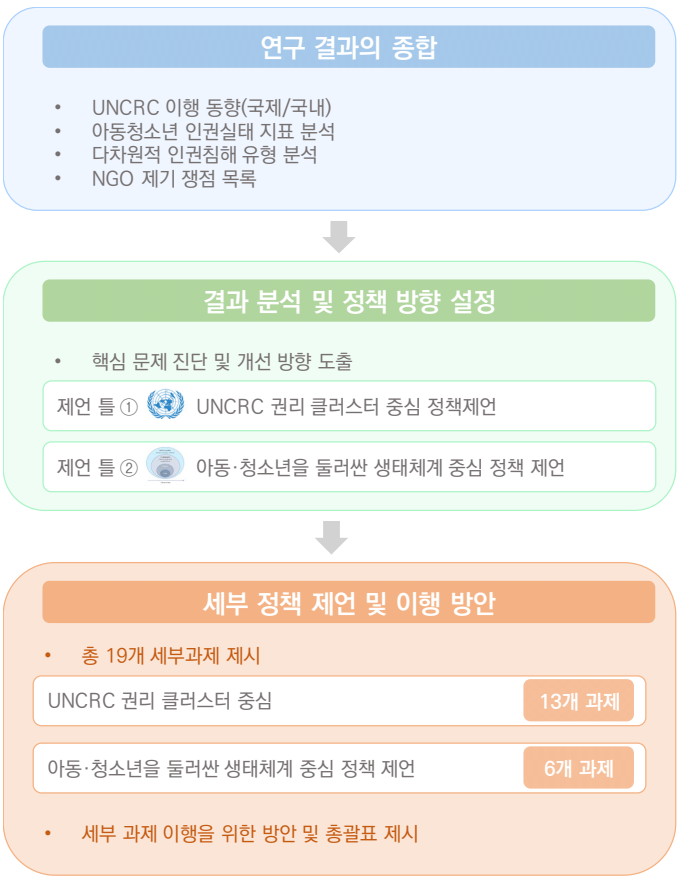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Ⅶ-1-1. 이 장의 구성

2) 제언 도출 과정

이 장에서는 제언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5개의 장에서 분석된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시사점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는 2개의 정책 분석틀에 맞추어 세부 정책을 나누고 19개 정책을 균형 있게 제시하였다. 셋째는 19개 정책을 각 정책마다 5개의 정보(제안 배경 및 필요성, 관련 근거, 세부 내용, 법 개정 등 특이사항, 관련부처 및 기관)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Ⅶ-1-2. 제언 도출 과정 흐름도

2. 주요 내용에 관한 시사점 및 정책방향 도출

이 절에서는 분석 내용과 정책제언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의 장들에서 분석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고, 시사점과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는 단일한 과제뿐만 아니라 여러 세부과제와도 연계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명료화할 수 있다. 각 챕터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Ⅶ-3 참고).

첫째, UNCRC 이행 동향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정기 심의 방식이 간소화된 보고 절차(SRP)로 변경되어, 보고 전 쟁점목록 작성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매우 중요해졌다. 클러스터가 11개로 확대되어 쟁점의 범위도 확대되었고, 정책의 공백이 있는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쟁점 도출이 심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일반논평 제27호 초안이 공개되어 아동의 정의 접근권과 사법적, 비사법적 구제 절차를 정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과 연결되는데 제7차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제3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Ⅶ-2-1.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한 챕터별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일부 결과)

둘째, **인권 측정 프레임워크 및 조사방법**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가이드라인의 클러스터 기준이 기존 9개에서 11개로 확대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개별 클러스터에 대한 지표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이 파악되었다. 예를 들어, 별도 클러스터로 분리된 장애 아동 클러스터, 신설된 아동권리와 환경 클러스터는 조금 더 공고한 지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새로운 조사가 신설되거나, 기존의 아동·청소년 대상 조사에서 해당 내용을 확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표로 보는 인권실태**에서는 11개 클러스터, 120여개 지표를 통해 현황을 살펴보았다. 여러 중요한 실태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어 자살생각이나 자해생각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여성청소년들에서 특히 위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 중고등학생의 문제라고 생각해왔던 우울과 외로움 등 부적 정서적 상태도 초등학생까지 저연령화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활 인프라는 지역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 고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며, 법정책적인 선언이나 지향과 달리 취약아동보호체계나 장애아동 지원체계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더딘 상황으로 법과 현실의 이행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넷째, **다차원적 인권침해 심층 연구**에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디지털 환경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매우 취약한 대상이 존재하며, 이들은 자살생각, 자해생각, 차별경험 차원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등에서도 높게 나타나는 취약층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하나의 취약성이 다른 취약성과 연결되는 중첩된 취약성(overlapping vulnerability)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러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별적 지원이 아닌 통합적 지원, 장기적인 사례관리 지원으로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사후적 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욕구 기반의 예방적 지원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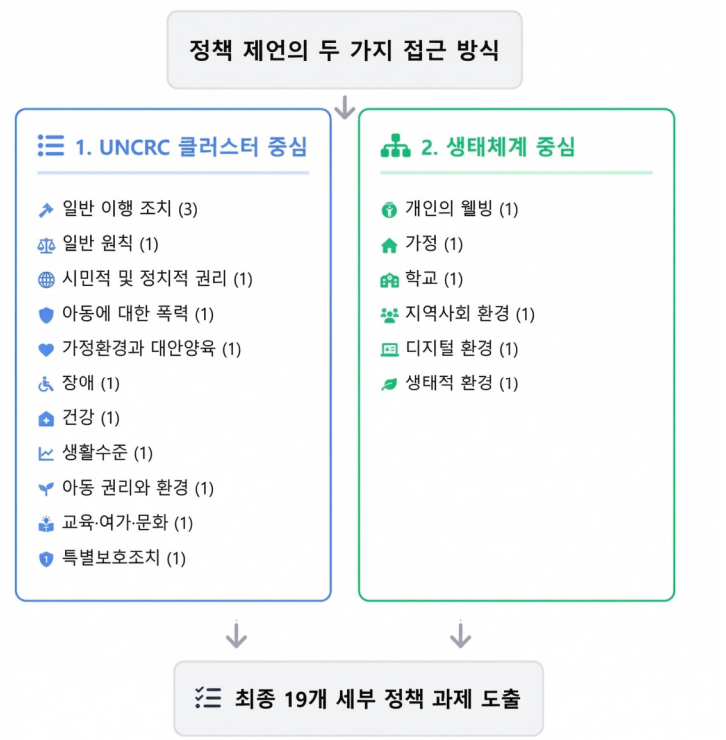
다섯째, **NGO 제기 쟁점 목록 연구**에서는 NGO들이 제기한 쟁점을 클러스터별로 나누어 총 30개의 쟁점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빈곤, 폭력, 소외, 배제, 다중위기 청소년에 대한 쟁점도 도출된 반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호, 기후변화와 권리, 성소수자의 건강, 이주민의 출생등록과 사회권 등 새로운 이슈들도 제안되었다. 전반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법률로 법정책적 근거가 공고히 되고, 법과 현실의 이행 격차를 모니터링하고 조율해 가며,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 보장 확대 등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절에서는 정책제안 프레임에 세부 정책을 제시하도록 한다.

3.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 정책 도출

1) 정책 제시의 두 가지 차원 (클러스터 중심과 생태체계 중심)

이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클러스터별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매우 체계적인 방법이지만 각 권리가 모자이크처럼 조각나 있어 현실의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유민상 외, 2023). 따라서 여기서는 클러스터 중심의 정책제언에 더하여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의 정책제언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Ⅷ-3-1. 정책제언의 두 가지 접근 방식

먼저 클러스터 중심의 정책제언은 UNCRC의 이행(implementation) 차원의 접근으로 국제 기준·법정책적 차원에서의 기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의 클러스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의 제언은 실천적 적용(practical application)과 관련이 있다. 이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 모형과 같이 아동·청소년이 실제 살아가는 환경(가정, 학교, 지역, 디지털, 생태)의 단위로 삶의 실제 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천적 프로그램 설계, 생활세계에서 체감되는 개선을 중심으로 한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내용이 실제 보편적인 아동·청소년의 삶과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관심이 있으며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책 제언 목록 (총 19개)

UNCRC 클러스터 중심 과제 국제 기준, 법제도 등 협약 이행	생태체계 중심 과제 현실에서의 실천적 적용
일반 이행 조치	**개인의 웰빙**
국가 아동예산 통합·투명화 시스템 구축 OPIC 비준 및 이행 로드맵 수립 법조인 대상 아동권리 전문 교육 체계화	사회정서학습(SEL) 의무 교육과정 도입
일반원칙	**가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실효성 강화	위기 임산부 및 영아기 통합돌봄 강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학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및 보호출산제 관리 강화	포용적 무장애 학교환경 조성
아동에 대한 폭력	**지역사회 환경**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 제도 도입	지역 간 놀이·여가 인프라 격차 해소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사회문화·디지털 환경**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탈시설화 로드맵 이행 및 주거권 강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 증진(D-CRIA 의무화)
장애 아동	**생태적 환경**
장애아동 개별화지원계획(IEP) 실효성 제고	교내 기후위기 대응 시민교육 강화
건강	
자살위기 아동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생활수준	
아동 다차원 빈곤지표 개발 및 국가 통계 반영	
아동 권리와 환경	
기후 거버넌스 내 아동·청소년 참여 제도화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학교와 지역사회 아동발달 관련 소음 민원 예외제도 도입	
특별보호조치	
회복적 사법체계 국가 차원 도입	

2) 세부 정책과제 도출

(1) 클러스터 중심 정책제언 과제 도출

다음은 클러스터 중심 정책제언 리스트이며, 도출 근거가 함께 표기되어 있다. 세부 정책과제 도출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Ⅷ-3-1.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정책제언

정책과제명	도출근거				
	정책 동향	지표 연구	NGO 쟁점	심층 연구	기타
영역 Ⅰ-1. 일반 이행 조치					
과제1. 국가 아동예산 통합·투명화 시스템 구축			●		
과제2. 제3선택의정서(OPIC) 비준 및 이행로드맵 수립	●				●
과제3. 법조인 대상 아동권리 전문교육 체계화			●		●
영역 Ⅰ-2. 일반원칙					
과제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실효성 강화		●	●	●	
영역 Ⅰ-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과제5.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및 보호출산제 관리 강화	●		●		
영역 Ⅰ-4. 아동에 대한 폭력					
과제6. 아동학대 예방적 개입을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 서비스' 도입			●		
영역 Ⅰ-5.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과제7.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 탈시설화 로드맵 이행 및 주거권 강화			●		
영역 Ⅰ-6. 장애 아동					
과제8. 장애아동 개별화지원계획(IEP) 실효성 제고		●	●		
영역 Ⅰ-7. 건강					
과제9. 자살위기 아동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	●	
영역 Ⅰ-8. 생활수준					
과제10. 아동 다차원 빈곤지표 개발 및 국가 통계 반영		●	●	●	
영역 Ⅰ-9. 아동 권리와 환경					
과제11. 기후 거버넌스 내 아동·청소년 참여 제도화	●		●		
영역 Ⅰ-10.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과제12. 학교와 지역사회 아동발달 관련 소음 민원 예외제도 도입		●			●
영역 Ⅰ-11. 특별보호조치					
과제13. 회복적 사법체계 국가 차원 도입			●		

① 일반 이행 조치

일반 이행 조치는 협약을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기반과 관련된 것으로 협약 제1조, 제4조, 42조, 44조 6항과 관련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예산과 관련하여 '아동 예산 통합 분석 및 공개 시스템 구축', '제3선택의정서(OPIC) 비준 및 국내 적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법조인에 대한 UNCRC 교육 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아동 예산 통합 분석 및 공개 시스템 구축'은 NGO 제안 과제이며, '제3선택의정서(OPIC) 비준 및 국내 적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은 정책동향(일반논평 27호 초안)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도출되었다. '법조인에 대한 UNCRC 교육 체계 마련'은 협약의 사법체계에서의 인용 관련하여 NGO 및 국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안된 것이다.

② 일반원칙

일반원칙은 협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생명·존중 발달에 대한 권리, 아동의 의견 존중을 의미하며, 협약 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와 관련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NGO의 의견과 차별에 대한 지표 결과, 다차원적 인권침해 유형에 관한 심층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모든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제안하였다.

③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는 신원, 국적, 사생활, 표현·종교·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으로 협약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와 관련이 있다. 이 클러스터에서는 국내 정책 동향과 NGO의 쟁점을 반영하여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모니터링 강화 및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특히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사회보장 등 여러 NGO에서 제기하였다.

④ 아동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은 학대, 방임, 체벌, 성착취, 유해한 관행 등 아동·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과 관련된 클러스터로 제19조, 제24조 3항, 제28조 2항, 제34조, 제35조, 37조 가, 제39조, 아동의 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SC)와 관련된다. 여기서는 아동학대 체계가 더 예방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NGO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예방적 개입을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 서비스' 도입을 제안하였다.

⑤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가정환경과 대안양육은 부모의 양육 책임을 지원하고, 아동 분리와 입양 절차, 시설 보호에 대한 대안 양육, 가족기반 돌봄 촉진 등을 다루며 협약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1항, 2항,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7조 4항 등 광범위한 조항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는 NGO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 탈시설화 로드맵 이행 및 주거권 강화'를 제안하였다. 사회복지영역에서 탈시설화는 거대한 흐름이며, 아동보호체계도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탈시설화와 청소년의 주거권을 키워드로 정책을 구성하였다.

⑥ 장애 아동

장애 아동은 장애 아동의 완전한 사회참여, 교육보건 접근성, 차별금지 등 포괄적 권리 보장을 평가하는 것으로 협약 제23조와 관련이 있다. 장애 분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별도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도 이를 비준하고 있으나 권리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는 두 협약의 이행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제에서는 지표결과에서 장애인 통합교육의 내실화와 포용교육으로의 전환, 그리고 NGO 쟁점에서의 장애아동 통합교육 개선의 의견을 토대로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개별화 교육 및 지원 계획(IEP) 실효성 제고'를 제안하였다.

⑦ 건강

건강 클러스터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보건 서비스 등 보편적인 건강권에 관한 것으로 협약 제6조 2항, 제24조, 제33조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는 '자살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체계적·포괄적 접근' 과제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지표 연구에서의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높은 자살생각과 자해생각 문제 등과 관련이 있다. 또한 심층연구에서도 다차원적인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대상이 정신건강에 취약하여 이에 대응하는 서비스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가 도출되었다.

⑧ 생활수준

생활수준은 아동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로 사회보장, 주거, 빈곤 등과 관련이 있으며 협약 제18조 3항, 제6조, 제27조 1~3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 연구는 '아동 다차원 빈곤 지표 개발 및 국가 통계 반영'을 제시하였는데, 지표연구에서 취약성은 결합되어 나타나고 심층 연구에서 취약성이 중첩되어 있는 대상의 위기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NGO 쟁점에서 제시된 내용을 본 연구의 제언으로 설정하였다.

⑨ 아동 권리와 환경

아동 권리와 환경은 새롭게 신설된 클러스터로 협약 일반논평 제26호와 관련되어 있다. 환경은 단일 영역이 아니라 다양한 권리와 연관되어 있어 협약 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및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등과 관련되어 있다. 이 연구는 '기후 정책 거버넌스에 아동·청소년 참여 제도화'를 과제로 제시하였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권이 중요해지는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청소년의 기후활동 참여가 상징으로만 소비되지 않게 해야한다는 NGO의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⑩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은 아동·청소년의 교육권과 교육의 목적, 그리고 놀이, 여가, 문화적 활동을 향유할 권리와 관련되어 있으며 협약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아동 발달 소음 민원 예외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는데, 지표 연구를 통해 지역의 놀이/여가 공간이 부족하고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지역의 소음 민원으로 학교체육대회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기사를 근거로 설정하였다(김송이, 김원진, 2025.5.20.).

⑪ 특별보호조치

특별보호조치는 난민, 이주아동, 소수민족 아동, 인신매매, 소년 사법, 무력분쟁 아동 보호 등 취약한 아동에 대한 권리를 모아 놓은 클러스터이다. 협약 제22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나, 다, 라, 제38조, 제39조, 제40조와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AC)와 관련이 있다. 이 클러스터에서는

소년 사법에 대한 NGO의 이슈 제기에 초점을 맞추어 '회복적 사법체계 국가 차원 도입'을 제시하였다.

(2)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 과제 도출

아래 표는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 리스트이며, 연구 과정에서의 도출 근거가 함께 표기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세부 정책과제 도출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Ⅶ-3-2.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

정책과제명	도출근거				
	정책 동향	지표 연구	NGO 쟁점	심층 연구	기타
영역 Ⅱ-1. 개인의 웰빙					
과제14. 사회정서학습(SEL) 의무 교육과정 도입		●		●	●
영역 Ⅱ-2. 가정					
과제15. 위기 임산부 및 영아기 통합돌봄 강화			●	●	
영역 Ⅱ-3. 학교					
과제16. 포용적 무장애 학교환경 조성		●	●		
영역 Ⅱ-4. 지역사회 환경					
과제17. 지역 간 놀이·여가 인프라 격차 해소		●			●
영역 Ⅱ-5. 사회문화·디지털 환경					
과제18.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 증진(D-CRIA 의무화)	●	●		●	
영역 Ⅱ-6. 생태적 환경					
과제19. 학교 내 기후위기 대응 시민교육 강화		●			

① 개인의 웰빙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의 핵심은 개인의 웰빙이며, 아동·청소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서학습(SEL) 의무 교육과정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는 지표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상황과 사회적 관계망이 악화되고 있고, 다차원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하는 취약계층에

게는 심리, 정서, 사회적 지원이 예방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근거하였다. 또한 교육부와의 연구정책실무협의를 통해 사회정서학습 확대 방향에 대해 논의한 근거로 설정하였다.

② 가정

가정은 아동·청소년과 가장 밀접한 체계이며, 가정 안에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한다. 가정 영역에서는 '위기 임산부 및 영아기 통합돌봄 강화'를 제안하였는데, 태아기에서부터 아동발달이 시작되므로 이 시기부터 예방적으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근거하였다. NGO의 제안과 심층연구 결과(취약성의 누적)를 근거로 설정되었다.

③ 학교

학교는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돌봄과 영양 등 기본적 욕구에 대응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장의 의미도 있다. 여기서는 '포용적 무장애 학교 환경 조성'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통합교육과 포용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의미가 있다. 또한 포용적 무장애 학교 환경은 비단 장애뿐만 아니라 취약하거나 소수자인 아동·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다. 지표보고서의 결과와 NGO의 제안을 근거로 설정하였다.

④ 지역사회 환경

지역사회는 아동·청소년이 좋은 사람들과 놀이, 여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지역 간 인프라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이 연구에서는 '지역 간 놀이·여가 인프라 격차 해소'를 제안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지역에 놀거나 휴식을 취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표연구 결과와 인구감소지역 등에서는 이러한 자원이 특히 더 부족하다는 결과에 근거하였다.

⑤ 사회문화·디지털 환경

디지털 환경은 아동·청소년에게 기회와 역량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직간접적인 위험과도 연결된 장(field)이다. 지표분석 결과 아동·청소년들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높이 우려하고 있으나 민간 인터넷, 게임 업체 등에 대한 신뢰는 높지

않아 개편이 필요하다. 이 과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 증진(D-CRIA 의무화)'을 제시하여 실효성 있게 아동·청소년들의 우려와 위험도를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NGO가 제기한 쟁점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⑥ 생태적 환경

마지막으로 생태적 환경은 아동·청소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관련 교육이 비교적 저학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육이 충분치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내 기후 위기 대응 시민교육 강화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클러스터 중심 제언과 생태체계 중심 제언의 과제 도출 근거와 세부 과제 리스트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부터는 직접적으로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관련 근거, 세부내용, 법 개정 등 특이사항, 관련부처 및 기관의 틀로 설명한다.

3) 정책영역별 세부 정책과제

Ⅰ 유엔아동권리협약 클러스터 중심 정책제언

여기서는 11개 클러스터의 13개 세부 과제에 대해 각각 살펴본다. 이 제언들은 국제적인 기준에서의 법정책적 개선과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Ⅶ-3-2. 클러스터 중심 제언 리스트

과제1 국가 아동예산 통합·투명화 시스템 구축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조는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도까지 활용할 의무를 규정함.

- 그러나 아동·청소년 예산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총체적인 투자 규모를 파악하거나, 정책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짐.

▢ 관련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조

○ 제5·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 세부내용

○ 예산 통합 분석 플랫폼 개발, 예산 분류체계 표준화, 데이터 통합 및 심층분석, 정보 공개 및 활용(아동·청소년 친화적 정보 공개)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국가재정법」 개정: 정부가 매년 아동 관련 예산을 통합 분석한 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

▢ 관련부처 및 기관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회예산정책처, 전국 지방자치단체

표 Ⅶ-3-3. 국가 아동예산 통합·투명화 시스템 구축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	기획재정부	신규

과제2 제3선택의정서(OPIC) 비준 및 이행 로드맵 수립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인 개인진정 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OPIC) 가입을 촉구함(CRC/C/KOR/CO/5-6).

> 50. 아동의 권리 실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비준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 대한민국 정부는 OPAC*과 OPSC**는 비준하였으나, OPIC 비준은 진행하지 않고 있음. OPIC 비준 촉구안은 국회에 계류 중임.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OPAC)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PSC)

○ OPIC 비준은 대한민국의 아동 인권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대한민국 정부는 OPIC 비준을 진행하고, 국내 사법 및 행정 시스템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비준 여부뿐만 아니라 국내 구제 절차 정비, 관할기관 지정, 아동친화적 절차 설계 등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이행 로드맵 수립이 필요함

▢ 관련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 개인 진정 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OPIC)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7호 초안*

* 아동의 정의에의 접근 및 효과적인 구제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Draft general comment No. 27 on children's rights to access to justice and effective remedies)

▢ 세부내용

○ OPIC 비준 추진
- 제3선택의정서를 비준하기 위한 국회 동의 절차 개시

○ 국내 이행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진정 지원체계 구축
- 국내 구제절차 실효성 강화
- 권고 이행 및 후속 조치 매커니즘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에 대한 국회 비준

○ 국내 이행 및 구제 절차 실효성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개정 (아동의 소송 능력, 절차적 권리 보장)

○ 아동 권리 옴부즈맨(Ombudsman)을 활용한 '아동의 눈높이'에서의 정책 이행점검

▢ 관련부처 및 기관

○ 외교부(비준 절차 추진), 법무부(국내 법제 이행)

○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등

표 Ⅶ-3-4. 제3선택의정서(OPIC) 비준 및 이행 로드맵 수립 구축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외교부, 법무부	신규

과제3 법조인 대상 아동권리 전문 교육 체계화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은「대한민국헌법」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판례에서는 직접적 원용 사례가 드문 편임.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2조는 비준 당사국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성인과 아동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법관에 대한 교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제공 중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원문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검색 서비스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제공되지 않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협약에 대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CRC/C/KOR/CO/5-6)

○ 우리나라는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정규·의무 교육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며, 유럽에서는 Council of Europe HELP(Human Rights Education for Legal Professionals) 프로그램이나, EJTN(유럽사법훈련네트워크) 연수 등을 통해 판사·검사 대상 아동친화 사법·아동권리 교육이 제도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2조

▢ 세부내용

○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보편적 교육 확대

-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식 증진

○ 사법연수원 및 법무연수원에서의 신임 법관, 검사 교육 진행
- 신임 법관·검사 대상 필수과목으로 아동권리 도입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아동인권 관련 교육 개설 및 법조윤리교육 연계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아동인권 관련 교육 과목 개설
- 변호사 연수(대한변호사협회) 시 아동인권 관련 교육 진행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법원조직법」 및 「검찰청법」 개정
○ 「변호사법」 개정

▢ 관련부처 및 기관

○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무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표 Ⅶ-3-5. 법조인 대상 아동권리 전문 교육 체계화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법무부	신규

과제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실효성 강화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 협약 제2조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아동에게 협약상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 한국 사회는 아동·청소년과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실효적인 법적 장치가 부재함.

○ 아동·청소년의 차별 경험은 계속 줄어드는 중이나, 차별을 경험한 이후 상담이나 도움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음

표 Ⅶ-3-6. 차별받은 후 상담 또는 도움 받은 사람(2025년)

(단위 : %(명))

구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친구	선·후배	부모님(보호자)	형제·자매	선생님	전문 상담가	경찰	기타	전체(N)
전체		45.9	23.0	0.9	22.7	2.2	3.8	0.4	0.2	0.9	100.0(2,211)
성별	남학생	47.7	22.7	0.8	20.9	2.1	4.4	0.3	0.3	0.7	100.0(1,042)
	여학생	44.2	23.3	0.9	24.3	2.4	3.2	0.5	0.1	1.0	100.0(1,168)
학교급	초등학교	35.6	20.2	1.8	34.0	2.1	4.8	0.2	0.2	1.3	100.0(704)
	중학교	46.5	27.0	0.6	18.6	2.1	4.2	0.3	0.2	0.5	100.0(817)
	고등학교	55.6	21.2	0.4	16.0	2.6	2.3	0.8	0.2	0.9	100.0(690)

*p<.05, **p<.01, ***p<.001
*출처: 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 관련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11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CRC/C/KOR/CO/5-6)

▢ 세부내용

○ 차별금지 사유의 포괄성, 구체화, 광범위성, 실제적 구제 조치 등
○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한 연구 수행
- 차별금지법 이후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는 예방 중심적 접근을 이루기 위한 사전 검토 및 점진적 이행 방안 마련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관련부처 및 기관

○ 법무부, 대한민국 국회

표 Ⅷ-3-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실효성 강화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		법무부, 국회	신규

과제5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및 보호출산제 관리 강화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이 국가로부터 존재를 인정받고 의료, 교육, 복지 등 모든 권리에 접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원과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수천명에 달하고, 이 중 상당수가 사망하거나 유기된 사실이 발견되었음.

표 Ⅶ-3-8.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결과

구분	지자체				확인완료		수사의뢰			(지자체 → 경찰)
	소계	생존 확인(771)			사망	의료 기관 오류	소계	경찰 수사(1,095, 7.14. 기준)		
		출생 신고 완료	출생 신고 예정	해외 출생 신고				수사 중	수사 종결	
									생존확인	사망*
2,123	1,028 (48.4%)	704	46	21	222	35	1,095 (51.6%)	814	254	27

*출처: 보건복지부(2023.7.18.).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1,025명 생존 확인, 249명 사망, 814명 수사 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음. 보호출산제는 협약 제8조를 침해하고 아동 유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따라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기는 하나 출생통보제 역시 미등록 이주민이 출산한 아동을 등록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남아 있음. 부모의 지위와 상관없이 아동을 등록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함.

▢ 관련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8조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CRC/C/KOR/CO/5-6)

▢ 세부내용

○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관련 모니터링 강화
○ 보편적 출생등록제(Universal Birth Registration) 도입을 위한 법제화 추진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보편적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 관련부처 및 기관

○ 법무부(보편적 출생등록제)
○ 보건복지부(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아동권리보장원

표 Ⅶ-3-9.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및 보호출산제 관리 강화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법무부 보건복지부	신규

과제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 제도 도입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지난 수년간 급증하다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아동학대는 재학대율도 높은 편이어서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가 필요함.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주로 사후적 대응, 처벌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측면이 있어 예방적 체계로 전환이 필요함.

표 Ⅶ-3-10. 아동학대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2024년)

(단위 : 건, 명(%))

구분		건수(비율)	명수(비율)
성별	남아	12,394(50.6)	9,633(51.0)
	여아	12,098(49.4)	9,266(49.0)
연령별	3세 이하	2,199(9.0)	1,443(7.6)
	4세 ~ 6세	2,925(11.9)	2,039(10.8)
	7세 ~ 9세	4,638(18.9)	3,432(18.2)
	10세 ~ 12세	5,721(23.4)	4,523(23.9)
	13세 ~ 15세	6,077(24.8)	5,005(26.5)
	16세 ~ 17세	2,487(10.2)	2,153(11.4)
계		24,492(100.0)	18,899(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25).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pp.10~11의 내용을 재구성함.

* 주: 아동학대사례 24,492건에는 동일한 아동이 두 번 이상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이거나, 혹은 동일한 아동이 두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해아동 건수와 명수는 일치하지 않음.

○ 보편적 가정방문 서비스(home visitation)는 모든 출산 가정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확인하고, 양육정보를 제공하며, 정서적 지지를 통해 위기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예방적 복지 제도임.

(예) 핀란드의 노이볼라(Neuvola) 참고(Shimomura, Morita, Hirai, 2017)

▢ 관련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8조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CRC/C/KOR/CO/5-6)
○「모자보건법」,「아동복지법」

▢ 세부내용

○ 영아기 집중 관리 가정방문 서비스를 개발하여 드림스타트 등과 연계
  - 대상: 모든 출생아 및 그 가정. 고위험 임산부는 임산 단계에서부터 관리
  - 내용: 임신기부터 아동이 2세가 될 때까지 총 10회 이내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 및 영유아 건강 점검, 양육 교육, 부모 정서 지원,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의 활동을 진행
○ 전문인력 양성: 가정방문 전담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자격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임.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모자보건법」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

▢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아동권리보장원

표 Ⅷ-3-1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 제도 도입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보건복지부	신규

과제7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탈시설화 로드맵 이행 및 주거권 강화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0조는 모든 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아동양육시설과 같은 대규모 생활시설을 중심적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Ⅶ-3-12.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2018~2024년)

(단위 :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3,918	4,047	4,120	3,437	2,289	2,054	1,978
시설보호[1)2)]	2,449 (62.5)	2,739 (67.7)	2,727 (66.2)	2,183 (63.5)	1,294 (56.5)	1,067 (51.9)	1,126 (56.9)
가정위탁	937 (23.9)	1,003 (24.8)	1,068 (25.9)	1,028 (29.9)	802 (35.0)	783 (38.1)	707 (35.7)
입양[3)]	174 (4.4)	104 (2.6)	88 (2.1)	75 (2.2)	52 (2.3)	162 (7.9)	123 (6.2)
입양전 위탁[4)]	357 (9.1)	196 (4.84)	237 (5.8)	151 (4.4)	114 (5.0)	-	-
소년소녀가정[5)]	1 (0.0)	5 (0.1)	0 (-)	0 (-)	-	-	-
가정형 보호	-	-	-	-	27 (1.2)	42 (2.0)	22 (1.1)

* 출처: 보건복지부(2025e) 2024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연도별).
* 원출처: 보건복지부「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주 1) 시설보호는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포함됨.
2) 2022년부터 기존 통계표의 시설입소-일시보호에 해당하는 항목을 별도 일시보호로 구분 및 일시보호-가정보호 항목 신설
3)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민법상의 입양(사인간의 입양)은 미포함
4) 2023년부터 입양대상 아동으로 입양+입양전위탁 아동 통합
5) 2022년부터 소년소녀가정 항목 삭제

○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장애인 분야를 시작으로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로의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아동 분야의 탈시설화는 아직 더디게 진행되

고 있음. 국가 아동보호체계를 시설 중심에서 가정형 보호,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봉주, 박정민, 김선숙, 2022).

▢ 관련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0조
○ 유엔 대안양육지침(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 「아동복지법」
○ 보건복지부 탈시설 로드맵(2021)

▢ 세부내용

○ 아동 분야 탈시설 로드맵 수립 및 이행
○ 보호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주거권 강화 (공공주거 자격기준 추가)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복지법」 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보호대상 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 및 실현), 국토교통부(주거 지원)

표 Ⅶ-3-13.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탈시설화 로드맵 이행 및 주거권 강화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보건복지부	기존

과제8 장애 아동 개별화지원계획(IEP) 실효성 제고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장애 아동에 대한 개별화 교육 및 지원 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은 장애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필요에 맞추어 교육 목표, 내용, 방법, 관련 서비스를 명시한 법적 문서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장치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는 개별화 교육 작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 ·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개별화교육계획(IEP)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개별화교육계획이 실질적 성과와 학생 성장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형식적 절차를 넘어 학생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부모, 교사, 전문가가 협력하는 실질적인 계획 수립 및 실행 모델이 구축되어야 함.

▢ 관련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3조, 제28조, 제29조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CRC/C/KOR/CO/5-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세부내용

○ 개별화교육계획(IEP) 표준 양식 작성 가이드라인 고도화
- 개인 목표 설정 지침, 평가 지표 포함

○ 교사의 전문성 및 행정지원 강화
- 개별화교육계획(IEP) 작성 및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의무화
-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IEP) 작성 시스템 개발 및 도입 (예) 나이스(NEIS) 시스템과의 통합
- 교사의 개별화교육계획(IEP) 수립에 대한 보상 및 인센티브 제공

○ 개별화교육계획(IEP) 실행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교육청 내 교사, 부모, 전문가로 구성된 개별화교육계획(IEP)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 점검 및 컨설팅 제공

○ 부모의 절차적 권리 보장
- 부모 혹은 법정대리인이 개별화교육계획(IEP) 안에 의견을 제출하고, 이의신청,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권리를 명문화하는 방안 검토(분쟁 조정 등)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개정
- 표준 개별화교육계획(IEP) 양식, 학부모의 절차적 권리 등 명시

▢ 관련부처 및 기관

○ 교육부, 시도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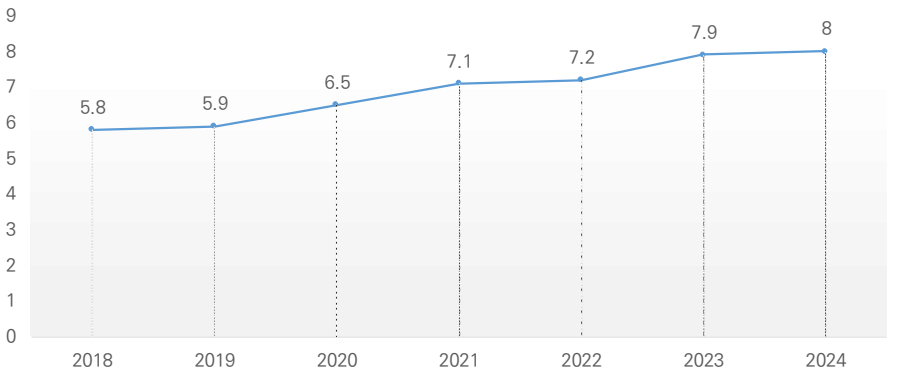
표 Ⅶ-3-14. 장애 아동 개별화지원계획(IEP) 실효성 제고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교육부, 시도교육청	기존

과제9 자살위기 아동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국가데이터처(前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0~19세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8명으로 지난 10년 간 증가 추세에 있음.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아동·청소년 3명 중 1명은 지난 1년 간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출처: 통계청(2020.9.22). 보도자료: 2019년 사망원인통계 p.18. 통계청(2021.9.28.). 보도자료: 2020년 사망원인통계 p.18. 통계청 (2022.9.27.). 보도자료: 2021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p.18. 통계청 (2023.9.21.). 보도자료: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p.16. 통계청 (2024.10.5.). 보도자료: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p.16., 통계청 (2025.9.27.). 보도자료: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p.17.

* 주: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그림 Ⅶ-3-3. 인구 10만 명당 10~19세 자살률(2018~2024년)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였으나, 아직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관련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 2항, 제24조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CRC/C/KOR/CO/5-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세부내용

○ 학교 기반 조기 발견 및 개입 시스템 강화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검사 결과에 따른 서비스 연계를 강화. 서비스 연계 결과에 따른 치료가 학생에게 낙인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
○ 학교-지역사회-보건 연계 위기대응 체계 구축
- 학교-지역사회-병원 연계 신속 지원체계(Fast-Track) 시스템 검토
○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청소년 건강권 증진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 유예 조항 및 면책조항 추가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고려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기발견, 치료, 법정대리인 동의 유예, 교육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지원체계 명시

▢ 관련부처 및 기관

○ 교육부(학교 시스템), 보건복지부(정신건강 서비스)

표 Ⅶ-3-15. 자살위기 아동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교육부, 복지부	신규

과제10 아동 다차원 빈곤지표 개발 및 국가 통계 반영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소득 빈곤을 넘어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과 다차원적 빈곤 차원에서 접근해봐야 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으로는 다차원적인 물질적 결핍 척도를 통해 빈곤과 결핍 수준 측정

▢ 관련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7조

▢ 세부내용

○ 물질적 결핍 혹은 다차원적 빈곤지표를 개별하여 적용, 국가 통계에 반영
- Unicef의 물질적 결핍 척도(material deprivation scale), HBSC의 물질적 풍요도 척도(Family Affluence Scale)는 소득을 직접 묻지 않고 물질적 생활수준과 경제적 자원 접근도를 파악하여 경제적 웰빙을 측정함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추진 전략으로 추가

▢ 관련부처 및 기관

○ 국가데이터처(국가승인통계), 보건복지부(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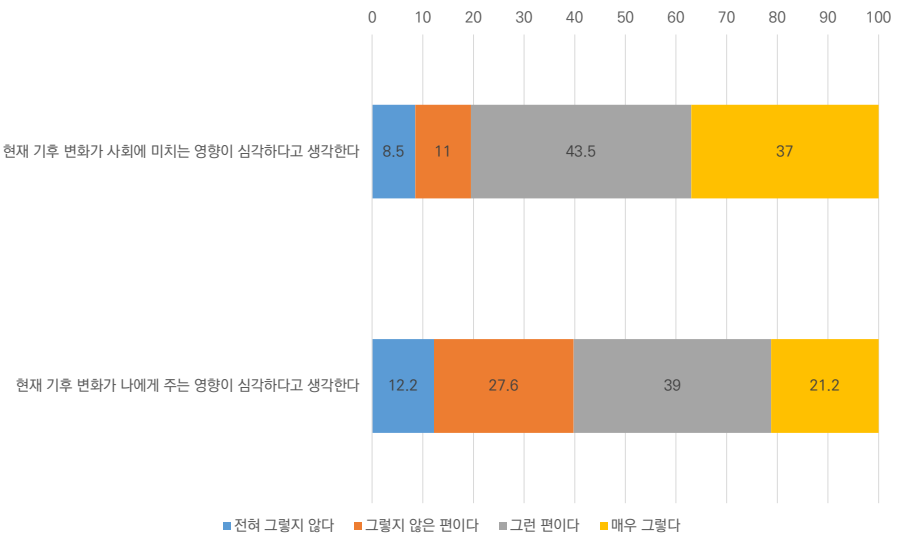
표 Ⅶ-3-16. 아동 다차원 빈곤지표 개발 및 국가 통계 반영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국가데이터처, 복지부	신규

과제11 기후 거버넌스 내 아동·청소년 참여 제도화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 기후 위기가 아동·청소년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청소년들도 기후의 영향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음.



* 출처: 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그림 Ⅷ-3-4.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관심 정도(2025년)

○ 따라서 아동·청소년들이 위기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함.

▢ 관련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3조, 제29조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6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세부내용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아동·청소년 대표 의무화
○ 국가 청소년 기후 총회의 법제화 및 정례화
○ 기후 관련 정책 및 법안에 대한 미래세대 영향평가 도입
○ 지역 단위 기후 정책 거버넌스에 아동·청소년 참여 확대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개정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 관련부처 및 기관

○ 교육부, 환경부, 시도 교육청

표 Ⅷ-3-17. 기후 거버넌스 내 아동·청소년 참여 제도화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교육부, 환경부	신규

과제12 학교와 지역사회 아동발달 관련 소음 민원 예외제도 도입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아동·청소년 활동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서 학교 체육대회 개최를 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민원으로 인한 제한은 아동의 발달권, 놀이권, 문화권 등을 침해할 수 있음(김송이, 김원진, 2025.5.20.).

○ 일본에서도 놀이터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으로 공원이 폐쇄되자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함(KBS, 2022.12.15.).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 기준을 변경함("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 따라서 아동·청소년 활동에서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법정책적 장치 마련 필요

▢ 관련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 놀이, 여가, 문화생활에 관한 권리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17호(2013)
-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7호(2013):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제31조)

▢ 세부내용

○ 학교 및 지역사회 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정상적 수준의 소음에 대해 일정 범위 내 민원 적용을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등 '아동·청소년 소음 민원 예외조항'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의 놀이, 여가, 문화권 보장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아동 발달 소음'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원 처리 기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개정

*과거 일본의 「도쿄도 환경확보조례(東京都環境確保条例)」는 어린이들의 소음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현재는 제외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 처리 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민원 방지
- (예) 보육시간, 일과시간

○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원과 같이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 활동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

▢ 관련부처 및 기관

○ 환경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표 Ⅶ-3-18. 학교와 지역사회 아동발달 관련 소음 민원 예외제도 도입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환경부, 지자체	신규

과제13 회복적 사법체계 국가 차원 도입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회복적 사법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흉포화 현상에 대해 엄벌주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표 Ⅷ-3-19. 청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2015~2023년)

(단위 : 명(%))

구분	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2015	70,971 (100.0)	-	7 (0.0)	14,387 (20.3)	17,624 (24.8)	18,231 (25.7)	20,722 (29.2)
2016	75,916 (100.0)	-	7,530 (9.9)	13,789 (18.1)	17,589 (23.2)	17,607 (23.2)	19,401 (25.6)
2017	72,666 (100.0)	-	7,703 (10.6)	12,376 (17.0)	16,391 (22.6)	17,358 (23.9)	18,838 (25.9)
2018	66,142 (100.0)	-	8,321 (12.6)	11,595 (17.5)	13,306 (20.1)	15,513 (23.5)	17,407 (26.3)
2019	66,247 (100.0)	-	9,053 (13.7)	11,730 (17.7)	13,548 (20.5)	14,338 (21.6)	17,578 (26.5)
2020	64,480 (100.0)	-	9,124 (14.1)	11,956 (18.5)	13,578 (21.1)	13,725 (21.3)	16,097 (25.0)
2021	54,017 (100.0)	-	8,091 (15.0)	10,301 (19.1)	11,594 (21.5)	11,211 (20.8)	12,820 (23.7)
2022	61,026 (100.0)	-	11,069 (18.1)	12,411 (20.3)	13,003 (21.3)	11,815 (19.4)	12,728 (20.9)
2023	66,758 (100.0)	-	13,462 (20.2)	15,059 (22.6)	13,882 (20.8)	12,648 (18.9)	11,707 (17.5)

* 출처: 여성가족부(2025). 2024 청소년백서. p.463.
* 원자료: 대검찰청(2015~2024). 범죄분석.

* 주: 2008년 6월 개정 「소년법」시행으로 소년범죄 연령기준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됨. 2018년 이후 14세 미만은 통계에서 제외.

▢ 관련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0조

▢ 세부내용

○ 소년사법 절차 전반에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도입 의무화
-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회부 원칙

○ 독립적인 회복적 사법 지원 기구 설립
- 전문적 훈련을 받은 조정 전문가를 양성하고 각 지역에 지원센터 설치

○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회복적 사법 연계
- 처벌 위주의 조치 결정에 앞서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정 시행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소년법」 개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회복적 조정 절차 우선 도입 근거 마련

▢ 관련부처 및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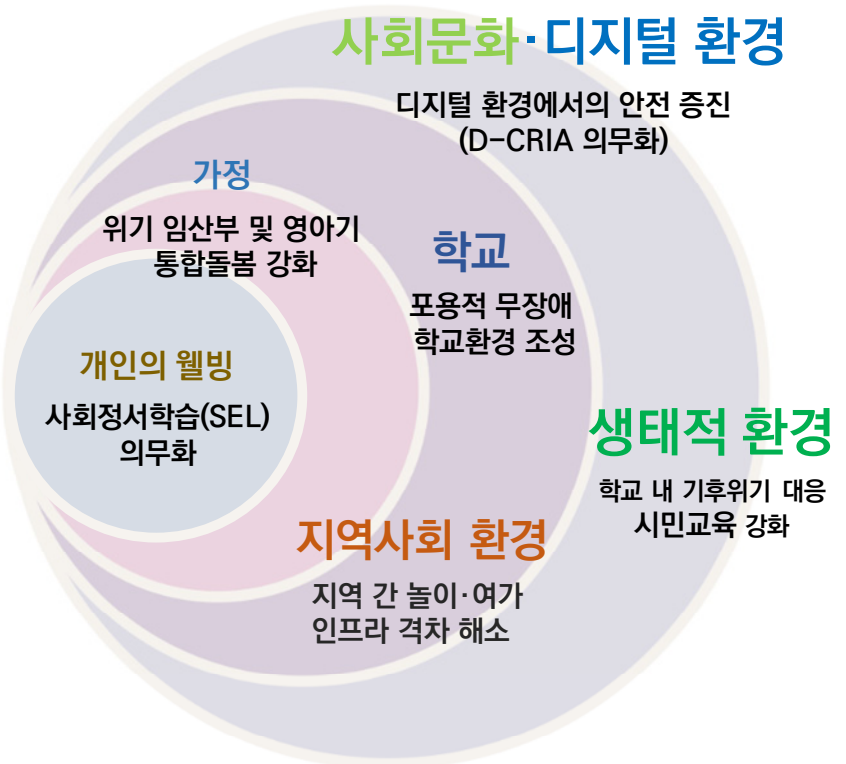
○ 법무부, 경찰청

표 Ⅶ-3-20. 회복적 사법체계 국가 차원 도입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법무부, 경찰청	신규

II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중심 정책제언

여기서는 6개 영역의 6개 세부 과제에 대해 각각 살펴본다. 6개 영역은 아동·청소년 개인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환경, 디지털 환경, 생태적 환경 등이다. 이 제언들은 실제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생활하는 공간과 환경에서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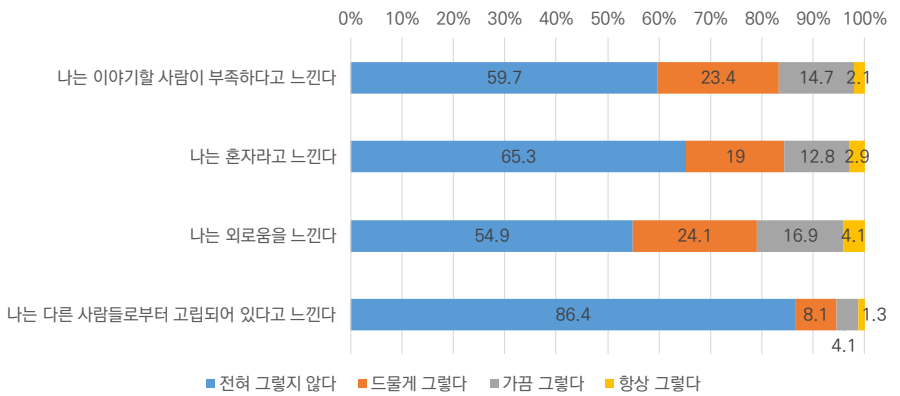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Ⅷ-3-5. 생태체계 중심 제언 리스트

과제14 사회정서학습(SEL) 의무 교육과정 도입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이 5명 중 1명 꼴로 나타났으며, 문제가 있을 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청소년의 비율도 10명 중 1명 꼴로 나타남. 심리정서적 어려움은 심화되는데, 지지받을 수 있는 체계는 약화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임.



* 출처: 저자 작성 (2025「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도식화하였음)

그림 Ⅷ-3-6. 외로움 4개 문항 결과(2025년)

○ 사회정서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은 사회정서역량(SEC)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회정서역량은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관계 기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져 있음. 사회정서역량은 아동·청소년이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잠재력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함. 이를 증진하기 위해 사회정서학습을 증진하여 아동·청소년들의 핵심 역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국내외에서도 사회정서학습(SEL)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공교육에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음(CASEL 참고)[172]

▢ 관련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 제29조

○ OECD Education 2030

▢ 세부내용

○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

- 사회정서학습의 범교과 혹은 별도 교과로 명시하여 초중고 도입

○ 표준 교육 프로그램 개별 및 보급

- 아동·청소년 발달 단계별 사회정서학습(SEL) 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교원 양성 및 연수 체계 개선

- 교대, 사범대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
- 현직 교사 의무 연수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교육과정 편성 기준에 사회정서학습(SEL) 명기

172) CASEL(The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홈페이지 참고(https://casel.org/)

○「교육기본법」 개정

- 학생의 전인 발달 조항에 사회정서학습(SEL) 근거 추가

▢ 관련부처 및 기관

○ 교육부, 시·도교육청

표 Ⅶ-3-21. 사회정서학습(SEL) 의무 교육과정 도입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교육부	신규

과제15 위기 임산부 및 영아기 통합돌봄 강화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임신, 출산, 영유아기 양육은 부모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가정 내 갈등은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위기를 몰고 올 수 있음.

○ 영유아기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이 기초가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이므로 양질의 양육환경이 매우 중요함. 영유아에 대한 조기 개입과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영유아 가정에 대한 발달 지원 체계화 및 통합화 필요함

○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가구에 지원하는 부모수당, 아동수당은 현금 중심의 정책이지만, 복합적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을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이 연구의 심층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기 불이익이 누적될 경우 생애적인 문제에 노출될 수 있음. 영유아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관련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8조, 제24조, 제27조

▢ 세부내용

○ 고위험 임산부 및 영아 양육 가정 조기 발굴

○ 고위험 임산부 및 영아 양육 가정 집중 사례관리 체계 구축

○ 찾아가는 산후조리, 돌봄 서비스의 확대

○ 생애 초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보편화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모자보건법」 개정

- 통합사례관리와 방문간호 국가 책임 명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 보편적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법제화

▢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표 Ⅷ-3-22. 위기 임산부 및 영아기 통합돌봄 강화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복지부, 성평등부	신규

과제16 포용적 무장애 학교환경 조성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장애학생의 학습권과 발달권은 아직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편임.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학교의 물리적 환경 역시 포용적으로 변화되어야 함.

○ 장애 학생의 접근성을 고려한 포용적 학교를 위해서는 무장애(Barrier-Free, BF) 설계를 기본으로 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을 학교 전반에 적용해야 함.



그림 Ⅷ-3-7. 무장애 디자인을 적용한 학교 사례(서울서진학교)

*출처: 1) 한은화(2021.9.21.). "이건 기적"…엄마들의 무릎호소 '서진학교' 놀라운 반전.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6221 에서 2025년 10월 8일 인출
2) 김윤경(2021.9.9.). 특수학교 '서울서진학교'가 서울시 건축상 대상을 수상한 이유. 내 손안에 서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2641 에서 2025년 10월 8일 인출.

▢ 관련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9조, 제31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세부내용

○ 점진적인 '포용적 학교 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
○ 학교 공간 설계 시 학생 참여 프로세스 정립
○ 학교 내 무장애 놀이터 등 차별 없는 디자인 확대
○ 포용적 환경 개선을 위한 아동·청소년 의견 수렴 절차 확대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

▢ 관련부처 및 기관

○ 교육부, 시도교육청

표 Ⅶ-3-23. 포용적 무장애 학교환경 조성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교육부, 시도교육청	신규

과제17 지역 간 놀이·여가 인프라 격차 해소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여가, 휴식, 문화생활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농산어촌 및 인수감소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공공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임.
- 이러한 격차는 삶의 질 격차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안전한 이동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물리적 고립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발견됨.

○ 지역 간 놀이·여가 인프라 격차 해소는 성장기회의 차이를 나타내므로, 해당 지역에 집중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패키지 제도를 도입하여 격차를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예. 성평등가족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등)

○ 이러한 방향은 아동·청소년 사무의 지방 이양으로 지자체 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고령화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보다 노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경향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31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세부내용

○ 공공기관 내 청소년 자유공간 확충 및 아동·청소년 도서관 설치에 관한 지역 격차 해소
-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의 '우주로 1216', 세종시립도서관 '이도' 등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 확대 및 청소년 공간 복합화 추진

- 아동·청소년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 시행

○ 찾아가는 문화, 여가, 놀이 프로그램 전국 확대

-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문화, 여가, 놀이 프로그램 제공

○ 안전한 통학 및 여가생활을 위한 대중교통 바우처 지급

- 무료 버스, 천원 택시 등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 제도 시행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관련부처 및 기관

○ 행정안전부(인구감소지역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표 Ⅶ-3-24. 지역 간 놀이·여가 인프라 격차 해소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행정안전부	신규

과제18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 증진(D-CRIA 의무화)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디지털 환경이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음.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협약 일반논평 제25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CRC/C/GC/25)

○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위기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으나, 사전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아동·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평가하는 제도는 없음. 따라서 '디지털 아동권리영향평가(Digital Child Rights Impact Assessment, D-CRIA)'를 의무화하여 기술 발전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함.

▢ 관련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4조 등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5호(2021)
○ 「아동복지법」

▢ 세부내용

○ [거버넌스 1안]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보장 위원회 설치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조정하고, 산하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

○ [거버넌스 2안] 국무총리소속 디지털 아동·청소년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아동·청소년 전반에 걸친 정책을 총괄
- 아동·청소년 디지털 안전, 역량, 리터러시 등 정책 총괄
- 합동 신고 핫라인을 구축하여 신고, 상담, 구제 단일 창구 구축

○ 디지털 아동권리영향평가(D-CRIA) 의무화
- 디지털 서비스, 기술, 플랫폼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식별, 평가,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절차를 도입(CRC/C/GC/25)
- 사전적 영향평가 체계를 법으로 구축하여 시행 검토.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DSA)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디지털 리터러시 및 시민성 교육 강화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복지법 개정
- 디지털 아동권리영향평가(D-CRIA) 근거 마련

▢ 관련부처 및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보건복지부(아동), 성평등가족부(청소년), 아동권리보장원 등

표 Ⅶ-3-25.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 증진(D-CRIA 의무화) 과제의 추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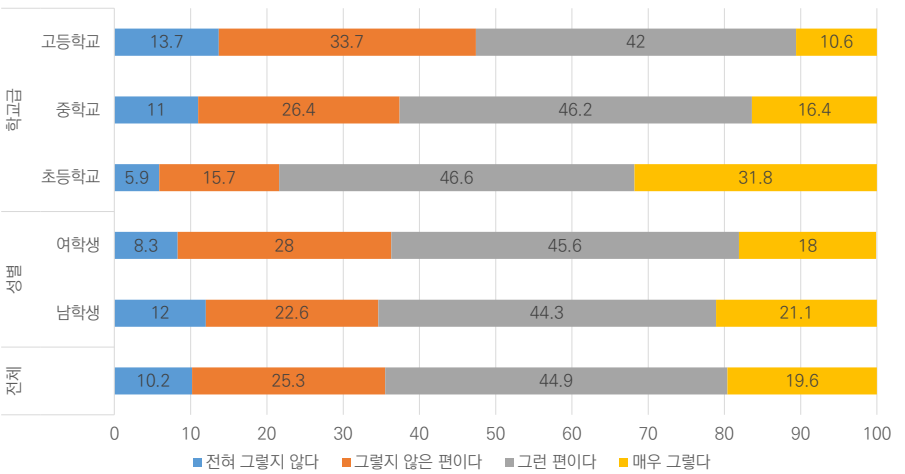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과기부, 방통위	신규

과제19 학교 내 기후위기 대응 시민교육 강화

▢ 제안배경 및 필요성

○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성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더욱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 교육은 환경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역량과 자신의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출처: 2025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그림 Ⅷ-3-8.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 결과

▢ 관련 근거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3조, 제29조 등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세부내용

○ 기후위기 및 환경 교육의 질적 확대
○ 지역사회 연계 생태 및 환경교육 모델 확대
- 학교 교육이 교과서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환경 속에서 NGO, 연구기관, 친환경 기업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

▢ 법 개정 등 특이사항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관련부처 및 기관

○ 교육부, 환경부, 시도 교육청

표 Ⅷ-3-26. 학교 내 기후위기 대응 시민교육 강화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 부처	신규 여부
단기('25-'26)	중기('27-'30)	장기('31-'36)		
○			교육부	기존

4. 결론: 이행을 위한 제언 및 과제 시행을 위한 총괄표

본 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이행 현황을 종합 분석하고, 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제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시행이다. 이것이 실제 시행되려면 각 주체가 이에 대해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며, 실제 정책과 시행 계획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실제 정책화의 근거가 되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이행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아쉬움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법률 제정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모두 포괄하고, 주요한 원칙과 법률을 담을 수 있을 만큼 넓은 범위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는 한 부처 특정 과나 팀에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 따라서 이행을 위해서는 대통령실 산하나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구조로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현재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보다 더 포괄적이며, 독립적인 주체가 실제 정책 조율 기능을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이행을 위해서는 간소화된 보고서 심의 절차(SRP)와 연계된 상시적 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정책 피드백 구조를 구축하여 법제도와 이행 간 격차가 나타나지 않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 시민사회, 아동 당사자가 참여하는 통합적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된다면 가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하여 더 포괄적이고 촘촘한 조사와 증거 기반의 정책 설계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즉, 이행 점검과 환류가 연계된 상시적 정책 환류 체계(policy feedback loop) 구축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제안된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각 과제의 추진 일정과 담당 부처를 제시하고, 신규 여부를 종합하여 기재하였다. 이는 향후 정책 집행 및 이행 점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이 이루어지고 실현되길 기대한다.

표 Ⅷ-3-27. 클러스터 및 생태체계 별 세부 정책과제 총괄표

	정책과제명	추진 일정			관련 부처	신규 여부
		단기('26-'27)	중기('28-'31)	장기('32-'37)		
클러스터 중심	**영역 Ⅰ-1. 일반 이행 조치**					
	과제1. 국가 아동예산 통합·투명화 시스템 구축		○		기획재정부	신규
	과제2. OPIC 비준 및 이행 로드맵 수립	○			외교부, 법무부	신규
	과제3. 법조인 대상 아동권리 전문 교육 체계화	○			법무부	신규
	영역 Ⅰ-2. 일반원칙					
	과제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실효성 강화	○	○		법무부, 국회	신규
	영역 Ⅰ-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과제5.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및 보호출산제 관리 강화		○		법무부, 복지부	신규
	영역 Ⅰ-4. 아동에 대한 폭력					
	과제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 제도 도입	○			보건복지부	신규
	영역 Ⅰ-5.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과제7.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탈시설화 로드맵 이행 및 주거권 강화			○	복지부, 국토부	신규
	영역 Ⅰ-6. 장애 아동					
	과제8. 장애아동 개별화지원계획(IEP) 실효성 제고	○			보건복지부	기존
	영역 Ⅰ-7. 건강					
	과제9. 자살위기 아동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교육부, 복지부	신규
	영역 Ⅰ-8. 생활수준					
	과제10. 아동 다차원 빈곤지표 개발 및 국가 통계 반영	○			국가데이터처, 복지부	신규
	영역 Ⅰ-9. 아동 권리와 환경					
	과제11. 기후 거버넌스 내 아동·청소년 참여 제도화	○			교육부, 환경부	신규
	영역 Ⅰ-10.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과제 12. 학교와 지역사회 아동발달 관련 소음 민원 예외제도 도입		○		환경부, 지자체	신규
	영역 Ⅰ-11. 특별보호조치					
	과제13. 회복적 사법체계 국가 차원 도입			○	법무부, 경찰청	신규
생태체계 중심	**영역 Ⅱ-1. 개인의 웰빙**					
	과제14. 사회정서학습(SEL) 의무 교육과정 도입	○			교육부	신규
	영역 Ⅱ-2. 가정					
	과제15. 위기 임산부 및 영아기 통합돌봄 강화		○		복지부, 성평등부	신규
	영역 Ⅱ-3. 학교					
	과제16. 포용적 무장애 학교환경 조성	○			교육부, 시·교육청	신규
	영역 Ⅱ-4. 지역사회 환경					
	과제17. 지역 간 놀이·여가 인프라 격차 해소	○			행정안전부	신규
	영역 Ⅱ-5. 디지털 환경					
	과제18.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전 증진(D-CRIA 의무화)	○			과기부, 방통위	신규
	영역 Ⅱ-6. 생태적 환경					
	과제19. 학교 내 기후위기 대응 시민교육 강화	○			교육부	기존

참고문헌

참고문헌

강현철 (2025). **202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표본설계보고서**. 내부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2021 의료급여통계**.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 **2022 의료급여통계**.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 **2023 의료급여통계**. 강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남신문 (2025.9.28.). 도내 초중고 상담실 '위클래스' 설치율, 전국 하위권 65.9% 그쳐, 세 번째로 낮아. 경남신문 웹사이트 https://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471501에서 2025년 10월 11일 인출.

경찰청 (2020). **2020 경찰범죄통계**. 서울: 경찰청.

경찰청 (2021). **2021 경찰범죄통계**. 서울: 경찰청.

경찰청 (2022). **2022 경찰범죄통계**. 서울: 경찰청.

경찰청 (2024). **2023 경찰청범죄통계**. 서울: 경찰청.

경찰청 (2024). **2024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경찰청 (2025). **2024 경찰청범죄통계**.서울: 경찰청.

고용노동부 (2025.4). 2024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https://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764에서 2025년 8월 12일 인출.

고용노동부(2022.5). 2021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고용노동부(2023.5). 2022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고용노동부(2024.4). 2023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

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a).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b).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a). **2021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b). **202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a). **202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b).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a). **2023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b).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2024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부처합동 (2025. 5. 28.).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에서 2025년 9월 19일 인출.
교육부 (2021. 2. 16.).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교육부 공식 블로그 https://if-blog.tistory.com/11780에서 2025년 10월 1일 인출.
교육부 (2021. 8. 23.).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안)(2022-2024). 교육부 공식 블로그 https://if-blog.tistory.com/12464에서 2025년 10월 1일 인출.
교육부 (2022.2).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3. 6. 20.).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교육부 공식 블로그 https://if-blog.tistory.com/14269에서 2025년 10월 1일 인출.
교육부 (2024a). **202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4b). **행복한교육 2024년 겨울호. 다문화 학생 19만 명 넘어, 역대 최고기록**.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5160&nttId=39211에서 2025년 8월 9일 인출.
교육부 (2024c). 2024년 북한배경학생 통계 현황('24.4. 기준).
교육부 (2025. 9. 25.).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 함께학교 웹사이트 https://www.togetherschool.go.kr/playGround/policyNotification/detailView?pstId=82790에서 2025년 10월 1일 인출.
교육부 (2025.4.30.). 보도자료: 2024년 학생 건강검사 주요 결과.
교육부 (2025.8). **2025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https://www.kedi.re.kr/khome/main/announce/selectBroadAnnounceForm.do?selectTp=0&board_sq_no=3&article_sq_no=36108에서 2025년 9월 29일 인출.
교육부 (2025a). **2024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5b). **202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교육부, 질병관리청 (2025). **제20차(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세종: 교육부, 질병관리청.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3). 2022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3&publSeq=2&menuSeq=3894&itemCode=02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4a). **2024 간추린 교육통계**.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4b). 2024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https://kess.kedi.re.kr/publ/view?survSeq=2024&menuSeq=3894&publSeq=

2&itemCode=02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4c). **2024 교육통계연보(유초중등통계)**. 연도별 졸업 후 상황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5년 8월 7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4d).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학교유형별 설립별 졸업 후 현황 https://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24&menuSeq=5869&publSeq=83&menuCd=102821&itemCode=02&menuId=2_2_1&language=en에서 2025년 8월 7일 인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4e). **한국교육통계DB (2024년 4월 기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1a). **2021 간추린 교육통계**.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2a). **2022 간추린 교육통계.**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3b). **2023 간추린 교육통계.**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연구자료 ORM 2024-55).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4)**. 세종: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교육통계서비스 (2025). **2024 교육통계 주요지표 포켓북. 다문화 학생수**. https://kess.kedi.re.kr/publ/publFile/pdfjs?survSeq=2024&menuSeq=3648&publSeq=59&menuCd=102649&itemCode=02&menuId=0_9&language=에서 2025년 8월 8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20. 5. 6.). 인권위,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격 부여제도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웹사이트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5380&menuLevel=3&menuNo=91에서 2025년 10월 1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21).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2021년 개정판.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433&bbsId=1106&nttSn=2342&cataGori=&tabName=｣에서 2025년 2월 5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21. 7. 28.). ‘‘‘미등록이주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보완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웹사이트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7069&menuid=001004002001에

서 2025년 10월 1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22. 3. 3.).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웹사이트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7933&searchCategory=&page=3&searchType=total&searchWord=%EB%82%98%EC%9D%B4&menuLevel=3&menuNo=91에서 2025년 9월 19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 (2024). **2024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5). **202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25. 3. 18.). 미등록의 책임 없는 이주아동의 구제대책 지속되어야. 국가인권위원회 웹사이트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11073&searchCategory=&page=1&searchType=total&searchWord=%EC%99%B8%EA%B5%AD%EC%9D%B8&menuLevel=3&menuNo=91에서 2025년 10월 1일 인출.
권영실 (2025). 이주배경아동 체류권, 제도적 공백과 입법 과제. **이주배경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기획재정부 (2019-2020). **나라살림예산**. 세종: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21-2024). **나라살림 예산개요**. 세종: 기획재정부.
김상철. (2017). 법원의 프로보노 활동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17), 1-713.
김송이, 김원진 (2025.5.20.). “아이들 운동회 하루도 시끄럽다는 주민들…”하루만 정신줄 놓고 놀게 해주세요“. 경향신문 온라인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00600011에서 2025년 10월 23일 인출.
김영지, 유설희,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 (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보고 21-R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최홍일, 유성렬, 이은주 (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보고 22-일반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진애 국회의원 (2020.10.19.). 보도자료: 미성년자 ·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 구속률 급감.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kspace406&logNo=222119760258&parentCategoryNo=&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

Posts=false&from=postList 에서 2020년 11월 12일 인출.
대검찰청 (2024). **2024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 (2021.8.26.).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 (2022.9.29.).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 (2023.9.21.).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 (2024.10.17.).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대검찰청 형사4과 내부자료 (2025.10.1.).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구속률 참고자료.
류정희, 전진아, 이상정, 이주연, 정익중, 유민상 (2018).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 아동기 학대·폭력의 중복적 경험과 정책적 대응 (연구보고서 2018-49)**.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리서치 앤 리서치 (2025a). **2025년 NYPI 횡단조사 착수보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자료.
리서치 앤 리서치 (2025b). **2025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원 지침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자료.
리서치 앤 리서치 (2025c). **2025년 NYPI 횡단조사 중간보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자료.
리서치 앤 리서치 (2025d). **2025년 NYPI 횡단조사 결과보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18년도(2017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19). **2019년도(2018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년도('19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20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년('21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3년('22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4.12.19.). **202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CurrentPage=1&pType=02&pTab=01&pSeq=1950&pDataCD=0417000000&pSearchType=01&pSearchWord=%EC%A0%84%EA%B5%AD+%EB%AC%B8%ED%99%94%EA%B8%B0%EB%B0%98%EC%8B%9C%EC%84%A4에서 2025년 8월 8일 인출.

문화체육관광부 (2024a). **2024 국민여가활동조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4b). **2024년('23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2025. 8. 1.). 8월 1일부터 대중문화예술 분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본격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https://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List.jsp에서 2025년 9월 19일 인출.

법무부 (2020. 4. 19.). 법무부,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 웹사이트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02/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TQlMkY1NDY2OTQlMkZhcnRjbFZpZXcuZG8lM0Y%3D에서 2025년 10월 1일 인출.

법무부 (2022. 1. 20.). 법무부,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대폭 확대. 법무부 웹사이트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02/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TQlMkY1NTU2OTclMkZhcnRjbFZpZXcuZG8lM0Y%3D에서 2025년 10월 1일 인출.

법무부 (2025). **2025 교정통계연보**. 경기: 법무부.

법무부 (2025. 3. 20.). 법무부,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 발표. 법무부 웹사이트 https://www.immigration.go.kr/im

migration/1502/subview.do;jsessionid=T50fJVpv-yzOgkRnvi0CI1TiIW0Cz7Pb2Od6Qrce.wizard-20-bw2kd?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TQlMkY1OTMxOTklMkZhcnRjbFZpZXcuZG8lM0Y%3D에서 2025년 9월 19일 인출.

법무부(2020~2024).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경기: 법무부.

법무연수원 (2020~2025). **2019~2024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법원행정처 (2025). **2025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2010~2024).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국내·외 입양현황(2013~202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 o?orgId=117&tblId=DT_11770N001&conn_path=I2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보건복지부 (2016~2025). 가정위탁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현황-국내·외 입양현황(2015~202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 o?orgId=117&tblId=DT_11770N001&conn_path=I2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0~2022).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2019~202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 11770_N005&conn_path=I2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2).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3a).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3b).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2023년 12월말 기준)**.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4a). **2023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4b). **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4c). **2024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II(공동생활가정) (2023.12.31.현재)**.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4d). **2024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생활시설 4종 및 이용시설 2종 학대쉼터) (2023. 12.31.기준)**.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4e).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일반회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4f).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특별회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4g). 공공전문진료센터 현황.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107010000&bid=0043&act=view&list_no=1481817&tag=&cg_code=&list_depth=1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5. 6. 17.).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서 기탁.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에서 2025년 9월 19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5. 7. 17.). '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위한 공적 입양체계 개편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cg_code=에서 2025년 9월 19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5a). **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5b). **2025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2차 공모 및 선정계획**.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5c).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23.12.31기준).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107010000&bid=0040&act=view&list_no=1484371&tag=&cg_code=&list_depth=1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보건복지부 (2025d).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5e).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연도별).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mw.go.kr/board.es?mid=a10412000000&bid=0020&tag=&act=view&list_no=1482557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a). **2024 입양실무매뉴얼**.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b).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상황 분석연구**.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5). **2025 입양실무매뉴얼**. 서울: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2022).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보고**. 서울: 중앙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서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4). **2023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서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회보장위원회 (2024).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3**. 세종: 사회보장위원회.
서정아, 장여옥 (2024).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 (2022). 돌봄행복플러스(2편). 통계로 보는 다함께 돌봄센터.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아동권리보장원 (2023). 2023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만족도 조사 결과.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아동권리보장원 (2024). 2024년 제21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전국대회 결의문.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89&cntntsId=1483에서 2025년 7월 30일 인출.
아동권리보장원 (2025a).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현황(2025년 8월 기준). https://www.dadol.or.kr/board/center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아동권리보장원 (2025b). 아동정책영향평가 지원 사업안내.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397&cntntsId=1326에서 2025년 10월 2일 인출.
여성가족부 (2018).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0).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2a). **2021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2b).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2c).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3). **2022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3.9). 2022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 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 p.4.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704399에서 2024년 7월 22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4.10). **2023년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등 지원실적 보고**. p.4.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704422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4a). **2023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4b). **2024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4c). **2024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4d).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5.3.5.). 2024년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2024.12.31.기준). https://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에서 2025년 8월 7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5a). **2024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5b).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5c).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2.05.25.). 2022 청소년 통계. http://www.mogef.go.kr/ 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8572에서 2022년 9월 1일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3.05.30.). 2023 청소년 통계. p.3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307에서 2023년 8월 23일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05.29.). 2024 청소년 통계.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3059#pressRelease에서 2024년 7월 12일 인출.
여유진, 최준영 (2024). **2024 빈곤통계연보**.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마이뉴스 (2025.9.10.).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된 미성년 이주아동, 얼마나 되나 살펴보니".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4225에서 2025년 10월 15일 인출.
유민상, 서고운, 신동훈, 이지연 (202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이경상, 서고운, 유설희 (2024).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연구보고24-일반01-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이경상, 서고운, 유설희, 유성렬, 장민영, 이수정, 조양진 (2024).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연구보고24-일반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이경상, 유성렬, 이수정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연구보고 23-일반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봉주, 박정민, 김선숙 (2022).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추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 (2020.7).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조선일보 (2024.8.6.). “의사 떠나자 지방 소아 병원 무너져… 응급실 가려면 2시간”.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4/08/06/TOKBINX3EVBJZH6BAEQ367QZW4에서 2024년 10월 22일 인출.

조선일보 (2025. 4. 21.). 수업 들으러 택시 타고 옆 학교로… 준비 안된 고교학점제. 조선일보 웹사이트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5/04/21/D5OEDJFZJVBXXOFXK66BZOY2G4/에서 2025년 10월 1일 인출.

중앙사회서비스원 (2025).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 서울: 중앙사회서비스원.

중앙응급의료센터 (2025). 달빛 어린이병원 웹사이트. https://www.e-gen.or.kr/moonlight/main.do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지표누리 (2025a).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jsessionid=SK2IaQ-NXVXOR60rbo4CwPL-N8pvj0NFXh2sCRsl.node11?idx_cd=2751에서 2025년 8월 8일 인출.

지표누리 (2025b). 다문화 학생 비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lasCd=10&idxCd=F0084에서 2025년 8월 8일 인출.

지표누리 (2025c). 보호소년 · 위탁소년 현황(2011~2024). https://www.index.go.kr/

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에서 2025년 8월 9일 인출.
지표누리 (2025d). 성매매피해자 지원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92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질병관리청 (2022a). 2020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 청주: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2022b). 2021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 청주: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2023). 2022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 청주: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2024). 2023 국민건강통계(엑셀버전). 청주: 질병관리청.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24a). 2024년 북한배경학생 통계 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2024년 4월 기준). p.4. https://www.hub4u.or.kr/usr/portal/board/146/commonBbsDetail.do?p_pageno=1&p_listscale=10&p_bbs_id=146&p_srch_type=p_srch_pst_title_cntnt&p_pst_id=8827&p_srch_text=에서 2025년 8월 9일 인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24b). 북한배경학생 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2024년 4월 기준). https://www.hub4u.or.kr/webmdl/sub4uStudentStatus/menuHtmlDetail.do에서 2025년 8월 9일 인출.
통계청 (2016, 2018, 2020, 2022, 2024). 2016-2024 사회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133R&conn_path=I2에서 2025년 8월 14일 인출
통계청 (2023.9.21.). 보도자료: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통계청 (2025.3.13). 보도자료: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45&list_no=435485&act=view&mainXml=Y에서 2025년 8월 6일 인출.
통계청 (2025.7.24.). 보도자료: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https://www.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0&tag=&act=view&list_no=437676&ref_bid=에서 2025년 8월 7일 인출.
통계청 KOSIS (2018~2023).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4년 10월 5일 인출.
통계청 KOSIS (2019-2024).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중 0세~17세 인구수의 합. https:/

/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outLink=Y&entrType=#SelectStatsBoxDiv에서 2024년 8월 14일 인출.

통계청 KOSIS (2024). 정신건강 관련 기관 설치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920023_A001&conn_path=I2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통계청 KOSIS (2025a). 경제활동인구조사, 성/연령별 실업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3D%26tblId%3DDT_1DA7102S%26orgId%3D101%26에서 2025년 8월 12일 인출.

통계청 KOSIS (2025b). 지난 1년동안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무시당한 경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I2%26tblId%3DDT_43701N_194%26orgId%3D437%26에서 2025년 8월 9일 인출.

통계청 KOSIS (2025c). 특수보육어린이집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2&tblId=DT_15407_NN009&conn_path=I3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통일부 (2022~2025). **2022~2025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통일부 (2025.3). 북한이탈주민정책(2025.3월 기준). 연령대별 입국현황.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에서 2025년 8월 8일 인출.

한겨레 (2025. 6. 2.). “수능 범위 아닌 선택과목 누가 듣겠나”…고교학점제 시행 100일. 한겨레 웹사이트 https://www.hani.co.kr/arti/PRINT/1200738.html에서 2025년 10월 1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2023.12.19.). KEDI분석 브리프. 2023년 27호. 2023 교육기본통계로 살펴본 한국 교육 현황.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KediBriefForm.do?selectTp=0&board_sq_no=41&article_sq_no=35449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25). 연도별 다문화 학생수. https://kess.kedi.re.kr/kessTheme/zipyo?survSeq=0000&survCd=3397&uppCd1=030201&menuId

=m_02_03_01&itemCode=03에서 2025년 8월 8일 인출.
한국성폭력상담소 (2025.3). 2024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https://www.sisters.or.kr/consult/stat/7465에서 2025년 8월 12일 인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9-2024).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에서 2025년 10월 2일 인출.
행정안전부 (2024).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 중 0세~17세 인구수의 합(https://jumin.mois.go.kr/# 에서 2025년 10월 8일 인출.
행정안전부 (2024.10).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설명자료(2023년 11월 1일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ebs9UdYP0MQKf1Fj7ud1xvgv.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113261#none에서 2025년 8월 8일 인출.
행정안전부 (2025). 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KBS (2022.12.15.). 일본, 아이들 소음 민원 지속적 제기해 결국 공원 폐쇄.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626720에서 2025년 10월 23일 인출.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hild Rights Connect (2024).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NEW – Dialogue Structure. https://crcreporting.childrightsconnect.org/wp-content/uploads/2024/06/CRC-new-dialogue-structure-EN.pdf 에서 2025년 6월 16일 인출.
Collins, P. H. (2015). Intersectionality's definitional dilemmas. Annual Review of Sociology, 41(1), 1-20.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23).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ept Note: General Comment on Children's Rights to Access to Justice and Effective Remedies. https://defenceforchildren.org/wp-content/uploads/2024/04/2023-01-31-gc27-concept-note.pdf 에서 2025년 5월 23

일 인출.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Draft of General Comment No. 27 on Children's Right to Access to Justice and to an Effective Remedy. https://view.officeapps.live.com/op/view.aspx?src=https%3A%2F%2Fwww.ohchr.org%2Fsites%2Fdefault%2Ffiles%2Fdocuments%2Fhrbodies%2Fcrc%2Fcfi-gc27%2Fcrc-gc27-public-consultation.docx&wdOrigin=BROWSELINK.에서 2025년 9월 1일 인출.
Crenshaw, K. (1991).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Review, 43(6), 1241-1299.
Dannefer, D. (2003). Cumulative advantage/disadvantage and the life course: Cross-fertilizing age and social science theor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8(6), S327-S337.
Ferraro, K. F., & Shippee, T. P. (2009). Aging and cumulative inequality: How does inequality get under the skin?. The Gerontologist, 49(3), 333-343.
Galanter, M. (2010). Access to justice in a world of expanding social capability. Fordham Urb. LJ, 37, 115.
Hankivsky, O., & Christoffersen, A. (2008). Intersectionality and the determinants of health: A Canadian perspective. Critical Public Health, 18(3), 271-283.
Sage-Jacobson, S. (2015). Access to justice for older people in Australia. Law Context: A Socio-Legal J., 33, 142.
Shimomura, M., Morita, Y., & Hirai, Y. (2017). Comparative research of childcare systems between Finnish Neuvola Service Design with Japanese services. Proceedings of the IASDR, 1883-1894.
Stiglitz, J. E., Sen, A., & Fitoussi, J-P.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Paris: CMEPSP.

[참고사이트]

사법정보공개포털. 종합법률정보.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에서 2025년 10월 2일 인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https://www.dadol.or.kr/board/center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아동권리보장원. 알림마당. 유엔아동권리협약 게시판.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List.do?mi=1433&bbsId=1106｣에서 2025년 2월 5일 인출.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국가재정.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index에서 2025년 10월 2일 인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홈페이지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rc/reporting-guidelines에서 2025년 2월 13일 인출.

유엔 조약기구 데이터베이스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Countries.aspx 에서 2025년 10월 1일 인출.

OHCHR 홈페이지 https://www.ohchr.org/en/documents/general-comments-and-recommendations/draft-general-comment-no-27-childrens-rights-access에서 2025년 2월 9일 인출.

Wee 웹사이트. https://www.wee.go.kr/home/cms/cmsCont.do?cntnts_sn=22에서 2024년 7월 16일 인출.

부 록

1. 202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1. 202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1) 초등학생용

승인번호 제 402001 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조사학교 ID (면접원이 작성합니다)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2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초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학교나 선생님이 알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 참여로 인하여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설문지 작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답례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유민상 선임연구위원, 이경상 선임연구위원 (044-415-2194, msyoo@nypi.re.kr)
수행기관	Research & Research	※ 담당자: 민예슬 선임연구원 (02-3484-3077) ※ 문의전화: 02-3484-3087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가족구성, 부모의 학력, 출생 연도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
  - 보유 및 이용 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성별

-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 남자 ☐ 여자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아래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	②	③	④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14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나요?**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24시간)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 14-1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15번 문항으로

14-1 **최근 1년 동안의 가출 경험은 총 몇 회 정도입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20-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2	2순위	5

① 학원, 과외
②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③ 게임(인터넷게임, 휴대전화게임 포함)
④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⑤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⑥ 드라마, 영화 보기, 음악 듣기 등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Ⅰ 내 삶에 관한 질문들

1 현재 얼마나 행복하나요?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 2번 문항으로

1-1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매우 불만족 ←					중간					→ 매우 만족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전체적인 본인의 인생과 관련된 아래의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0=전혀 찬성하지 않음									매우 찬성=10
1)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나는 내 인생이 좋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나는 내 인생에 대해 행복감을 느낀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I 아동·청소년의 참여·활동

4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보호자)은 평소 내가 편안히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5 다음은 학교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생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나 가정형편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생이 잘못한 일로 벌(징계)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6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란, 아동정책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시청, 교육청 등에서 운영하는 자치기구를 말합니다**(예: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아동·청소년의회, 청소년구정참여단, 교육청의 학생참여단 등).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7 우리 사회는 아동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듣고 아동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8 학교나 사회에서 아동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u>가장 큰 이유</u>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u>하나만</u> 선택해주세요.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⑤ 아동을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Ⅲ 아동·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환경

9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이나 무시하거나 욕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부모님 (보호자) 으로부터	1) 신체적 벌 (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①	②	③	④	⑤
	2) 정서적인 공격 (모욕적인 말, 욕설 등)	①	②	③	④	⑤
학교 선생님 으로부터	3) 신체적 벌 (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①	②	③	④	⑤
	4) 정서적인 공격 (모욕적인 말, 욕설 등)	①	②	③	④	⑤

10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맞아 본 경험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강제적인 심부름	①	②	③	④	⑤

11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온라인 게임 등)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12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이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불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본인은 우리 가족의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자주 걱정을 하나요?**

①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② 가끔 걱정한다
③ 자주 걱정한다 ④ 항상 걱정한다

14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24시간)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15번 문항으로

14-1 최근 1년 동안의 가출 경험은 총 몇 회 정도입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14-2 최근 1년 동안의 가출 경험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가출을 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하루 ② 2~3일 ③ 4~7일
④ 8~14일 ⑤ 15~29일 ⑥ 한 달 이상

14-3 최근 1년 동안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갈등(불화, 간섭 등) 때문에
③ 부모님(보호자)의 폭력, 학대, 방임 때문에
④ 학교에서의 갈등이나 폭력 때문에
⑤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⑥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4-4 최근 1년 동안 가출 당시 지낸 곳은 어디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친·인척집
② 가출 전부터 알던 친구, 선·후배집
③ 가출 후 알게 된 친구, 선·후배집
④ 고시원, 모텔, 원룸 등
⑤ 24시간 상점(PC방, 찜질방, 코인노래방 등)
⑥ 노숙(거리, 남의 집 옥상, 건물 안 계단 등)
⑦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⑧ 아동복지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4-5 최근 1년 동안 가출 당시 다음과 같은 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가출 당시) 이용 경험이…	있다	없다
1) 청소년쉼터	①	②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②
3) 청소년전화 1388	①	②
4) 청소년수련관	①	②
5) 위(Wee)클래스 또는 위(Wee)센터	①	②
6)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①	②

Ⅳ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 및 보호

15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16 각 항목을 잘 읽고 우리 동네 상황에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동네를 걸어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에는 즐겁게 놀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많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만약에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동네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17 자신의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18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나요?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나요?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19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각과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각은 모두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예 : 21시 30분, 22시 0분 등)
➔ 9시 등 정각인 경우 '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예 : 9시 0분, 22시 0분 등)

① 일어나는 시각 (기상 시간) 보통 [ ][ ] 시 [ ][ ]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각 (취침 시간) 보통 [ ][ ] 시 [ ][ ] 분

20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① 예 → 20-1

② 아니오 → 21번 문항으로

20-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2순위	

① 학원, 과외
②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③ 게임(인터넷게임, 휴대전화게임 포함)
④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⑤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⑥ 드라마, 영화 보기, 음악 듣기 등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1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가치(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나 스스로에 대해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2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는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자매
⑤ 담임선생님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⑦ 친구
⑧ 이웃/친척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⑩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3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 명)

24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다른 사람)이 있나요?**

	없다	있다
1) 내가 모르는 공부 내용이나 학업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2) 앞으로의 진로나 진학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3) 학교 가기 어려운 경우, 숙제 등 학교 일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4) 몸이 아파서 혼자 움직이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5) 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6) 내가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①	②

25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5-1 **(위 문항에서 4)*번의 ②, ③, ④인 경우만 응답)**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라는 감정을 느끼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3년 미만
⑤ 3년 이상

26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희롱, 특정 신체부위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27번 문항으로

26-1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나요?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⑧ 경찰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V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여가·문화

27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① 있다 → ② 없다 → 28번 문항으로

27-1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⑤ 공부하기 싫어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8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수업시간이 재밌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29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문화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해 보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공공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①	②	③	④	⑤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①	②	③	④	⑤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①	②	③	④	⑤

29-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 본 시설 및 공간에 얼마나 만족했나요?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30 학교에 가는 날(평일)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인가요?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31 평일 학교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나요?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

32 최근 1년 동안 평소 여가활동에 얼마나 만족했나요?
➔ '여가활동'이란 여가(자유)시간에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 33번 문항으로

32-1 만족하지 못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여가활동을 하기에 돈이 부족해서
② 여가활동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③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해서
④ 여가활동 공간(시설)이 부족해서
⑤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⑥ 여가활동을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⑦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⑧ 보호자(혹은 부모님)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해서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Ⅵ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33 다음에 대해 알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
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2)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3)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34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4)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	①	②	③	④

35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아동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아동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전교학생회 등)은 학교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모든 인간은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36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존중,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 등을 배우는 것입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국제조약입니다.

① 있다 ② 없다 → 37번 문항으로

36-1 인권교육이 각각의 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인권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	①	②	③	④
3)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	①	②	③	④

37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들을 얼마나 자주 당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는 동네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7-1 **(위 문항에서 ②, ③, ④, ⑤로 응답한 것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차별을 당한 후 주로 누구에게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주세요.**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⑧ 경찰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38 **(차별 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러분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 사람들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는 동네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9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장애를 가진 친구가 일반학교 학급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3) 장애를 가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 함께 수업을 듣고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편하게 여길 것이다	①	②	③	④

40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2) 현재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현재 기후 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41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나라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2) 학교에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42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사진, 동영상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부모님, 선생님, 학교가 나의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개인정보 유출, 불쾌한 메시지 또는 영상 노출, 성범죄, 사기 등) 도움을 받을 곳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학생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년

배문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세요
(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⑩ 없음

배문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중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머니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4 학생의 학업 성적(2025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5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 중·고등학생용

승인번호 제 402001 호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학교 ID (면접원이 작성합니다)				

202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중·고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학교나 선생님이 알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 참여로 인하여 예상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사 결과는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설문지 작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답례품을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담당자: 유민상 선임연구위원, 이경상 선임연구위원 (044-415-2194, msyoo@nypi.re.kr)
수행기관	Research & Research	※ 담당자: 민예슬 선임연구원 (02-3484-3077) ※ 문의전화: 02-3484-3087

조사 동의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관련 의견 수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가족구성, 부모의 학력, 출생 연도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연구종료일로부터 3년 – 보유 및 이용 기간 경과 후 또는 기간 내라도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 •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성별	•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	남자	☐ 여자

설문 응답 방법 안내문

➔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①에서 ④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아래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	②	③	④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12 다니는 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입니까?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① 예 → 12-1 학교의 종교행사에서 원하는 학생만 참여합니까?

② 아니오 → 13번 문항으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27-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5	2순위	3

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게임 포함)
⑤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Ⅰ 내 삶에 관한 질문들

1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

→ 2번 문항으로

1-1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 중간 → 매우 만족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전체적인 본인의 인생과 관련된 아래의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0=전혀 찬성하지 않음										매우 찬성=10
1)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나는 내 인생이 좋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나는 내 인생에 대해 행복감을 느낀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I 아동·청소년의 참여·활동

4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진학할 상급학교를(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보호자)은 평소 내가 편안히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보호자)은 평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5 다음은 학교의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선생님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3) 학교에서는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①	②	③
4) 선생님은 학생회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한다	①	②	③

6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 '학교운영위원회'란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등이 함께 학교의 운영방침(학교예산, 학교규칙, 현장학습, 급식 등)을 의논하는 회의입니다.

① 참여할 수 없다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잘 모르겠다

7 **다음은 학교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생의 동의 없이 가족관계나 가정형편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생이 잘못한 일로 벌(징계)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4)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5) 우리 학교나 선생님은 학생의 잘못에 대한 징계를 내릴 때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8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청소년 참여기구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기구를 말합니다** (예: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아동·청소년의회, 청소년구정참여단, 교육청의 학생참여단 등).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9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10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u>가장 큰 이유는</u>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u>하나만</u> 선택해 주십시오.**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11 **다음은 양심·종교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부당한 간섭 없이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12 다니는 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입니까?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① 예 ② 아니오 → 13번 문항으로

12-1 학교의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13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및 SNS 활동	①	②	③	④
(2)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①	②	③	④

13-1 (위 문항에서 ③번과 ④번에 응답한 학생만 답하십시오.)
이러한 활동이나 참여로 인해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② 경고 및 훈계
③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 ④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⑤ 기타(적어주세요 :_____)

14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용모(머리 모양·길이·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교복 착용, 외투나 운동복 착용)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Ⅲ 아동·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 환경

15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부모님 (보호자) 으로부터	1) 신체적 벌 (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①	②	③	④	⑤
	2) 정서적인 공격 (모욕적인 말, 욕설 등)	①	②	③	④	⑤
학교 선생님 으로부터	3) 신체적 벌 (벌세우기,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①	②	③	④	⑤
	4) 정서적인 공격 (모욕적인 말, 욕설 등)	①	②	③	④	⑤

16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강제적인 심부름	①	②	③	④	⑤

17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카톡 등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온라인 게임 등)**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18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본인은 우리 가족의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자주 걱정을 하나요?**

①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② 가끔 걱정한다
③ 자주 걱정한다 ④ 항상 걱정한다

20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24시간)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21번 문항으로

20-1 최근 1년 동안의 가출 경험은 총 몇 회 정도입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20-2 최근 1년 동안의 가출 경험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가출을 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하루 ② 2~3일 ③ 4~7일
④ 8~14일 ⑤ 15~29일 ⑥ 한 달 이상

20-3 최근 1년 동안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갈등(불화, 간섭 등) 때문에
③ 부모님(보호자)의 폭력, 학대, 방임 때문에
④ 학교에서의 갈등이나 폭력 때문에
⑤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⑥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0-4 최근 1년 동안 가출 당시 지낸 곳은 어디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친·인척집
② 가출 전부터 알던 친구, 선·후배집
③ 가출 후 알게 된 친구, 선·후배집
④ 고시원, 모텔, 원룸 등
⑤ 24시간 상점(PC방, 찜질방, 코인노래방 등)
⑥ 노숙(거리, 남의 집 옥상, 건물 안 계단 등)
⑦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⑧ 아동복지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0-5 최근 1년 동안 가출 당시 다음과 같은 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가출 당시) 이용 경험이…	있다	없다
1) 청소년쉼터	①	②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②
3) 청소년전화 1388	①	②
4) 청소년수련관	①	②
5) 위(Wee)클래스 또는 위(Wee)센터	①	②
6)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①	②

Ⅳ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 및 보호

21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2 각 항목을 잘 읽고 우리 동네 상황에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동네를 걸어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에는 즐겁게 놀거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많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만약에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동네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우리 지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23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24 자신의 정신적 건강(마음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25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26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각과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각은 모두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예 : 22시 30분, 23시 0분 등)
➔ 9시 등 정각인 경우 '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예 : 9시 0분, 22시 0분 등)

① 일어나는 시각 (기상 시간) 보통 [ ][ ] 시 [ ][ ]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각 (취침 시간) 보통 [ ][ ] 시 [ ][ ] 분

27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28번 문항으로

27-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게임 포함)
⑤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8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29번 문항으로
② 가끔 생각한다
③ 자주 생각한다

28-1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② 가족 간의 갈등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④ 경제적인 어려움
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9 **최근 1년 동안 자해 생각을 하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 **'자해'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아프게 하는 등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② 생각해 본 적은 있으나, 시도한 적은 없다
③ 한번 시도해 본 적 있다
④ 가끔 시도한다
⑤ 자주 시도한다

30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나 스스로에 대해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31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자매
⑤ 담임선생님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⑦ 친구
⑧ 이웃/친척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⑩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32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나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33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선생님, 다른 사람)이 있나요?

	없다	있다
1) 내가 모르는 공부 내용이나 학업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2) 앞으로의 진로나 진학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3) 학교 가기 어려운 경우, 숙제 등 학교 일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4) 몸이 아파서 혼자 움직이기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5) 내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6) 내가 놀거나 여가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①	②

34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4-1 (위 문항에서 4)*번의 ②, ③, ④인 경우만 응답)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라는 감정을 느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3년 미만
⑤ 3년 이상

35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36번 문항으로

35-1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없다	1-2번	3번 이상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①	②	③
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①	②	③
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①	②	③
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①	②	③
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①	②	③
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①	②	③
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①	②	③
8)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경험했다	①	②	③
9) 최저임금(2024년 기준 시간 당 9,860원, 2025년 기준 시간 당 10,03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①	②	③

36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성희롱, 특정 신체부위 접촉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37번 문항으로

36-1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⑧ 경찰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V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여가·문화

37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② 없다 → 38번 문항으로

37-1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⑤ 공부하기 싫어서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38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수업시간이 재밌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39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문화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공공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①	②	③	④	⑤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①	②	③	④	⑤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박물관 등)	①	②	③	④	⑤

39-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 본 시설 및 공간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40 학교에 가는 날(평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41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

42 **최근 1년 동안 평소 여가활동에 얼마나 만족했나요?**
➔ **'여가활동'이란 여가(자유)시간에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 43번 문항으로

42-1 **만족하지 못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여가활동을 하기에 돈이 부족해서
② 여가활동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③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해서
④ 여가활동 공간(시설)이 부족해서
⑤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⑥ 여가활동을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⑦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⑧ 보호자(혹은 부모님)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해서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Ⅵ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43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
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2)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3)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44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4)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	①	②	③	④

45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모든 인간은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8) 모든 인간은 성정체성과 성적지향과 상관없이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46 최근 1년 동안 학교나 학교 밖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개념, 유엔아동권리협약*,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존중,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 등을 배우는 것입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국제조약입니다.

① 있다 ② 없다 → 47번 문항으로

46-1 인권교육이 각각의 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각 항목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인권의 개념과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각과 태도	①	②	③	④
3) 인권침해와 차별 극복을 위한 행동 실천	①	②	③	④

47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는 동네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7-1 **(위 문항에서 ②, ③, ④, ⑤로 응답한 것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차별을 당한 후 주로 누구에게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후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등)
⑧ 경찰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48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생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나는 주위 사람들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는 동네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9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장애를 가진 친구가 일반학교 학급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3) 장애를 가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모두 함께 수업을 듣고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편하게 여길 것이다	①	②	③	④

50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평소에 기후변화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2) 현재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현재 기후 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51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인터넷 업체들(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은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온라인 게임 업체들(닌텐도, 넥슨 등)은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3) 우리나라 정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4) 학교에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2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온라인상에서 나의 사진, 동영상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부모님, 선생님, 학교가 나의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개인정보 유출, 불쾌한 메시지 또는 영상 노출, 성범죄, 사기 등) 도움을 받을 곳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Ⅶ 인권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53 **다음은 다양한 형태의 아동·청소년 권리 목록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다음의 권리들을 얼마나 보장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보장 받지 못했다	보장 받지 못한 편이다	보통 이다	보장 받은 편이다	충분히 보장 받고 있다
1)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 (예. 소지품 검사, 개인신상 노출, 개인정보 유출, 휴대폰 위치추적 등)	①	②	③	④	⑤
2)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권리** (예.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①	②	③	④	⑤
3) **교육에 대한 권리** (예. 교육받을 기회, 삶에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 원하는 역량 개발 등)	①	②	③	④	⑤
4) **놀이·휴식·여가에 대한 권리** (예. 놀거나 휴식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 등)	①	②	③	④	⑤
5) **건강에 대한 권리** (예. 신체 건강 및 마음 건강의 유지와 치료 기회 등)	①	②	③	④	⑤
6)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 (예. 적절한 영양, 의복, 주거 환경 보장, 빈곤으로부터의 보호 등)	①	②	③	④	⑤
7) **사회참여에 대한 권리** (예. 정치적 참여, 집회 참여, 경제적 참여, 사회활동 참여 등)	①	②	③	④	⑤
8) **차별받지 않을 권리** (예. 성별, 나이, 경제적 수준, 장애, 성적지향 등으로 인한 차별 보호 등)	①	②	③	④	⑤
9) **의견 표현 및 의견 존중에 대한 권리** (예. 나와 관련된 결정에 의견을 표현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 등)	①	②	③	④	⑤
10)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 (예. 쾌적한 자연환경,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학생은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년

배문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세요
(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① 할아버지
② 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⑩ 없음

배문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중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어머니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4 학생의 학업 성적(2025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5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국내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적·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수준을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협약 이행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는 네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국내외 아동·청소년 인권 현황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7호(아동의 환경권 관련 초안)를 검토하여 국제적 논의의 흐름과 국내 정책 환경을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통계청 승인통계인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와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2009년 이후의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의 변화 추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다차원적 인권침해 유형을 규명하고, NGO가 제기한 주요 인권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각 권리 클러스터와 생태체계 수준에서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지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변화한 환경 속에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위험요인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 사회안전망 구축과 인권 기반의 증거 중심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human-rights statu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and to propose measures for its improvement. It establishes a research foundation by producing national-level data that serve as core resources for academic and policy studies.

The study was structured in four parts. First, it review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s of child and adolescent human rights, including the UNCRC and its General Comment No. 27. Second, it analyzed national survey and administrative data. Third, it conducted in-depth analyses using the survey to identify patterns of multidimensional human-rights violations and to interpret key issues raised by NGOs in preparation for Korea's Seventh National Report to the UNCRC. Finally, it proposed policy measures based on indicator findings across thematic clusters and ecological systems.

The findings reveal increasing psycho-emotional difficultie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mid rapidly changing social environments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study underscores the need for an integrated safety-net and evidence-based policies to ensure that all children and adolescents can grow healthily and exercise their rights in the new era.

202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5-기본01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성은·김희진·조혜영·김현수

연구보고25-기본02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은 왜 금융이해력이 낮은가? :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송원일

연구보고25-기본0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 강경균·오해섭·최홍일·성은모

연구보고25-기본04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 김형주·장근영

연구보고25-기본05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 / 성윤숙·문호영·손병덕

연구보고25-기본06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여정·정은주

연구보고25-기본07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연보라·전현정·김나영

연구보고25-기본08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

연구보고25-일반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성렬·유설희

연구보고25-일반01-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

연구보고25-일반02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헌·김윤희·이용해

연구보고25-일반02-01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헌·김윤희·권경만·오병돈·유현주

연구보고25-일반03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Ⅰ / 양계민·서정아·권오영·변수정·장윤선

연구보고25-일반06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최인재·한지형

연구보고25-일반06-01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최인재·노언경·정송

연구보고25-일반07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신동훈·이지연·이정민·장한소리

연구보고25-일반07-01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연구보고25-일반07-02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4)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Ⅱ / 최용환·임지연·좌동훈·박윤수·이동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5)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 배상률·김영지·모상현·김낭희·조제성·김다은·홍서아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5-수시0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 / 좌동훈·남화성

연구보고25-수시02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강화방안연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양계민·권오영·안지현

연구보고25-수시03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 권오영·남화성

연구보고25-수시04 청소년의 방과후활동수요 및 방과후아카데미 발전 방안 연구 / 장근영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연구보고25-연적금0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김경준

연구보고25-연적금02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 연구 / 김기헌·유민상·신동훈·한지형

연구보고25-연적금03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 연구 / 최용환·임지연·좌동훈

연구보고25-연적금04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배상률·김영지·모상현

수 탁 과 제

〈일반〉

연구보고25-수탁01 2024 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연구보고25-수탁02 202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3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프로그램 (초등학생용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4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4-01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01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6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7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8 2025년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운영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9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사업 성과관리 진단 / 임지연·김혁진·문지혜

연구보고25-수탁10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1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김경준·이용해·허효주·안지현·진인범·박지영

연구보고25-수탁12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

연구보고25-수탁13 2026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유준오·송현주·허효주

연구보고25-수탁14 역량기반 인증수련활동 효과 유의성 평가도구 개선 연구 / 송원일·김정숙·최수정

연구보고25-수탁15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 연구 /
하형석·김기헌·유민상·신동훈·성재민·박미선·박병영·변금선·배정희·권향원·
김문정·진인범

연구보고25-수탁16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7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1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2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3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4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8 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황여정·김성은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연구보고25-학폭01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 주요 현안 및 정책 분석 /
안병훈·모상현·김용남·박선영·김영인

연구보고25-학폭02 2024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백승훈·박재욱

연구보고25-학폭03 2024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모상현·백승훈·깅영인

연구보고25-학폭04-01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3~4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
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2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5~6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3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4-04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연구보고25-학폭05 2024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연구보고25-학폭06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효과성 분석 / 모상현·이경상·김현수·전원지·문은솔

연구보고25-학폭07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모상현·김경년·김경애·김봉섭·김소아·김승혜·박주형·차성현

연구보고25-학폭08 학교폭력예방 학생 언어습관 자기 진단도구 개발 연구 / 박창균·조재윤·이정우·최태경

연구보고25-학폭09 2025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백승훈·김영인·최지윤

연구보고25-학폭10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박재욱·문은솔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연구보고25-대안01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 : 보통교부금 개선 가능성 검토 / 남수경

연구보고25-대안02 지속가능한 대안교육을 위한 재정지원방안 연구 / 함승수·이시효·박현정·김희정

연구보고25-대안03 2025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최인재·전현정··이지숙·신원규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연구보고25-위센터01 위(Wee) 뉴스레터 / 김영지·김소연·주예찬

연구보고25-위센터02 제14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 김영지·김승경·정춘헌·김영인·주예찬

연구보고25-위센터03 문제행동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중·고등) / 김영지·김승경·김영인

연구보고25-위센터04 2025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 김영지·양하나·정춘헌

연구보고25-위센터05 2025년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영지·김승경·서고운·전현정·이정민·최홍일·양하나·이수민·김소연·정춘헌·김주영·문세진·김다인·김영인·주예찬·이유진

〈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

연구보고25-학중0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꿈지락 활동집 / 김성은·이진아

연구보고25-학중02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유성렬·전예빈·정유경

연구보고25-학중03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전예빈

자 료 집

〈세미나〉

세미나25-01 2025년 17개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1차 협의회 (25.3.27.)

세미나25-02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발대식(1차 세미나) (25.6.13.)

세미나25-03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중간보고회 (25.8.12.)

〈워크숍〉

워크숍25-01 202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자료집 (25.7.31.-25.8.7.)

워크숍25-02 가정형 위(Wee)센터 워크숍 (25.8.11.)

〈포럼〉

포럼25-01 고립 은둔 청소년 삶 실태 및 정책과제 (25.3.26.)

포럼25-0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25.4.29.)

포럼25-03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25.4.29.)

포럼25-04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_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25.7.28.)

포럼25-05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25.8.26.)

포럼25-06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청소년시설 추진방향 모색 (25.11.11.)

포럼25-07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보호 정책과제 개발 (25.11.19.)

포럼25-08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AI시대의 책임과 권리 (25.11.27.)

포럼25-09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성과 및 향후과제 (25.12.4.)

〈콜로키움〉

콜로키움25-01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25.4.17.)

콜로키움25-02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25.5.13.)

콜로키움25-03 청소년 유해약물 정책 관련 해외사례 (25.8.26.)

〈기타자료집〉

자료25-01 2024 대안교육기관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자료25-02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제2판
자료25-03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3판
자료25-04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북
자료25-0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1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6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2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7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3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5-08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가이드북
자료25-09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1차 설명회
자료25-10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2차 설명회
자료25-11 제14회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5-12 2025년 제12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자료25-13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3차 설명회
자료25-14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가이드라인
자료25-1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자료25-16 청소년 부모·한부모 지원 매뉴얼 (2판)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1호(통권 11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2호(통권 11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3호(통권 11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4호(통권 119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54호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자원 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155호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정책방향
156호 OECD 국가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157호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158호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NYPI Bluenote 통계〉

86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 사이버도박

87호 청소년 근로 실태 및 권리 보장 현황

88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24년) 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89호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90호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가나다 순) ◈

강 미 정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장)
공　　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책임활동가)
구 본 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구 준 선 (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 대리)
김 규 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팀장)
김 보 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김 사 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김 승 환 (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 과장)
김 현 기 (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 과장)
김 희 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위원)
류　　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
마 한 얼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변 미 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상임활동가)
선 호 찬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사무국장)
송 지 은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대표변호사)
심 수 진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사무관)
오 연 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책임연구원)
유 승 희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법인운영팀장)
유 조 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 석 빈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권리협약연구소, 부소장)
윤 진 철 ((전)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이 수 진 (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 팀장)
이 은 선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회장)
이 봉 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 민 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장 희 선 (아동권리보장원, 부연구위원)
정 민 석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상임이사장)
정 병 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센터장)
한 분 영 (뿌리의 집, 활동가)
Peter Møller (뿌리의 집, 공동대표)

연구보고25-일반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인 쇄 2025년 12월 24일
발 행 2025년 12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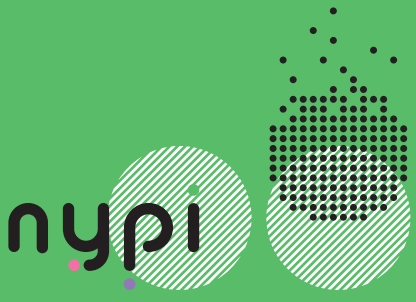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지식정보관)
ISBN 979-11-5654-454-8 94330
979-11-5654-453-1 (세트)

연구보고25-일반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54-8
979-11-5654-453-1 (세트)